

발간등록번호

11-1092000-000092-01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연구

2021. 1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미래성장연구소)
한국조달연구원

제출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 전략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한국조달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진욱(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정무경(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

공동연구원 강규원(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공동연구원 정재호(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이미정(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영웅(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이규인(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구지현(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상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목차

I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및 내용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3절. 보고서 구성	7
II장.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사회적(공유)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현황	
조사·분석·평가	9
제1절. 개발협력에서 기업의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의 의미	10
1.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의 정의	10
제2절. 우리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 현황	28
1. 정부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의 현황	28
제3절. 우리 기업의 개도국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 활동 현황	39
1. 기업의 CSR·CSV 사업의 수요 및 역량	39
2. 기업의 CSR·CSV 사업 유형	48
3. 기업의 CSR·CSV 사업의 협력 주체	51
4. 기업의 CSR·CSV 사업과 SDGs와의 연계성	55
5. CSR·CSV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기업의 평가	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4
III장. 민간부문참여(PSE) 해외사례 분석	68
제1절.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참여(PSE)의 의미와 전략	69

1. 민간부문참여(PSE)의 의미	69
2. 민간부문참여(PSE) 전략	76
3. 민간부문참여(PSE) 과제	82
제2절. 주요 DAC 회원국 기업협력 전략 및 정책	84
1. 미국	84
2. 호주	89
3. 독일	93
4. 네덜란드	96
5. 스웨덴	99
6. 일본	101
제3절. DAC 회원국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 현황 및 사례	106
1. 활동 현황	106
2. 주요 사례	1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38
IV장. 정부의 민간부문(기업) 연계 전략(안)	144
제1절.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 참여전략 수립의 배경	145
1.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	145
2. 정부-기업 간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47
3. 개발협력에서 민간참여의 해외 동향	148
제2절. 정부-기업협력 전략 현황 및 평가	150
1. 국가 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근거와 절차	150
2. 정부-기업협력 전략 및 평가	154
제3절. 정부-기업 협력전략(안)	167
1. 정부-기업 협업전략 수립의 필요성	167
2. 정부-기업 협력전략의 층위	168
3. 정부-기업 협업전략(안)	17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91
V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192

제1절.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의 의미	193
1. 해외공공조달시장의 이해	193
2. 해외 ODA 조달시장의 특성과 진출의 의의	195
제2절. 기업 ODA 조달시장의 진출 지원 정책(수단)	197
제3절. 해외 ODA 조달시장 동향	198
1. 다자 공여기관 조달시장	198
2. 양자 공여기관 조달시장	219
3. 시사점	237
제4절. 우리 기업의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 현황	243
1.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현황 분석 및 진출 애로사항	243
2.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평가	261
3. 시사점	264
제5절. 우리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265
1. 현행 기업 ODA 조달시장 지원제도	265
2. 현행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	270
3. 우리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273
제6절. 우리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279
제7절. 소결 및 시사점	281
VI장. 결론	28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83
제2절. 연구의 함의	285
참고문헌	287
부록 1: 설문지	298
부록 2: 설문조사 결과표	335
부록 3: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및 국내 ODA 조달시장 세부사항	519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5
〈표 1-2〉 심층인터뷰 개요	6
〈표 2-1〉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	12
〈표 2-2〉 기업의 글로벌 CSR 범위	17
〈표 2-3〉 KOTRA와 KOICA의 CSR·CSV 프로그램	18
〈표 2-4〉 KOICA의 CSR·CSV 활동	20
〈표 2-5〉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 유형별 기대효과	21
〈표 2-6〉 EDCF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유형	22
〈표 2-7〉 EDCF의 민자사업 지원 현황	23
〈표 2-8〉 기관별 CSR·CSV 사업 액수	29
〈표 2-9〉 기관별 CSR·CSV 사업 기간	29
〈표 2-10〉 KOICA의 CSR·CSV 사업 대상국	30
〈표 2-11〉 KOTRA의 CSR·CSV 사업 대상국	31
〈표 2-12〉 EDCF의 민자사업 대상국	33
〈표 2-13〉 기관별 CSR·CSV 사업 분야	34
〈표 2-14〉 KOTRA의 CSR·CSV 사업 유형	34
〈표 2-15〉 기관별 CSR·CSV 사업 발굴 형태	35
〈표 2-16〉 기관별 CSR·CSV 사업 참여 기업 유형	35
〈표 2-1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여부	42
〈표 2-18〉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존재 여부	43
〈표 2-19〉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규모	43
〈표 2-2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기대 수준 도달 정도	47
〈표 2-21〉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협력 희망 부처(상위 3개 부처)	52
〈표 2-22〉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 협력 의향이 없는 이유(상위 3개)	53
〈표 2-23〉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협력 및 정부 자원 필요성	53
〈표 2-24〉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NGO 협력 의향이 있는 이유	54
〈표 2-25〉 협업한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도움이 된 점(상위 3개)	59

〈표 2-26〉 협업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점(상위 3개)	59
〈표 2-27〉 개도국 CSR·CSV 및 정부 ODA 연계 필요 정도	59
〈표 2-28〉 개도국 CSR·CSV와 정부 ODA 연계 시 단계별 중요도	60
〈표 2-29〉 정부와의 협력 관련 도전과제 및 해결방안	67
〈표 3-1〉 민간부문 관련 용어 구분 및 정의	70
〈표 3-2〉 원조체제 논의의 변화	73
〈표 3-3〉 PSE 관련 주요 국제회의 내용 요약	74
〈표 3-4〉 개발협력분야에서의 공공 및 민간부문 비교우위 요약	75
〈표 3-5〉 기업의 직접 참여 방식 구분	78
〈표 3-6〉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혼합금융 지원수단	79
〈표 3-7〉 PSE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도전과제	83
〈표 3-8〉 USAID 주요 업무 현황	85
〈표 3-9〉 PSE 운영원칙	87
〈표 3-10〉 DFAT 및 민간기업 간 교환 가치	91
〈표 3-11〉 DFAT의 주요 PSE 전략	91
〈표 3-12〉 DFAT의 PSE 행동계획 접근법	92
〈표 3-13〉 민간부문 관련 시기별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97
〈표 3-14〉 네덜란드 개발협력 목표별 주요 정책 내용	97
〈표 3-15〉 일본 PSIF와 ODA 차관 비교	103
〈표 3-16〉 일본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104
〈표 3-17〉 일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형	105
〈표 3-18〉 국가별 PSE 관련 주요 근거	105
〈표 3-19〉 OECD DAC 회원국의 공공 및 민간분야 지원 현황	106
〈표 3-20〉 민간재원 동원(Mobilization)의 유형	107
〈표 3-21〉 DAC 회원국과 다자기구의 민간재원 동원 현황	108
〈표 3-22〉 OECD DAC 회원국들의 대륙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09
〈표 3-23〉 OECD DAC 회원국들의 수단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1
〈표 3-24〉 OECD DAC 회원국들의 부문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2
〈표 3-25〉 부문별 민간재원 수단 현황	114
〈표 3-26〉 OECD DAC 회원국가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5
〈표 3-27〉 OECD DAC 회원국 내 상위 4개 국가와 한국의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8
〈표 3-28〉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120
〈표 3-29〉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122

〈표 3-30〉 M-PESA 관련 연혁	123
〈표 3-31〉 M-PESA 서비스	125
〈표 3-32〉 델리-뭌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	126
〈표 3-33〉 동서부 화물전용회랑 프로젝트	129
〈표 3-34〉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131
〈표 3-35〉 STePP의 프로젝트 목록	133
〈표 3-36〉 STePP	134
〈표 3-37〉 Dutch Good Growth Fund 대상국	135
〈표 3-38〉 Dutch Good Growth Fund	136
〈표 3-39〉 주요 DAC 회원국 기업협력 전략 및 정책	139
〈표 4-1〉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분야 진출의 기대 효과	147
〈표 4-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상 정부-기업협력의 흐름	166
〈표 4-3〉 층위별 국가 전략	170
〈표 4-4〉 기업 유형별과 참여 경험에 따른 정책 수단의 중요성	175
〈표 4-5〉 기업유형별 정부-기업협력 사업 관심 수준과 임팩트	187
〈표 5-1〉 공공조달의 단위수준별 조달방식	194
〈표 5-2〉 유엔 기관별 조달실적 추이	200
〈표 5-3〉 유엔 Top 10 세부 품목별 조달실적 추이	202
〈표 5-4〉 세계은행 지역별 사업승인 추이	207
〈표 5-5〉 세계은행 지역별 사업지출 추이	207
〈표 5-6〉 세계은행 IFC의 투자요건	212
〈표 5-7〉 아시아개발은행 지역별 사업승인 추이	217
〈표 5-8〉 조달(Acquisition)과 원조(Assistance)의 차이	221
〈표 5-9〉 미국 국제개발처 Top 10 세부 서비스별 조달실적 추이	224
〈표 5-10〉 미국 국제개발처 Top 10 세부 물품별 조달실적 추이	225
〈표 5-11〉 호주 ODA 사업 투자설계 유형	229
〈표 5-12〉 호주 ODA 사업 규모별 승인 충족기준	230
〈표 5-13〉 호주 외교통상부 Top 10 세부 서비스별 조달 추이	233
〈표 5-14〉 호주 외교통상부 Top 10 세부 물품별 조달 추이	234
〈표 5-15〉 다자공여기관 조달시장 비교	239
〈표 5-16〉 양자공여기관 조달시장 비교	241
〈표 5-17〉 최근 4년간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245
〈표 5-18〉 최근 5년간 세계은행 산업별 한국기업 조달실적	245

〈표 5-19〉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246
〈표 5-20〉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산업별 한국기업 조달실적	247
〈표 5-21〉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기업 조달실적	247
〈표 5-22〉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 한국기업별 조달실적 추이	248
〈표 5-23〉 인도/중국/한국의 UN 등록 및 참여 벤더 수 비교 (2015-2018)	261
〈표 5-24〉 인도/중국/한국의 UN 조달규모 비교 (2015-2018)	262
〈표 5-25〉 인도/중국/한국의 Top 10 품목별 조달규모 비교 (2015-2018)	263
〈표 5-26〉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266
〈표 5-27〉 신성장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267
〈표 5-28〉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	268
〈표 5-29〉 해외시장 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269
〈표 5-30〉 해외조달시장 접근방식(진출방식)	271

그림 목차

[그림 2-1] CSR에 관한 피라미드 모형	11
[그림 2-2] Porter와 Kramer의 기업과 사회의 이해관계 결합	13
[그림 2-3] ESG, CSR, 그리고 SDGs의 관계	16
[그림 2-4] 민관협력사업 시행 파트너십 유형	19
[그림 2-5] 연구의 분석 틀	25
[그림 2-6] 개도국 CSR·CSV 중요도 및 향후 활동 계획 정도	40
[그림 2-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규모	40
[그림 2-8]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의 연계 필요성	41
[그림 2-9] 최근 5년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42
[그림 2-10]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평가	42
[그림 2-11]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별 중요도	44
[그림 2-12]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별 달성도	46
[그림 2-13] 개도국 CSR·CSV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	48
[그림 2-14]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	49
[그림 2-15]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	50
[그림 2-16] 개도국 CSR·CSV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및 관심 정도	51
[그림 2-17]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 협력 의향	52
[그림 2-18]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NGO 협력 의향	54
[그림 2-19] SDGs와 CSR·CSV 활동과의 연계 정도(전체)	56
[그림 2-20] 개도국 CSR·CSV 활동 시 필요한 정부 역할	58
[그림 2-21]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에 대한 만족도	63
[그림 3-1] 민간부문 개발협력활동 관련 용어 간 관계도	71
[그림 3-2] 개발협력 내 민간금융수단(PSI)	72
[그림 3-3] 투자발전경로와 산업별 국제직접투자 관계	75
[그림 3-4] 민간부문참여(PSE) 정도에 따른 분류	76
[그림 3-5] 민간부문참여(PSE) 방식 구분	77
[그림 3-6] PSE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81

[그림 3-7] USAID의 새로운 PSE 정책체계	86
[그림 3-8] 민간부문 참여도에 따른 USAID의 PSE 형태 및 특징	88
[그림 3-9] DFAT 원조 프로그램 전략체계	90
[그림 3-10] 독일 개발협력 목표 및 주요 분야	94
[그림 3-11] BMZ 2030 개혁전략 개요	95
[그림 3-12] 스웨덴의 2018-2022년 국제개발협력 전략 개요	100
[그림 3-13] 통합 JICA 기능 구성	102
[그림 3-14] 일본 PSD 체계 주요내용	102
[그림 3-15] OECD DAC 회원국들의 대륙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0
[그림 3-16] OECD DAC 회원국들의 수단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1
[그림 3-17] OECD DAC 회원국들의 부문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113
[그림 3-18]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대상국별 우선 프로젝트	122
[그림 3-19] 화물전용회랑공사 구조 및 계약 약정	128
[그림 3-20] 화물전용회랑 노선표	128
[그림 3-21]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대상국	130
[그림 3-22]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구조	131
[그림 3-23] STePP의 카테고리	132
[그림 3-24] Dutch Good Growth Fund의 현지 중소기업 투자지원 모델	136
[그림 4-1] 개발협력 국가전략 수립 체계	151
[그림 4-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153
[그림 4-3] 제2차 기본계획 전략체계	158
[그림 4-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략체계	162
[그림 4-5] 제3차 기본계획 전략체계	164
[그림 4-6]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기대 효과	173
[그림 4-7] 기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177
[그림 4-8] 민간기업 참여 전략 수립 체계	179
[그림 4-9] 정부-기업 정책대화 추진체계	181
[그림 4-10] 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	184
[그림 4-11] 개도국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	185
[그림 4-12]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190
[그림 5-1] 해외조달시장의 범위	195
[그림 5-2] 최근 5년간 유엔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199
[그림 5-3] 유엔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01

[그림 5-4] 유엔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203
[그림 5-5] 세계은행 기관별 사업승인 및 지출 추이	205
[그림 5-6] 세계은행 산업분야별 사업승인 추이	206
[그림 5-7] 최근 5년간 세계은행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08
[그림 5-8] 세계은행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209
[그림 5-9] 세계은행 IFC의 주요 사업 분야 및 투자 영역	210
[그림 5-10] 세계은행 IFC의 투자실적 개요	211
[그림 5-11] 세계은행 IFC의 투자 포트폴리오	211
[그림 5-12] 세계은행 IFC의 내부 투자관리 절차	213
[그림 5-13] 세계은행 IFC 한국사무소 진출사업 사례	214
[그림 5-14]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자원별 사업승인 및 지출 추이	216
[그림 5-15] 아시아개발은행 산업분야별 사업승인 추이	216
[그림 5-16]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18
[그림 5-17] 아시아개발은행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218
[그림 5-18] USAID 협력협정에 대한 관여 요소	221
[그림 5-19]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자원별 조달실적 추이	222
[그림 5-20]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22
[그림 5-21] 미국 국제개발처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23
[그림 5-22] 미국 국제개발처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226
[그림 5-23] 미국 국제개발처 GDA APS CO-Creation Process	227
[그림 5-24] 최근 5년간 호주 외교통상부 자원별 조달실적 추이	231
[그림 5-25] 최근 5년간 호주 외교통상부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31
[그림 5-26] 호주 외교통상부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232
[그림 5-27] 호주 외교통상부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235
[그림 5-28] 호주 외교통상부 BPP 프로세스	236
[그림 5-29] 최근 5년간 유엔 조달분야별 한국 조달실적 추이	243
[그림 5-30] 최근 4년간 세계은행 조달분야별 한국 조달실적 추이	244
[그림 5-31] 해외진출 전담조직 여부	249
[그림 5-32] 해외진출 전담조직 인력규모	250
[그림 5-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및 최근 5년 전체 매출의 연평균 수출 비중	250
[그림 5-34] 해외진출과 관련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	251
[그림 5-35]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의 현 수출단계	252

[그림 5-36] 해외진출 주요 수출권역	252
[그림 5-37]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실적	253
[그림 5-38] 해외 납품시 주요 진출 경로 (중소벤처 전체 n=76)	253
[그림 5-39]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시 애로사항	255
[그림 5-40] 정부/공공기관 주관의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경험	256
[그림 5-41] 정부/공공기관 주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연도(복수응답)	256
[그림 5-42]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받은 정도	257
[그림 5-43]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필요사항	258
[그림 5-44]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대기업 전체(n=30))	258
[그림 5-45]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정부협력	260
[그림 5-46] 최근 5년 해외사업 수주 실적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현황(대기업 전체(n=30))	260
[그림 5-47] 현행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종합)	270
[그림 5-48]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집중영역	272
[그림 5-49]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특성 및 한계	272
[그림 5-50] 해외 ODA 조달시장 통합형 진출지원모델 (안)	274
[그림 5-51]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의 기본 방향	275
[그림 5-52]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PMO 서비스 (예시)	278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개발협력에 있어 기존 정부 중심의 방식에서 민간부문의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 특히 기업의 참여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정부의 재원만으로 달성하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발재원 격차와 관련하여 OECD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SDGs 달성에 약 2.5조 달러의 재원부족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원부족 규모가 4.2조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OECD, 2020). 이러한 개발재원의 부족은 전통적인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적 재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고, 개발재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재원 투입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기업의 참여는 재원 확대 효과 이외에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경험과 혁신적 사고가 개발협력 사업에 활용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오수현, 2015).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레이 합의서(Monterrey Consensus)’에서부터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김상훈·임소영, 2020: 10-11). 민간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개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에 반영되고 있으며, 여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민간참여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OECD, 2016).

개발협력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기업 또한 개발협력의 참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혜택이 적지 않다. 이미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그리고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의

CSR, CSV, ESG 활동이 앞서 언급한 개발협력의 틀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협력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전략 문건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개발협력 분야에서 기업의 참여는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업협력이 의도한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원인 가운데, 이 연구는 정부-기업협력 전략이 온전하게 수립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 개발협력 분야와 활동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은 국가의 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개발협력 분야에 기업의 참여는 개발재원 격차 해소와 새로운 개발협력 접근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기업의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는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고, 기업의 투자 확대는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우리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 CSR·CSV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된다(김민희·백석훈, 2012; 김성규, 2014; OECD, 2015).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국제 원조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이 국제 원조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1,61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원조 규모 22.5억 달러의 70배를 상회한다(외교부, 2021).¹⁾ 양자 원조 규모에 더하여 UN, World Bank, ADB 등과 같은 다자원조 시스템에 의한 해외원조 조달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원조시장 진출의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다(양평섭 외, 2019). 해외 원조시장의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은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잠재적 효과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 원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또한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DAC 회원국 가운데 16위이며 우리나라 GNI의 0.14%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89 참조.

2.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와 협력의 의미에 기반하여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기업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해외 원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을 세부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첫째, 정부-기업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관련 활동과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CSR·CSV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정부-기업협력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같은 현황 파악과 분석은 정부-기업협력 전략 수립과 기업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개발협력분야 참여 전략과 제도 그리고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우리 정부에 비해 민간부문 참여에 국가적 전략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고, 이들 국가의 기업협력 전략, 제도,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전략 수립과 방안 모색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 기업의 CSR·CSV 활동과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 연계 전략(안)을 도출한다. 전략(안)의 도출은 전략체계에 맞추어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우리 기업의 해외 원조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외조달 시장과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을 바탕으로 해외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한 후 기업의 해외원조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개도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CSR·CSV 활동 현황 파악 및 분석, OECD DAC 회원국의 민간협력 전략,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우리 정부의 기업협력 전략(안) 도출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원조 시장 진출방안 모색을 연구의 범위로 삼고 있다. 이 연구의 네 가지 연구 범위에 적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론은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이다. 문헌연구는 연구 전체에 걸쳐 적용되었고, 선행연구를 통해 CSR·CSV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여러 기관에서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 정부 문건과 더불어 국제기관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의 CSR·CSV에 관한 자료, 해외사례, 해외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였고,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방법론은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와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이다. 설문조사는 기업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다.²⁾ 설문 문항 일부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리 하였지만, 대부분의 설문문항은 기업유형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배포된 설문지 가운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대기업 30개, 중소·중견기업 41개, 벤처·스타트업 35개, 총 106개로, 회수율은 35.3%이다. 설문항목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간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차이를 두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구분	세부 사항			
조사 일시	2021년 9월-10월			
조사대상 및 응답률	유형	설문지 배포 수	응답수	응답률
	대기업	100개	30개	30%
	중소·중견기업	100개	41개	41%

2)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이 보고서 부록을 참조.

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벤처·스타트업	100개	35개	35%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황 일반: 대기업 5개 문항,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 6개 문항 ■ 기업의 CSR·CSV 전담 조직: 3개 문항 ■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11개 문항 ■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계획: 12개 문항 ■ 기업의 CSR·CSV 활동 관련 정부의 역할: 7개 문항 ■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대기업 12개 문항,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 10개 문항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만족도: 6개 문항 			

심층인터뷰는 기업과 개발원조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협력 사업 담당자들 4명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서 CSR·CSV 담당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7명 총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인터뷰 참여자에게 배포하여 인터뷰의 목적과 핵심 질문을 숙지하게 하였으며, 각 조직의 개도국 CSR·CSV 활동, 개도국 사업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협력 및 지원 그리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심층인터뷰 개요

Case Code	인터뷰대상자 소속 기관 성격	인터뷰 대상자 직급	인터뷰 진행 일자 (인터뷰 시간)
A	ODA 시행기관	차장	2021. 9. 23(90분)
B	ODA 시행기관	과장	2021. 9. 24(90분)
C	대기업	팀장	2021. 10. 5(90분)
D	대기업	책임	2021. 10. 5(90분)
E	대기업	부장	2021. 10. 5(90분)
F	중소·중견기업	상무	2021. 10. 15(90분)
G	중소·중견기업	전문	2021. 10. 15(90분)
H	ODA 시행기관	팀장	2021. 10. 19(90분)
I	ODA 시행기관	차장	2021. 10. 19(90분)
J	벤처·스타트업	매니저	2021. 10. 21(90분)
K	벤처·스타트업	연구소장	2021. 10. 21(90분)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기업협력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기대 사이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및 해외조달시장 지원 방안 도출에 활용되었다.

제3절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Chapter)로 구성되었고, 서론 이후의 각 장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도국 내에서 진행한 CSR·CSV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개발협력분야에서 기업의 CSR·CSV 활동이 갖는 의미를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을 국제사회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협력 사업수행을 대표하는 KOICA, KOTRA, 수출입은행의 프로그램과 주요 사업 그리고 그간의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현황과 그 특징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의 현황과 수준, 성과,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를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분석한다.

제III장은 국제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참여(PSE)의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OECD DAC의 주요 국가 PSE 전략과 제도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PSE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PSE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국제사회 및 선진공여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PSE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과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설명한다. PSE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들과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 장에서는 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과 같은 5개 국가의 PSE 전략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IV장은 우리 정부의 기업협력 전략(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협력 전략(안) 도출은 제II장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과 제III장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전략 문건 분석에 기반하였다. 이 장의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의 체계화를 위해 이 장은 국가전략체계 수립의 틀에 따라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3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전략목표의 이행을 위해 각 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 현황 그리고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제V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ODA 조달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 의미를 살펴보고, 해외 다자·양자 조달시장

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현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 실적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ODA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여건, 애로사항,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여러 통계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 장은 우리 기업이 ODA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안)을 제시한다.

제VI장은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부-기업협력의 활성화와 확대 그리고 우리 기업의 ODA 해외조달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사회적(공유)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현황 조사·분석·평가



제1절

개발협력에서 기업의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의 의미



1.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50년대부터 중요하고 발전적인 주제였다. 사회, 공동체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증거는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CSR의 개념적 특징과 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CSR의 정의를 다룬 다수의 연구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유럽,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CSR을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CSR, CSV, 그리고 ESG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핵심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분야에서의 CSR·CSV의 참여 주체(파트너십 유형), 주체별 참여 목적과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기업-정부 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기업의 CSR·CSV 현황 및 민관협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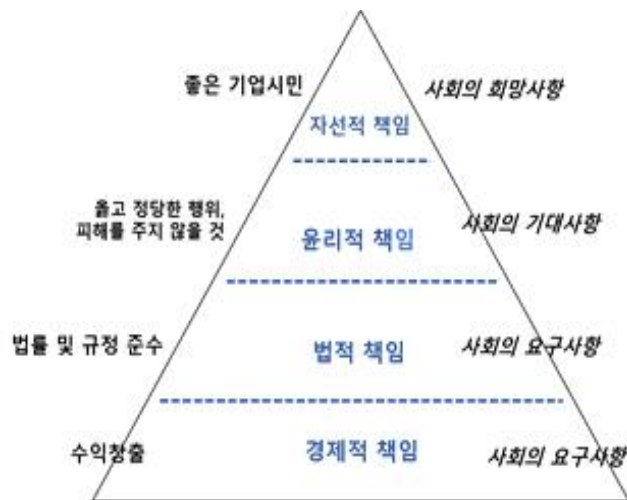
가. CSR·CSV·ESG란 무엇인가?

1) CSR의 의미

CSR에 대한 정의는 학자, 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통된 정의는 부재하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의 발전정도,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CSR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전통적인 책임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와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CSR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재량적 책임으로 구분된다(Carroll 1979, 1991, 2016).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존재의 근본적 요구사항으로써, 기업이 설립되고 지속되도록 허용한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칭한다. 사회는 기업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 ‘법률적’ 책임은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경제적 사명을 성취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사회의 규범에 법은 필수적이거나 충분치는 않다. 사회는 법이 기업에 요구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법의 정신에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법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는 책임을 지칭한다. '재량적' 책임은 '자선적' 책임과 같은 의미로, 사회개량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또는 자유 재량적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에 따라 인도된다. [그림 2-1]에 나타난 Carroll(1991)의 'CSR에 관한 피라미드 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책임은 비즈니스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기초가 되었다. 기업은 그 밖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을 내야 한다. 그다음 '법률적' 책임 단계에서 사회는 기업에 법과 규제를 지킬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으로는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갖고, 옳고 정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자선적'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에 재정, 물리적, 인적 자원을 환원하고 기여한다. 이로써, 피라미드에는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근본적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2-1] CSR에 관한 피라미드 모형



출처: Carroll(2016). Carroll's pyramid of CSR: Taking another look. 5쪽(저자 번역)

Dahlsrud(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수집한 후, 구글(Google)을 통해 해당 정의가 사용된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은 5개의 정의는 <표 2-1>과 같다. Dahlsrud(2008)는 이와 같은 정의를 자발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해관계자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자발적 차원은 기업이 최소한의 성과 수준을 규정하는 규제 사항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의 경제 발전에

1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기여하는 경영활동의 재무적인 측면을 뜻하며, 사회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등 기업과 사회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적 차원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차원은 자연환경 보호와 같은 기업의 활동을 나타낸다. CSR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이들의 관점은 서로 중복된다. 기업은 항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 고객,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관심을 가졌으며, 규제를 준수해 왔다. 이처럼 CSR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부재하지만, 수년간 확립된 CSR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존재한다. 또한, Dahlsrud(2008)는 현재 통용되는 정의가 CSR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만, CSR 관리 지침까지는 미처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CSR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 간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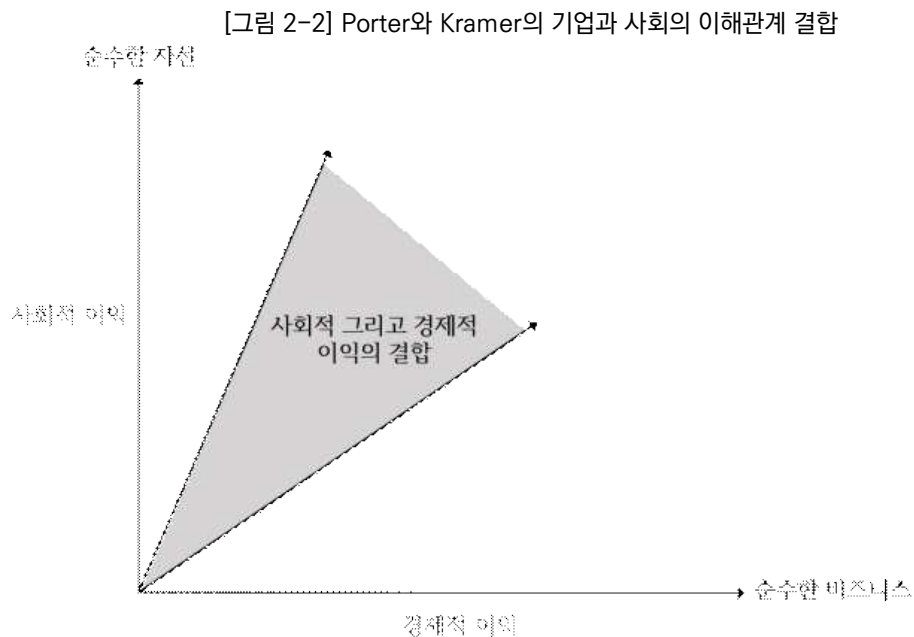
〈표 2-1〉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관	정의	사용 빈도수	차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0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기업의 자발적 주도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통합하는 것	286	자발적 이해관계자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세계지속가능발전 집행위원회, 1999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그 가족,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와 함께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	180	이해관계자적 사회적 경제적
세계지속가능발전 집행위원회, 2000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0	기업이 윤리적으로 활동하고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156	자발적 이해관계자적 사회적 경제적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0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더 나은 사회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것	134	자발적 사회적 환경적
국제적 비영리단체, 2000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2000	윤리적 가치, 법적 요건 준수, 사람, 공동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비즈니스 의사결정	131	자발적 이해관계자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출처: Dahlsrud(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7쪽(저자 번역)

2) 전략적 CSR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의미

CSR의 개념을 나타내는 Carroll(1991)의 피라미드 모형을 보면, '경제적' 책임은 피라미드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자선적' 책임은 그 정점에 있다. 즉, 주어진 경제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기업이 다했을 때, 사회는 기업에 윤리적 책임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라미드 모형의 네 가지 책임이 부가적이거나 통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Drucker(1984)는 기업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Porter와 Kramer(2002)는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동시에 기업과 사회 간의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의 조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2-2]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결합'은 기업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선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적 CSR'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선적 기여와 비즈니스 목표의 효과적인 연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CSR은 기업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자선활동을 포괄한다. 전략적 CSR은 단기적 소모비용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기회, 혁신, 경쟁우위의 원천 자원이다 (Porter & Kramer, 2006).



출처: Porter와 Kramer(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저자 번역)

14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이러한 맥락 속에서 Porter와 Kramer(2011)는 '전략적 CSR'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킨 CSV를 소개했다. Porter와 Kramer(2011)는 CSV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과 동시에 가치사슬의 혁신, 클러스터 형성 등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고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다. CSV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임종혁 & 전달영, 2018).

3)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의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적 지배구조(Governance)를 한 데 묶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지역이나 직종 또는 인종 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업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한다. 아직 보편적 ESG 평가 기준은 없지만,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임팩트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Weighted Accounts Initiativ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고용 및 제품에 미치는 기업의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도출을 목표로 한다(한예경, 2020).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Serafeim 교수(2020)는 향후 기업의 모든 투자는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증시하는 '임팩트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Serafeim(2020)은 단순 임팩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전략적 ESG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rafeim(2020)에 따르면, 전략적 ESG 이니셔티브란 먼저 조직의 전략을 이해한 후, 조직의 전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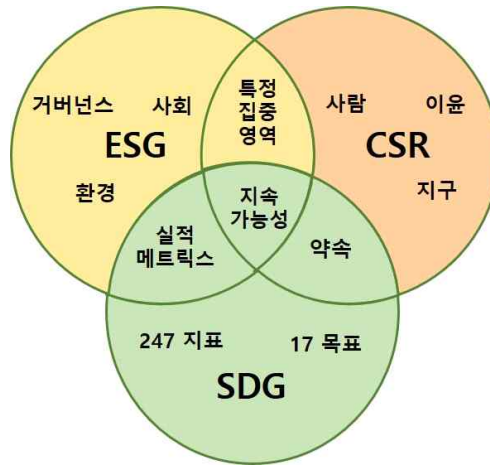
기업이 ESG 성과를 내려는 이유는 비단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뿐만은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Serafeim(2020)에 따르면, 첫째, ESG는 경영진이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투자자들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려 하고, 이러한 기업에는 더 많은 자본 풀이 제공된다. 둘째, 많은 글로벌 규제 기관 및 정부가 ESG 성과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ESG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와 투명성은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들은 직원의 참여도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가로 인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장된다.

4) CSR, CSV, ESG, 그리고 SDGs의 관계

CSR은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발협력과정에서 기업의 글로벌 CSR의 핵심요소는 흔히 3P라고 일컬어진다. 경제적 책임은 이윤(Profit) 발생을 의미하며, 사회적 책임은 수원국 국민(People)에 대한 책임, 그리고 환경적 책임은 전 지구적(Planet) 차원에서의 환경 의식을 의미한다(김성규, 2015). CSV는 CSR의 일환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렇듯 CSR은 CSV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ESG와 CSR은 교집합을 이룬다. CSR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자선, 윤리,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ESG는 투자자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고려하고 단기수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접근법이다(이승균 & 박민석, 2021). 다시 말하자면, ESG는 지속가능성과 기타 가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이고, CSR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기업의 내부적 약속이다. CSR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ESG 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CSR과 ESG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며 이들의 관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도 연결되어 있다. CSR과 ESG 모두 기업이 탄소 배출 억제 등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세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2010년부터 공통 CSR 공약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CSR은 2012년부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자주 연계되었다(Planet People Productivity, 2021). 또한, 지속가능성은 ESG의 평가항목이기도 하다. ESG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요소를 사용하여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투자자는 이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SDGs는 모두에게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며, 17개의 목표와 24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CSR, ESG, 그리고 SDGs 모두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CSR, ESG와 SDGs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익적 측면에서도 입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그림 2-3] ESG, CSR, 그리고 SDGs의 관계



출처: Planet People Productivity(2021).

The Great Sustainability Bake-Off: CSR vs ESG vs SDG(저자 번역)

나. 개발도상국에서 CSR·CSV란 무엇인가?

1) 글로벌 CSR·CSV

전통적 CSR·CSV 활동은 세계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래 국가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던 기업의 CSR·CSV는 다국적 및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로의 CSR·CSV로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김성규, 2012). 글로벌 CSR이란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영실무가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너지 기업 1위였던 엔론의 분식 회계사건, 나이키와 네슬레의 아동 근로 착취 등 세계적 기업들의 비도덕적 경영사례들은 비판을 받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돌아보게 하였다(홍성현, 2010). 글로벌 CSR의 범위와 내용은 앞서 언급한 Carroll(1991)의 'CSR에 관한 피라미드 모형'에 입각하여 <표 2-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 최적화 달성 및 진출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책임을 의미하고, 글로벌 법적 책임은 기업이 국제법과 현지법을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모형은 진출국의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 기업의 글로벌 윤리적 책임, 그리고 빈곤층 지원, 의료 지원 등 글로벌 자선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표 2-2〉 기업의 글로벌 CSR 범위

책임	글로벌 CSR 내용
글로벌 경제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해외 공급자와 구매자에게 적절한 마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 고용창출을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책임 ■ 유효한 글로벌 경쟁전략 설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차별화로 현지시장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 ■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책임 ■ 근로자의 재교육과 기술교육을 담당할 책임
글로벌 법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거나 현지시장을 교란시키는 덤핑행위, 부당경쟁행위, 현지 정부나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현지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행위,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 책임
글로벌 윤리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근로자 및 아동노동착취 등 인권 유린 해외기업으로부터의/해외기업에게로의 원료, 부품 및 제품의 수출입 거절의 책임 ■ 공급자에게 부당한 수입 계약조건 금지의 책임 ■ 해외 유통경로와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관행 철폐의 책임 ■ 현지 지역사회 및 문화 존중 등의 윤리적 책임
글로벌 자선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국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상하수도시설 정비, 빈민 아동과 소외계층 및 여성을 위한 교육 시설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과 봉사 등 자선활동을 추진해야 할 책임

출처: 홍성현(2010).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R 전략 및 실천방안. 50-52쪽(저자 재구성)

2) 개발도상국에서의 CSR·CSV 참여 정부 기관

개발협력분야에서도 공공, 민간기업의 글로벌 CSR·CSV는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성규, 2012). 기업은 CSR·CSV 활동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 CSR·CSV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KOTRA와 KOICA이다. 정부 기관의 총체적 CSR·CSV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CSV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운데, CSR은 별도 부서나 기업 Public Relations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CSV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CSR 활동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되며,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CSV 활동을 통해서도 기업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CSV의 경우, 기업의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가치창출활동이 일체되어 있다(김성규, 2014). 따라서 총체적인 CSR·CSV 활동 개수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KOTRA와 KOICA의 대표적 CSR 사업은 〈표 2-3〉과 같다.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자사제품·서비스를 기부하여 신흥국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우리 기업 이미지 제고로 현지진출에 기여하거나, 한국의 산업을 신흥국에 확산하고 신흥국의 생산·유통·소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KOICA가 지원하는 국내 기업의 CSR·CSV 활동은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프로그램'과

1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창의적 가치창출(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IBS 사업은 KOICA가 기업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CTS 사업은 KOICA가 지원한다. IBS와 CTS 사업은 공통적으로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다. IBS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발굴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발굴형과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으로 나뉜다. CTS 사업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발굴한다. <표 2-3>에 언급된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IPP)’은 해외 민간파트너, INGOs와 같은 해외파트너의 협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상용화하도록 돕는다. 판매,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는 현지 문화, 관습 등 다각적 환경을 고려한 빈곤층 대상 시장 또는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KOICA, 2020). 이와 같이, 해외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IPP 사업은 국내 기업과 정부의 협력에 중점을 둔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본 연구는 IPP 사업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표 2-3> KOTRA와 KOICA의 CSR·CSV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명	파트너	재정지원
KOTRA	글로벌 CSR 사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벤처	정부 지원 예산 + 기업자금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KOICA ODA + 기업자금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스타트업/벤처	KOICA ODA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PP: 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해외기관 (기업/INGOs)	KOICA ODA + 기업자금

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에는 공여국의 정부와 기업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여국의 참여주체는 공여국 정부와 기업의 결합, 공여국 정부와 민간 재단 등 자선적 기금의 결합, 공여국 정부와 기업 및 자선적 기금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들과 결합하여 공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비공통행위자로는 수원국의 정부, 수원국의 기업, 국제기구가 있다. 시행파트너십은 비영리, 영리컨설팅, 공여국 기업, 국제기구, 혼합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되어 있다.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CSR·CSV 활동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주체별 참여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체별 참여 목적과 역할의 불명확성은 참여 주체들 간 상호 신뢰성 결여,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된 모든 주체 간의 불충분한 협업과 협조로 이어지고, 이는 수원국 내

공유가치창출의 주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OECD, 201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 간 가시적인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목표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 재무 능력, 인프라 부족 등의 수원국 내 공유가치창출의 방해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4] 민관협력사업 시행 파트너십 유형

공통행위자	비공통행위자
공여국 정부 +기업 공여국 정부 +민간 재단 (자선적 기금) 공여국 정부 +기업+ 민간 재단 (자선적 기금)	▪ 수원국 정부
	▪ 수원국 기업
	▪ 국제기구
	▪ 혼합
시행 파트너십	
a. 비영리 b. 영리컨설팅 c. 공여국기업 d. 국제기구 e. 혼합	

출처: 손혁상, 박보기 & 김남경(2014). 국제개발협력에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143쪽

3) 개발도상국 CSR·CSV 참여 목적 및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는 참여 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CSR·CSV 활동 참여 목적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기업이 CSR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을 외부 및 내부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외부 차원의 동기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규제자와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분쟁 해결과 이슈 관리 등, 기업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의미한다. 내부 차원의 목적으로는 종업원 사기 제고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 향상, 정의감 및 신뢰 향상 등이 있다(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 기업의 CSR·CSV 참여 목적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는 “다. 문헌연구” 부분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KOICA의 기업협력은 2010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내에서 시작하여, 2015년 ‘기업협력 프로그램(Business Partnership Program, BPP)’으로 명명되었다. BPP는 2017년에 IBS로 개편되었다. 또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ODA 사업에 접목한 CTS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KOICA, 2020). 당초 PPP의 목적은 첫째, UN의 MDGs 목적달성과 인도적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둘째, 민간자금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ODA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ODA 재원 다양화 모색 등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민간기업의 투자, 기술이전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셋째, 민간기업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 증폭 및 적극적인 참여요청에 대응하는 것이다(백숙희, 2013). IBS 사업의 목적은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 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 증가에 기여하면서 해외시장

2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개척을 도모하는 것이다. CTS 사업은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한국의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종사자 등 혁신가들이 자신의 기술, 아이디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2-4〉 KOICA의 CSR·CSV 활동

책임	정의	목적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방식	개발도상국 여러 산업 분야의 가치사슬에 연계되어 Base of Pyramid(BOP)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존 BOP 생산력을 개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혁신기술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기여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을 통해 혁신가에게는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업 기회를,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출처: KOICA(2021). 2022 KOICA CTS 프로그램 안내서. 8쪽.
KOICA(2021). 2022 KOICA IBS 프로그램 안내서. 11쪽.

KOTRA는 한국기업과 현지정부와 공조(Collaboration)하여 신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인력육성(Cultivation)을 돕고, 상생(Coexistence) 발전하고자 하는 CSR 3C 전략 아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적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글로벌 CS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OTRA, 2019). KOTRA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CSR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수원국의 빈곤, 환경, 보건, 인프라, 복지 증진 등의 문제해결을 돕고자 한다. 글로벌 CSR 사업은 자사제품·서비스 제공 CSR(A형), 해외기술·경영학교운영(B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C형), 유희장비 신흥국 이전 사업(D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KOTRA는 글로벌 CSR+ESG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Green Initiative CSR 사업(E형), 의료·보건·방역 CSR 사업(S-H형), 국내 다문화 무역인 육성 사업(S-C형), 기업 윤리경영 강화 사업(G형)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 참여 기업과 수원국에 대한 기대효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 유형별 기대효과

사업유형	내용	기업을 위한 기대효과	대상국을 위한 기대효과	
동반성장형 CSR 유형	(A형) 자사제품· 서비스 제공 CSR	국내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	현지기관, 바이어,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	현지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B형) 해외기술학교	한국의 기관·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현지 시장 개척	발주처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	현지 전문인력 육성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도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소득 증대	현지 사회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한국의 시험인증, 제품생산, 공공서비스 분야의 운영경험과 장비를 신흥국에 제공, 우리나라의 산업표준, 적합성 체계, 연구 성과 등 전파	향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현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련 사업발전
상생지원형 ESG 유형	(E형) Green Initiative	탄소 절감 제품, 친환경 제품 및 관련 기술, 인증제도, 친환경 서비스 등을 현지 수요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제품 기부 및 기술전수 지원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친환경 구축을 통한 현지 환경 개선
	(S-C형) 국내 다문화 무역인 육성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중에서 어학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무역 전문가로 육성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인력 채용을 통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신흥국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S-H형) 의료·보건방역	각국의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구호물품 및 의료용품을 지정 국가에 기부 및 구호활동 지원, 의료기술 전수, 의료장비 이전 등	기부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재난상황 관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
	(G형) 기업윤리경영 강화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CSR 동향 및 정보 확산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해외 CSR Best Practice 성과 공유 보고서 제작·배포, 국내외에서 CSR 활동이 우수한 우리 기업 포상	기업의 ESG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CSR 활동 확대

출처: KOTRA(2020).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전제된, 구축성 원조 기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CSR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EDCF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있다. EDCF는 수원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표 2-6>과 같이, 민자사업의 지원유형은 사업의 상업성 유무와 지원방식(직접/간접)에 따라 구분한다. 발전소, 도시지역 송배전망 등 상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수원국 정부의 민자사업법인 앞 출자금 또는 대여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EDCF가 지원할 수 있다(유형 ①).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즉, 상업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정부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건설비용 등 현금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유형 ②). 사업의 수익성이 있으나 EDCF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차관으로 주변 연계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유형 ③). 상업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범위 분할을 통해 EDCF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다(유형 ④).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되, 철도차량은 EDCF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홍순영, 2021).

<표 2-6> EDCF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유형

EDCF 지원 형태			
		민자사업 실시시 필요한 자금 직접 지원	민자사업 간접 지원
EDCF 차관 종류		민자사업차관	개발사업차관, 기자재 차관
상업성 유무	상업성 있는 사업 (발전소, 도시지역 소배전망, 통신망, 산업단지 등)	수원국 정부의 민자사업법인 앞 출자금 또는 대여금 지원 (유형 ①)	도로, 교량, 상하수도, 송배전 등 주변 연계 인프라 지원 (유형 ③)
	상업성 없는 사업 도로, 교량, 철도, 경전철, 병원 등)	수원국 정부의 민자사업법인 앞 보조금 지원 (유형 ②)	도로, 철도의 구간 분리, 민자병원의 기자재 공급 등 사업범위 분할 지원 (유형 ④)

출처: 홍순영(2021). 신흥국 인프라 PPP 사업의 성공적 발굴과 추진을 위한 EDCF 활용방안. 3쪽.

EDCF는 2021년 5월 기준, 총 4건의 민자사업(총 사업비 7.4억불)에 대해 3.8억불을 지원했다(기획재정부, 2021). 유형별 사업지원 내역, 의의, 그리고 효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EDCF의 민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 USD)

유형	사업명	시기	총 사업비 (EDCF 지원규모)	지원내역	의의	효과
유형 ①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17년	240.5 (31.6)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대여금 지원	수력발전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 친환경적, 경제적 및 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촉진	낮은 사업성 및 국가신용도로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국가의 최우선 인프라 사업 지원
유형 ③	인도네시아 카리안담 건설사업	'10년	196.0 (100.0)	정수장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 지원	댐 건설 지원을 통해 상수도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수자원 인프라 사업 성사	우리 기업 수주에 기여
	한-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18년	69.0 (61.8)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단지 주변 용수, 도로 및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외자 유치, 일자리 창출 증가 및 우리 기업 현지 진출에 기여
유형 ④	베트남 떠반 년짜 도로 건설사업	'15년	243.5 (191.0)	EDCF 지원 구간과 민자사업 구간 분할 후, 민자사업이 전체 구간 위탁 운영	교통체증 해소 및 년짜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경감 기대	EDCF 분할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및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 성사

출처: 기획재정부(2011).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2쪽.
 기획재정부(2019). 수출입銀, EDCF 지원으로 미얀마와 경제협력 강화 나서. 2쪽.
 기획재정부(2021).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2-4쪽.

다. 문헌연구

1) 기업의 CSR·CSV 현황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의 CSR·CSV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평가하며, 관련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 간 바람직한 협력 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장은 기업의 CSR·CSV 현황 분석 및 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을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의 CSR·CSV 현황 및 기업-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CSR·CSV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모, 목적, 인식·중요성, 추진조직/전략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CSR·CSV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한국이 OECD DAC에 보고하는 전체 국제개발협력 예산 중, 민관협력 통계만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민관협력으로 받아들여지고

2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OECD DAC의 공식 ODA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국내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구정우, 김울리 & 김대욱, 2015). OECD DAC 통계에 공개된 민간재원의 경우, 민간재원을 형성하는 세부현황을 분류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정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정지선 & 이주영, 2011:5, 손혁상, 박보기, & 김남경, 2014). 하지만, 우리 기업이 행하는 글로벌 CSR 비중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는데, 그 비중은 미비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외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418개)을 분석한 결과, 84%의 프로그램이 국내에 집중돼 있고, 국내외에서 동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0%, 해외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5%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은 글로벌(해외) CSR보다 국내 CSR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전체 글로벌 CSR의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개도국 대상 사업 비중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CSR·CSV 참여 목적은 전반적으로 사회공헌,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직원의 자긍심 고취에 있다. KOICA 글로벌 CSR 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그리고 '개도국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상'에 대한 응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³⁾ 또한, KOTRA(2010)가 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들은 주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직원들의 내부단합·사기고양·자긍심 제고, 기업 및 상품의 이미지 개선과 같은 무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CSR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기업 명성과 이미지 향상'과 '종업원 사기진작과 직무만족'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⁵⁾

본 연구에서는 CSR 활동 목적을 1) 개도국 내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2)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3)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4) 기업 이미지 향상,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6)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7)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8)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로 구분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목적별 중요도 및 달성 정도를 알아본다. 우리 기업의 CSR·CSV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기업사회책임,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의 기사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며, 2000년대 이후 관련 용어 노출 빈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3) '기업 이미지 제고' 9개사(1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개도국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우호관계 향상' 7개사(3위)

4) '가난한 사회계층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58개사(1위), '직원들의 내부단합, 사기고양, 자긍심 제고를 위해' 44개사(3위), '기업 및 자사 상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35개사(4위)

5) '기업명성과 이미지 향상' 91%(1위), '종업원 사기진작과 직무만족' 79%(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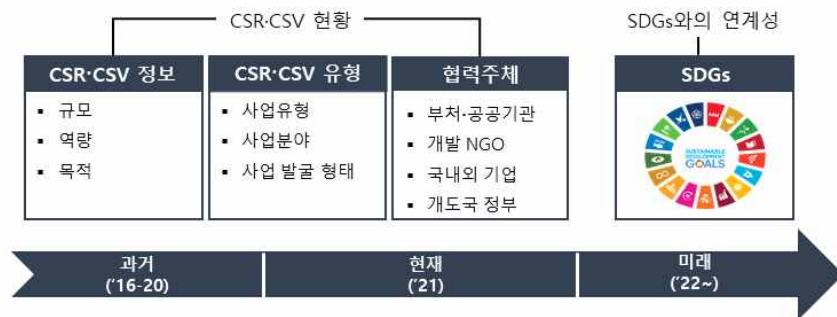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나 기업의 관심이 높고, 기업에서 CSR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전체 응답자(CSR 활동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임직원 137명)의 92%가 지난 5년간 CSR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 KOICA의 글로벌 CSR 사업에 참여하는 54명의 기업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64.8%가 기업 본연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CSR을 실시하고 있다(백숙희,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숙희(2013)는 우리 기업은 CSR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CSR을 기업 존속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여 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CSR·CSV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업의 CSR 수행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SR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중 상당수가 CSR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있고 추진 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인터뷰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이나 모니터링 제도를 갖춘 기업은 매우 적었다(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2006).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같이 CSR·CSV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CSR·CSV 규모, 목적, 인식·중요성, 역량과 같은 CSR·CSV 관련 기본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선호하는 협력 주체(부처·공공기관, 개발 NGO), 그리고 CSR·CSV 유형(사업 유형, 분야, 발굴 형태)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그림 2-5]와 같이 살펴본다.

[그림 2-5] 연구의 분석 틀

▪ 기업의 CSR·CSV 현황 및 SDGs와의 연계성



▪ 정부에 대한 평가

-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
-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 향후 정부와의 협력 방안

2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2)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

기업-정부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된 개도국 내 CSR·CSV 활동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특정 CSR·CSV 사업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규(2015)는 가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 ODA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벌 CSR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ODA 사업이 윤리적 책무성을 넘어 해당 국가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성을 진단했고, 글로벌 CSR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엄은희(2017)는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 활성화와 이를 위한 한국 공공기관의 민관협력 과제에 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SR 지원 활동을 검토했고, 그 결과 KOTRA와 KOICA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부문 개발을 중시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개발협력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수 존재한다.

기업들이 자주 언급한 도전과제로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전문성을 보유한 담당 인력 부족, 정부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기관의 불충분한 지원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기업들은 국내 NGO와의 협업을 제시한다. KOICA와 KOTRA가 지원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SR 지원 관련 평가보고서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CSR에 대한 역량 부족과 KOICA의 까다로운 자체 규정과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CSR 사업에서 국내 NGO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엄은희, 2017). 우리 기업들은 KOICA나 정부가 긴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개발 NGO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백숙희, 2013).

개도국 내의 CSR·CSV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심층적으로 진단한 연구는 없었으나, 한국의 민관협력 현황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정부의 한계점을 언급한 연구는 있었다. 구정우, 김율리 & 김대욱(2015)이 CSV 민관협력 모델에 비추어 기존 민관협력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수출입은행과 KOICA의 CSV 활동들이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창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기업들은 실제로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NGO와의 협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구정우, 김율리 & 김대욱, 2015). KOICA의 CSR의 경우,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의 핵심기술과 역량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대다수의 경우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술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명시적으로 도모하고 있지 않다(구정우, 김율리 & 김대욱, 2015). KOTRA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공유가치창출이나 지식 공유와 같은 활동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기업 포상,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하지만, 자체로 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등을 연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엄은희, 2017). 이와 같이, KOICA, 수출입은행, 그리고 KOTRA는 CSR·CSV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공기관이긴 하나, 기업과의 불충분한 협업과 협조로 인해 개도국 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업의 활성화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CSR·CSV 규모, 목적, 인식·중요성, 역량을 이해하고, 향후 기업이 선호하는 협력 주체 및 CSR·CSV 유형을 파악하고, 협력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제2절

우리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 현황



1. 정부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의 현황

가. 정부의 CSR·CSV 사업 현황

사업규모(사업액수) 측면에서 정부의 CSR·CSV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수출입은행의 민간투자사업 규모(평균 1.8천억 원)는 타 기관 사업보다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철도 등) 건설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수출입은행의 CSR·CSV 사업규모는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어 KOICA의 IBS(평균 21억 원)와 CTS(평균 3.9억 원) 사업이 뒤를 이었는데, 전자의 사업규모가 현저히 큰 것은 참여기업 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TS와 달리, IBS 사업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동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IBS와 CTS간 기업-정부 부담비율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이유 역시 참여기업 유형과 사업목적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CTS는 사업 초창기 국내기업들의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의 자금기여도가 크다. 반면, IBS는 굴지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민간 자원분담 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IBS 사업에서의 정부 자금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8〉 기관별 CSR·CSV 사업 액수

(단위: 원, %)

기관	프로그램 유형	평균 기업 부담액	평균 정부 부담액	프로그램 유형별 평균 사업액수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	821,787,199 (38.63)	1,305,676,714 (61.37)	2,127,463,913 (100.00)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873,016 (0.22)	388,246,513 (99.78)	389,119,529 (100.00)
KOTRA	글로벌 CSR 사업	- (-%)	- (-%)	- (-%)
EDCF	민간투자사업	127,734,549,000 (69.82)	55,207,806,000 (30.18)	182,942,355,000 (100.00)
전체 CSR·CSV 사업 대비 각 부문(기업/정부)별 평균 부담액		2,534,566,268 (59.44)	1,729,457,696 (40.56)	4,264,023,964 (100.00)

출처: KOICA와 KOTRA 데이터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EDCF 데이터는 기획재정부(2021, 2쪽)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을 참고함.

* '-' 는 데이터 부재를 의미함.

정부의 민간협력 사업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KOTRA는 전부 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2년(35.04%) 단위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년(29.06%), 3년(18.80%), 5년(10.26%), 그리고 4년(6.8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CSR·CSV 활동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단계별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2-9〉 기관별 CSR·CSV 사업 기간

(단위: 개, %)

기관	1년	2년	3년	4년	5년	알 수 없음	합계
KOICA	34 (29.06)	41 (35.04)	22 (18.80)	8 (6.84)	12 (10.26)	0 (0.00)	117 (32.59)
KOTRA	242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42 (67.41)
합계	276 (76.88)	41 (11.42)	22 (6.13)	8 (2.23)	12 (3.34)	0 (0.00)	359 (100.00)

출처: KOICA, KOTRA,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3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KOICA와 KOTR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EDCF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CSR·CSV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KOICA 사업 비중은 각각 71.01%, 27.54%이다. 아시아 내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업 비중(50.72%)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동아프리카에 대한 사업 비중(25.36%)이 가장 크다. 국가 수준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된 국가는 베트남(25개)이며, 그다음으로는 탄자니아(15개), 인도네시아(14개), 캄보디아(11개), 몽골(10개) 등의 순이다. KOTRA의 CSR·CSV 사업이 가장 많이 수행된 지역은 아시아(66.67%)이고, 그다음으로는 아프리카(20.43%), 중남미(10.39%), 그리고 유럽(2.51%) 순이다. KOICA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내에서는 동남아시아(42.65%),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는 동아프리카(10.39%)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KOTRA의 사업 수가 많은 상위 5개 국가는 인도네시아(34개), 캄보디아(33개), 베트남(20개), 몽골(17개), 인도(16개)이다. EDCF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4개 사업 모두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에서 각 국가에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2021년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수원국의 발전수준,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 ODA 수행환경 등을 고려하면서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최대한 중점협력국⁶⁾으로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27개의 중점협력국은 13개의 아시아국, 7개의 아프리카국, 그리고 4개의 중남미국으로 구성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표 2-10〉 KOICA의 CSR·CSV 사업 대상국

(단위: 개, %)

지역	국가	사업건수	합계	
동아프리카	르완다	2	35(25.36)	38(27.54)
	말라위	2		
	에티오피아	3		
	우간다	7		
	케냐	6		
	탄자니아	15		
서아프리카	가나	1	1(0.72)	

6) 중점협력국: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1	1(0.72)	98(71.01)
북아프리카	모로코	1	1(0.72)	
동아시아	몽골	10	10(7.25)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2	70(50.72)	
	라오스	4		
	미얀마	9		
	베트남	25		
	인도네시아	14		
	캄보디아	11		
필리핀	5			
서남아시아	요르단	2	2(1.45)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2	2(1.45)	
남아시아	네팔	6	14(10.14)	
	방글라데시	2		
	인도	6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1	1(0.72)	2(1.45)
카리브 제도	아이티	1	1(0.72)	
합계			138(100.00)	

출처: KOIC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표 2-11〉 KOTRA의 CSR·CSV 사업 대상국

(단위: 개, %)

지역	국가	사업건수	합계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4	29(10.39)
	에티오피아	8	
	잠비아	1	
	케냐	9	
	탄자니아	7	
서아프리카	가나	3	7(2.51)
	나이지리아	2	
	코트디부아르	2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1	1(0.36)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0	13(4.66)
	보츠와나	2	
	에스와티니	1	
북아프리카	모로코	1	7(2.51)
	수단	2	
	이집트	3	

3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튀니지	1		
동아시아	몽골	17	17(6.09)	
동남아시아	라오스	11	119(42.65)	186(66.67)
	말레이시아	8		
	미얀마	4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34		
	캄보디아	33		
	태국	3		
	필리핀	6		
서남아시아	레바논	1	4(1.43)	
	요르단	1		
	터키	2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5	13(4.66)	
	카자흐스탄	5		
	키르기스스탄	3		
남아시아	네팔	3	33(11.83)	
	방글라데시	2		
	부탄	2		
	스리랑카	1		
	인도	16		
	파키스탄	9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3	5(1.79)	29(10.39)
	코스타리카	1		
	파나마	1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2	22(7.89)	
	브라질	2		
	아르헨티나	1		
	에콰도르	2		
	콜롬비아	2		
	파라과이	9		
	페루	4		
	카리브 제도	쿠바		2
동유럽	벨라루스	2	5(1.79)	7(2.51)
	우크라이나	3		
남유럽	세르비아	2	2(0.72)	
합계			279(100.00)	

출처: KOTR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표 2-12〉 EDCF의 민자사업 대상국

(단위: 개, %)

지역	국가	사업건수	합계	
동남아시아	미얀마	1	3 (75)	3 (75)
	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1	1 (25)	1 (25)
합계			4(100.00)	

출처: 기획재정부(2021, 2쪽)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을 참고함.
EDCF의 민자사업 현황은 2010-2020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함.

KOICA의 CSR·CSV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21.37%)이며, 그다음으로는 공공행정(16.24%), 농촌개발(15.38%), 직업훈련(14.53%)과 교육(14.53%) 등이 있다. 사실 1위인 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의 분야별 사업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큰 차이가 없다. KOTRA의 CSR·CSV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54.55%)과 보건(32.23%)이고, 나머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공공행정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ODA와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비교우위가 있는 ICT를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현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발주처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EDCF의 중점 분야는 KOICA와 KOTRA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EDCF는 에너지, 교통, 물 분야를 지원한다. KOICA의 무상원조는 개도국의 교육, 보건 분야 등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부문을 주로 지원하는 반면, EDCF의 유상원조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부문에 주로 지원하면서 유·무상 원조가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표 2-13〉 기관별 CSR·CSV 사업 분야

(단위: 개, %)

기관	공공 행정	교육	직업 훈련	에너지	농촌 개발	보건	교통	물	기타	합계
KOICA	19 (16.24)	17 (14.53)	17 (14.53)	8 (6.84)	18 (15.38)	25 (21.37)	2 (1.71)	8 (6.84)	3 (2.56)	117 (32.23)
KOTRA	10 (4.13)	132 (54.55)	4 (1.65)	7 (2.89)	9 (3.72)	78 (32.23)	0 (0.00)	2 (0.83)	0 (0.00)	242 (66.67)
EDCF	0 (0.00)	0 (0.00)	0 (0.00)	1 (25.00)	0 (0.00)	0 (0.00)	1 (25.00)	1 (25.00)	1 (25.00)	4 (1.10)
합계	29 (7.99)	149 (41.05)	21 (5.79)	16 (4.41)	27 (7.44)	103 (28.37)	3 (0.83)	11 (3.03)	4 (1.10)	363 (100.00)

출처: KOICA와 KOTR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EDCF 데이터는 기획재정부(2021, 2쪽)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을 참고함.

EDCF의 민자사업 현황은 2010-2020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함.

KOTRA 사업의 경우, '해외기술 경영학교 운영(B형)'(56.6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A형)'(21.90%), '코리아케어(Korea Care)'(16.12%) 등의 순이다. KOTRA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B형은 현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다. A형은 우리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대상국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상국 내에서 기업 인지도를 형성할 수 있고, 현지기관, 발주처, 바이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코리아 케어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사업이다. KOTRA는 우리 기업과 함께 세계 각국에 구호 물품이나 의료용품을 기부하고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표 2-14〉 KOTRA의 CSR·CSV 사업 유형

(단위: 개, %)

기관	자사제품· 서비스 체험형 (A형)	해외 기술· 경영학교 운영 (B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C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D형)	코리아케어 (Korea Care)	합계
KOTRA	53 (21.90)	137 (56.61)	10 (4.13)	3 (1.24)	39 (16.12)	242 (100.00)

출처: KOTR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KOICA와 KOTRA의 CSR·CSV 사업 발굴 형태는 매우 대조적이다. KOICA는 거의 모든 사업을 공공제안 방식을 통해 발굴하는 반면 KOTRA는 모든 사업을 민간제안 방식을 통해 발굴한다.

공공제안형이란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 형태로, 민간주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주체가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KOICA 사업만이 택하고 있는 공공협의 방식은, 공여국 원조기관과 민간주체들이 컨퍼런스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사업을 발전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2-15〉 기관별 CSR·CSV 사업 발굴 형태

(단위: 개, %)

기관	공공제안형	공공협의형	민간제안형	합계
KOICA	109 (93.16)	8 (6.84)	0 (0.00)	117 (32.59)
KOTRA	0 (0.00)	0 (0.00)	242 (100.00)	242 (67.41)
합계	109 (30.36)	8 (2.23)	242 (67.41)	359 (100.00)

출처: KOICA와 KOTR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KOICA는 스타트업(50%)과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중소·중견기업(42.75%), 그리고 대기업(7.25%) 순으로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반면, KOTRA의 경우 중소·중견기업(84.95%)과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으로는 대기업(9.32%), 스타트업(3.58%), 그리고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2.15%) 순이다. 두 기관에 대한 통계를 전부 합하면, CSR·CSV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우리 기업 유형은 중소·중견 기업(70.9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6〉 기관별 CSR·CSV 사업 참여 기업 유형

(단위: 개, %)

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	합계
KOICA	10 (7.25)	59 (42.75)	69 (50.00)	0 (0.00)	138 (33.09)
KOTRA	26 (9.32)	237 (84.95)	10 (3.58)	6 (2.15)	279 (66.91)
합계	36 (8.63)	296 (70.98)	79 (18.94)	6 (1.44)	417 (100.00)

출처: KOICA와 KOTRA가 제공한 개도국에서의 CSR·CSV 사업(2016-2020)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나. 정부 기관의 CSR·CSV 도전과제 및 해결방안

정부 기관 CSR·CSV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CSR·CSV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 및 엄격한 규제, 기업의 글로벌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기업의 CSR·CSV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 부족,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 개발도상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이해 부족, 그리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 부족이 있다. 첫째, 정부 기관들은 회계 감사 대상이므로 협력기업들에 여러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 SDGs 등과 같은 글로벌 아젠다 달성 정도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지만,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글로벌 아젠다 또는 OECD DAC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기업들은 사실 당사 사업이 OECD 및 국제규범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정부기관 담당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아젠다와 ESG를 통합한 평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들 사이에서는 ESG 경영 열풍이 불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ESG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ESG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기관마다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 기업들도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아젠다와 ESG 간의 통합 평가체계는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부족하다. 기업은 CSR·CSV 사업을 개도국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KOICA는 ODA 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 보유자(기업)에게는 사업 공모 또는 입찰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무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특히, 개도국의 현실과 수요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또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기업 규모별 맞춤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사업종료 이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앞서 ‘기관별 CSR·CSV 사업 기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많은 CSR·CSV 사업 기간이 1년 정도인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단계별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계획단계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건축 사업의 경우, 우리 기업의 장비가 납품되면 한국 병원의 노하우도 반영할 수 있어 의료 효과성도 제고하고 지속적인 병원 운영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전히 사업 이후 우리 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정부기관 담당자)

다섯째,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은 개도국에 대한 실태 파악 부족이다. 개도국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지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해 경쟁업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우리 기업이 현지시장에 설 자리가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전에 에티오피아 보건소 대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 중국이 이미 해당 시장을 잠식한 이후라서 시장 경쟁력이 없었고, 현지 보건소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하여 더욱 어려웠습니다.”(정부기관 담당자)

또한, 개도국에 제품 기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기부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개도국의 거버넌스 및 유연성 부족, 관료주의적 공공행정 시스템 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도국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개도국 정부 시스템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방역복과 마스크와 같은 우리 기업 제품의 기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지 정부에서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황상 보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현지 국가의 공공행정, 관료체계의 역량 부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정부기관 담당자)

여섯째, 정부 기관 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제한적 정보 공유는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정부의 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기업협력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은 거의 없어요.”(정부기관 담당자)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개발협력사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정부 주도하에 기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부기관 담당자)

제3절

우리 기업의 개도국 사회적공헌 및 공유가치창출 활동 현황



1. 기업의 CSR·CSV 사업의 수요 및 역량

가. 기업의 CSR·CSV 사업 규모 및 수요

CSR·CSV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CSR·CSV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보영 외, 2018).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개도국 CSR·CSV 사업 규모가 0.02% 미만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6%에서 2020년 17.6%로, 3% 감소했다. 반면, 매출액 대비 개도국 CSR·CSV 사업 규모가 2% 이상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1.8%에서 2020년 29.4%로, 17.6% 증가했다. 게다가 우리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 중요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70.3점, 향후 개도국 CSR·CSV 사업 확대 계획 정도 평균은 69.6점으로, 리커트 척도 기준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 중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이 가장 높은 중요도(75.0점)를 부여했고 가장 높은 사업 확대 계획 정도(76.4점)를 나타냈다. [그림 2-7]에 나타나듯이,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CSR·CSV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업 유형은 벤처·스타트업이고 그다음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순이다. 지난 5년간, 매출액 대비 개도국 CSR·CSV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업 유형 역시 벤처·스타트업이다. 벤처·스타트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사업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등 현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CSR·CSV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은 대체로 자선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도국 CSR·CSV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보통 국제기구나 NGO 등의 시행 파트너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만, 벤처·스타트업의 CSR·CSV 담당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현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4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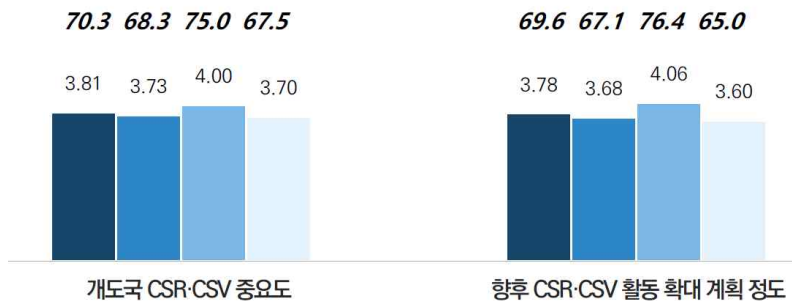
“개도국 CSR·CSV 사업에 참여했을 때 얻는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CSR·CSV 사업 수혜자들의 피드백은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개도국 CSR·CSV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싶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그림 2-6] 개도국 CSR·CSV 중요도 및 향후 활동 계획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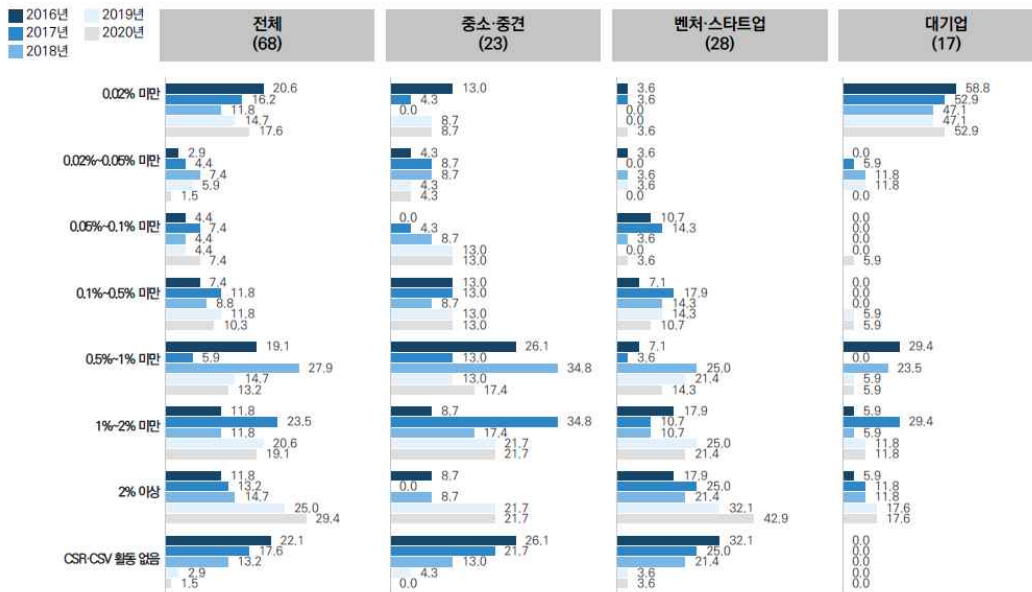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 전체(n=106) ■ 중소중견(n=41) ■ 벤처·스타트업(n=35) ■ 대기업(n=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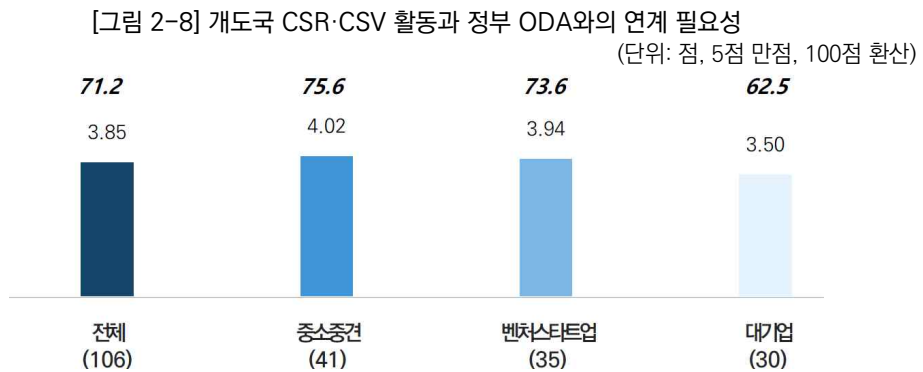


[그림 2-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규모

(단위: %)



또한, 개도국 CSR·CSV 사업과 정부 ODA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든 유형의 기업이 대체로 '필요하다(71.2점)'라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75.6점)과 벤처·스타트업(73.6점)이 대기업(62.5점)보다 ODA와의 연계 필요성이 높았다. 투입 가능한 예산이 비교적 한정적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ODA를 인내자본으로 여기고 ODA 사업을 현지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와 지역사회 대상 코칭, 멘토링, 전문성 제고 등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ODA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 기업의 CSR·CSV 사업 역량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64.2%는 최근 5년간 개도국 CSR·CSV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 중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 유형은 벤처·스타트업(80%)이다. 사업 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에 관해 모든 유형의 기업들이 '조직·인력·예산의 부족(63.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다음으로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26.3%)'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평가에 대해 모든 유형의 기업은 '인력의 전반적 역량'이나 'CSR·CSV 활동에 대한 조직의 관심'보다 '인력 규모'를 더욱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특히, 개도국 CSR·CSV 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수행 인력을 위한 인건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컸고, 이는 곧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개도국 CSR·CSV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개도국 CSR·CSV 사업은 기업 매출을 올리는 기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 인력을 둔다는 것은 인건비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작은 기업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4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개도국 CSR·CSV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리턴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ODA 사업은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은 많은데 이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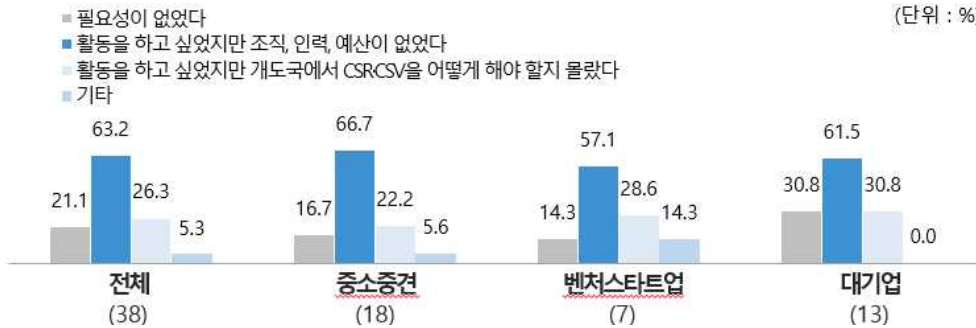
〈표 2-1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여부

(단위: %)

기관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있다	56.1	80.0	56.7	64.2
없다	43.9	20.0	43.3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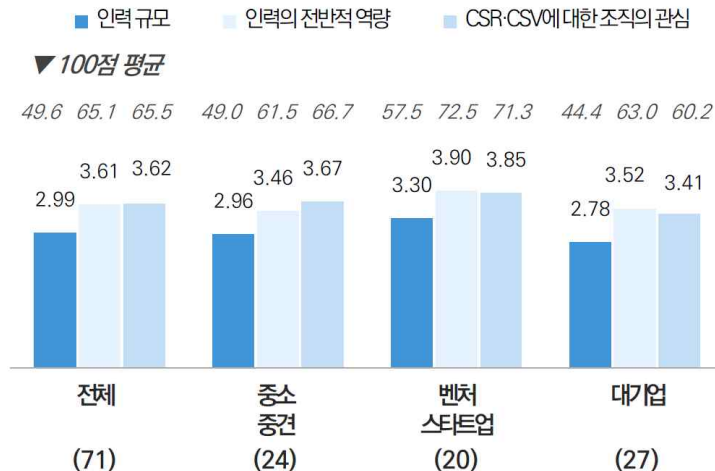
[그림 2-9] 최근 5년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그림 2-10]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평가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설문에 응답한 대기업의 90%, 그리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약 60% 정도가 CSR·CSV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개도국 CSR·CSV 전담부서의 평균 인력 규모는 대기업 23.5명, 벤처·스타트업 13.1명,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12.5명이다. 하지만 전체 인력 대비 CSR·CSV 전담부서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유형은 벤처·스타트업(14.3%)이었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은 대체로 유관 부서에서 개도국 CSR·CSV 사업을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도국 CSR·CSV 사업을 수행한다.

“본사에서 개도국 CSR·CSV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있고,
각 해외 법인에도 CSR·CSV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여
상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지 수요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대기업 담당자)

“CSR·CSV 사업만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없으며,
관련 업무는 지속가능성 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표 2-18〉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존재 여부

(단위: %)

여부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있다	58.5	57.1	90.0	67.0
없다	41.5	42.9	10.0	33.0

〈표 2-19〉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규모

(단위: 명, %)

구분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인력 규모	12.5	13.1	23.5
전체 인력 대비 비중	7.5	14.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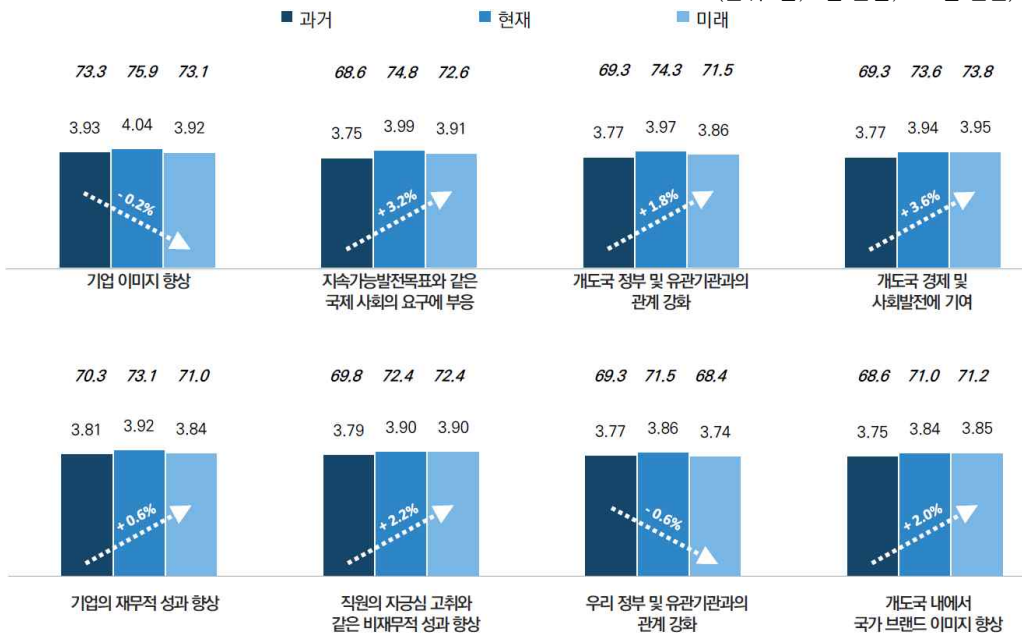
다. 기업의 CSR·CSV 사업 목적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 목적은 ‘기업 이미지 향상,’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등 [그림 2-11]과 같이 총 8개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모든 유형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목적은 현재 기준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75.9점)’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74.8점),’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74.3점)’였다. 단, 목적별 중요도는 현재 기준 최소 71.0점에서 최대 75.9점으로, 목적별 중요도 간 큰 차이는 없다.

과거 대비 미래의 CSR·CSV 목적별 중요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3.6%)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3.2%)’이었는데, 이는 ESG에 대한 평가가 기업 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과거 대비 미래의 중요도가 하락한 목적은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0.6%)와 ‘기업 이미지 향상(-0.2%)’이었다. 특히,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목적은 중요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 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속했는데, 이는 그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거나 불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11]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별 중요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동일한 목적에 대한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 목적 달성 정도는 평균 최소 54.4점에서 최대 69.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목적(‘기업 이미지 향상(69.5점),’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67.6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66.5점)’)에 대한 달성도는 다른 목적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비교적 중요한 목적에 속했던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의 달성 정도(54.4점)는 8개 목적 중 8위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는데, 모든 기업 유형에서 해당 목적에 대한 달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낮은 편인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의 목적 달성도(61.0점) 또한 7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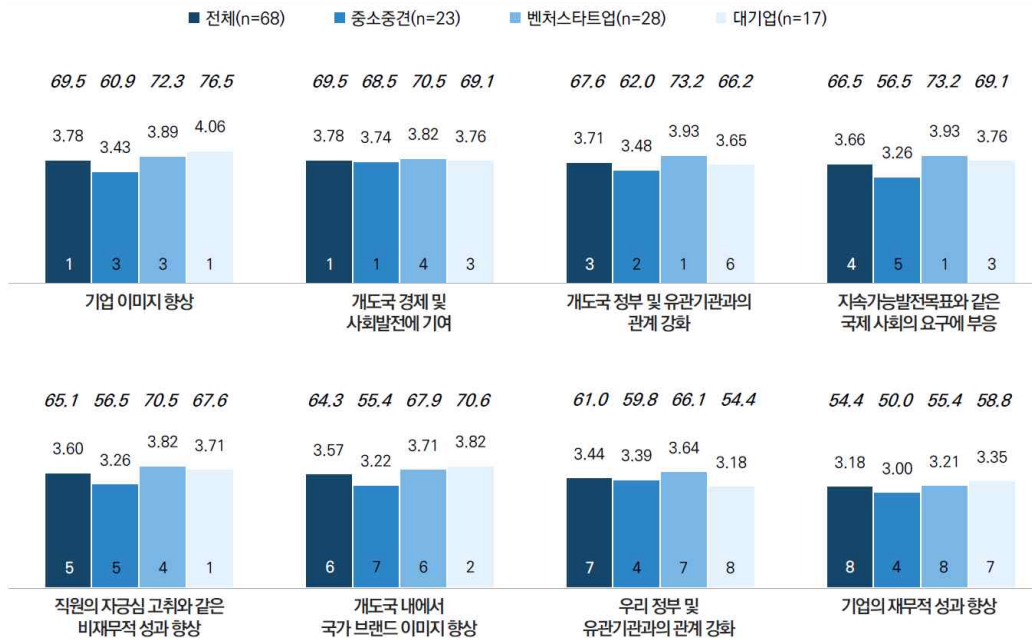
기업은 대체로 재무적 성과 향상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지만, 현재에는 당장 재무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회사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개도국 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회사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취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완전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모델을 5개 이상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담당자)

“현지에서 자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후, 수요가 생기면 현지 기관들이 국제기구 등에 직접 의견을 제안해줄 수 있는 상향식 접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그림 2-12]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별 달성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라. 기업의 CSR·CSV 사업 기대 수준

최근 5년간 수행한 개도국 CSR·CSV 사업이 기대 수준을 상회했다고 답변한 기업은 25.0%로, 기대 수준 도달 정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기대 수준에 비해 사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기업 유형은 대기업(35.3%)이고, 그다음으로 벤처·스타트업(32.1%), 중소·중견기업(8.7%) 순이었다.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도국 정보 및 자료 부족(35.7%)’이며, 그다음으로는 ‘CSR·CSV 사업 효과의 불명확성(28.6%),’ ‘사업에 대한 기업 구성원의 낮은 인식(25.0%)’ 등의 순이다. ‘개도국 정보 및 자료 부족’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기업 중, 벤처·스타트업(41.7%)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별도의 현지 지부가 없어 개도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정부 부처의 현지 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라도 실용성과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전문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개도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지에서 정보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 인허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정보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임에 따라 별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맞춤형 정보가 부족합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결국에는 현지에서 발로 뛰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컨설턴트 등 전문가를 통해 받은 정보와 현지에서 확인한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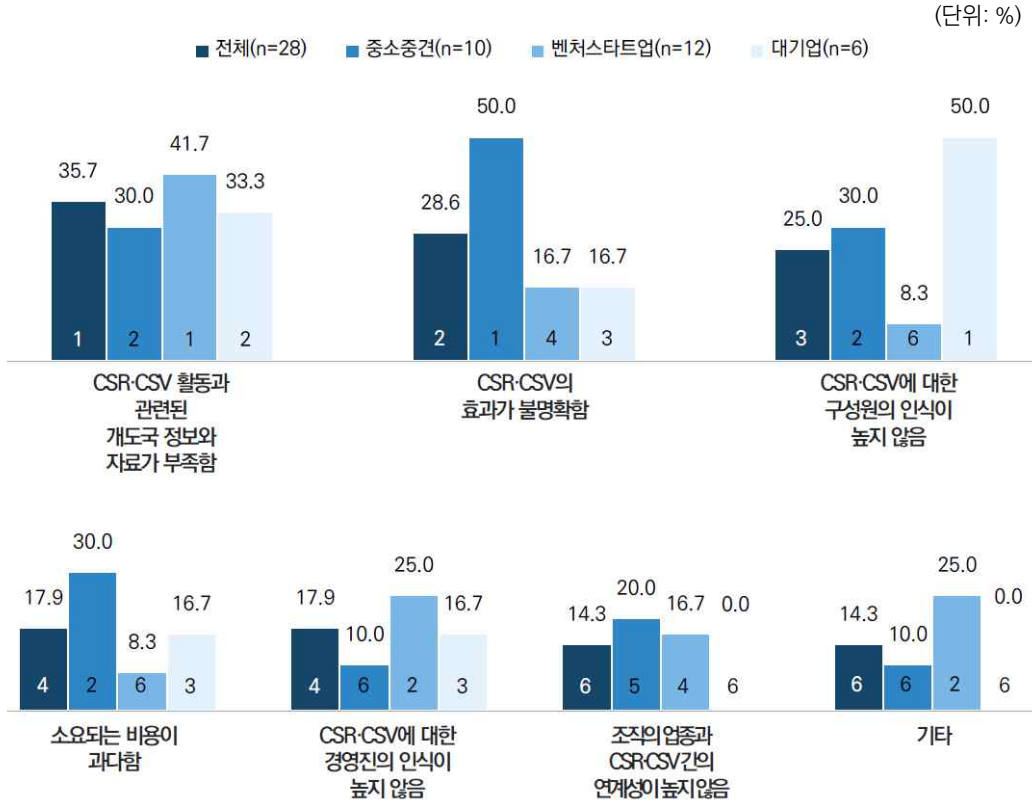
또한, ‘기업 구성원의 낮은 인식’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관해, 기업 유형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은 해당 이유를 1위로 꼽았지만, 벤처·스타트업은 해당 이유를 6위로 꼽았다. 대기업 임직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수익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도국 CSR·CSV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를 가시적인 경제적 수익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임직원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임직원들은 해외 봉사 참여, 기부금 지원 등을 통해 CSR·CSV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이 임직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R·CSV 사업의 참여가 ESG 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임직원의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기대 수준 도달 정도

(단위: %)

구분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함’ /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함’	43.5	42.9	35.3	41.2
‘기대한 수준임’	47.8	25.0	29.4	33.8
‘기대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기대보다 많이 높은 수준임’	8.7	32.1	35.3	25.0

[그림 2-13] 개도국 CSR·CSV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



2. 기업의 CSR·CSV 사업 유형

가. 기업의 CSR·CSV 사업 유형

기업의 CSR·CSV 사업 유형은 A형 ‘자사제품 및 서비스 체험,’ B형 ‘해외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C형 ‘상생가치 창출형,’ D형 ‘유휴장비 이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업 유형은 C형이고, 그다음으로는 A형, B형, D형이다. 이 유형별 활동 정도의 우선순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이 없다. C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유형의 기업이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A형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선호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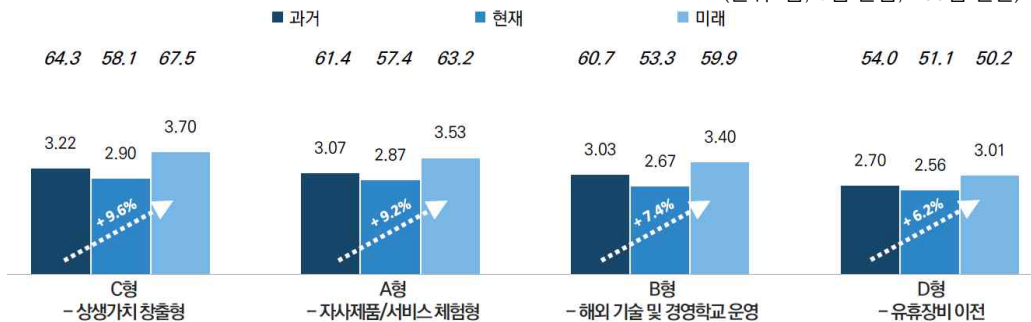
“일부 사업은 단순 기부로 끝나 버리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당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 효과의 지속성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선호합니다.”(대기업 담당자)

“자사 제품을 개도국에 제공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제품의 매력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그림 2-14]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나. 기업의 CSR·CSV 사업 분야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 분야는 ‘교육’, ‘직업훈련’, ‘에너지’ 등 [그림 2-15]와 같이 8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모든 유형의 기업이 교육(59.6점), ‘직업훈련(57.4점)’, ‘에너지(55.9점)’, ‘보건의료(55.1점)’ 분야 순으로 개도국 CSR·CSV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의 분야별 활동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기업의 전문 분야와 CSR·CSV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분야별 활동 정도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분야의 활동 정도가 과거 대비 현재에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더욱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과거 대비 현재의 활동 정도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향후 다시 개도국 CSR·CSV 사업 활동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과거 대비 미래에 사업 활동 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ESG 경영방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및 환경친화적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림 2-15]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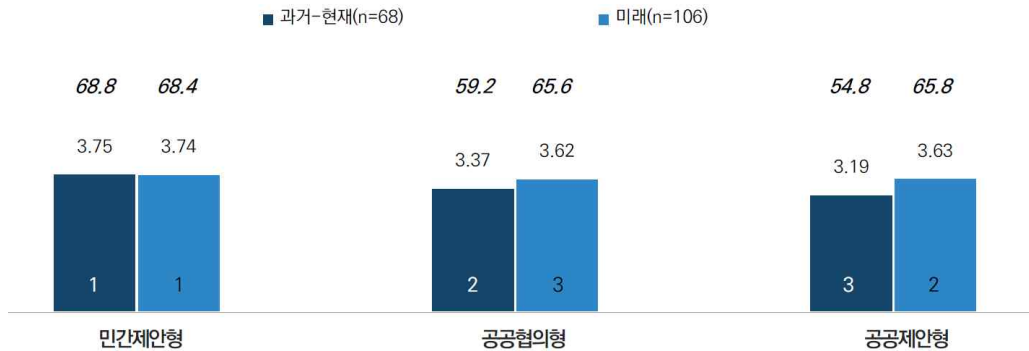


다. 기업의 CSR·CSV 사업 발굴 형태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발굴 형태는 '민간제안형,' '공공협의형,' '공공제안형'으로 구분된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유형의 기업들이 지난 5년간 '민간제안형(68.8점)' 사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공공협의형(59.2점)'과 '공공제안형(54.8점)' 순이었다. 미래에도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발굴 형태는 '민간제안형(68.4점)'이고, 다음으로는 '공공제안형(65.8점),' 그리고 '공공협의형(65.6점)' 순이다. 과거 대비 미래에 발굴 형태 간 선호도 차이가 감소하므로, 기업들은 향후 더욱 다양한 발굴 형태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은 미래에 '공공협의형'과 '공공제안형'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과거에 비해 높다.

[그림 2-16] 개도국 CSR·CSV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및 관심 정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3. 기업의 CSR·CSV 사업의 협력 주체

가. 국내 부처·공공기관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84.9%는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부문과 협력 의향이 가장 높은 기업 유형은 벤처·스타트업(91.4%)이고, 그다음은 대기업(86.7%), 중소·중견기업(78.0%) 순이다. 특히, 기업이 가장 협력하길 희망하는 세 개의 정부 부처는 외교부(8.9%), 환경부(8.9%), 보건복지부(8.9%) 이다. 이는 해당 부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기업의 주요 관심 사업 분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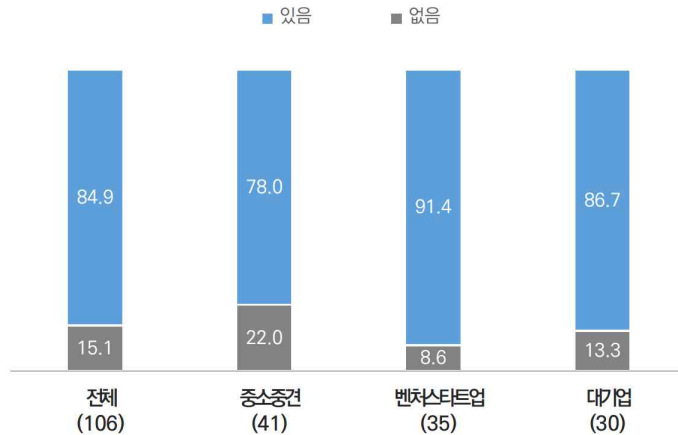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환경부(11.5%) 및 보건복지부(11.5%)와의 협력 의향이 가장 높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은 외교부(12.5%)와의 협력 의향이 가장 높다. 특히 대기업은 ESG 투자가 대세가 되다 보니 ESG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이민호, 2021). ESG 경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탄소중립은 여러 면에서 지속가능성과 ESG 아젠다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등장한 탄소중립 달성 움직임은 기업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2021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 금융기관들이 철강, 석유화학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탄소 업종에 무려 411조 원의 대출 투자를 하고 있어 위험 대비가 시급하다는 이례적인 지적을 담기도 했다(이민호, 2021). 한편, 우리나라 보건 분야 ODA 확대 계획은 보건 분야에 대한 기업의 관심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의향 증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왔으며, ‘글로벌 보건위협 대응 강화’가 제3차

5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첫 번째 전략인 ‘포용적 ODA’의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건 ODA 규모 확대,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a).

[그림 2-17]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 협력 의향

(단위: %)



<표 2-21>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협력 희망 부처(상위 3개 부처)

(단위: %)

부처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외교부	12.5	12.5	0.0	8.9
환경부	9.4	6.3	11.5	8.9
보건복지부	6.3	9.4	11.5	8.9

공공부문과의 협력 의향이 없는 이유에 관해, 모든 유형의 기업은 ‘성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25.0%)’라는 이유를 1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독립적으로 하겠다(12.5%)’와 ‘예산이 부족하다(12.5%)’ 등의 이유가 있다. 이를 기업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대기업은 ‘독립적으로 하겠다(50.0%)’라는 이유를 1위로 꼽았는데, 이는 공공부문과의 협력 시 회계 감사 및 증빙자료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적 체계나 수직적 태도로 인하여 협력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부분도 해당 이유를 1위로 꼽은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벤처·스타트업은 ‘예산이 부족하다(33.3%)’라는 이유를 1위로 꼽았는데, 사업 유형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정부 협력 사업은 기업의 자기부담금

투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이 설문결과는 정부 지원 예산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모든 유형의 기업은 대체로 정부 협력 및 자원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표 2-22〉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 협력 의향이 없는 이유(상위 3개)

(단위: %)

이유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성과가 확실하지 않아서	33.0	0.0	25.0	25.0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0.0	0.0	50.0	12.5
예산이 부족해서	11.1	33.3	0.0	12.5

〈표 2-23〉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협력 및 정부 자원 필요성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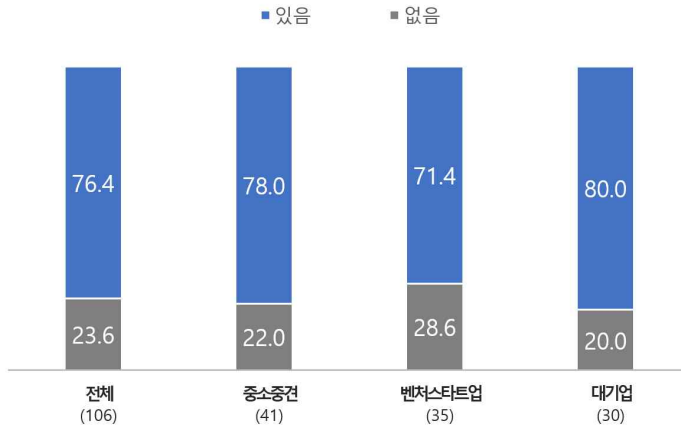
구분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	4.05 (76.2)	4.09 (77.1)	3.80 (70.0)	3.99 (74.8)
정부 자원의 필요성	4.32 (82.9)	4.40 (85.0)	3.93 (73.3)	4.24 (80.9)

나. 개발 NGO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6.4%는 향후 개도국 CSR·CSV 사업 시 NGO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중에서도 NGO와의 협력 의향이 가장 높은 기업 유형은 대기업(80.0%)이고, 그다음으로는 중소·중견기업(78.0%), 벤처·스타트업(71.4%) 순이다. NGO와 협력하고 싶은 이유에 관해서는 'NGO와 뜻을 모아 활동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14.2%)'라는 이유가 1위이고, 그다음으로 '현지에 정통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8.5%)'라는 이유도 있다. 또한, '상생 협력을 할 수 있어서(6.6%)'라는 점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5.7%)'라는 점도 비교적 중요한 이유에 속한다. 현지 상황에 정통한 NGO는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 정보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림 2-18]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NGO 협력 의향

(단위: %)



<표 2-24>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NGO 협력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이유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NGO와 활동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2	17.1	13.3	14.2
현지에 정통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9.8	8.6	6.7	8.5
상생 협력을 할 수 있어서	4.9	2.9	13.3	6.6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	0.0	5.7	13.3	5.7

다. 국내외 기업 및 개발도상국 정부

모든 유형의 기업은 개도국 CSR·CSV 사업 수행 시 국내외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개도국 내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개도국 내 정보 공유 및 관계 형성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은 아직 기업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은 현지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아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편이고,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 개도국 내 국제기구나 NGO와 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업계의

기업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어,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협력을 기대한다.

모든 유형의 기업은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에도 고충이 많다. 특히, 우리 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도국 정부와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개도국 정부 측에서 기업의 CSR·CSV 사업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문건을 요청하는 때도 많다. 또한,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면서 우리 기업과 개도국 정부가 발전시켜온 CSR·CSV 사업에 대한 논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동일 업계라면 오히려 경쟁자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의 소통은 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을 두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대기업 담당자)

“주로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수행하며 협력한 기업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개도국에서 활동 중인 NGO나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는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및 개도국에서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킹은 없습니다. 물론, 유사 분야의 기업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코로나-19 발발 이후, 개도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코로나-19 통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고 더 이상 현지 출장도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협의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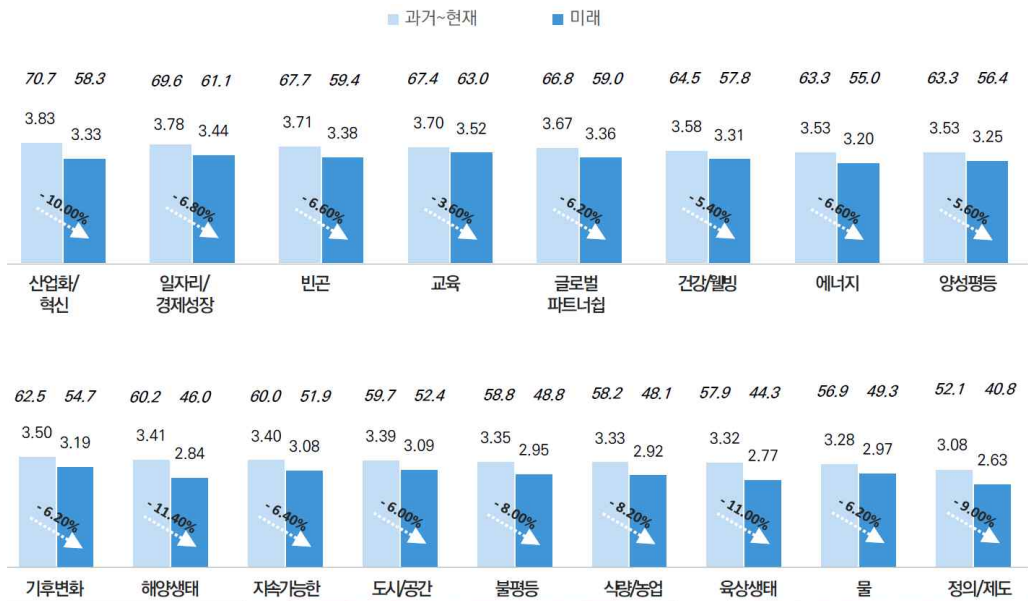
4. 기업의 CSR·CSV 사업과 SDGs와의 연계성

가. CSR·CSV 사업과 SDGs와의 연계 정도

[그림 2-19]에서 알 수 있듯,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시행된 우리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은 ‘산업화/혁신(70.7점),’ ‘일자리/경제성장(69.6점),’ ‘빈곤(67.7점),’ ‘교육(67.4점),’ ‘글로벌 파트너십(66.8점)’과 같은 SDGs 목표와 가장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일자리/경제성장’을 개도국 CSR·CSV 사업의 주요 목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도국 내 고용 창출을 통해 사업종료 후에도 수혜자가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계 정도 순위가 중간 정도(8위)를 기록했던 '양성평등' 목표에 관해서도 기업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현지 고용 창출 시 여성 근로자의 우선 채용을 고려하거나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개도국 여성의 취약성을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과 모든 SDGs 목표의 연계 정도가 과거-현재 대비 미래에 감소한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개도국 CSR·CSV 사업을 주로 SDGs와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했다면, 최근에는 ESG 경영이 주목됨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도 CSR·CSV 사업을 ESG 평가 체계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SDGs와의 연계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연계 정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SDGs 목표는 '해양생태(-11.40%)'와 '육상생태(-11.00%)'이다.

[그림 2-19] SDGs와 CSR·CSV 활동과의 연계 정도(전체)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5. CSR·CSV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기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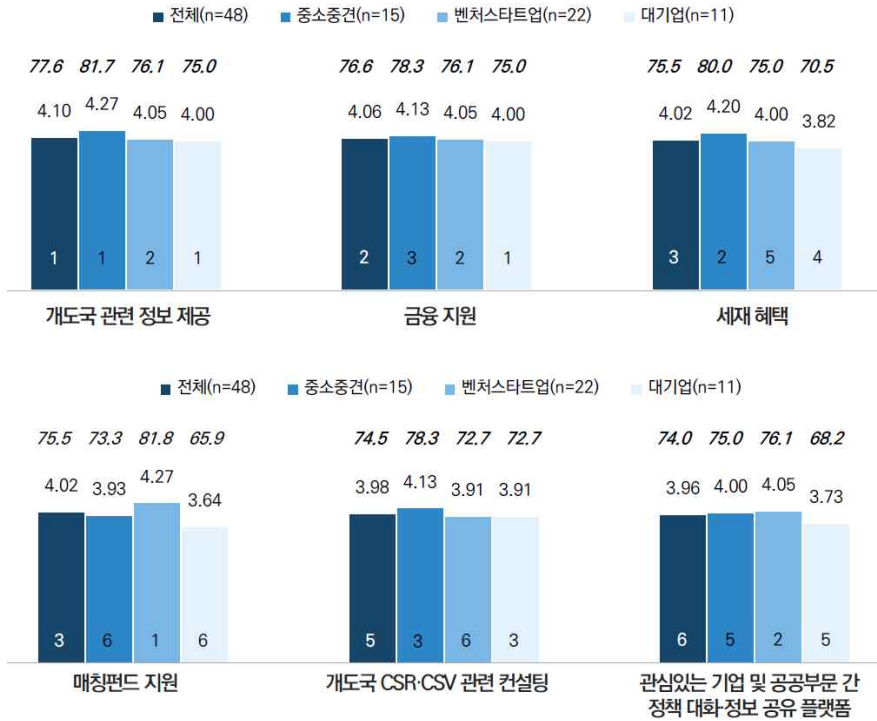
가. 정부의 역할 및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45.3%는 CSR·CSV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다. [그림 2-20]과 같이,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역할은 6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 기업이 가장 기대하는 정부 역할은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77.6점)'이다. 그다음으로 '금융지원(76.6점),' '세제 혜택(75.5점),' '매칭펀드 지원(75.5점)'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도는 최소 74.0점부터 최대 77.6점까지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역할에 대해 정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정부를 통해 개도국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해당 개도국 내 정부 ODA 사업 정보라든지 CSR·CSV 사업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지 규제 등, 현지 정책에 관련된 자료와 같이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정부에서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기업 유형별로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도를 살펴보면, '매칭펀드 지원' 부문에서 기업 유형 간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벤처·스타트업(81.8점)이 해당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중소·중견기업(73.3점)과 대기업(65.9점)이 그 뒤를 이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제공에 대한 필요도 역시 벤처·스타트업은 2위로 꼽았다. 벤처·스타트업은 개도국 CSR·CSV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바, 정부가 기업 간 소통 및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기업들이 조금 더 큰 규모의 개도국 CSR·CSV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그림 2-20] 개도국 CSR·CSV 활동 시 필요한 정부 역할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 모든 유형의 기업은 ‘자금 지원(16.7%),’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16.7%),’ ‘현지 네트워크 지원(12.5%)’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를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스타트업은 ‘자금 지원(22.7%)’ 및 ‘현지 네트워크 지원(22.7%)’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기업은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27.3%)’ 부분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업 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행정 처리의 간소화(10.4%),’ ‘자금 지원의 확대(10.4%),’ ‘개도국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10.4%)’ 등이 있다. 정부 협력 사업을 경험한 기업 일부는 모든 지출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개도국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표 2-25〉 협업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도움이 된 점(상위 3개)

(단위: %)

도움이 된 점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자금 지원	13.3	22.7	9.1	16.7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6.7	18.2	27.3	16.7
현지 네트워크 지원	0.0	22.7	9.1	12.5

〈표 2-26〉 협업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점(상위 3개)

(단위: %)

개선이 필요한 점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행정 처리 간소화	6.7	18.2	0.0	10.4
자금 지원의 확대	6.7	9.1	18.2	10.4
개도국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20.0	9.1	0.0	10.4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67.9%는 개도국 CSR·CSV 사업과 정부 ODA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기업 유형별 느끼는 연계 필요도는 〈표 2-27〉과 같은데, 중소·중견기업(75.6점)과 벤처·스타트업(73.6점)이 대기업(62.5점)에 비해 높은 연계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 CSR·CSV 사업 과정에서 정부 ODA와의 연계가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모든 유형의 기업이 ‘사업수행(73.1점)’ 단계라고 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사업발굴(70.0점),’ ‘사전조사(69.8점),’ ‘사업종료 평가(67.0점)’ 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7〉 개도국 CSR·CSV 및 정부 ODA 연계 필요 정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필요 정도	4.02 (75.6)	3.94 (73.6)	3.50 (62.5)	3.85 (71.2)

〈표 2-28〉 개도국 CSR·CSV와 정부 ODA 연계 시 단계별 중요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단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합계
협동 사업발굴	3.90 (72.6)	3.91 (72.6)	3.53 (63.3)	3.80 (70.0)
협동 사전조사	3.98 (74.4)	3.86 (71.4)	3.47 (61.7)	3.79 (69.8)
협동 사업수행	4.12 (78.0)	4.00 (75.0)	3.57 (64.2)	3.92 (73.1)
협동 사업종료 평가	3.85 (71.3)	3.63 (65.7)	3.50 (62.5)	3.68 (67.0)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기업이 언급한 정부 역할에는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형성,’ ‘자금 지원 및 예산 활용,’ ‘경영진 설득,’ ‘개도국에서 정부 수준의 입장과 의견 요구에 대응,’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이 있다. 일부 기업은 현지 주재 대사관과 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지원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또한, ODA 연계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및 예산 활용’에 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개도국 CSR·CSV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현지 직원들과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은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개도국 CSR·CSV 사업이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내부 경영진 설득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이고 개도국 내에서도 정부 협력 사업이라는 점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정부 관계자가 참여기업 또는 기업의 CSR·CSV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문서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 협력 없이 개도국 CSR·CSV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시, 개도국 정부와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대사관과 현지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대기업 담당자)

“정부 협력 사업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면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본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개발이나 코칭,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중견기업 담당자)

“개도국 CSR·CSV 사업 관련으로 내부 경영진을 설득할 때도, 정부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대기업 담당자)

“처음 개도국 CSR·CSV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시작하면 아무래도 현지에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현지에서 정부 공식 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대기업 담당자)

나. 정부에 대한 만족도

[그림 2-21]에서 볼 수 있듯 정부 역할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소 54.2점부터 최대 63.0점까지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기대 수준이 높았던 역할들(‘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60.9점),’ ‘금융지원(58.9점),’ ‘매칭펀드 지원(63.0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위권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기대 수준이 최하위였던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 및 정보 공유 플랫폼’ 역할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반면, ‘세제 혜택’의 경우 기대 수준이 높았던 데 비해 만족도는 최하위(54.2점)를 기록하여 기대 수준과 만족도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인터뷰를 통해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시 정부 협력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개도국 정보 제공, 예산 지원, 기업과 개도국/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수행, 행정절차 및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 개도국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료 취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가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 적용하기에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ODA 예산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파편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큰 규모의 임팩트있는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업 위주로 여러 건 수행되어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ODA를 통한 우리나라의

6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국익(국가 위상 제고 등의 외교적 이익 및 기업 수출 증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단발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밖에도 현재 중소·중견기업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중간 규모(KOICA의 CTS 사업 이상 EDCF의 인프라 사업 이하)의 정부 협력 사업이 부족하며, 무상-유상원조 연계 사업 유형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조달연구원이나 KOTRA 사이트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현지 실정과 다른 경우가 많고 기업이 필요한 세부적인 맞춤형 정보를 얻기는 힘듭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다양한 부처가 파편적으로 ODA를 수행하고 있어 큰 임팩트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리, 터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기업들이 협력하여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기업 담당자)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오지만, 보통 대규모의 사업이라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기업 담당자)

기업은 정부로부터 개도국 정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지원을 기대하나, 인터뷰 결과, 이에 대한 정부 역할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창구가 부족하고 둘째로, 우리 정부와 개도국 정부 간 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도국 내 CSR·CSV 활동 시 기업은 현지 사무소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사업 분야가 사무소의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사무소의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도국 규제(예: 제품 인허가) 완화 등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협조를 받지 못해 진출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각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우선 사업 방향이 아니라면 사무소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벤처·스타트업 담당자)

앞서 언급한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기업들은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정부와의 협력을 다소 보수적이고 경직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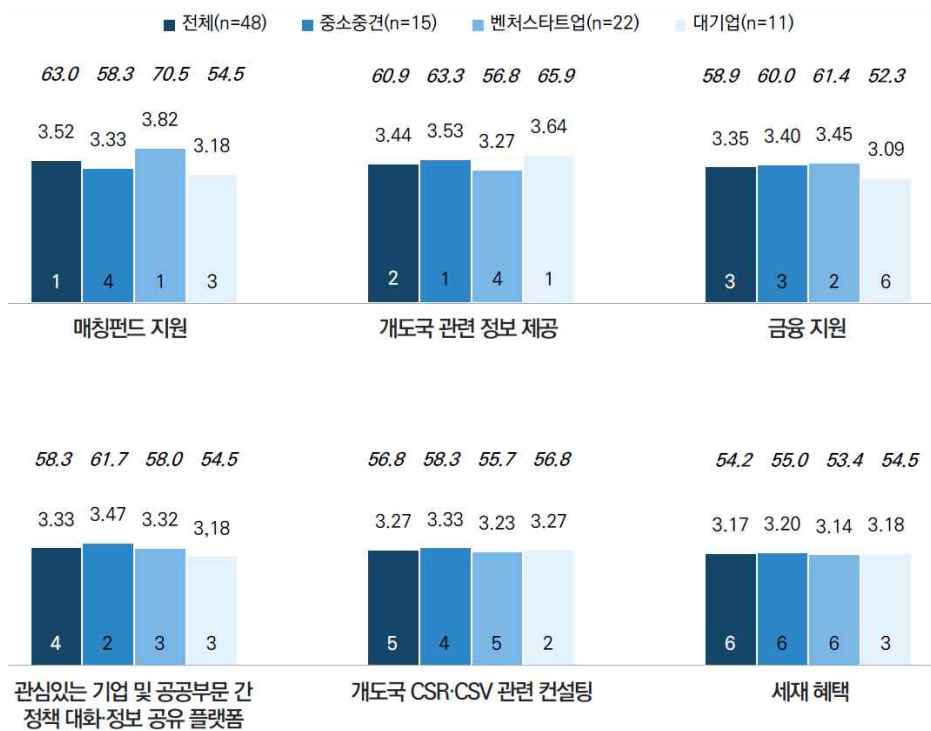
“회계 감사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다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대기업 담당자)

“정부 사업은 보수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 때 느끼는 압박을 기업도 함께 느낍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관리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대기업 담당자)

[그림 2-21]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100점 환산)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해외 CSR 사업은 전체 CSR 사업의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개도국 대상 CSR·CSV 사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정부 간 협력을 통한 개도국 CSR·CSV 사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약 63% 이상이 개도국에서 CSR·CSV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으며 해당 사업수행 시, 약 85% 이상의 기업이 공공부문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관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체별 참여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부 기관과 기업의 사업 참여 목적 및 역할 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CSR·CSV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로서는 민관협력 형태로 추진되는 개도국 CSR·CSV 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CSR은 별도 부서나 기업 Public Relations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CSV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CSR 사업을 대체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CSV 사업은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CSR·CSV 사업 관련 총체적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전반적인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에서 CSR·CSV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KOTRA, KOICA, 그리고 EDCF의 대표 CSR·CSV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관별 대표사업으로는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 KOICA의 IBS 및 CTS 사업, 그리고 EDCF의 민자사업이 있으며 조사 결과, 기관별 전체 예산 대비 CSR·CSV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2020년 기준, KOICA의 IBS 및 CTS 사업비(약 25억 원)는 전체 예산(약 8,453억 원)의 약 0.3%에 불과하다. 대상 지역을 살펴본 결과, 정부 기관들은 대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에서 각 국가에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OICA와 KOTRA는 보건, 교육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을, 그리고 EDCF는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을 주로 지원한다.

정부 기관의 CSR·CSV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해당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 정부 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엄격한 규제, ② 기업의 글로벌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③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역량 부족, ④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 구조, ⑤ 개발도상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이해 부족, 그리고 ⑥ 정부 기관 간의 협력 부족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기관 측은 ①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및 규제 완화, ② 글로벌 아젠다와 ESG를 통합한 평가체계 개발, ③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대, 기업 규모별 맞춤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 마련, ④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단계별 사업 발전 계획 수립, 사업 기간 연장, ⑤ 개도국 실태 파악을 위한 철저한 현지조사 시행, ⑥ 정부 주도의 통합적 사업 정보 관리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의 매출액에서 개도국 CSR·CSV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해당 사업 비중이 가장 큰 기업 유형은 벤처·스타트업이고, 그다음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순이다. 지난 5년간 매출액 대비 개도국 CSR·CSV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업 유형 역시 벤처·스타트업이다. 기업의 역량 관련, 기업은 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이유에 관해 '조직·인력·예산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CSR·CSV 전담부서 평가에 대해 모든 유형의 기업은 '인력의 전반적 역량'이나 'CSR·CSV 활동에 대한 조직의 관심'보다 '인력 규모'를 더욱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수행 목적 세 가지는 현재 기준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그리고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이다. 앞서 언급한 상위 세 가지 목적에 대한 달성 정도는 다른 목적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달성 정도가 비교적 낮은 목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그리고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인데, 특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에 대한 순위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41.2%는 사업성결과 기업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는 '개도국 정보와 자료 부족,' '불명확한 사업의 효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낮은 인식'이다.

기업의 CSR·CSV 사업 분야 관련, 기업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CSR·CSV 사업 분야는 교육이며,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에너지, 보건의료 등이 있다. 과거 대비 미래에 사업 활동 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와 공공행정인데, ESG 경영방침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비교우위 분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ICT와 접목하여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CSR·CSV 사업 발굴 형태 관련,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민간제안형' 사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공공협의형'과 '공공제안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선호하는 미래의 사업 발굴 형태에 대한 우선순위는 '민간제안형,' '공공제안형'과 '공공협의형' 순이었다.

정부와의 협력 관련,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84.9%는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이 가장 협력하길 희망하는 세 개의 정부 부처는 외교부(8.9%), 환경부(8.9%), 보건복지부(8.9%)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당 부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기업의 주요 관심 사업 분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공공부문과의 협력 의향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 모든 유형의 기업은 '성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1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독립적으로 하겠다'와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가 있다. NGO와의 협력 관련, 기업은 현지 상황에 정통한 NGO가 현지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여기고, NGO를 시행기관으로 돕으로써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업무의 부담을 덜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관련, 모든 유형의 기업은 향후 개도국 CSR·CSV 사업수행 시 국내외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교류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기업들은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우리 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도국 정부와 소통하기는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CSR·CSV 사업과 SDGs와의 연계 정도 관련, 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일자리/경제성장'을 개도국 CSR·CSV 사업의 주요 목표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 내 고용 창출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ESG 경영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SDGs에서 ESG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의 협력에 있어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크게 '정보,' '예산,'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부족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기업에 전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실정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예산'의 경우, 기업은 정부의 파편적·단발적인 예산 지원과 적은 예산 규모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은 정부가 다양한 사업 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규모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통합적 지원사업에 관한 제안이 많았는데,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제공을 통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엄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단위의 사업 외에도 지역 단위의 통합적 사업 유형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량'과 관련하여, 기업은 우리 정부가 기업, 개도국 정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수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의 고압적·수직적·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개도국 정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과 정부 간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된 목표하에 협력과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아젠다를 미리 설정하고 관련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9〉 정부와의 협력 관련 도전과제 및 해결방안

구분	도전과제	해결방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 부족/ 자료 취합에 장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 개도국 CSR·CSV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통합적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제공 ■ NGO와의 협력 강화로 현지에 대한 이해 증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편적·단발적 예산 지원 ■ 예산 규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다양한 사업 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예: 유무상, 부처 간 사업 연계 등) ■ 대규모 국제기구 사업 참여 및 글로벌 자금과 혼합 금융 지원 ■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발굴(예: 인프라 및 기자재 사업 통합) ■ 국가 단위 이상 지역 단위의 통합적 사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수준이 참여할 사업 발굴 (예: KOICA CTS 사업 이상 수출입은행 인프라 사업 이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진출 관련) 현지 규제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 ■ 현지 유관 부처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부 지원 부족 ■ 정부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 및 성과에 대한 압박 ■ 기업의 의견 수렴 창구 및 토론의 장 부족 ■ 관료적·수직적 태도/ 해외 사무소의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및 개도국 정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구축 ■ 행정절차 간소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기업과 정부 간 정책 대화의 장 마련, 정기 회의를 통해 아젠다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 ■ 정부와 기업 각각의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참여 공간 마련 ■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도록 아젠다 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



민간부문참여(PSE) 해외사례 분석



제1절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참여(PSE)의 의미와 전략



1. 민간부문참여(PSE)의 의미

가. 민간부문참여(PSE) 개념 및 범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약 76년간 이어져 오는 국제개발협력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에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에서는 ODA를 통한 민간부문 육성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요소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과거 대비 민간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다루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점차 더해가고 있다. 특히, 개발재원 마련, 협력분야 전문성 제고, 위험요소(Risk) 감축, 수원국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 등의 관점에서 PSE는 매우 효과적·효율적인 전략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OECD(2016e, p. 1)는 PSE를 ‘개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활발히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방식(Modalities)’으로 정의한다. 즉, PSE는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핵심주체가 공여국의 민간부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PSE는 PSD를 구성하는 다양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또한, PSE는 ‘민간부문을 활발히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부문협업(Private Sector Collaboration, PSC)에서부터 민간부문파트너십(Private Sector Partnerships, PSP)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때, 민간부문이란 <표 3-1>과 같이 ‘이윤추구활동에 참여하며, 다수의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로 이루어진 기관’을 의미한다.

7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개입사업자 등이 해당하며,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상 민간부문이란 용어를 ‘기업’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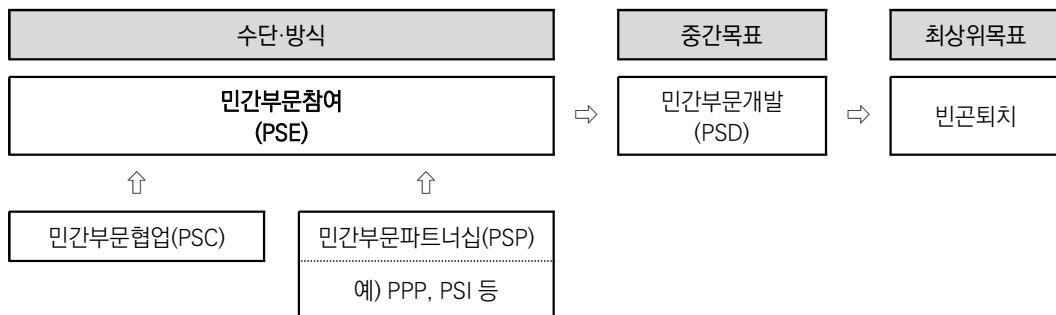
〈표 3-1〉 민간부문 관련 용어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민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로 이루어진 기관 ■ 이윤추구활동 참여 필요 ■ 예) 금융기관,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민간부문개발(P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민간부문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Environment)의 개선 및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 및 연구기관, 협회,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 빈곤퇴치라는 개발협력 최상위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목표로 간주
민간부문참여(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활발히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방식(Modalities) ■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핵심주체가 공여국의 민간부문이라는 특징 보유 ■ PSD를 구성하는 전략 중 하나이자, PSC와 PSP를 포함하는 개념
민간부문협업(P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계약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민간부문참여(PSE) ■ 형식상의 절차(Formality) 및 의무감(Obligation) 등이 낮아 공여국 민간부문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발협력활동 가능 ■ 예) 정보교환, 자문활동 등
민간부문파트너십(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민간부문참여(PSE) ■ PPP 및 PSI를 포함하는 개념 ■ 예) 양해각서(MoU), 정식계약서, 위임 등
공공민간파트너십(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자산(Asset) 및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약 ■ 예) 병원, 학교, 도로, 터널, 철도 등
민간금융수단(P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 보증,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수원국 민간부문에 제공되는 자금 ■ 수원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재원으로 한정(수원국 공공분야는 미포함)

출처: OECD(2016e, pp. 1-2), 정지선·이주영(2011, pp. 26-30), 조한솔(2016, p. 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개발협력분야에서는 민간부문참여(PSE) 외에도 민간부문개발(PSD), 민간부문협업(PSC), 민간부문파트너십(PSP),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민간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 PSI)과 같이 민간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활동을 가리키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SE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그림 3-1]과 같이 정리함으로써 PSE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림 3-1] 민간부문 개발협력활동 관련 용어 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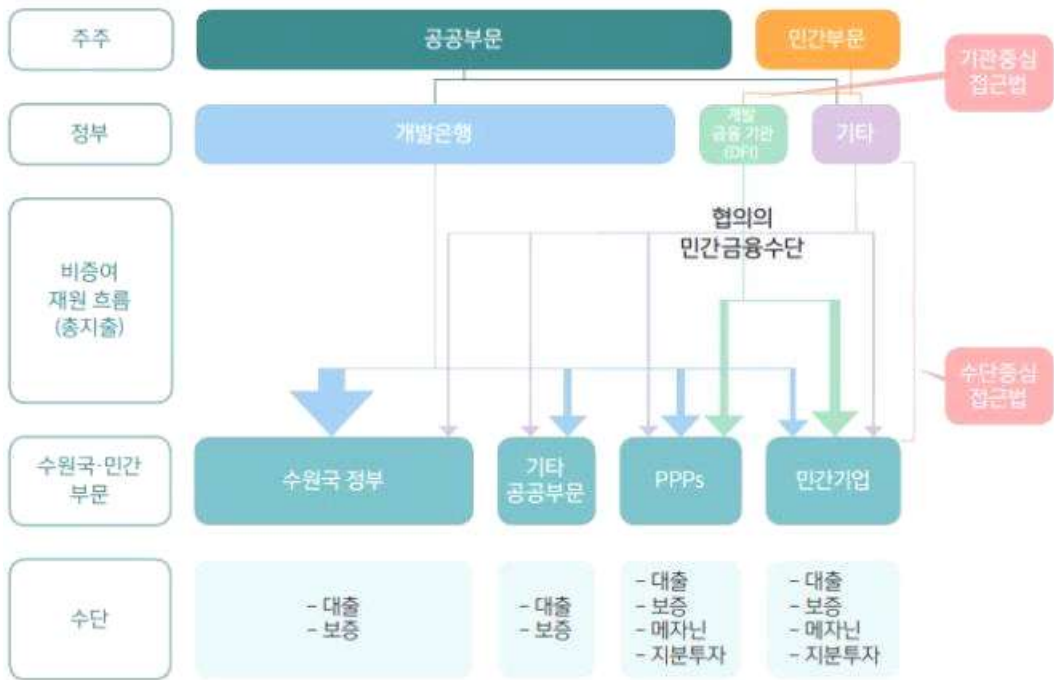
먼저, 민간부문개발(PSD)이란 ‘수원국 민간부문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Environment)의 개선 및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 및 연구기관, 협회,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PSE는 PSD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가 주목하는 PSE에서는 개발협력의 핵심주체로 민간부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PSD에서는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핵심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수원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여국 정부의 개발협력 지원활동은 PSD에는 속할 수 있으나, PSE에는 포함될 수 없다. 둘째, PSE가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식인 데 반해, PSD는 빈곤퇴치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최상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다양한 중간목표 중 하나다.⁷⁾

다음으로, 민간부문협업(PSC)과 민간부문파트너십(PSP)은 민간부문참여(PSE)에 속하는 하위집합으로,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공식계약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PSE는 PSC에 해당하는데, 형식상의 절차나 의무감 등이 낮아 공여국 민간부문의 개발협력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PSP는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PSE를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7) 정지선·이주영(2011, p. 27)

MoU) 체결 또는 정식계약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민간파트너십(PPP) 및 민간금융수단(PSI)은 PSE를 구성하는 항목 중 PSP에 포함된다. 여기서 PPP는 병원, 학교, 도로, 터널, 철도 등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자산(Asset) 및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며, PSI는 수원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차관, 보증,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지분투자 등을 가리킨다.⁸⁾

[그림 3-2] 개발협력 내 민간금융수단(PSI)



주: 기타에는 수출입은행, 투자펀드, 개발은행, 원조기관, 공여국 재무부 등이 포함
출처: 양동철(2015, p. 4에서 재인용)

나. 민간부문참여(PSE) 중요성 및 의미

개발협력분야에서 PSE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표 3-2>와 같이 인도주의(Idealism) → 현실주의(Realism) → 중상주의(Mercantilism)

8) 조한술(2016, p. 16) 및 양동철(2015, p. 4)에 의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수원국의 공공부문도 PSI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호혜주의(Mutual Benefit)로 흘러가는 국제사회의 원조체제 논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여국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던 기존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수원국의 입장과 수요(Needs) 등도 함께 고려하는 호혜주의적 원조체제로의 전환은 PSE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과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비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경로가 확대되었다. 또한, MDGs 및 SDGs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개발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참여가 크게 요구되었다.

〈표 3-2〉 원조체제 논의의 변화

구분	인도주의	현실주의	중상주의	호혜주의
원조 동기	공여국 의무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
원조 목적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 구현	공여국의 경제발전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과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
원조 방식	다자원조 구속성원조	양자원조 다자원조	양자원조 구속성원조	다자원조 비구속성원조 민관협력

출처: 이효정(2019, p. 17)

구체적으로, PSE는 △개발재원 확보, △개발협력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수원국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 유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PSE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정지원 외(2018, p. 22)가 지적하듯, 현재 SDGs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대비 개발도상국으로 실제 유입되고 있는 개발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ODA와 같은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덧붙여, 2010년대 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겪은 재정위기나,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 등에서 보듯 개발재원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정적인 지원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이에 〈표 3-3〉에서 보듯 민간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PSE는 이를 근본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간주된다.

7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표 3-3〉 PSE 관련 주요 국제회의 내용 요약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제1차 개발재원회의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을 위한 개발도상국 국내 자원 동원 ■ FDI, 기타 민간자금 등 개발을 위한 국제재원 동원 ■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 무역환경 개선 ■ 개발을 위한 국제 자원 확대와 기술협력 증진 ■ 채무 이행이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 부채 탕감 지원 등
제2차 개발재원회의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유치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 기술전수 등을 통한 FDI 개발효과 극대화 ■ 규범적·개방적·형평적·비차별적 다자무역 체제 구축 ■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적 부채경감 메커니즘 강화 ■ 국제금융체제의 투명성 강화 및 개발도상국 입장 반영 등
G20 정상회의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개발도상국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ODA의 보완적 역할 논의 ■ 지식 이전 및 정책 도입 등 간접적인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ODA 역할 등
제4차 세계개발 원조총회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민간부문 지목 ■ 민간(특히 기업)이 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 등
제3차 개발재원회의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활동의 주요 파트너로 민간부문 인정 ■ 민간부문이 특히 기여 가능한 인프라, 에너지 등의 경제 분야를 규정 ■ 개발의 원동력으로서 국제무역 강조 등

출처: 김상훈·임소영(2020, p. 10에서 재인용), 정지원·정지선(2008, p. 3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둘째, 공공부문은 PSE를 활용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부족한 기능을 민간부문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간부문은 각자 분야에 대한 혁신적 기술, 위험관리체계, 경영 및 운영 노하우 등과 같은 전문적 기능을 공공부문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민간부문에서는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협력 활동의 유연성과 속도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부문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부문이 수원국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할 수 있다. 즉, 〈표 3-4〉와 같이 PSE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은 서로의 비교우위를 조화시킴으로써 개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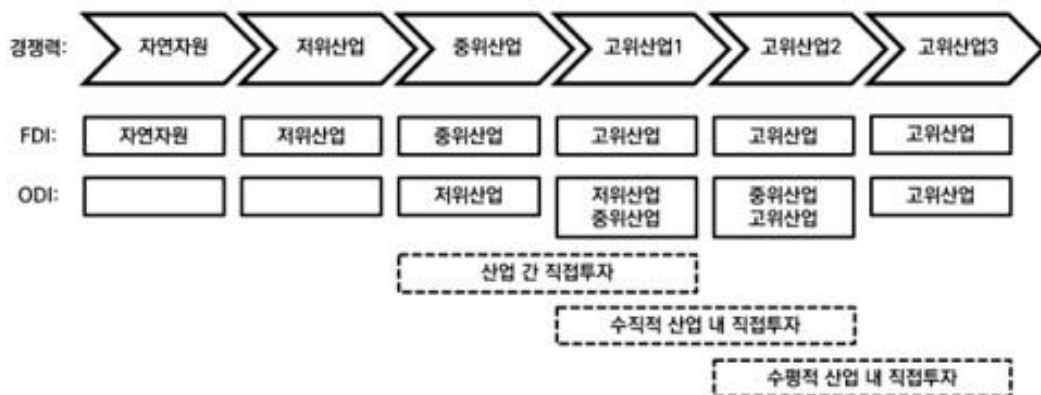
〈표 3-4〉 개발협력분야에서의 공공 및 민간부문 비교우위 요약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친화적 사업 환경 조성 ■ 광범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제공 ■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 위험요소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효율성 ■ 사업의 유연성 및 속도 ■ 혁신 및 전문성 ■ 규모·지속가능성 및 범위

출처: 이상홍(2020, pp. 32-3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셋째, PSE는 국제직접투자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Dunning(1982)의 투자발전경로(Investment Development Path) 이론이 주장하듯, 수원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 FDI 및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를 반복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3-3]과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 수원국의 열등한 산업은 FDI를 통해 발전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다른 국가에 ODI 형태로 내보내지며,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에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수원국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발전경로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원국의 산업별 비교우위가 상승해야 한다. 만약 FDI로 인한 열등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원국은 중위 및 고위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바, PSE는 국제직접투자의 양적 확대 외 전략적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3] 투자발전경로와 산업별 국제직접투자 관계



2. 민간부문참여(PSE) 전략

가. 민간부문참여(PSE) 방식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PSE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 정도(Degree)와 형태(Category)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DCED(2019a)는 공여국의 민간부문이 개발협력 사업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PSE를 [그림 3-4]와 같이 총 8단계로 분류하였다. DCED(2019a)에 따르면, 공여국 민간부문이 수원국에 단순히 '정보 제공 및 공유(Inform)' 활동만 펼칠 시 PSE를 통한 협력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공여국 민간부문이 수원국의 특정 분야 및 수요에 관해 분석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상담(Consult)' 활동을 수행할 시에는 한 단계 높은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공여국 민간부문이 PSE를 수행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율권(Empower)'을 부여받은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 민간부문참여(PSE) 정도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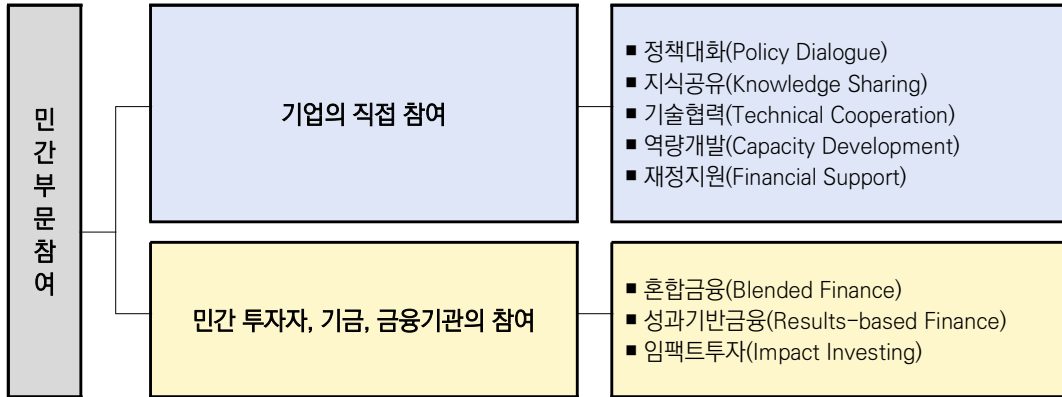
출처: DCED(2019a, p. 6)

다음으로, DCED(2019b)에 따르면, PSE는 형태를 기준으로 [그림 3-5]와 같이 '기업의 직접 참여(Direct Engagement with Companies)' 및 '민간 투자자, 기금, 금융기관의 참여(Engagement with Private Investors, Funds, and Financial Institutions)'로 구분되며, 각 참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의 직접 참여

기업의 직접 참여란 혁신기업 또는 투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등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PSE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수원국에서의 장기적이고 확장가능한 개발결과의 달성에 주안점을 둔다.⁹⁾

[그림 3-5] 민간부문참여(PSE) 방식 구분



출처: DCED(2019b, p. 2), 이효정(2019, p. 20에서 재인용), 김상훈·임소영(2020, p. 14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일반적으로 ‘기업의 직접 참여’는 그 목적과 메커니즘 그리고 민간의 역할 등에 따라 <표 3-5>와 같이 △정책대화, △지식공유, △기술협력, △역량개발, △재정지원의 5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민간기업은 ‘정책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 국가, 지방 단위에서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거나, 기업관행 및 산업표준 등의 개선을 통해 수원국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정책대화’는 주로 다자 네트워크 및 플랫폼, 다부문 라운드테이블, 전문기관, 제도화된 협의채널 등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민간기업은 수원국의 발전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도구, 혁신적 접근법 등에 관한 지식을 협력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개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식공유 및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 연구 지원 등의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셋째, 수원국 민간부문의 실행역량 제고 및 효과성 개선 등을 위해 공여국의 민간부문은 기술분야 협력사업에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 등에 대한 컨설팅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민간기업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훈련연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전문가 교환 및 파견 등의 활동을 통해 수원국 민간부문의 역량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은 민간자금의 조달과 모집, 민간 투자 진흥, 개발결과의 수익화 실현, 기업간 파트너십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민간부문 전문성 및 시장기반 해법에 기반을 둔 개발문제 해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여, 대출, 메자닌 금융 등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9) DCED(2019b, p. 2)

〈표 3-5〉 기업의 직접 참여 방식 구분

참여 방식	목적	메커니즘	민간부문 역할	금융위험 수준
정책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국가, 지방 단위 정책의제 개발 ■ 기업관행 및 산업표준 등의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네트워크 및 플랫폼 ■ 다부문 라운드테이블 ■ 전문기관 ■ 제도화된 협의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 참가자 ■ 대상 	낮음
지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도구, 혁신적 접근법을 공유하여 개발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해결책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 네트워크 및 학습 플랫폼 ■ 학회, 세미나, 워크숍 ■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 참가자 ■ 자원 제공자 	낮음
기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개발협력에의 효과적인 참여 지원 ■ 민간부문 실행역량 및 효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컨설팅 ■ 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중간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성과에 기여하도록 민간부문의 역량 개선 ■ 사업활동의 변경 또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연수 ■ 역량 개발 프로그램 ■ 전문가 교환 및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 개혁자 ■ 대상 	낮음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금 조달 및 모집 ■ 민간 투자 진흥 ■ 혁신 테스트 및 성공 확대 ■ 개발결과의 수익화 ■ 기업간 파트너십, 포용적 비즈니스, 사회적 책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시장기반 해법을 활용하여 개발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 ■ 대출 ■ 메자닌 금융 ■ 집합투자기구의 지분투자 ■ 보증 ■ 혁신 금융 수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 이행자 ■ 개혁자 ■ 자원 제공자 ■ 참가자 	중간 또는 높음

출처: DCED(2019b, p. 2), 이효정(2019, p. 20에서 재인용), 김상훈·임소영(2020, p. 14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민간 투자자, 기금, 금융기관의 참여

‘민간 투자자, 기금, 금융기관의 참여란 SDGs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성과기반 금융(Results-based Finance),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먼저, 혼합금융이란 △개발 목적성, △재원 추가성,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효과적 파트너십 구축, △투명성 및 개발성과 모니터링이란 5대 기본원칙 아래, 상업적 목적의 재원을 동원(Mobilize)하기 위한 개발목적 재원의 활용을 의미한다.¹⁰⁾ 쉽게 말해, ODA와 같은 전통적 방식의 개발재원에 민간재원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은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적재원을 혼합금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은

10) DECD(2019b, p. 3),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8, p. 3)

투자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이점을 갖는다.¹¹⁾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표 3-6>과 같이 △대출 및 지분투자, △전대금융(Credit Line), △보증 및 보험, △무상증여 및 기술협력, △퍼실리티/펀드, △신디케이트 대출, △자산유동화와 같은 혼합금융 지원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표 3-6>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혼합금융 지원수단

수단	목적
대출 및 지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자 신뢰제고, 심사역량 공유 등 비재무적 유인을 통한 민간투자자 유인 ■ 개발재원을 통한 고위험(지분) 투자는 대출 및 메자닌투자 등으로 민간참여 활성화
전대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 중소기업을 비롯한 현지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현지 민간재원의 중장기 대출 및 지분투자 유인
보증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대상 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경감 ■ 투자자격 신용등급의 투자대상 제공
무상증여 및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비 타당성 조사, 개도국 투자환경 관련 정책 및 역량개발을 통한 비재무적 위험도 경감
퍼실리티/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투자기구로서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 다양한 혼합금융 지원수단을 집행 ■ 투자자 간 부담하는 위험수단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개발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트랜치에 투자하거나 위험을 우선적으로 인수
신디케이트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과 민간이 공동 대주단을 구성, 사업 또는 차주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제고와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상업적 투자자를 개발사업에 유인
자산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지 등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활용,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출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8, pp. 6-7)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성과기반금융이란 성과 발생 시 투자자에게 투자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공공부문은 성과기반금융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부문은 개발협력사업의 수행방식 및 과정보다는 그 성과에 더욱 많은

11) 대표적인 공공부문으로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개발금융기구(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 양자원조기관이, 민간부문으로는 자선단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민간금융기관이 있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은 성과가 있는 사업에만 재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모형 등이 도입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 본연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데 기여 가능하다. 한편, 대표적인 성과기반금융 수단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가 달성될 경우에만 약정된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액을 상환하게 되는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DIB)이 있다.¹²⁾

마지막으로, 임팩트투자란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달성하도록 고안된 사업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기금의 투자를 의미한다.¹³⁾ 재무적 수익 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임팩트투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 경영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임팩트투자는 목적성(Intentionality), 수익성(Financial Returns), 측정가능성(Impact Measurement)이란 세 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¹⁴⁾ 첫째, 임팩트투자는 반드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타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부수적으로 생산되었다면, 이는 임팩트투자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임팩트투자 시 재정적 수익은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이하에서 위험 조정된 시장 금리까지로 한정된다. 셋째, 임팩트투자로 창출되는 사회적·환경적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측정된 성과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나. 민간부문참여(PSE) 주요 쟁점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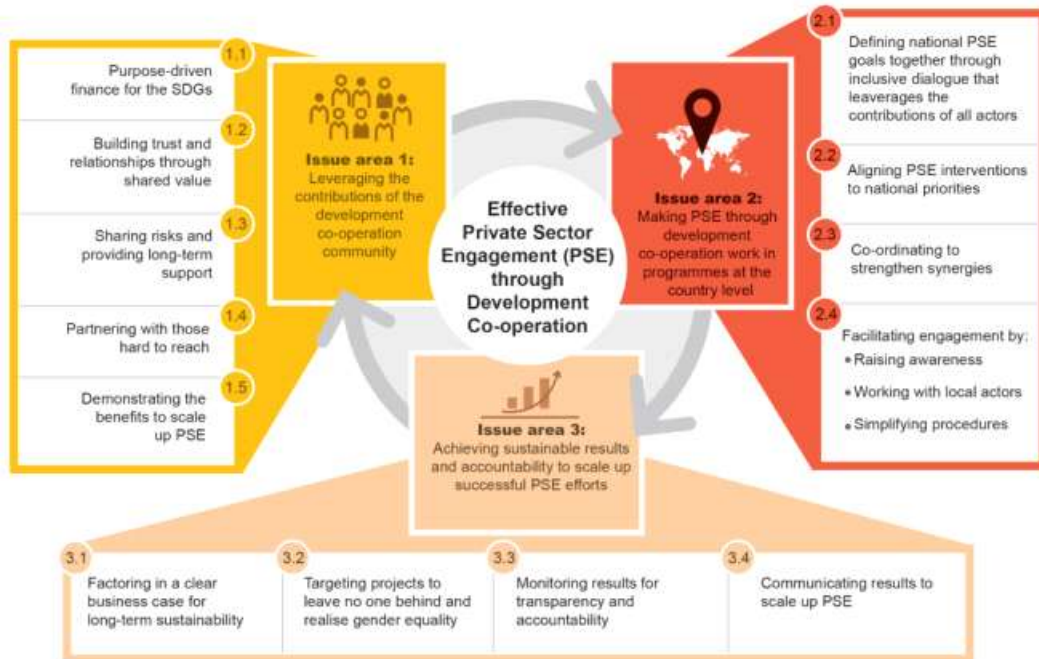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PSE는 개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활발히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과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PSE 원칙과 마찬가지로 PSE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지원대상이나 기관 또는 참여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그러나, GPEDC(2018)에 의하면 이와 같은 PSE 전략은 [그림 3-6]과 같이 크게 △개발협력 공동체(Community)의 활용, △국가 단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PSE 실행, △PSE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결과, 영향, 투명성 확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 분야에 각각 수립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 성과기반금융 및 DIB에 대한 내용은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주소: <https://panimpact.kr/>)

13) 한경석(2018.09.18), [특집] 임팩트 투자① 새로운 투자 물결 ‘임팩트 투자’가 뜬다, 주간한국

14) 장효미(2019), 임팩트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13호), 자본시장연구원

[그림 3-6] PSE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출처: GPEDC(2018, p. 6)

먼저, 개발협력 공동체에 민간부문의 기여도를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재원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거나 SDGs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분명한 목적이 부여되어야 한다. 민간재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소요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은 PSE의 효과성·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발협력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및 역량 등을 참여주체간 공유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부문이 저마다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PSE 수행과정 동안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상호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민간부문이 단독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및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정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PSE에 이미 참여한 민간부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새로운 PSE 사업에 많은 민간부문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단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PSE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PSE 참여자 간 포괄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PSE

목표에 이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도록 기획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참여자 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을 조정함으로써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수원국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에 PSE를 매칭해야 한다. 각 국가마다 수립한 단기·중기·장기 국가개발전략 등을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는 PSE를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의 효과적·효율적인 개발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참여효과가 단순히 '1+1=2'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넷째, 수원국에 대한 이해, 수원국 지역 주체와의 협력, 협력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PSE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결과, 영향,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전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많은 PSE 중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결과를 창출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 과정을 통해 PSE를 성공적으로 수행 및 완수하는 데 필요한 요인 등을 발굴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PSE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이 성차별을 받는다면, PSE와 관련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PSE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이 향후 새로운 PSE 사업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 성과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민간부문참여(PSE)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PSE는 수원국의 경제·사회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공여국 공공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효율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표 3-7>과 같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해 PSE를 활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첫째, 공공 및 민간부문은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이하다. 공공부문의 주요 동기가 수원국의 빈곤해소, 전략적 파트너 획득, 국가안보 등과 주로 관련되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수익과 매출이 가장 중요한 참여요소다. 따라서, 공적인 이익이 큰 사업일지라도 사적인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이 참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민간부문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요소로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방식을 민간부문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셋째,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에서는 계약기간이 짧거나 입찰 프로세스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 회수라는 관점에서 민간부문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공부문의 계약 및 규정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적 특성상 PSE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또한 민간부문의 PSE 참여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3-7〉 PSE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도전과제

부문	과제	내용
공공	민간부문과 다른 동기부여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에서는 수익, 매출 등이 중요한 실적 ■ 민간부문의 소요 비용 등에 관한 투명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
	민간부문 참여 유인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민간부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계약, 관리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유지 전반에 필요한 능력 결여
	계약 및 규제 관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계약 및 관련 규정의 현실성 결여
	정보 공유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 원천이 상이하고, 이로 인한 정보의 차이 발생
민간	다양한 자원에 대한 통제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및 자원 배분 등 중요한 결정이 공공부문에 배정
	의사결정의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에서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로, 공공부문의 지나친 의사결정 지연이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태 지속
	계약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수의 정부가 표준화되거나 투명한 입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민간부문의 이익 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대가 지불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및 예산상의 이유로 대가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다수 발생

출처: 김상훈·임소영(2020, p. 9에서 재인용)

제2절

주요 DAC 회원국 기업협력 전략 및 정책



1. 미국

가. 미국 PSE 기관 개요

개도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관심과 노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산하에 대외원조를 전담하는 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설립, PSE 등의 전략을 통해 PSD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69년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를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미국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1999년엔 보증을 통해 USAID의 활동을 지원하는 ‘개발신용기구(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 프로그램을, 2001년엔 PPP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 프로그램을 각각 도입하였다. 한편, SDGs 등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 가운데 ODA 등의 공공재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은 USAID가 보유한 기능 일부와 OPIC을 결합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USIDFC)’를 2019년 12월 새로 출범시켰다.

나. 미국 PSE 전략 및 정책

USAID는 <표 3-8>에서 보듯 △개발원조, △국제보건 및 아동구조, △국제재해원조, △경제지원기금,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원, △체제전환국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USAID는 2009년부터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에 더욱 무게를 실기 시작했고, 이에 ‘기술 및 능력개발(Skills and Capacity Building)’, ‘금융 접근성 향상(Access to Finance)’, ‘우호적 환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과 더불어 '연결성 및 PSE(Linkages and PSE)'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PSE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다음해인 2019년에는 새로운 PSE 정책체계(Policy Framework)의 도입을 선언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이 매우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8〉 USAID 주요 업무 현황

업무	내용
개발원조	■ 개도국의 자생적인 경제성장, 안정적인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국제보건 및 아동구조	■ 영·유아 사망률 감소 및 질병치료 ■ 여성 교육기회 확대 및 아동 안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제재해원조	■ 기근·홍수·지진 등 재해에 따른 구제·복구 등 지원
경제지원자금	■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국가에 자금 및 기술 지원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원	■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체제전환국 지원	■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평화 및 민주주의 지원 ■ 정치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원조
시민안정 지원	■ 분쟁 및 사회적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원조
자본투자자금	■ 정보기술 향상, 자본투자 및 해외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제공

출처: 이상홍(2020, p. 27)

PSE와 관련된 USAID의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USAID는 PSE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상황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가 촉진되기 어려운 환경을 보유한 저소득국에서는 PSE 관련 금융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하고자 노력한다. 반면, 중소득국에서는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 구조를 설계 및 도입하고 있다. 둘째, USAID는 민간부문과 MoU 또는 정식계약서 등을 통한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회복 경로로 유도할 지 등에 대해 미리 기술한다. 셋째, USAID는 PSE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과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 또한 주요 PSE 활동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USAID는 수원국의 다양한 그룹 중 가장 취약한 그룹에 더 나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게끔 PSE 활동을 타겟팅(Targeting)하고 있다. 다섯째, 보증, 증여 등의 금융수단과 정책대화, 기술지원 등의 비금융수단을 혼합함으로써 PSE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여섯째, 수원국의 더욱 많은 민간부문이 수원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수원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곱째, PSE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 등을 유연하게 수정함으로써 PSE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림 3-7] USAID의 새로운 PSE 정책체계



출처: USAID 홈페이지(<https://www.usaid.gov/policyframework>, 검색일: 2021.09.29.)

한편, 2019년 발표된 USAID의 새로운 PSE 정책체계는 [그림 3-7]과 같다. 먼저, USAID는 ‘개도국이 궁극적으로 대외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전환(Ending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이 자립(Self-reliance)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¹⁵⁾ USAID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접근법에 기반한다. 첫째, USAID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15) USAID 홈페이지(<https://www.usaid.gov/policyframework>)에 따르면, 개도국의 자립이란 개도국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며,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둘째,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셋째, 수원국의 자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활동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USAID는 이와 같은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이 실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표 3-9〉 PSE 운영원칙

구분	운영원칙
①	일찍 그리고 자주 참여하기
②	계획 및 사업 전반에 걸쳐 PSE 참여에 대한 유인 제공하기
③	민간부문 잠재력을 활용하는 접근법과 수단 사용 확대하기
④	PSE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에 기반하여 행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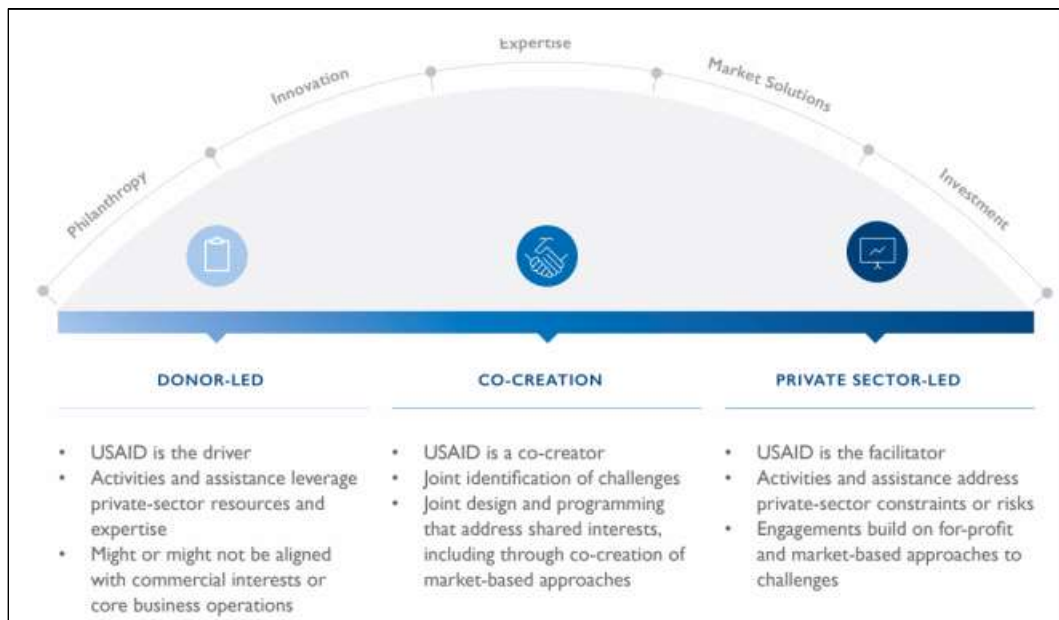
출처: 이상홍(2020, pp. 31-32), 김상훈·임소영(2020, pp. 18-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USAID는 PSE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 3-9〉의 네 가지 운영원칙을 도입 및 준수하고 있다. 첫째, USAID는 PSE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 및 기타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과의 소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PSE 사업에 USAID와 민간부문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PSE 기획 단계에서부터 USAID와 민간부문의 상이한 우선목표를 미리 조율함으로써 사업 수행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둘째, PSE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PSE의 모든 단계에 걸쳐 민간부문에 참여유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는 PSE를 수행하는 과정 동안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량이 원활히 발휘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USAID는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과 수단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USAID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모의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정할 수도 있다.¹⁶⁾ 또한, 제도 및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에

16) “민간자본은 리스크, 미성숙한 시장 및 시장 정보 부족, 높은 거래비용 등의 이유로 USAID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와 섹터에 투자를 과감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USAID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투자자의 위험 경감(신용보증 발행, 선손실 자본 제공 등), 결과기반 금융(개발영향채권(DIB) 등), 촉매 자본(타당성 조사, 시장 검증 지원), 투자촉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김상훈·임소영, 2020, p. 20)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동을 보완할 수도 있다. 넷째, USAID는 PSE 활동의 구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성적인 평가 외 지수(Index)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하거나, PSE 측정 행렬(Matrix)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PSE 사업 수행 시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3-8] 민간부문 참여도에 따른 USAID의 PSE 형태 및 특징



출처: USAID(2018b, p. 7)

USAID의 PSE 정책은 민간부문이 해당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낮을 시 USAID는 민간부문의 자원과 전문성을 레버리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에는 민간부문의 상업적 이익 혹은 핵심사업 영역과 PSE가 추가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높을 시 USAID는 민간부문의 제약사항이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주로 펼치게 되며, 이때 PSE는 시장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간부문과 USAID가 PSE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비슷할 경우, 양측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식별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PSE 사업을 설계할 확률이 크다.

2. 호주

가. 호주 PSE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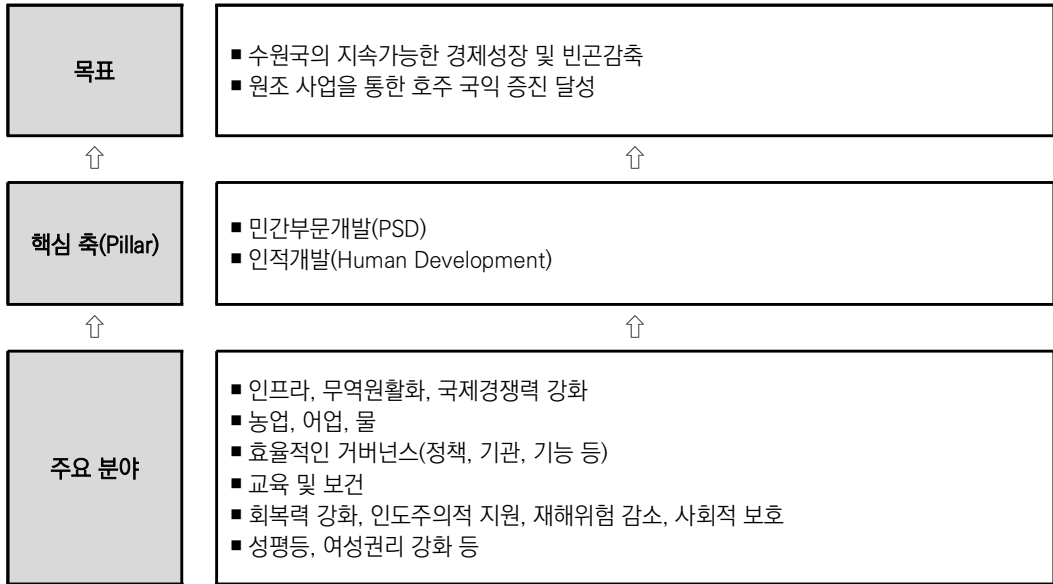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과 예산 등을 관리하는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를 중심으로 다수의 개발협력 전략이 추진 및 시행되고 있다. DFAT는 호주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춰 ‘원조 투자 계획(Aid Investment Plan)’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2015년 PSE에 관한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DFAT는 PSE와 관련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DFAT는 PSE를 통한 민간부문 도입이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감축하며, 원조 중심의 일방향 관계를 상호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는 ‘호주개발원조기구(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 ADAA)’라는 대외원조전담기구가 과거 존재하였다. ADAA는 이후 ‘호주개발원조국(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 및 ‘호주국제개발원조국(Austral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1995년에는 ‘호주국제개발처(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2013년 호주의 개발협력 정책 전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짐에 따라 AusAID는 2014년 DFAT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현재 호주에서는 전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DFAT가 주도하고 있다.

나. 호주 PSE 전략 및 정책

2014년 DFAT는 [그림 3-9]와 같은 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전략체계를 발표하였다. 먼저,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첫째, 동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동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여국인 호주의 국익 증진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DFAT는 이와 같은 원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축(Pillar)으로서 ‘PSD’와 ‘인적개발’을 제시하였다. 각 축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DFAT는 이들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FAT는 △인프라, 무역원활화, 국제경쟁력 강화, △농업, 어업, 물, △효율적인 거버넌스(정책, 기관, 기능 등), △교육 및 보건, △회복력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위험 감소, 사회적 보호, △성평등, 여성권리 강화 등의 핵심 분야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3-9] DFAT 원조 프로그램 전략체계



출처: DFAT(2014, p. 6)

2015년 DFAT는 PSE에 관한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여러 건의 문서를 통해 PSE가 'PSD'와 '인적개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FAT는 민간부문이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DFAT가 추진 및 주도하는 원조 프로그램에 민간부문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시킨다. 둘째, 민간부문이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감축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DFAT는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①일회성 전화(One-off Phonecall), ②소개(Introductory Meeting), ③촉매(Catalytic Grants), ④협업(Collaboration), ⑤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⑥공동작업(Co-creation), ⑦네트워크 접근(Access to Networks and Peak Bodies), ⑧파트너십(Partnerships), ⑨공동투자(Co-investment), ⑩자원공유(Shared Resources), ⑪공동 변호(Joint Advocacy)의 11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김상훈·임소영(2020)에 의하면, DFAT와 민간부문은 <표 3-10>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PSE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DFAT는 민간기업에 △소집, 중개, 영향력 행사, △신뢰·신용, △개도국 기업, 정치 및 제도적 환경에 관한 지식, △개발협력 경험과 전문성,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은 DFAT에 △혁신과 새로운 기술, △지식과 아이디어, △비즈니스 전문성 및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이해력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표 3-10〉 DFAT 및 민간기업 간 교환 가치

DFAT → 민간기업	민간기업 → DF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 중개, 영향력 행사 능력 ■ 신뢰·신용과 영향력 ■ 개도국 기업, 정치 및 제도적 환경에 관한 지식 ■ 개발협력 경험과 전문성 ■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지원 ■ 촉매 펀딩 ■ 성인지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과 새로운 기술 ■ 지식과 아이디어 ■ 비즈니스 전문성 및 네트워크 ■ 시장에 대한 이해력 ■ 평판 ■ 자원 ■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비즈니스 지지

출처: 김상훈·임소영(2020, p. 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김상훈·임소영(2020)에 따르면, DFAT는 시장왜곡을 방지하고자 추가성(Additionality),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PSE를 시행한다. 먼저, 추가성이란 DFAT의 개입 없이도 상업 및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할 만한 사업에는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공정성이란 DFAT와 민간부문 간 협업활동이 경쟁자 대비 특정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지 않게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FAT는 민간부문과 공유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금지원과 관련한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PSE의 투명성을 준수하고 있다.

〈표 3-11〉 DFAT의 주요 PSE 전략

구분	주요 전략
더 나은 사업지원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등록절차 재구조 및 계약법 시행 ■ 사업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설립 및 강화 ■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 ■ 민간기업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부문 주도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축을 주도하는 주요 시장 및 분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사슬 간 연결성 향상을 통한 시장 기능 제고 ■ 시장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개선 ■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
개별사업 발전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분야 또는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장의 변화 또는 광범위한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참여 유도

출처: DFAT(2020, p.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9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DFAT가 추진하고 있는 PSE 관련 전략은 <표 3-11>과 같이 크게 △더 나은 사업지원 환경 구축,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축을 주도하는 주요 시장 및 분야 강화, △개별사업 발전효과 극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DFAT는 사업등록절차 재구축 및 계약법 시행, 사업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설립 및 강화,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 민간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지원, 민간부문 주도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DFAT는 가치사슬 간 연결성 향상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장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개선하며,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축을 주도하는 주요 시장 및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DFAT는 특정분야 또는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장의 변화 또는 광범위한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별사업의 발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DFAT는 이 외에도 <표 3-12>와 같은 행동계획 접근법도 시행하고 있다.

<표 3-12> DFAT의 PSE 행동계획 접근법

접근법	내용	사례
관계 형성 (Engage)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AT와 여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한 내부 소통 채널 강화 ■ 민간부문이 DFAT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 프로그램, 조달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온라인 비즈니스 허브 제공 ■ 뉴스레터, 특별 행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 ■ 민간부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관리자 지정
지식 장차 (Equip)	개발의 맥락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에 관한 지식을 내부 직원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E 이론과 접근법에 관한 지침 개발 ■ 기업 참여 전담 지원부서를 통한 모범사례 및 전략, 리스크 관리,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개발과 보급 ■ PSE의 당위성과 접근법에 관한 학습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Support)	PSE 관련 자문, 시스템, 절차를 이행할 내부 환경 제공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원조 관리 및 보고 수단 개선 ■ 단순하고 유연한 계약 절차 ■ 민간부문 전문가와 연락담당자 지정 ■ 프로그램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서비스, 리스크 관리 지원
혁신 (Innovate)	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기회를 실현할 전략적 분석과 기획의 시범적 실시 ■ PSE 전담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플랫폼의 시험 및 평가
장려 (Incentivize)	개발 활동의 영향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부문 참여 육성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AT의 조직 및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고위급 지지 ■ 민간부문 및 상업적 섹터와 관련있는 정부 부처에 직원 파견 ■ PSE 활동에 대한 경력 인정과 표창

출처: 김상훈·임소영(2020, p. 26에서 재인용)

3. 독일

가. 독일 PSE 기관 개요

1940년대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느낀 독일은 1952년 저개발 국가 및 지역에 관한 UN의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ODA 사업을 시작하였다.¹⁷⁾ 서독에서는 외무부를 대신하여 개발협력 정책을 주도할 '경제협력개발부(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WZ)'가 1961년 신설되었으며, 동독에서는 별도의 기관 설립 없이 외무부가 오랜기간 동안 개발협력 정책을 담당하였다. 1990년에는 동독에 서독의 BWZ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협력부(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MWZ)'가 들어섰으며, 독일 통일 이후 1993년에는 지금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가 설립되었다.¹⁸⁾

한편, 독일에서는 BMZ 외 대표적으로 세 기관이 PSE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독일은 1962년 '독일 투자개발공사(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 DEG)'를 설립,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출 등을 통해 민간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을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주체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원 정책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2011년 기존 '독일기술협력단(German Technical Cooperation)'과 '독일개발봉사단(German Development Service)' 그리고 '독일국제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Germany)'이 하나로 통합된 '독일국제협력공사(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를 출범, BMZ를 대신하여 경제개발, 민주주의, 안보, 평화,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 민간부문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훈련, 대화, 정책 조언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Sequa'라고 불리는 국제개발기관을 PSE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Sequa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협력 사업을 수주 및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특히 '독일 상공회의소(German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및 '독일 사용자단체연합(Confederation of German Employers' Associations)'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PPP 사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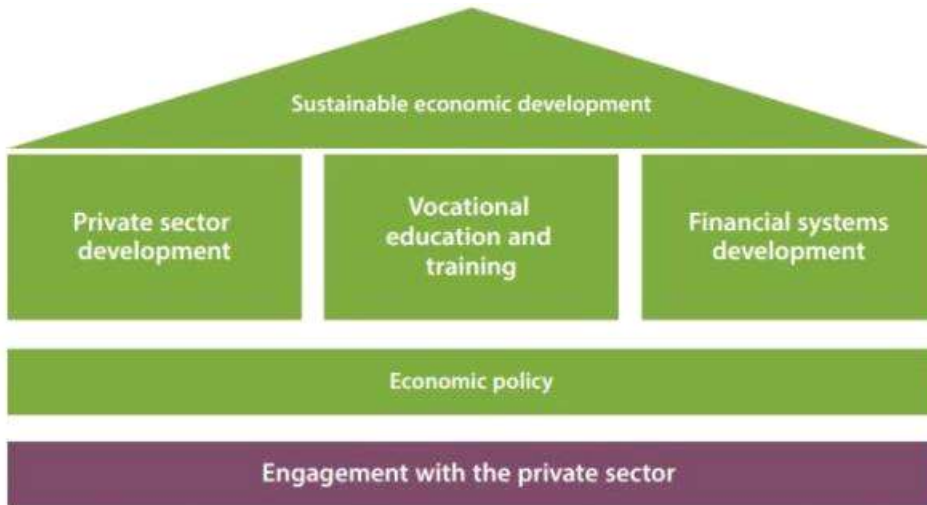
17) 김면희·안숙영(2011, p. 6)에 따르면, 당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적 국제연대', '반제국주의적 연대', '사회주의적 형제원조'라는 명칭이 ODA 대신 사용되었다.

18) 김면희·안숙영(2011, pp. 6-7)

나. 독일 PSE 전략 및 정책

[그림 3-10]과 같이, BMZ는 전통적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을 개발협력의 최상위 목표로 간주해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PSD, △직업교육 및 훈련, △금융시스템 발전이란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잠재성과 능력 등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PSE는 PSD 개발협력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에 BMZ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자본, 전문성 등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림 3-10] 독일 개발협력 목표 및 주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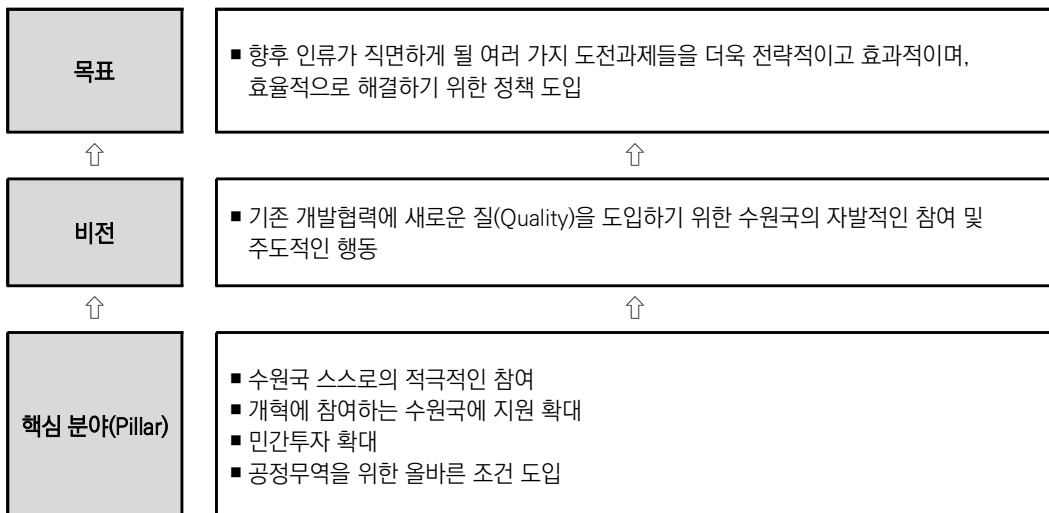


출처: OECD(2016a, p. 3)

PSE와 관련된 BMZ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BMZ는 항상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PSE 사업을 우선시한다. 둘째, BMZ는 이주민의 PSE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 향후 귀국 후 자국의 학교, 병원, 커뮤니티센터 건설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셋째, BMZ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 불리는 자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PSE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인턴십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BMZ는 기존 독일 정부에 의해 제공되던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데도 PSE를 활용하고 있다. 공여국 정부와 수원국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BMZ는 개발협력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다섯째, PSE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권위 및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원국의 상황, 수요, 우선순위 등과 PSE가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여섯째, 민간부문이 개발협력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The develoPPP.de'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민간부문이 1년에 총 네 차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문의사항에 대해 BMZ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일곱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PSE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도전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식별되고, 수원국 맞춤형 전략이 수립될 때까지 BMZ는 인내심을 갖고 PSE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림 3-11] BMZ 2030 개혁전략 개요



출처: BMZ(2020, pp. 3-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BMZ는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향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더욱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30 개혁전략(2030 Reform Strategy)'을 2020년 발표하였다. 동 개혁전략은 기존 개발협력에 새로운 질(Quality)을 도입하기 위한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행동을 핵심으로 하며,¹⁹⁾ PSE와 관련된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BMZ는 수원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수원국이 원하는 부분에 더욱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정보나 증거 등을 제공할 때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을 적극적으로

19) "At the heart of the reform strategy is bringing a new quality to cooperation. [...] The key to development is for partners to act on their own initiative. Our partner countries can and must deliver more."(BMZ, 2020, p. 3)

받아들이는 수원국에 더욱 집중적인 협력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BMZ가 지원하던 협력 국가의 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수원국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개발투자펀드(Development Investment Fund)’ 등을 보다 확장할 예정이다. 넷째, EU FTA 규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 및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공정무역에 관한 올바른 조건을 도입하고자 한다.

4.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PSE 기관 개요

독일과 유사하게 네덜란드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1965년 네덜란드는 개발협력부 장관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소속으로 배치하며 외무와 개발협력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켰고, 이후 개발협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외무부 외 ‘네덜란드 기업청(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RVO)’과 ‘네덜란드 개발은행(Netherlands Development Finance Company, FMO)’이 PSE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 및 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산하 기관인 RVO는 PSE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인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의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네덜란드 기업의 수원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FMO는 수원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에 자본, 기술, 지식,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 제도·기구 지원, △에너지 및 농업 관련 산업, △식량, △물 등의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파이낸싱,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부처의 펀드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²⁰⁾

20) OECD(2016b) 및 송지혜(2021) 참고

나. 네덜란드 PSE 전략 및 정책

〈표 3-13〉 민간부문 관련 시기별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시기	민간부문 관련 개발협력 정책
2000년대 초반 (2003-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네덜란드는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중시 ■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개도국의 기업환경 및 현지기업 육성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주력 ■ 네덜란드 일반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파트너십 육성 추구 등
2007-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및 분배가 중요한 개발정책으로 자리매김 ■ 민간부문개발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
201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개발이 개발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 네덜란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가 중요 원칙으로 설정

출처: 송지혜(2021, p. 8)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이익에 기반하며, 이에 '자국의 이익 추구' 및 '도덕적 의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²¹⁾ 네덜란드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먼저 2013년에는 원조와 투자 그리고 무역 간 연계를 통한 △극심한 빈곤 제거, △세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 촉진, △자국기업의 해외사업 원활화 지원이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에는 △갈등예방 및 빈곤감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기후행동, △네덜란드의 국제 이익능력(Earning Capacity)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표 3-14〉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4〉 네덜란드 개발협력 목표별 주요 정책 내용

목표	주요 정책 내용
갈등예방 및 빈곤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중동 등 불안정한 지역으로의 협력 비중 확대 ■ 교육, 고용, 학생 및 여성을 위해 연간 약 6,0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실시 ■ 난민 보호 개선 및 긴급원조 등에 연간 약 2억 9,0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실시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기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간 약 4,000만 유로 규모의 펀드 조성 ■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기관 및 기업 동원 ■ 아동노동 근절 및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마련

21) 송지혜(2021, p. 7)

9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 ■ 시장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국제협정 확대 등
네덜란드의 국제 이익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강화 ■ 혁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경제적 외교 강화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식 외교 ■ 공동의 전략과 브랜드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민관 협력 추진 등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네덜란드의 PSE는 이와 같은 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첫째, 민간기업이 수원국에서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을 위한 법과 규제 개선, 경제기관 강화, 금융분야 육성, 인프라 건설 및 개선,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제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 네덜란드 원조는 무역 및 투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수원국이 원조 종속적인 국가로 남는 것이 아닌, 보다 자율성을 갖춘 국가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자국 및 수원국 지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의 지속가능한 무역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의 PSE 관련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²²⁾ 첫째, 네덜란드는 개발협력 정책과 메커니즘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다양한 참여주체 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메커니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수단 외 기술지원, 역량강화, 지식공유 등의 비금융수단을 금융 메커니즘 구성 시 적절히 혼합한다. 이를 통해 특정범위를 벗어나는 요인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연속성(Continuity)과 새로운 참여 메커니즘 개발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참여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메커니즘을 쉽게 단절할 수도 없는 바, 이에 위험요소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의 관심사와 개발수요 간 균형 또한 적절히 조정한다. 다섯째, 더 복잡한 PSE 메커니즘 및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 노력한다.

22) OECD(2016b) 참고

5. 스웨덴

가. 스웨덴 PSE 기관 개요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외무부(Ministry for Foreign Affairs, MFA)’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맡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이 중심이 되어 외무부의 요청사항을 집행 및 처리하고 있다. Sida는 양자간 원조 및 대외무상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95년 외무부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스웨덴의 PSE 관련 프로그램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Sida에는 지분투자, 대출, 보증,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웨덴의 개발금융기관인 ‘스웨덴펀드(Swedfund)’가 포함되어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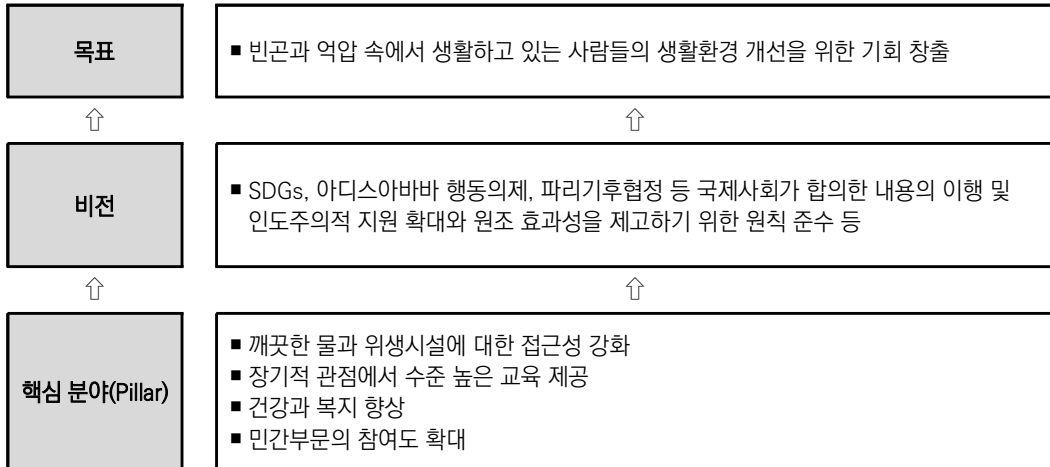
한편, 민간부문에 대한 스웨덴의 관심은 2003년 Sida가 ‘PSD를 위한 정책지침서(Policy Guidelines for Sida’s Support to PSD)’를 발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PSD는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원국 경제의 안정과 민주주의 확립에도 기여 가능하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Sida에 PSD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PSE는 스웨덴에서 ‘원조정책 프레임워크(Aid Policy Framework)’ 및 국가·지역별 협력전략서 등에 표기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나. 스웨덴 PSE 전략 및 정책

2018년 스웨덴 외교부는 ‘빈곤과 억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 창출’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SDGs,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는 등의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수준 높은 교육 제공, △건강과 복지 향상,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3) OECD(2016c, p. 4)

[그림 3-12] 스웨덴의 2018-2022년 국제개발협력 전략 개요



출처: MFA(20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Sida는 민간부문을 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자원을 개발협력 사업에 동원할 수 있다. 둘째, 민간부문을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 공급자, 조연자, 정책대화 파트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저개발국 및 저개발 지역 내 PSD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보유한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Sida는 민간부문을 개발협력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²⁴⁾ 첫째, Sida와 민간부문이 체결한 모든 파트너십은 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해야 한다. 이에, Sida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지식, 혁신역량,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등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Sida는 민간부문에 빈곤감소 외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감을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Sida는 PSE가 일부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시장에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널리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Sida는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효과가, Sida와 민간부문이 각각 수행했을 때의 성과보다 더 크도록 기획하고 있다.

24) Sida 홈페이지(<https://www.sida.se/en/for-partners/private-sector#block-20-0>, 검색일: 2021년 10월 26일)

스웨덴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민간분야와 상호교류하고 있다. 첫째, 수원국의 빈곤감축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둘째, 민간부문이 가진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민간부문에 주체자, 공급자, 조연자, 정책대화 파트너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빈곤 국가 내 민간부문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한다. 다섯째, 혁신적이면서도 유연한 방식과 운영체제를 도입한다. 여섯째, 빈곤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과 생산방식 등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스웨덴의 구체적인 PSE 전략은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개발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최적화된 협력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개발협력효과를 제고한다. 둘째, 비구속성 원조를 통해 국내 상업적 이익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발목적 간 갈등 및 혼란 등을 사전에 제거한다. 셋째, 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부터 환경, 보건, 거버넌스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PSE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한다. 넷째, 다수의 PSE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적극적인 대화를 실시한다. 여섯째, PSE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수행한다. 일곱째, 더 복잡한 PSE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해 인적 자원 확보 등에 노력한다.

6. 일본

가. 일본 PSE 기관 개요

일본은 1961년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의 설치를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및 용자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1974년에는 기술협력 전담 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설립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유상원조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OECF와 ‘일본수출입은행(Export Import Bank of Japan)’의 통합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을 설립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JBIC의 유상원조 및 차관 기능과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던 무상 자금협력을 JICA에 이전함으로써 원조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²⁶⁾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JICA 내 민간부문협력실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25) OECD(2016c) 참고

26) 권율·박수경(2008) 및 이효정(2019, p. 25) 참고

‘민간부문협력기본원칙(Basic Principle of Private Sector Partnership)’의 수립을 통해 일본 및 수원국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⁷⁾

[그림 3-13] 통합 JICA 기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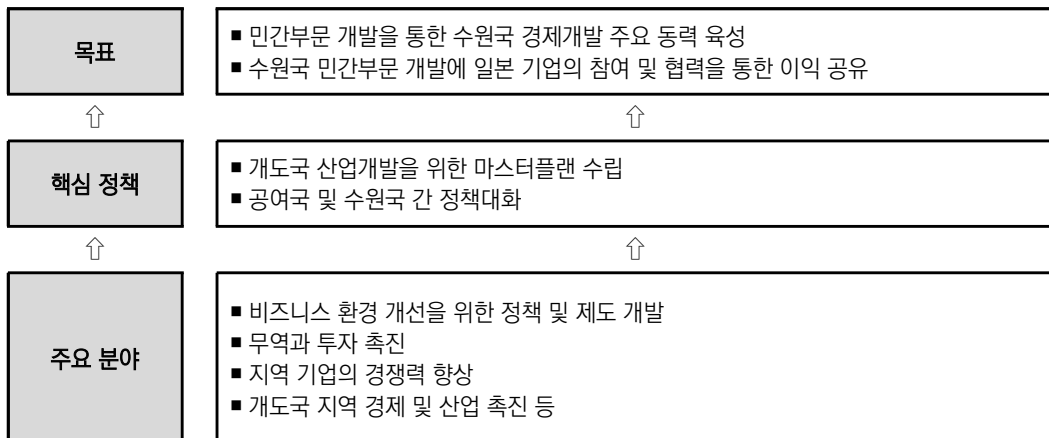


출처: 권율·박수경(2003, p. 5에서 재인용)

나. 일본 PSE 전략 및 정책

일본은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림 3-14]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먼저, 일본은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수원국 경제개발 및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은 자국 기업이 수원국 민간부문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3-14] 일본 PSD 체계 주요내용



출처: 고요한·김효신(2017, p. 30) 및 임소영 외(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27) 임소영 외(2016, p. 69) 참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PSD 전략은 크게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무역과 투자 촉진,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이란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은 크게 △산업촉진 정책, △기업 법 및 제도 개발로 구성된다. 일본은 수원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적절한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일본은 수원국 내 보다 많은 FDI가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의 현대화 등을 통한 수원국의 무역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산업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수함으로써 수원국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수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수원국 내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⁸⁾

PSD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PSE 전략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²⁹⁾ 첫째, ‘민간부문투자금융(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SIF)’의 활용이다. 2011년 JICA는 차관 및 지분 투자 등의 형태로 수원국 현지기업 또는 일본 기업과의 합작법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ODA 차관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수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5〉 일본 PSIF와 ODA 차관 비교

구분	PSIF		ODA 차관
프로젝트 성격	민간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
지원 형태	차관	지분 투자	차관
지원 통화	엔화	현지통화	엔화
절차	민간기업 요청, 간단한 절차		수원국 정부 요청
채권보전	정부 보증 불필요		정부 보증 혹은 정부 차입
조달	사업주체가 계약자 선택		JICA 구매 가이드라인 적용

출처: 임소영 외(2016, p. 70)

둘째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이는 일본의 PSD 분야 중 ‘무역과 투자 촉진’과 크게 관련되며, 〈표 3-16〉과 같이 △산업인력 개발, △기업정책 및 시스템 개선, △기업 연결 촉진, △행정서비스

28) 임소영 외(2016, p. 68) 참고

29) 이하 일본의 여섯 가지 PSE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소영 외(2016) 참고

10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개선, △산업단지 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은 기업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사전에 수립했다는 점이며, 이는 일본의 PSD 목표 중 하나인 '수원국 민간부문 개발에 일본기업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와 크게 관련된다.

〈표 3-16〉 일본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구분	내용	
산업인력 개발	목적	■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인력 역량 강화
	이점	■ (일본) 질 좋은 현지인력 고용 가능 ■ (현지) 일본기업 기술 획득 가능
기업정책 및 시스템 개선	목적	■ 현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이점	■ (일본) 수요 맞춤형 개혁 → 개선된 기업환경 ■ (현지) 기업환경, 외국인투자 증가
기업 연결 촉진	목적	■ 일본기업에서 현지기업으로 산업기술 이전
	이점	■ (일본) 현지 협력사 효율적 탐색 ■ (현지) 일본 협력사 연결 용이, 일본 기업의 기술 노하우 습득
행정서비스 개선	목적	■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본기업 투자 환경 개선
	이점	■ (일본) 행정업무 효율성 증가 → 일본기업 활동 확장 ■ (현지) 기업활동 환경개선 → 현지기업 활동 확장
산업단지 개발	목적	■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이점	■ (일본)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 이용 가능 ■ (현지)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 이용 가능, 해외투자 증가 → 협력 파트너 증가

출처: 임소영 외(2016, p. 74)

셋째, 일본은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PPP 형태로 진행되며, 민간기업의 제안서를 △ODA 이용 가능성, △민간부문 참여 유형, △개발효과성, △기업의도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적절하다고 판단 시, 이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넷째, 빈곤층(Bottom of Pyramid, BOP) 시장 개발 지원이다. 일본은 자국의 민간기업이 수원국의 빈곤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제공한다. 다섯째, 일본은 FDI, 역량강화 연수,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자국의 우수기술이 수원국에 전파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은 2012년 지원체계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력촉진 조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현지 적용 조사 등의 활동을 〈표 3-17〉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3-17〉 일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형

유형	지원자	주요 내용	주요 결과
중소기업 협력촉진 조사	중소기업 및 ODA 컨설턴트	기업이 제출한 비즈니스 계획이 개발문제 해결 또는 ODA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한지 평가	ODA 사업에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 등이 적용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중소기업과 ODA 컨설턴트 공동 지원	일본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한 ODA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현지 적용 조사	중소기업 (ODA 컨설턴트와 공동 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용 가능한지 검증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출처: 임소영 외(2016, p. 79)

〈표 3-18〉 국가별 PSE 관련 주요 근거

국가	관련 정책 현황	주요 근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PSE 전략, 원칙, 정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9년엔 새로운 정책체계를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AID(2018), Private-Sector Engagement Policy ▪ USAID(2019), USAID Policy Framework: Ending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PSD와 인적개발을 핵심 축으로 하는 원조 프로그램 전략체계를 발표하였으며, '20년 관련 지침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AT(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 DFAT(2020),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Guidance Note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OECD의 Peer Learning Country Report를 통해 구체적인 PSE 전략 명시 ▪ '20년에는 '20-'30년 동안 시행할 개발협력 전략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2016),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Germany ▪ BMZ(2020), BMZ 2030 Reform Strategy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OECD의 Peer Learning Country Report를 통해 구체적인 PSE 전략 명시 ▪ '18년 개발협력 목표별 주요 정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2016),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Netherland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8), 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OECD의 Peer Learning Country Report를 통해 구체적인 PSE 전략 명시 ▪ '18년엔 '18-'22년간 개발협력 목표, 비전, 분야 등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2016),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Sweden ▪ MFA(2018),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2018-202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Annual Report를 통해 PSE를 포함한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CA(2020), Annual Report ▪ JICA(2019), Annual Report

출처: 김상훈·임소영(2020, p. 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3절

DAC 회원국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 현황 및 사례



1. 활동 현황

기존의 공여국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금융을 활용한 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규모를 보면 공공부문의 비중은 축소돼 2016년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47%였으나 2019년에는 3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중 특히 기타공적자금과 공적수출신용제공의 경우 상환액이 지원액을 상회하며 하락률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르게 민간증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11%를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증가하는 민간분야 지원은 과거 정부 위주로 구성돼 높은 재정부담을 갖고 있던 공여국 정부에게 재정부담 감소와 더불어 민간 간의 투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ECD DAC 회원국들의 민간분야 지원 현황과 사례를 통해 그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3-19〉 OECD DAC 회원국의 공공 및 민간분야 지원 현황

(단위: 십억 USD, %)

구분 액수	공공							민간				총계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공적수출신용제공		민간자본흐름		민간증여			
	순지출	증가율	순지출	증가율	순지출	증가율	순지출	증가율	순지출	증가율		
2012	127.0		8.0		9.3		144.4 (0.3)	297.8		35.3		333.2 (0.7)
2013	134.8	6	4.6	-42	17.5	88	157.0 (0.35)	259.1	-13	34.2	-3	293.3 (0.65)
2014	137.5	2	1.9	-59	5.5	-69	145.0 (0.25)	410.4	58	32.3	-6	442.7 (0.75)
2015	131.5	-4	3.3	74	18.5	236	153.5 (0.49)	126.9	-69	35.5	10	162.5 (0.51)
2016	144.9	10	-1.4	-143	5.0	-73	148.4 (0.47)	128.9	2	40.2	13	169.2 (0.53)

2017	147.1	2	-2.3	64	2.0	-60	146.9 (0.34)	245.9	91	41.9	4	287.8 (0.66)
2018	150.0	2	0.3	-113	3.5	75	153.6 (0.52)	101.7	-59	42.0	0	143.8 (0.48)
2019	146.4	-2	-3.6	-1,300	-4.6	-231	138.1 (0.34)	223.2	119	45.6	8	268.8 (0.66)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30.)

높아지는 민간재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완전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재원 측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OECD DAC는 민간재원 동원액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재원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은 OECD DAC 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민간재원의 동원(Mobilization)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해당 통계 자료만을 사용한다.

OECD DAC에서 정의하는 민간재원의 동원은 ODA 재원의 투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동원된 금액이다.³⁰⁾ OECD DAC는 민간재원 동원이 가능한 금융수단의 유형을 점차 확대하며 재원 측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4년에는 3개 항목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현재 OECD DAC 통계시스템은 보증(Guarantees),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s), 집합투자펀드(Shares in CIVs), 기업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in Companies and SPVs),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s), 공동 자금투입(Co-financing)의 여섯 개로 구성되고 있다.

〈표 3-20〉 민간재원 동원(Mobilization)의 유형

유형	내용
보증 (Guarant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으로 채무불이행 혹은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금액 혹은 일부에 대해서 보증인이 지불하는 방식
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대출제공자들이 공동으로 단일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 차입자의 위험을 여러 대출자들에게 분산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입 효과
집합투자펀드 (Shares in CI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여러 기업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식 모든 참여자들이 위험, 수익 및 손실에 대해 동일한 프로파일을 보유하거나 서로 다른 위험 및 수익 프로파일을 가진 트랑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 존재
기업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in Companies and SP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기관 없이 기업의 자산부채계정에 나타나도록 직접 투자하는 방식 주로 지분투자(Equity),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시니어론(Senior Loan)으로 구성

30) 오수현·이인호(2019).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p. 8

10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크레디트라인 (Credit Lines)	■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금융기관(Local Financial Institutions, LFI)에 고정신용금액을 제공하는 방식
공동 자금투입 (Co-financing)	■ 매칭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유무상 사업과 민간투자자 간 단순 공동 자금 투입 계약

출처: 오수현·이인호(2019, pp.12-18), 정지원·정지선·이주영·유애라(2018, pp.44-4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단의 표는 민간재원 동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DAC’는 OECD DAC 회원국을, ‘다자간’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 다자간 개발은행과 EU,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민간재원 동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민간재원 동원 총액은 1,500억 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그 두 배의 규모가 넘는 3,400억 달러를 기록한다. DAC 회원국과 다자기구 간의 비율은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DAC 회원국이 40% 수준을, 다자기구가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DAC 회원국들의 민간재원 동원 증가율이 다자기구보다 높기에 향후 그 비중의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1> DAC 회원국과 다자기구의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십억 USD, %)

연도	합계			DAC		다자간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2012	15.08	DAC	41%	6.172		8.91	
		다자간	59%				
2013	18.73	DAC	49%	9.209	49%	9.53	7%
		다자간	51%				
2014	18.81	DAC	36%	6.755	-27%	12.06	27%
		다자간	64%				
2015	22.49	DAC	40%	9.092	35%	13.39	11%
		다자간	60%				
2016	30.75	DAC	30%	9.379	3%	21.37	60%
		다자간	70%				
2017	33.23	DAC	34%	11.208	20%	22.02	3%
		다자간	66%				
2018	36.75	DAC	28%	10.132	-10%	26.62	21%
		다자간	72%				
2019	34.47	DAC	42%	14.535	43%	19.93	-25%

		다자간	58%				
합계	210.34	DAC	36%	76.482	-	133.86	-
		다자간	64%				
연평균	26.29	-		9.56025		16.73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OECD DAC 회원국들의 대륙별 지원 현황을 보면 DAC 회원국들의 지역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가장 많은 민간재원 동원액을 지원받은 대륙은 아프리카로, 전체 규모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이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돼 2015년에는 무려 전체의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프리카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의 지원 추세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019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륙은 아시아였으며 약 49억 달러를 기록한다. 흥미로운 점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의 부상이다. 2012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은 전체 지원액의 약 11% 수준인 6.8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었다. 이는 유럽 대륙보다도 낮은 수치로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대륙 중 가장 적은 지원액이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은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2년 대비 4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전체 동원금액의 약 26%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던 민간재원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22〉 OECD DAC 회원국들의 대륙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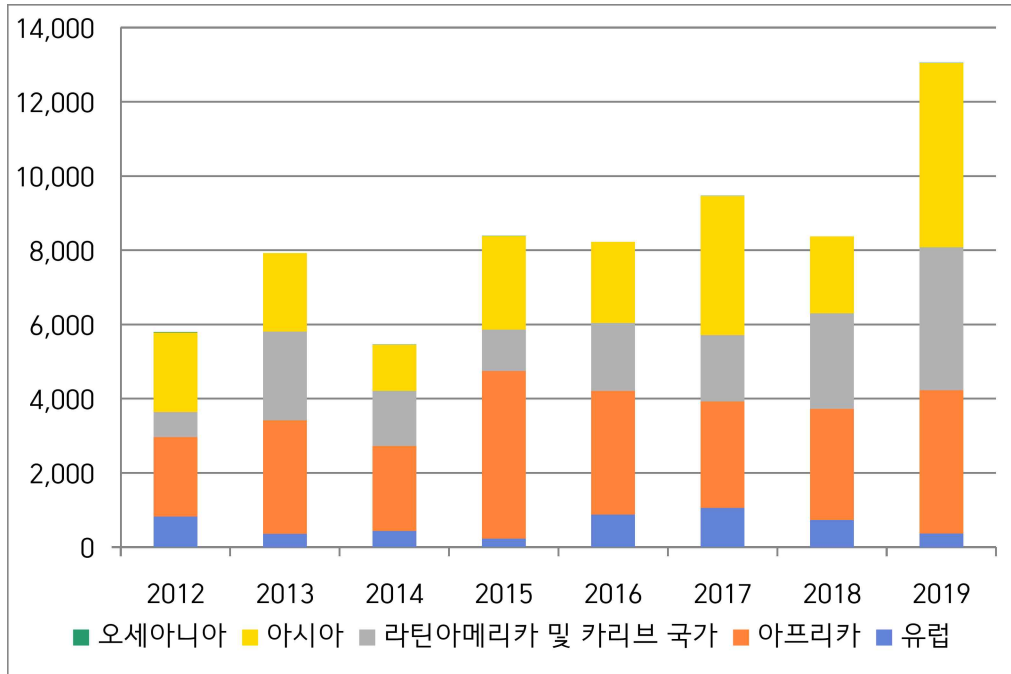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연도/대륙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2012	820.3	2,142.0	681.7	2,135.7	10.4
2013	355.2	3,051.2	2,400.9	2,110.3	0.2
2014	431.6	2,285.3	1,492.2	1,248.6	0.4
2015	229.2	4,512.7	1,112.6	2,529.2	0.3
2016	875.4	3,334.2	1,825.7	2,183.5	0.1
2017	1,052.6	2,866.1	1,794.2	3,746.9	1.7
2018	727.7	2,999.2	2,568.3	2,069.1	0.0
2019	365.0	3,862.4	3,852.8	4,968.1	2.2
총합	4,857.1	25,053.1	15,728.3	20,991.3	15.2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그림 3-15] OECD DAC 회원국들의 대륙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백만 USD)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동원된 민간재원의 총 금액은 약 760억 달러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약 61억 달러, 2013년 약 92억 달러, 2014년 약 67억 달러, 2015년 약 90억 달러, 2016년 약 93억 달러, 2017년 약 112억 달러, 2018년 약 101억 달러, 2019년 약 145억 달러이다. 여섯 개의 금융 수단 중 가장 많은 민간재원 동원 효과를 가져온 보증(Guarantees) 수단은 전체 760억 달러 중 약 46%인 350억 달러의 민간재원 동원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금융 수단이 주로 개발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보증은 USAID, Sida 등 공여 기관들도 활발하게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³¹⁾. 그 뒤를 이어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있는 금융 수단은 전체 중 약 17%를 구성한 기업직접투자, 약 130억 달러의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있었다. 신디케이트론과 공동 자금투입 수단은 각각 37억 달러와 34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작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동 자금투입 수단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하여 2019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에 향후에는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증 수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이 저조하여 수단별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1) 오수현·이인호(2019).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p. 21

〈표 3-23〉 OECD DAC 회원국들의 수단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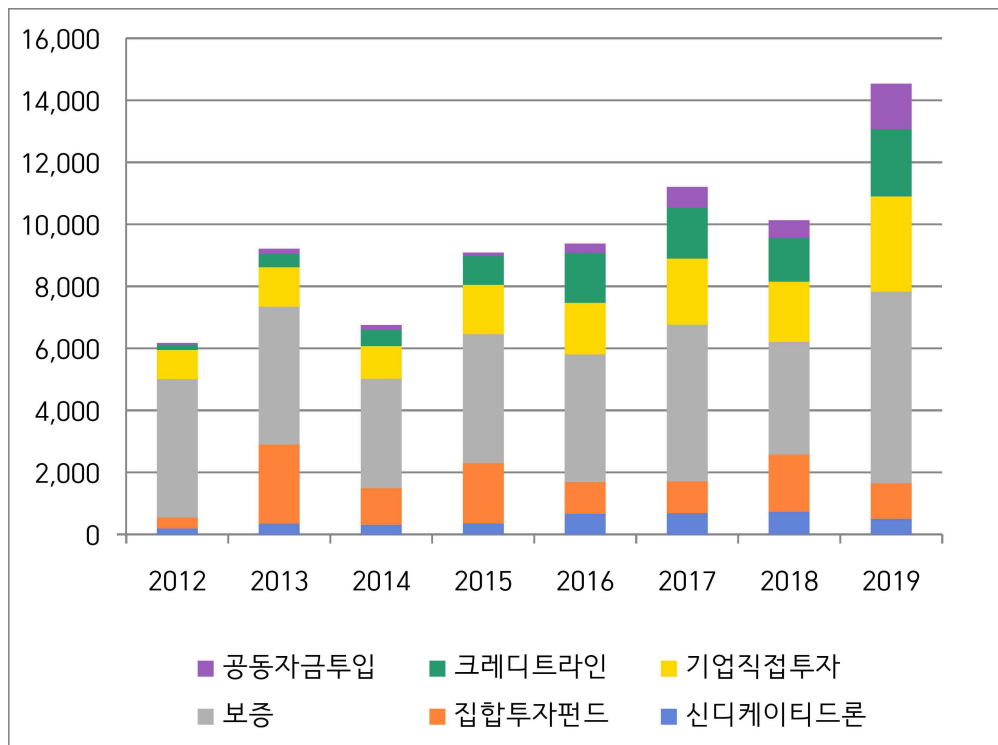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수단/ 연도	신디케이트드론	집합투자펀드	보증	기업직접투자	크레디트라인	공동자금투입
2012	189.1	349.3	4,474.6	935.3	162.4	61.6
2013	351.8	2,548.8	4,441.7	1,270.9	432.3	164.4
2014	303.8	1,192.9	3,520.6	1,059.9	532.3	146.3
2015	358.8	1,936.1	4,154.3	1,599.1	932.6	111.2
2016	659.9	1,032.9	4,115.7	1,654.8	1,608.4	307.8
2017	682.9	1,029.4	5,054.9	2,126.4	1,650.4	664.6
2018	732.2	1,851.6	3,621.7	1,951.8	1,399.1	576.1
2019	502.4	1,149.2	6,188.2	3,060.7	2,167.5	1,467.1
총합	3,781.0	11,090.1	35,571.7	13,658.9	8,884.9	3,499.1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그림 3-16] OECD DAC 회원국들의 수단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백만 USD)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11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OECD DAC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동원된 민간재원은 교육과 보건, 식수 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금융과 교통, 통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농업, 광업, 관광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 부문, 그리고 △다부문으로 구분된다.

이 중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재원이 가장 많이 동원된 부문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전체 동원액의 약 69%에 해당하는 530억 달러가 동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 부문에 약 150억 달러가 동원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약 213%가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부문은 생산 부문으로, 약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24〉 OECD DAC 회원국들의 부문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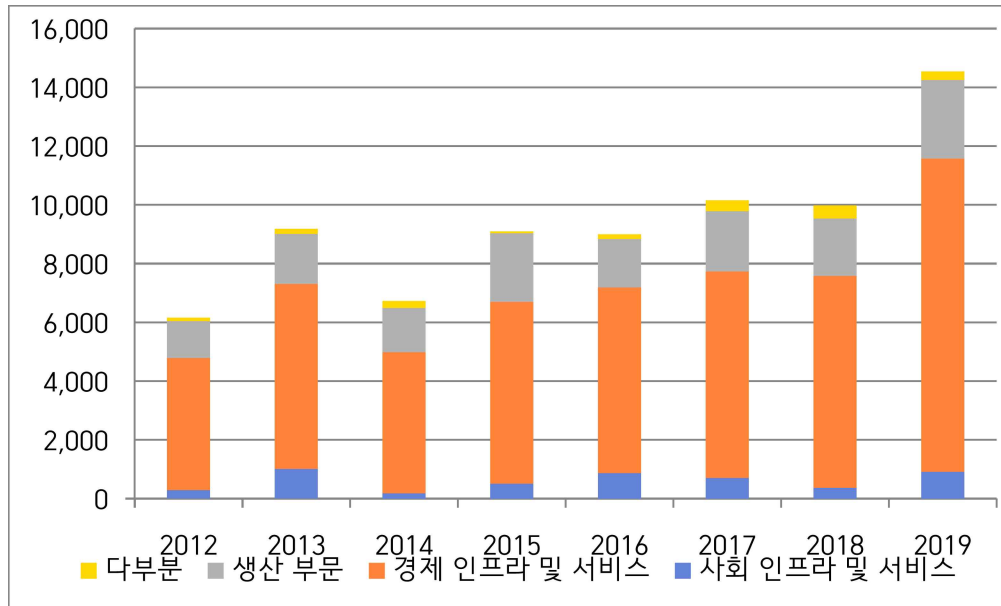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부문/연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부문	다부문	총합
2012	289.6	4,490.3	1,255.4	119.0	6,154.4
2013	1,002.8	6,305.6	1,697.3	171.7	9,177.3
2014	178.3	4,797.0	1,505.4	236.5	6,717.1
2015	505.0	6,183.7	2,343.5	59.8	9,092.1
2016	865.6	6,311.5	1,647.2	162.9	8,987.3
2017	701.9	7,027.4	2,051.7	369.4	10,150.4
2018	361.9	7,217.0	1,952.5	437.4	9,968.8
2019	907.4	10,673.2	2,665.0	286.6	14,532.2
총합	4,812.5	53,005.8	15,118.0	1,843.4	74,779.7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그림 3-17] OECD DAC 회원국들의 부문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백만 USD)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높은 수단은 보증이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동원 금액의 약 38%가 보증을 통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직접투자가 전체의 약 26%를 구성하였으며 공동 자금투입 또한 약 14%를 구성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디케이티드론은 그 효과가 가장 낮았는데, 전체 48억 달러 중 약 1%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가 동원되었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높았던 수단 또한 보증으로, 전체 530억 달러의 약 50%인 2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액수가 커 민간재원의 위험부담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업직접투자와 집합투자펀드, 그리고 크레디트라인이 각각 전체의 약 18%인 94억 달러, 14%인 76억 달러, 10%인 54억 달러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적은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있던 수단은 공동 자금투입으로 기간 중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15억 달러를 동원하였다.

생산 부문에서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한 수단 역시 보증이었다. 전체 151억 중 약 36%에 해당하는 54억이 보증을 통해 발생하였다. 기업직접투자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이며, 크레디트라인은 전체 기간 중 발생한 민간재원 동원의 약 17%를 구성하는 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집합투자펀드의 경우 전체 생산 부문의 약 15%를 구성하고 있지만, 2012년과

11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비교하였을 때 2019년 동원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합투자펀드는 2012년 기준 생산 부문의 16%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6%만을 구성하여 2012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다부문에서 가장 높은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있었던 수단 역시 보증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다른 부문들과 달리 다부문에서는 수단별 금액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공동 자금투입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4.8억 달러가 동원되었다. 그 뒤를 이어, 집합투자펀드가 21%에 해당하는 3.8억 달러, 크레디트라인이 17%에 해당하는 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25> 부문별 민간재원 수단 현황

(단위: 백만 USD)

부문	수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신디케이트드론	7.9	..	43.8	6.6
	집합투자펀드	3.5	2.0	10.2	193.7	110.0	68.3	2.3	117.8
	보증	50.1	884.5	51.6	13.9	528.5	305.9	5.0	9.5
	기업직접투자	200.4	36.7	31.9	281.4	58.6	163.9	227.5	257.1
	크레디트라인	7.5	..	153.2	57.1	16.0	251.5
	공동자금투입	27.8	79.6	33.2	16.0	15.3	106.8	111.2	265.0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신디케이트드론	130.9	260.0	249.5	278.8	257.4	308.4	404.1	422.7
	집합투자펀드	127.6	2,219.4	831.6	1,032.3	462.8	808.8	1,329.6	839.2
	보증	3,648.6	2,797.4	2,453.4	3,163.7	2,795.5	3,133.5	3,520.0	5,070.9
	기업직접투자	491.2	659.5	812.1	1,101.1	1,431.4	1,452.5	1,090.5	2,386.7
	크레디트라인	75.6	308.6	389.6	527.0	1,208.7	1,103.0	696.0	1,147.7
	공동자금투입	16.4	60.9	60.8	80.8	155.7	221.2	176.8	806.1
생산	신디케이트드론	50.4	91.8	10.5	80.1	394.9	356.8	328.1	72.2
	집합투자펀드	195.5	269.7	307.3	710.0	168.6	121.9	325.4	153.0
	보증	676.9	646.3	798.3	976.7	558.0	552.5	96.7	1,100.4
	기업직접투자	230.0	544.0	207.2	216.5	164.8	510.0	544.7	390.1
	크레디트라인	86.7	123.7	133.7	347.9	225.8	428.7	478.5	698.9
	공동자금투입	15.9	21.7	48.3	12.4	135.0	81.8	179.2	250.4
다부문	신디케이트드론	1.0
	집합투자펀드	5.1	25.3	7.3	0.1	140.7	25.4	137.3	39.1
	보증	99.0	113.5	217.2	63.0	..	5.9
	기업직접투자	13.8	30.8	8.6	81.6	26.2
	크레디트라인	1.6	57.7	20.7	34.7	138.3	69.3
	공동자금투입	1.2	2.1	1.8	2.0	1.6	246.4	80.2	145.1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OECD DAC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DAC 회원국 23개국 중, 2012년부터 2019년 동안 가장 많은 민간재원 동원이 있었던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전체 동원액의 약 46%에 달하는 3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동원된 국가는 프랑스로, 전체 동원액의 약 15%를 구성해 12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영국 또한 전체 동원액의 12%에 해당하는 95억 달러, 독일에서는 46억 달러의 민간재원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 내 집계된 민간재원 동원액은 1.4억 달러로, 이는 DAC 회원국 전체 합계의 0.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 3-26〉 OECD DAC 회원국가별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백만 USD)

국가/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네덜란드	140.6	372.4	233.5	360.8	589.9	562.5	874.6	589.2
노르웨이	96.6	214.6	125.0	102.6	217.1	117.9	85.9	51.0
덴마크	199.3	468.4	389.0	733.9	360.9	544.4	901.8	245.3
독일	369.8	492.5	673.9	389.1	571.4	757.5	448.4	956.9
룩셈부르크	6.4	0.5	2.0	5.0	..	1.5	2.4	3.2
미국	4,352.1	3,959.4	3,190.9	4,482.5	3,797.6	5,080.2	3,637.7	7,140.2
벨기에	27.3	41.2	20.5	11.0	26.6	26.1	44.3	50.3
스웨덴	342.5	305.0	258.7	127.2	263.0	154.9	179.2	290.4
스위스	13.3	107.6	79.2	152.6	82.6	123.0	72.9	37.0
스페인	..	23.4	17.2	10.6	4.0	129.2	148.3	62.5
슬로바키아	0.0	0.0	0.3	0.0
슬로베니아	0.1	0.0
아일랜드	0.5	0.1	..	3.6	0.6	3.1
영국	168.6	2,602.6	550.3	1,487.0	1,485.0	851.2	1,028.1	1,372.0
오스트레일리아	5.1	5.7
오스트리아	1.8	6.2	4.8	9.0	20.8	58.9	123.0	62.6
일본	244.4	110.9	127.7
체코	..	0.0	0.1	0.2	0.2	0.5	1.4	1.7
캐나다	13.8	116.7	191.5	44.6	47.0	265.2	39.6	16.3
포르투갈	22.6	11.9	34.8	10.3	8.4	5.7	54.3	67.1
프랑스	361.9	394.0	889.8	1,120.4	1,862.5	1,985.1	2,138.9	3,415.2
핀란드	37.9	77.0	79.0	27.7	20.2	276.4	210.8	22.2
한국	17.8	16.4	14.9	17.5	17.2	14.7	29.2	20.9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투입한 지역은 약 85억 달러의 아시아이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에도 각각 약 62억 달러와 58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는 2015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2015년 기준 2019년 지원액이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자된 부문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다.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민간재원의 약 75%가 해당 부문에 투입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한 수단은 보증으로, 민간재원의 약 82%가 동원되었다. 기업직접투자도 최근 5년간 약 11%에 해당하는 민간재원이 동원되었으나 보증 수단과의 격차가 매우 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재원이 보증을 통해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입된 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 동원액의 약 54%가 투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에 약 23%, 아시아 국가에 약 14%의 민간재원이 투입되었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입된 부문은 미국과 같이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5년 동안 약 63%가 동원되었다. 그 뒤를 이어 생산 부문이 25%를,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7%를 기록하였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유도한 수단은 크레디트라인으로, 5년 동안 약 55억 달러가 동원되었다. 그 뒤를 이어 보증이 약 16%를, 기업직접투자가 약 14%를 구성하며 미국과 비교해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입된 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 동원액의 약 63%인 34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아시아 지역에 많은 민간재원이 동원돼 약 35%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민간재원 투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기록된 부문은 역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전체의 약 73%에 해당하는 45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생산 부문에 약 16%가 투입되었으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가장 적은 금액이 투입되었다. 수단별로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기록한 것은 집합투자펀드로, 전체 민간재원의 약 36%를 구성하고 있다. 크레디트라인의 경우 기록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입된 지역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로, 각각 전체 투자액의 약 36%를 구성하며 총 73%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동원되었으며 전체의 약 75%를 상회하는 23억 달러가 기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생산 부문이 3.4억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3.3억 달러의 민간재원 동원 효과를 유발하였다. 이때 동원된 민간재원의 약 55%는 크레디트라인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보증의 경우 전체의 약 0.5%에 해당하는 0.1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동원된 민간재원의 약 51%가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는 약 38%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로는 약 9%의 민간재원이 동원되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투입된 민간재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동원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0.69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는 한국의 민간재원이 주로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민간재원 동원이 공동자금투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27> OECD DAC 회원국 내 상위 4개 국가와 한국의 민간재원 동원 현황

(단위: 백만 USD)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여국*		수단**		부문***		수여국*		수단**		부문***		수여국*		수단**		부문***		수여국*		수단**		부문***		수여국*		수단**		부문***	
미국	Eu	42.1	S	..	SI&S	231.1	Eu	533.3	S	30.0	SI&S	567.6	Eu	812.6	S	..	SI&S	426.7	Eu	257.9	S	..	SI&S	148.4	Eu	83.3	S	..	SI&S	237.9
	Af	2,409.3	SiC	38.0	EI&S	3,398.7	Af	1,202.5	SiC	124.0	EI&S	2,667.2	Af	763.8	SiC	..	EI&S	2,873.3	Af	686.6	SiC	..	EI&S	3,326.1	Af	1,202.4	SiC	24.8	EI&S	5,847.9
	L&C	451.7	G	3,527.9	P	852.7	L&C	598.2	G	3,268.3	P	562.7	L&C	758.0	G	4,441.4	P	471.4	L&C	1,570.3	G	3,121.7	P	141.9	L&C	2,476.8	G	5,579.3	P	1,049.1
	As	1,190.8	D	916.7	M	..	As	1,310.7	D	375.3	M	..	As	2,353.2	D	267.2	M	308.9	As	876.6	D	338.6	M	21.0	As	2,863.5	D	755.9	M	5.3
	Oc	..	CL	..			Oc	..	CL	..			Oc	..	CL	..			Oc	..	CL	..			Oc	..	CL	..		
	Un	388.7	CF	..			Un	153.0	CF	..			Un	392.6	CF	371.6			Un	246.3	CF	177.4			Un	514.2	CF	780.3		
프랑스	Eu	32.1	S	14.7	SI&S	110.7	Eu	265.8	S	8.1	SI&S	236.7	Eu	73.6	S	..	SI&S	68.0	Eu	104.8	S	305.2	SI&S	78.1	Eu	153.1	S	79.8	SI&S	229.9
	Af	684.4	SiC	135.5	EI&S	586.6	Af	809.0	SiC	247.3	EI&S	1,145.3	Af	628.9	SiC	336.1	EI&S	1,413.0	Af	1,079.0	SiC	275.0	EI&S	1,168.6	Af	1,290.0	SiC	313.2	EI&S	2,178.6
	L&C	102.4	G	292.5	P	365.4	L&C	320.6	G	314.7	P	309.0	L&C	108.3	G	323.6	P	442.6	L&C	378.6	G	327.4	P	605.0	L&C	1,027.8	G	485.3	P	926.6
	As	299.7	D	..	M	57.7	As	153.0	D	237.1	M	20.7	As	105.1	D	38.6	M	34.7	As	264.4	D	342.8	M	209.5	As	403.6	D	915.3	M	78.3
	Oc	..	CL	677.7			Oc	..	CL	1,055.4			Oc	..	CL	1,286.8			Oc	..	CL	888.5			Oc	..	CL	1,613.7		
	Un	1.7	CF	..			Un	314.1	CF	..			Un	1,069.3	CF	..			Un	312.1	CF	..			Un	540.7	CF	7.8		
영국	Eu	..	S	4.1	SI&S	49.2	Eu	..	S	57.1	SI&S	24.9	Eu	..	S	86.6	SI&S	71.2	Eu	..	S	..	SI&S	6.2	Eu	..	S	161.9	SI&S	20.7
	Af	781.4	SiC	996.8	EI&S	1,390.7	Af	913.1	SiC	412.8	EI&S	1,117.3	Af	633.0	SiC	195.9	EI&S	619.7	Af	488.5	SiC	454.3	EI&S	441.1	Af	586.1	SiC	216.4	EI&S	945.8
	L&C	..	G	250.0	P	47.1	L&C	..	G	216.3	P	241.3	L&C	11.3	G	200.0	P	160.3	L&C	15.5	G	78.0	P	323.1	L&C	22.1	G	45.0	P	264.2
	As	575.7	D	180.5	M	..	As	309.0	D	533.5	M	101.5	As	167.6	D	184.8	M	..	As	272.9	D	205.3	M	172.5	As	577.2	D	527.4	M	141.3
	Oc	..	CL	..			Oc	..	CL	..			Oc	..	CL	..			Oc	..	CL	..			Oc	..	CL	..		
	Un	129.9	CF	55.7			Un	263.0	CF	265.4			Un	39.4	CF	183.8			Un	251.2	CF	290.5			Un	186.6	CF	421.3		
독일	Eu	88.4	S	..	SI&S	..	Eu	34.8	S	..	SI&S	8.7	Eu	80.3	S	74.5	SI&S	37.3	Eu	30.8	S	30.6	SI&S	41.7	Eu	35.6	S	58.9	SI&S	243.3
	Af	53.5	SiC	137.3	EI&S	167.6	Af	39.6	SiC	14.0	EI&S	548.0	Af	108.6	SiC	175.4	EI&S	654.9	Af	105.3	SiC	62.9	EI&S	316.1	Af	180.3	SiC	194.3	EI&S	669.4
	L&C	95.5	G	..	P	221.4	L&C	457.8	G	..	P	0.7	L&C	313.9	G	15.8	P	54.0	L&C	67.0	G	..	P	58.9	L&C	102.1	G	..	P	9.3
	As	88.4	D	0.0	M	0.1	As	39.2	D	4.4	M	14.0	As	128.0	D	279.7	M	11.4	As	235.3	D	162.8	M	31.8	As	559.8	D	174.0	M	35.0
	Oc	..	CL	251.8			Oc	..	CL	553.1			Oc	..	CL	212.1			Oc	..	CL	187.9			Oc	..	CL	523.9		
	Un	63.4	CF	..			Un	..	CF	..			Un	126.7	CF	..			Un	10.0	CF	4.3			Un	79.2	CF	5.9		
한국	Eu	0.0	S	..	SI&S	12.2	Eu	0.0	S	..	SI&S	13.3	Eu	..	S	..	SI&S	8.0	Eu	..	S	..	SI&S	23.1	Eu	..	S	..	SI&S	13.3
	Af	7.3	SiC	..	EI&S	1.2	Af	8.7	SiC	..	EI&S	0.9	Af	5.0	SiC	..	EI&S	1.1	Af	8.3	SiC	..	EI&S	1.0	Af	5.6	SiC	..	EI&S	2.7
	L&C	1.0	G	..	P	3.1	L&C	0.8	G	..	P	2.1	L&C	5.1	G	..	P	5.2	L&C	1.9	G	..	P	3.7	L&C	0.3	G	..	P	1.9
	As	8.9	D	..	M	0.9	As	7.5	D	..	M	0.9	As	4.6	D	..	M	0.4	As	11.1	D	..	M	1.1	As	15.0	D	..	M	2.9
	Oc	0.3	CL	..			Oc	0.1	CL	..			Oc	..	CL	..			Oc	0.0	CL	..			Oc	..	CL	..		
	Un	..	CF	17.5			Un	0.0	CF	17.2			Un	..	CF	14.7			Un	7.9	CF	29.2			Un	..	CF	20.9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28.)

* Eu: 유럽, Af: 아프리카, L&C: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As: 아시아, Oc: 오세아니아, Un: 불특정

** S: 신디케이트펀드, SiC: 집합투자펀드, G: 보증, D: 기업직접투자, CL: 크레디트라인, CF: 공동 자금투입

*** SI&S: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EI&S: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P: 생산, M: 다부문

2. 주요 사례

OECD DAC는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민간부문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이익을 보는 수동적 대상인 수혜자였다. 하지만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 재원을 제공하는 자원 제공자이자, 개발 이니셔티브 등에 참여하는 참가자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민관협력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타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민간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3-28〉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역할	내용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이 개발협력 활동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금융지원, 역량개발, 기술지원, 정보제공, 지식공유 활동 포함
이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개발 실현
개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전략을 개혁하여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개발친화적으로 변화
자원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이 금융, 전문성 또는 다른 전략적 자원에 투자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화, 지식공유,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와 같은 개발관련 이니셔티브에 참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시민사회, 기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다자기관이 사업관행을 바꾸기 위한 대상으로 선택

출처: OECD(2018, p.42)에서 재인용

가.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1) 목적 및 주요 내용

미국 정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이용을 늘리고 전력거래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2013년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파워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6천만 개의 신규 전력망 연결을 달성하고 3만 메가와트(MW)의 신규 발전 용량 생산을 목표로 하며, 170개 이상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9월 기준, 12,000 MW 이상의 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34개 프로젝트에 자금조달을 마쳤고, 1.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파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국가 간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전력 이동을 위해 송전 로드맵(Power Africa Transmission Roadmap to 2030)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접근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간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송전 로드맵은 △송전사업 규모 파악 및 지연 위험 등 정보 제공을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협력 구축, △개발 파트너들의 기여도 강조를 통해 우선사업 지원 촉진의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골자로 개발파트너 간 담화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2개), 서부(4개), 남부(4개)로 나누어 제안했으며 이는 7,200km 이상의 송전로, 18개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구별된다. 이렇듯 송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파워 아프리카는 지역내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력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국가 기반으로 접근하던 이전의 對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지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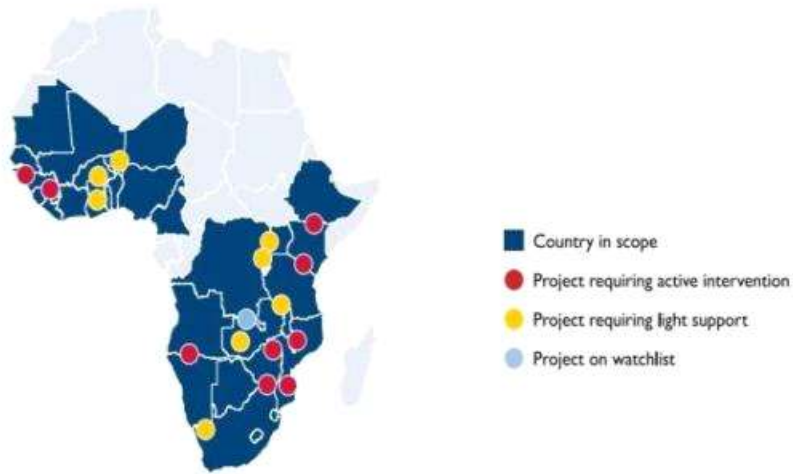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파워 아프리카는 우선 순위 프로젝트들의 병목 현상을 △프로젝트 활성화 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젝트 시행의 3가지로 식별한다. 즉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허가와 정치적 참여 등 이해관계자 조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제반 환경 조성, 재원 조달을 위한 양허성 자금조달 또는 그러한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품질, 예산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해관계자 조정은 프로젝트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정부, 지역내 전력관계자, 양자 및 다자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송전 프로젝트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 일례로 파워 아프리카의 Mombasa-Nairobi 송전선 프로젝트(481km, 220/400kV)는 통행권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3년 이상 지연되기도 하였다. 동 사례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참여가 토지 획득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인 Lake Turkana 송전선 프로젝트(428km, 310MW)는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었다. 계약자가 사업 후반, 파산 위기에 놓이며 중단되었던 동 프로젝트는 정부가 새로운 컨소시엄을 형성한 뒤에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렇듯 파워 아프리카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각 전력망의 기존 메커니즘과 개발파트너의 지원, 그리고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PIDA) 등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분야와의 협업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USAID는 보조금과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 전력 공급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력체인 OnePower는 USAID의 지원을 통해 레소토 정부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에 성공하였으며, Renewvia Energy는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확장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태양광 기업 중 하나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그림 3-18]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대상국별 우선 프로젝트



출처: USAID(2018a, p.4)

<표 3-29>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구분	내용
분류 (OECD DAC)	■ 에너지
주요 성과 목표	■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역 및 국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세네갈 등 40개 국
사업 기간	■ 2013 - 2030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만 메가와트(MW) 이상의 신규 발전 용량 생산 ■ 6천만 개의 신규 전력망 연결 ■ 에너지 섹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문제 해결
협력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 기관(USAID, USTDA, DFC, EXIM 등) ■ 개발파트너(AfDB, WB, KOICA, Korea EximBank, JICA, GIZ, EU 등) ■ 민간기업(Mitsubishi Corporation, Gridworks, Weldy Lamont 등)
협력 방식 및 내용	■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88 MW 전력 생산을 위한 134개 프로젝트 자금조달 완료 ■ 1.1억 명 이상의 신규 전력 사용자 ■ 2.5천만 가구와 기업의 전력 연결 ■ 2,300 km 송신망 자금조달 완료 ■ 20개 국가에서 70명 이상의 고문가 활동
----	---

출처: USAID(2021, p.2)

나. M-PESA 프로젝트

1) 목적 및 주요 내용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설립 초기부터 민간부문 개발을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인지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지원의 일환인 도전기금(Challenge Fund)은 초기에는 영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규모를 확장하여 현재는 개발 협력 분야에도 적극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전기금 중 하나인 금융심화도전기금(Financial Deepening Challenge Fund, FDCF)을 통해 시작된 보다폰(Vodafone)의 M-PESA는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머니의 확산을 유도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보다폰은 영국에 본사를 둔 이동통신 기업으로, M-PESA는 2005년 보다폰의 CSR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케냐 이동통신 사업자인 사파리콤(Safaricom)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07년 본격적으로 상업화하였으며, 2021년 3월 기준 4,800만 명이 사용하는 아프리카 최대, 세계 최초의 주요 모바일 머니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3-30〉 M-PESA 관련 연혁

연도	내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CF의 100만 파운드 입찰 성공 ■ Vodafone과 Safaricom, 아프리카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M-PESA 개발 ■ Sagentia UK에서 M-PESA 기술 플랫폼 개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중앙은행에 M-PESA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요청 ■ 나이로비, 티카 등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중앙은행, 소액금융법 발표 ■ 케냐 중앙은행에 M-PESA 송금서비스 승인 요청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중앙은행, M-PESA 법률구조 감사 및 승인 허락 ■ M-PESA 정식 출시 ■ M-PESA 가입률 급증 ■ M-PESA, 카드없는 ATM 출금서비스, 청구서 및 급여 지급 서비스 도입

12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상품 출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은행들, 재무장관을 통해 M-PESA 폐쇄 압력 ■ 재무부 장관, M-PESA 감사 요청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ESA 감사 통과 및 법률적으로 M-PESA와 시중은행 구분 ■ YuCash 모바일 머니 서비스 진출 ■ Western Union, M-PESA를 통한 국제 송금 허용 ■ 모바일 뱅킹과 에이전시 뱅킹을 위해 은행법 개정 ■ 범죄수익 및 자금세탁방지법 통과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tel Money와 Tangaza Pesa 모바일머니 서비스 진출 ■ 의회, 모바일 머니 승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중앙은행, 전자 화폐 규정 공공자문회 개최

출처: Elsie Onsongo(2019, p.376)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M-PESA의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국의 자금 지원과 더불어 케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케냐 정부는 시중 은행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과 함께 M-PESA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전무하였던 케냐 관련 규제를 신설해 M-PESA에게 법적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보타폰과 사파리콤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케냐 전역에 ATM을 공급하였고 이전에는 없던 신규 프로젝트(모바일 머니)에 따른 대중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쳤으며, 핵심 인력인 에이전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였다. 즉 민간과 공공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M-PESA는 △높은 모바일 서비스 활용도를 통한 금융 접근성 확대, △현지 인프라 수준 및 환경 요소를 활용한 적정 수준 기술 도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영역 확대, △지속적인 고객 교육, △규제 당국과의 협업, △중소기업, 은행들과의 파트너십 형성(강신원, 2015, pp.75-76.; 김명숙, 2018, pp.16-17) 등을 바탕으로 케냐 내 6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케냐 모바일 머니의 98%를 장악하고 있다. M-PESA가 케냐에서 중요한 이유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 케냐 정부의 세금 징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케냐 정부는 자국의 낮은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고, 세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M-PESA를 통한 세금 납부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1.1백만 달러의 세금이 모바일 머니를 통해 납부되고 있다(Kenya Revenue Authority [KRA], n.d.).

〈표 3-31〉 M-PESA 서비스

구분	내용
분류(OECD DAC)	■ 통신
주요 성과 목표	■ SDG 9(혁신과 인프라 구축)
지역 및 국가	■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레소토, 가나, 인도 등
사업 기간	■ 2005년 - 현재
예산	■ 초기 DFID 지원액: 100만 파운드 ■ 초기 보다폰 투자액: 100만 파운드
목적	■ 이머징마켓 진출 ■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협력 주체	■ DFID, Vodafon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등
협력 방식 및 내용	■ DFID: 금융심화도전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성과	■ 금융 포용성 향상 e.g. 케냐: 공식 금융 서비스 이용 비율 26.7%(2006) → 82.9% ■ 사업 초기의 단순 송금 서비스에서 상품결제 등 경제 활성화 서비스로 확산되었으며 농업, 교육, 금융, 건강, 저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관계자와 협력 구축 ■ M-PESA 에이전트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출처: Ndung'u(2021, pp.1-6)

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

1) 목적 및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민관 일체가 된 All Japan 체제를 구축하여 각 중앙부처와 무역진흥기구, 국제협력은행, 국제협력기구, 수출투자보험 등 모든 산하기관이 유기적으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자금 집행,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형성 지원, FS 창설 및 제공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일본 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 경제 불황을 해결할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민관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프로젝트가 있다. DMIC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인도와 일본 정부 간 사상 최대의 투자 협력사업이다.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6개 주, 인도 영토의 약 16%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산업단지와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의 계획으로 구성된다(송영철, 김규관, 조충제, 2010, p.3). 특히,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80%가 해당 사업지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자국 기업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하였듯 민관협력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에 이해관계자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일본은 인도의 이해관계자들 간 상이한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T/F 팀을 조성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일본은 경제협력특별조건(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STEP)을 통해 공항, 항만,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서 일본의 기술 사용을 조건화하며 일본의 기술력과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찌제작소 그룹, 도시바 그룹 등의 4개 컨소시엄 그룹이 형성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DMI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6개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모두 일본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공사(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DMICDC)³²⁾의 지분 26%를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소유하고 있어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의 스마트시티 개발 의사(조충제, 2015, pp.56-57)에도 일본 기업의 참여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2〉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

구분	내용
분류(OECD DAC)	■ 운송, 산업
주요 성과 목표	■ SDG 9(혁신과 인프라 구축)
지역 및 국가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하리아나(Haryana), 마드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
사업 기간	■ 초기 계획은 1차(2008-2013), 2차(2014-2018)이었으나 현재까지 진행 중
예산	■ USD 900억
목적	■ 델리와 뭄바이 간 약 1,500km의 화물전용철도 건설 ■ 공업단지, 물류단지, 발전소, 항만, 상업시설 등 투자/산업 지역 개발 ■ 친환경 신도시 건설

32) 2020년 2월 인도 전역의 산업 회랑을 포함하기 위해 국가 산업회랑 개발공사(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Corporation, NICDC)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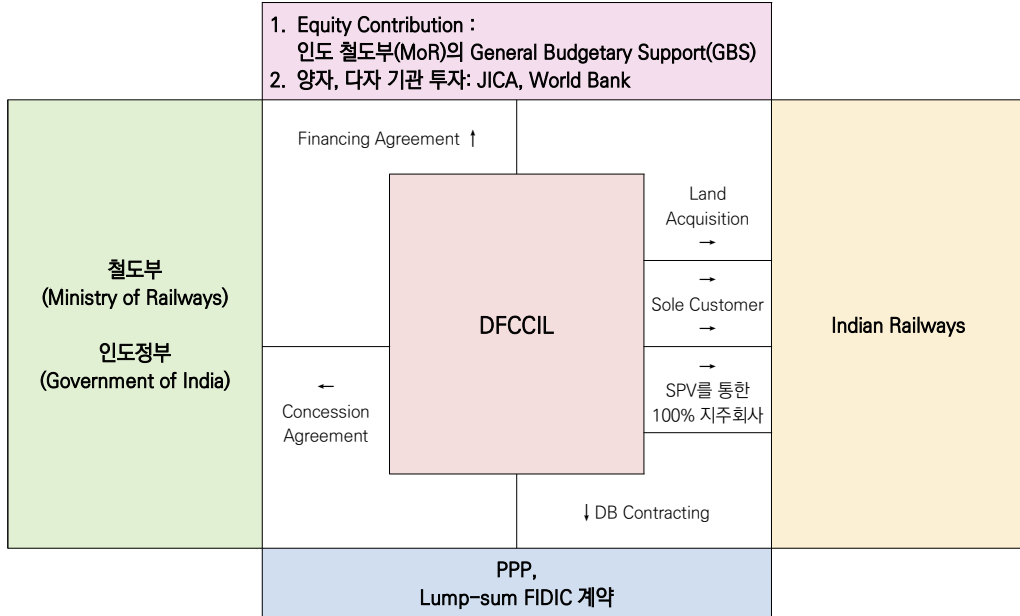
협력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BIC, JICA, JETRO 등 ■ 민간기업(미쯔비시 중공업, 히타찌제작소 그룹, 도시바 그룹, 닛기 등)
협력 방식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회랑(델리-뭄바이)에서 벗어나 국가 전반으로 확대돼 5개의 신규 회랑(Amritsar-Kolkata, Bangalore-Mumbai, Vizag-Chennai, Chennai-Bangalore) 추가

출처: 송영철, 김규관, 조충제(2010, pp. 3-9), The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logs/voices/industrial-corridor-programme-as-a-key-catalyst-for-manufacturing-driven-economic-growth-across-india/>, 검색일: 2021.10.26.)

DMIC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세부 프로젝트로, 일본 정부는 화물전용 회랑(Dedicated Freight Corridor, DFC)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DFC는 인도 최대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로, 제조업, 상공업 중심의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개발계획이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6개의 화물전용 회랑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 화물전용회랑공사(Dedicated Freight Corrido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DFCCIL)를 특별목적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동부(Ea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 EDFC)와 서부 회랑(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 WDFC)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부의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서부의 경우 일본 국제협력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서부 회랑의 수주는 전부 일본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자금을 지원할 때 경제협력특별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 또한 자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에 참여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선점 전략을 추구하며 입지를 다졌으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 도모를 적극 지원했다. 이는 일본의 ODA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림 3-19] 화물전용회랑공사 구조 및 계약 약정



출처: DFCCIL(2014, p.2)

[그림 3-20] 화물전용회랑 노선표



출처: DFCCIL(2014, p.2)

〈표 3-33〉 동서부 화물전용회랑 프로젝트

구분	기관	구분	내용
동부선	세계은행	구간	■ 루디아나(Ludhiana) - 무굴사라이(Mughalsarai)
		투자액	■ 1,850억 루피
	MoR	구간	■ 무굴사라이(Mughalsarai) - 손 나가르(Son Nagar)
		투자액	■ 368억 루피
	PPP 방식	구간	■ 손 나가르(Son Nagar) - 단쿠니(Dankuni)
		투자액	■ 1,500억 루피
서부선	JICA	계약일과 투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Ⅰ) : 2009년 10월 27일, 26억엔 ■ 1단계(Ⅱ) : 2010년 3월 31일, 903억엔 ■ 2단계(Ⅰ) : 2010년 7월 26일, 16억엔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Ⅰ) : 0.01%(만기 40년, 상환유예기간 10년) ■ 1단계(Ⅱ) : 0.20%(STEP 대출 적용, 만기 40년, 상환유예기간 10년) ■ 2단계(Ⅰ) : 0.01%(만기 40년, 상환유예기간 10년)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하리아나(Hararyana), 라자스탄(Rajasthan), 구자라트(Gujarat) ■ 2단계 :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하리아나(Hararyana),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

출처: KOTRA, JICA 홈페이지(검색일: 2021.11.21.)

라.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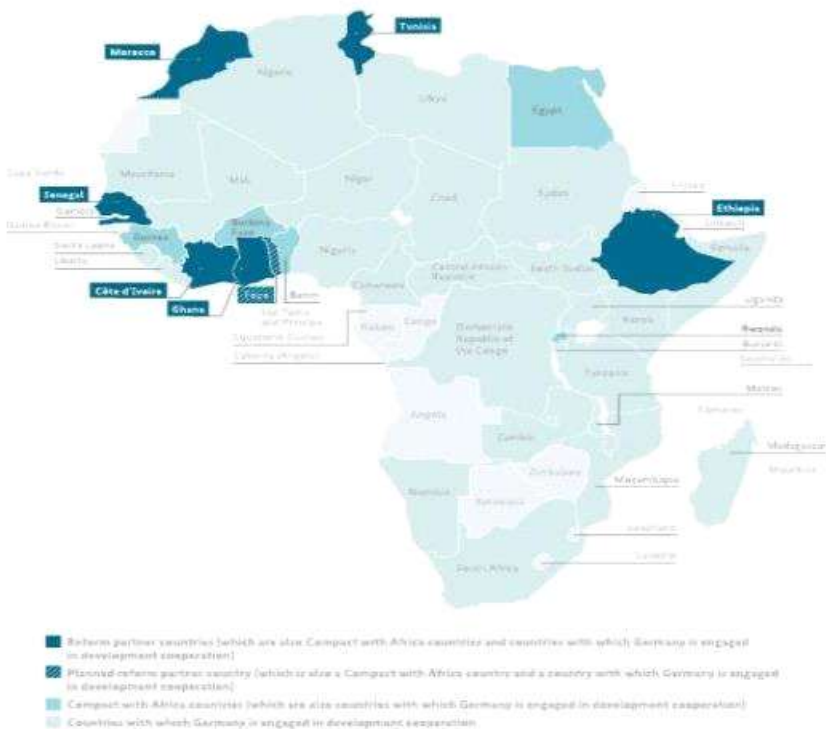
1) 목적 및 주요 내용

2017년 1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의 아젠다 2063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with Africa)이 발표되었다. 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28개국의 동아프리카 협력 전략의 기반이 되는 계획으로, 공정 무역, 민간 투자 활성화, 상향식 경제 개발, 기업가 정신의 강조 등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프리카 청년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아프리카 내 독일 기업들의 자문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민간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를 위한 펀드와 채권 개발 등을 기반으로 독일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에서 특히 민간부문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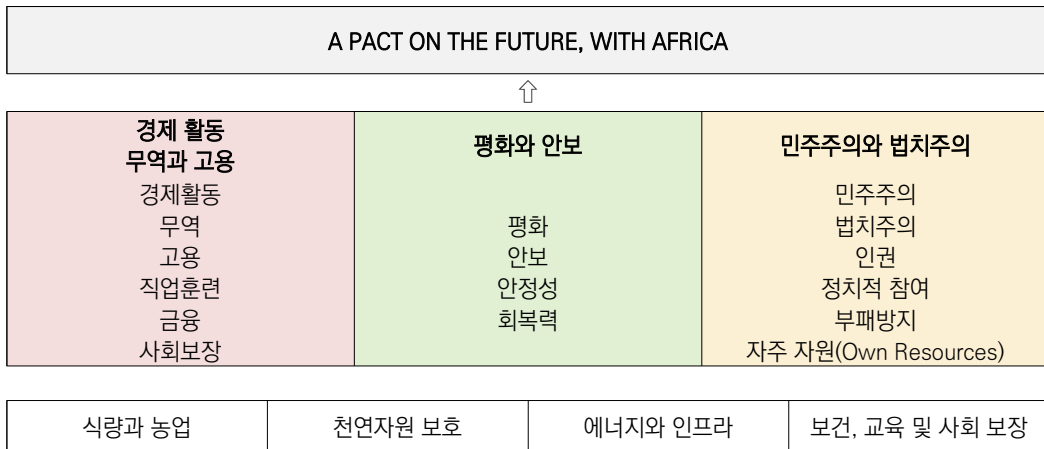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은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아프리카 각 국가마다 지원하는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가나와 코트디부와르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튀니지의 경우 금융 및 공공분야, 에티오피아의 경우 민간분야와 농업, 세네갈의 경우 노동법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각 국가의 발전계획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입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가나에서는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분야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고용을 위한 투자'를 출범시켜 아프리카 내 고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독일 정부는 자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독일과 유럽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독일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80개가 넘는 독일과 유럽의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1]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대상국



출처: BMZ(2021, p.2)

[그림 3-22]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구조



출처: BMZ(2017, p.12)

<표 3-34>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마셜플랜

구분	내용
분류 (OECD D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부문
주요 성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17(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역 및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6개국(튀니지, 가나,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모로코, 세네갈) ■ 토고(협약의 시작)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 현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ricaConnect: 최대 4억 유로 ■ AfricaGrow: 최대 4억 유로 ■ Africa Business Network: 최대 2억 유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내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협력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개 이상의 독일, 유럽 및 아프리카 민간기업 ■ EU, 일본, 아프리카 6개국, 세계은행 등
협력 방식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6개국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4억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추가로 6억 유로 제공 ■ AfricaConnect: 독일 또는 유럽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에 대해 최대 400만 유로의 보조금 제공 ■ AfricaGrow: 아프리카 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지원 ■ Africa Business Network: 독일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 AfricaConnect를 통해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000명의 근로자 중 65% 여성 고용 ■ 튀니지: WB, 프랑스, 일본과 함께 튀니지 국영 기업 및 공공행정 개혁 이행 지원 ■ 모로코: 국가 금융 통합 전략(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NFIS) 수립 지원 등

출처: BMZ(2021,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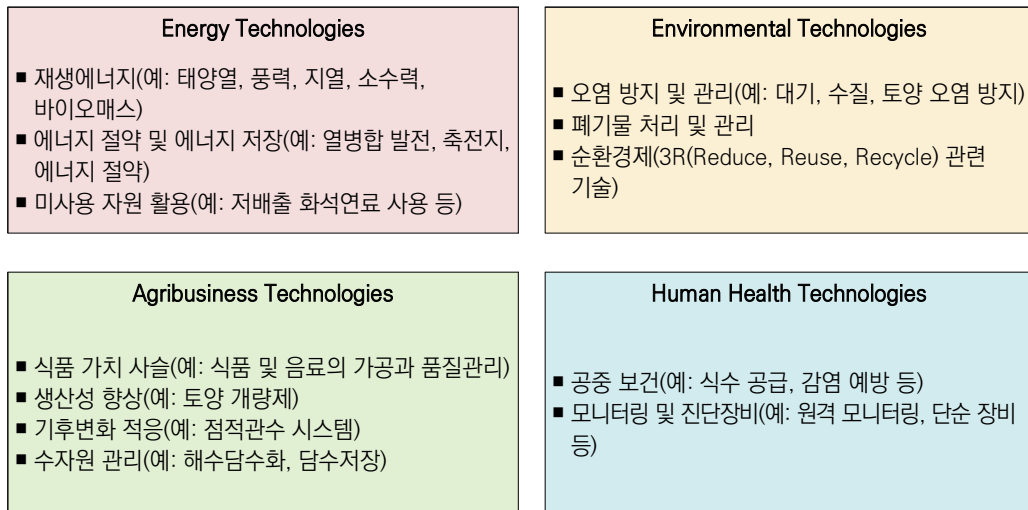
마. Sustainable Technology Promotion Platform, STePP

1) 목적 및 주요 내용

2020년 11월, 일본의 외무성은 일본의 기술과 제품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400만 달러 기금으로 STePP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유엔산업개발기구 일본투자진흥사무소(UNIDO IPTO Japan)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STePP은 일본의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기업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이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ePP에 등록되는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경쟁우위 산업, △UNIDO의 산업 발전 의무 준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정도, △기술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뒤에 등록된다. STePP 플랫폼은 개발도상국의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일본 기업을 홍보하고 일본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3-23] STePP의 카테고리



출처: UNIDO IPTO Japan(2021, p.3)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STePP은 2021년 11월 현재 아시아 6개국과 아프리카 6개국에서 13개의 일본 기업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전수되고 있는 기술과 협력 기업들은 하단의 표와 같다.

〈표 3-35〉 STePP의 프로젝트 목록

국가		내용
아시아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JTOP Co.,Ltd. ■ 내용: 강물이나 빗물을 정수하는 기술 전수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Solar Wind Technology Inc. ■ 내용: 다수의 이슬람교도는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치아염소산염 스프레이 기술 전수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Marusyo Sangyo Co.,Ltd. ■ 내용: "InviroShield M5"라는 가시광 반응성 광촉매 코팅 기술 도입을 통해 실내 감염 경감
	네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Marusyo Sangyo Co.,Ltd. ■ 내용: "InviroShield M5"라는 가시광 반응성 광촉매 코팅 기술 도입을 통해 실내 감염 경감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AGC Inc. ■ 내용: 치아염소산수 발전기, 의료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공 ■ 민간기업: Tromso Co., Ltd. ■ 내용: 물 공급 및 위생센터(CRWSS)에서 수자원을 공급받는 병원과 학교에 빌트인 정수기 설치 사업
아프리카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TSP TAIYO INC. ■ 내용: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모바일 검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PCR 검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Marusyo Sanyo Co.,Ltd. ■ 내용: "InviroShield M5"라는 가시광 반응성 광촉매 코팅 기술 도입을 통해 실내 감염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Kinsei Sangyo Co.,Ltd ■ 내용: 의료폐기물 소각로 설치를 통해 2차 감염 방지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Chuwa industrial Co., Ltd. ■ 내용: 의료폐기물에 대한 무연 소각로 기술 이전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Hinode Sangyo Co., Ltd. ■ 내용: Hinode Micro Bubbler System(HMBS), 폐수 처리 시설 및 기술 이전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Techo Media Co., Ltd. ■ 내용: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중증 감염병 환자의 신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분석기 지원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Chuwa Industrial Co., Ltd. ■ 내용: 의료폐기물에 대한 무연 소각로 기술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Terios-Tec Co.,Ltd. ■ 내용: 소독수 제조, 보급을 위한 치아염소산수 발전기 전수 및 의료진 대상 관련 내용 교육 등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Saraya Co., Ltd. ■ 내용: 알코올 손 소독제 젤 양산 기술 전수 및 의료진과 지역주민 대상 위생 교육 제공 	

출처: UNIDO Japan 홈페이지

(http://www.unido.or.jp/en/activities/technology_transfer/stepp-demo-results/, 검색일: 2021.11.23.)

13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 위생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기술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프로젝트는 협력 주체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는 플랫폼 제공, 민간기업은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표 3-36〉 STePP

구분	내용
분류 (OECD DAC)	■ 산업
주요 성과 목표	■ SDG 17(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지역 및 국가	■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베트남 ■ 아프리카 :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사업 기간	■ 2020 - 현재
예산	■ 400만 달러
목적	■ 일본 기술과 기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일-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촉진
협력 주체	■ 일본 외무성, UNIDO IPTO ■ 일본 중소기업 ■ 개발도상국 정부, 중소기업, NGO 등
협력 방식 및 내용	■ 일본의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업 등 기관 간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협력 파트너 매칭 ■ 보건, 위생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에너지 등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기술 및 정보 제공
성과	■ 약 100개의 일본 기업과 110개 이상의 기술 홍보 ■ 아프리카와 아시아 12개국에 13개의 일본 기업과 기술 전수

출처: UNIDO Japan 홈페이지

(http://www.unido.or.jp/en/activities/technology_transfer/technology_db/, 검색일: 2021.11.23.)

바. Dutch Good Growth Fund, DGGF

1) 목적 및 주요 내용

2004년 네덜란드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재원을 제공하고 네덜란드 기업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³³⁾과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 등이 실행하는 임팩트 펀드로 Dutch Good Growth Fund가 출범한다. DGGF는 특정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기업과 對개발도상국 수출입업무를 하는 네덜란드 기업,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OECD 사회적 책임 지침을 준수하고, DGGF 대상국의 고용과 생산성, 지식 이전에 기여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표 3-37〉 Dutch Good Growth Fund 대상국

구분	내용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코트디부아르, 카보베르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중동 및 북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예멘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소보, 몰도바
중앙아메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테말라, 아이티, 니카라과
남아메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수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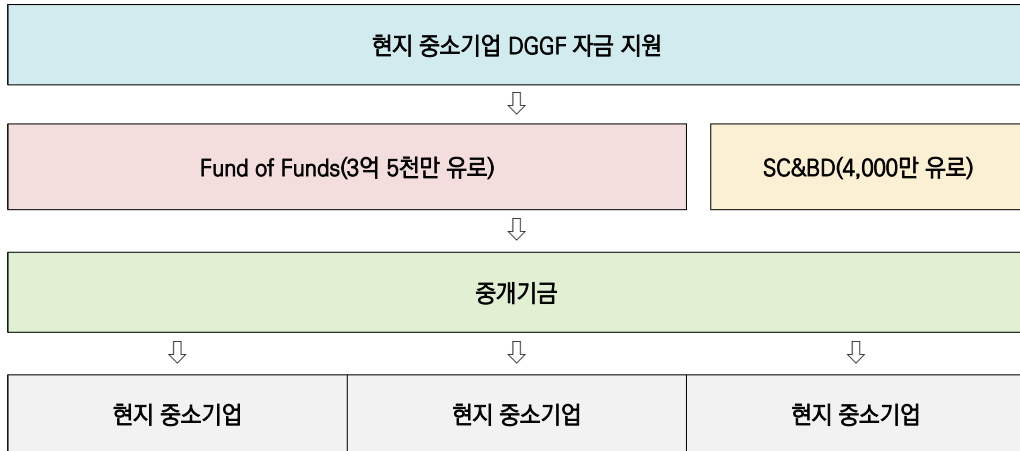
출처: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홈페이지
(<https://english.dggf.nl/countries>, 검색일: 2021.11.23.)

2) 주요 성과 및 시사점

DGGF는 투자 위험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국의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위험을 경감시켜 투자를 촉진시키며, 이를 통하여 DGGF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OECD 사회적 책임 지침 이행 준수 등을 요구하여 공통의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에 소외되어있는 개발도상국과 네덜란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여 네덜란드와 개발도상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3) Investment International,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업청으로부터 DGGF 및 협력 업무 위임

[그림 3-24] Dutch Good Growth Fund의 현지 중소기업 투자지원 모델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2019, p.1)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업지원 기구와 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제공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현지에서 활동 때 사회적 책임 지침을 준수하고 대상국의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을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표 3-38> Dutch Good Growth Fund

구분	내용
분류 (OECD DAC)	■ 산업
주요 성과 목표	■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역 및 국가	■ DGGF는 특정 국가(DGGF 대상국)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며 2017년 알바니아, 보스니아, 태국, 몰디브, 마케도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제외
사업 기간	■ 2014 - 현재
예산	■ 3억 5천만 유로
목적	■ DGGF 대상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현지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협력 주체	■ 네덜란드 Invest International,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수출신용기구), PwC, Triple Jump ■ 네덜란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GGF 대상국의 중소기업
협력 방식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지원: DGGF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네덜란드 기업의 프로젝트에 최대 1,500만 유로까지 보증, 대출, 투자 등을 제공 ■ 수출지원: 대상국의 고용, 생산성, 지식 이전에 기여하는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최대 3,000만 유로의 수출신용보험 또는 최대 500만 유로의 재정지원 ■ 수입지원: DGGF 대상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하는 네덜란드 기업에게 공급 가치사슬 실현 및 사업체 확장을 위해 보증 또는 대출을 제공하며 최소 50만 유로에서 최대 1,500만 유로까지 지원 가능(15년 만기, 시장 이자율 수준) ■ 현지 중소기업 투자: DGGF 대상국의 재정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현지 중소기업에 중개자금, 초기 자본 및 사업개발(Seed Capital and Business Development, SC&BD)로 지원 제공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개국에서 8,2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 수혜 ■ 6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출처: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홈페이지
(<https://english.dggf.nl>, 검색일: 2021.11.2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III장에서는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참여(PSE)의 의미와 전략, △주요 DAC 회원국 기업협력 전략 및 정책, △DAC 회원국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부문참여(PSE)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각 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는 PSE를 개념, 범위, 의미, 전략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PSE를 ‘개발성고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활발히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방식’으로 정의하였다. PSE는 PSD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로, PSC에서부터 PSP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PSE는 국제사회의 원조 관점이 호혜주의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재원 확보, △개발협력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수원국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 유도라는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PSE는 ‘기업의 직접 참여’ 및 ‘민간 투자자, 기금, 금융기관의 참여’로 크게 구분된다. ‘기업의 직접 참여’는 그 목적과 메커니즘 등에 따라 △정책대화, △지식공유, △기술협력, △역량개발, △재정지원으로, ‘민간 투자자, 기금, 금융기관의 참여’는 △혼합금융, △성과기반 금융, △임팩트 투자로 구분된다. PSE는 정의상 모든 수단과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지원대상이나 기관 또는 참여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나, 크게 △개발협력 공동체의 활용, △국가 단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PSE 실행, △PSE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결과, 영향, 투명성 확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 분야에 수렴한다. PSE는 수원국의 경제·사회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공여국 공공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효율적인 전략이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 DAC 회원국의 PSE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국가의 PSE 담당 주요 기관, 목표, 비전, 분야, 전략, 정책, 원칙 등을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의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결과는 <표 3-39>과 같다.

〈표 3-39〉 주요 DAC 회원국 기업협력 전략 및 정책

국가	구분	내용
미국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이 궁극적으로 대외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전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자립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및 파트너십 체결 ■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활동 우선시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E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상황 및 수준 고려 ■ 파트너십 체결 시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응 ■ 가장 취약한 그룹에 더 나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타겟팅(Targeting) ■ 금융 및 비금융수단 혼합 ■ 수원국 사업환경 개선 등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그리고 자주 참여하기 ■ 계획 및 사업 전반에 걸쳐 PSE 참여에 대한 유인 제공하기 ■ 민간부문 잠재력을 활용하는 접근법과 수단 사용 확대하기 ■ PSE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에 기반하여 행동하기
호주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DFAT)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 ■ 원조 사업을 통한 호주 국익 달성
	핵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개발(PSD) ■ 인적개발(Human Development)
	핵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무역원활화, 국제경쟁력 강화 ■ 농업, 어업, 물 ■ 효율적인 거버넌스(정책, 기관, 기능 등) ■ 교육 및 보건 ■ 회복력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위험 감소, 사회적 보호 ■ 성평등, 여성권리 강화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나은 사업지원 환경 구축 ■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축을 주도하는 주요 시장 및 분야 강화 ■ 개별사업 발전효과 극대화 등
일본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 독일 투자개발공사(DEG) ■ 독일국제협력공사(GIZ)

14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qua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향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도전과제들을 더욱 전략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입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발협력에 새로운 질을 도입하기 위한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행동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 개혁에 참여하는 수원국에 지원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공정무역을 위한 올바른 조건 도입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PSE 사업 우선시 ■ 이주민의 PSE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 '미텔슈탄트(Mittlestand)'라 불리는 자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PSE에 적극적으로 활용 ■ 기존 독일 정부에 의해 제공되던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PSE 활용 ■ PSE 담당 직원에게 권위 및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원국의 상황, 수요, 우선순위 등에 PSE가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조정 ■ 민간부문이 개발협력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유도 등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BuZa) ■ 네덜란드 기업청(RVO) ■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예방 및 빈곤감소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기후행동 ■ 네덜란드의 국제 소득능력(Earning Capacity) 강화
네 덜 란 드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중동 등 불안정한 지역으로의 협력 비중 확대 ■ 교육, 고용, 학생 및 여성을 위해 연간 약 6,0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실시 ■ 시장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국제협정 확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강화 ■ 혁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 및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식 외교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정책 및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적극적인 소통 실시 ■ 금융 및 비금융수단 혼합 ■ 연속성(Continuity)과 참여 메커니즘 개발 사이의 균형 조정 ■ 민간부문의 관심사와 개발수요 간 균형 조정 ■ ODA의 일부로서 민간부문에 재정적 지원 시, 본국 또는 EU 원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 ■ 더 복잡한 PSE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 등
스 웨 덴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MFA) ■ 국제개발협력청(Sida) ■ 스웨덴펀드(Swedfund)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과 억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 창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의 이행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 준수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장기적 관점에서 수준 높은 교육 제공 ■ 건강과 복지 향상 ■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목적용 먼저 설정하고 이에 최적화된 협력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개발협력효과 제고 ■ 비구속성 원조를 통해 국내 상업적 이익 증진과 개발목적 간 갈등 및 혼란 등을 사전에 제거 ■ 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부터 환경, 보건, 거버넌스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PSE 활동 장려 ■ 다수의 PSE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보 ■ 지속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적극적인 대화 실시 ■ PSE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파트너와 협업 수행 ■ 더 복잡한 PSE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 등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과의 모든 파트너십이 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되도록 설계 ■ 민간부문에 빈곤감소 외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감을 지닐 것을 요구 ■ PSE가 일부 특정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 수원국 시장에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널리 활용되도록 유도 ■ Sida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효과가, Sida와 민간부문이 각각 수행했을 때의 성과보다 더 크도록 기획
개발	주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수원국 경제개발 주요 동력 육성 ■ 수원국 민간부문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산업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공여국 및 수원국 간 정책대화
	핵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 무역과 투자 촉진 ■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 등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투자금융(PSIF) 활용 ■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수원국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빈곤층(BOP) 시장 개발 지원 ■ FDI, 역량강화 연수, 초청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전파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셋째, 본 연구는 DAC 회원국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PSE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여국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국제개발협력은 민간기업의 연계 강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재원의 동원 방식은 여섯 가지 수단으로 측정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DAC 회원국들의 양자지원과 개발은행 등 다자기구의 동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4 대 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었던 민간재원은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까지 확대되었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 동원 효과가 있는 수단은 보증이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수단들의 증가율이 보증보다 높기에 향후 수단 간의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민간재원이 투자된 부문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였고, DAC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이는 전체 동원액의 46.6%에 해당한다.

끝으로, 본 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PSE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미국 USAID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또한 PSE에 관한 정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PSE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전략, 원칙,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 KOICA의 IBS 및 CTS,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사업 등이 PSE 범주에 속하나, PSE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PSE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USAID처럼 큰 틀에서 PSE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PSE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인 수원국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 USAID는 이를 운영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독일 또한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행동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는 공여국 정부 및 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수원국의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PSE의 촉매효과를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PSE로 인한 효과를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하게 수치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절에서 보듯 동원 및 레버리지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개발되고 있으나, 그 외 지식이전이나 정책도입을 통한 간접적인 동원효과를 갖는 촉매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을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PSE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PSE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 개발협력 관계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선회되고, 최근 ESG와 같은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원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바, 스웨덴의 사례에서도 같이 더 복잡한 PSE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는 필요하다. 다섯째, 수원국에 기업환경 조성 시 우리나라 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일본기업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기업 맞춤형 투자환경을 수원국에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민관협력 사례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프로젝트 환경 조성이다. 일본의 경우 개발재원을 제공할 때 경제협력특별조건을 제시하여 자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제안, 타당성 조사, 기금 형성 등 사업개발단계부터 심도있게 개입하며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다. 둘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범국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나 산업회랑과 스마트시티 등 프로젝트간의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기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기업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셋째, 플랫폼의 제공이다. 일본의 STePP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들이 타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자 기업을 전세계에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다. 네덜란드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정보의 공유는 기업들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해 앞으로 더욱 많은 민간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다. 네덜란드 사례는 정부가 단순히 재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조건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높아지는 사회적 책임 인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공여국 간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부문(기업) 연계 전략(안)



제1절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 참여전략 수립의 배경



1.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

기존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개발협력의 방향은 최근 들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중에서도 기업에 초점을 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 공여기관에서도 PSE를 개발협력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6).³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PSE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의 이해와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개발협력에 있어 정부와 기업이 각각 상대에 대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어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다.

먼저, 정부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 오랜 기간 동안 개발협력의 주체로 활동해왔던 정부는 수원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원국의 정치·행정·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조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전반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과 지식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USAID, 2019: 15).

민간기업은 무엇보다 풍부한 재원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그리고 해외 기업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혁신성을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의 개발협력 전략목표를 추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강점을 갖는다(DFAT, 2015: 11; OECD, 2016: 11; USAID, 2019: 15).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는 여러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4) PSE의 개념에서 지칭하는 “민간부문”은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영역을 내포하지만, 개발협력에서 사용되는 민간부문은 기업부문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PSE 정책문건은 민간부문의 범위를 비영리조직(NGO)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자금(Venture Fund)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과 법인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PSE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PSE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USAID, 2019: 6).

첫 번째, 공여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참여는 개발협력에 대한 정부의 재원을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발협력 이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여국의 원조 자원 규모를 국가 GNI(Gross National Income)의 0.7%로 권고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곧 실제 투입되는 개발 재원이 국제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간기업의 재원을 추가함으로써 공여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격차(Financing Gap) 문제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³⁵⁾ 정부 재원과 민간기업의 재원이 더해질 경우, 공여국 정부는 의도한 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역시 높일 수 있다(오수현, 2015).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이미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두 번째, 민간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발협력에의 참여는 자국 내로 한정되었던 CSR·CSV 활동 영역과 범위를 개도국까지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CSR·CSV를 이행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협력을 통한 민간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이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개도국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준다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 '개발과 지역사회 공헌·가치 창출' 간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수원국과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게 된다(김성규, 2014; 김민희·백석훈, 2021).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는 개도국 내 CSR·CSV에의 기여 효과 이외에 참여기업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개발협력을 통한 민간기업의 CSR·CSV 참여는 해당 기업이 개도국 현지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특성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같은 경험은 향후 기업의 개도국에서 사업·투자 결정을 위한 위협요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비단 자국 정부와의 협력의 틀 내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국제기구와 국제개발은행(MDB) 그리고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양평섭 외, 2019).

세 번째, 수원국 관점에서 볼 때, 공여국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여국 정부 중심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공여국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개발 자원 투입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국가 개발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개발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원국은 국가의 사회 및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35) 2019년 UN은 SDGs 달성에 필요한 자원격차의 연간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https://www.un.org/press/en/2019/dsgsm1340.doc.htm> 참조.

〈표 4-1〉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분야 진출의 기대 효과

정부	기업	수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격차 해소 ■ SDGs 이행의 효과성 제고 ■ 정부-기업협력 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SR·CSV 이행 ■ 기업 이미지 제고 ■ 개도국 리스크 경험 및 관리 ■ 기업 해외진출 확대 및 국내 경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 개발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경제개발 촉진

2. 정부-기업 간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지난 몇 년간 개발협력분야에서 이루어진 정부-기업협력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량적 측면을 평가하기에 앞서,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대 기업의 CSR 활동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외에서 진행된 CSR 활동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25). 해당 「사회공헌 백서」에 언급된 100대 기업의 해외 CSR 활동이 개도국 이외의 국가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준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개도국 내 CS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활동을 증진하는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량적 자료에 국한하여 ODA와 연계된 정부-기업협력 CSR·CSV 사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의 예산과 규모 그리고 기업의 재원 투입 비중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⁶⁾ 앞서 제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협력 사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KOICA를 사례로 볼 때,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평균 사업액 규모가 약 21억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부담은 약 38%로 확인되고 있다.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IBS에 비해 평균 사업비(약 3.9억)와 기업의 부담률(약 0.2%)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2020년간 KOICA에서 실행한 CSR·CSV 관련 기업협력 사업 규모는 기업의 재원까지 포함하여 총 25억 원으로 파악되고

36)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전체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일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협력 사업에 대한 전체 통계가 수집될 경우, 보다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있다. 동일 기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KOICA의 총 사업예산이 약 3조8,428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모는 KOICA 총 사업비의 0.0006%에 불과하다.³⁷⁾ 따라서 이러한 규모로 볼 때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부-기업 간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정성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부-기업협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먼저, 개도국 CSR·CSV 활동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CSR·CSV 활동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CSR·CSV 활동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CSR·CSV 활동에 대한 경영진 및 구성원의 낮은 인식,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5년간 CSR·CSV를 수행한 경험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부-기업협력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기업협력 파트너십의 실적과 만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도국 CSR·CSV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낮지 않고 기업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점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정부-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기업협력을 통한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3. 개발협력에서 민간참여의 해외 동향

2002년 몬터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된 ‘몬터레이 합의서(Monterrey Consensus)’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개발협력에 관한 민간의 참여 확대(PSE)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민간기업의 참여는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격차 해소 측면에서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선진공여국의 주된 관심은 어떤 접근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공여국의 사례는 민간기업 참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동향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미국 USAID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또한 PSE에 관한 정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37) KOICA 연도별 예산은 https://www.koica.go.kr/koica_kr/7399/subview.do 참조.

PSE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전략, 원칙,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PSE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인 수원국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 USAID는 이를 운영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독일 또한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행동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셋째, PSE의 촉매 효과를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PSE로 인한 효과를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III장 3절에서 보듯 동원 및 레버리지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개발되고 있으나, 그 외 지식 이전이나 정책 도입을 통한 간접적인 동원 효과를 갖는 촉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PSE 관련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개발협력 관계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선회되고, 최근 ESG와 같은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원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바, 스웨덴의 사례에서와 같이 더욱 복잡한 PSE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원국에 기업환경을 조성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일본기업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을 수원국에 조성하고 있다.

제2절

정부-기업협력 전략 현황 및 평가



1. 국가 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근거와 절차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분야 중장기 및 단기전략의 수립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의 제정은 2010년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개발협력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협력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³⁸⁾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총괄적 기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7조 제4항은 개발협력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8)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20년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상·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9C%EA%B0%9C%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 참조.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와 제14조는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우리나라 ODA에 관한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의 지위를 갖는다(관계부처 합동, 2021: 1).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매년 이행할 수 있는 단기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하위 전략적 성격을 갖는다.

[그림 4-1] 개발협력 국가전략 수립 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력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 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면, 개발협력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유상과 무상분야의 기본계획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이렇게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정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무총실과 주관기관을 통해 KOICA, 수출입은행과 같은 시행기관과 재외공관에 전달되어 시행된다(관계부처 합동, 2015: 14).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립된다.

[그림 4-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①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2.15, 주관기관 → 각 부처 (기재부 : 유상시행기관/ 외교부 : 무상시행기관)
② 기관별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	▪ ~3월말, 각 부처 → 주관기관
③ 기관별 시행계획안 협의·조정	▪ 4월, 주관기관
④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 ~4월말,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⑤ 분야별 시행계획안 조정·심사	▪ 5월, 국무조정실
⑥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의결	▪ 6월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⑦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 제출	▪ 6월초, 각 부처 → 기재부
⑧ 예산안 편성 및 심의	▪ 6월~12월, 국회·기재부
⑨ 확정예산을 반영한 차년도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제출	▪ 12월,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5: 46).

2. 정부-기업협력 전략 및 평가

정부-기업 간 협력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전략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에 관한 중기전략과 단기전략 문건의 위상을 갖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절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수립된 기본계획과 2011년 이후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 상의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차 기본계획(2011-2015) 및 시행계획

1) 기본계획의 정부-기업협력 방향과 내용

2010년 수립된 개발협력 5개년 계획은 유상과 무상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계획에 포함된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상원조 분야의 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민간자금 유입의 활성화’를 중기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4). 민간자금 유입의 확대는 정부의 ODA 재원으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ODA와 더불어 무역·투자 등의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양자 유상협력 추진계획에 포함된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에 있어서는 유상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협회와 같은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9). 유상 부문에서 위와 같은 민간참여 이외에도 개도국 PPP 사업과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26).

무상원조 분야의 중기계획은 유상원조에 대한 중기계획보다 체계적인 전략적 접근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무상원조 중기계획은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고, 이 중 ‘선진 원조규범 추구 및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 ODA 선진화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추구하고 위해 기업을 포함한 개발원조 파트너십 강화가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38).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 확대 추진’이 포함되었지만, 민간기업에 특별한 전략적 초점을 두기보다는 NGO, 학계 등 다소 광범위한 형태의 민관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CSR 홍보와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72).

2) 시행계획의 정부-기업협력 방향과 내용

제1차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도별 단기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정부-기업협력의 전략적 방향에 관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한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인 차원에서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유·무상 개발협력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민간협력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개발협력에서 정부-기업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시행계획 상, 정부-기업협력은 유상의 경우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그리고 무상의 경우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1: 38, 50). 2012년에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개발협력 기반 확대'의 관점에서 정부-기업협력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34, 36). 2013년 시행계획에는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ODA 공급역량 확보'라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29, 33). 2014년에는 'Win-Win형 ODA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제시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4: 13-15), 2015년에는 'Win-Win형 ODA 추진'과 더불어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가 기업협력의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5a: 14-15, 19).

둘째, 위 정부-기업협력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차별이 비교적 뚜렷하다. 유상원조 분야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통적으로 민자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의 사업 발굴과 시행을 추구하고 있다. 보통 민자투자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위험(Risk)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2015년 시행계획에는 차관, 보증지원과 같은 정책 수단 동원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19, 21; 관계부처 합동, 2014: 4; 관계부처 합동, 2015a: 14-15). 반면,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과 대국민 ODA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 기반 구축은 무상원조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2012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민간협력 협의체, 포럼 구축, 2014년 시행계획 상의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2015년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KOICA와 공급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대상 포함 및 원조조달 콜센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관계부처 합동, 2011: 36; 관계부처 합동, 2014: 13-15; 관계부처 합동, 2015a: 14-15, 19).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는 기업의 개도국 ODA 사업을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5년간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기업 협력의 대상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행계획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시행계획에서는 어느 기업 유형에 초점을 둘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2013년 시행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자재 차관을 활용하여 유상원조를 추진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19, 21). 2014년 시행계획은 중소기업 해외원조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2015년 시행계획은 중소기업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EDCF에서 차관 조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OICA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대상 포함 및 원조조달 콜센터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 13-15; 관계부처 합동, 2015a: 14-15, 19).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평가

제1차 기본계획과 5년간의 시행계획에서 정부가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정부의 접근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략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적 전략에 기반하지 않아 정부-기업협력의 성과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는 정부 자체의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2). 제1차 기본계획에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못했고, 정부-기업 간 협력의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38).

제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전략적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제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는 기업을 민관협력의 한 축으로서 주목하고 있지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2011년-2015년 동안의 정부-기업협력은 제한된 형태의 사업 발굴·시행과 초보적인 수준의 협력기반 구축 시도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 중 한 가지인 민간재원 활성화는 제1차 기본계획에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도 도출되지 않아 5년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정부-기업협력이 국가 개발협력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평가의 근거는 시행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평가는 민관협력의 강화라는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예 기업과의 협력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둘째,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부재로 인하여 협력의 범위, 협력의 대상, 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구체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년간의 시행계획에서 기업을 포함한 민관협력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관협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기업보다는 시민사회에 민관협력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 협력의 대상에 대한 시각도 제한적이다. 아울러 협력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폭넓게 고려되지 못하고 유상원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에 그치고 있다.

셋째, 전략적 기반과 협력을 위한 구체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업 협력에 대한 실적과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협력이 국가 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상위전략의 하위전략적 관점에서 접근되지 않아 관리와 점검을 위한 데이터와 통계도 구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연도별 정부-기업협력의 변화, 개선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개별협력에 있어 국가 전략의 성격을 갖는 제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정부-기업 간 협력을 상호 경쟁우위의 관점보다는 정부 주도의 유·무상 원조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제2차 기본계획(2016-2020) 및 시행계획

1) 기본계획의 정부-기업협력 방향과 내용

제1차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2015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개발재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1).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개발협력에 대한 국가 전략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즉, 제2차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개발협력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발협력 중기전략을 체계화하였다.

[그림 4-3] 제2차 기본계획 전략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5b: 3)

이 전략목표 중 '함께 하는 ODA'의 전략목표에는 3개 전략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가 정부-기업협력과 연관성을 갖는다. '민간부문 협력 강화'에 포함된 정부-기업협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7).

- 민간 파트너십의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CSR·CSV 사업과 ODA 사업 간 연계 강화³⁹⁾
-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 정부 개발재원의 한계와 개도국 개발수요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금융 등의 재원 규모 확충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지원'의 개념을 통해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협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ODA의 틀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활동 전개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66).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민간재원의 확대 방안은 기업의 재원을 유상원조로 유입하여 개도국 사업에 투입하되 정부가 이차보전이나 보증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b: 69).

2) 시행계획의 정부-기업 협력 방향과 내용

제2차 기본계획이 이행되는 2016년에서 2020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부-기업협력은 제1차 기본계획 및 이행 기간(2011년-2015년)에 비해 진전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에 이어 2차 기간에도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연도별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에 기업 협력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이 기업 협력의 대상과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1차 기간에 비해 확대되고 있고, 이는 국가 개발협력 전략에서 정부-기업협력이 점차 중요한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2020년 시행계획에서는 'ODA 추진 기반 공고화'를 위해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ODA의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21).

둘째,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업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2차 기간에는 1차 기간에 비해 기업 협력의 방향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1차 기간에서의 기업 협력은 제1차 기본계획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CSR 활동을 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에 비하여(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1: 50), 2017년부터는 ODA

39)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도 민간협력에 기반한 공공외교 강화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제의 추진에는 해외, 특히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CSR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외교부, 2017: 44). 그러나 기업의 해외 CSR 지원에 대한 근거와 세부 전략 등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업을 기업의 CSR·CSV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c: 16). 특히 2019년 시행계획은 개도국 내 SDGs 이행의 방안으로 KOICA의 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기업의 CSR·CSV 재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9).

셋째, 1차 기간에 비해 2차 기간에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기간에서의 주요 기업 협력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면 2차 기간에서는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까지 협력의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시행계획에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을 대화의 파트너로 선정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15c: 14), 2018년 시행계획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원조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기술기업, 기술스타트업기업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 26).

넷째, 2차 기간에는 기업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2016년에 제정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이 법은 정부의 개발협력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개도국 진출 도모를 위한 개발금융 지원방식 다양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⁴⁰⁾ 기업의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EDCF의 PPP 사업 형태의 확대는 1차 기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KOICA의 CTS, IBS, IPS와 같은 기업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기간 동안의 정부 전략 문건은 전략 구조와 내용의 관점에서 1차 기간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략 구조 측면에서,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제2차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에 관한 전략체계를 수립하였고, 정부-기업협력을 전략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도 범위, 대상, 지원 제도와 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기간 동안의 정부-기업협력은 전략적 체계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협력 성과도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4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https://www.law.go.kr>)

제2차 기본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ODA 재원 규모가 다른 공여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증견공여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부문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간 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2-4). 2차 기간의 정부-기업 협업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 협력의 연도별 편차가 작지 않고, 전략적 체계의 일관성도 높지 않다. 기업 협력에 관한 연도별 편차는 특히 2017년 시행계획에서 두드러지는데, 무엇보다 2016년 시행계획에 비해 기업 협력에 관해 추가된 내용이 없고, 인프라 PPP 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라는 2017년 사업방향은 2016년과 거의 흡사하다. 기업 협력에 관한 전략체계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볼 수 있다. 전략체계의 일관성 문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불일치, 연도별 시행계획 간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함께하는 ODA’라는 전략목표에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가 전략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나, 2017년 시행계획의 ‘함께하는 ODA’ 전략목표에 민간부문 협력은 전략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업 협력에 관한 사업의 형태가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무상 사업 유형의 확대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2차 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추진된 기업 협력 사업의 형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2012년 시행계획의 인프라 분야에서 PPP 형태의 EDCF 사업이 거론된 이후 최근까지 매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무상원조 역시 KOICA의 CTS, IBS 프로그램의 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셋째, 2차 기간에도 기업 협력에 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은 1차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도별 개발협력에 민간재원이 어느 규모로 유입되고 있는지, 민간기업이 어떤 유·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기업의 참여가 개도국 CSR·CSV와 어떤 연계를 보이고, 개도국 SDGs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제2차 기본계획과 5년의 이행 기간에서 정부-기업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1차 기간에 비해 전략적 접근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략의 체계성과 일관성 그리고 전략 이행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략체계



다. 3차 기본계획(2021-2025) 및 시행계획

1) 기본계획의 정부-기업협력 방향과 내용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21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역시 SDGs 달성에 부족한 정부 ODA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접근으로 민간재원 활용을 거론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5). 정부가 민간재원을 개발협력 재원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자원 부족의 해결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ODA 성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SDGs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은 '정부 개발 자원 부족 → 국내 민간기업 재원 활용 → 국내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 확대 → 무역 및 투자 확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국내 일자리 창출 → SDGs 기여 및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상승'과 같은 여러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a: 6).

제3차 기본계획상 우리나라 개발협력 중기전략은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전략목표가 3개에서 4개 그리고 중점과제(전략과제)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은 전략목표 3 '혁신적 ODA'의 중점과제인 '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와 전략목표 4 '함께하는 ODA'의 중점과제인 '개발협력 외연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제2차 전략체계에서는 정부-기업협력이 단 1개의 전략목표에 포함되었던 것에 비해, 제3차 전략체계에서는 2개의 전략목표와 연계되었다는 점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제2차 기본계획은 기업의 자원 조달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는 자원 조달 이외에도 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정례 소통을 위한 플랫폼 조성의 필요성, 해외조달 입찰 정보 제공, 기업의 애로사항 의견수렴과 같이 정부-기업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을 확장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 협력을 접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림 4-5] 제3차 기본계획 전략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a: 8)

2) 시행계획의 정부-기업협력 방향과 내용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구체화한 2021년 시행계획은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민간재원의 적극적 활용과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및 ICT 분야와 같이 우리의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2-3).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 부문에서 기존 KOICA의 기업혁신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와 유상원조 부문에서 경험증진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수단과 금융패키지를 기업에

제공하여 우리 기업이 개도국 인프라 및 ICT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기업의 CSV와 정부 ODA 연계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의 CSV-ODA 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시행계획에 담겨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7, 9, 15, 23, 24). 다만, 2021년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대외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협력 사업을 K-방역과 같이 보건·의료 ODA에 초점을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14-15).

3)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평가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제3차 기본계획과 2012년 시행계획은 전략적 관점에서 정부-기업협력을 위한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개발협력 전략의 한 분야 수준으로서의 전략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장기 및 단기 하위전략으로서 정부-기업 협업 전략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기업 협업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협력의 기본적 방향 제시와 단편적 협업 체계 및 사업에 그쳤던 기존의 접근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 정부-기업협력 전략에 대한 전반적 평가

2011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1년 동안,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 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에 기반하여 정부-기업협력 전략 수립, 협력 대상과 범위의 설정, 정부 지원 제도의 확대 등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협업 전략의 체계성과 우리 정부의 전략 이행은 다른 선진공여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6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표 4-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상 정부-기업협력의 흐름

시기	2011-2015		2016-2020		2021-
전략문건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방향	<p>유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금 유입의 활성화 ■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p>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p>유상(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p>무상(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ODA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p>유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공감대 확산(2012) ■ 개발협력 기반 확대(2012) ■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2013) ■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ODA 공급역량 확보(2013) ■ Win-Win형 ODA 추진(2014, 2015) ■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2015) 	<p>전략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ODA <p>전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p>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파트너십의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 	<p>전략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ODA(2016, 2018) ■ ODA 추진기반 공고화(2020) <p>전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생태계 육성 통한 일자리 기여 및 민간과 파트너십 강화(2018) <p>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파트너십 다양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2016) ■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2016)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2020) 	전략목표 혁신적 ODA
수단	<p>유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사업 <p>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시장 참여 설명회 ■ 기업 CSR 홍보 	<p>유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사업 ■ 차관, 보증지원 <p>유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력 협의체 및 포럼 ■ 해외조달시장 지원 ■ 무역금융지원 ■ 원조조달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대화 ■ 이차보전, 보증 	<p>유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매칭펀드 참여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 CTS, IBS 협력사업 ■ 민간협력 예산 증액 및 차관 추진 	
협력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및 경제단체		
특징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틀, 정책 수단 미흡 ■ 성과관리 체계 미흡 				

제3절

정부-기업 협력전략(안)



1. 정부-기업 협업전략 수립의 필요성

국가의 개발협력 전략은 국가가 추구하는 개발협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총합을 의미한다. 국가 개발협력전략(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에는 정부가 개발협력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가 설정되어야 하며, 전략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Strategic Tasks)가 체계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국가전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전략(Mid- and Long-term Strategy)과 이를 매년 이행하기 위한 단기 전략(Short-term Strategy)로 구분된다.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은 국내외 개발협력 환경을 반영하여 수립되지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 전략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매년 실행되는 과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 전략 미션과 비전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가 체계적이지 않다면 과제 실행을 통해 전략의 비전과 미션 달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략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발협력 전략의 문제점은 정부의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정부의 2019년 시행계획에는 제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그리고 연간 시행계획 간의 전략적 연계성과 지속성이 미흡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구체성도 확보되지 않아 국가 전략으로서 제 기능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5). 또한 2020년 시행계획에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국가별 전략의 부재, 전략 간 연계성 부족, 전략과 사업 간 연계성 미흡이 전략 수립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6).

개발협력에 관한 전략 수립의 한계는 개발협력의 하위 영역인 정부-기업협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기업협력이 정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발협력의 하위 전략으로 정부-기업협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전략에 기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과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

정부-기업협력 전략은 체계성, 구체성, 명확성의 관점에서 전략의 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업 협력의 성과와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결국 민간재원 유입과 활용에 대한 방향과 전략의 부재는 정부-기업협력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송지혜, 2021).

2. 정부-기업 협력전략의 층위

국가가 특정 영역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전략은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전략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 전략은 중장기 전략에서 정해진 방향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문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전략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 전략은 다층위로 구성된다. 즉, 국가가 추구하는 최상위 전략은 각 정책분야가 망라된 것으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 목표와 국정전략 그리고 국정과제로 구성된다. 설정된 국정 목표는 이를 이행하게 되는 정부 부처의 전략과 연동된다. 예컨대 현 정부는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5대 국정 목표를 도출하였다. 5대 국정 목표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고, 이 국정 목표는 3개의 국정전략을 통해 달성된다. 3개 국정전략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는데, 외교부의 국정전략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설정되어 있다.⁴¹⁾

최상위 국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층위의 전략으로써 외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 전략을 비추어 볼 때,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외교 전략의 비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 전략에 명시된 외교부의 4개 과제가 외교 전략의 목표로 전환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외교 전략의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국정과제 96)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국정과제 97)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국정과제 98)

41)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1.jsp 참조.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국정과제 99)

최상위 국가 전략 그리고 외교 전략의 다음 층위는 외교 전략에 포함된 목표별 전략이다. 위 4대 목표 가운데 개발협력과 연계된 목표는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이며, 이 과제는 다시 2개의 하위목표로 구성되어 있다.⁴²⁾

- **하위목표 1:**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하위목표 2:**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위 두 개의 하위목표 중, 하위목표 2는 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정부-기업협력 전략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위목표 2가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 중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비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국정과제 틀 내의 ‘국가전략 → 외교전략 → 개발협력전략 →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층위에서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은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비전까지이며,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전략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국정과제의 체계가 아닌, 개발협력분야 국가전략 문건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기업협력 전략의 목표를 파악할 수 있지만, 국정과제 체계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간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있다.

42)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참조.

〈표 4-3〉 층위별 국가 전략

전략 층위		목표	비고
국가전략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 전략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대 국정목표
	외교 분야 목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외교전략 목표
외교전략	외교전략 비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외교 전략 개발협력 목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전략 4대 목표
개발협력전략	개발협력 비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개발협력 목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개발협력 2개 하위목표
정부-기업 협력 전략	정부-기업협력 전략 비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3. 정부-기업 협업전략(안)

가. 전략 체계 및 구성요소

정부-기업협력 전략은 국가 개발협력 전략의 하위 전략이지만, 전략으로서의 체계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의 체계와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⁴³⁾

- 비전(Vision): 정부-기업협력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와 방향
-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or Goals): 정부-기업협력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
- 전략과제(Strategic Tasks):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별 사업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성과목표와 전략과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질적 지표

43) 정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틀을 정부-기업협력 전략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https://www.evaluation.go.kr/mobile/user/psec/m_intro/m_intro_1_2_4.jsp 참조.

나.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1) 비전

정부-기업협력 전략 비전 설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부-기업협력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략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가장 최근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전략인 제3차 기본계획 중, 정부-기업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목표는 '전략목표 3: 혁신적 ODA' 그리고 '전략목표 4: 함께하는 ODA'이다. 전략목표 3은 민간(기업)의 개발 자원 조달 그리고 전략목표 4는 정부-기업협력의 기반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업협력전략(안)의 비전 역시 제3차 기본계획의 전략목표와 연동되어 설정하는 것이 전략체계의 일관성(Consistency)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기업협력(안)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정부-기업협력 전략 비전(안):**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위 비전은 기존의 정부 중심의 개발협력을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제3차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함께하는 ODA'라는 전략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개발협력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혁신적 ODA'라는 전략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SDGs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라는 기대효과가 비전에 담겨 있다.

2) 전략목표

정부-기업협력의 전략목표는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로 인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방향과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기업의 참여는 개발 자원 확충, 기업 참여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의 향후 개도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개발협력의 혁신적 접근과 같이, 국내에 가져다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사회·경제 발전 증진과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같은 수원국 내에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기업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수원국 사회·경제 발전 증진은 궁극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이와 같은 기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아직 우리 정부의 기업-협력은 고도화되기 이전의 단계라고 볼 때, 정부-기업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환경과 토대의 구축이 전략목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기업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 **전략목표 1:** 정부-민간기업 협업 환경 조성
- **전략목표 2:** 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 참여 기반 구축
- **전략목표 3:**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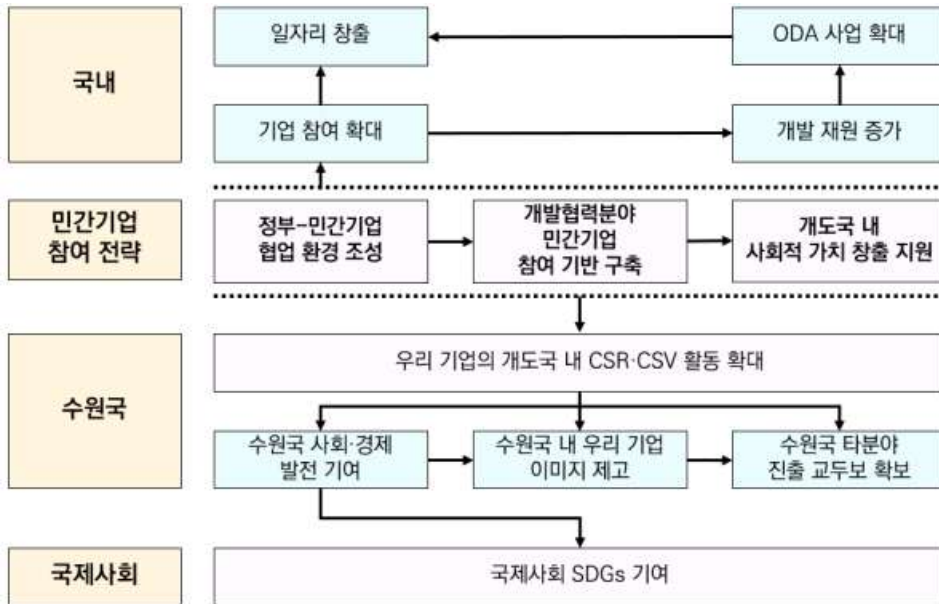
전략목표 1은 기업이 개발협력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과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개발 그리고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옹호(Advocacy) 활동이 핵심적이다.

전략목표 2는 정부-민간 협업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목표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목표 3은 환경과 기반 구축을 통해 정부-기업 참여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개도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기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6]을 보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전략목표의 이행을 통해 정부-기업협력이 국내, 수원국, 국제사회에 가져다줄 수 있는 기대가 요약되어 있다.

[그림 4-6]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기대 효과



3) 중점 추진과제

위에서 설정한 전략목표는 추진과제의 이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앞서 설정한 정부-기업협력 전략목표들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현황 자료,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각 전략과제별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과제의 필요성, 현황, 이행방안을 살펴본다.

(1) 전략목표 1: 정부-민간기업 협업 환경 조성

① 민간기업 참여 유인 정책 수단 개발

- **필요성:**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기업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수단은 개발협력에의 참여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수단 제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PSE)를 강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공여국들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수단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혼합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여선진국 PSE 금융지원 수단 사례

- 프랑스: 크레디트라인, 보증, 신디케이트론, 집합투자기구 지분 참여, 기업 및 SPV 직접투자
- 네덜란드: 기금 조성, 보조금, 대출, 보증 등

출처: 송지혜(2021: 3, 12)

- **현황:** 정부-기업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원 투입부터 기술지원, 컨설팅 및 역량개발 지원 등 여러 형태가 있다(김상훈·임소영, 2020: 12-13). 우리 정부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EDCF, EDPF, 정책금융 등의 연계를 통한 혼합금융과 같은 정책 수단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역량개발과 같은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책지원 수단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송지혜: 2021: 2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 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참여 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수단이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기업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형태를 고려한 정책 수단의 다양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 수단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부에 기대하는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기대하는 정책 수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SDGs와 같은 국제 규범의 틀과 연계하여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지식은 부족할 수 있다. 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도국 진출 경험이 적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개도국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참여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 수단은 협력의 유형 그리고 참여 기업의 기대를 고르게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이행방안

- **기업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단 개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지식 및 정보 공유, 정책대화 개최, 기술지원 제공, 역량개발 지원, 재정적 지원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김상훈·임소영, 2020: 14에서 재인용).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 유형,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정책 수단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여러 정책 수단은 개별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복수의 수단이 서로 연계되어 활용될 때 그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표 4-4〉 기업 유형별과 참여 경험에 따른 정책 수단의 중요성

정책 수단	기업 유형		참여 경험	
	대기업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	있음	없음
지식 및 정보공유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정책대화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기술지원	보통	높음	낮음	높음
역량개발	보통	높음	낮음	높음
재정 지원	낮음	높음	높음	높음

- **기업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Helpdesk) 구축:** 정부-기업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은 충분한 기술(Skill)과 역량(Capacity)을 보유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의 여건과 니즈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원은 기업의 사업 준비, 시행, 종료 후 평가와 같이, 사업 참여 전반에 대한 타당성(Feasibility)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미한다면, 역량개발은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 세미나 등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헬프데스크(Helpdesk)를 운영하여 기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헬프데스크는 이 연구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 KOICA와 KOTR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민간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Advocacy 활동 확대

- 필요성:** 정책 옹호(Policy Advocacy)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특정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대변하거나 촉진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개념을 개발협력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Advocacy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기업협력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Advocacy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과 연계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협력 참여는 기업의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CSR·CSV 외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달성과의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현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내 CSR·CSV 활동에 관심을 갖는 정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고, 개도국 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으로 높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혜택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관심이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과 정부-기업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따라서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정부 Advocacy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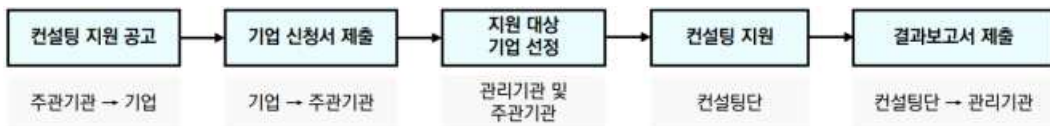
기업의 관심 제고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설문조사 항목 중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의 중요성은 대기업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67.5점,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는 71.4점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2020년 동안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전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애초 기업이 기대한 수준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은 50점,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은 42.2점의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대기업은 구성원의 인식 부족(50%), 경영진의 인식 부족(16.7%)을 지적하고 있고,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식 부족(18.2%), 경영진의 인식 부족(18.2%)을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도국 CSR·CSV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정부와의 협력이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44) 대기업 소속 C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 이행방안

- **기업의 개도국 CSR·CSV·ESG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이 기업의 CSR·CSV·ES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당 분야 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관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ODA 시행기관 중 KOICA, KOTRA, 수출입은행이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주관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컨설팅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ODA 시행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수행한다. 컨설팅이 완료되면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에 제출한다.

[그림 4-7] 기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③ 민간기업 참여 전략 구체화

- **필요성:**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전략의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제한된 개발협력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협력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의 명확성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기업 참여의 성과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게 된다. 아울러 전략의 구체화에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어느 분야, 어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성도 담겨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참여(PSE)에 관한 OECD DAC와 선진공여국의 전략 수립에도 전략의 구체화와 명확성이 강조되고 있다.

호주 PSE 전략 수립 및 정책에 대한 기업의 5개 요구사항

- **방향(Direction):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
- **자문(Advice): DFAT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개도국) 시장과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문을 제공해 줄 것**
- **유연성(Flexibility): 기업과 유연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
- **참여(Engagement): 지속적으로 DFAT의 정책결정자들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 **기회(Opportunities): 기업 참여의 성과와 교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출처:

<https://www.dfat.gov.au/about-us/publications/Pages/private-sector-engagement-in-australias-aid-program-operational-framework>.

■ **현황:**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략 체계의 완결성과 구체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정부-기업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간 개발협력과 관련한 전략 수립과 전략 실행을 위한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 기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ODA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⁵⁾ 개발협력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공통된 이해(Interests)가 있어야 하며, 공통의 이해는 정부와 기업 간 상호 니즈(Needs)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략의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별 사업의 발굴, 시행, 종료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 **이행방안**

○ **국개위-시행기관 연계 전략 수립:** 정부-기업협력 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분야별 세부 전략의 두 가지 층위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은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세부 전략은 개발협력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상위의 국가 외교전략 그리고 개발협력 전략과 연계되어 전략의 층위 간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정부-기업협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위-하위 전략의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 개발협력과 외교 전략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기업협력의

45) 대기업 소속 E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기여가 분명해질 수 있다. 수립된 전략에는 전략의 목표, 추진과제, 이행방안, 성과지표와 목표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정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공유되어야 한다(OECD, 2016: 25).

- **민간기업의 전략 수립 참여:** 선진공여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 참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기업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이해와 요구는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는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개별 기업의 참여보다는 기업유형을 대표하는 협회(대한상의, 중소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의 참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4-8] 민간기업 참여 전략 수립 체계



(2) 전략목표 2: 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 참여 기반 구축

① 정부-기업 간 정책대화 채널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 출발은 참여 주체 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정부와 기업 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는 필수적이다. 정부-기업협력에 있어

정책대화가 갖는 의미는 각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향후 전략 수립, 추진과제의 선정, 사업 발굴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아닌 상호 이해에 부합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OECD, 2016: 13). 정부-기업 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화는 필요한 경우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

- **현황:** 정부-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도 기업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고, 정부부처와 ODA 시행기관도 대화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행 정책대화는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정책대화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기업 간 정책대화 및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벤처·스타트업의 만족도는 각각 100점 만점의 54.5점과 59.5점으로 조사되고 있어 현행 정책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정책대화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대부분 정부부처와 ODA 시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성과 통합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⁴⁶⁾ 예를 들면, 2012년 외교부는 민간을 포함한 여러 개발주체와의 협력을 위한 개발협력연대(DAK)를 출범시켰다.⁴⁷⁾ 그러나 개발협력연대의 한 파트너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실제 운영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⁴⁸⁾ 셋째, 기존의 정책대화의 효과성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현 수준에서의 정책대화는 기업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기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 **이행방안**

- **투트랙(Two-track) 정부-기업 정책대화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대화 정례화:** 기업과 정책대화의 구축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를 포함하여 개발협력 주관기관(외교부, 기재부)과 기업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등)가

46) ODA 시행기관 소속 B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4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320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55.

48) ODA 시행기관 소속 B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참여하고, 기업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핵심 공공기관(KOICA, 수출입은행, KOTRA 등)과 연계하여 정책대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화에 참여하는 기업은 유형별 기업(대기업, 중소·중견, 벤처·스타트업)과 유관 협회를 고려할 수 있다.

정부-기업 간 정책대화에 있어 주의할 점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정책대화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들, 특히 기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의 정책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그 효과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정책대화가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제 기업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업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중 한 가지이다. 정책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급 정책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와 실무급 정책대화(Working-level Policy Dialogue)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대화 체계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고위급 정책대화는 정부 부처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임원급 이상이 참여하고, 정부-기업협력 전략과 정책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무급 정책대화는 각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두 형태의 정책대화 운영에 있어서 논의의 형식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어야 하며, 정책대화의 결과가 실제 전략, 정책, 사업에 반영될 때 정책대화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림 4-9] 정부-기업 정책대화 추진체계



② 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필요성:** 정부-기업협력에 있어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공유·활용은 정부와 기업의 관점에서 각각의 특징을 갖는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개발협력의 틀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정보를 취합하여

정부-기업협력 사업 현황(사업 대상 지역, 국가, 사업 분야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합적 정보는 정부-기업협력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OECD DAC가 ODA 재원에 국한되었던 기존 통계체계에서 민간재원까지 포함하는 종합 통계체계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업협력 사업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구축과 관리는 중요성을 갖는다. 아울러 정부-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까지 수집될 수 있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 목표의 달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개도국 진출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의 구축은 기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정보에는 국내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이외에도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필요한 입찰 자격 기준, 주요 법령과 규제, 개도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담당부서 연락처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현황:** 그간 기업협력에 관한 자료는 통합적이라기보다는 개별 기관별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기업 협력 사업을 관리·수행하는 기관에서도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협력 관련 정보 혹은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의 'ODA 통계조회',⁴⁹⁾ KOICA의 '통계조회서비스',⁵⁰⁾ KOTRA의 '투자무역빅데이터'⁵¹⁾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정보시스템은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ODA 통계조회와 KOICA의 통계조회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협력 사업과 민간재원 규모와 같은 정보는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KOICA의 통계조회서비스는 KOICA에서 시행한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없다. KOTRA의 투자무역빅데이터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가 다소 한정되어 있고 개발협력에서의 정부-기업협력 사업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⁵²⁾

현행 정보의 수집·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업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현행 정보로써는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49) <https://www.kodaportal.go.kr/portal/main?basYyyy=2018>.

50) <https://stat.koica.go.kr/ipm/os/acms/smrizeAreaList.do?lang=ko>

51) <http://www.kotra.or.kr/bigdata/marketAnalysis>

5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보다 통합된 형태의 정보제공 시스템을 위해 KOTRA는 '대외경제정보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이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수출과 관련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정보를 유기적이고 통합된 형태(One-Stop 플랫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 구축 내용에는 정부-기업협력 추진 및 진행 사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간의 기업협력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업협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산재된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화·구조화된 형태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기업에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러 시행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부-기업협력 사업에 관한 정보가 관심 있는 기업 모두에 공유되지 못하고, 일부 기업들이 해당 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정부-기업협력 사업이 공고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⁵³⁾ 이는 정보의 부재 문제가 아닌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업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선제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업 참여와 진출을 위한 판단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 정부와의 협업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 대하여 기업들은 '개도국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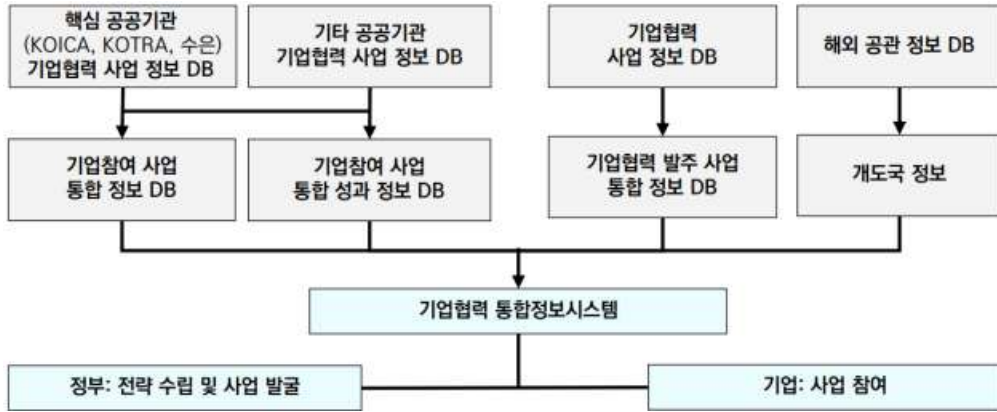
▪ 이행방안

- **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DB로 통합할 때 구축될 수 있다. 통합 방식은 현재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의 ODA 통계조회에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실적과 성과정보를 추가하고, 국무조정실의 시스템에 KOTRA의 투자무역빅데이터(혹은 구축 중인 '대외경제정보센터')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이 참여한 정부협력 사업에 관한 전체 현황과 사업 성과의 통합은 정부로 하여금 정부-기업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협력 사업의 발주 정보와 해당 사업이 실행되는 개도국의 다양한 현황에 관한 정보가 기업에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정보는 정부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3) 대기업 소속 C, D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54) 정부-기업협력에서 기업이 기대하는 지원 중 '개도국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처리의 간소화,' '자금 지원의 확대'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0] 기업협력 통합정보시스템



③ 개도국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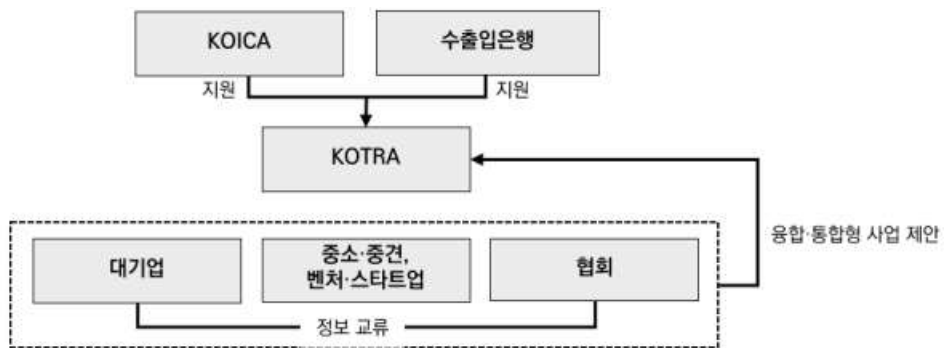
- 필요성:**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개별 기업의 진출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향후 사업 준비와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부-기업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을 통해 개도국의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직업훈련 센터 건립 지원에 한정하여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직업훈련 센터 건립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신기술 활용이 접목될 경우,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 현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개도국에 진출한 기업 간 국내 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혹은 기업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물론 개도국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간 교류가 없지는 않으나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 간 교류를 위한 정례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개도국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의사는 높은 것으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기업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원인은 동일 업종 기업을 사업 수주의 경쟁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굳이 기업 스스로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상호 경험과 지식의 공유는 물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새로운 사업을 함께 구상하여 이를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행방안

- **기업 간 협력 채널 구축:** 개도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중,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KOTRA가 중심이 되고, KOICA와 수출입은행은 KOTRA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 간 개도국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유형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통합형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KOTRA를 통해 이를 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11] 개도국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



(3) 전략목표 3: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① 정부-기업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

- **필요성:**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은 정부-기업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의 핵심은 정부와의 협력에 기반한 개도국 진출이 기업의 CSR·CSV·ESG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이 향후 개도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기업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정부 주도의 사업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업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현황:** 정부-기업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은 KOICA의 CTS, IBS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S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규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44.1억 원이고, IBS 사업은 지난 2010년-2020년 간 KOICA 재원 1,005억 원이 투입되었다.⁵⁵⁾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CTS는 연 평균 57억 원, IBS는 9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규모로는 기업협력을 개발협력의 주류화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KOICA의 경우에도 CTS, IBS 사업의 기간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와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KOICA도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업의 ESG 달성과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IBS 프로그램 틀 내에서 2021년 'ESG 임팩트투자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존의 CTS, IBS 사업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기업과의 협력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선호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유상원조의 대형 사업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무상원조 중심의 중소형 규모의 사업을 선호한다. 이러한 선호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은 수출입은행의 EDCF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KOICA의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⁵⁶⁾ 이처럼 사업 규모에 따라 기업의 관심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새로운 융합적·통합적 사업에 대한 관심은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행방안**

- **융합형·통합형 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현행 특정 활동에 한정된 기업협력 사업을 서로 다른 유형의 사업을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Mega Project)을 개발할 경우 기업 유형 간, 업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에 비해 큰 영향(Impact)을 거둘 수 있다.⁵⁷⁾ 예를 들면 분쟁지역의 주민들이 탈출하여 다른 국가에 난민촌(Refugee Camp)을 세우게 될 경우, 난민촌에 의료·보건, 통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55) https://koica.go.kr/koica_kr/960/subview.do 및 https://www.koica.go.kr/koica_kr/961/subview.do 참조.

56) ODA 시행기관 소속 B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57) 대기업 소속 C, D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개도국 CSR·CSV 우수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우수사례 창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개발협력에 민간재원을 유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유형 가운데 대기업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개도국 CSR·CSV 활동의 임팩트(Impact)를 높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대기업 중에서 개도국 내 CSR·CSV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개도국 CSR·CSV 활동 규모와 임팩트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면, 다른 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사례 확산은 국내와 개도국 내뿐만 아니라 OECD DAC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와 같은 국제개발협력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표 4-5〉 기업유형별 정부-기업협력 사업 관심 수준과 임팩트

기업유형	정부-기업협력 사업 관심도	임팩트
대기업	낮음	높음
중소·중견기업	높음	중간
벤처·스타트업	높음	낮음

② 개도국 현지 기업 활동 지원 강화

- **필요성:** 참여기업들은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여러 상황에 당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게 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개도국 정부의 경직된 관료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도국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현지 우리 공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CSR·CSV 활동에 대한 현지 홍보와 확산 활동에 대한 지원도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다. 현지 홍보와 확산은 여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는 우리 기업의 CSR·CSV 활동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우리 기업의 다른 CSR·CSV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 기업의 CSR·CSV 활동에 대한 현지의 호감이 높아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업의 CSR·CSV 활동에 대한 현지의 인지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현지 사업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 이러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 **현황:** 개도국 현지에서 정부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업과의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현지 사업수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장기간 현지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온 대기업보다 개도국 진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다.⁵⁸⁾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질병진단 키트(Kit) 보급을 통해 수원국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의 경우 해당 키트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지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공관과 KOICA 사무소, KOTRA 해외무역관 등에서 일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공관과 KOICA 사무소,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공관이나 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지 지원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력이 충분한 상황인 경우에도 KOICA 사무소나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관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핵심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우리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홍보의 경우에도 해당 활동을 KOICA 사무소의 SNS와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여 확산하고 있으나 홍보 채널, 홍보 빈도 등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 **이행방안**

- **현지 기업 애로 대응 플랫폼 구축:** 기업이 개도국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현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지 신속 대응 체계는 KOICA 사무소와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현지 공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ICA 사무소의

58) 중소기업 소속 F, G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59) 벤처·스타트업 소속 K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경우에는 개도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실무적 수준의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었지만, 고위급 수준의 파트너십은 제한적일 수 있고, KOTRA 해외무역관은 우리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되어 있어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공관의 경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⁶⁰⁾ 다른 공관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지 공관의 '현지 기업 애로 대응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기업서비스' 구조와 지원 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업 CSR·CSV 활동 성과 현지 홍보 및 확산:** 우리 기업의 개도국 현지 CSR·CSV 활동 홍보와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홍보 채널은 현지 공관, KOICA 사무소, KOTRA 해외무역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SNS, 뉴스레터, 세미나 등 여러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홍보 대상도 개도국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학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에 대한 환류 지원

- **필요성:** 정부-기업협력에서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수집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기업협력 사업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협력 매뉴얼은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기업이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며 경험한 실제 상황과 대응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업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향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 **현황:** 사례 분석에 기반한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매뉴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례 분석보다는 기업참여의 기본 원칙과 사업 진행 단계별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점검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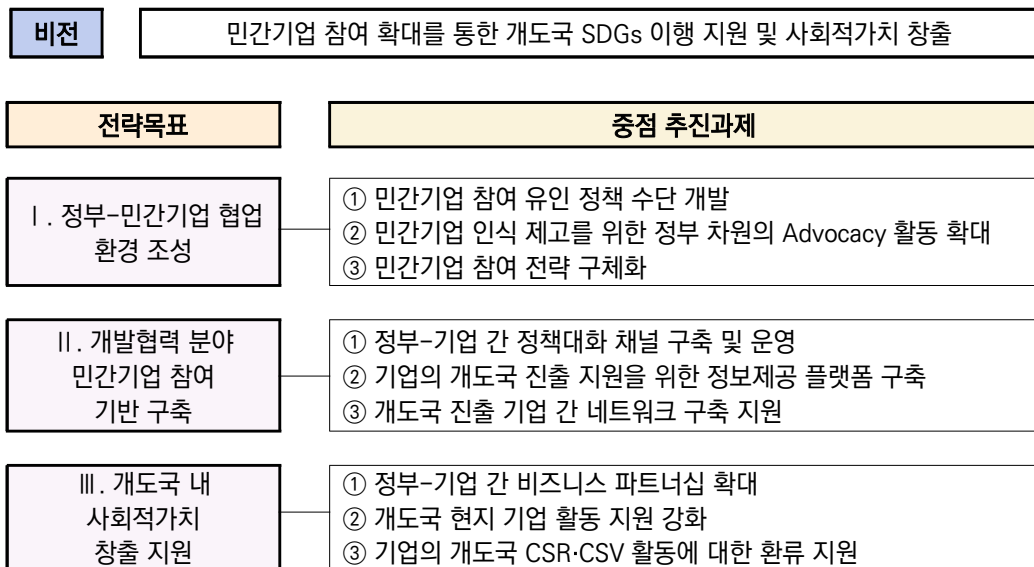
60) 예를 들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사이버기업서비스' 하위 메뉴의 '기업애로사항' 접수 채널.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83/list.do 참조.

61) 2021년 발간된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SDA Handbook on Private Sector Engagement를 예로 들 수 있다.

▪ **이행방안**

-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매뉴얼 개발:** 기업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KOICA, KOTRA,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여 사업 성공과 실패사례를 제출받아 이를 통합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핵심 국가별·사업영역별 성공 및 실패요인을 도출하여 정부-기업협력 사업 매뉴얼을 발간한다.
- **기업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발굴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그리고 매뉴얼을 활용하여 정부-기업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기업 간 교훈을 공유한다.

[그림 4-12]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개발협력분야에서 필수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전략과제-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기업협력 전략이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지 않을 경우 여러 정부-기업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 않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통해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간 협업 전략은 완결성, 체계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관점에서 전략으로서의 제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선진공여국들이 민간부문참여(PSE)에 관한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고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기업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현황에 기반하여 제IV장은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직 정부-기업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기업 참여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업 환경과 기업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전략목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목표가 온전히 실행된다면 정부-기업협력 사업과 관련된 여러 우수사례가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는 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1절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의 의미



1. 해외공공조달시장의 이해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국가나 지방정부, 다양한 행정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서비스, 건설 등을 계약하여 구매하는 행위로, 이는 단순한 구매 이외에 물자의 저장, 운송, 수납, 검사, 폐품처리, 서비스 및 건설의 이행 및 감리,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시장은 재원에 따라 크게 정부조달, 국제기구(UN) 조달, ODA 조달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공조달을 집행 단위 수준별로 구분하면, 크게 개별국가의 조달(정부조달), 범국가 지역단위의 조달, 다층적 수준의 조달 등이 있다. 개별국가의 조달은 개별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달로 소위 정부조달로 일컬으며, 집중조달, 준정부조직을 통한 조달, 분산조달, 조달에이전트를 통한 조달 등으로 재구성된다. 범국가 지역단위의 조달은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형태의 조달이다. 마지막으로 다층적 수준의 조달은 여러 국가의 원조공여기관이나 MDB 등 국제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달로, 타 국가나 MDB가 스폰서가 되어 자금을 제공해주고 수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매형태로 ODA 조달에 해당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해외의 정부조달시장, 국제기구(UN)을 통한 조달시장, 유무상 양자 및 다자 ODA 자금을 통해 형성된 ODA 조달시장 등에 진출함을 의미하며, 이 중 정부 재원이 빈약한 개도국에서는 UN 조달시장과 ODA 조달시장을 활용하여 자국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집행한다. UN 조달은 개도국에서 조달에이전트로 UN기구들을 활용하여 UN의 조달프로세스로 집행하는 반면, ODA 조달은 개도국과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간 ODA 자금을 대한 협정을 맺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면, 유상 ODA의 경우, 개도국의 정부조달 프로세스를 통해 집행되는 반면, 무상 ODA의 경우, 공여기관의 조달프로세스를 통해 집행된다(〈표5-1〉, [그림5-1] 참조).

특히, ODA 조달은 공공조달의 범주 중 다층적 수준의 조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입찰, 계약, 사후관리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ODA 사업에 따른 기자재 구매, 컨설팅 및 초청연수,

19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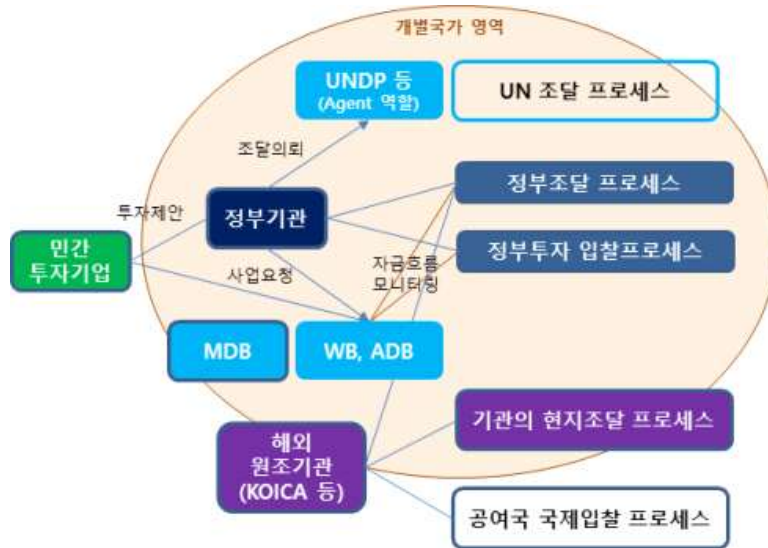
프로젝트 등에 대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한 조달을 의미한다. ODA 사업에 대한 조달은 개별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부조달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사업 수행 시 여러 번의 조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행 전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계약, 관련 초청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기술협력을 위한 용역계약,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 등 다양한 조달이 동원된다.

〈표 5-1〉 공공조달의 단위수준별 조달방식

구분		주요 내용
개별국가 단위의 조달 (National Level Procurement)	집중 조달 (Centralized Procurement)	중앙정부의 조달담당기관을 통한 정부단위의 조달방식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준정부 조직을 통한 조달 (Parastatal Organization; Autonomous Supply Agency)	정부에서 출자 혹은 설립한 전담 독립기관으로 조달하는 방식
	분산 조달 (Decentralized Procurement)	지방정부 혹은 시, 구 단위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됨
	조달 에이전트를 통한 조달 (Procurement Agent)	UN 기구 및 Crown Agents, Charles Kendall과 같은 사설업체 등을 통한 조달대행 방식
범국가 지역단위 조달 (Regionally-focused Pooled Procurement)		PAHO, EPI(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 Revolving Fund, PAHO Strategic Fund, OECS/PPS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Pharmaceutical Procurement Service) 등과 같은 지역단위 공동구매 시스템으로 공동펀드를 구성하여 구매효율을 제고함
다층적 수준의 조달 (Multilateral-level Procurement)		해외원조개발기구로 미국의 USAID(US Agency for Development), 영국의 DFID(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공여기관(Donor Agency)과 세계은행 등 MDB를 통한 조달방식

출처: KOICA(2019)

[그림 5-1] 해외조달시장의 범위



2. 해외 ODA 조달시장의 특성과 진출의 의의

ODA 사업에 대한 조달이 가지는 특수성은 자금원을 제공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하여 ODA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결의한 여러 규범에 따른 원조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즉, 자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달과 달리 다른 특정 국가를 위한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ODA 조달은 자금원을 제공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순수하고 진정한 의미의 원조에 입각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조달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개도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에 대한 조달방식은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도 다각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 및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공모방식이나, 재원의 지원은 국내 여러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이는 원조 가치를 해치지 않은 민간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혁신적 사업 제안으로도 조달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에게 UN 및 ODA 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은 단순히 해외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사회적 책임과 공헌, 헌신에 동참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한 기업이 UN 및 ODA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이미지가 선량한 기업으로 인지되어 민간부문에서의 해외수출을 진작시키는 긍정적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비교적 엄격한 UN 등 국제기구의 입찰평가기준에 맞춰 사업수주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국제무대에서 그 품질과 사업역량,

위험관리능력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에서도 역량이 있는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에게 해외 ODA 조달시장의 진출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 개도국에 사업제안을 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요구되는 사업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개도국에서는 국가의 복합적인 발전적 문제 혹은 전 지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환경이나 의료/방역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DA 조달시장은 개도국의 특정 요구사항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복합 형태로 발주 요구가 많은 편으로, 특히 서비스에는 제품 사용 관련 교육, 제품 운영방식 전수, 사후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요구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제품 제공 및 운송서비스가 연합된 형태로도 발주 요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사업제안 및 참여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기업간 정보공유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공동협력 등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기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체계화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기업 ODA 조달시장의 진출 지원 정책(수단)



해외 ODA 조달시장은 국제사회에서 표방하는 가치인 지속가능한발전(SDG) 및 ESG,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등을 추구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ODA 조달시장에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SDG 등에 입각하여 사업제안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UN의 경우,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역할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공급업체에 대해 입찰 초청 우선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 국제사회의 가치를 잘 추구하는 기업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전 세계 157개국 14,000여개 회원(11,000여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달시장(UNGM) 및 다국적기업의 협력사 UNGC 가입 권고추세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가이드라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unglobalcompact.kr/>

그러므로 민간기업이 SDG 등 국제사회 가치를 추구하도록 협력을 이끌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이끄는 정책적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기관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민간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해외 ODA 조달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는 펌프 역할을 할 것이다.

제3절

해외 ODA 조달시장 동향



1. 다자 공여기관 조달시장

가. 유엔(United Nations, UN) 조달시장 추세 및 특징

1) 시장의 특성

유엔 조달시장은 UN 본부 및 40여 개의 산하 기구와 30여 개의 PKO에 각 나라의 기업이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빈번한 자연재해, 전쟁, 분쟁 등으로 인한 난민 발생 등 전 세계적으로 UN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조달시장의 규모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100% 국제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UN 활동 특성상 입찰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 물품 및 서비스는 단기간에 긴급, 대량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UN 조달시장은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군을 구매하는 일반 조달시장과는 달리, 주로 개도국의 특정 소요 물품 또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UN은 생산기반 시설이 없고, 가입국이 공동으로 기부한 분담금에 바탕을 두고 있어 입찰참여 기업의 규모 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UN 조달은 조달가격뿐 아니라 기업신뢰도와 제품기술력을 중시하는 최적구매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이 진행된다. UN 조달시장은 상대적으로 품질경쟁력이 약한 비선진국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용(Tolerance)을 베푸는 차원에서 조달 베이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고가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개도국의 중저가 제품이나 서비스로의 확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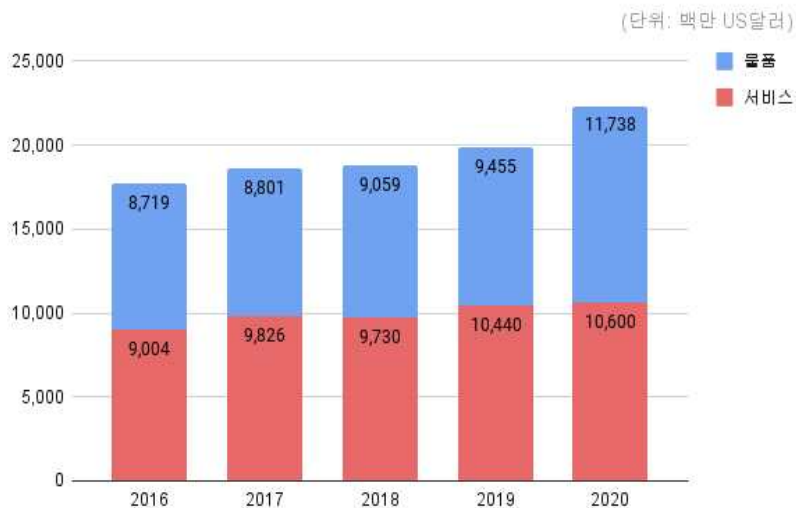
UN의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1년 단위로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이 추가되어 최장 5년 6개월 동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다. 계약에 따라 이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되어 대금결제 안정성 확보 또한 가능하다. UN 조달시장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향후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해 추가낙찰 가능성이 커지므로 고정 수출거래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UN 납품경력에 해당 기업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 또는 미국, 중국, EU 등과 같은 거대 조달시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2) 시장 동향

유엔(산하 기구 39개 포함) 조달규모는 최근 5년(2016-2020) 평균으로 194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억 4,300만 달러 증가해, 223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달분야별로는 물품의 비중이 2020년에 전년 대비 5%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비중을 약간 앞질렀다.

[그림 5-2] 최근 5년간 유엔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UNOPS(2021)에서 재가공

기관별 조달실적은 연평균 기준으로 UNICEF(19.1%)가 가장 큰 비중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WFP(17.8%), UNPD(13.8%), UNDP(10.9%), UNHCR(6.2%) 순이었다. 상위 10개 기관 중 PAHO, UNICEF, WHO는 고도 기술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조달하므로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조달 참여가 낮았다. 반면, FAO, IOM, UNDP, UNHCR, UNPD, UNOPS, WFP는 개도국의 조달 참여 비중이 높았다.

20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표 5-2> 유엔 기관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개도국 비중	규모	%	개도국 비중	규모	%	개도국 비중	규모	%	개도국 비중	규모	%	개도국 비중
UNICEF	3,485	19.7	3,429	18.4	56.9	3,486	18.6	55.4	3,726	18.7	55.2	4,468	20	59.6	3,719	19.1	56.8
WFP	2,962	16.7	3,075	16.5	73	3,497	18.6	76.4	3,826	19.2	55.2	3,981	17.8	75.2	3,468	17.8	70
UNPD	3,233	18.3	2,747	14.8	61.3	2,637	14	62	2,512	12.6	63.1	2,331	10.4	64	2,692	13.8	62.6
UNDP	1,697	9.6	2,117	11.4	71.5	2,147	11.4	76.7	2,084	10.5	72.2	2,565	11.5	65.1	2,122	10.9	71.4
UNHCR	1,180	6.7	1,239	6.7	70.3	1,101	5.9	62.1	1,138	5.7	63.4	1,383	6.2	61	1,208	6.2	64.2
UNOPS	900	5.1	1,069	5.7	64.3	921	4.9	61	1,095	5.5	60.8	1,272	5.7	60.7	1,051	5.4	61.7
PAHO	790	4.5	919	4.9	47.1	908	4.8	37.6	1,007	5.1	41.9	1,151	5.2	40.4	955	4.9	41.8
WHO	757	4.3	667	3.6	51.5	735	3.9	53.4	893	4.5	49.3	1,718	7.7	53.4	954	4.9	51.9
IOM	522	3	618	3.3	N/A	842	4.5	84.3	960	4.8	67.3	777	3.5	76.5	744	3.8	57
FAO	317	1.8	371	2	74.9	376	2	78.9	389	2	78.9	458	2.1	74	382	2	76.7
UNFPA	282	1.6	317	1.7	49.4	400	2.1	40.1	404	2	45.7	473	2.1	44.1	375	1.9	44.8
UNRWVA	289	1.6	244	1.3	83.4	225	1.2	81.2	264	1.3	87.5	226	1	85.1	249	1.3	84.3
ILO	163	0.9	215	1.2	65.6	218	1.2	41.1	263	1.3	72.8	220	1	63.1	215	1.1	60.7
IAEA	147	0.8	220	1.2	14	167	0.9	9.8	187	0.9	7.1	192	0.9	8.5	183	0.9	9.9
UNIDO	123	0.7	178	1	52.7	162	0.9	56.8	152	0.8	43.7	155	0.7	55.7	154	0.8	52.2
UNWOMEN	126	0.7	104	0.6	59.2	128	0.7	63.7	143	0.7	62.7	134	0.6	62.8	127	0.7	62.1
UNOG	94	0.5	110	0.6	5.6	143	0.8	6.1	149	0.8	1.7	141	0.6	1	127	0.7	3.6
WIPO	114	0.7	115	0.6	6.2	123	0.7	7.6	126	0.6	8.7	131	0.6	9.3	122	0.6	8
UNESCO	123	0.7	129	0.7	63.4	113	0.6	56	123	0.6	57	119	0.5	52.2	121	0.6	57.2
UNOV	66	0.4	85	0.5	71	103	0.6	73.2	118	0.6	74.7	89	0.4	72.4	92	0.5	72.8
IFAD	47	0.3	49	0.3	18.9	49	0.3	13	53	0.3	14.8	53	0.2	16.5	50	0.3	15.8
UNON	29	0.2	41	0.2	77.2	53	0.3	76.2	63	0.3	71	62	0.3	75.5	49	0.3	75
ITU	48	0.3	48	0.3	13	47	0.3	5.1	48	0.2	3.3	19	0.1	4.3	42	0.2	6.4
UNAIDS	34	0.2	49	0.3	57.3	28	0.2	49.2	32	0.2	47.7	36	0.2	53.6	36	0.2	52
OPCW	47	0.3	18	0.1	1.8	24	0.1	4	22	0.1	5	25	0.1	2.1	27	0.1	3.2
UNECA	13	0.1	19	0.1	52.6	19	0.1	77.1	24	0.1	65.1	17	0.1	53.3	18	0.1	62
ITC	9	0.1	14	0.1	27.9	19	0.1	32.6	27	0.1	40.2	21	0.1	44.5	18	0.1	36.3
UNHCT/MCT	13	0.1	19	0.1	17.9	14	0.1	13.5	20	0.1	12.4	16	0.1	15.4	17	0.1	14.8
IMO	15	0.1	16	0.1	17.8	9	0.1	12.2	21	0.1	41.9	19	0.1	13.2	16	0.1	21.3
UPU	22	0.1	17	0.1	10.5	14	0.1	13.5	14	0.1	14.3	12	0.1	16.8	16	0.1	13.8
UNFCCC	7	0.00	24	0.1	5.8	13	0.1	2	22	0.1	18.1	13	0.1	2.9	16	0.1	7.2
ESCAP	8	0.00	14	0.1	70.3	18	0.1	85.7	22	0.1	88.7	13	0.1	71.9	15	0.1	79.2
WMO	18	0.1	14	0.1	2.7	15	0.1	2.3	16	0.1	4.2	13	0.1	2.5	15	0.1	2.9
ECLAC	6	0.00	14	0.1	62.3	10	0.1	91.5	12	0.1	82.4	9	0.00	70.6	10	0.1	76.7
UNU	7	0.00	7	0.00	14	8	0.00	9.5	10	0.1	19.9	10	0.00	13.9	8	0.00	14.3
UNV	8	0.1	9	0.1	2	8	0.00	2.4	7	0.00	2.3	9	0.00	3	8	0.00	2.4
ESCWA	5	0.00	7	0.00	87.1	6	0.00	83.5	8	0.00	90	6	0.00	73.8	6	0.00	83.6
UNWTO	3	0.00	3	0.00	2.3	2	0.00	0.2	3	0.00	4.6	2	0.00	0.2	3	0.00	1.8
UNAKRT	2	0.00	1	0.00	69.5	1	0.00	78.1	1	0.00	65.7	1	0.00	66.6	1	0.00	70
합계	17,713	100	18,623	100	60.9	18,785	100	62.7	19,883	100	62.1	22,338	100	61.5	19,470	100	61.8

* 개도국 비중은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의 공급자 조달 비중을 의미한다. 개도국 비중 데이터는 2016년에 상위 10개 기관만 공개했기 때문에 2017-2020년 데이터만 포함했다. 개도국 비중 연평균은 2017-2020년 평균을 의미한다.

** 2016년 자료는 Explore ASR Data(n.d.)의 Supplier countries에서 값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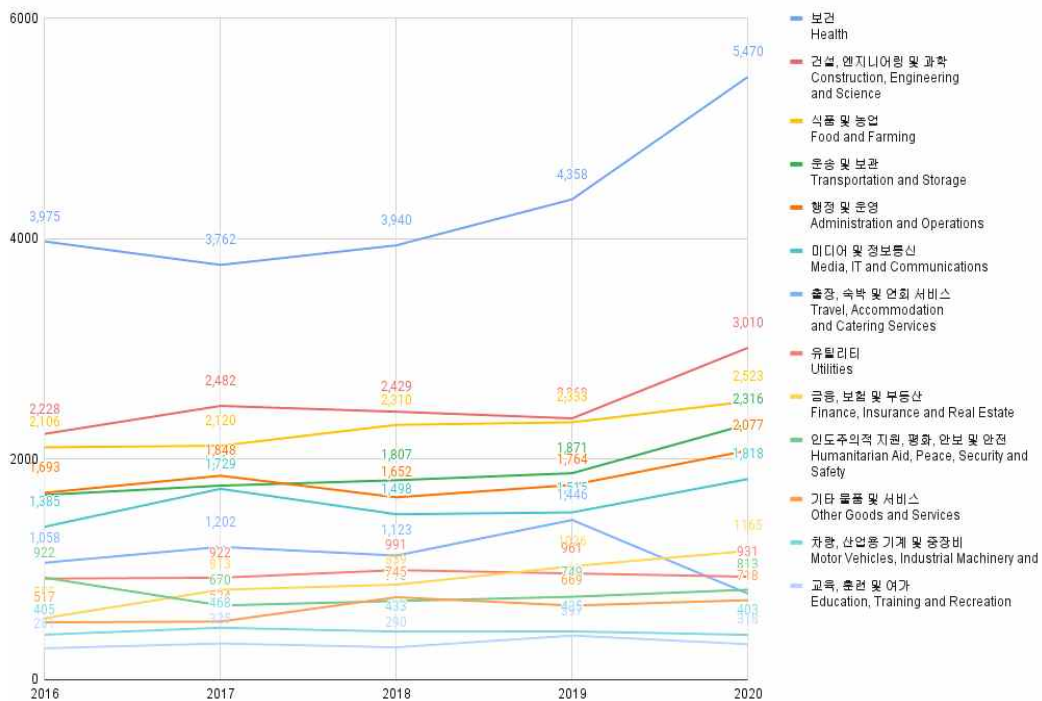
출처: UNOPS(2017-2021).; Explore ASR Data(n.d.)에서 재가공

산업분야별⁶²⁾로는 연평균으로 보건의료(22.1%), 건설, 엔지니어링 및 과학이 25억 달러(12.9%), 식품 및 농업이 22억 7,900만 달러(11.7%), 운송 및 보관이 18억 8,500만 달러(9.7%), 행정 및 운영이 18억 달러(9.3%), 미디어 및 정보통신이 15억 8,900만 달러(8.2%), 출장, 숙박 및 연회 서비스가 11억 2,100만 달러(5.8%), 유틸리티가 9억 4,400만 달러(4.8%), 금융, 보험 및 부동산이 8억 8,400만 달러(4.5%), 인도주의적 지원, 평화, 안보 및 안전이 7억 7,300만 달러(4.0%)를 차지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의하면, 국내기업은 해외진출과 관련 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로 에너지(33.0%), 교육(16.0%), 직업훈련(13.2%), 보건의료(9.4%)를 꼽았다. UN조달시장에서 교육, 훈련 및 여가 분야가 3억 2,200만 달러로(1.7%) 가장 작은 규모인 것은 국내기업에게 부정적이나, 보건 분야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국내기업에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3] 유엔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출처: Explore ASR Data(n.d.)에서 재가공

62) Explore ASR Data(n.d.)의 Categories의 Sector로 값을 구했다.

20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품목별⁶³⁾ 상위 10개에 포함된 물품은 의약품, 피임약 및 백신(15.2%), 식품(10.4%), 의료장비(5.1%), 연료 및 윤활유(3.1%), 정보통신 장비(2.7%)였다. 서비스로는 운송, 보관 및 우편 서비스(12.8%), 관리 및 행정 서비스(9.3%), 건설 및 유지보수 서비스(6.7%), 공학 및 연구 서비스(6.0%), 금융 및 보험 서비스(2.3%)가 포함됐다. 2020년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 중에서도 의약품, 피임약 및 백신(-6.0%)과 건설 및 유지 보수 서비스(-5.2%)의 비중이 가중 크게 줄어들었고, 의료장비(+7.1%)와 정보통신 장비(+5.4%)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 이런 의료장비 품목의 성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해외진출과 관련 있는 주요 ODA로 다루는 국내기업에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3〉 유엔 Top 10 세부 품목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세부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의약품, 피임약 및 백신 Pharmaceuticals, Contraceptives, Vaccines	2,848	16.1	2,641	14.2	2,996	16.0	3,239	16.3	3,035	13.6	2,952	15.2
2	운송, 보관 및 우편 서비스 Transportation, Storage, Mail Services	2,408	13.6	2,323	12.5	2,386	12.7	2,654	13.3	2,717	12.2	2,498	12.8
3	식품 Food and Beverage Products	1,891	10.7	1,894	10.2	2,047	10.9	2,070	10.4	2,174	9.7	2,015	10.4
4	관리 및 행정 서비스 Management and Admin Services	1,668	9.4	1,809	9.7	1,672	8.9	1,782	9.0	2,090	9.4	1,804	9.3
5	건설 및 유지보수 서비스 Building and Maintenance Services	1,185	6.7	1,303	7.0	1,393	7.4	1,370	6.9	1,290	5.8	1,309	6.7
6	엔지니어링 및 연구 서비스 Engineering and Research Services	998	5.6	1,279	6.9	1,105	5.9	1,087	5.5	1,328	5.9	1,159	6.0
7	의료장비 Medical Equipment	616	3.5	736	4.0	605	3.2	740	3.7	2,226	10.0	985	5.1
8	연료 및 윤활유 Fuels and Lubricants etc.	590	3.3	612	3.3	635	3.4	599	3.0	578	2.6	603	3.1
9	정보통신 장비 IT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459	2.6	626	3.4	440	2.3	461	2.3	666	3.0	531	2.7
10	금융 및 보험 서비스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202	1.1	438	2.4	416	2.2	558	2.8	636	2.8	450	2.3
Top 10 조달규모		12,866	72.6	13,662	73.4	13,697	72.9	14,561	73.2	16,742	74.9	14,306	73.5
전체 조달규모		17,713	100	18,623	100	18,785	100	19,893	100	22,338	100	19,4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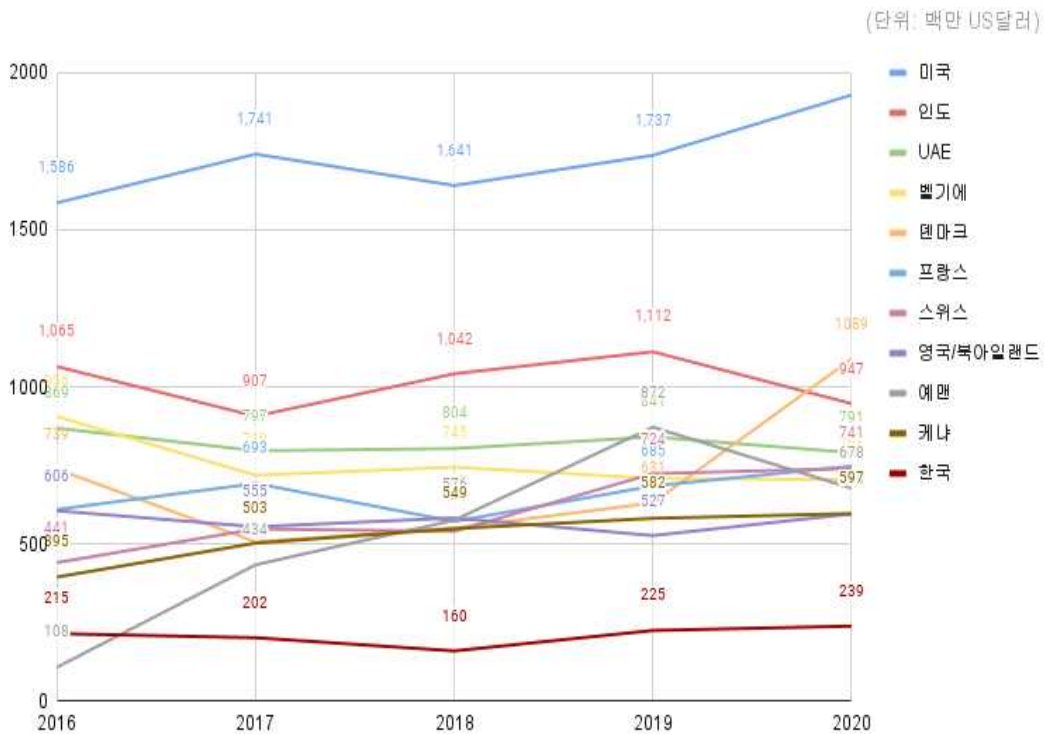
* 2019년 전체 조달규모는 raw-data와 Explore ASR Data(n.d.)의 Categories의 Procurement by category데이터가 상이하여 Explore ASR Data(n.d.)의 값을 사용했다.

63) Explore ASR Data(n.d.)의 Categories의 Procurement by category로 값을 구했다.

출처: Explore ASR Data(n.d.)에서 재가공

최근 5년간 가장 경쟁력 있는 벤더 국가⁶⁴는 미국이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미국이 17억 2,700만 달러(8.9%), 인도가 10억 1,500만 달러(5.2%), UAE가 8억 2,000만 달러(4.2%), 벨기에가 7억 5,700만 달러(3.9%), 덴마크가 7억 300만 달러(3.6%), 프랑스가 6억 6,200만 달러(3.4%), 스위스가 5억 9,900만 달러(3.1%), 영국/북아일랜드가 5억 7,300만 달러(2.9%), 예멘이 5억 3,400만 달러(2.7%), 케냐가 5억 2,500만 달러(2.7%)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억 800만 달러(1.1%)를 차지하며 27위에 머물렀다. 상위 10개 벤더 국가는 유엔기구들이 있는 북미 또는 유럽에 위치했거나 분쟁국 주변에 위치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림 5-4] 유엔 벤더 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Explore ASR Data(n.d.)에서 재가공

64) Explore ASR Data(n.d.)의 Categories의 Procurement by country값을 사용했다.

나. 세계은행(World Bank, WB) 조달시장 추세 및 특징

1) 시장의 특성

세계은행(WB)은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 1948년 칠레에 최초로 개도국 차관을 제공한 이래 최빈국은 물론 중진국에 이르기까지 교육·보건·경제·시설·수도·전력·정부 개혁·통신 등을 위한 차관, 융자 및 보조금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총회는 소수의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을 25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8개국을 대표하는 8명의 상임이사와 지역 그룹별로 사전에 합의된 보직순환계획에 따라 그룹 내 국가들이 순환제로 맡는 나머지 16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세계은행 총재는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상임이사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직을 맡는다.⁶⁵⁾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도국에 중장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빈곤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⁶⁶⁾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로 구성된다. IBRD와 IDA의 자매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⁶⁷⁾,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⁶⁸⁾, 국제투자보증기관(MIGA)⁶⁹⁾ 등 5개 기관을 '세계은행그룹'으로 총칭하고 있다. IDA는 IBRD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지만, IBRD가 IDA의 주요 직위(총회 위원, 상임이사, 총재 등)를 겸임하면서 IDA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으며, 실무부서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IBRD는 1946년 6월에 장기 개발자금 공여를 위한 유럽 전후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유럽재건을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실시한 후 중·저소득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IDA는 1960년 11월 저소득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장기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양허성 장기자금의 공급을 통해 IBRD의 차관 공여 활동을 보완하고자

65) 통상적으로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인이, IMF 총재는 유럽인이 맡는 것이 관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39)

66) 국제사회에서는 1972년부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경우를 양허성 공적개발원조(ODA)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증여율은 원조의 공여조건(이자율, 거치기간, 만기 등)을 재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상환액의 현재가치 간의 차액이 차관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67) 민간투자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68) 외국 투자자와 투자수혜국 간의 투자 분쟁 시 조정과 중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69) 투자자에게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시작되었다.

세계은행의 공적 재원을 통한 프로젝트 및 조달시장에서 주로 집행하는 기관은 IBRD 및 IDA이며, IFC에서는 저소득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이 투자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도국 시장에 공적 및 민간 재원을 투자하여 경제재건에 초점을 맞춘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에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형성되고 사업집행 및 입찰 진행까지 최소 2-5년의 수년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시장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준비 및 투자를 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 시장 동향

세계은행의 연평균 사업승인 규모는 477억 달러이고 지출규모는 354억 달러였다. 2020년 사업승인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2억 달러 증가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2020년에 IDA가 전년 대비 84억 달러 증가했고 IBRD가 47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런 추이는 저소득 국가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양허성 차관과 관련된 사업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연평균 기준으로 IDA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은 행정(14.1%), 에너지 및 채광(13.8%), 사회보장(11.5%) 순이었다. 다만, 2019년을 기점으로 최근에 보건(+2.52%), 교육(+1.62%), 사회보장(+1.49%)이 비중 면에서 크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였고, 반면에 농수산업(-3.73%), 금융(-2.04%), 에너지 및 채광(-0.73%)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5-5] 세계은행 기관별 사업승인 및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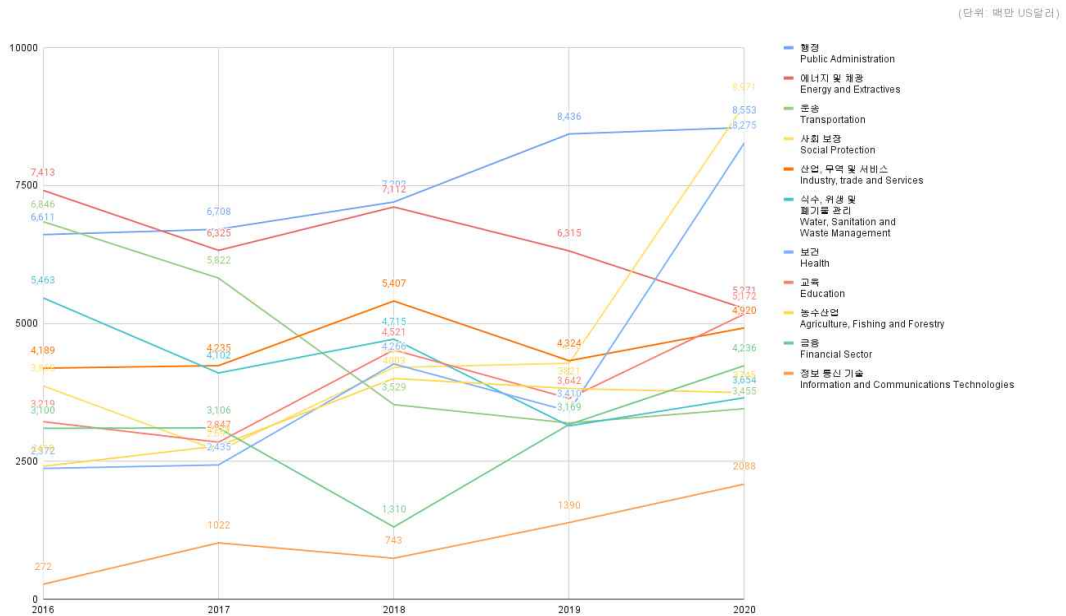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n.d.)에서 재가공

20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산업분야별로는 연평균 기준 행정이 75억 200만 달러(15.9%), 에너지 및 채광이 64억 8,700만 달러(13.9%), 운송이 45억 6,900만 달러(9.9%), 사회보장이 48억 200만 달러(9.8%), 산업, 무역 및 서비스가 46억 1,500만 달러(9.8%),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가 42억 1,500만 달러(9.0%), 보건이 41억 5,100만 달러(8.4%), 교육은 38억 8,000만 달러(8.1%), 농수산업은 33억 5,100만 달러(7.1%), 금융이 29억 8,400만 달러(6.3%), 정보 통신 기술이 11억 300만 달러(2.2%)를 차지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보건(+6.6%)과 교육(+0.8%)의 비중은 성장했다. 에너지 및 채광의 비중(-5.0%)은 하락했지만 하락한 후에도 4번째로 큰 산업으로 자리를 지켰다. 국내기업의 에너지, 교육, 보건산업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세계은행은 국내기업에게 긍정적인 조달시장일 수 있다.

[그림 5-6] 세계은행 산업분야별 사업승인 추이



출처: World Bank(n.d.)에서 재가공

세계은행은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투자해왔다. 아프리카는 사업승인과 지출 면에서 매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업승인 규모는 아프리카(30.8%), 남아시아(19.2%), 중남미(13.6%) 순이었고, 사업지출 규모는 아프리카(27.7%), 남아시아(18.1%), 동아시아 및 태평양(16.3%) 순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제V장 제4절 참조)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가장 주요한 수출대상 권역은 아시아(56.6%)로, 이런 맥락에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국내기업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표 5-4〉 세계은행 지역별 사업승인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지역	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
아프리카	IBRD	669	1163	1,120	820	1,725	1,099	2.3
	IDA	8,677	10,679	15,411	14,187	19,095	13,610	28.5
남아시아	IBRD	3,640	2,233	4,508	4,011	5,565	3,991	8.4
	IDA	4,723	3,828	6,153	4,849	6,092	5,129	10.8
중남미	IBRD	8,035	5,373	3,898	5,709	6,798	5,963	12.5
	IDA	183	503	428	430	978	504	1.1
동아시아 및 태평양	IBRD	5,176	4,404	3,981	4,030	4,770	4,472	9.4
	IDA	2324	2,703	631	1,272	2,500	1,886	4.0
유럽 및 중앙아시아	IBRD	7,039	4,569	3,550	3,749	5,699	4,921	10.3
	IDA	233	739	957	583	1,497	802	1.7
중동 및 북아프리카	IBRD	5,170	4,869	5,945	4,872	3,419	4,855	10.2
	IDA	31	1,011	430	611	203	457	1.0
합계	IBRD	29,729	22,611	23,002	23,191	27,976	25,302	53.1
	IDA	16,171	19,463	24,010	21,932	30,365	22,388	46.9
총합계	-	45,900	42,074	47,012	45,123	58,341	47,690	100

출처: World Bank(n.d.)에서 재가공

〈표 5-5〉 세계은행 지역별 사업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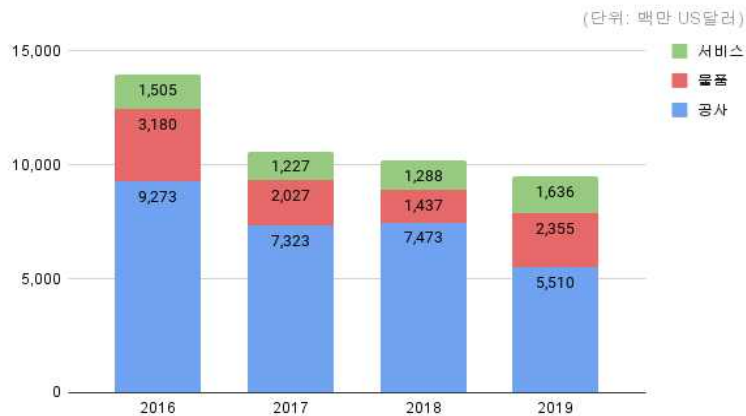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달러)

지역	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
아프리카	IBRD	874	427	734	690	1,087	762	2.2
	IDA	6,813	6,623	8,206	10,190	13,373	9,041	25.5
남아시아	IBRD	1,623	1,454	1,698	2,598	3,158	2,106	5.9
	IDA	4,462	3,970	3,835	4,159	5,235	4,332	12.2
동아시아 및 태평양	IBRD	5,205	3,961	3,476	5,048	4,679	4,474	12.6
	IDA	1,204	1,145	1,252	1,282	1,589	1,294	3.7
중남미	IBRD	5,236	3,885	4,066	4,847	5,799	4,767	13.5
	IDA	303	229	223	340	466	312	0.9
중동 및 북아프리카	IBRD	4,427	5,335	3,281	4,790	2,415	4,050	11.4
	IDA	44	391	569	647	151	360	1.0
유럽 및 중앙아시아	IBRD	5,167	2,799	4,134	2,209	3,100	3,482	9.8
	IDA	365	310	298	931	365	454	1.3
합계	IBRD	22,532	17,861	17,389	20,182	20,238	19,640	55.4
	IDA	13,191	12,668	14,383	17,549	21,179	15,794	44.6
총합계	-	35,723	30,529	31,772	37,731	41,417	35,434	100

출처: World Bank(n.d.)에서 재가공

최근 2016-2019년 세계은행의 조달규모⁷⁰⁾는 연평균 110억 5,900만 달러였다. 2016년 이후 조달규모는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조달규모는 전년 대비 6억 9,600만 달러 감소해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평균 조달분야별 규모로는 공사(66.9%), 물품(20.3%), 서비스(12.8%) 순이었다.

[그림 5-7] 최근 5년간 세계은행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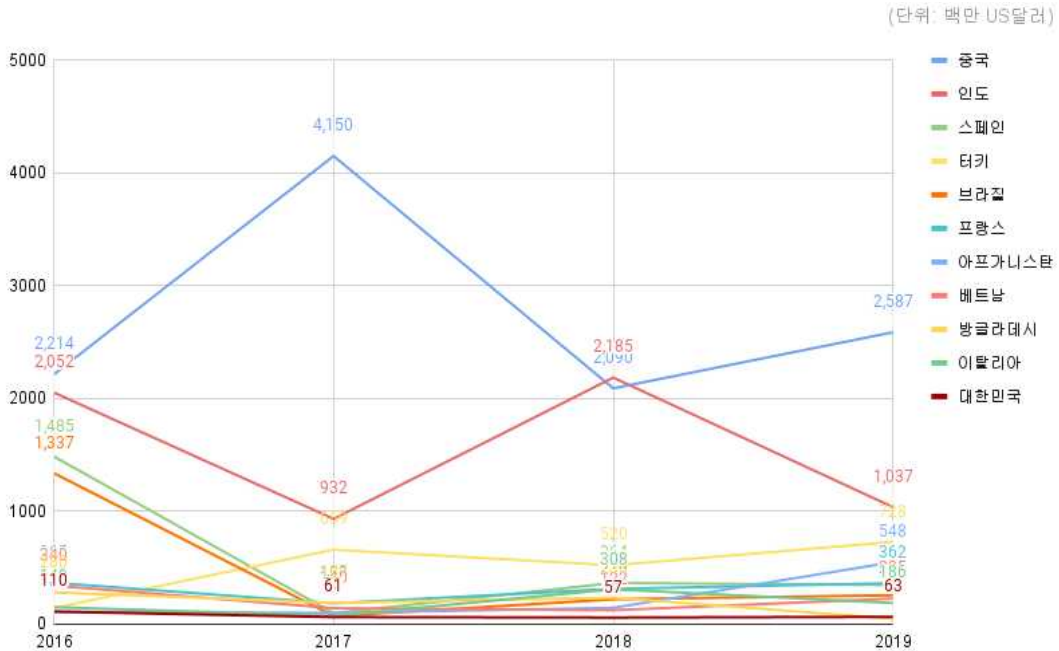
출처: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재가공

벤더 국가별⁷¹⁾로는 연평균 기준으로 중국이 27억 6,000만 달러(24.8%), 인도가 15억 5,100만 달러(13.9%), 스페인이 5억 7,200만 달러(5.15%), 터키가 5억 1,200만 달러(4.6%), 브라질이 4억 7,000만 달러(4.23%), 프랑스가 3억 500만 달러(2.7%), 아프가니스탄이 2억 2,400만 달러(2.0%), 베트남이 2억 600만 달러(1.9%), 방글라데시가 1억 8,600만 달러(1.7%), 이탈리아가 1억 7,900만 달러(1.6%)를 차지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조달시장의 38.8%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국가가 62.6%를 차지하는 등 소수 벤더 국가들에게 조달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7,300만 달러(0.64%)를 차지하며 30위에 머물렀다.

70)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Summary by Region & Procurement Category를 사용했으며, 2019년 자료가 최신 데이터여서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71)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Supply total by country를 사용했으며, 2019년 자료가 최신 데이터여서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림 5-8] 세계은행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재가공

3) 민간협력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 IFC 혼합금융 지원

세계은행 그룹 중 국제금융공사(IFC, 1956년 설립)는 민간기업을 투자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195개 국가가 출연하였으며, 주로 민간부문 투자대출 및 개발을 주로 담당한다. IFC의 민간지원 목적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빈곤퇴치와 공유 가능한 자산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IFC는 한국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개발을 도와 IFC의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한국 민간기업의 신흥국가(Emerging Market)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IFC 한국사무소의 세부적 역할은 주로 ①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해외기업 및 사업에 대한 IFC 참여가능성 여부 초기 검토 수행, ② 투자검토과정에서 투자대상국 및 섹터별 담당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국내 사업자의 편의성 도모, ③ IFC의 역할 및 투자상품에 대한 국내의 사업자들 (Prospective Clients)에게 설명 및 마케팅, ④ 국내 사업참여자들에게 해외 대상국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다.

IFC에서 지원하는 사업분야는 투자(Investments), 자문(Advisory), 자산운용(Mobilization)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분투자(Equity), 대출(Loans), 신디케이트론(Syndication), 무역금융(Trade and Supply Chain Finance), 재무 클라이언트

21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솔루션(Treasury Client Solutions),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벤처자본(Venture Capital) 등이 있다. 자문 부문은 민관 파트너십(PPP), 자금조달 접근 및 방안 자문, 투자환경 및 신규투자시장 자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고객의 성과극대화 방안 자문 등이 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장기 금융(Syndication)에 대해 Managed Co-Lending Portfolio Program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자금모집을 통한 투자 진행(블라인드 투자 pool)을 하며, Umbrella Loan 형식의 B Loans을 통해 공동대출자(Co-Lender)로 하여금 IFC의 최우선 채권자 지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Parallel Loans를 통해 타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공동대출 투자를 추진한다. 결국 IFC의 자체자금 및 타 기관 자금 융통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림 5-9] 세계은행 IFC의 주요 사업 분야 및 투자 영역



출처: IFC Korea(n.d.)에서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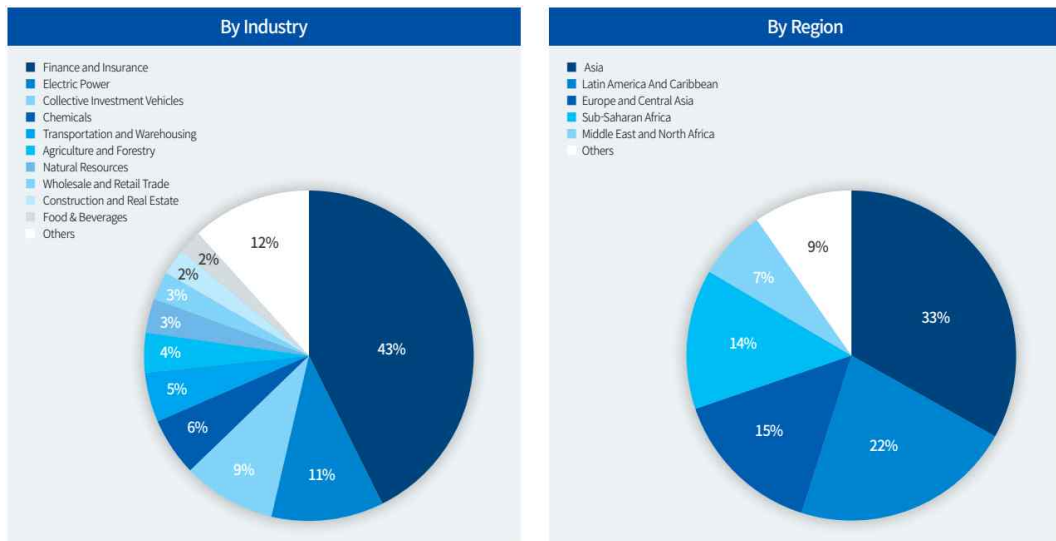
IFC에서 2020년 기준으로 누적 신규 장기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82개 사업의 219억 달러로, 코로나-19 발생원년인 2019년에 갑작스런 투자 감소가 있었으나, 2018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인출된 포트폴리오 누적 투자금액은 443억 달러로, 산업분야별로는 금융 및 보험 분야(43%), 전력 분야(11%), 집합투자기구(9%)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22%), 유럽 및 중앙 아시아(15%) 등의 순이었다.

[그림 5-10] 세계은행 IFC의 투자실적 개요



출처: IFC Korea(n.d.)

[그림 5-11] 세계은행 IFC의 투자 포트폴리오



출처: IFC Korea(n.d.)

투자분야 중 민간기업이 저개발국가 사업투자 시 활용 가능한 투자상품으로는 '혼합금융'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저개발국가 내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동반하는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20년 기준 약 13억 달러의 양허성 자금으로 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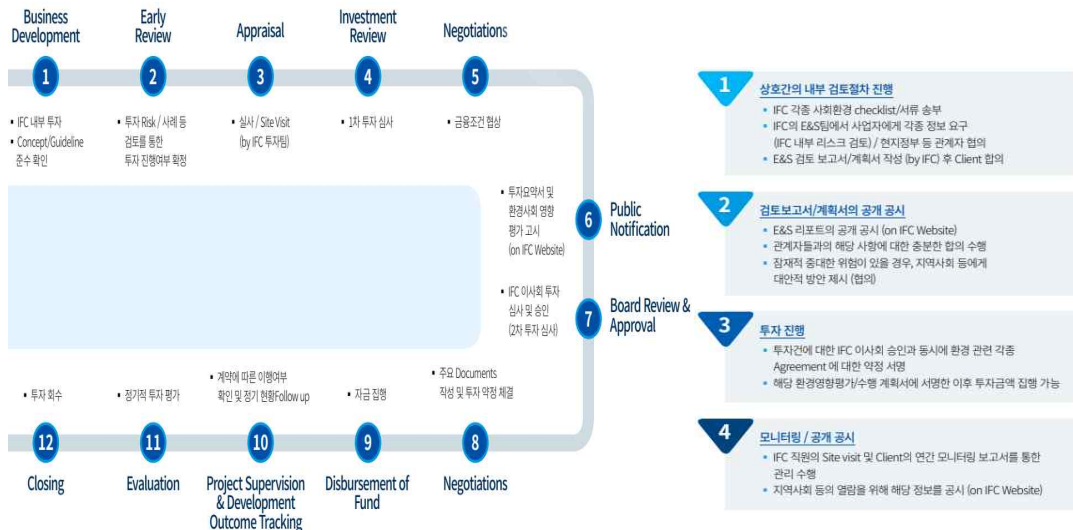
〈표 5-6〉 세계은행 IFC의 투자요건

투자 기본요건	환경 및 사회적 검토요건(E&S)												
 <p>IFC의 Member Country, 경제성 & 사업성, 투자 대상 국가/사회로의 Benefit 제공, 기술적으로 탄탄한 사업, 민간 기업/사업에 투자,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없는 사업</p>	<p>투자 대상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C의 자체 규정 (E&S Performance Standards, 2012 edition)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IFC 규정 뿐만 아닌, 현지 사업대상국의 국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수도 필요합니다. IFC 규정과 현지국가 규정이 다른 경우, 둘 중 더 높은 Guideline 준수를 요구합니다. E&S 검토수준은 투자 섹터별로 상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and Impac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Labor and Working Conditions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source Efficiency and Pollution Preven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mmunity Health, Safety, and Security <input checked="" type="checkbox"/> Land Acquisition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Living Natural Resourc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digenous Peop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Cultural Heritage 												
혼합금융에서의 추가 검토요건													
<p>해당 프로그램의 투자 5대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ditionality & Rationality - 양허적 성격이 "일부" 추가되어야 하는 필요성 Minimum Concessionality - 민간 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양허성 비중은 최소화 Commercial Sustainability - 투자 대상 사업의 최소한의 상업성/지속가능성 필수 Reinforcing Market - 민간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참여 Promoting High Standards -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환경이슈,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 	<p>주요 검토 요건 및 양허성 수준</p>  <p>제공된 양허성 수준 (by Blended Finance Facility Theme)</p>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요 테마</th> <th>양허성 수준 (% of 총사업비)</th> </tr> </thead> <tbody> <tr> <td>농업부문</td> <td>4.3%</td> </tr> <tr> <td>기후관련</td> <td>3.0%</td> </tr> <tr> <td>SME (중소기업)</td> <td>1.9%</td> </tr> <tr> <td>Gender (성평등관련)</td> <td>1.1%</td> </tr> <tr> <td>Low Income / 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 (저개발/고위험 국가)</td> <td>5.9%</td> </tr> </tbody> </table> <p>* 양허성 수준 = (사채금융조건 - IFC BFF 금융조건) / 총사업비</p> <p>* 주) 양허성(Concessional) 금융 조건: 이자율, 상환기간, 가치기간 면에서 일반 금융조건에 비교하여 차입기관에 유리한 조건</p>	주요 테마	양허성 수준 (% of 총사업비)	농업부문	4.3%	기후관련	3.0%	SME (중소기업)	1.9%	Gender (성평등관련)	1.1%	Low Income / 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 (저개발/고위험 국가)	5.9%
주요 테마	양허성 수준 (% of 총사업비)												
농업부문	4.3%												
기후관련	3.0%												
SME (중소기업)	1.9%												
Gender (성평등관련)	1.1%												
Low Income / 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 (저개발/고위험 국가)	5.9%												

일반적으로 IFC의 투자요건은 기본요건과 환경 및 사회적 검토요건을 갖추어야 실질적 투자가 진행된다. 기본요건은 경제성 및 사업성,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혜택 제공, 해당 국가 및 IFC의 환경적/사회적 기준에 적합성, 민간 기업에의 투자, 기술력이 있는 사업, 투자 대상국가가

IFC 회원국일 것 등이다. 특히 해당 국가 및 IFC의 환경적/사회적 기준에 적합성을 살펴보는 환경 및 사회적 검토요건에는 투자섹터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환경/사회 위험 영향평가, 노동조건, 자원 효율성 및 환경보호, 커뮤니티 보건 및 안전,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생물다양성 보전, 원주민 및 문화유산 보호 등이 포함된다. 혼합금융에서는 상기의 투자요건과 더불어 양허성 자금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초기 투자 건인지를 추가적으로 더 검토한다. IFC의 투자절차는 [그림 5-12]와 같으며, IFC 내부투자 관리과정에서 E&S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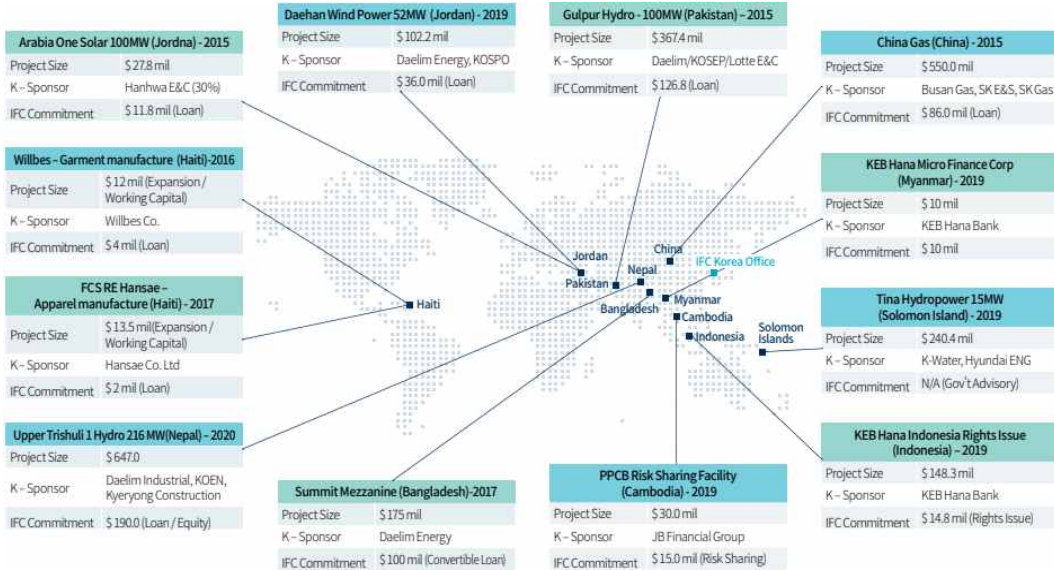
[그림 5-12] 세계은행 IFC의 내부 투자관리 절차



출처: IFC Korea(n.d.)

IFC 한국사무소가 2014년 개소한 이후 2020년까지 한국기업이 IFC 투자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우는 약 70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인프라 분야에서는 발전, 수처리, 교통인프라 등 약 30개 프로젝트,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유통, 교육, 부동산, 산업재, 자동차 등 약 25개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업, 무역금융상품 등 약 1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거의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개발도상국에 개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었다. 개도국의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지원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5-13] 세계은행 IFC 한국사무소 진출사업 사례



출처: IFC Korea(n.d.)

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조달시장 추세 및 특징

1) 시장의 특성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된 지역개발금융기구로, 1963년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AFE) 각료회의에서 구상을 제안, 1965년 12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설립 협정을 조인하였고 1966년 12월 활동을 개시하였다. AD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Board of Governors이며 67개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Governor가 위원이 된다. ADB의 회원국은 1966년 31개국에서 시작하여 현재 68개국(49개국의 역내 회원국⁷²⁾과 19개국⁷³⁾의 역외 회원국)으로 증가하였다.

72) 역내 회원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그루지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공화국, 키르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중국,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통티모르,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이 있다.

73) 역외 회원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원은 크게 일반재원(Regular 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 양허재원(Concessional Resources), 무역금융, 공급망 금융 및 소액금융 프로그램(Trade Finance, Supply Chain Finance and Microfinance Programs, TSCFP),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특별기금(Special Funds)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주로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개발도상국에게 차관을 제공하며, 양허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주로 저소득 개발도상국 국가에게 공여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역금융, 공급망 금융 및 소액금융프로그램은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보증 또는 차관을 제공하여 무역 금융을 지원한다. 기술지원은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 설문조사, 워크숍, 세미나, 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을 제외한 특별기금에는 아태지역 재난대응기금(Asia Pacific Disaster Response Fund)과 기후변화기금(Climate Change Fund)이 있다.

세계은행은 독립된 5개 기관이 상호 다른 권한과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ADB는 모든 자금을 ADB 본부가 직접 통제, 집행하고 있다. 차관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소요자금 성격, 상환조건, 규모에 따라 자금원을 달리하므로, 자금원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및 조달절차, 담당자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진행해야 한다.

2) 시장 동향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사업승인 규모는 234억 달러를 기록했고 사업지출⁷⁴⁾ 규모는 15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 승인과 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75억 7,800만 달러, 71억 1,400만 달러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 권역이 아시아인 국내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재원별로 보면 승인에서는 연평균 기준으로 일반재원(72.2%), 양허재원(17.1%), 무역금융, 공급망 금융 및 소액금융프로그램(9.7%), 기술지원(1.0%), 특별기금(0.1%) 순이었고, 지출에서는 일반재원(81.7%), 양허재원(18.2%), 기타 특별 기금(0.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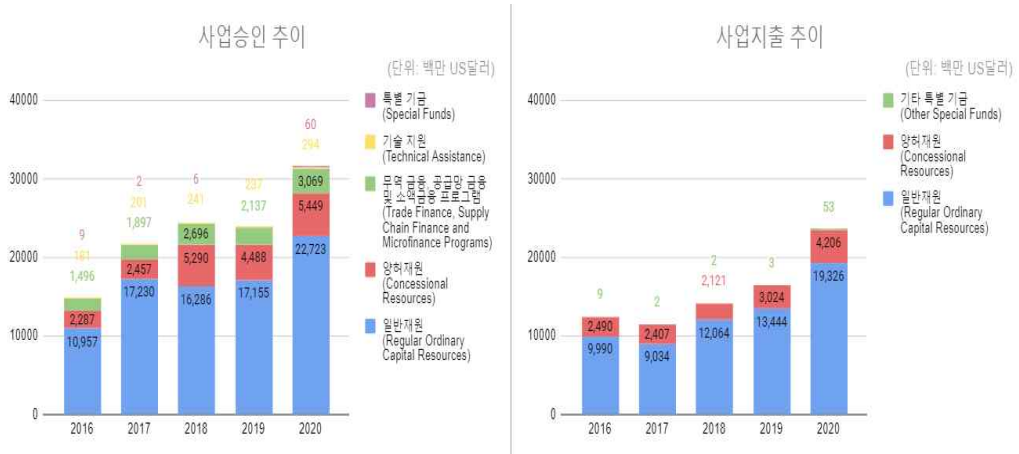
산업분야별로는 연평균 기준 운송이 47억 1,400만 달러(20.2%), 에너지가 42억 5,700만 달러(18.2%), 공공부문 관리가 35억 8,800만 달러(15.4%), 금융이 35억 1,300만 달러(15.0%), 수도 및 기타 도시 인프라가 17억 2,000만 달러(7.4%), 농업, 천연자원, 농촌개발이 17억 200만 달러(7.3%), 산업 및 무역이 16억 5,000만 달러(7.1%), 교육은 10억 4,000만 달러(4.5%), 보건의 10억 2,600만 달러(4.4%), 정보통신기술은 1억 5,400만 달러(0.7%), 다분야가 500만 달러(0.02%)를

74) 지출부분은 양허재원, 일반재원, 기타특별기금 재원 정보만 공개되어 있다.

21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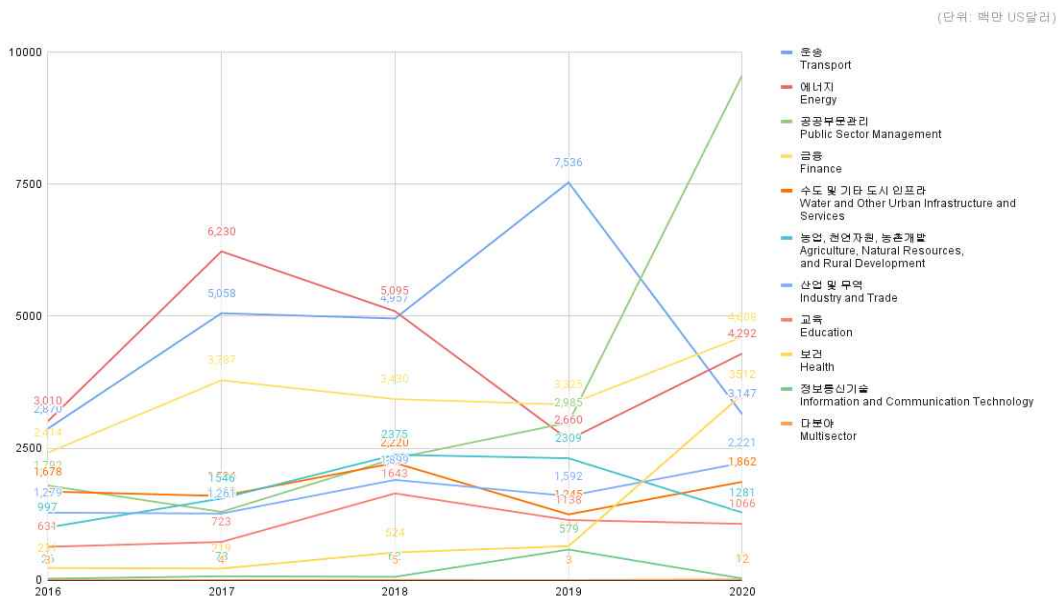
차지했다. 2019년 기점으로 보건 분야가 29억 달러 급증한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5-14]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자원별 사업승인 및 지출 추이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a)에서 재가공

[그림 5-15] 아시아개발은행 산업분야별 사업승인 추이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a)에서 재가공

지역별 사업승인은 연평균 기준으로 남아시아(30.1%), 동남아시아(29.0%), 중앙 및 서아시아(24.6%), 동아시아(11.6%), 태평양(2.6%), 기타 지역(1.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남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20년도에 동남아시아의 사업승인 규모가 성장하며 2020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

〈표 5-7〉 아시아개발은행 지역별 사업승인 추이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
남아시아	3,925	7,238	7,623	7,307	9,034	7,025	30.1
동남아시아	4,326	4,668	7,141	7,181	11,629	6,989	29.0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4,237	6,067	5,700	6,111	6,577	5,738	24.6
동아시아	2,022	2,810	3,162	2,663	2,893	2,710	11.6
태평양	266	740	369	461	1,150	597	2.6
기타 지역	154	265	523	294	310	309	1.3
합계	14,930	21,788	24,518	24,017	31,594	23,369	100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a)에서 재가공

아시아개발은행의 조달규모는 연평균 110억 30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 137억 5,800만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조달분야별⁷⁵⁾로는 연평균 기준 공사(62.2%), 물품(12.7%), 턴키계약⁷⁶⁾(12.6%), 기타(12.2%), 펠로우십⁷⁷⁾(0.0003%) 순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은행과 다르게 조달규모가 오히려 상승했으며, 공사분야의 비중도 상승한 추이를 보였다.

벤더 국가별⁷⁸⁾로는 인도 연평균 기준 가장 경쟁력 있는 벤더 국가였다. 중국이 27억 5,500만 달러(24.0%), 인도가 27억 3,200만 달러(23.8%), 방글라데시가 9억 4,500만 달러(8.2%), 스리랑카가 6억 3,700만 달러(5.6%), 한국이 5억 7,500만 달러(5.0%), 필리핀은 5억 4,800만 달러(4.8%), 파키스탄이 5억 2,000만 달러(4.5%), 인도네시아가 4억 3,200만 달러(3.8%), 독일이 3억 3,100만 달러(2.9%), 베트남은 3억 2,100만 달러(2.8%)를 차지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세계은행과 같이 중국과 인도가 큰 비중을 가졌다. 다만, 세계은행에서 0.64% 비중으로 30위에 머물던 한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5.0% 비중으로 5위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75) Asian Development Bank(2021)의 증여(Grant) 데이터에는 조달분야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차관(Loan) 데이터만 사용했다.

76) 턴키계약이란 일괄 수주 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계약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완성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77) 펠로우십은 인도네시아 대학 Universitas Gaja Mada의 교육서비스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78) Asian Development Bank(2021b)의 Address에서 국가 명을 추출하여 사용했으며, 증여(Grant) 데이터와 차관(Loan) 데이터 모두 사용했다.

21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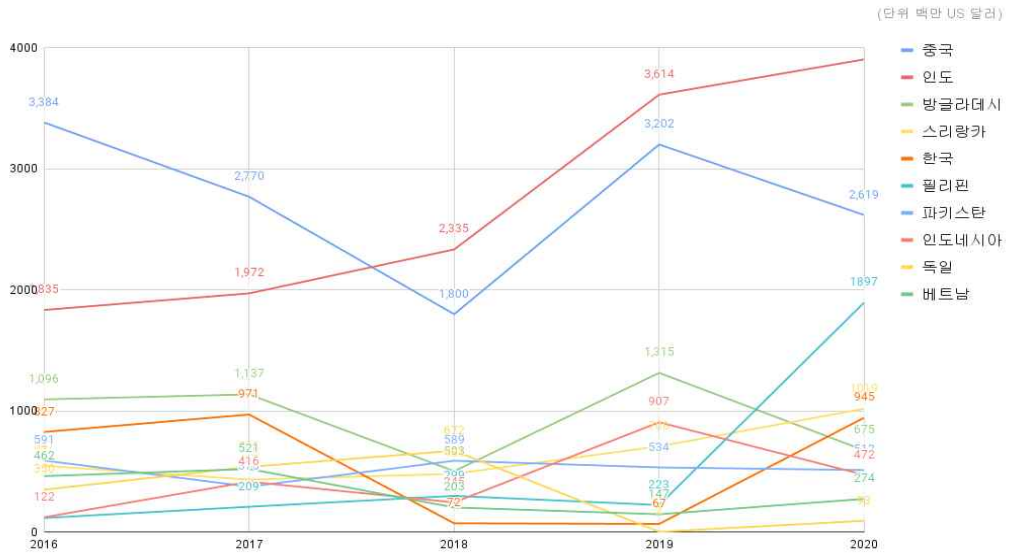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이 국내기업에게 더 진출 용이한 시장일 수 있다.

[그림 5-16]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b)에서 재가공

[그림 5-17] 아시아개발은행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b)에서 재가공

3) 민간협력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 ADB 벤처 파이낸싱 파트너십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ADB 벤처 파이낸싱 파트너십이라는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여 개발 파트너와 전략적, 장기적 다중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해 약 30년간 운영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에는 ADB 벤처투자기금(ADB Ventures Investment Fund 1)과 ADB 벤처 기술지원(ADB Ventures Technical Assistance)을 운영한다. 해당 파트너십은 ADB 내 개발도상국에서 임팩트 기술을 통해 SDG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지원 솔루션으로, 주로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ADB의 전략 2030에서 강조하는 빈곤, 불평등의 증가, 기후변화, 환경 압력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미완성 개발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 솔루션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2020년 1월에 설립된 ADB 벤처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80%)와 젠더(75%)의 임팩트 투자렌즈를 적용하여 SDG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6월 1일, ADB 벤처펀드에 1,500만 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 핀란드 정부(2,200만 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 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 달러) 등이 참여하고 있다. ADB는 동 기금을 통해 ADB 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의 파트너를 네트워크화하여 새로운 혁신적 파트너를 찾아내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B 벤처투자기금은 우리나라도 출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2. 양자 공여기관 조달시장

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조달시장 추세 및 특징

1) 시장의 특성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FAA)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계최대 양자원조기관인 USAID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독립적 연방정부기관으로, USAID는 기존 국제협력청(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제·기술적 원조활동 및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의 차관제공, 수출입은행의 화폐통화기능, 농림부의 농업이익분배 활동인 Food for Peace 프로그램 등을 통합, 국가 주도 대외원조 계획 수립 및 장기개발계획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으로

개편된 조직이다. USAID 수행사업은 자국의 안보 및 경제 번영 증진, 수혜국의 자립성 및 탄력성 제고, 자국의 관용(Generosity)을 전 세계에 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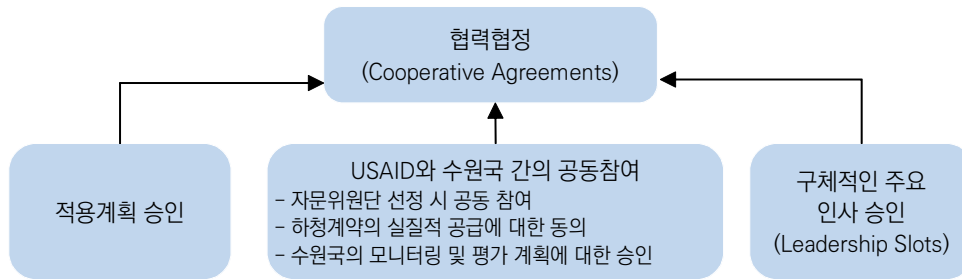
USAID는 크게 국제개발연구실(U.S. Global Development Lab), 농업 및 식량 안보(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경제성장 및 무역(Economic Growth and Trade), 교육(Education), 환경 및 국제기후변화(Environment and Global Climate Change),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국제 보건(Global Health),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위기와 갈등(Working in Crises and Conflict) 등 총 10개의 핵심 섹터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USAID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국별 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ve Strategy, CDCS) 수립 후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 설계 및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CDCS는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며 USAID Mission의 해당 국가별 접근 방식, 자립궤도(Self-Reliance Trajectory) 표명 그리고 구체적인 예상 결과를 명시한다. CDCS는 USAID의 프로젝트, 활동 설계 및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전략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USAID 미션은 USAID 웹사이트와 USAID 개발경험정보센터(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house, DEC)⁷⁹⁾에 계획을 게재한다.

USAID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크게 조달(Acquisition)과 원조(Assistance)로 구분되며 원조 방식은 다시 증여(Grants),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s)으로 세분화된다. USAID는 사업 형성단계에서 사업의 성격,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후 사업이 전개되며 이후 조달(Acquisition)과 원조(Assistance)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원조에 해당하는 증여(Grants)와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s)은 동일한 원조 방식이나 협력협정의 경우 USAID가 [그림 5-18]의 '관여'를 행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이다.

79) 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house는 USAID가 시행하는 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서화된 자료가 총망라된 정보 사이트다. (<https://dec.usaid.gov/dec/home/Default.aspx>)

[그림 5-18] USAID 협력협정에 대한 관여 요소



<표 5-8> 조달(Acquisition)과 원조(Assistance)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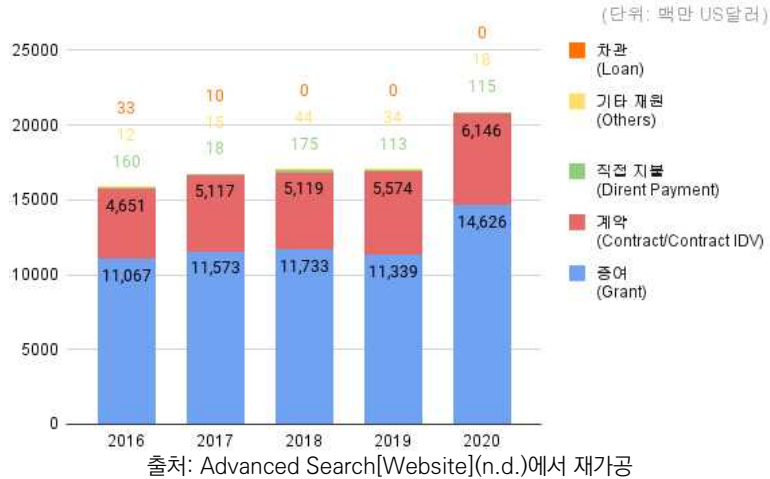
조달(Acquisition)	원조(Assi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AID의 직접적 사용 및 이윤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에 기여하고 대외원조법의 발전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USAID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자금(또는 기타 귀중품)을 양도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정부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정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재정적 후원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RFP) 또는 견적요청(RFQ)에 따른 제안서(Proposal)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프로그램 명세서(APS) 또는 신청요청(RFA)에 따른 신청서(Application) 제출

출처: KOICA(2019)

2)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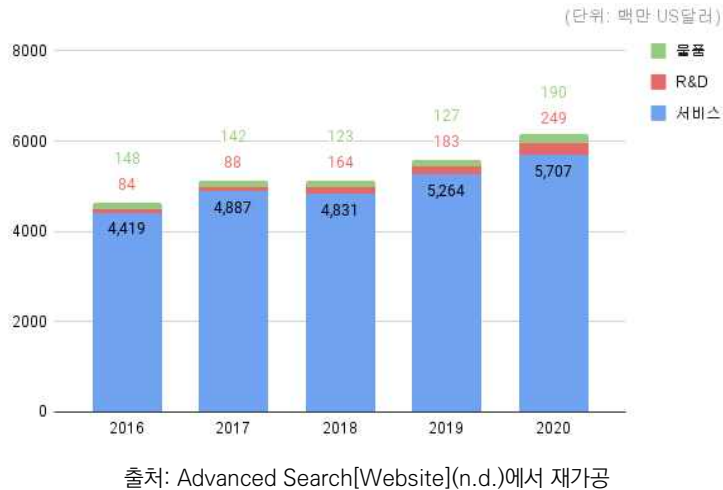
미국 국제개발처의 연평균 조달실적 규모는 175억 3,800만 달러이다. 2020년에 약 2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8억 4,500만 달러 향상됐다. 재원별로 보면 연평균 기준으로 증여(68.8%), 계약(30.3%), 직접 지불(0.7%), 기타 자원(0.1%), 차관(0.1%) 순이었다. 2020년에 증여와 계약의 규모가 전년대비 각각 32억 8,700만 달러, 5억 7,200만 달러 성장했다.

[그림 5-19]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자원별 조달실적 추이



조달분야별⁸⁰⁾ 규모는 연평균을 기준으로 서비스(94.4%), R&D(2.9%), 물품(2.7%) 순이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사업 대부분이 서비스 분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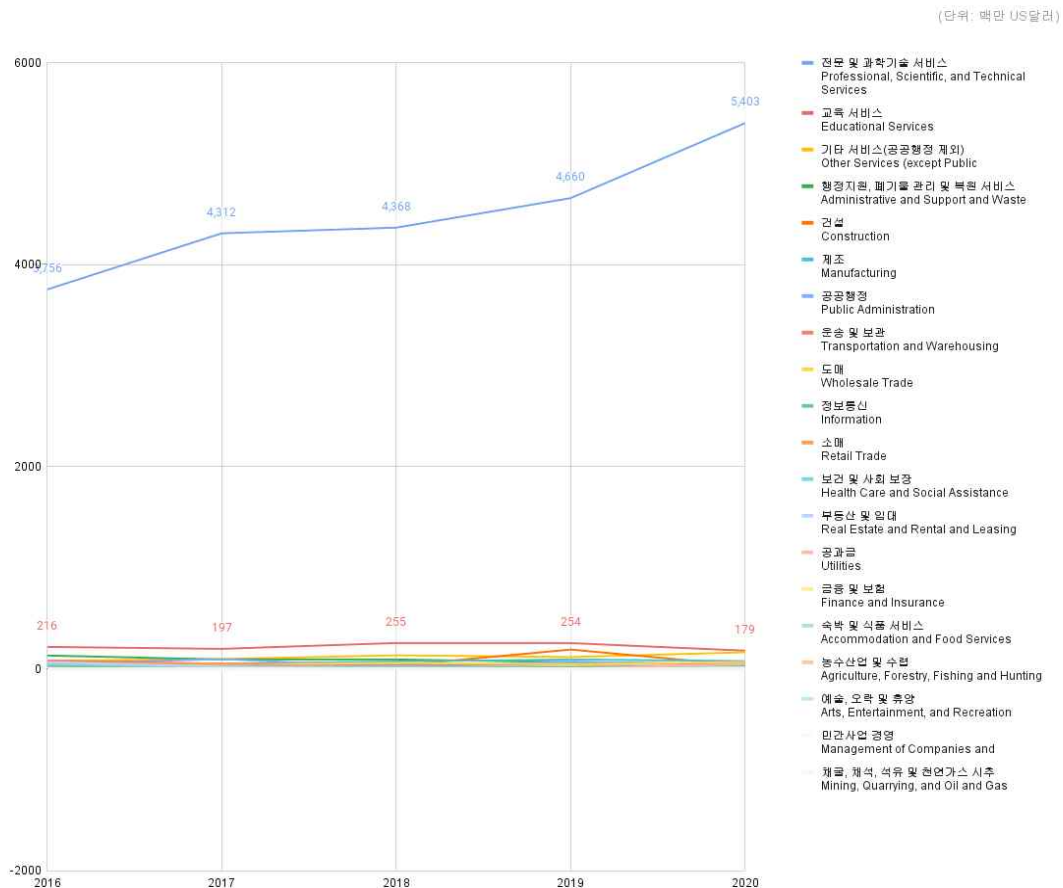
[그림 5-20]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80) 자원별 조달실적을 제외한 모든 그림과 표의 값은 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Time Period, Award Type(Contracts, Contract IDVs), Agency(Awarding Agency: USAID)를 설정 후, 우측 상단 Download를 눌러서 Transaction, Everything을 누른 후 다운로드받는 Contracts_PrimeTransactions의 Federal_Action_Obligation을 사용한 값이다. 조달분야는 Acquisition.gov 사이트(<https://www.acquisition.gov/psc-manual>)에서 제공하는 PSC_Manual에 따라 A로 시작하는 PSC CODE면 R&D로, B~Z로 시작하면 서비스로, 숫자로 시작하면 물품으로 취급했다.

산업분야별⁸¹⁾로는 연평균 기준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가 45억 달러(84.6%), 교육 서비스가 2억 2,000만 달러(4.1%), 기타 서비스(공공행정 제외)가 1억 1,700만 달러(2.2%), 행정지원, 폐기물 관리 및 복원 서비스가 8,500만 달러(1.6%), 건설이 7,100만 달러(1.3%), 제조가 6,400만 달러(1.2%), 공공행정이 5,500만 달러(1.0%), 운송 및 보관은 5,400만 달러(1.0%), 도매가 5,400만 달러(1.0%), 정보통신이 2,500만 달러(0.5%)를 차지했다.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의 분야가 다양함을 감안했을 때,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1] 미국 국제개발처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재가공

81) 산업분야는 Advanced Search[Website](n.d.)의 NAICS 코드를 기준으로 Contracts_Primitransactions의 naics_code를 분류해 얻은 값이다.

22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세부 서비스별⁸²⁾로는 연평균 기준 엔지니어링/기술 서비스(33.5%), 기타 서비스(23.6%), 프로그램 관리 및 지원 서비스(16.3%), 용역계약 서비스(3.2%), 계약 및 조달지원 서비스(1.6%), 기타 행정 서비스(1.2%), 일반 교육 및 훈련 서비스(1.2%),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서비스(1.2%), 기타 환경 서비스(1.2%), IT 및 앱 개발 지원 서비스(1.1%) 순이었다. 반면, 세부 물품별 조달실적은 의료 및 수술 장비(0.9%), 특수 식이 식품(0.7%), IT 및 앱 소프트웨어(0.2%), 식품(0.2%), 태양열 전력 시스템(0.1%), 기타 전력 및 배전기(0.1%), 하드웨어(0.1%), IT 및 네트워크(0.1%), 사무용품(0.04%), 전자회로(0.02%) 순이었다. 세부 물품 품목 Top 10의 비중은 2.3%에 불과하여 세부 서비스 품목 Top 10의 비중(84.1%)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제V장 제4절 참조)에 의하면, 일반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의료 및 수술 장비, 태양열 전력 시스템, 기타 전력 및 배전기와 같은 세부품목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9〉 미국 국제개발처 Top 10 세부 서비스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세부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엔지니어링/기술 서비스 SUPPORT- PROFESSIONAL: ENGINEERING/TECHNICAL	1,292	27.8	1,662	32.5	1,655	32.3	1,739	31.2	2,559	41.6	1,781	33.5
2	기타 서비스 SUPPORT- PROFESSIONAL: OTHER	1,264	27.2	1,258	24.6	1,190	23.2	1,290	23.1	1,283	20.9	1,257	23.6
3	프로그램 관리 및 지원 서비스 SUPPORT- PROFESSIONAL: PROGRAM MANAGEMENT/SUPPORT	649	14.0	883	17.3	834	16.3	1,084	19.4	882	14.3	866	16.3
4	용역계약 서비스 SUPPORT- PROFESSIONAL: PERSONAL SERVICES CONTRACTS	129	2.8	145	2.8	201	3.9	161	2.9	210	3.4	169	3.2
5	계약 및 조달지원 서비스 SUPPORT- MANAGEMENT: CONTRACT/ PROCUREMENT/ACQUISITION SUPPORT	179	3.8	37	0.7	81	1.6	79	1.4	52	0.8	85	1.6
6	기타 행정 서비스 SUPPORT- ADMINISTRATIVE: OTHER	30	0.6	74	1.5	80	1.6	90	1.6	55	0.9	66	1.2
7	일반 교육 및 훈련 서비스 EDUCATION/TRAINING- GENERAL	54	1.2	85	1.7	81	1.6	54	1.0	52	0.8	65	1.2
8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서비스	83	1.8	91	1.8	56	1.1	44	0.8	43	0.7	64	1.2

82) 세부 서비스와 물품은 Acquisition.gov 사이트(<https://www.acquisition.gov/psc-manual>)에서 제공하는 Category Alignment 내 Product And Service Code Name을 기준으로 Contracts_Primetransactions의 product_or_service_code를 분류해 얻은 값이다.

	SUPPORT- PROFESSIONAL: PROGRAM EVALUATION/REVIEW/DEVELOPMENT												
9	기타 환경 서비스 OTHER ENVIRONMENTAL SERVICES	52	1.1	53	1.0	108	2.1	48	0.9	52	0.8	63	1.2
10	IT 및 앱 개발 지원 서비스 IT AND TELECOM- BUSINESS APPLICATION/APPLICATION DEVELOPMENT SUPPORT SERVICES (LABOR)	67	1.4	70	1.4	63	1.2	57	1.0	30	0.5	58	1.1
Top 10 조달규모		3,799	81.7	4,360	85.2	4,351	85.0	4,647	83.4	5,217	84.9	4,475	84.1
전체 조달규모		4,651	100	5,117	100	5,119	100	5,574	100	6,146	100	5,321	100

출처: 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재가공

〈표 5-10〉 미국 국제개발처 Top 10 세부 물품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세부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의료 및 수술 장비 MEDICAL AND SURGICAL INSTRUMENTS, EQUIPMENT, AND SUPPLIES	81	1.7	33	0.6	51	1.0	28	0.5	55	0.9	49	0.9
2	특수 식이 식품 SPECIAL DIETARY FOODS AND FOOD SPECIALTY PREPARATIONS	14	0.3	31	0.6	31	0.6	58	1.0	52	0.8	37	0.7
3	IT 및 앱 소프트웨어 IT AND TELECOM- BUSINESS APPLICATION SOFTWARE(PERPETUAL LICENSE SOFTWARE)	7	0.2	14	0.3	4	0.1	10	0.2	11	0.2	9	0.2
4	식품 FOOD, OILS AND FATS	18	0.4	21	0.4	0	0.01	2	0.04	2	0.03	9	0.2
5	태양열 전력 시스템 SOLAR ELECTRIC POWER SYSTEMS	N/A	N/A	10	0.2	0	0.00	0	0.00	16	0.3	5	0.1
6	기타 전력 및 배전기 MISCELLANEOUS ELECTRIC POWER AND DISTRIBUTION EQUIPMENT	0	0.00	0	0.00	0	0.00	2	0.04	23	0.4	5	0.1
7	하드웨어 HARDWARE, COMMERCIAL	4	0.1	6	0.1	5	0.1	0	0.01	0	0.00	3	0.1
8	IT 및 네트워크 IT AND TELECOM- NETWORK ANALOG VOICE PRODUCTS (HARDWARE AND PERPETUAL LICENSE SOFTWARE)	0	0.01	1	0.0	1	0.02	3	0.1	7	0.1	3	0.1
9	사무용품 OFFICE SUPPLIES	3	0.1	1	0.03	2	0.04	1	0.02	1	0.02	2	0.04
10	전자회로 MICROCIRCUITS, ELECTRONIC	N/A	N/A	0	0.00	0	0.00	3	0.05	4	0.1	1	0.02
Top 10 조달규모		126	2.7	118	2.3	94	1.8	107	1.9	172	2.8	124	2.3
전체 조달규모		4,651	100	5,117	100	5,119	100	5,574	100	6,146	100	5,321	100

출처: 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재가공

미국 국제개발처에서는 연평균 기준⁸³⁾으로 미국이 51억 1,000만 달러(96.0%), 케냐가 1억 300만 달러(1.9%), 영국은 1,000만 달러(0.2%), UAE가 1,000만 달러(0.2%), 파키스탄이 1,000만 달러(0.2%), 남아프리카가 1,000만 달러(0.2%), 이스라엘이 800만 달러(0.2%), 요르단이 600만 달러(0.1%), 바레인도 600만 달러(0.1%), 에티오피아가 400만 달러(0.1%)를 차지했다. 미국 국제개발처 조달시장은 아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국에 상당히 폐쇄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5-22] 미국 국제개발처 벤더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재가공

3) 민간협력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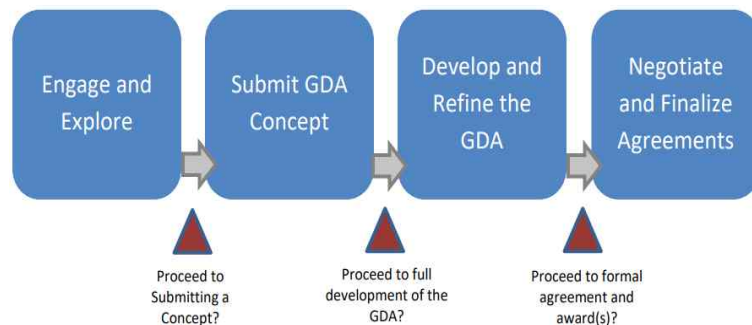
USAID의 다양한 민간부문참여 정책 중 기업이 선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Global Development Alliances(이하 GDA)가 있다. GDA는 민간부문과 USAID가 협력을 기반으로 각자의 자산과 전문성을 활용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파트너십이다. GDA 참가 조건은 국적제한 없이 영리기업, 영리기업과 연계된 민간 재단,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협동조합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부문 파트너를 확보한 후 파트너를 통해 참가

83) Contracts_Primitransactions의 recipient_country_name을 분류해 얻은 값이다.

신청을 해야 한다.

GDA의 최종 파트너가 되려면 참여 및 탐색(Engage and Explore), 제안서 제출(Submit GDA Concept), 제안서 발전 및 개선(Develop and Refine the GDA), 협상 및 협의(Negotiate and Finalize Agreements) 순으로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참여 및 탐색 단계에서는 참가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PSE Point of Contact에 접촉하면 된다. 만약 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통해 접촉해야 한다.

[그림 5-23] 미국 국제개발처 GDA APS CO-Creation Process



출처: Global Development Alliance Annual Program Statement(2020)

신청서 평가기준은 USAID/M/B/IO의 전략적 목표와의 일치, 민간부문의 참여 및 협력, 개발협력적 영향, 가치제안, 파트너 및 수혜자의 이익 창출, 민간부문 자원의 동원으로 총 6가지다. 각 기준별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 및 협력에서는 어떻게 민간부문 파트너의 역량이 성취하고자 하는 GDA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개발협력적 영향에서는 투자 대비 가장 큰 결과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개발과 이행에 지역 파트너와/또는 수혜자들을 참여시키는 제안서를 선호한다. 그리고 결과의 지속가능성과 표적시장 참여에 대한 사업사례도 검토한다.

가치제안에서는 제안하는 GDA 프로젝트가 비(非)GDA 프로젝트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검토한다. 파트너 및 수혜자의 이익 창출에서는 지역 기업을 파트너와/또는 수혜자로 참여시키는 국가 규모의 GDA 프로젝트인지, 새로운 개발협력 행위자를 개입시키는지, 소외된 커뮤니티를 가장 중요한 수혜자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수요를 생각하는지 검토한다. 특히, 지역의 주인 의식, 리더십, 참여를 성공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간부문 자원의 동원부분에서는 투입되는 민간부문의 자원이 범위, 효율, 효과, 지속가능한 영향력 측면에서 명확히 어떻게 기여하는지,

투입된 민간부문의 자원이 USAID가 요구하는 정도를 넘는지 검토한다.

GDA에 참가한 기업들은 공급망 개선, 매출 향상, 자금 및 투자 동원, 고객층 확대와 신시장 발굴,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가치있는 정책개정 조성, 운영비용 절약, 생산성 향상, 유통 시스템 개선, 검증된 기술인력 접근성 향상,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브랜드 인식 향상, 주요 비즈니스 위험 완화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

국내기업은 GDA를 통해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여겨졌던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나 해당 국가의 고객과의 네트워크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가 극도로 우세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조달시장에서 개발협력문제와 국내기업의 고유산업을 연계시켜 GDA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도 미국 국제개발처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조달시장 추세 및 특징

1) 시장의 특성

호주는 1974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원조 프로그램 기능이 생성되었고, 이 기능을 1995년 해외원조 전담기구로 AusAid로 명칭을 변경해 설립하였다가, 2010년 외교통상부(DFAT)가 원조책임집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 두각이 나타났으나, 2013년 다시 외교통상부 산하로 그 원조 프로그램이 통합되었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호주의 총 ODA 중 약 94%를 집행하고 있으며, 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나머지 6%를 집행하고 있다. 2018년 OECD DAC 동료평가에 따르면, AusAid가 외교통상부 통합 후 호주원조의 정책일관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DFAT은 외무장관과 무역/관광/투자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DFAT의 차관과 부차관급이 이끄는 5개 기관이 국내외에서 DFAT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호주 DFAT은 원조활동(Aid)과 관련해서는 각 그룹에 퍼져 있는 지역별 국들(Division), 무역/투자/사업협정 그룹(Trade, Investment & Business Engagement Service), 글로벌 협력/개발/파트너십 그룹(Glob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Group), 서비스 전달 그룹(Service Delivery Group)의 계약/원조 관리국(Contracting & Aid Management Division), 국제안보/인도주의/영사 그룹(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 Consular Group)의 인도주의/NGO/파트너십국(Humanitarian, NGOs & Partnership Division)과 호주 셰이프가드/

비증식 사무소(Australian Safeguards & Non-Proliferation Office) 등에서 다른 업무와 더불어 원조 사업 형성 및 관리, 모니터링, 평가 등을 담당한다.

호주 DFAT에서는 원조 프로그램의 활동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선정방식은 계약자 관리를 하는 조달(Procurement) 방식, DFAT이 NGO 및 다자기관에 펀딩을 제공하는 증여(Grant) 방식, DFAT이 다른 호주 부서에 펀딩을 제공하는 범정부(Whole of Government) 협정(Grant), 파트너 정부(협력국)에의 증여(Grant), 직접 펀딩 협정(Direct Funding Agreement) 방식(Grant)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조달 이외에 나머지 4가지 방식은 모두 증여방식에 해당된다. 호주에서 ODA 사업은 원조 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정책 및 기획 단계, 설계 및 조달 단계, 집행 및 성과관리 단계, 검토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투자규모 및 속성에 따라 추진단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300만 호주달러 이하 사업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면 기획단계 이후 바로 파트너 협정(조달, 증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300만 달러 이상이라면 반드시 설계 단계를 거친 후 파트너 협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모든 투자에는 설계 프로세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위험 및 환경요인, 사회적 세이프가드를 스크린해야 하며, 이에 투자 설계에 대해 필수적인 설계요구사항이 있지만, 실무자가 투자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진다. 투자설계의 유형은 DFAT 주도 설계(DFAT-led Design)와 파트너 주도 설계(Partner-led Design)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투자는 300만 달러 이상은 무조건 설계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투자설계 품질기준(Investment Design Quality Criteria)에 충족되어야 한다.

〈표 5-11〉 호주 ODA 사업 투자설계 유형

투자 설계 유형	내용
DFAT 주도 설계 (DFAT-led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AT이 설계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적절히 외부 전문지식을 활용함 ■ 동 프로세스는 실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특정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 ■ 부록을 포함해 최대 25페이지의 투자설계문서(Investment Design Document)를 준비해야 함
파트너 주도 설계 (Partner-led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개발은행, NGO, UN 기구와 같은 파트너가 설계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DFAT은 설계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일반적으로 DFAT에게는 부담이 적지만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적음 ■ 동 설계에서 DFAT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단계는 Concept 단계로, 조기에 호주의 요구사항(여성평등, 세이프가드, 전략적 선호)을 충족시킬 수 있음 ■ DFAT이 기존 파트너 활동을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DFAT 대리인은 투자가 호주 원조 정책을 구현하고 DFAT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함 ■ 부록을 포함해 최대 15페이지의 투자설계요약(Investment Design Summary) 문서를 준비해야 함

출처: KOICA(2019)

〈표 5-12〉 호주 ODA 사업 규모별 승인 충족기준

투자 사업규모	필수 충족기준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모든 투자	개념화(Concept) 및 디자인(Design) 단계에서 거점(Post) 사무소 및 캔버라 본원의 해당국으로부터의 정책승인을 받아야 함
5,0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모든 투자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민간부문에 참여하는 혁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함
1억 호주달러 이상의 모든 투자나 고위험 등급으로 평가받은 투자, 시설물	원조 거버넌스 이사회 (Aid Governance Board)에서 심의 (Consideration)를 받아야 함

출처: KOICA(2019)

호주에서는 원조 프로그램 단계에서 조달 방식이나 원조증여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목표에 기여하고 특정한 산출물 및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는 원조투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구체적인 활동 단계에서 사업 가치를 더 이끌 수 있다는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의 방식을 채택한다. 결국 호주 DFAT 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에 대한 설계 단계시 역제안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어, 민간기업으로서 호주 DFAT 협력국 사무소 등을 통해 설계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다.

2) 시장 동향

호주 외교통상부⁸⁴⁾의 최근 5년 평균 조달실적은 18억 5,200만 호주 달러다. 2020년에는 12억 6,600만 호주 달러를 기록했다. 평균보다 낮은 규모지만, 2019년 대비 1억 8,200만 호주 달러 상승한 규모다. 재원별로는 조달이 98.7%, 증여가 1.3%를 차지하며 조달의 비중이 증여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규모를 미국 달러로 변환⁸⁵⁾했을 때 13억 5,200만 달러였다. 양자공여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의 규모보다 161억 8,600만 달러 정도 작았다.

84) Contract Notices[Website](n.d.)의 Value(AUD)를 조달로 사용했고, Grant Award Published Criteria [Website](n.d.)의 Value(AUD)를 증여로 사용해 합산한 값이다.

85) 11월 17일 오전 7:42 UTC 기준으로 Morningstar의 통화데이터를 참고해 1AUD를 0.73USD로 계산하였다.

[그림 5-24] 최근 5년간 호주 외교통상부 자원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 Grant Award Published Criteria[Website](n.d.)에서 재가공

조달분야별로⁸⁶⁾는 연평균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약 17억 4,200만 호주 달러(95.4%), 물품이 8,500만 호주 달러(4.6%)를 차지했다. 호주 외교통상부도 미국 국제개발처와 같이 서비스 규모가 월등히 큰 경향을 보였다.

[그림 5-25] 최근 5년간 호주 외교통상부 조달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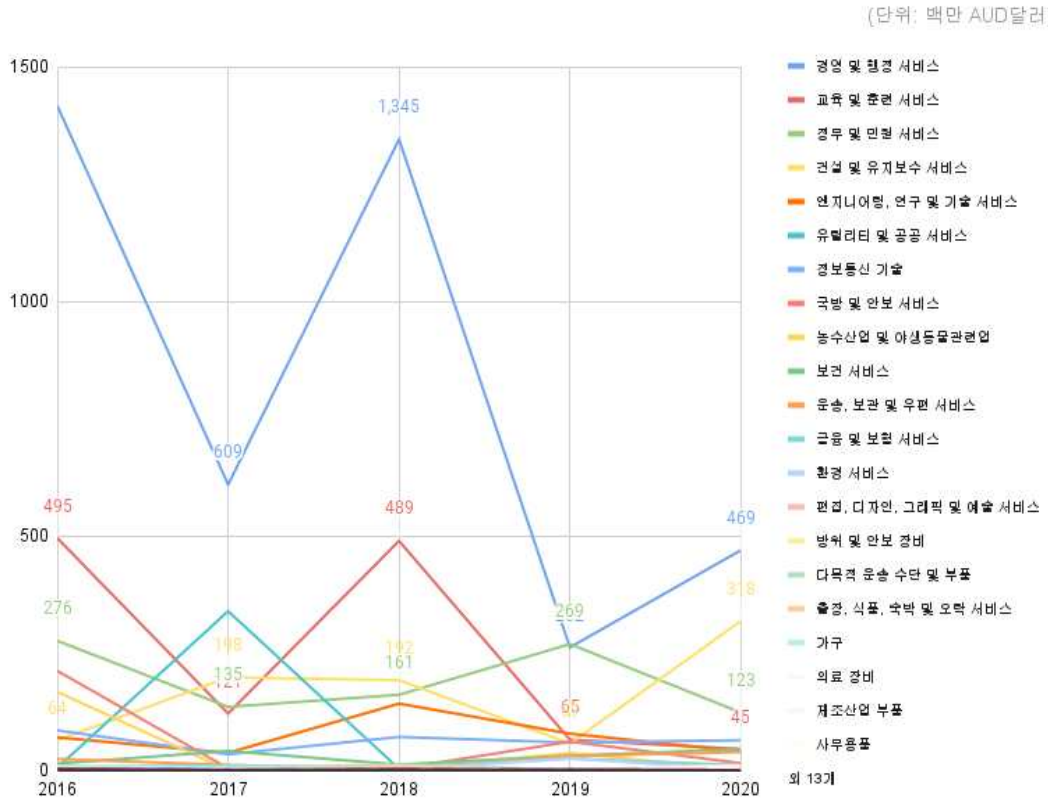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에서 재가공

86) Contract Notices[Website](n.d.)의 Category 부분을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Website](n.d.)의 Goods/Services 기준으로 분류했다.

23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산업 분야⁸⁷⁾별로는 경영 및 행정 서비스가 8억 2,000만 호주 달러(44.9%), 교육 및 훈련 서비스가 2억 4,300만 호주 달러(13.3%), 정부 및 민원 서비스가 1억 9,300만 호주 달러(10.5%), 건설 및 유지보수 서비스가 1억 6,600만 호주 달러(9.1%), 엔지니어링, 연구 및 기술 서비스가 7,300만 호주 달러(4.0%), 유틸리티 및 공공 서비스가 7,000만 호주 달러(3.8%), 정보통신 기술이 6,300만 호주 달러(3.4%), 국방 및 안보 서비스가 5,900만 호주 달러(3.2%), 농수산업 및 야생동물관련업이 4,100만 호주 달러(2.2%), 보건 서비스가 2,900만 호주 달러(1.6%)를 차지했다. 교육 분야의 비중이 4.1%인 미국 국제개발처와 비교했을 때 비중은 높았지만 규모⁸⁸⁾는 약 5,000만 달러 정도 낮았다.

[그림 5-26] 호주 외교통상부 산업분야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에서 재가공

87) Contract Notices[Website](n.d.)의 Category 부분을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Website](n.d.)의 Title의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했다.

88) 11월 17일 오전 7:42 UTC 기준으로 Morningstar의 통화데이터를 참고해 1AUD를 0.73USD로 계산하였다.

세부 서비스별⁸⁹⁾ 조달추이를 보면 경영 자문 서비스(23.2%), 사업 행정 서비스(8.4%), 교육 및 훈련 서비스(7.2%), 자산 관리 서비스(5.7%),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5.4%) 순이었다. 소수의 서비스가 큰 비중을 가진다는 점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호주 외교통상부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서비스 보다 경영 자문 서비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세부 물품별로는 방송, 통신 및 정보기술 부품(2.2%), 소프트웨어(0.4%), 컴퓨터 장비 및 보조 장비(0.4%), 메인프레임 컴퓨터(0.2%), 특수 차량(0.1%) 순이었다. IT 관련 물품들이 큰 비중을 가졌으며, 미국 국제개발처와 다르게 에너지 관련 물품은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표 5-13〉 호주 외교통상부 Top 10 세부 서비스별 조달 추이

(단위: 백만 AUD달러)

순위	세부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경영 자문 서비스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576	20.1	218	13.9	991	40.2	82	8.0	251	20.8	424	23.2
2	사업 행정 서비스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248	8.7	263	16.8	93	3.8	127	12.4	34	2.8	153	8.4
3	교육 및 훈련 서비스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144	5.0	121	7.7	319	13.0	43	4.2	34	2.8	132	7.2
4	자산 관리 서비스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514	17.9	2	0.1	1	0.04	1	0.1	N/A	N/A	103	5.7
5	공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Building Construction and Support and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28	1.0	161	10.2	43	1.7	50	4.9	214	17.7	99	5.4
6	공공행정 및 금융 서비스 Public Administration and Finance Services	137	4.8	5	0.3	7	0.3	221	21.5	29	2.4	80	4.4
7	이동통신 서비스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0	0.00	325	20.7	N/A	N/A	N/A	N/A	N/A	N/A	65	3.6
8	일반 공사 General Building Construction	32	1.1	37	2.4	149	6.0	1	0.1	104	8.6	64	3.5
9	도서관 및 문헌 서비스 Library or Documentation Services	268	9.3	0	0.03	0	0.00	22	2.2	1	0.1	58	3.2
10	커뮤니티 및 사회서비스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122	4.2	123	7.9	0	0.00	28	2.7	0	0.0	55	3.0
Top 10 조달규모		2,067	72.0	1,256	80.0	1,603	65.0	573	56.0	667	55.2	1,233	67.5
전체 조달규모		2,871	100	1,569	100	2,464	100	1,024	100	1,208	100	1,827	100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에서 재가공

89) Contract Notices[Website](n.d.)의 Category 부분을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Website](n.d.)의 Title의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했다.

23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표 5-14〉 호주 외교통상부 Top 10 세부 물품별 조달 추이

(단위: 백만 AUD달러)

순위	세부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방송, 통신 및 정보기술 부품 Components for Information Technology or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59	2.0	6	0.4	44	1.8	39	3.8	52	4.3	40	2.2
2	소프트웨어 Software	7	0.2	10	0.6	5	0.2	10	1.0	5	0.4	7	0.4
3	컴퓨터 장비 및 보조 장비 Computer Equipment and Accessories	7	0.3	15	1.0	2	0.1	5	0.4	5	0.4	7	0.4
4	메인프레임 컴퓨터 Mainframe Computers	N/A	0.0	N/A	0.0	18	0.7	N/A	0.0	N/A	0.0	4	0.2
5	특수 차량 Specialized and Recreational Vehicles	N/A	0.0	N/A	0.0	12	0.5	1	0.1	N/A	0.0	3	0.1
6	보안 및 제어장치 Security and Control Equipment	1	0.0	2	0.1	2	0.1	3	0.3	3	0.2	2	0.1
7	하드웨어 Hardware	N/A	0.0	N/A	0.0	0	0.0	1	0.1	9	0.7	2	0.1
8	가구 Furniture	8	0.3	N/A	0.0	1	0.1	N/A	0.0	0	0.0	2	0.1
9	구조 차량 Safety and Rescue Vehicles	1	0.03	7	0.4	N/A	0.0	N/A	0.0	N/A	0.0	2	0.1
10	사무기계 및 보조 장비 Office Machines and Their Supplies and Accessories	0	0.0	1	0.1	1	0.05	4	0.4	0	0.0	1	0.1
Top 10 조달규모		83	2.9	41	2.6	86	3.5	63	6.1	74	6.1	69	3.8
전체 조달규모		2,871	100	1,569	100	2,464	100	1,024	100	1,208	100	1,8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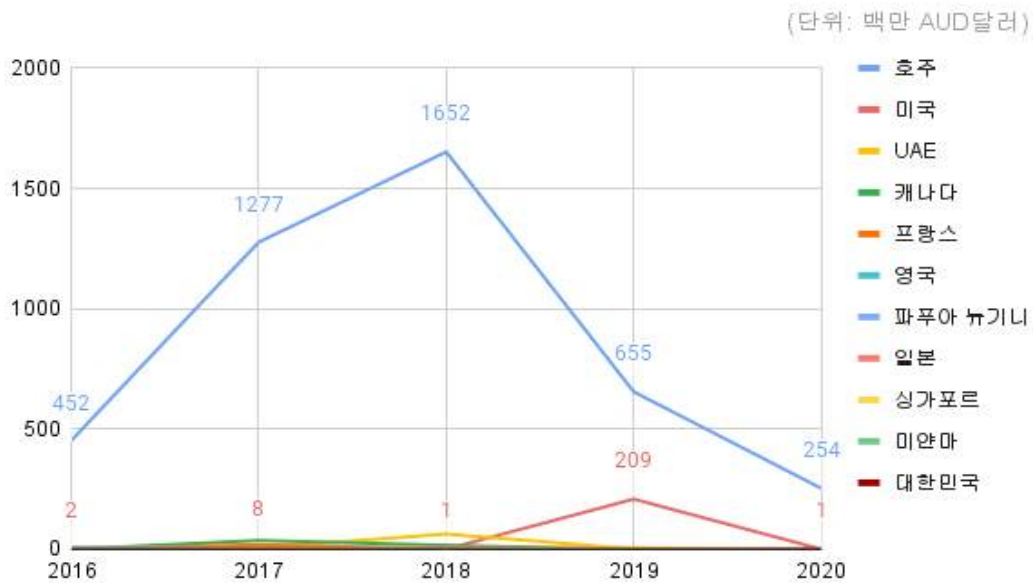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에서 재가공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는 호주였다. 벤더 국가별 조달실적⁹⁰⁾은 호주가 8억 5,800만 호주 달러(90.5%), 미국이 4,400만 호주 달러(4.6%), UAE가 1,500만 호주 달러(1.5%), 캐나다가 1,100만 호주 달러(1.2%), 프랑스가 400만 호주 달러(0.4%), 영국이 300만 호주 달러(0.4%), 파푸아 뉴기니가 300만 호주 달러(0.3%), 일본이 200만 호주 달러(0.2%), 싱가포르가 200만 호주 달러(0.2%), 미얀마가 200만 호주 달러(0.2%)를 차지했다. 한국은 2만 호주

90) Contract Notices[Website](n.d.)에 벤더 국가 정보가 부재하여, 벤더 국가 정보가 있는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Website](n.d.)에서 Contract Notices[Website](n.d.)에 존재하는 조달실적만 추출하여 데이터를 재가공했다. 재가공 과정에서 데이터 수가 5,014개에서 3,513개로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어 실제 조달실적 규모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달러(0.002%)를 차지하며 35위에 그쳤다. 미국 국제개발처 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타국에 상당히 폐쇄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5-27] 호주 외교통상부 벤더 국가별 조달실적 추이



출처: Contract Notices[Website](n.d.);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 [Website](n.d.)에서 재가공

3) 민간협력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 Business Partnerships Platform

호주 외교통상부의 주요 민간협력 제도는 Business Partnerships Platform(이하 BPP)이 있다. BPP는 DFAT과 포용적인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포용적인 기업이란 핵심 사업을 통해 개발협력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상업성 수익 모두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트너십이란 공유된 우선순위, 열린 소통과 책임감, 공유된 위험과 이익,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 파트너가 서로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적격요건은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며, 국적제한은 없다. 다만, 사업 수행 예정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PP의 최종 파트너가 되려면 제안서 요청 및 심의 단계, 제안서 개선 및 선정 단계, 선정된 프로젝트 이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안서 요청 및 심의

단계에서는 BPP 웹사이트를 통해 SmartyGrants 온라인 신청 포털에 접근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림 5-28] 호주 외교통상부 BPP 프로세스



출처: Application Guidelines(n.d.)

BPP 주요 선발기준으로는 파트너십, 상업성(Commercial Viability), 사회 및 환경적 영향, 젠더 평등 및 사회적 포용, 가성비(Value for Money)가 있다. 파트너십에서는 DFAT의 BPP로의 참여와 투자가 어떻게 비(非)BPP로의 참여와 투자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상업성에서는 제안한 BPP 프로젝트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파트너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호주 정부는 젠더 평등을 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여긴다. 그래서 젠더 평등 및 사회적 포용에서는 여성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장애인, 성별, 소수 인종, 소외계층을 더 참여시키고 그들의 기술, 자산, 자원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가성비에서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윤리성을 검토한다.

BPP는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파트너 국가 내 회의 소집, 중개, 네트워크 및 영향력, 지식(비즈니스, 정치적, 규범적 환경 및 개발협력), 전문성(개발협력 프로그램 관리,

사회적 안전망, 젠더와 장애 포용성),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등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제안서 당 100,000-500,000 호주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와 그 파트너들의 총 기부규모는 지원금의 규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한다. 지원은 현금도 가능하고 현금과 현물의 조합도 가능하다.

국내기업이 BPP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제개발처의 GDA와 같이 해당 국가의 신뢰할만한 파트너 및 고객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인다. 하지만 BPP는 지원금의 규모, 신청 시기,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설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 입장에서 고유산업으로 진출 못 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래서 GDA에 비해서 해외기업으로써 한국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가. 다자공여기관 조달시장의 비교 및 시사점

다자공여기관의 조달시장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 특성 및 최근 동향을 비교하였다. 먼저, 유엔의 조달규모는 연평균 기준 194억 7,400만 달러였고, 주요 산업분야로는 보건의료가 43억 달러(22.1%), 건설, 엔지니어링 및 과학이 25억 달러(12.9%), 식품 및 농업이 22억 7,900만 달러(11.7%)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 품목에서도 연평균 기준 의약품, 피임약 및 백신이 29억 4,900만 달러(15.2%), 의료장비가 9억 8,500만 달러(5.1%)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한 조달 벤더의 국적을 살펴보면, 1위인 미국이 연평균 기준 17억 2,700만 달러(8.9%), 2위인 인도가 10억 1,500만 달러(5.2%), 3위인 UAE가 8억 2,000만 달러(4.2%) 등의 순으로, 주로 UN 본부나 물류단지가 밀집된 국가 및 주변국가(미국, UAE)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은 연평균 기준 2억 800만 달러(1.1%)를 차지하며 27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한국이 UN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인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과 거리상 멀고, 인도 등 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Top 10까지 진입하기까지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UN 조달시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를 하는 다른 분야의 기업들은 다른 ODA 시장이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하기 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인식시키는 진출 데뷔무대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음으로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살펴보면, 연평균 기준 세계은행은

23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사업승인 477억 달러, 사업지출 354억 달러인 반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사업승인 234억 달러, 사업지출 156억 달러로 세계은행에서의 사업규모가 더 크다. 세계은행의 주요 산업분야로는 연평균 기준으로 행정이 75억 200만 달러(15.9%), 에너지 및 채광이 64억 8,700만 달러(13.9%), 운송이 45억 6,900만 달러(9.9%)를 차지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에는 운송이 47억 1,400만 달러(20.2%), 에너지가 42억 5,700만 달러(18.2%), 공공부문관리가 35억 8,800만 달러(15.4%)를 차지해, 공통적으로 에너지, 운송, 공공부문관리 및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에 중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업규모가 세계은행보다 연평균 기준 123억 1,000만 달러 차로 좀 더 컸다. 다자개발은행은 프로젝트 중심의 차관 공여를 하는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물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프로젝트 성립 후 기자재 소싱을 통하거나 프로젝트 주계약자와 협력하여 물품 소싱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자금투자를 지원하는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직접 개도국에 해외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이러한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조달시장에서 주로 두각을 나타내는 벤더국가는 중국과 인도로, 프로젝트 기자재 소싱과 관련하여 저개발국 현지 네트워크가 있고 가격경쟁성이 있는 국가에서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은 세계은행보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참여에 역점을 두고 있어 조달시장 부문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1위와 2위인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약하여 혁신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표 5-15〉 다자공여기관 조달시장 비교

구분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시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특정 소요 물품 및 서비스 집중하는 Niche Market ■ 안정적 대금지급 ■ 후속사업의 지속화 ■ MDB, 미국, EU 등 주요 조달시장 진출 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소득 개도국 중장기 개발자금 지원 ■ 민간투자지원 플랫폼 존재 ■ 프로젝트 사업 중심의 차관 공여 ■ 프로젝트별 기자재 소싱 ■ IFC에서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2020년 누적 443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 무역금융 및 특별기금 등 자원 다양 ■ 본부가 모든 자금 직접 통제 ■ 프로젝트별 기자재 소싱 ■ ADB 벤처 투자기금 마련 한국 출자 1,600만 달러 	
조달 시장 동향 (연평균 기준*)	사업승인	-	477억 달러	234억 달러	
	사업지출	-	354억 달러	156억 달러	
	산업	1위	보건의료: 43억 달러(22.1%)	행정: 75억 200만 달러(15.9%)	운송: 47억 1,400만 달러(20.2%)
		2위	건설, 엔지니어링 및 과학: 25억 달러(12.9%)	에너지 및 채광: 64억 8,700만 달러(13.9%)	에너지: 42억 5,700만 달러(18.2%)
		3위	식품 및 농업: 22억 7,900만 달러(11.7%)	운송: 45억 6,900만 달러(9.9%)	공공부문관리: 35억 8,800만 달러(15.4%)
	아시아 지역 사업승인 규모	-	154억 7,800만 달러	233억 6,900만 달러	
	조달규모	194억 7,400만 달러	110억 5,900만 달러	110억 300만 달러	
	벤더 국가	1위	미국: 17억 2,700만 달러(8.9%)	중국: 27억 6,000만 달러(24.8%)	중국: 27억 5,500만 달러(24.0%)
		2위	인도: 10억 1,500만 달러(5.2%)	인도: 15억 5,100만 달러(13.9%)	인도: 27억 3,200만 달러(23.8%)
		3위	UAE: 8억 2,000만 달러(4.2%)	스페인: 5억 7,200만 달러(5.15%)	방글라데시: 9억 4,500만 달러(8.2%)
한국 조달실적	27위, 2억 800만 달러(1.1%)	30위, 7,300만(0.64%)	5위, 5억 7,500만 달러(5.0%)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에 집중화된 시장 ■ UN 시장을 개도국 진출 토대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에너지, 운송 등에 편중화 ■ 민간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출 저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에너지, 공공부문 관리 등에 편중화 ■ 한국기업에게 지리적 여건 상 유리함에도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상위권 진입 노력 필요 	

* 원활한 비교를 위해 호주의 경우, 통화를 미국 달러로 변환하였음, 11월 17일 오전 7:42 UTC 기준으로 Morningstar의 통화데이터를 참고해 1AUD를 0.73USD로 계산

결론적으로, 유엔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DA 조달시장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SDG를 표방하는 국제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장이지만, UN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에, 다자개발은행의 경우 에너지, 운송, 공공부문관리 및 행정 분야에 좀 더 중점화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국기업은 해외진출의 전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지리적 여건상 아시아 권역에 진출하기 유리하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역 및 분야로의 저변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화 마련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나. 양자공여기관 조달시장의 비교 및 시사점

양자공여기관도 다자공여기관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양자공여기관 중에는 최대 사업규모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개발국가 주도의 대외원조 및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조달 및 증여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규모 중 조달활동으로 진행된 사업규모가 약 30% 차지하고 있어, 구축성 조달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외기업이라도 참여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2016-2020년 평균 기준으로 산업 분야 중에서는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84.6%), 교육 서비스(4.1%), 기타서비스(공공행정 제외)(2.2%)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미국 USAID는 연방정부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입시 요구되는 SAM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에 충족하여야 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여활동 중 하나인 민간협력제도인 GDA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상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 조달관행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외기업에게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반면,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국 USAID에 비해 조달규모가 낮은 편으로 우리나라 KOICA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주로 조달활동 약 99%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2020년 평균 기준으로 산업 분야 중에서는 경영 및 행정 서비스(44.9%), 교육 및 훈련 서비스(13.3%), 정무 및 민원 서비스(10.5%)에 대한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 DFAT은 투자의 관점에서 ODA 시장을 접근하고 있으며, 설계 단계부터 DFAT 주도의 설계와 파트너(주로 다자기구, UN, NGO 등) 주도의 설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나 모두 호주정부 및 국제사회에서 표방하는 가치(SDG 등)를 담은 투자설계기준을 충족하여 설계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주 DFAT에서도 BPP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업제안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협력국가 파트너 및 해외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Global Innovation Exchange와 같은 통합플랫폼에서는, 기업이 KOICA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타 국가의 잠재적

공급업자인 'Innovator'로 등재되어 네트워크를 확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 USAID와 호주 DFAT에서 조달에 참여하는 벤더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USAID에서는 미국이 96.0%를, DFAT에서는 호주가 9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기업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양자원조기관이라고 하지만 정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조달시장의 보수적 속성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5-16〉 양자공여기관 조달시장 비교

구분		미국 국제개발처	호주 외교통상부	
시장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양자원조기관 ■ 국가 주도 대외원조계획 및 장기 개발계획 메커니즘에 초점 ■ 조달과 원조(증여, 협력협정)로 구분, 동일한 절차로 수행 ■ 협력협정시, 계획승인, 인사승인, 공동참여 등으로 관여 행사 ■ GDA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기업의 협력사업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시장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 ■ 조달, NGO/다자기관 증여, 범정부 협정, 파트너 국가 증여, 직접 펀딩 협정 존재 ■ 설계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스크린 ■ DFAT 주도 설계와 파트너* 주도 설계로 구분, 투자설계 품질기준 충족 * 파트너 : 다자기구, UN, NGO ■ BPP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가 파트너 및 고객 네트워크 구축 가능 	
조달 시장 동향 (연평균 기준*)	사업규모	175억 3,800만 달러 (이 중 조달 30.3%; 약 53억)	13억 5,196만 달러 (이 중 조달 98.7%; 약 13억)	
	산업	1위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 45억 달러(84.6%)	경영 및 행정 서비스: 5억 9,900만 달러(44.9%)
		2위	교육 서비스: 2억 2,000만 달러(4.1%)	교육 및 훈련 서비스: 1억 7,700만 달러(13.3%)
		3위	기타 서비스(공공행정 제외): 1억 1,700만 달러(2.2%)	정무 및 민원 서비스: 1억 4,100만 달러(10.5%)
	세부분야	1위	엔지니어링/기술 서비스: 17억 8,100만 달러(33.5%)	경영 자문 서비스: 8,500만 달러(23.2%)
		2위	기타 서비스: 12억 5,700만 달러(23.6%)	사업 행정 서비스: 3,100만 달러(8.4%)
		3위	프로그램 관리 및 지원 서비스: 8억 6,600만 달러(16.3%)	교육 및 훈련 서비스: 2,600만 달러(7.2%)
	벤더 국가	1위	미국: 51억 1,000만 달러(96.0%)	호주: 6억 2,634만 달러(90.5%)
		2위	케냐: 1억 300만 달러(1.9%)	미국: 3,212만 달러(4.6%)
		3위	영국: 1,000만 달러(0.2%)	UAE: 1,095만 달러(1.5%)
한국 조달실적	-	1만 4,600 달러(0.002%) 35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에 집중화된 시장이며, 자국기업 우선 경향 ■ 조달/증여 절차 지원 필요(SAM 등록 등) ■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민간협력 프로그램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행정 서비스에 집중화된 시장이며, 자국기업 우선 경향 ■ 민간협력 프로그램의 사업제한이 존재하나, 원칙적으로 해외 파트너로서 참여가능 ■ KOICA 민간협력 프로그램과 연계 	

24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 KOICA 민간협력 프로그램과 연계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기회의 장 마련 필요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기회의 장 마련 필요
--	---	------------------------

* 원활한 비교를 위해 호주의 경우, 통화를 미국 달러로 변환하였음, 11월 17일 오전 7:42 UTC 기준으로 Morningstar의 통화데이터를 참고해 1AUD를 0.73USD로 계산

결론적으로, 양자원조기관에서의 조달시장은 다자원조기관보다 사업규모도 작고 정부조달에 해당하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KOICA와 민간협력을 공유하는, Global Innovation Exchange와 같은 통합플랫폼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여 미국 및 호주 양자원조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민간의 혁신적 제안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우리 기업의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 현황



1.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현황 분석 및 진출 애로사항

가.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실적

1) 다자 ODA 조달시장

먼저, 유엔 조달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진출실적은 연평균 2억 800만 달러였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019년에 반등해 2020년에는 2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물품은 2억 800만 달러(86.5%)를 차지했고 서비스는 3,100만 달러(13.5%)를 차지했다. 유엔의 조달시장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은 물품실적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9] 최근 5년간 유엔 조달분야별 한국 조달실적 추이



출처: Explore ASR Data(n.d.)에서 재가공

24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의 세계은행 조달시장 진출실적⁹¹⁾은 연평균 7,300만 달러였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19년까지 6,000만 달러 내외로 실적을 내고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았지만, 2019년에는 공사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30] 최근 4년간 세계은행 조달분야별 한국 조달실적 추이



출처: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재가공

최근 4년간 세계은행에서 국내기업들이 조달실적⁹²⁾을 달성한 산업분야로는 에너지 및 채광,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교육, 농수산업, 보건, 보건 및 사회보장, 정보통신기술 등이 있었다. 금융과 산업, 무역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큰 실적규모를 거둔 분야는 에너지 및 채광이었다.

91)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PSLO FY08-FY19를 사용했다.

92)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PSLO FY08-FY19를 사용했다.

〈표 5-17〉 최근 4년간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공급사	산업 분야	연평균	%
1	대림산업	에너지 및 채광	19	0.17
2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및 채광, 기타	10	0.09
3	도화 엔지니어링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7	0.06
4	포스코 대우	에너지 및 채광	4	0.04
5	효성	에너지 및 채광	3	0.03
6	대주이엔티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3	0.03
7	건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운송 및 기타	3	0.02
8	영인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채광	3	0.02
9	동성 엔지니어링	운송 및 기타	3	0.02
10	다산 컨설턴트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2	0.02
전체 세계은행 조달규모			11,409	100

출처: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재가공

최근 5년간 세계은행에서 조달실적⁹³⁾을 낸 국내기업의 수는 총 40개사였다. 국내기업들의 연평균 규모는 7,300만 달러로, 전체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4%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대림산업(0.17%)이었다. 상위 10개 기업들 중 5개사가 에너지 및 채광 산업으로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5-18〉 최근 5년간 세계은행 산업별 한국기업 조달실적

(단위: 백만 US달러)

산업	총 규모	연평균 규모	산업 내 비중	산업 내 순위
에너지 및 채광	117	29	1.4	13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53	13	0.6	27
기타	52	13	1.2	16
운송	50	12	0.4	27
교육	6	1	0.5	33
보건	4	1	0.4	36
정보 통신 기술	4	1	0.8	28
농수산업	3	1	0.2	66
행정	2	1	0.1	67
보건 및 사회보장	1	0	0.1	58

93)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PSLO FY08-FY19를 사용했다.

24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출처: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Website](n.d.)에서 재가공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ADB에서 국내기업들이 진출한 산업분야는 에너지 분야, 운송 분야, 수도 및 기타 도시 인프라였다. 에너지 부문실적은 에너지 부문 개발 및 제도개선,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송유관 및 가스 배관, 송전 및 배전, 대규모 수력발전이라는 세부분야에서 이뤄졌다. 운송 부문실적은 철도 교통(비도시 지역), 도로 교통(비도시 지역), 항공 운수, 도시 대중교통과 같은 세부분야에서 이뤄졌다. 수도 및 기타 도시 인프라 부문 실적은 도시위생, 도시 상수도, 도시 하수도,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 도시 슬럼지역 개발과 같은 세부분야에서 이뤄졌다. 큰 실적규모를 거둔 세부분야는 철도 교통(비도시 지역)과 에너지 효율 및 보존이었다.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조달실적을 낸 국내기업의 수는 총 28개사였다. 세계은행에 비해 공동출자법인(5개)과 컨소시엄(3개) 형태로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많았다. 국내기업들의 연평균 규모는 5억 7,600만 달러였다. 국내기업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2%였으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건설 공동출자법인(1.0%)이었다. 상위 10개 기업들 중 5개사가 운송 산업으로 실적을 달성했고, 2개사가 에너지 산업으로 실적을 달성했다.

〈표 5-19〉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공급사	산업 분야*	연평균	%
1	현대건설 공동출자법인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JV)	철도 교통(비도시 지역)	115	1.00
2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대규모 수력발전	98	0.86
3	대우건설-L&T 공동출자법인	도로 교통(비도시 지역)	93	0.81
4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에너지 효율 및 보존	90	0.78
5	포스코건설	도로 교통(비도시 지역)	87	0.76
6	두산중공업	도로 교통(비도시 지역)	22	0.19
7	효성	송전 및 배전	16	0.14
8	코오롱글로벌	도시 상수도, 도시 하수도	13	0.11
9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도시 위생	8	0.07
10	현대로템	철도 교통(비도시 지역)	8	0.07
전체 아시아개발은행 조달규모			11,478	100

* Raw-Data에서 추출했으며 Annual Report의 산업분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b)에서 재가공

〈표 5-20〉 최근 5년간 아시아개발은행 산업별 한국기업 조달실적

(단위: 백만 US달러)

산업	총 규모	연평균 규모	산업 내 비중	산업 내 순위
철도 교통(비도시 지역)	951	190	15.3	3
에너지 효율 및 보존	910	182	51.8	1
도로 교통(비도시 지역)	678	136	4.5	5
송전 및 배전	149	30	1.5	11
도시위생	45	9	20.2	2
대규모 수력발전	43	9	5.3	5
도시 하수도	37	7	3.2	5
도시 상수도	30	6	1.0	14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	18	4	58.3	1
도시 슬럼지역 개발	7	1	60.8	1
에너지 부문 개발 및 제도개선	6	1	34.4	2
송유관 및 가스 배관	2	0.5	0.9	3
항공 운수	2	0.5	0.5	9
도시 대중교통	2	0.3	0.1	5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2021b)에서 재가공

2) 양자 ODA 조달시장

최근 5년(2018년-2020년)간 국내기업의 미국 국제개발처 내 조달실적은 전무하며,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납품된 계약건(간접 진출)에 대해서는 총 3건으로 에어컨, 휴대폰과 같은 가전 및 통신제품이 차지했다. 이 경우 모두 콩고, 케냐, 세르비아에서 사용되었다.

〈표 5-21〉 최근 5년간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기업 조달실적

(단위: US달러)

순위	공급사	국적	진출유형*	산업 분야	세부품목	연평균
1	Duns No. 123456787	미국	간접	배관, 냉난방 및 통풍 시스템	에어컨	3,800
				전화기 제조	휴대폰	1,250
2	UNION AFRICAINE DE COMMERCE SPRL	DR 콩고	간접	배관, 냉난방 및 통풍 시스템	에어컨	2,250
3	Duns No. 790238851	미국	간접	전화기 제조	휴대폰	2,213

* 진출유형은 주계약자로 직접 계약체결시 직접 진출, 현지 바이어를 통해 제품 유통을 한 경우(원산지만 한국산) 간접 진출로 표기함

출처: USAspending.gov/Advanced Search[Website](n.d.)에서 재가공

24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호주 외교통상부 내 조달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단 1건만 존재하였는데, CBRE 코리아의 부동산 경영 서비스 9만 6,471 호주 달러였다. 이 외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5-22〉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 한국기업별 조달실적 추이

(단위: AUD달러)

공급사	산업분야	상세품목	계약규모
CBRE 코리아	부동산	부동산 경영 서비스	96,471

출처: Contract Notices [Website(n.d.);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 [Website](n.d.)에서 재가공

양자공여기관에서의 한국기업 진출실적은 다자공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조달보다 정부조달이 좀 더 장벽이 높은 것과 같이 양자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역량 분석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진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 벤처·스타트업 및 대기업⁹⁴⁾이다.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021년 9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메일 및 온라인 등 복합조사의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106개사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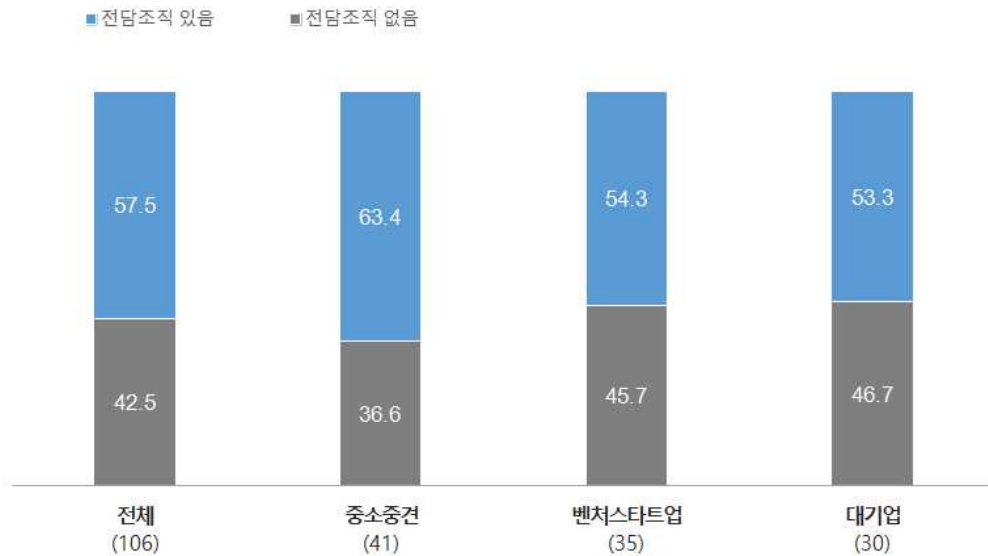
1) 응답 기업의 일반특성

전체 응답 기업 중 중소·중견 기업은 41개사, 벤처·스타트업은 35개사, 그리고 대기업은 30개사였다.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 전담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전체 응답 기업 중 57.5%가 해외진출 전담조직이 있으며, 이는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54.3%, 53.3%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63.4%로 높은 수준이었다.

94) 대기업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공정거래위원회, 2021.4.30)〉에 수록된 기업의 본사 및 계열사 포함

[그림 5-31] 해외진출 전담조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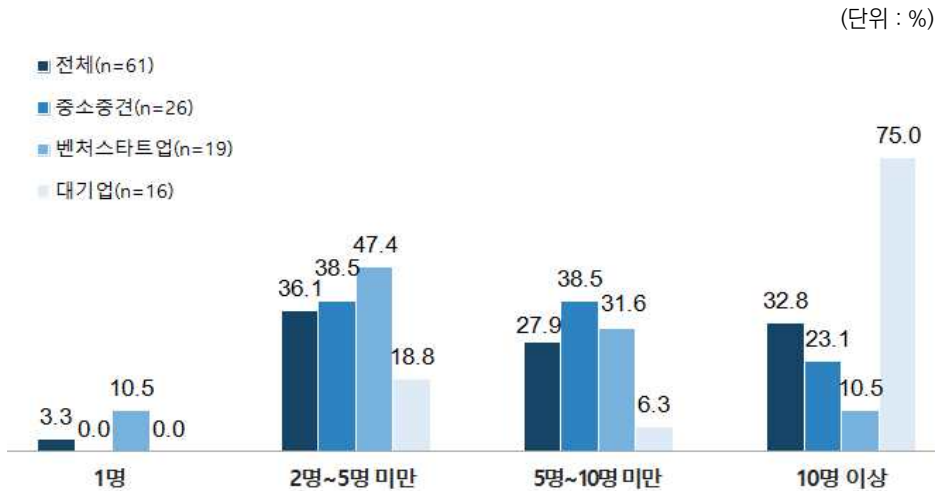
(단위 : %)



해외진출 전담조직이 있는 61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담조직의 인력규모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중 대기업은 16개사였으며, 그 중 75%는 전담조직의 인력규모가 10명 이상이고, 18.8%는 2명-4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전담조직이 있는 응답 중소·중견기업은 총 26개사이며, 그 중 2-4명, 5명-9명인 경우가 각각 38.5%이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총 19개사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해외진출 전담조직 인력규모가 2명-4명인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5명-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경우는 31.6%이다.

대기업의 경우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에 큰 규모로 형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중소·중견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 중 2명-9명의 인력으로 조직이 구성된 경우가 77% 내외였다.

[그림 5-32] 해외진출 전담조직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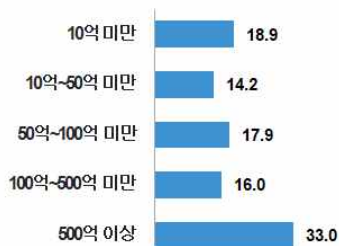


응답 기업의 5년 연 평균 매출규모는 500억 이상이 33%, 10억 미만이 19%, 50억-100억 미만이 18% 순으로 많았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매출의 연평균 수출 비중은 응답 기업 중 33%인 35개사가 10%-30%였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매출 중 연평균 수출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가 29개사로 응답 기업 전체 중 27.4%를 차지하였다. 30-50% 미만인 경우가 14.2%, 50% 이상인 기업도 13.2%였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매출 대비 연평균 수출 비중이 0%인 경우는 12.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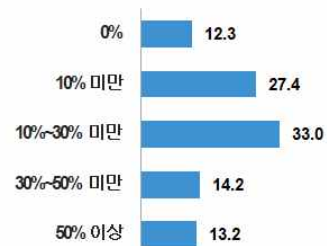
[그림 5-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및 최근 5년 전체 매출의 연평균 수출 비중

(단위 : %)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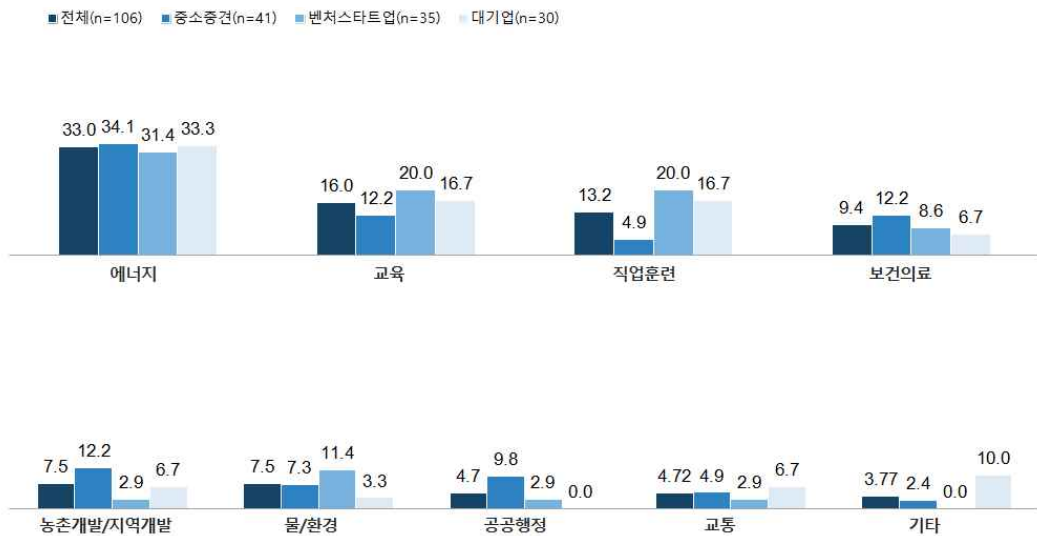
최근 5년 전체 매출 대비 연평균 수출 비중



응답기업의 해외진출 시 주요 ODA 사업 분야는 에너지 분야가 30%를 상회하며 모든 응답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경우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교육, 농촌 및 지역개발, 보건의료 영역에서 각각 1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4] 해외진출과 관련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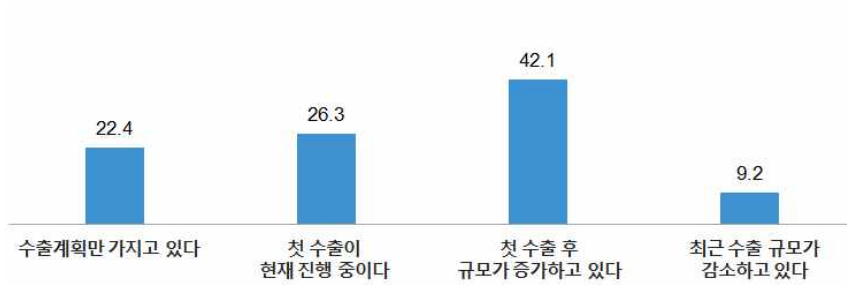


특히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76개사를 대상으로 현 수출단계에 대해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통해 첫 수출이 진행 중이거나, 첫 수출 후 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은 68.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 수출단계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응답기업의 42.1%는 첫 수출 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첫 수출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6.3%였다. 그 외 수출계획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22.4%이며, 최근 수출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기업은 9.2%이다.

[그림 5-35]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의 현 수출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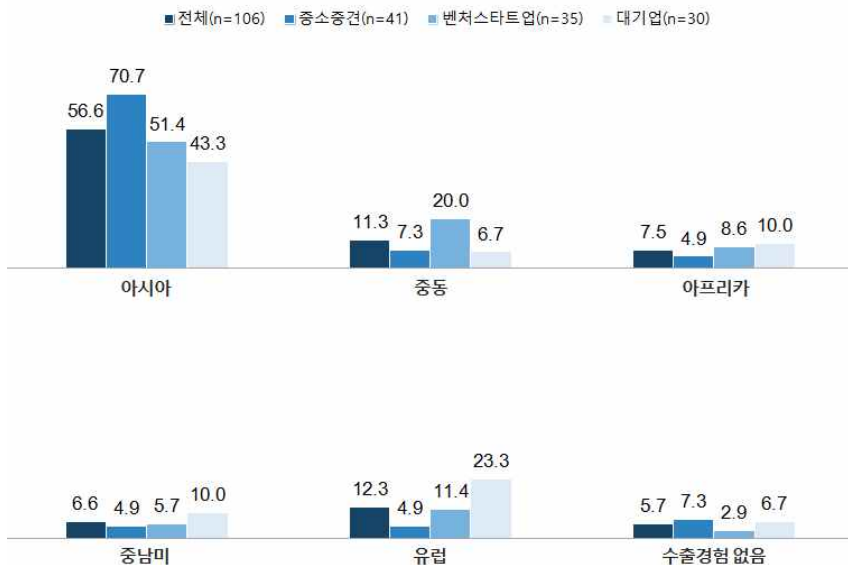
(단위 : %)



해외진출 주요 수출권역으로는 아시아가 모든 응답 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70.7%가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 외 권역은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은 51.4%가 아시아가 주요 수출권역임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중동이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 주요 수출 권역으로 아시아 43.3%, 유럽 23.3% 순으로 높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각각 10%였다.

[그림 5-36] 해외진출 주요 수출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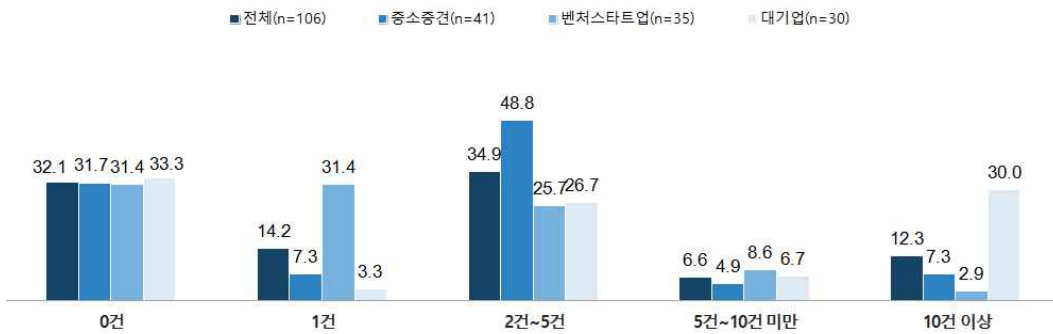
(단위 : %)



응답 기업의 해외사업 실적에 대해 묻는 물음에 총 106개 기업 중 32.1%가 0건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정부나 해외 공공기관, 국제기구 해외사업을 수주한 실적이 10건 이상인 경우가 30%, 2건-4건인 경우가 26.7%로 가장 많았다.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정부나 공공기관, 국제기구에 납품한 실적이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1건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건-4건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다.

[그림 5-37]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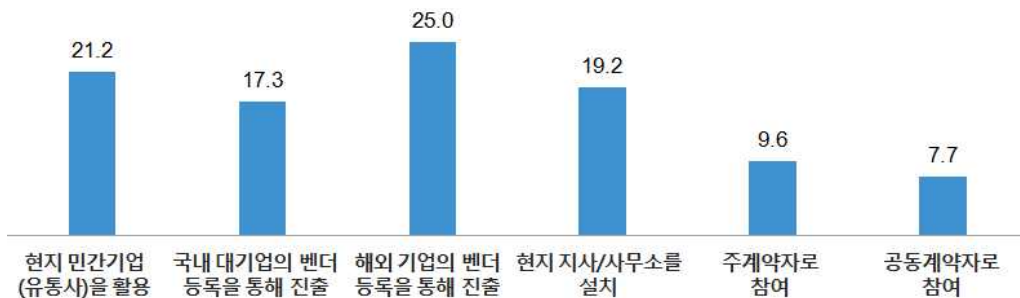
(단위 : %)



또한 해외 납품 시 주요 진출경로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응답기업 중 해외 기업의 벤더 등록을 통해 진출하는 사례가 25%로 가장 높으며, 현지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21.2%, 현지지사 또는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진출한 경우가 19.2%로 많았다.

[그림 5-38] 해외 납품시 주요 진출 경로(중소벤처 전체 n=76)

(단위 : %)



2)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애로사항이 컸으며, 특히 해당 국가의 조달 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과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점 척도로 질문한 응답기업의 평균 점수를 보면, 기업의 특성별 먼저, 대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 획득의 어려움이 3.37로 가장 컸으며, 해당 국가의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및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이 3.3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외에도 심층 인터뷰 참여자 C는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한다면 관련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있고,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면 좋겠음. 또한, 각 국가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수요나 필요가 우선 고려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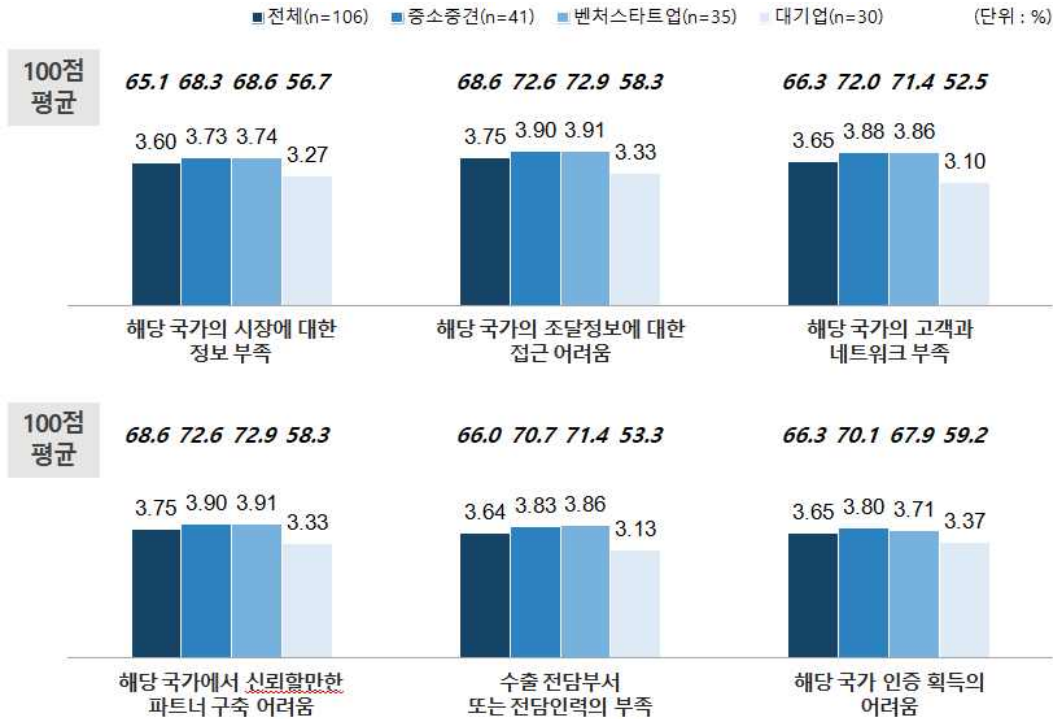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조달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 기업의 평균이 3.9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국가의 고객과 네트워크 부족이 3.88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F의 의견에서도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Agenda가 나오고 결과물(성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음. KOICA 같은 기관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연결 및 보장해주거나 기업들이 관심있을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봄”으로 파트너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진출 준비과정의 애로사항 중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국가의 고객과 네트워크 부족 및 수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부족이 3.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J도 “OOO에서도 보건사업을 하는 게 처음이고, OOO와 사업을 해본 국내 경험도 별로 없어서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그래서 다른 MDB나 WB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해외조달 진출에 필요한 관련 안내자료나 참고자료들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을 전하며, 조달정보를 중심으로 한 애로사항을 나타냈다.

[그림 5-39]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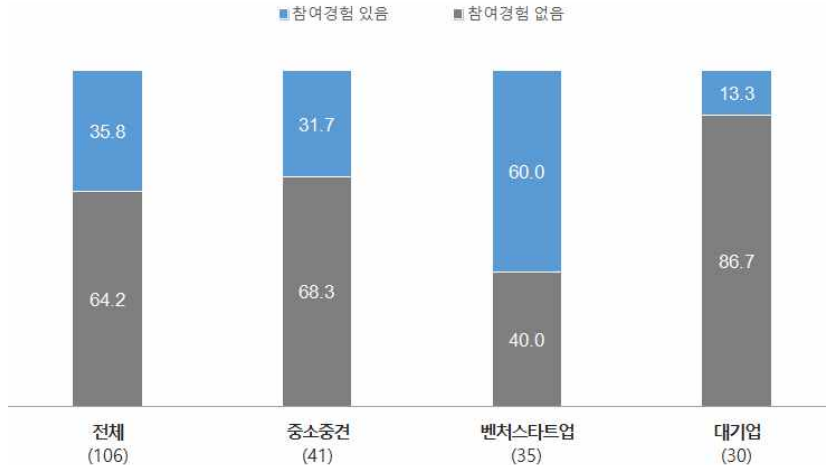
3)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만족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의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 기업 중 35.8%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64.2%로 상당히 높았다.

응답 기업 중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벤처·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30개 응답 기업 중 13.3% 만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의 31.7%가 참여 경험이 있었다. 반면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총 35개 응답 기업 중 60%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림 5-40] 정부/공공기관 주관의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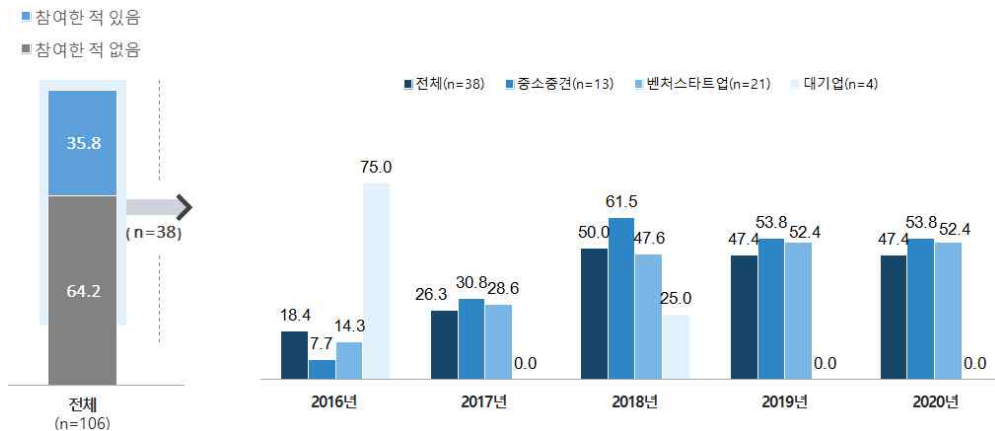
(단위 : %)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8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연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2016년에 75%, 2018년에 25%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기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7%, 30.8%, 61.5%로 참여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총 13개 기업 중 53.8%가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3%, 28.6%, 47.6%, 52.4%, 52.4%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41] 정부/공공기관 주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연도(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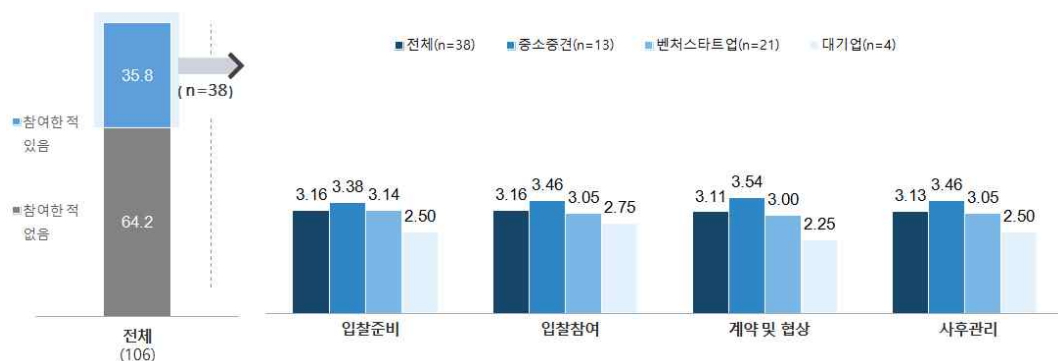


한편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경험이 있는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특성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이 각 문항에서 응답 기업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벤처·스타트업, 대기업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은 수출허가, 수출보험획득, 계약이행 및 납품, 수출대금지원과 같은 계약 및 협상에 있어서 만족도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입찰참여, 사후관리, 입찰준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시장정보수집, 전문인력교육, 인증획득 등 입찰준비과정에 만족도가 3.14로 가장 높았으며, 입찰참여, 사후관리, 계약 및 협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입찰정보 획득, 벤더 등록 및 입찰참여 컨설팅과 같은 입찰참여에 있어서 만족도가 2.75이며, 입찰준비, 사후관리, 계약 및 협상 순으로 도움을 받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2]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받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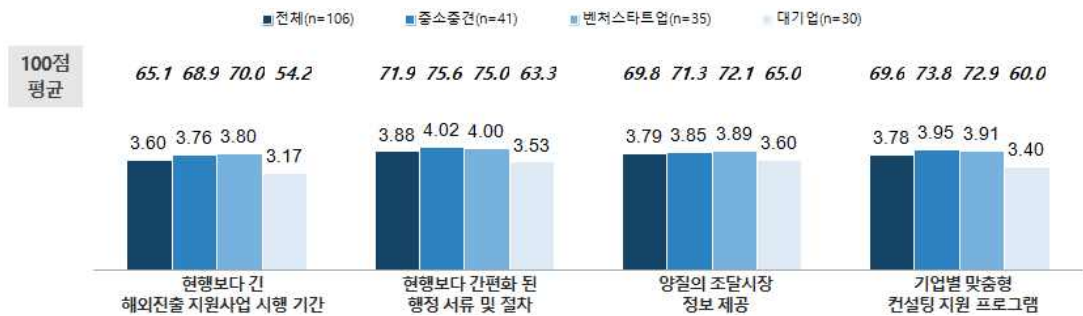
4)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필요사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묻는 문항에 대해 현행보다 간편화된 행정서류 및 절차, 양질의 조달시장 정보제공,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양질의 조달시장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현행보다 간편화된 행정서류 및 절차를 언급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보다 간편화된 행정서류 및 절차가 4.02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3.95로 높게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도 현행보다 간편화된

행정서류 및 절차가 4.00으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3.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K도 “받은 정보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들로, 기업이 필요한 세부적이고 맞춤형 정보는 없음. 이외에는 관련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현지에서 발로 뛰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음”으로 맞춤형 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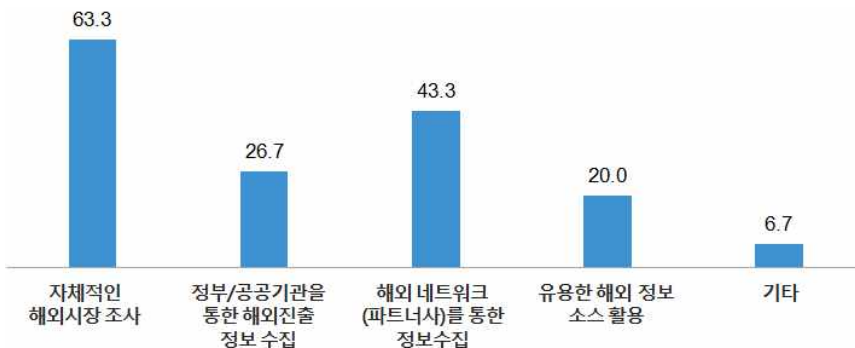
[그림 5-43]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필요사항



특히 대기업의 정보 수집방법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참고할만하다. 응답 대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수집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대기업의 63.3%는 자체적인 해외시장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3.3%는 파트너사와 같은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26.7%이며, 유용한 해외정보소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20%였다.

[그림 5-44]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대기업 전체(n=30))

(단위 : %, 복수응답)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정부협력에 대해 문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응답기업 평균으로는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4.2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의 마련이 3.91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지원이 3.84였다.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의 금융지원 활성화가 3.70, 해외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이 3.60으로 높았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에 있어서는 3.33으로 다른 모든 문항의 응답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심층인터뷰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심층인터뷰 참여자 C는 “기업 간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가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화된다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보일 것 같다” 고 하였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E도 “기업의 경우 당사의 이익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다른 파트너와의 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심층인터뷰 참여자 E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품과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협업이 불가피함. 이런 점들이 오히려 사업 공모 시에도 가산점으로 적용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적용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4.22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4.05, 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이 3.93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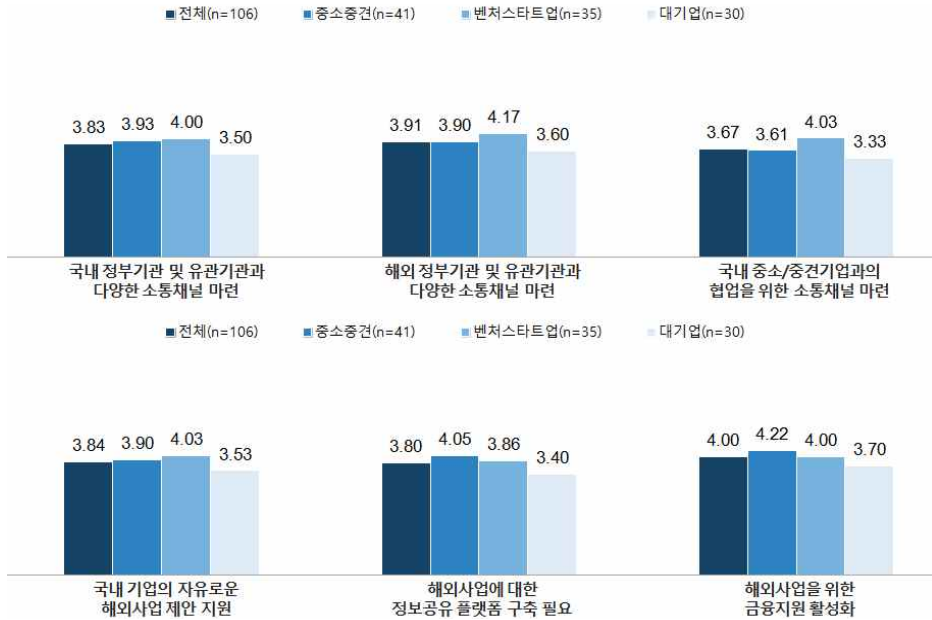
심층인터뷰 참여자 F는 “사실 당사는 참여하는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음. 물론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사람 다음으로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 지원,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이 4.03으로 높았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K는 “막상 해외에 진출해보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음. 해외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예: 대사관이나 사무소)의 경우 아직도 쉽고 편안하게 소통하진 못함”이라고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5-45] 해외진출 지원사업시 정부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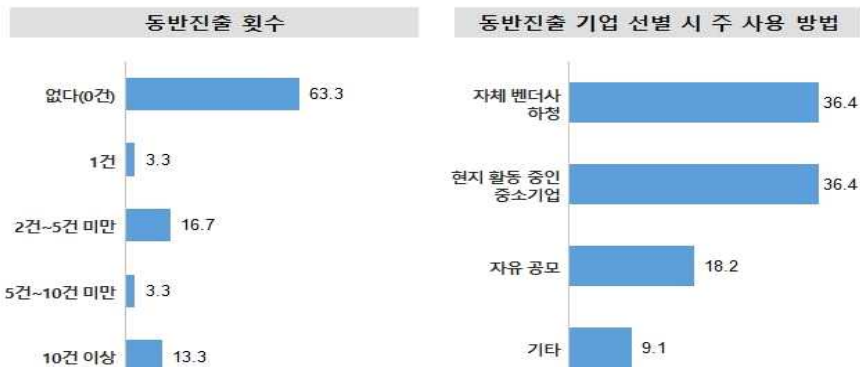
(단위 : 점, 5점 만점)



응답 대기업 30개사 중 해외진출을 추진하였고, 해외사업 수주경험이 있는 기업은 66.7%이며,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사업 수주경험이 없는 기업은 30.0%, 해외진출을 추진한 적이 없는 기업은 3.3%였다. 이들 기업의 동반진출에 대해서는 동반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63.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외사업 진행 시 중소기업과 동반진출을 2건-4건 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은 16.7%, 10건 이상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은 13.3%였다.

[그림 5-46] 최근 5년 해외사업 수주 실적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현황(대기업 전체(n=30))

(단위 : %)



2.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평가

개도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가로 인식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 등으로, 이들 기업에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UN 조달시장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달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인도와 수주실태를 비교하면, UN 등록 벤더 대비 참여비율을 비교해 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평균 기준, 인도의 경우 58.17%로 과반수가 참여했지만, 중국은 1/4 수준에 못 미치는 22.43%이며, 한국은 19.84%에 그쳤다. 인도는 등록 벤더들이 60%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 반면, 중국과 한국은 2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벤더 등록 수와 참여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특성이 있다. 고무적인 것은 인도와 중국의 참여 벤더 수가 다소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의 참여 벤더 수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중국 벤더와 한국 벤더의 등록 대비 참여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실상 100만 달러 이상의 조달 건에 참여한 참여 벤더 수가 중국은 연평균 37개 업체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12개 업체이기 때문에, 대규모 조달사업에 대한 참여율은 한국이 매우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주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23〉 인도/중국/한국의 UN 등록 및 참여 벤더 수 비교(2015-2018)

(단위: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인도	UNGM 등록 벤더 수(누적)	2,914	3,630	6,794	5,898	-
	조달참여 벤더 수	2,058	2,859	2,445	2,790	2,538
	(100만 달러 이상 조달 건 참여 벤더 수)	81	83	81	75	80
	등록 대비 참여비율	70.62	78.76	35.99	47.30	58.17
중국	UNGM 등록 벤더수(누적)	3,853	4,303	6,143	6,134	-
	조달참여 벤더수	975	1,212	1,148	1,077	1,103
	(100만 달러 이상 조달 건 참여 벤더 수)	34	35	36	42	37
	등록 대비 참여비율	25.30	28.17	18.69	17.56	22.43
한국	UNGM 등록 벤더수(누적)	991	1,244	1,810	1,585	-
	조달참여 벤더수	218	236	317	331	256
	(100만 달러 이상 조달 건 참여 벤더 수)	11	13	12	11	12
	등록 대비 참여비율	22.00	18.97	17.51	20.88	19.84

출처 : UNOPS(2016-2018)에서 재구성

26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조달분야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인도는 8.5:1.5, 중국은 6.5:3.5, 한국은 9:1로 인도와 한국은 물품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5-24〉 인도/중국/한국의 UN 조달규모 비교(2015-2018)

(단위: 백만 US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인도	물품	1,119.7	87.68	902.6	84.78	741.7	81.78	852.7	81.84	904.18	84.30
	서비스	157.3	12.32	162.0	15.22	165.2	18.21	189.2	18.16	168.43	15.70
	전체	1,277.0	100.00	1,064.6	100.00	907.0	100.00	1,041.9	100.00	1,072.63	100.00
중국	물품	131.3	61.30	158.8	69.47	154.8	70.36	138.1	64.23	145.75	66.42
	서비스	82.9	38.70	69.8	30.53	65.2	29.64	76.9	35.77	73.70	33.58
	전체	214.2	100.00	228.6	100.00	220.0	100.00	215.0	100.00	219.45	100.00
한국	물품	175.9	91.19	187.9	87.35	176.7	87.56	133.6	83.71	168.53	87.61
	서비스	17.0	8.81	27.2	12.65	25.0	12.39	26.0	16.29	23.80	12.37
	전체	192.9	100.00	215.1	100.00	201.8	100.00	159.6	100.00	192.35	100.00

출처 : UNOPS(2016-2018)에서 재구성

최근 4년간 전체 품목 순위를 살펴보면, 연평균 기준으로 인도와 한국의 1위 품목은 의약품이고 중국의 1위 품목은 의료장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의 의약품은 70%대로 집중된 반면, 중국의 의료장비는 다른 품목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어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UN 조달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수주 경쟁력은 대규모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물품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품목에 편중하여 참여하고 있어, 불균형적이고 물품 중심의 경쟁력만을 갖추고 있다. 이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USAID와 호주 DFAT의 한국기업 진출실적을 살펴보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각 시장점유율이 세계은행 0.64%, 아시아개발은행 5%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미국 USAID와 호주 DFAT에서는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업이 1건 내외로 시장점유율이 각각 0%, 0.002% 수준으로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자공여기관과 양자공여기관은 거의 서비스 중심의 프로젝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중심으로 해외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전략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5〉 인도/중국/한국의 Top 10 품목별 조달규모 비교(2015-2018)

(단위: US달러)

국가	순위	품목 (Segment)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
인도	1	의약품/피임약/백신	74	930,807,179	76	724,388,430	80	630,525,664	87	760,349,520	79	761,517,698	74.8
	2	식품/음료 제품	3	89,690,755	8	63,486,709	7	12,517,314	4	4,302,028	6	42,499,202	4.2
	3	의료장비	55	34,068,508	53	49,619,009	47	34,894,242	34	28,067,008	47	36,662,192	3.6
	4	관리/행정서비스	117	33,433,620	122	46,756,536	98	23,059,845	110	34,867,734	112	34,529,434	3.4
	5	엔지니어링/조사서비스	62	24,766,742	84	27,828,426	82	40,751,060	101	35,107,144	82	32,113,343	3.2
	6	가전 및 전기제품	10	20,564,313	13	31,482,623	11	17,452,575	11	21,199,826	11	22,674,834	2.2
	7	헬스케어서비스	1	17,616,591	49	19,708,170	59	15,733,113	74	21,290,343	46	18,587,054	1.8
	8	운송/보관/우편서비스	54	16,765,635	47	10,487,080	43	12,260,373	57	20,762,457	50	15,068,886	1.5
	9	금융 및 보험서비스	12	11,415,137	16	9,716,165	22	11,393,664	16	12,242,484	17	11,191,863	1.1
	10	공구 및 일반기계	9	5,039,122	12	8,076,121	11	6,764,515	8	3,095,536	10	5,743,824	0.6
		전체	580	1,237,849,671	740	1,025,461,788	700	839,171,002	759	968,505,693	695	1,017,747,038	100
중국	1	의료장비	22	19,785,922	34	25,022,159	30	26,447,400	29	20,074,495	29	22,832,494	11.4
	2	의약품/피임약/백신	12	13,158,951	9	19,146,413	12	28,858,901	15	20,096,336	12	20,315,150	10.2
	3	환경서비스	2	7,171,350	4	19,111,208	5	22,761,581	2	24,576,086	3	18,405,056	9.2
	4	관리/행정서비스	39	21,039,190	61	14,703,666	51	14,043,128	51	20,508,771	51	17,573,689	8.8
	5	약기/예술/공예	15	6,743,546	18	21,817,490	16	9,141,887	13	13,258,523	16	12,740,362	6.4
	6	청소 장비	2	16,157,931	3	13,241,104	1	5,575,361	1	14,139,518	2	12,278,478	6.1
	7	전력발전기	4	933,530	10	15,750,039	29	12,950,246	9	2,998,061	13	8,157,969	4.1
	8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장비	6	10,235,010	9	11,985,716	4	3,232,549	4	4,636,859	6	7,522,534	3.8
	9	배전 장비	3	5,492,531	4	4,100,249	5	9,837,986	6	6,967,828	5	6,599,649	3.3
	10	공구 및 일반기계	6	2,279,718	11	1,678,739	11	6,568,535	11	10,666,667	10	5,298,415	2.7
		전체	327	198,360,575	408	212,026,517	411	195,348,137	391	193,219,760	384	199,738,747	100
한국	1	의약품/피임약/백신	8	162,373,016	4	163,275,709	6	154,557,908	6	94,086,213	6	143,573,212	76.4
	2	관리/행정서비스	8	7,370,501	15	13,050,422	16	13,536,206	17	14,172,785	14	12,032,478	6.4
	3	의료장비	10	3,913,914	7	14,755,020	5	11,963,003	4	11,654,007	7	10,571,486	5.6
	4	식품/음료 제품	-	-	-	-	-	-	1	19,550,000	0.3	4,887,500	2.6
	5	구조물 및 건설 부품	1	570,600	1	6,722,609	1	5,173,954	1	2,461,664	1	3,732,207	2.0
	6	실험실 및 시험장비	6	5,494,970	5	1,628,844	4	2,544,707	4	2,657,469	5	3,081,497	1.6
	7	운송/보관/우편서비스	4	226,181	8	4,550,667	4	4,185,491	6	2,067,983	6	2,757,581	1.5
	8	편집/디자인/그래픽서비스	3	924,958	4	1,640,204	4	2,572,756	7	3,697,514	5	2,208,858	1.2
	9	토지/건설/구조물 서비스	2	2,272,348	1	2,973,117	1	6,930	1	243,554	1	1,373,987	0.7
	10	엔지니어링/조사서비스	9	2,653,592	4	296,067	4	671,280	4	374,918	5	998,964	0.5
		전체	74	190,037,865	73	211,541,562	63	196,680,064	71	153,086,090	70	187,836,395	100

* 3만 달러 이상의 계약 건만 취합된 데이터(보안상 이유로 누락 데이터 존재)에 기반하여, 실제 데이터와 다른 출처: UNOPS(2016-2018)에서 재구성

3. 시사점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역량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기업은 아시아 권역의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진출경험을 주로 가지고 있었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상관없이 조달시장 진출준비과정에서 조달정보 접근 및 국내외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수주경쟁력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와 수주경쟁 반열에 있는 중국과 인도와 비교할 때에도 산업분야 전반으로의 참여 저조, 가격경쟁력 저하, 서비스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열세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해외 ODA 조달시장 정보의 접근 및 기업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규모에 따라 직접 수주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제품 수출만 고려하여 바이어를 통해 시장진입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별로는 요구되는 조달시장 정보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젝트 PCP, 입찰 및 현지 시장정보, 현지 사업담당 기관 및 담당자 정보, 입찰과정 및 투자 규제사항 등이 요구되나, 후자의 경우, 조달 벤더 정보, 제품 기술인증 정보, 시장 통관 정보 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해외 ODA 조달시장 전문정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고 시장접근방식에 따라 조금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찾는 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준비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둘째,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그 지원을 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 사업담당자와 현지 사업담당자, 현지 시장파트너 등과의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정확한 시장 접근 전략을 구상하고 어느 범위까지 투자가 가능한지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속적인 시장정보의 확보, 시장수요의 정확성 등을 파악하고, 진출과정에서의 위험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소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하여 신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주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의 저변화를 위한 지원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UN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다자개발은행에서는 에너지 산업 분야 등에 편중화되어 있고, 권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물품 중심으로 시장점유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프로젝트 참여 제안 등에 초점을 맞춘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단순한 물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분야의 개도국 현지 시장에 저변화할 수 있는 투자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민간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5절

우리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1. 현행 기업 ODA 조달시장 지원제도

ODA 조달시장 지원제도는 ODA 재원으로 재화, 용역, 건설에 관하여 계약, 구매하는 등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다. 먼저 정부가 어떻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는지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ODA 조달시장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당면 과제 중 하나기 때문에, 과기부, 환경부, 특허청, KOTRA, KOICA 등 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수출 가능성이 유망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수출 두드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⁹⁵⁾, 대구상공회의소와 영남대는 본국으로 돌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개도국 인재 네트워크와 대구지역 기업들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지역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⁹⁶⁾.

국내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정보통신/환경/스마트팜 등 신성장분야, 해외투자 및 프로젝트 수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0년 12월에 진행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정부 간 협력플랫폼 강화(25%), 신사업 발굴지원(21%),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17%), 금융지원 확대(13%) 순으로 나타났다⁹⁷⁾. 현행 시행되는 지원사업도 신사업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부터 수출성고가 높은 기업까지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에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수출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과 최근 수출실적이 적정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9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355>

96)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38>

97) 대외경제장관회의(2021.1.11.),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p.9

26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기업에도 정보 제공 및 무역투자 상담을 통해 초기 수출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표 5-26〉 참조).

〈표 5-26〉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경제외교 활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외교 활용 포털을 통해 경제외교 성과, 방문국 종합정보, 경제외교 활용사례, 후속조치 사업 등을 안내 ■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를 통한 수출계약 체결, 현지 투자진출 등 기획 지원 	사업계획,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 예상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매뉴얼 브랜드 개발, 홍보, 전시회, 해외영업지원, 조사 및 일반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법무/세부/회계 컨설팅, 통번역,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함,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등에서 선택적 이용 	수출바우처 및 지사화 사업 신청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투자 종합정보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해외시장 뉴스, 트레이드 내비 등을 통한 각종 해외시장/투자 정보 및 FTA/관세, 해외기업정보 등 제공 ■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이동 KOTRA, Trade SOS 무역실무/무역 애로상담 등 운영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	KOTRA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 지원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KOTRA
해외기업 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협약하여 매년 5만건의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해외기업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 확인) 	무역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국별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이후 수출상담 A/S 지원 ■ 단체참가/개별 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시 선정우대) ■ 개별 기업의 해외 세일즈 및 해외투자 환경 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활동 지원 		KOTRA 중소기업중앙회
전문 무역상사 활용 내수기업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험이 적은 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제품을 지정된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 대행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한 제조기업 ■ 무역상사 매칭하여 상시거래 알선, 개별 기업간 거래 진행 지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기타 연관기관으로부터 지정 전문 무역상사를 지원함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 비중이 20%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 무역상사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의 수요 발굴 및 적격 국내기업 매칭으로 소재 및 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 ■ 글로벌 제품개발 단계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진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글로벌 기업에 수출 희망하는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	KOTR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

신성장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게임 콘텐츠, 보건의료, 환경기술 등 각 영역별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해외 현지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거점 전담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받는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표 5-27) 참조).

〈표 5-27〉 신성장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해외거점 전담 직원이 현지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지원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기업	KOTRA
서비스산업 수출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기업과 해외 초청 바이어와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 	국내외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KOTRA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박람회 B2B 화상상담, B2C 온라인 유통망 판촉, 한류행사 권역별 B2C 홍보 마케팅, 전시이벤트 참가지원 	코로나-19 극복 테마 연계 가능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 콘텐츠·에듀테크 해외 마케팅 지원,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AR, 애니 웹툰, 게임 등 콘텐츠 기업과 에듀테크 기업 대상 화상상담 제공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 대상 해외진출 주요 거점 인프라, 해외전략 시장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 	국내 디지털 콘텐츠·에듀테크 업체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퍼블리셔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국내 게임 콘텐츠 제작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정보보안·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 등을 제공 국내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수출형 SW 제품화, 수출마케팅, 현지 시범사업을 통해 SW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방송, 소프트웨어(SW) 업종 중사 중소·중견 기업, 국내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외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진출 지원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수 환경기업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 국내 우수 환경기술에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 	환경산업체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협회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

26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은 국가별 해외법인 설립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위한 지원 등 해외투자자와 관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유망프로젝트 수주 지원뿐 아니라 프로젝트 발굴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표 5-28〉 참조).

〈표 5-28〉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해외투자진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종합적 상담서비스 	해외투자 계획이 있거나 기 진출 기업	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설립 지원,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법인설립 관련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 알선 (투자진출상담/자료제공, 현지출장지원, 투자/애로해소 지원) ■ 15개국 24개 무역관에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운영 	해외투자/법인 추진기업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확보, 보호 및 애로해결을 해외거점에서 지원(침해조사, 법률검토, 상담) ■ 해외상표 선점 피해사실 안내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등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	KOTRA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계별 발생 가능한 지재권 분쟁위험 대응전략 검토, 해외현지권리화, 무단권리 선점, 상표피해 대응, 형태모방 대응 등 보호전략 수립 	수출(예정) 중소기업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개발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및 기업협력 프로그램 지원(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행과 비즈니스 전략, 수원국 개발목표가 연계된 개발협력사업) ■ 글로벌 CSR 사업 및 CSR 활동 홍보(재외공관) 	개발협력 관심 기업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DI KOICA
글로벌 M&A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핵심기술, 브랜드, 유통망, 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 지원 	중소/중견기업	KOTRA
국내 복귀(U턴)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등의 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KOTRA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 원양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명예 행양수산관, 해외 수산시설 투자, 해외투자 전문교육 등 	수산기업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 해외 유망프로젝트 수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환경시장동향, 수주동계, 계약/클레임 법률 검토, 공종별 기술자문, 영문번역, 보증/보험/금융 등 자문제공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전문 맞춤형 서비스지원 ■ 발주처 초청하여 파트너십 지원(기자재 온라인 상담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조달시장에 관심있는 기업	해외건설협회 KOTRA

출처: 외교부, 특허청, KOTRA, 한국수출입은행, KDI, KOICA, 해외건설협회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

또한 해외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 지식재산권, 수입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및 표준 상담, 인증획득 지원, 인증 등록 지원 등에 대해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주관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특허 맵, 브랜드 개발, 특허 심사 대응,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등 전주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동향 정보 제공, 실무 가이드 제공, 통관 시 애로 해소,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표 5-29〉 참조).

〈표 5-29〉 해외시장 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국내외 인증/표준 정보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 등록 지원, 환경표시 해외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정보제공, 국내인증/표준 상담, 전문 시험인증기관 상담(1381 홈페이지 운영) ■ 시험/인증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435종, 최대 1억원 한도 내 전년 매출 30억 기준 차등 지원, 연 3회[2월, 5월, 8월]) ■ 농식품 분야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 소요 비용(인증취득비/대행비)의 70% 지원,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기관과 상호검증 대행, 재검증 면제 등 환경표지 취득 지원 	국내외 인증/표준 정보 및 획득 필요 기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 해외출원, 심사대응/등록비용 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종합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해외통관 애로해소, 수입규제 대응 지원,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규제 동향 정보제공, 국가별 판정절차 안내 및 대응 실무가이드 공유, 전문컨설팅 지원 ■ 해외관세 및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해소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설명회 및 통관환경 보고서 발간, 해외통관 애로사례집 발간 등 ■ 외국정부 수입규제 조치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 외국 조사당국과 양자협의 문제해결 도모, 선제적 수입규제 대응체제 운영, 재외공관 현지 대응반 설치, 민관 합동대응 체제 구축 ■ 조세, 노동, 환경, 법 제도 등 주재국 주요 법규 세미나 개최 및 법률정보 제공, 자문 변호사 서비스 제공 	국내 기업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외교부

출처: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특허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무역협회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

[그림 5-47] 현행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종합)



2. 현행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

가. 시장접근방식

현재 한국 기업들은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 접근을 각 ODA 기관의 시장 조사 이후 정해진 규격이나 입찰 일정에 따라 입찰참여를 위한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진출전략은 주계약자가 되어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직접 진출방식), 각 시장의 벤더(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공공 수요가 있는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간접 진출(간접 진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는 차입국(수원국) 정부의 수요가 사전에 존재하여 사업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직접 진출과 간접 진출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표 5-30> 해외조달시장 접근방식(진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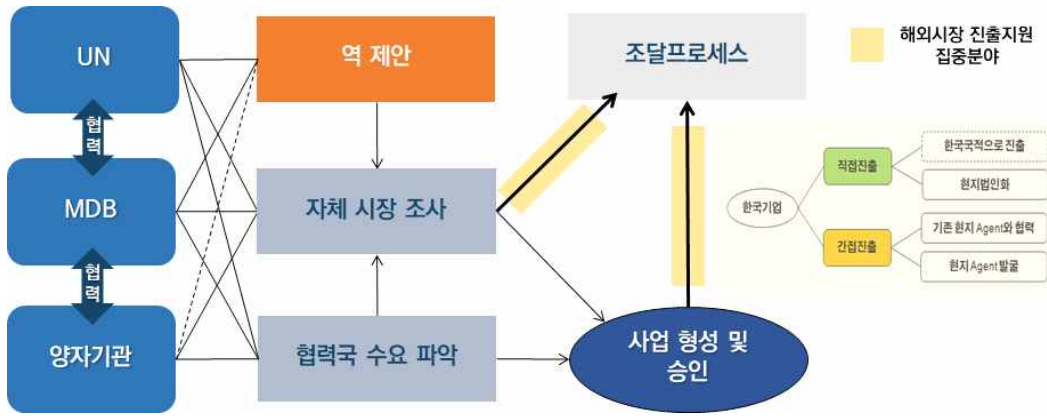


나. 진출지원의 한계점

대개 기업규모가 크고 수출역량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직접 진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직접 진출방식은 입찰을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벤더등록, 제안서 작성 등)과 기술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조달관과의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참여하는 단계에 주로 역점을 두어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간접진출방식에서도 해외 벤더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외바이어와 상담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해외 ODA 조달시장의 특성상 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 필요한 규격과 서비스 속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 입찰공고가 나오기 전 프로젝트 형성을 할 수 있는 시장 조사 및 역제안 단계로부터 적극적인 관여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수주와 그에 연관이 되는 품목의 소싱은 ODA 기관의 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제안방식을 통해 어필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찰단계에서 그 특성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해외 바이어 및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쌓아 입찰참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형성 단계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해외 ODA 사업 취지에 맞게 입찰참여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해외시장 진출지원 집중분야가 사업형성 및 승인 이후 지원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한국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5-48]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집중영역



또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들의 전문성 부족에 입각하여 역량개발 목적에 집중하거나, 충분한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 당시의 상황에 맞춰 사업수행사의 현지 네트워크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지원대상인 기업에게 맞는 진출전략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편협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실적화까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지원을 하는 B2G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수행사가 제한되어 있어, 한 사업수행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른 동일 실적에 대한 각 프로그램마다 중복적 신고를 한다는 점, 수출역량이 있는 몇몇 기업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여 실적화하려는 점 등에서 체계적 실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진출지원 프로그램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실적통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통계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기반화되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그림 5-49]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특성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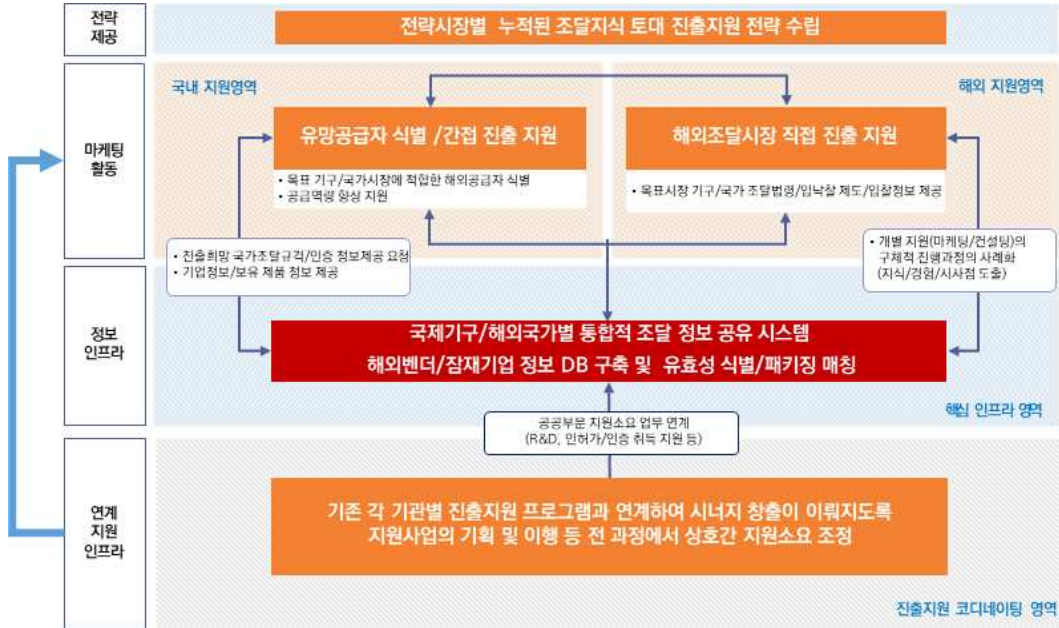
3. 우리 기업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가. 기본 방향

우리 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방향은 현행 진출지원의 한계점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총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단순한 입찰참여가 아닌 ODA 사업의 특성인 SDG 등의 가치에 입각하여 해외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형 진출지원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출지원을 했던 것에서, SDG 및 ESG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고 공헌하기 위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에 입각하여야 한다.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는 사업의 목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추구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과 품질 이외에 시장경쟁력을 이끄는 또 하나의 평가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요 방향성에 입각하여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기제(체계)는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형 지원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형 지원모델은 과거 입찰참여에 입각하여 해외 바이어를 통한 간접 진출과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 진출을 컨설팅 지원하는 방식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국가의 통합적 조달시장 정보를 토대로 전략시장별 진출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진출방식별 맞춤형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동 모델을 통해 전략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역제안하는 등의 사업형성 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별 진출지원 프로그램과 연동, 중복적인 지원 콘텐츠를 최소화하고 코디네이팅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전략 컨설팅 등을 하는 입찰참여 단계의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50] 해외 ODA 조달시장 통합형 진출지원모델 (안)



동 모델에서는 과거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했던 대상을 기업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사업 위험성을 고려할 때 기업 간의 협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주계약자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동반진출(상생협력) 구조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입각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목적 자체에 의미를 두고 포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의 유형 및 역할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경우 사업형성 및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달수요정보가 필요한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 파트너 구축을 위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동 모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협력 제안을 하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확실한 진출실적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모델은 통합형 지원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므로, 과거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벤더 등록이나 교육 등 역량강화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기업의 역량에 따라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지원 소요를 조정하며, 기업에게는 각 역량에 따라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팅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범공공기관의 상위급 서비스인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서비스⁹⁸⁾를 통해 공공기관에게는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통합관리 조정을, 기업에게는 통합적 참여 채널로서 지원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동 PMO 서비스를 통해 진출지원 프로그램이 통합관리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기업의 진출방식별 해외진출실적에 대한 통계관리가 가능하다. 현재는 관세 시장에서 증명된 직접 수출만이 확인할 수 있을 뿐, 해외 ODA 조달시장의 간접 및 직접 진출방식별로는 실적통계가 부족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상기 논의한 통합형 진출지원 모델은 민간부문의 역제안 역량 향상, 수주를 위한 기업간 패키지 팀의 구성 활성화, 공공-민간재원의 연합을 통한 해외 ODA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궁극적으로 해외 ODA 조달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51]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의 기본 방향

	As-Is		To-Be
주요 방향	기업이익 창출을 위한 수출지원 중점	➡	SDG, ESG 등 국제사회 공헌을 위한 해외진출 참여기회 확대
지원 체계	입찰참여에 중점, 해외 ODA 사업의 역제안 지원 및 조정체계 부재	➡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형 지원모델 구축 (역제안 + 입찰참여 포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	모든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
지원 방식	지원 콘텐츠 중복, 실적관리 부재 (역량개발에 중점, 실적화 연계 미약)	➡	PMO 서비스 방식으로 통합관리

98) PMO는 IT 시스템 통합관리 프로젝트에서 주로 많이 활용했던 개념으로, 여러 IT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하고 통합조정하는 관리 조직을 지칭하였다. Dai & Wells(2004)에 따르면, 프로젝트 관리 원칙, 방법론, 도구 및 기법을 구현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전략적인 문제들과 기능 조직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수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서는 다양한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 조직으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PMO 서비스는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능 이외에도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능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본 사업에서도 직접 민간과의 소통 창구 채널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세부 지원정책

가.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크게 통합형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PMO 서비스 운영 등 2가지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통합형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앞서 언급한 통합형 진출지원 모델에서 정보인프라는 통합모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구심점으로, 하나의 진출지원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보인프라는 동 모델에서 유일하게 실제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그 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수립, 마케팅 활동, 지원인프라 연계는 향후 기술될 PMO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정보통신분야, 의료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등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다만, 해당 정보제공 사이트들은 각 산업분야별 일반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급급하고, 해당 정보가 조달시장에서 어떻게 규제로 작용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회피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정책을 활용하여 공략해야 하는지와 연계되기 쉽지 않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정보공유 확산을 위해 계획된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국토부), 무역투자24(산업부), 해외경제정보드림(기재부) 등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서비스, 각 산업분야 현행하는 해외시장 진출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어느 플랫폼에 접속하더라도 풀링된 잠재기업, 조달시장 동향정보 및 규제정보, 수주 패키지팀의 매칭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기업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함께 지원되는 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되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범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각자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시스템별 정보 DB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형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심층적인 진출전략 자문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략적 자문 컨설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동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자기 역량을 평가하고 맞춤형으로 단계적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 준비단계에서부터 통합적 전략설계를 제공한다면, 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의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좀 더 손쉽게 국내외 파트너를 구하고 마케팅 활동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역량이 있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수주전략을 위한 정보를, 이들 기업과 파트너를 이루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더 합리적인 국내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접근의 장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PMO 서비스 운영

동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PMO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해서 통합형 진출지원 모델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PMO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동 진출지원 플랫폼의 운영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에서 PMO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위탁할 권한을 가지되, 모든 서비스의 책임은 국무조정실이 가져가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좀 더 책임있는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 해당 전문기관은 해외 ODA 조달시장에 전략적 조연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 PMO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제공되는 형태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모색하는 공공기관에게는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를 연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이행할 있도록 조정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협력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는데 초점을 맞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통합실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민간기업에게는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해외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접수창구로서 역할을 하여 해당 제안사업의 성격에 맞춰 공공기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팅해주고, 수주 패키지팀을 구성하며, MDB 등 국제기구에 역제안을 하는 실질적 지원 서비스를 담당한다. 당장의 역제안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향후 제안된 유사사업에서 형성된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옴으로써 신속한 수주 패키지 라인을 구축하도록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제안이 단번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안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PMO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위탁담당할 전문기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조정협의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서비스 이행에 대한 중간이행사항을 전달하고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PMO 서비스로 공공기관의 진출지원 서비스를 코디네이팅하여 통합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실무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협력을 통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위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5-52]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PMO 서비스 (예시)

	공공 기관	민간 기업
사업 기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 기획의 자문 역할 ■ 공공기관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 기획 시,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부합하는지 적정성 검토 ■ 사업 컨텐츠가 다른 기관에서 유사하게 진행될 경우, 상호 연계 가능성 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사업제안 청구 역할 ■ 제안된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국제사회 SDG에 부합하는지 적정성 검토 ■ 제안된 사업이 유사사업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유사경험 민간사업자 연계
사업 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역할 ■ 공공기관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 사업수행자 선정 시, 다른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동일 실적을 여러 사업에 등재하는 행위 등 관리 ■ 각 사업의 사업수행자간 체계적 협력을 지도,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적 활동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사업의 ODA 기관 역제안 지원 역할 ■ 제안된 사업 검토 및 UN/MDB 등 역제안 (공공기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안설계 지원) ■ 제안된 사업의 기자재 소싱 매칭, 패키지 팀 조성 ■ 주 제안자-소싱그룹의 역량 부족 파악 및 진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코디네이팅)
사업 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평가자 역할 ■ 공공기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실적 평가 ■ 전체 한국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실적 통계 관리 ■ 공공기관간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의 협력에 대한 총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사업 실패 및 성공사례 정보화 ■ 제안된 사업 DB화로 유사 사업 피드백 보완 ■ 통합 플랫폼 내에서 기존 파이프라인 추적관리 (해외 ODA 기관의 유사사업 발생시 즉각 참여가능) ■ 기업의 경영 및 역량 관련 영향도 평가 등 사후관리

제6절

우리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안)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해외 ODA 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조정기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앞서 언급한 통합형 진출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PMO 서비스를 집행하는 주체는 범정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되어야 하며, 국무조정실 주최의 조정기제를 구축하여,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KOTRA,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건설협회 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 DB를 하나로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연계 서비스의 콘텐츠 제공 및 콘텐츠 오류에 대한 대응 등의 협의 및 점검을 하여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정보연계가 되도록 협력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점검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선발한 PMO 서비스 전문기관이 주체가 되어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하여 플랫폼의 재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공유 협력과 관련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조정기제를 잘 작동하기 위한 원천은 우선적으로 각 유관 부처와 공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지원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이끄는 방안이 매우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도 통합 플랫폼으로 종합화된 정보 DB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허용을 하도록 하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접속을 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화 자문을 PMO 서비스 전문기관이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는 나아가 기업에게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다년간 보유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과 관련된다. 각 공공기관은 동 통합형 진출지원 플랫폼에 국내 사업 담당자 정보, 해외 네트워크 정보(해외사무소 등)를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며, PMO 서비스

전문기관에서 상기 소통 채널과 더불어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여 민간 사업제안을 수시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관계자 네트워크는 외교부, 조달청, KOTRA, KOICA 등의 국제협력 담당자와 협의하여 PMO 서비스 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MOU 형태로 수시적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또한 동 전문기관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기업이 의뢰하는 해외 바이어(조달 벤더)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신뢰유효성을 선별하는 점검과정을 거쳐 등급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외 현지 파트너에 대한 네트워크도 관리하는 역할도 동반되어야 기업의 제안사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수주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관리하거나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기획제안하고 설계/시공은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해외 PPP 사업을 지원하거나, KIND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이와 같은 PMO 서비스 전문기관에서 공공기관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을 하도록 하여 지원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시에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지원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는 이미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규모 대폭 확대 및 금리·수수료 인하, 저신용 국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 무역보험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를 적기에 완료하고, 이후 추가재원 조성을 통한 2단계 도입, 기본여신약정 추진 및 사우디(아랍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 PIS펀드 조성 확대(총 3조원)*, 수은 대외채무보증 개선, 무보 보험지원 확대(3조원), 경험증진자금(EDPF) 활용도 제고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해외 ODA 조달시장의 진출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PMO 서비스 전문기관에서는 이러한 금융지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사업속성 및 참여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여 해외 ODA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금흐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때 금융지원을 하는 각 기관에서는 PMO 서비스 전문기관이 원활히 자금지원에 대한 코디네이팅으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자문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PMO 서비스 전문기관은 제품의 기술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코디네이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지원도 각 공공기관과 수시 상의가 가능하도록 상시자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7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에서는 ODA 조달시장의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현행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ODA 조달시장을 다자공여기관과 양자 공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유엔 조달시장의 경우 보건 산업분야의 비중이 타 분야에 비해 높으며, 조달시장에 진출한 조달벤더 국적은 미국, 인도, UAE 순이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행정 및 공공부문관리, 에너지, 운송 분야에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벤더가 조달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상위 벤더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양자 공여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선 다자원조기관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으며, 정부조달기관으로 직접진출에 한계가 있지만, KOICA와 민간협력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모든 응답 기업에서 조달시장 진출준비과정에 조달시장 정보 접근성의 문제 및 국내외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수주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은 상위권에 있는 중국과 인도 벤더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 산업분야 전반으로의 낮은 참여, 서비스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열세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유엔,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ODA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 에너지, 행정 및 공공부문관리, 운송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화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미국, 호주 등 양자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 민간협력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제언하는 바이다. 나아가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와의 소통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수주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의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의 선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와 선진공여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간부문 참여(PSE)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안)과 ODA 해외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도출을 위해 이 연구는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활동과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현황 분석(제II장), 해외사례 분석을 시도하였고(제III장),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전략 틀 내에서 전략(안)을 제시하였다(제IV장). 또한 우리 기업의 ODA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안)은 해외조달 시장의 동향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제V장). 각 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활동과 정부-기업협력에 대한 현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활동 수준은 기업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개도국 CSR·CSV 활동을 위한 기업의 내부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도국 CSR·CSV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 CSR·CSV 활동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기업의 개도국 내 CSR·CSV 활동에 있어 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협력 사업의 기회가 많지 않고,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와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유인을 제공한다면 정부-기업협력은 활성화될 수 있다.

제III장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선 선진공여국 역시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프로젝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발자원을 제공할 때 경제협력특별조건을 제시하여 자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제안, 타당성 조사, 기금 형성 등 사업개발단계부터 심도있게 개입하며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다. 둘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범국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나 산업회랑과 스마트시티 등 프로젝트간의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플랫폼의 제공이다. 일본의 STePP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들이 타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자 기업을 전세계에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다. 네덜란드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정보의 공유는 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해 앞으로 더욱 많은 민간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다. 네덜란드 사례는 정부가 단순히 재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조건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높아지는 사회적 책임 인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공여국 간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IV장의 정부-기업협력 전략(안)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전략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전략(안)에서 도출된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개발재원 확대와 혁신적·참여적 ODA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으나, 정부-기업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기업과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V장에서는 ODA 조달시장의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현행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ODA 조달시장을 다자공여기관과 양자 공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유엔 조달시장의 경우 보건 산업분야의 비중이 타 분야에 비해 높으며, 조달시장에 진출한 조달벤더 국적은 미국, 인도, UAE 순이었다. 세계은행의 경우 행정, 에너지 및 채광, 운송에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벤더가 조달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상위 벤더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양자 공여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선 다자원조기관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으며 정부조달기관으로 직접진출에 한계가 있지만, KOICA와 민간협력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의 모든 응답 기업에서 조달시장 진출준비과정에 조달시장 정보 접근성의 문제 및 국내외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수주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은 상위권에 있는 중국과 인도 벤더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 산업분야 전반으로의 낮은 참여, 서비스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열세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함의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참여는 개발재원 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혁신성까지 개발원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 원조의 효과성 향상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SDGs에 기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에서 기업의 참여는 비단 정부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개도국에서의 이미지 제고, 정부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내에서 리스크 경험, 기업의 글로벌 CSR·CSV 이행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정부-기업협력이 개발협력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공여국과 수원국의 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여국의 관점에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기업협력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이 개도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면 국내와 개도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분야에서 기업의 참여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부-기업협력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력이 앞서 언급한 기업의 기대와 이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참여의 유인을 갖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기업협력은 어느 일방의 희생과 손해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OECD DAC 그리고 선진공여국은 지속적으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참여 전략의 수립과 보완 그리고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개발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의 참여를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기업협력은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전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업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업협력의 전략(안)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의 ODA 해외조달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기업협력 전략(안)과 우리 기업의 ODA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된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기업협력 전략(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적 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과제 도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기업과의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목표를 고도화하는 접근보다는 정부-기업협력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개도국에서 진행하는 정부-기업협력의 성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정부-기업협력에 관한 성공사례가 창출되어 확산될 때 기업의 참여는 활성화-고도화될 수 있다. 다만, 정부-기업협력 전략(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집단, 특히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기업의 ODA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유엔,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ODA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 에너지, 행정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화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미국, 호주 등 양자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 민간협력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제언하는 바이다. 나아가 기업의 ODA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와의 소통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수주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의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의 선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제 I 장

- 김민희 & 백석훈. (2012). 개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포커스*. 6(24).
- 김상훈 & 임소영. (2020). *개발협력기관의 기업과의 협력 전략 동향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양평섭, 이철원, 정재완, 김진오, 이수엽, 박혜리, 손성현, 이효진 & 조영관. (2019).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발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심층연구*. 19-03.
- 오수현.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자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10(3): 3-19.
- 외교부. (2021). “20년 우리나라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 공동보도자료 4월 13일.
- OECD. (2015). “Deepen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Aid for Trade,” in WTO and OECD,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Paris: OECD.
- OECD. (2016).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 Paris: OECD.

제 II 장

- 관계부처 합동. (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2025)*. 1월 20일.
- 관계부처 합동. (2021b).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1월 20일.
- 구정우, 김울리, & 김대욱. (2015).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간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지역연구*, 24(1), 75-113.
- 국무조정실 [Website]. (2021년). DAC 가입 후 성과와 변화. URL: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1_S03_01.jsp.

- 기획재정부. (2011).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12월 8일.
- 기획재정부. (2021). *EDCF PPP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 5월 17일.
- 김보영, 유동균, & 송니은.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과 CSR 진정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6(2).
- 김성규. (2012).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 (Global CSR)과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7(1): 29-43.
- 김성규. (2014).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CSV), *국제개발협력* 9(1): 11-30.
- 김성규. (2015). 개발협력과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 (Global CSR): 가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 ODA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3): 3-30.
- 백숙희. (2013).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 *2020 사회공헌 백서*.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손혁상, 박보기 & 김남경. (2014).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3(2): 121-155.
- 엄은희. (2017).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CSR: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6(3): 479-493.
- 이민호 [Website]. (2021년 8월 1일). 탄소중립으로 ESG 경영을 시작하라. SK Ecoplant NEWSROOM. URL: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100/>.
- 이승균 & 박민석 [Website]. (2021년 3월 2일). [2021 경영 트렌드 ESG ①] CSR, CSV 그리고 ESG. 데일리 임팩트. URL: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39>.
- 임종혁 & 전달영. (2018). 공유가치창출(CSV)에 관한 국내 문헌 분석 및 제언. *사회경제와 정책연구*, 8(1): 53-87.
- 정지선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ODA 정책연구 11-05).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 한국수출입은행. (2019). *수출입銀, EDCF 지원으로 미얀마와 경제협력 강화 나서*. 9월 4일.
- 한예경 [Website]. (2020년 10월 8일). [Biz times] 사회적 가치 키워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측정하지?...하버드 교수도 못푼 문제 `최태원 SK`가 풀어 냈다. 매일경제.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70224>.
- 홍성현. (2010). 연구논단: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R전략 및 실천방안. *임금·HR연구(구 임금연구)*, 18(3): 45-60.
- 홍순영. (2021). 신흥국 인프라 PPP 사업의 성공적 발굴과 추진을 위한 EDCF 활용방안. *대외건설정책연구원* 3: 1-5.
-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 Carroll, A.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 Carroll, A. B. (2016). Carroll's Pyramid of CSR: Taking Another 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3): 1-8.
- Dahlsrud, A. (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5(1), 1-13.
- Drucker, P. F. (1984). The New Mean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6(2): 53-63.
- KOICA. (2020). *개발협력기관의 기업과의 협력 전략 동향 연구*(연구정보 2020-09-253).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2021). *2022 KOICA CTS 프로그램 안내서*(기업 2021-01-25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2021). *2022 KOICA IBS 프로그램 안내서*(혁신 2022-01-11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KOTRA. (2010).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및 성공사례*(Global Issue Report 10-010). 서울: KOTRA.
- KOTRA. (2020). *2020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KOTRA자료 21-176). 서울: KOTRA.
- OECD [Website]. (2016).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In-Country Shared Value Creation: Framework for Extractive Projects. URL: https://www.oecd.org/dev/Framework_Public-Private_Collaboration_FINAL.pdf
- Planet People Productivity [Website]. (2021년 4월 29일). URL: <https://px3.org.uk/category/esg/>.
- Porter M. E. & Kramer, M. R. (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80(12): 56-68.
- Porter, M. E. & Kramer, M. R.(2006). Strategy & Society :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78-92.
- Porter, M. E. & Kramer, M. 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 Serafeim, G [Website]. (2020년 9월-10월). Social-Impact Efforts That Create Real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URL: <https://hbr.org/2020/09/social-impact-efforts-that-create-real-value>.

제 III 장

- 강신원. (2015). 모바일금융의 국내외동향-케냐의 M-PESA를 중심으로-. *TTA ICT Standard & Certification Journal*. Vol.161. 73-77.
- 고요한, & 김효신. (2017). *선진 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전략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권율, & 박수경. (2008).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면희, & 안숙영. (2011). 통일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변화요인과 주요 특징.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3-30.
- 김명숙. (2018). 4 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Korea Multimedia Society*, 22(1), 15-19.
- 김상훈, & 임소영. (2020). *개발협력기관의 기업과의 협력 전략 동향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송영철, 김규권, & 조충제. (2010). 인 (印)· 일 (日) 텔리· 뭄바이 산업회랑 개발사업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0(6).
- 송지혜. (202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동철. (2015). *Post-2015 개발재원 논의가 한국 개발금융에 주는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 오수현, & 이인호. (2018).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62.
- 이상홍. (2020).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참여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 이효정. (2019).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협력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사전기초연구결과* (pp. 366-4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정선인, 나혜선, & 이상준. (2016).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URL:
https://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8&state=view&idx=53051&pageNo=1&pageNoS=4&pageNoA=12
- 장효미. (2019). *임팩트 투자 동향 및 시사점*. (2019-3호). 자본시장연구원. URL:
http://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php?syear=2019&zcd=002001016&zno=1468&cno=5235
- 정지선,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ODA 정책연구 1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L: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613&cg_code=C01
- 정지원, & 정지선. (2008). *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 08-4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L: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081&cg_code=
-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 유애라. (2018).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KIEP] 연구보고서*, 18(09), 1-170.
- 조충제. (2015). 텔리-뭄바이 회랑 등에 100 개 건설 일본 기업 주도, 미, 독 등도 관심. *CHINDIA Plus*, 104, 56-57.
- 조한슬. (2016). 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을 중심으로.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1(3), 3-29.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2018).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URL:
https://overseas.mofa.go.kr/oezd-ko/brd/m_20809/view.do?seq=13427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7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201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DAC로부터의 교훈*.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URL:
<https://www.oecd.org/publications/dac-9791186043141-ko.htm>
- 한경석. (2018, 9, 18). [특집] 임팩트 투자① 새로운 투자 물결 '임팩트 투자'가 뜬다.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9/wk201809181248541>

- 46380.htm에서 검색.
- BMZ. (2017). *Africa and Europe - A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eace and a better future, Cornerstones of a Marshall Plan with Africa*.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URL:
<https://www.bmz.de/en/countries/marshall-plan-with-africa>
- BMZ. (2020). *BMZ 2030 Reform Strategy*.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 BMZ. (2021). *The Marshall Plan with Africa - Review and Outlook*.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 DCED. (2019a). *A Categorisation of Private Sector Engagement Strategies and Comparison with Other Approaches for Working with and through the Private Sector*. DCED.
- DCED. (2019b). *Private Sector Engagement, synthesis note*. DCED.
- DFAT. (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Australian Government.
- DFAT. (2020).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Guidance Note*. Australian Government.
- DFCCIL. (2014). *Credit Rating Report*. DFCCIL
- Dunning, J. H. (1982).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towards a dynamic or developmental approach. In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pp. 84-121). Palgrave Macmillan, London.
- GPEDC. (2018). *Effective Private Sector Engagement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 Kenya Revenue Authority. (n.d.).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URL:
<https://www.oecd.org/tax/forum-on-tax-administration/publications-and-products/tax-administration-3.0-kenya-country-example.pdf>
- MFA. (2018).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2018-2022*. Government of Office of Swede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2018). *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2019). *Dutch Good Growth Fund Part:*

- Financing Local SM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 Ndung'u, N. S. (2021). A Digital Financial Services Revolution in Kenya: The M-Pesa Case Study. In. *African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P.O. Box 62882 City Square Nairobi 00200, Kenya: African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 OECD. (2016a).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Germany*. OECD.
- OECD. (2016b).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Netherlands*. OECD.
- OECD. (2016c).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Sweden*. OECD.
- OECD. (2016d). *Peer Learning Country Report United States*. OECD.
- OECD. (2016e). *Understanding Key Terms and Modalities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 OECD. (2017). *Blended Finance Principles for Unlocking Commercial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URL: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OECD-Blended-Finance-Principles.pdf>
- Onsongo, E. (2019).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novation at the base of the pyramid: The Case of M-Pesa in Kenya. *Industry and Innovation*, 26(4), 369-390.
- UNIDO IPTO Japan. (2021). *STePP Brochur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SAID. (2018a). *Power Africa Transmission Roadmap to 2030: A Practical Approach to Unlocking Electricity Trade*. USAID.
- USAID. (2018b). *Private-Sector Engagement Policy*. USAID.
- USAID. (2019). *USAID Policy Framework: Ending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 USAID.
- USAID. (2021). *Power Africa Fact Sheet*. USAID.

제 IV 장

- 관계부처 합동(2011).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2월26일.
- 관계부처 합동(2012).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12월.
- 관계부처 합동(2014).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1월13일.
- 관계부처 합동(2015a).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1월9일.

29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 관계부처 합동(2015b).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요약본. 11월 10일.
- 관계부처 합동(2015c).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2월.
- 관계부처 합동(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12월.
- 관계부처 합동(2017).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12월.
-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1월15일.
- 관계부처 합동(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1월.
- 관계부처 합동(2021a).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1월 20일.
- 관계부처 합동(2021b).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1월20일.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12월21일.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1).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 2월.
- 김민희·백석훈(2012). 개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포커스 6(24).
- 김상훈·임소영(2020). 개발협력기관의 기업과의 협력 전략 동향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성규(2014).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CSV), 국제개발협력 9(1): 11-30.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 2020 사회공헌 백서(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송지혜(202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이철원·정재완·김진오·아수엽·박혜리·손성현·이효진·조영관(2019).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발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심층연구 19-03.
- 오수현(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10(3): 3-19.
- 외교부(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외교부.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Australian Government (2015). "Strategy for Australia's Ai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evelopment."
- OECD (2015). "Deepen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Aid for Trade," in WTO and OECD,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Paris: OECD.
- OECD (2016).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 Paris: OECD.
- Sida (2019). *Sida's Private Sector Collaboration: Opportunities for Improving, Scaling and Diversifying Methods for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Stockholm: Sida.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21). *SDC Handbook on Private Sector Engagement*. Bern: SDC.

USAID (2019). *Private-Sector Engagement Policy*. Washington, D.C.: USAID.

제 V 장

Advanced Search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usaspending.gov/search>.

Application Guidelines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thebpp.com.au/resources/application-guidelines/>

Asian Development Bank. (2021a, April). *2020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Retrieved from <https://doi.org/10.22617/FLS210109>.

Asian Development Bank. (2021b, August) Archive: Contracts Awarded - Goods, Works, and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business-opportunities/operational-procurement/goods-services/contracts-awarded/archive>

Contract Notices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tenders.gov.au/cn/search>.

Explore ASR Data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asr_dat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ANNUAL PROGRAM STATEMENT [Website].

(2020, October 22). Retrieved from

<https://www.usaid.gov/GlobalDevLab/documents/global-development-alliance-annual-program-statement>

Grant Award Published Criteria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grants.gov.au/reports/gapublishedform>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Contract Notice Data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data.gov.au/dataset/ds-dga-5c7fa69b-b0e9-4553-b8df-2a022dd2e982/details?q=austender>

IFC Korea. (n.d.). *Investment for Impact IFC Korea 2020-2021*.

- KOICA. (2019). *타 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조달)방식 연구*.
Procurement Contracts Award Summary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ducts-and-services/brief/summary-and-detailed-borrower-procurement-reports#:~:text=Procurement%20Contracts%20Award%20Summary%20The%20set%20of%20procurement,IDA%20FIBRD%20investment%20projects%20and%20related%20Trust%20Funds%20%28%2A%29.>
- UNOPS. (2016, June).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www.ungm.org/Areas/Public/Downloads/ASR/2015/Document/ASR_2015.pdf
- UNOPS. (2017, June).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6_EN.pdf?mtime=20171214185151&focal=none.](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6_EN.pdf?mtime=20171214185151&focal=none)
- UNOPS. (2018, June). 2017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www.ungm.org/Areas/Public/Downloads/ASR/2017/Document/ASR%202017%20-%20Annual%20Statistical%20Report%20on%20United%20Nations%20Procurement%20-%20ENGLISH.pdf.](https://www.ungm.org/Areas/Public/Downloads/ASR/2017/Document/ASR%202017%20-%20Annual%20Statistical%20Report%20on%20United%20Nations%20Procurement%20-%20ENGLISH.pdf)
- UNOPS. (2019, June). *2018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8_EN.pdf?mtime=20190618105531&focal=none.](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8_EN.pdf?mtime=20190618105531&focal=none)
- UNOPS. (2020, July). *2019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9_EN.pdf?mtime=20200709140106&focal=none.](https://content.unops.org/publications/ASR/ASR2019_EN.pdf?mtime=20200709140106&focal=none)
- UNOPS. (2021, July). *2020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Retrieved from
[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asr_report.](https://www.ungm.org/Shared/KnowledgeCenter/Pages/asr_report)

World Bank. (n.d.). *World Bank Annual Report 2021: From Crisis to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Recovery*.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about/annual-report>.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 Retrieved from <https://www.kodaportal.go.kr/portal/detail?basYyyy=2020&amtSel=grntEqv1nt2&amtUnit=UsdAmt2>



부록 1: 설문지



기업 개도국 CSR 및 CSV 활동 실태 조사 [대기업용]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개발협력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에서의 CSR·CSV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기업의 해외 CSR·CSV 활동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귀사가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기재된 유관 부서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본 메일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귀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을 완료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소정의 감사 표시로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통계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를 위해 취득된 귀하의 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폐기될 것입니다.

2021년 9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글로벌리서치(연락처 : 02-3438-1702)

SQ1. 기업명 ()

SQ2. 기업 설립연도 ()년

30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SQ3. 업종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④ 운수업 ⑤ 방송/통신/미디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전문서비스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⑩ 문화/예술/스포츠 ⑪ 기타 ()

SQ4. 최근 5년간(2016~2020) 연평균 매출 규모

- ① 10억 미만 ② 10억~50억 미만 ③ 50억~100억 미만
④ 100억~500억 미만 ⑤ 500억 이상

SQ5. 최근 5년간(2016~2020) 전체 매출의 연평균 수출 비중

- ① 0%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 미만 ⑤ 50% 이상

I. 기업의 CSR·CSV 전담 조직

1. 귀사에는 CSR·CSV를 전담하는 조직(부서)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문 4번으로 이동)

2. 귀사의 CSR·CSV 전담 부서명과 인력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부서명 ()

2-2. 인력 규모 ()명

2-3. 전체 인력의 ()%

30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8.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 해당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7번에서 ①~⑦ 응답한 연도만 작성)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활동 국가					

9.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A형~D형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기타 유형란에 유형을 기재하신 후 활동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SR·CSV 유형	9-1. 과거 (2016-2019)				9-2. 현재 (2020)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1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D형) 유희장비 이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CSR·CSV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현지 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div> •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현지 전문 인력을 육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div> • (C형) 상생가치 창출형: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예.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
 - 예1. 시험·인증: 미얀마의 시험·인증 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장비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 예2. 공공서비스: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 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 예3. 제품생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용에어필터 성능평가장비 등을 탄자니아 과학기술원에 이전 및 장비 교육 수행

9-1.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에 사용된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공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3 공공협약형	①	②	③	④	⑤

〈사업발굴 형태〉

- **공공제안형:**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비정기적 공모를 통해 민간주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
- **민간제안형:** 민간주체가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공공협약형:** 공여국 원조기관과 민간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 (컨퍼런스 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13.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5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①	②	③	④	⑤
6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III.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계획

14. 아래 질문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사는 개도국에서 CSR·CSV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사는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의 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어느 국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16.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공공부문(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문 17번으로 이동, 18번 건너뛰기)

② 없다(→문 18번으로 이동)

17.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협력 희망 부처·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18.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공공부문과 협력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정부와의 다음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중요(필요) 하지않다	중요(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필요) 하다	매우 중요(필요) 하다
1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20.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때, NGO(비정부기구)와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20-1. NGO(비정부기구)와 협력 의사가 있는 혹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유형별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A형~D형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기타 유형란에 유형을 기재하신 후 활동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SR-CSV 유형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①	②	③	④	⑤
2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①	②	③	④	⑤
3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①	②	③	④	⑤
4 (D형) 유휴장비 이전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①	②	③	④	⑤

<CSR-CSV 유형>

-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현지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현지 전문 인력을 육성

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 (C형) 상생가치 창출형:**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예.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

예1. 시험인증: 미얀마의 시험인증 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장비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예2. 공공서비스: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 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예3. 제품생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용에어필터 성능평가장비 등을 탄자니아 과학기술원에 이전 및 장비 교육 수행

30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21-1.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사업발굴 형태별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공공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3 공공협약형	①	②	③	④	⑤

〈사업발굴 형태〉	
• 공공제안형: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비정기적 공모를 통해 민간주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
• 민간제안형:	민간주체가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공공협약형:	공여국 원조기관과 민간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 (컨퍼런스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22.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주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공공행정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4 에너지	①	②	③	④	⑤
5 농촌개발	①	②	③	④	⑤
6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7 교통	①	②	③	④	⑤
8 물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의 17가지 과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귀사의 CSR·CSV 활동과 각 과제의 연계 정도를 1점~5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현재에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활동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Q23-1. 과거-현재(‘16-’20)						Q23-2. 미래(‘21-)				
	전혀 연계 되지 않음	연계 되지 않음	중간	연계 성이 높음	연계 성이 매우 높음	해당 없음 (활동 없음)	전혀 연계 되지 않음	연계 되지 않음	중간	연계 성이 높음	연계 성이 매우 높음
1 (빈곤) 모든 형태의 가난과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 (식량농업) 국민의 영양 균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 (건강·웰빙)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모두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5 (양성평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6 (물)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수자원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7 (에너지) 에너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8 (일자리·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9 (산업화·혁신) 포용적, 친환경적, 혁신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0 (불평등) 차별 관행, 정책, 법 개선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와 동등한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1 (도시·공간)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 및 교통/서비스 접근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증진과 생산 관리 및 관련 기술/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3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및 개선 노력과 자연재해 회복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4 (해양생태) 해양쓰레기 등 오염 예방과 해양자원생태계 보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5 (육상생태) 산림, 토양, 생물다양성 복원 및 생태계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6 (정의·제도) 폭력, 학대, 부정부패 종식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제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세계 교류 협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4. 귀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거(16~19)					현재(20)					미래(21~)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1	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2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3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4	기업 이미지 향상														
5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6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7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8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IV.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관련 정부의 역할

25. 귀사가 지난 5년 간 개도국 CSR·CSV 활동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지자체·공공부문과 협력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 30번으로 이동)

26.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을 위해 협력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협력 부처기관					

27. 귀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CSR·CSV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문항		매우 불족 한다	불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세제 혜택	①	②	③	④	⑤
2	매칭펀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금융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개도국 CSR·CSV 관련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6	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28.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다음 정부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세제 혜택	①	②	③	④	⑤
2	매칭펀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금융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개도국 CSR·CSV 관련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6	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29. 협업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도움이 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답변
1	도움이 된 점	
2	개선이 필요한 점	

30.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1. 귀사가 개도국 CSR·CSV 활동을 정부 ODA와 연계할 경우 단계별 중요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협동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2	협동 사전조사	①	②	③	④	⑤
3	협동 사업수행	①	②	③	④	⑤
4	협동 사업종료 평가	①	②	③	④	⑤

V.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32. 귀사의 현재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수주 경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해외진출을 추진한 적이 없다.
 ②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사업 수주 경험이 없다.
 ③ 해외진출을 추진하였고, 해외사업 수주 경험이 있다.

33. 귀사의 해외진출과 관련 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공행정 ② 교육 ③ 직업훈련 ④ 에너지 ⑤ 농촌개발/지역개발
 ⑥ 보건의료 ⑦ 교통 ⑧ 물/환경 ⑨ 기타()

34. 귀사는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문 35번으로 이동) ② 있다

34-1. 귀사의 해외진출 전담인력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명 ② 2명~5명 미만 ③ 5명~10명 미만 ④ 10명 이상

35. 귀사의 주요 수출대상 권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아시아 ② 중동 ③ 아프리카 ④ 중남미 ⑤ 유럽
 ⑥ CIS(독립국가연합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기타()
 ⑦ 수출경험 없음(→ 문 36번으로 이동)

35-1. 귀사의 주요 수출 국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 35번에서 ⑦ 응답자 제외)

--

36.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정부나 해외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국제기구의 해외사업을 수주한 실적은 몇 건입니까?

- ① 0건 (→문 37번으로 이동) ② 1건 ③ 2건~5건 미만 ④ 5건~10건 미만 ⑤ 10건 이상

36-1.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해외수주 실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6번의 ① 응답자 제외)

수주 연도	수주 사업 명	재원*	진출 국가	수주 금액	중소기업 동반진출 여부
				백만원	① 해당있음 ② 해당없음
				백만원	① 해당있음 ② 해당없음
				백만원	① 해당있음 ② 해당없음
				백만원	① 해당있음 ② 해당없음
				백만원	① 해당있음 ② 해당없음

* 재원은 EDCF, KOICA, MDB, 해외국가기관 혹은 민간 발주, PPP 등

37.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동반 진출 횟수는 몇 건입니까?

- ① 없다(0건) (→문 38번으로 이동) ② 1건 ③ 2건~5건 미만 ④ 5건~10건 미만
 ⑤ 10건 이상

31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37-1. 동반 진출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선별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문 37번의 ① 응답자 제외)

- ① 자체 벤더사 하청 ② 현지 활동 중인 중소기업 ③ 자유 공모
 ④ 정부/공공기관의 추천 ⑤ 기타()

38. 귀사가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자체적인 해외시장 조사 ②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해외진출 정보 수집
 ③ 해외 네트워크(파트너사)를 통한 정보수집 ④ 유용한 해외 정보 소스 활용
 ⑤ 기타()

39. 귀사가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외 기관 및 주요 정보는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명	소관기관	주요 정보

40. 귀사가 해외진출 준비과정에서 겪는 다음의 애로사항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보(법령 및 제도 포함)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국가의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국가의 고객(발주기관)과 네트워크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수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국가 인증 획득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현지 법인 및 지사설립 등 현지화 작업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①	②	③	④	⑤

VI.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만족도

41. 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참여한 적 없다(→문 42번으로 이동) ② 참여한 적 있다

41-1. 귀사는 최근 5년 중 언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2016 ② 2017 ③ 2018 ④ 2019 ⑤ 2020

41-2. 귀사가 참여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입찰준비(시장정보수집, 전문인력 교육, 현지 에이전트 발굴, 인증획득)	①	②	③	④	⑤
2	입찰참여(입찰정보 획득, 벤더등록 및 입찰참여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3	계약 및 협상(수출허가, 수출보험획득, 계약이행 및 납품, 수출대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사후관리(모니터링, 분쟁해결)	①	②	③	④	⑤

41-3. 귀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한 각 사업별로 만족도는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도	참여 사업명	실제 받은 혜택 사항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2. 귀사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행보다 긴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기간	①	②	③	④	⑤
2 현행보다 간편화 된 행정 서류 및 절차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조달시장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①	②	③	④	⑤

43. 귀사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시 정부와의 협업과 관련해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해외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3 국내 중소/중견기업 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	①	②	③	④	⑤
6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21.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설명과 휴대폰 번호가 조사 협력사인 글로벌리서치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고, 성명 및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셔야만 기프트콘이 발송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v 활용 예정 고객정보 내용: 성명, 핸드폰 번호 v 고객정보 활용 업체: 글로벌리서치 v 고객정보 활용 업체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명정빌딩
--

- ① 동의함 ② 동의안함

Z2. 성명	
Z3. 휴대폰 번호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 개도국 CSR 및 CSV 활동 실태 조사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우리 기업의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 실태와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을 완료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통계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9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주)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글로벌리서치(연락처 : 02-3438-1702)	

SQ1. 기업명 ()

SQ2. 기업 설립연도 ()년

SQ3. 기업유형 ① 중소중견기업 ② 벤처스타트업

31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SQ4. 업종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매 및 소매업(유통/프랜차이즈 포함)
④ 운수업 ⑤ 방송/통신/미디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전문서비스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⑩ 문화/예술/스포츠 ⑪ 기타 ()

SQ5. 최근 5년간(2016~2020) 연평균 매출 규모

- ① 10억 미만 ② 10억~50억 미만 ③ 50억~100억 미만
④ 100억~500억 미만 ⑤ 500억 이상

SQ6. 최근 5년간(2016~2020) 전체 매출의 연평균 수출 비중

- ① 0%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 미만 ⑤ 50% 이상

I. 기업의 CSR·CSV 전담 조직

1. 귀사에는 CSR·CSV를 전담하는 조직(부서)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문 4번으로 이동)

2. 귀사의 CSR·CSV 전담 부서명과 인력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부서명 ()

2-2. 인력 규모 ()명

2-3. 전체 인력의 ()%

8.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 해당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7번에서 ①~⑦ 응답한 연도만 작성)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활동 국가					

9.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A형~D형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기타 유형란에 유형을 기재하신 후 활동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SR·CSV 유형	9-1. 과거 (2016-2019)				9-2. 현재 (2020)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1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D형) 유희장비 이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기타)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CSR·CSV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현지 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div> •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현지 전문 인력을 육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div> • (C형) 상생가치 창출형: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예.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

예1. 시험·인증: 미얀마의 시험·인증 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장비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예2. 공공서비스: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 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예3. 제품생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용에어필터 성능평가장비 등을 탄자니아 과학기술원에 이전 및 장비 교육 수행

9-1.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에 사용된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공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3 공공협약형	①	②	③	④	⑤

〈사업발굴 형태〉

- **공공제안형:**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비정기적 공모를 통해 민간주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
- **민간제안형:** 민간주체가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공공협약형:** 공여국 원조기관과 민간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 (컨퍼런스 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13.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5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①	②	③	④	⑤
6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III.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계획

14. 아래 질문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사는 개도국에서 CSR·CSV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사는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의 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어느 국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16.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공공부문(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문 17번으로 이동, 18번 건너뛰기) ② 없다(→문 18번으로 이동)

17.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협력 희망 부처·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18.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공공부문과 협력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정부와의 다음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중요(필요) 하지않다	중요(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필요) 하다	매우 중요(필요) 하다
1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20.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때, NGO(비정부기구)와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20-1. NGO(비정부기구)와 협력 의사가 있는 혹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유형별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A형~D형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기타 유형란에 유형을 기재하신 후 활동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SR-CSV 유형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①	②	③	④	⑤
2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①	②	③	④	⑤
3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①	②	③	④	⑤
4 (D형) 유휴장비 이전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①	②	③	④	⑤

<CSR-CSV 유형>

- (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현지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 (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현지 전문 인력을 육성

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 (C형) 상생가치 창출형:**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예.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

예1. 시험인증: 미얀마의 시험인증 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장비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예2. 공공서비스: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 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예3. 제품생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용에어필터 성능평가장비 등을 탄자니아 과학기술원에 이전 및 장비 교육 수행

32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21-1.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사업발굴 형태별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공공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제안형	①	②	③	④	⑤
3 공공협약형	①	②	③	④	⑤

〈사업발굴 형태〉	
• 공공제안형: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비정기적 공모를 통해 민간주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
• 민간제안형:	민간주체가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공공협약형:	공여국 원조기관과 민간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 (컨퍼런스 와 같은 비공식적인 장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22. 귀사가 향후 개도국에서 CSR·CSV 활동을 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주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높다	매우 관심이 높다
1 공공행정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4 에너지	①	②	③	④	⑤
5 농촌개발	①	②	③	④	⑤
6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7 교통	①	②	③	④	⑤
8 물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의 17가지 과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귀사의 CSR·CSV 활동과 각 과제의 연계 정도를 1점~5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현재에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활동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Q23-1. 과거-현재('16-'20)						Q23-2. 미래('21~)				
	전혀 연계 되지 않음	연계 되지 않음	중간	연계 성이 높음	연계 성이 매우 높음	해당 없음 (활동 없음)	전혀 연계 되지 않음	연계 되지 않음	중간	연계 성이 높음	연계 성이 매우 높음
1 (빈곤) 모든 형태의 가난과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 (식량농업) 국민의 영양 균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 (건강·웰빙)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모두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5 (양성평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6 (물)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수자원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7 (에너지) 에너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8 (일자리·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9 (산업화·혁신) 포용적, 친환경적, 혁신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0 (불평등) 차별 관행, 정책, 법 개선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와 동등한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1 (도시·공간)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 및 교통/서비스 접근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증진과 생산 관리 및 관련 기술/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3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및 개선 노력과 자연재해 회복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4 (해양생태) 해양쓰레기 등 오염 예방과 해양자원생태계 보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5 (육상생태) 산림, 토양, 생물다양성 복원 및 생태계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6 (정의·제도) 폭력, 학대, 부정부패 종식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제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세계 교류 협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증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4. 귀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거(16~19)					현재(20)					미래(21~)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1 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V. 기업의 개도국 CSR·CSV 활동 관련 정부의 역할

25. 귀사가 지난 5년 간 개도국 CSR·CSV 활동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지자체·공공부문과 협력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 30번으로 이동)

26.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서의 CSR·CSV 활동을 위해 협력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협력 부처기관					

27. 귀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CSR·CSV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문항		매우 불족 한다	불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세제 혜택	①	②	③	④	⑤
2	매칭펀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금융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개도국 CSR·CSV 관련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6	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28.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다음 정부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세제 혜택	①	②	③	④	⑤
2	매칭펀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금융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개도국 CSR·CSV 관련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6	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29. 협업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도움이 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답변
1	도움이 된 점	
2	개선이 필요한 점	

30. 귀사의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1. 귀사가 개도국 CSR·CSV 활동을 정부 ODA와 연계할 경우 단계별 중요도를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협동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2 협동 사전조사	①	②	③	④	⑤
3 협동 사업수행	①	②	③	④	⑤
4 협동 사업종료 평가	①	②	③	④	⑤

V.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32. 귀사의 현재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수주 경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수출계획만 가지고 있다. ② 첫 수출이 현재 진행 중이다.
 ③ 첫 수출 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④ 최근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33. 귀사의 해외진출과 관련 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공행정 ② 교육 ③ 직업훈련 ④ 에너지 ⑤ 농촌개발/지역개발
 ⑥ 보건의료 ⑦ 교통 ⑧ 물/환경 ⑨ 기타()

34. 귀사는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문 35번으로 이동) ② 있다

34-1. 귀사의 해외진출 전담인력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명 ② 2명~5명 미만 ③ 5명~10명 미만 ④ 10명 이상

35. 주요 수출제품의 해외인증 획득현황은 어떠하십니까?

- ① 없음 ② 국제인증 1건 ③ 국제인증 2건 이상 ④ 국제인증 1건 이상과 해외 현지인증 1건 이상

36. 귀사의 주요 수출대상 권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아시아 ② 중동 ③ 아프리카 ④ 중남미 ⑤ 유럽
 ⑥ CIS(독립국가연합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기타 ()
 ⑦ 수출경험 없음(→ 문 37번으로 이동)

36-1. 귀사의 주요 수출 국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 36번에서 ⑦ 응답자 제외)

--

37.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정부나 해외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국제기구의 해외사업을 수주한 실적은 몇 건입니까?

- ① 0건 (→문 38번으로 이동) ② 1건 ③ 2건~5건 미만 ④ 5건~10건 미만 ⑤ 10건 이상

37-1. 귀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해외 실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7번의 ① 응답자 제외)

납품/계약 연도	납품/계약 품목	해외바이어 (유통사 or 납품 공공기관명)	납품/계약 국가	계약 금액

37-2. 귀사의 납품시 주요 진출경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39번 질의의 ①번 응답자 제외)

- ① 현지 민간기업(유통사)을 활용한다. ② 국내 대기업의 벤더 등록을 통해 진출한다.
 ③ 해외 기업의 벤더등록을 통해 진출한다. ④ 현지 지사/사무소를 설치한다.
 ⑤ 주계약자로 참여한다. ⑥ 공동계약자로 참여한다.

38. 귀사가 해외진출 준비과정에서 겪는 다음의 애로사항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보(법령 및 제도 포함)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국가의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국가의 고객(발주기관)과 네트워크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수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국가 인증 획득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현지 법인 및 지사설립 등 현지화 작업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①	②	③	④	⑤

VI.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만족도

39. 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참여한 적 없다(→문 40번으로 이동) ② 참여한 적 있다

39-1. 귀사는 최근 5년 중 언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2016 ② 2017 ③ 2018 ④ 2019 ⑤ 2020

39-2. 귀사가 참여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입찰준비(시장정보수집, 전문인력 교육, 현지 에이전트 발굴, 인증획득)	①	②	③	④	⑤
2	입찰참여(입찰정보 획득, 벤더등록 및 입찰참여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3	계약 및 협상(수출허가, 수출보험획득, 계약이행 및 납품, 수출대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사후관리(모니터링, 분쟁해결)	①	②	③	④	⑤

39-3. 귀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한 각 사업별로 만족도는 1점~5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도	참여 사업명	실제 받은 혜택 사항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0. 귀사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행보다 긴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기간	①	②	③	④	⑤
2	현행보다 간편화 된 행정 서류 및 절차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조달시장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①	②	③	④	⑤

41. 귀사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시 정부와의 협업과 관련해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해외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3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	①	②	③	④	⑤
6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33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Z1.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설명과 휴대폰 번호가 조사 협력사인 글로벌리서치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고, 성명 및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셔야만 기프티콘이 발송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용 예정 고객정보 내용: 성명, 핸드폰 번호
√ 고객정보 활용 업체: 글로벌리서치
√ 고객정보 활용 업체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명정빌딩

① 동의함 ② 동의안함

Z2. 성명	
Z3. 휴대폰 번호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설문조사 결과표



1. 공통문항

〈부록 표1〉 CSR·CSV 전담 부서 존재 여부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106)	67.0	33.0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58.5	41.5	100.0
	벤처스타트업	(35)	57.1	42.9	100.0
	대기업	(30)	90.0	10.0	100.0
업력	7년 이하	(25)	40.0	60.0	100.0
	8~10년	(6)	66.7	33.3	100.0
	11~20년	(18)	66.7	33.3	100.0
	21~30년	(23)	69.6	30.4	100.0
	31~50년	(22)	77.3	22.7	100.0
	51년 이상	(12)	100.0	0.0	100.0
업종	제조업	(48)	58.3	41.7	100.0
	건설업	(6)	83.3	16.7	100.0
	도매 및 소매업	(12)	83.3	16.7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85.7	14.3	100.0
	금융/보험업	(2)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64.3	35.7	100.0
	교육서비스업	(5)	40.0	6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00.0	0.0	100.0
기타	(6)	5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70.0	100.0
	10억~50억 미만	(15)	53.3	46.7	100.0
	50억~100억 미만	(19)	78.9	21.1	100.0
	100억~500억 미만	(17)	76.5	23.5	100.0
	500억 이상	(35)	82.9	17.1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00.0	0.0	100.0
	없음	(35)	0.0	100.0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5.0	25.0	100.0
	경험 없음	(38)	52.6	47.4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0.0	40.0	100.0
	없음	(61)	72.1	27.9	100.0

〈부록 표2〉 CSR·CSV 전담 부서 인력 규모

(단위: %)

		사례수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명 이상	평균 (명)
전체		(71)	32.4	26.8	19.7	21.1	16.8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41.7	25.0	16.7	16.7	12.5
	벤처스타트업	(20)	35.0	25.0	25.0	15.0	13.1
	대기업	(27)	22.2	29.6	18.5	29.6	23.5
업력	7년 이하	(10)	50.0	30.0	10.0	10.0	9.4
	8~10년	(4)	100.0	0.0	0.0	0.0	3.3
	11~20년	(12)	8.3	25.0	33.3	33.3	20.8
	21~30년	(16)	31.3	25.0	25.0	18.8	20.1
	31~50년	(17)	23.5	35.3	5.9	35.3	23.1
	51년 이상	(12)	33.3	25.0	33.3	8.3	10.3
	제조업	(28)	39.3	25.0	17.9	17.9	18.6
업종	건설업	(5)	40.0	20.0	20.0	20.0	16.2
	도매 및 소매업	(10)	30.0	30.0	20.0	20.0	12.2
	방송/통신/미디어업	(6)	16.7	33.3	33.3	16.7	16.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50.0	15.0
	전문서비스업	(9)	22.2	33.3	11.1	33.3	17.3
	교육서비스업	(2)	0.0	0.0	100.0	0.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33.3	33.3	0.0	33.3	20.8
	기타	(3)	33.3	33.3	33.3	0.0	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6)	33.3	33.3	33.3	0.0	10.8
	10억~50억 미만	(8)	37.5	37.5	12.5	12.5	13.1
	50억~100억 미만	(15)	13.3	13.3	26.7	46.7	23.1
	100억~500억 미만	(13)	46.2	30.8	15.4	7.7	10.5
	500억 이상	(29)	34.5	27.6	17.2	20.7	18.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32.4	26.8	19.7	21.1	16.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35.3	23.5	21.6	19.6	15.7
	경험 없음	(20)	25.0	35.0	15.0	25.0	19.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0	14.8	29.6	18.5	15.1
	없음	(44)	29.5	34.1	13.6	22.7	17.9

33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 CSR·CSV 전담 부서 인력 규모의 전체 인력 대비 비중

(단위: %)

		사례수	1%	2~3%	4~5%	6~10%	11~20%	21% 이상	평균 (%)
전체		(71)	22.5	16.9	22.5	21.1	11.3	5.6	7.7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12.5	20.8	25.0	25.0	12.5	4.2	7.5
	벤처스타트업	(20)	0.0	5.0	20.0	40.0	20.0	15.0	14.3
	대기업	(27)	48.1	22.2	22.2	3.7	3.7	0.0	2.9
업력	7년 이하	(10)	0.0	20.0	20.0	30.0	20.0	10.0	12.8
	8~10년	(4)	0.0	25.0	0.0	50.0	0.0	25.0	15.0
	11~20년	(12)	0.0	0.0	25.0	41.7	25.0	8.3	12.0
	21~30년	(16)	25.0	18.8	18.8	18.8	12.5	6.3	7.3
	31~50년	(17)	23.5	23.5	41.2	11.8	0.0	0.0	3.9
	51년 이상	(12)	66.7	16.7	8.3	0.0	8.3	0.0	2.6
	제조업	(28)	32.1	10.7	32.1	21.4	0.0	3.6	6.0
업종	건설업	(5)	40.0	40.0	0.0	0.0	20.0	0.0	5.4
	도매 및 소매업	(10)	0.0	20.0	20.0	30.0	30.0	0.0	8.4
	방송/통신/미디어업	(6)	16.7	16.7	16.7	16.7	33.3	0.0	8.8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0.0	0.0	2.5
	전문서비스업	(9)	0.0	33.3	33.3	11.1	11.1	11.1	9.8
	교육서비스업	(2)	0.0	0.0	0.0	50.0	0.0	50.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0.0	50.0	16.7	16.7	13.0
	기타	(3)	66.7	33.3	0.0	0.0	0.0	0.0	1.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6)	0.0	16.7	0.0	33.3	33.3	16.7	18.0
	10억~50억 미만	(8)	0.0	0.0	37.5	50.0	12.5	0.0	8.5
	50억~100억 미만	(15)	0.0	13.3	13.3	20.0	33.3	20.0	14.9
	100억~500억 미만	(13)	0.0	23.1	38.5	38.5	0.0	0.0	6.1
	500억 이상	(29)	55.2	20.7	20.7	3.4	0.0	0.0	2.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2.5	16.9	22.5	21.1	11.3	5.6	7.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23.5	15.7	19.6	23.5	9.8	7.8	8.4
	경험 없음	(20)	20.0	20.0	30.0	15.0	15.0	0.0	6.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14.8	25.9	11.1	18.5	11.1	10.3
	없음	(44)	25.0	18.2	20.5	27.3	6.8	2.3	6.1

〈부록 표4〉 CSR·CSV 전담 부서 인력 규모의 전체 인력 대비 비중

(단위: %)

		사례수	1%	2~3%	4~5%	6~10%	11~20%	21% 이상	평균 (%)
전체		(71)	22.5	16.9	22.5	21.1	11.3	5.6	7.7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12.5	20.8	25.0	25.0	12.5	4.2	7.5
	벤처스타트업	(20)	0.0	5.0	20.0	40.0	20.0	15.0	14.3
	대기업	(27)	48.1	22.2	22.2	3.7	3.7	0.0	2.9
업력	7년 이하	(10)	0.0	20.0	20.0	30.0	20.0	10.0	12.8
	8~10년	(4)	0.0	25.0	0.0	50.0	0.0	25.0	15.0
	11~20년	(12)	0.0	0.0	25.0	41.7	25.0	8.3	12.0
	21~30년	(16)	25.0	18.8	18.8	18.8	12.5	6.3	7.3
	31~50년	(17)	23.5	23.5	41.2	11.8	0.0	0.0	3.9
	51년 이상	(12)	66.7	16.7	8.3	0.0	8.3	0.0	2.6
	제조업	(28)	32.1	10.7	32.1	21.4	0.0	3.6	6.0
업종	건설업	(5)	40.0	40.0	0.0	0.0	20.0	0.0	5.4
	도매 및 소매업	(10)	0.0	20.0	20.0	30.0	30.0	0.0	8.4
	방송/통신/미디어업	(6)	16.7	16.7	16.7	16.7	33.3	0.0	8.8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0.0	0.0	2.5
	전문서비스업	(9)	0.0	33.3	33.3	11.1	11.1	11.1	9.8
	교육서비스업	(2)	0.0	0.0	0.0	50.0	0.0	50.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0.0	50.0	16.7	16.7	13.0
	기타	(3)	66.7	33.3	0.0	0.0	0.0	0.0	1.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6)	0.0	16.7	0.0	33.3	33.3	16.7	18.0
	10억~50억 미만	(8)	0.0	0.0	37.5	50.0	12.5	0.0	8.5
	50억~100억 미만	(15)	0.0	13.3	13.3	20.0	33.3	20.0	14.9
	100억~500억 미만	(13)	0.0	23.1	38.5	38.5	0.0	0.0	6.1
	500억 이상	(29)	55.2	20.7	20.7	3.4	0.0	0.0	2.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2.5	16.9	22.5	21.1	11.3	5.6	7.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23.5	15.7	19.6	23.5	9.8	7.8	8.4
	경험 없음	(20)	20.0	20.0	30.0	15.0	15.0	0.0	6.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14.8	25.9	11.1	18.5	11.1	10.3
	없음	(44)	25.0	18.2	20.5	27.3	6.8	2.3	6.1

34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 CSR·CSV 전담 부서 평가_인력 규모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71)	4.2	22.5	43.7	29.6	0.0	26.8	29.6	2.99	49.6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0.0	33.3	37.5	29.2	0.0	33.3	29.2	2.96	49.0
	벤처스타트업	(20)	0.0	15.0	40.0	45.0	0.0	15.0	45.0	3.30	57.5
	대기업	(27)	11.1	18.5	51.9	18.5	0.0	29.6	18.5	2.78	44.4
업력	7년 이하	(10)	0.0	10.0	40.0	50.0	0.0	10.0	50.0	3.40	60.0
	8~10년	(4)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11~20년	(12)	0.0	25.0	33.3	41.7	0.0	25.0	41.7	3.17	54.2
	21~30년	(16)	0.0	31.3	31.3	37.5	0.0	31.3	37.5	3.06	51.6
	31~50년	(17)	5.9	17.6	58.8	17.6	0.0	23.5	17.6	2.88	47.1
	51년 이상	(12)	16.7	16.7	50.0	16.7	0.0	33.3	16.7	2.67	41.7
업종	제조업	(28)	7.1	21.4	42.9	28.6	0.0	28.6	28.6	2.93	48.2
	건설업	(5)	0.0	20.0	60.0	20.0	0.0	20.0	2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0)	0.0	10.0	30.0	60.0	0.0	10.0	60.0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6)	0.0	33.3	50.0	16.7	0.0	33.3	16.7	2.83	45.8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9)	0.0	33.3	55.6	11.1	0.0	33.3	11.1	2.78	44.4
	교육서비스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33.3	16.7	50.0	0.0	33.3	50.0	3.17	54.2
	기타	(3)	33.3	33.3	33.3	0.0	0.0	66.7	0.0	2.00	25.0
	10억 미만	(6)	0.0	16.7	50.0	33.3	0.0	16.7	33.3	3.17	54.2
	10억~50억 미만	(8)	0.0	37.5	37.5	25.0	0.0	37.5	25.0	2.88	46.9
	50억~100억 미만	(15)	0.0	20.0	26.7	53.3	0.0	20.0	53.3	3.33	58.3
100억~500억 미만	(13)	0.0	30.8	30.8	38.5	0.0	30.8	38.5	3.08	51.9	
500억 이상	(29)	10.3	17.2	58.6	13.8	0.0	27.6	13.8	2.76	44.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22.5	43.7	29.6	0.0	26.8	29.6	2.99	49.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5.9	15.7	41.2	37.3	0.0	21.6	37.3	3.10	52.5
	경험 없음	(20)	0.0	40.0	50.0	10.0	0.0	40.0	10.0	2.70	42.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	22.2	44.4	29.6	0.0	25.9	29.6	3.00	50.0
	없음	(44)	4.5	22.7	43.2	29.5	0.0	27.3	29.5	2.98	49.4

〈부록 표6〉 CSR·CSV 전담 부서 평가_인력의 전반적 역량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71)	1.4	7.0	33.8	45.1	12.7	8.5	57.7	3.61	65.1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0.0	12.5	45.8	25.0	16.7	12.5	41.7	3.46	61.5
	벤처스타트업	(20)	0.0	0.0	30.0	50.0	20.0	0.0	70.0	3.90	72.5
	대기업	(27)	3.7	7.4	25.9	59.3	3.7	11.1	63.0	3.52	63.0
업력	7년 이하	(10)	0.0	0.0	30.0	40.0	30.0	0.0	70.0	4.00	75.0
	8~10년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11~20년	(12)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21~30년	(16)	0.0	0.0	56.3	37.5	6.3	0.0	43.8	3.50	62.5
	31~50년	(17)	5.9	11.8	29.4	52.9	0.0	17.6	52.9	3.29	57.4
	51년 이상	(12)	0.0	8.3	8.3	75.0	8.3	8.3	83.3	3.83	70.8
업종	제조업	(28)	0.0	14.3	28.6	50.0	7.1	14.3	57.1	3.50	62.5
	건설업	(5)	0.0	0.0	60.0	40.0	0.0	0.0	40.0	3.40	60.0
	도매 및 소매업	(10)	0.0	0.0	30.0	40.0	30.0	0.0	70.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6)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9)	11.1	0.0	33.3	44.4	11.1	11.1	55.6	3.44	61.1
	교육서비스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0.0	33.3	16.7	33.3	3.50	62.5
	기타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10억 미만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0억~50억 미만	(8)	12.5	0.0	37.5	25.0	25.0	12.5	50.0	3.50	62.5
	50억~100억 미만	(15)	0.0	6.7	33.3	46.7	13.3	6.7	60.0	3.67	66.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100억~500억 미만	(13)	0.0	0.0	30.8	53.8	15.4	0.0	69.2	3.85	71.2
	500억 이상	(29)	0.0	13.8	34.5	44.8	6.9	13.8	51.7	3.45	61.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있음	(71)	1.4	7.0	33.8	45.1	12.7	8.5	57.7	3.61	65.1
	경험 있음	(51)	0.0	3.9	33.3	47.1	15.7	3.9	62.7	3.75	6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20)	5.0	15.0	35.0	40.0	5.0	20.0	45.0	3.25	56.3
	있음	(27)	3.7	11.1	44.4	33.3	7.4	14.8	40.7	3.30	57.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없음	(44)	0.0	4.5	27.3	52.3	15.9	4.5	68.2	3.80	69.9

34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 CSR·CSV 전담 부서 평가_CSR·CSV에 대한 조직의 관심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71)	1.4	7.0	39.4	32.4	19.7	8.5	52.1	3.62	65.5
기업유형	중소중견	(24)	0.0	12.5	25.0	45.8	16.7	12.5	62.5	3.67	66.7
	벤처스타트업	(20)	0.0	0.0	45.0	25.0	30.0	0.0	55.0	3.85	71.3
	대기업	(27)	3.7	7.4	48.1	25.9	14.8	11.1	40.7	3.41	60.2
업력	7년 이하	(10)	0.0	0.0	30.0	50.0	20.0	0.0	70.0	3.90	72.5
	8~10년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11~20년	(12)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21~30년	(16)	0.0	12.5	43.8	18.8	25.0	12.5	43.8	3.56	64.1
	31~50년	(17)	5.9	5.9	47.1	35.3	5.9	11.8	41.2	3.29	57.4
	51년 이상	(12)	0.0	16.7	25.0	33.3	25.0	16.7	58.3	3.67	66.7
업종	제조업	(28)	3.6	3.6	39.3	28.6	25.0	7.1	53.6	3.68	67.0
	건설업	(5)	0.0	20.0	20.0	60.0	0.0	20.0	60.0	3.40	60.0
	도매 및 소매업	(10)	0.0	0.0	30.0	60.0	10.0	0.0	70.0	3.80	70.0
	방송/통신/미디어업	(6)	0.0	16.7	50.0	33.3	0.0	16.7	33.3	3.17	54.2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9)	0.0	11.1	44.4	33.3	11.1	11.1	44.4	3.44	61.1
	교육서비스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0.0	50.0	16.7	50.0	3.83	70.8
기타	(3)	0.0	0.0	66.7	0.0	33.3	0.0	33.3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6)	0.0	33.3	16.7	16.7	33.3	33.3	50.0	3.50	62.5
	10억~50억 미만	(8)	0.0	12.5	37.5	37.5	12.5	12.5	50.0	3.50	62.5
	50억~100억 미만	(15)	0.0	0.0	40.0	26.7	33.3	0.0	60.0	3.93	73.3
	100억~500억 미만	(13)	0.0	7.7	38.5	46.2	7.7	7.7	53.8	3.54	63.5
	500억 이상	(29)	3.4	3.4	44.8	31.0	17.2	6.9	48.3	3.55	63.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7.0	39.4	32.4	19.7	8.5	52.1	3.62	65.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0.0	2.0	41.2	31.4	25.5	2.0	56.9	3.80	70.1
	경험 없음	(20)	5.0	20.0	35.0	35.0	5.0	25.0	40.0	3.15	53.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	3.7	55.6	11.1	25.9	7.4	37.0	3.52	63.0
	없음	(44)	0.0	9.1	29.5	45.5	15.9	9.1	61.4	3.68	67.0

〈부록 표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단위: %)

		사례수	활동 경험 있다	활동 경험 없다	계
전체		(106)	64.2	35.8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56.1	43.9	100.0
	벤처스타트업	(35)	80.0	20.0	100.0
	대기업	(30)	56.7	43.3	100.0
업력	7년 이하	(25)	72.0	28.0	100.0
	8~10년	(6)	83.3	16.7	100.0
	11~20년	(18)	55.6	44.4	100.0
	21~30년	(23)	60.9	39.1	100.0
	31~50년	(22)	63.6	36.4	100.0
	51년 이상	(12)	58.3	41.7	100.0
	업종	제조업	(48)	62.5	37.5
	건설업	(6)	50.0	50.0	100.0
	도매 및 소매업	(12)	75.0	25.0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57.1	42.9	100.0
	금융/보험업	(2)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64.3	35.7	100.0
	교육서비스업	(5)	60.0	4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66.7	33.3	100.0
	기타	(6)	66.7	33.3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60.0	40.0	100.0
	10억~50억 미만	(15)	53.3	46.7	100.0
	50억~100억 미만	(19)	78.9	21.1	100.0
	100억~500억 미만	(17)	70.6	29.4	100.0
	500억 이상	(35)	60.0	4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1.8	28.2	100.0
	없음	(35)	48.6	51.4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0.0	0.0	100.0
	경험 없음	(38)	0.0	100.0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0.0	40.0	100.0
	없음	(61)	67.2	32.8	100.0

34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는 이유_복수응답

(단위: %)

		사례수	필요성이 없었다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조직, 인력, 예산이 없었다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개도국에서 CSR·CSV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기타
전체		(38)	21.1	63.2	26.3	5.3
기업유형	중소중견	(18)	16.7	66.7	22.2	5.6
	벤처스타트업	(7)	14.3	57.1	28.6	14.3
	대기업	(13)	30.8	61.5	30.8	0.0
업력	7년 이하	(7)	14.3	42.9	28.6	28.6
	8~10년	(1)	0.0	0.0	100.0	0.0
	11~20년	(8)	50.0	50.0	25.0	0.0
	21~30년	(9)	33.3	66.7	22.2	0.0
	31~50년	(8)	0.0	75.0	25.0	0.0
	51년 이상	(5)	0.0	100.0	20.0	0.0
	기타	(2)	50.0	0.0	0.0	50.0
업종	제조업	(18)	16.7	72.2	27.8	5.6
	건설업	(3)	0.0	66.7	33.3	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33.3	33.3	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33.3	66.7	0.0	0.0
	전문서비스업	(5)	0.0	80.0	20.0	0.0
	교육서비스업	(2)	50.0	50.0	5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50.0	50.0	50.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8)	12.5	62.5	0.0	25.0
	10억~50억 미만	(7)	28.6	42.9	28.6	0.0
	50억~100억 미만	(4)	0.0	75.0	75.0	0.0
	100억~500억 미만	(5)	20.0	60.0	20.0	0.0
	500억 이상	(14)	28.6	71.4	28.6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0)	30.0	55.0	25.0	0.0
	없음	(18)	11.1	72.2	27.8	11.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없음	(38)	21.1	63.2	26.3	5.3
	경험 있음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8)	22.2	61.1	27.8	5.6
	없음	(20)	20.0	65.0	25.0	5.0

〈부록 표10〉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계획

(단위: %)

		사례수	계획이 없다	계획하고 있다	계
전체		(38)	36.8	63.2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18)	33.3	66.7	100.0
	벤처스타트업	(7)	14.3	85.7	100.0
	대기업	(13)	53.8	46.2	100.0
업력	7년 이하	(7)	0.0	100.0	100.0
	8~10년	(1)	0.0	100.0	100.0
	11~20년	(8)	75.0	25.0	100.0
	21~30년	(9)	55.6	44.4	100.0
	31~50년	(8)	25.0	75.0	100.0
	51년 이상	(5)	20.0	80.0	100.0
업종	제조업	(18)	38.9	61.1	100.0
	건설업	(3)	33.3	66.7	100.0
	도매 및 소매업	(3)	0.0	100.0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33.3	66.7	100.0
	전문서비스업	(5)	40.0	60.0	100.0
	교육서비스업	(2)	10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10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8)	25.0	75.0	100.0
	10억~50억 미만	(7)	28.6	71.4	100.0
	50억~100억 미만	(4)	25.0	75.0	100.0
	100억~500억 미만	(5)	40.0	60.0	100.0
	500억 이상	(14)	50.0	5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0)	30.0	70.0	100.0
	없음	(18)	44.4	55.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없음	(38)	36.8	63.2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8)	50.0	50.0	100.0
	없음	(20)	25.0	75.0	100.0

34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 매출액 대비 CSR·CSV 활동 규모_2016년

(단위: %)

		사례수	0.02% 미만	0.02% ~ 0.05% 미만	0.05% ~ 0.1% 미만	0.1% ~ 0.5% 미만	0.5% ~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CSR·CSV 활동 없음
전체		(68)	20.6	2.9	4.4	7.4	19.1	11.8	11.8	22.1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3.0	4.3	0.0	13.0	26.1	8.7	8.7	26.1
	벤처스타트업	(28)	3.6	3.6	10.7	7.1	7.1	17.9	17.9	32.1
	대기업	(17)	58.8	0.0	0.0	0.0	29.4	5.9	5.9	0.0
업력	7년 이하	(18)	11.1	0.0	11.1	0.0	5.6	5.6	27.8	38.9
	8~10년	(5)	20.0	0.0	0.0	20.0	0.0	0.0	0.0	60.0
	11~20년	(10)	0.0	0.0	0.0	0.0	50.0	20.0	10.0	20.0
	21~30년	(14)	14.3	14.3	7.1	14.3	21.4	14.3	0.0	14.3
	31~50년	(14)	28.6	0.0	0.0	14.3	21.4	21.4	7.1	7.1
	51년 이상	(7)	71.4	0.0	0.0	0.0	14.3	0.0	14.3	0.0
업종	제조업	(30)	23.3	3.3	3.3	3.3	13.3	13.3	16.7	23.3
	건설업	(3)	33.3	0.0	0.0	0.0	33.3	0.0	0.0	33.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11.1	33.3	11.1	11.1	22.2	11.1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0.0	25.0	25.0	0.0	25.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50.0	0.0	0.0	0.0
	전문서비스업	(9)	11.1	11.1	0.0	0.0	33.3	0.0	0.0	44.4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0.0	0.0	66.7	33.3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25.0	50.0	0.0	0.0	0.0
기타	(4)	75.0	0.0	0.0	0.0	0.0	0.0	0.0	2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8.3	0.0	8.3	0.0	8.3	0.0	33.3	41.7
	10억~50억 미만	(8)	0.0	12.5	12.5	0.0	0.0	12.5	12.5	50.0
	50억~100억 미만	(15)	6.7	0.0	0.0	20.0	26.7	26.7	6.7	13.3
	100억~500억 미만	(12)	16.7	0.0	8.3	0.0	25.0	16.7	8.3	25.0
	500억 이상	(21)	47.6	4.8	0.0	9.5	23.8	4.8	4.8	4.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3.5	2.0	5.9	9.8	23.5	15.7	9.8	9.8
	없음	(17)	11.8	5.9	0.0	0.0	5.9	0.0	17.6	58.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0.6	2.9	4.4	7.4	19.1	11.8	11.8	22.1
	경험 없음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4.8	3.7	3.7	7.4	25.9	18.5	14.8	11.1
	없음	(41)	24.4	2.4	4.9	7.3	14.6	7.3	9.8	29.3

〈부록 표12〉 매출액 대비 CSR·CSV 활동 규모_2017년

(단위: %)

		사례수	0.02% 미만	0.02% ~ 0.05% 미만	0.05% ~ 0.1% 미만	0.1%~ 0.5% 미만	0.5% ~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CSR·CSV 활동 없음
전체		(68)	16.2	4.4	7.4	11.8	5.9	23.5	13.2	17.6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4.3	8.7	4.3	13.0	13.0	34.8	0.0	21.7
	벤처스타트업	(28)	3.6	0.0	14.3	17.9	3.6	10.7	25.0	25.0
	대기업	(17)	52.9	5.9	0.0	0.0	0.0	29.4	11.8	0.0
업력	7년 이하	(18)	11.1	0.0	5.6	11.1	0.0	11.1	27.8	33.3
	8~10년	(5)	0.0	20.0	20.0	20.0	0.0	0.0	0.0	40.0
	11~20년	(10)	0.0	0.0	10.0	0.0	20.0	50.0	10.0	10.0
	21~30년	(14)	14.3	7.1	7.1	14.3	7.1	28.6	7.1	14.3
	31~50년	(14)	21.4	0.0	7.1	21.4	7.1	28.6	7.1	7.1
	51년 이상	(7)	57.1	14.3	0.0	0.0	0.0	14.3	14.3	0.0
업종	제조업	(30)	16.7	6.7	6.7	13.3	10.0	16.7	16.7	13.3
	건설업	(3)	33.3	0.0	0.0	0.0	0.0	33.3	0.0	33.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33.3	0.0	44.4	11.1	11.1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0.0	25.0	25.0	0.0	25.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0.0	50.0	0.0	0.0
	전문서비스업	(9)	0.0	11.1	11.1	0.0	0.0	22.2	11.1	44.4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0.0	0.0	0.0	66.7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25.0	0.0	50.0	0.0	0.0
기타	(4)	75.0	0.0	0.0	0.0	0.0	0.0	0.0	2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8.3	0.0	8.3	8.3	0.0	8.3	33.3	33.3
	10억~50억 미만	(8)	0.0	0.0	37.5	12.5	0.0	12.5	0.0	37.5
	50억~100억 미만	(15)	0.0	6.7	0.0	13.3	13.3	33.3	20.0	13.3
	100억~500억 미만	(12)	8.3	0.0	8.3	8.3	16.7	33.3	8.3	16.7
	500억 이상	(21)	42.9	9.5	0.0	14.3	0.0	23.8	4.8	4.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7.6	3.9	9.8	11.8	5.9	31.4	11.8	7.8
	없음	(17)	11.8	5.9	0.0	11.8	5.9	0.0	17.6	47.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6.2	4.4	7.4	11.8	5.9	23.5	13.2	17.6
	경험 없음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1.1	7.4	7.4	7.4	7.4	22.2	25.9	11.1
	없음	(41)	19.5	2.4	7.3	14.6	4.9	24.4	4.9	22.0

34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 매출액 대비 CSR·CSV 활동 규모_2018년

(단위: %)

		사례수	0.02% 미만	0.02% ~ 0.05% 미만	0.05% ~ 0.1% 미만	0.1% ~ 0.5% 미만	0.5% ~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CSR·CSV 활동 없음
전체		(68)	11.8	7.4	4.4	8.8	27.9	11.8	14.7	13.2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8.7	8.7	8.7	34.8	17.4	8.7	13.0
	벤처스타트업	(28)	0.0	3.6	3.6	14.3	25.0	10.7	21.4	21.4
	대기업	(17)	47.1	11.8	0.0	0.0	23.5	5.9	11.8	0.0
업력	7년 이하	(18)	0.0	11.1	0.0	16.7	11.1	11.1	22.2	27.8
	8~10년	(5)	0.0	20.0	0.0	0.0	40.0	20.0	0.0	20.0
	11~20년	(10)	0.0	0.0	0.0	10.0	30.0	30.0	20.0	10.0
	21~30년	(14)	7.1	7.1	14.3	7.1	35.7	7.1	7.1	14.3
	31~50년	(14)	21.4	0.0	7.1	7.1	50.0	7.1	7.1	0.0
	51년 이상	(7)	57.1	14.3	0.0	0.0	0.0	0.0	28.6	0.0
업종	제조업	(30)	10.0	10.0	6.7	3.3	30.0	16.7	16.7	6.7
	건설업	(3)	33.3	0.0	0.0	0.0	33.3	0.0	0.0	33.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11.1	66.7	0.0	11.1	11.1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0.0	50.0	0.0	0.0	25.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0.0	0.0	50.0	0.0
	전문서비스업	(9)	0.0	11.1	11.1	11.1	11.1	22.2	0.0	33.3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33.3	0.0	0.0	66.7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0.0	50.0	0.0	25.0	25.0	0.0
기타	(4)	50.0	25.0	0.0	0.0	0.0	0.0	0.0	2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8.3	0.0	16.7	8.3	8.3	33.3	25.0
	10억~50억 미만	(8)	0.0	0.0	12.5	25.0	25.0	0.0	0.0	37.5
	50억~100억 미만	(15)	0.0	6.7	0.0	0.0	40.0	13.3	26.7	13.3
	100억~500억 미만	(12)	0.0	8.3	8.3	0.0	41.7	33.3	0.0	8.3
	500억 이상	(21)	38.1	9.5	4.8	9.5	23.8	4.8	9.5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5.7	5.9	3.9	9.8	33.3	13.7	13.7	3.9
	없음	(17)	0.0	11.8	5.9	5.9	11.8	5.9	17.6	41.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1.8	7.4	4.4	8.8	27.9	11.8	14.7	13.2
	경험 없음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1.1	3.7	3.7	11.1	29.6	11.1	22.2	7.4
	없음	(41)	12.2	9.8	4.9	7.3	26.8	12.2	9.8	17.1

〈부록 표14〉 매출액 대비 CSR·CSV 활동 규모_2019년

(단위: %)

		사례수	0.02% 미만	0.02% ~ 0.05% 미만	0.05% ~ 0.1% 미만	0.1% ~ 0.5% 미만	0.5% ~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CSR·CSV 활동 없음
전체		(68)	14.7	5.9	4.4	11.8	14.7	20.6	25.0	2.9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8.7	4.3	13.0	13.0	13.0	21.7	21.7	4.3
	벤처스타트업	(28)	0.0	3.6	0.0	14.3	21.4	25.0	32.1	3.6
	대기업	(17)	47.1	11.8	0.0	5.9	5.9	11.8	17.6	0.0
업력	7년 이하	(18)	0.0	5.6	5.6	11.1	11.1	11.1	50.0	5.6
	8~10년	(5)	0.0	20.0	0.0	0.0	20.0	40.0	20.0	0.0
	11~20년	(10)	10.0	0.0	0.0	0.0	20.0	20.0	40.0	10.0
	21~30년	(14)	14.3	7.1	7.1	14.3	7.1	42.9	7.1	0.0
	31~50년	(14)	21.4	0.0	7.1	28.6	28.6	14.3	0.0	0.0
	51년 이상	(7)	57.1	14.3	0.0	0.0	0.0	0.0	28.6	0.0
업종	제조업	(30)	10.0	10.0	6.7	13.3	10.0	26.7	20.0	3.3
	건설업	(3)	66.7	0.0	0.0	0.0	0.0	33.3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0.0	33.3	22.2	33.3	11.1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0.0	50.0	0.0	25.0	0.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0.0	0.0	50.0	0.0
	전문서비스업	(9)	11.1	11.1	0.0	22.2	22.2	11.1	22.2	0.0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0.0	0.0	66.7	33.3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0.0	50.0	0.0	0.0	50.0	0.0
기타	(4)	50.0	0.0	25.0	0.0	0.0	0.0	25.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8.3	0.0	16.7	0.0	16.7	50.0	8.3
	10억~50억 미만	(8)	0.0	0.0	0.0	12.5	25.0	25.0	37.5	0.0
	50억~100억 미만	(15)	6.7	6.7	0.0	6.7	26.7	20.0	26.7	6.7
	100억~500억 미만	(12)	8.3	0.0	16.7	16.7	0.0	41.7	16.7	0.0
	500억 이상	(21)	38.1	9.5	4.8	9.5	19.0	9.5	9.5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7.6	5.9	2.0	11.8	19.6	23.5	17.6	2.0
	없음	(17)	5.9	5.9	11.8	11.8	0.0	11.8	47.1	5.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4.7	5.9	4.4	11.8	14.7	20.6	25.0	2.9
	경험 없음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1.1	3.7	3.7	11.1	14.8	22.2	33.3	0.0
	없음	(41)	17.1	7.3	4.9	12.2	14.6	19.5	19.5	4.9

35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 매출액 대비 CSR·CSV 활동 규모_2020년

(단위: %)

		사례수	0.02% 미만	0.02% ~ 0.05% 미만	0.05% ~ 0.1% 미만	0.1% ~ 0.5% 미만	0.5% ~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CSR·CSV 활동 없음
전체		(68)	17.6	1.5	7.4	10.3	13.2	19.1	29.4	1.5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8.7	4.3	13.0	13.0	17.4	21.7	21.7	0.0
	벤처스타트업	(28)	3.6	0.0	3.6	10.7	14.3	21.4	42.9	3.6
	대기업	(17)	52.9	0.0	5.9	5.9	5.9	11.8	17.6	0.0
업력	7년 이하	(18)	5.6	0.0	11.1	11.1	5.6	22.2	38.9	5.6
	8~10년	(5)	0.0	20.0	0.0	0.0	20.0	0.0	60.0	0.0
	11~20년	(10)	10.0	0.0	0.0	0.0	30.0	20.0	40.0	0.0
	21~30년	(14)	14.3	0.0	7.1	21.4	7.1	42.9	7.1	0.0
	31~50년	(14)	21.4	0.0	14.3	14.3	21.4	7.1	21.4	0.0
	51년 이상	(7)	71.4	0.0	0.0	0.0	0.0	0.0	28.6	0.0
업종	제조업	(30)	13.3	0.0	13.3	13.3	10.0	13.3	36.7	0.0
	건설업	(3)	66.7	0.0	0.0	0.0	0.0	0.0	33.3	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11.1	33.3	33.3	22.2	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0.0	0.0	50.0	0.0	25.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0.0	0.0	50.0	0.0
	전문서비스업	(9)	11.1	11.1	0.0	11.1	33.3	22.2	11.1	0.0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0.0	0.0	33.3	66.7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0.0	0.0	25.0	0.0	25.0	25.0	0.0
기타	(4)	50.0	0.0	25.0	0.0	0.0	0.0	25.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8.3	0.0	8.3	8.3	16.7	0.0	50.0	8.3
	10억~50억 미만	(8)	0.0	0.0	0.0	12.5	0.0	37.5	50.0	0.0
	50억~100억 미만	(15)	6.7	6.7	6.7	6.7	26.7	26.7	20.0	0.0
	100억~500억 미만	(12)	8.3	0.0	16.7	8.3	8.3	25.0	33.3	0.0
	500억 이상	(21)	42.9	0.0	4.8	14.3	9.5	14.3	14.3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1.6	2.0	5.9	7.8	13.7	25.5	23.5	0.0
	없음	(17)	5.9	0.0	11.8	17.6	11.8	0.0	47.1	5.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1.5	7.4	10.3	13.2	19.1	29.4	1.5
	경험 없음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4.8	3.7	0.0	11.1	14.8	25.9	25.9	3.7
	없음	(41)	19.5	0.0	12.2	9.8	12.2	14.6	31.7	0.0

〈부록 표1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과거_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5.0	19.1	41.2	14.7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3.0	39.1	34.8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28.6	7.1	50.0	14.3	100.0
	대기업	(17)	35.3	11.8	35.3	17.6	100.0
업력	7년 이하	(18)	22.2	5.6	61.1	11.1	100.0
	8~10년	(5)	40.0	20.0	40.0	0.0	100.0
	11~20년	(10)	20.0	30.0	40.0	10.0	100.0
	21~30년	(14)	7.1	21.4	50.0	21.4	100.0
	31~50년	(14)	35.7	21.4	21.4	21.4	100.0
	51년 이상	(7)	42.9	28.6	14.3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26.7	26.7	30.0	16.7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66.7	33.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75.0	25.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22.2	22.2	44.4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75.0	25.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25.0	0.0	66.7	8.3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12.5	37.5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26.7	46.7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33.3	16.7	25.0	100.0
	500억 이상	(21)	28.6	19.0	38.1	14.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1.6	19.6	39.2	19.6	100.0
	없음	(17)	35.3	17.6	47.1	0.0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5.0	19.1	41.2	14.7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5.9	14.8	48.1	11.1	100.0
	없음	(41)	24.4	22.0	36.6	17.1	100.0

35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과거_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0.9	16.2	32.4	20.6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0.4	21.7	34.8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42.9	10.7	25.0	21.4	100.0
	대기업	(17)	11.8	17.6	41.2	29.4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5.6	33.3	5.6	100.0
	8~10년	(5)	40.0	40.0	20.0	0.0	100.0
	11~20년	(10)	20.0	20.0	40.0	20.0	100.0
	21~30년	(14)	21.4	14.3	42.9	21.4	100.0
	31~50년	(14)	14.3	21.4	14.3	50.0	100.0
	51년 이상	(7)	28.6	14.3	42.9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33.3	20.0	20.0	26.7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22.2	55.6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50.0	25.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33.3	22.2	33.3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33.3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0.0	75.0	0.0	100.0
기타	(4)	50.0	0.0	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75.0	0.0	25.0	0.0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37.5	25.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20.0	13.3	46.7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16.7	25.0	33.3	100.0
	500억 이상	(21)	23.8	19.0	33.3	23.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7.6	21.6	35.3	25.5	100.0
	없음	(17)	70.6	0.0	23.5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0.9	16.2	32.4	20.6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3.3	11.1	37.0	18.5	100.0
	없음	(41)	29.3	19.5	29.3	22.0	100.0

〈부록 표1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과거_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17.6	23.5	42.6	16.2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3.0	30.4	52.2	4.3	100.0
	벤처스타트업	(28)	25.0	10.7	39.3	25.0	100.0
	대기업	(17)	11.8	35.3	35.3	17.6	100.0
업력	7년 이하	(18)	27.8	16.7	44.4	11.1	100.0
	8~10년	(5)	0.0	40.0	60.0	0.0	100.0
	11~20년	(10)	20.0	20.0	30.0	30.0	100.0
	21~30년	(14)	14.3	21.4	50.0	14.3	100.0
	31~50년	(14)	21.4	21.4	35.7	21.4	100.0
	51년 이상	(7)	0.0	42.9	42.9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26.7	26.7	36.7	10.0	100.0
	건설업	(3)	0.0	33.3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11.1	44.4	44.4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50.0	25.0	100.0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0.0	33.3	44.4	22.2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25.0	25.0	25.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33.3	8.3	50.0	8.3	100.0
	10억~50억 미만	(8)	25.0	12.5	50.0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6.7	20.0	40.0	3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0.0	50.0	33.3	16.7	100.0
	500억 이상	(21)	23.8	23.8	42.9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3.7	25.5	39.2	21.6	100.0
	없음	(17)	29.4	17.6	52.9	0.0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23.5	42.6	16.2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18.5	44.4	18.5	100.0
	없음	(41)	17.1	26.8	41.5	14.6	100.0

35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과거_D형 유희장비 이전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9.7	17.6	29.4	13.2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0.4	21.7	26.1	21.7	100.0
	벤처스타트업	(28)	53.6	14.3	28.6	3.6	100.0
	대기업	(17)	29.4	17.6	35.3	17.6	100.0
업력	7년 이하	(18)	61.1	5.6	27.8	5.6	100.0
	8~10년	(5)	40.0	60.0	0.0	0.0	100.0
	11~20년	(10)	30.0	20.0	30.0	20.0	100.0
	21~30년	(14)	28.6	7.1	57.1	7.1	100.0
	31~50년	(14)	28.6	21.4	14.3	35.7	100.0
	51년 이상	(7)	42.9	28.6	28.6	0.0	100.0
업종	제조업	(30)	43.3	20.0	26.7	10.0	100.0
	건설업	(3)	33.3	0.0	33.3	33.3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22.2	44.4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0.0	25.0	25.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22.2	22.2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66.7	33.3	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0.0	75.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50.0	25.0	0.0	25.0	100.0
	10억 미만	(12)	75.0	0.0	25.0	0.0	100.0
	10억~50억 미만	(8)	25.0	50.0	25.0	0.0	100.0
	50억~100억 미만	(15)	33.3	13.3	26.7	2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25.0	41.7	8.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38.1	14.3	28.6	19.0	100.0
	있음	(51)	27.5	21.6	35.3	15.7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76.5	5.9	11.8	5.9	100.0
	경험 있음	(68)	39.7	17.6	29.4	13.2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40.7	18.5	22.2	18.5	100.0
	없음	(41)	39.0	17.1	34.1	9.8	100.0

〈부록 표2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현재_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6.5	27.9	35.3	10.3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3.0	34.8	47.8	4.3	100.0
	벤처스타트업	(28)	25.0	28.6	32.1	14.3	100.0
	대기업	(17)	47.1	17.6	23.5	11.8	100.0
업력	7년 이하	(18)	33.3	27.8	22.2	16.7	100.0
	8~10년	(5)	20.0	40.0	40.0	0.0	100.0
	11~20년	(10)	20.0	40.0	30.0	10.0	100.0
	21~30년	(14)	21.4	7.1	57.1	14.3	100.0
	31~50년	(14)	21.4	35.7	42.9	0.0	100.0
	51년 이상	(7)	42.9	28.6	14.3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16.7	26.7	46.7	10.0	100.0
	건설업	(3)	66.7	0.0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33.3	55.6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50.0	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22.2	22.2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0.0	66.7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75.0	0.0	0.0	100.0
기타	(4)	50.0	25.0	25.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33.3	16.7	25.0	25.0	100.0
	10억~50억 미만	(8)	25.0	25.0	25.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46.7	33.3	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25.0	50.0	0.0	100.0
	500억 이상	(21)	33.3	23.8	38.1	4.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1.6	29.4	39.2	9.8	100.0
	없음	(17)	41.2	23.5	23.5	11.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6.5	27.9	35.3	10.3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9.6	14.8	40.7	14.8	100.0
	없음	(41)	24.4	36.6	31.7	7.3	100.0

35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현재_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3.8	25.0	35.3	5.9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9.1	8.7	52.2	0.0	100.0
	벤처스타트업	(28)	39.3	25.0	25.0	10.7	100.0
	대기업	(17)	17.6	47.1	29.4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44.4	22.2	16.7	16.7	100.0
	8~10년	(5)	40.0	0.0	60.0	0.0	100.0
	11~20년	(10)	20.0	30.0	50.0	0.0	100.0
	21~30년	(14)	50.0	7.1	42.9	0.0	100.0
	31~50년	(14)	14.3	42.9	42.9	0.0	100.0
	51년 이상	(7)	28.6	42.9	14.3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30.0	20.0	46.7	3.3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22.2	44.4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50.0	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33.3	22.2	33.3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66.7	33.3	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50.0	25.0	0.0	100.0
기타	(4)	50.0	25.0	0.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66.7	25.0	8.3	0.0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12.5	37.5	37.5	100.0
	50억~100억 미만	(15)	33.3	20.0	46.7	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16.7	58.3	0.0	100.0
	500억 이상	(21)	28.6	38.1	28.6	4.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3.5	27.5	43.1	5.9	100.0
	없음	(17)	64.7	17.6	11.8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3.8	25.0	35.3	5.9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44.4	25.9	29.6	0.0	100.0
	없음	(41)	26.8	24.4	39.0	9.8	100.0

〈부록 표2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현재_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3.5	36.8	23.5	16.2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1.7	43.5	17.4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25.0	28.6	28.6	17.9	100.0
	대기업	(17)	23.5	41.2	23.5	11.8	100.0
업력	7년 이하	(18)	27.8	33.3	22.2	16.7	100.0
	8~10년	(5)	0.0	60.0	20.0	20.0	100.0
	11~20년	(10)	20.0	20.0	40.0	20.0	100.0
	21~30년	(14)	21.4	50.0	21.4	7.1	100.0
	31~50년	(14)	42.9	28.6	14.3	14.3	100.0
	51년 이상	(7)	0.0	42.9	28.6	28.6	100.0
업종	제조업	(30)	30.0	26.7	20.0	23.3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44.4	22.2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25.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0.0	55.6	33.3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50.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25.0	50.0	0.0	25.0	100.0
	10억 미만	(12)	33.3	41.7	16.7	8.3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12.5	50.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46.7	20.0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16.7	50.0	16.7	16.7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33.3	28.6	23.8	14.3	100.0
	있음	(51)	19.6	35.3	25.5	19.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35.3	41.2	17.6	5.9	100.0
	경험 있음	(68)	23.5	36.8	23.5	16.2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22.2	44.4	25.9	7.4	100.0
	없음	(41)	24.4	31.7	22.0	22.0	100.0

35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2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유형별 활동 정도_현재_D형 유휴장비 이전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41.2	23.5	25.0	10.3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30.4	30.4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57.1	14.3	17.9	10.7	100.0
	대기업	(17)	35.3	29.4	29.4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50.0	22.2	16.7	11.1	100.0
	8~10년	(5)	40.0	20.0	40.0	0.0	100.0
	11~20년	(10)	40.0	10.0	20.0	30.0	100.0
	21~30년	(14)	50.0	14.3	35.7	0.0	100.0
	31~50년	(14)	21.4	42.9	21.4	14.3	100.0
	51년 이상	(7)	42.9	28.6	28.6	0.0	100.0
업종	제조업	(30)	36.7	30.0	23.3	10.0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0.0	44.4	33.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100.0	0.0	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33.3	22.2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66.7	0.0	0.0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25.0	25.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25.0	50.0	25.0	0.0	100.0
	10억 미만	(12)	66.7	16.7	16.7	0.0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12.5	25.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46.7	6.7	26.7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8.3	50.0	25.0	16.7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42.9	28.6	28.6	0.0	100.0
	있음	(51)	31.4	25.5	29.4	13.7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70.6	17.6	11.8	0.0	100.0
	경험 있음	(68)	41.2	23.5	25.0	10.3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40.7	25.9	25.9	7.4	100.0
	없음	(41)	41.5	22.0	24.4	12.2	100.0

〈부록 표2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에 사용된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정도_공공제한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11.8	7.4	38.2	35.3	7.4	19.1	42.6	3.19	54.8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4.3	52.2	34.8	8.7	4.3	43.5	3.48	62.0
	벤처스타트업	(28)	10.7	10.7	25.0	42.9	10.7	21.4	53.6	3.32	58.0
	대기업	(17)	29.4	5.9	41.2	23.5	0.0	35.3	23.5	2.59	39.7
업력	7년 이하	(18)	11.1	11.1	33.3	27.8	16.7	22.2	44.4	3.28	56.9
	8~10년	(5)	20.0	0.0	60.0	0.0	20.0	20.0	20.0	3.00	50.0
	11~20년	(10)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21~30년	(14)	0.0	14.3	50.0	28.6	7.1	14.3	35.7	3.29	57.1
	31~50년	(14)	7.1	0.0	35.7	57.1	0.0	7.1	57.1	3.43	60.7
	51년 이상	(7)	57.1	14.3	14.3	14.3	0.0	71.4	14.3	1.86	21.4
업종	제조업	(30)	10.0	10.0	30.0	46.7	3.3	20.0	50.0	3.23	55.8
	건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33.3	44.4	22.2	0.0	66.7	3.89	72.2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50.0	25.0	0.0	25.0	25.0	2.75	43.8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0.0	50.0	0.0	2.00	25.0
	전문서비스업	(9)	11.1	22.2	44.4	22.2	0.0	33.3	22.2	2.78	44.4
	교육서비스업	(3)	33.3	0.0	33.3	33.3	0.0	33.3	33.3	2.67	41.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기타	(4)	25.0	0.0	50.0	0.0	25.0	25.0	25.0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16.7	8.3	41.7	33.3	0.0	25.0	33.3	2.92	47.9
	10억~50억 미만	(8)	12.5	25.0	0.0	25.0	37.5	37.5	62.5	3.50	62.5
	50억~100억 미만	(15)	0.0	0.0	46.7	46.7	6.7	0.0	53.3	3.60	65.0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500억 이상	(21)	23.8	9.5	28.6	33.3	4.8	33.3	38.1	2.86	4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9.8	5.9	41.2	35.3	7.8	15.7	43.1	3.25	56.4
	없음	(17)	17.6	11.8	29.4	35.3	5.9	29.4	41.2	3.00	5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1.8	7.4	38.2	35.3	7.4	19.1	42.6	3.19	54.8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4.8	3.7	55.6	25.9	0.0	18.5	25.9	2.93	48.1
	없음	(41)	9.8	9.8	26.8	41.5	12.2	19.5	53.7	3.37	59.1

36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2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에 사용된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정도_민간제한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7.4	2.9	22.1	42.6	25.0	10.3	67.6	3.75	68.8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4.3	8.7	21.7	43.5	21.7	13.0	65.2	3.70	67.4
	벤처스타트업	(28)	10.7	0.0	25.0	35.7	28.6	10.7	64.3	3.71	67.9
	대기업	(17)	5.9	0.0	17.6	52.9	23.5	5.9	76.5	3.88	72.1
업력	7년 이하	(18)	16.7	0.0	11.1	44.4	27.8	16.7	72.2	3.67	66.7
	8~10년	(5)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11~20년	(10)	0.0	0.0	40.0	30.0	30.0	0.0	60.0	3.90	72.5
	21~30년	(14)	7.1	0.0	28.6	57.1	7.1	7.1	64.3	3.57	64.3
	31~50년	(14)	0.0	7.1	28.6	35.7	28.6	7.1	64.3	3.86	71.4
	51년 이상	(7)	14.3	0.0	0.0	42.9	42.9	14.3	85.7	4.00	75.0
업종	제조업	(30)	10.0	3.3	16.7	43.3	26.7	13.3	70.0	3.73	68.3
	건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9)	11.1	0.0	11.1	55.6	22.2	11.1	77.8	3.78	69.4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9)	0.0	11.1	22.2	44.4	22.2	11.1	66.7	3.78	69.4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75.0	25.0	0.0	0.0	25.0	3.25	56.3
기타	(4)	25.0	0.0	25.0	50.0	0.0	25.0	50.0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16.7	0.0	16.7	41.7	25.0	16.7	66.7	3.58	64.6
	10억~50억 미만	(8)	12.5	0.0	12.5	25.0	50.0	12.5	75.0	4.00	75.0
	50억~100억 미만	(15)	6.7	6.7	20.0	53.3	13.3	13.3	66.7	3.60	65.0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41.7	41.7	16.7	0.0	58.3	3.75	68.8
	500억 이상	(21)	4.8	4.8	19.0	42.9	28.6	9.5	71.4	3.86	7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3.9	3.9	25.5	41.2	25.5	7.8	66.7	3.80	70.1
	없음	(17)	17.6	0.0	11.8	47.1	23.5	17.6	70.6	3.59	64.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4	2.9	22.1	42.6	25.0	10.3	67.6	3.75	68.8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7.4	7.4	14.8	48.1	22.2	14.8	70.4	3.70	67.6
	없음	(41)	7.3	0.0	26.8	39.0	26.8	7.3	65.9	3.78	69.5

〈부록 표2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에 사용된 사업발굴 형태별 사용 정도_공공협약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11.8	5.9	32.4	33.8	16.2	17.6	50.0	3.37	59.2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8.7	4.3	30.4	34.8	21.7	13.0	56.5	3.57	64.1
	벤처스타트업	(28)	10.7	3.6	35.7	39.3	10.7	14.3	50.0	3.36	58.9
	대기업	(17)	17.6	11.8	29.4	23.5	17.6	29.4	41.2	3.12	52.9
업력	7년 이하	(18)	11.1	5.6	38.9	27.8	16.7	16.7	44.4	3.33	58.3
	8~10년	(5)	20.0	0.0	40.0	40.0	0.0	20.0	40.0	3.00	50.0
	11~20년	(10)	10.0	0.0	30.0	30.0	30.0	10.0	60.0	3.70	67.5
	21~30년	(14)	7.1	7.1	35.7	42.9	7.1	14.3	50.0	3.36	58.9
	31~50년	(14)	7.1	0.0	21.4	50.0	21.4	7.1	71.4	3.79	69.6
	51년 이상	(7)	28.6	28.6	28.6	0.0	14.3	57.1	14.3	2.43	35.7
업종	제조업	(30)	6.7	10.0	26.7	40.0	16.7	16.7	56.7	3.50	62.5
	건설업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9)	11.1	0.0	33.3	11.1	44.4	11.1	55.6	3.78	69.4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0.0	50.0	0.0	2.00	25.0
	전문서비스업	(9)	22.2	11.1	44.4	22.2	0.0	33.3	22.2	2.67	41.7
	교육서비스업	(3)	33.3	0.0	33.3	33.3	0.0	33.3	33.3	2.67	41.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25.0	0.0	50.0	25.0	0.0	25.0	25.0	2.75	43.8
	10억 미만	(12)	8.3	0.0	50.0	41.7	0.0	8.3	41.7	3.25	56.3
	10억~50억 미만	(8)	25.0	12.5	25.0	12.5	25.0	37.5	37.5	3.00	50.0
	50억~100억 미만	(15)	13.3	0.0	33.3	26.7	26.7	13.3	53.3	3.53	63.3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41.7	50.0	8.3	0.0	58.3	3.67	66.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14.3	14.3	19.0	33.3	19.0	28.6	52.4	3.29	57.1
	있음	(51)	5.9	5.9	33.3	35.3	19.6	11.8	54.9	3.57	64.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29.4	5.9	29.4	29.4	5.9	35.3	35.3	2.76	44.1
	경험 있음	(68)	11.8	5.9	32.4	33.8	16.2	17.6	50.0	3.37	59.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	-	-	-
	있음	(27)	7.4	7.4	44.4	37.0	3.7	14.8	40.7	3.22	55.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없음	(41)	14.6	4.9	24.4	31.7	24.4	19.5	56.1	3.46	61.6

36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2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공공행정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9.4	26.5	36.8	7.4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0.4	17.4	47.8	4.3	100.0
	벤처스타트업	(28)	35.7	32.1	21.4	10.7	100.0
	대기업	(17)	17.6	29.4	47.1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16.7	16.7	11.1	100.0
	8~10년	(5)	20.0	40.0	40.0	0.0	100.0
	11~20년	(10)	10.0	30.0	50.0	10.0	100.0
	21~30년	(14)	28.6	28.6	42.9	0.0	100.0
	31~50년	(14)	7.1	21.4	57.1	14.3	100.0
	51년 이상	(7)	42.9	42.9	14.3	0.0	100.0
업종	제조업	(30)	46.7	10.0	40.0	3.3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33.3	44.4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25.0	75.0	0.0	100.0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11.1	55.6	33.3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0.0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75.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50.0	25.0	0.0	25.0	100.0
	10억 미만	(12)	66.7	25.0	8.3	0.0	100.0
	10억~50억 미만	(8)	25.0	25.0	25.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6.7	46.7	40.0	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16.7	16.7	58.3	8.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33.3	19.0	42.9	4.8	100.0
	있음	(51)	17.6	33.3	39.2	9.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64.7	5.9	29.4	0.0	100.0
	경험 있음	(68)	29.4	26.5	36.8	7.4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29.6	18.5	44.4	7.4	100.0
	없음	(41)	29.3	31.7	31.7	7.3	100.0

〈부록 표2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교육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14.7	14.7	44.1	26.5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7.4	17.4	47.8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21.4	21.4	35.7	21.4	100.0
	대기업	(17)	0.0	0.0	52.9	47.1	100.0
업력	7년 이하	(18)	27.8	16.7	33.3	22.2	100.0
	8~10년	(5)	20.0	20.0	60.0	0.0	100.0
	11~20년	(10)	0.0	20.0	60.0	20.0	100.0
	21~30년	(14)	21.4	21.4	42.9	14.3	100.0
	31~50년	(14)	7.1	7.1	28.6	57.1	100.0
	51년 이상	(7)	0.0	0.0	71.4	28.6	100.0
업종	제조업	(30)	23.3	0.0	50.0	26.7	100.0
	건설업	(3)	33.3	0.0	33.3	33.3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55.6	22.2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25.0	50.0	10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0.0	11.1	66.7	22.2	10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50.0	25.0	0.0	100.0
기타	(4)	0.0	25.0	0.0	7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41.7	8.3	50.0	0.0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25.0	25.0	37.5	100.0
	50억~100억 미만	(15)	0.0	40.0	46.7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16.7	8.3	41.7	33.3	100.0
	500억 이상	(21)	9.5	0.0	47.6	42.9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7.8	17.6	43.1	31.4	100.0
	없음	(17)	35.3	5.9	47.1	11.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4.7	14.7	44.1	26.5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1.1	14.8	48.1	25.9	100.0
	없음	(41)	17.1	14.6	41.5	26.8	100.0

36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2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직업훈련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0.6	26.5	33.8	19.1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7.4	34.8	30.4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28.6	25.0	28.6	17.9	100.0
	대기업	(17)	11.8	17.6	47.1	23.5	100.0
업력	7년 이하	(18)	38.9	16.7	22.2	22.2	100.0
	8~10년	(5)	20.0	60.0	20.0	0.0	100.0
	11~20년	(10)	0.0	30.0	60.0	10.0	100.0
	21~30년	(14)	35.7	14.3	35.7	14.3	100.0
	31~50년	(14)	0.0	42.9	21.4	35.7	100.0
	51년 이상	(7)	14.3	14.3	57.1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33.3	16.7	26.7	23.3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44.4	33.3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50.0	25.0	10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11.1	44.4	33.3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0.0	50.0	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66.7	16.7	16.7	0.0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25.0	37.5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0.0	40.0	46.7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8.3	41.7	16.7	33.3	100.0
	500억 이상	(21)	19.0	14.3	42.9	23.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3.7	29.4	37.3	19.6	100.0
	없음	(17)	41.2	17.6	23.5	17.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0.6	26.5	33.8	19.1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2.2	29.6	37.0	11.1	100.0
	없음	(41)	19.5	24.4	31.7	24.4	100.0

〈부록 표3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에너지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9.4	19.1	33.8	17.6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1.7	21.7	39.1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39.3	14.3	25.0	21.4	100.0
	대기업	(17)	23.5	23.5	41.2	11.8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5.6	27.8	11.1	100.0
	8~10년	(5)	40.0	40.0	20.0	0.0	100.0
	11~20년	(10)	10.0	10.0	30.0	50.0	100.0
	21~30년	(14)	14.3	35.7	35.7	14.3	100.0
	31~50년	(14)	7.1	21.4	50.0	21.4	100.0
	51년 이상	(7)	57.1	14.3	28.6	0.0	100.0
업종	제조업	(30)	23.3	23.3	30.0	23.3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0.0	77.8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25.0	5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33.3	22.2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0.0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50.0	25.0	0.0	100.0
기타	(4)	75.0	0.0	0.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8.3	16.7	8.3	16.7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25.0	25.0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20.0	46.7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16.7	25.0	33.3	100.0
	500억 이상	(21)	23.8	19.0	47.6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7.6	23.5	41.2	17.6	100.0
	없음	(17)	64.7	5.9	11.8	17.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4	19.1	33.8	17.6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25.9	33.3	22.2	100.0
	없음	(41)	36.6	14.6	34.1	14.6	100.0

36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농촌개발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2.4	19.1	26.5	22.1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7.4	26.1	30.4	26.1	100.0
	벤처스타트업	(28)	57.1	10.7	10.7	21.4	100.0
	대기업	(17)	11.8	23.5	47.1	17.6	100.0
업력	7년 이하	(18)	61.1	11.1	11.1	16.7	100.0
	8~10년	(5)	80.0	20.0	0.0	0.0	100.0
	11~20년	(10)	10.0	30.0	30.0	30.0	100.0
	21~30년	(14)	28.6	7.1	50.0	14.3	100.0
	31~50년	(14)	0.0	21.4	28.6	50.0	100.0
	51년 이상	(7)	28.6	42.9	28.6	0.0	100.0
업종	제조업	(30)	33.3	30.0	13.3	23.3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11.1	33.3	44.4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50.0	25.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11.1	22.2	22.2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25.0	25.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25.0	0.0	50.0	25.0	100.0
	10억 미만	(12)	75.0	16.7	8.3	0.0	100.0
	10억~50억 미만	(8)	62.5	12.5	12.5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13.3	33.3	4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16.7	33.3	16.7	33.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19.0	19.0	42.9	19.0	100.0
	있음	(51)	21.6	21.6	31.4	25.5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64.7	11.8	11.8	11.8	100.0
	경험 있음	(68)	32.4	19.1	26.5	22.1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22.2	33.3	25.9	18.5	100.0
	없음	(41)	39.0	9.8	26.8	24.4	100.0

〈부록 표3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보건의료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6.5	19.1	35.3	19.1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1.7	26.1	43.5	8.7	100.0
	벤처스타트업	(28)	42.9	10.7	21.4	25.0	100.0
	대기업	(17)	5.9	23.5	47.1	23.5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11.1	11.1	22.2	100.0
	8~10년	(5)	80.0	20.0	0.0	0.0	100.0
	11~20년	(10)	10.0	20.0	50.0	20.0	100.0
	21~30년	(14)	14.3	28.6	35.7	21.4	100.0
	31~50년	(14)	0.0	21.4	57.1	21.4	100.0
	51년 이상	(7)	14.3	14.3	57.1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26.7	23.3	33.3	16.7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11.1	66.7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25.0	50.0	10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33.3	11.1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33.3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50.0	25.0	25.0	100.0
기타	(4)	50.0	0.0	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8.3	16.7	8.3	16.7	100.0
	10억~50억 미만	(8)	50.0	25.0	0.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13.3	66.7	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33.3	16.7	25.0	100.0
	500억 이상	(21)	9.5	14.3	52.4	23.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1.8	23.5	41.2	23.5	100.0
	없음	(17)	70.6	5.9	17.6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6.5	19.1	35.3	19.1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25.9	29.6	25.9	100.0
	없음	(41)	31.7	14.6	39.0	14.6	100.0

36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교통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6.8	19.1	27.9	16.2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26.1	21.7	26.1	100.0
	벤처스타트업	(28)	46.4	14.3	28.6	10.7	100.0
	대기업	(17)	35.3	17.6	35.3	11.8	100.0
업력	7년 이하	(18)	72.2	5.6	5.6	16.7	100.0
	8~10년	(5)	40.0	20.0	40.0	0.0	100.0
	11~20년	(10)	10.0	40.0	40.0	10.0	100.0
	21~30년	(14)	21.4	21.4	57.1	0.0	100.0
	31~50년	(14)	7.1	21.4	21.4	50.0	100.0
	51년 이상	(7)	71.4	14.3	14.3	0.0	100.0
업종	제조업	(30)	43.3	23.3	13.3	20.0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22.2	33.3	44.4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0.0	5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33.3	11.1	55.6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75.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4)	75.0	0.0	0.0	25.0	100.0
	10억 미만	(12)	83.3	8.3	8.3	0.0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12.5	25.0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6.7	26.7	46.7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33.3	33.3	8.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38.1	14.3	23.8	23.8	100.0
	있음	(51)	23.5	23.5	33.3	19.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76.5	5.9	11.8	5.9	100.0
	경험 있음	(68)	36.8	19.1	27.9	16.2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있음	(27)	29.6	14.8	44.4	11.1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없음	(41)	41.5	22.0	17.1	19.5	100.0

〈부록 표3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과거_물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9.4	13.2	42.6	14.7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1.7	17.4	47.8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39.3	10.7	35.7	14.3	100.0
	대기업	(17)	23.5	11.8	47.1	17.6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5.6	27.8	11.1	100.0
	8~10년	(5)	60.0	0.0	40.0	0.0	100.0
	11~20년	(10)	10.0	20.0	60.0	10.0	100.0
	21~30년	(14)	14.3	21.4	42.9	21.4	100.0
	31~50년	(14)	7.1	14.3	50.0	28.6	100.0
	51년 이상	(7)	42.9	14.3	42.9	0.0	100.0
업종	제조업	(30)	30.0	6.7	43.3	20.0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0.0	33.3	66.7	0.0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0.0	25.0	25.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33.3	11.1	33.3	22.2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50.0	25.0	0.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8.3	8.3	8.3	25.0	100.0
	10억~50억 미만	(8)	50.0	12.5	37.5	0.0	100.0
	50억~100억 미만	(15)	6.7	26.7	53.3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8.3	58.3	8.3	100.0
	500억 이상	(21)	23.8	9.5	47.6	19.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7.6	17.6	47.1	17.6	100.0
	없음	(17)	64.7	0.0	29.4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4	13.2	42.6	14.7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18.5	25.9	33.3	22.2	100.0
	없음	(41)	36.6	4.9	48.8	9.8	100.0

37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공공행정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3.8	30.9	29.4	5.9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4.8	26.1	30.4	8.7	100.0
	벤처스타트업	(28)	42.9	28.6	25.0	3.6	100.0
	대기업	(17)	17.6	41.2	35.3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22.2	11.1	11.1	100.0
	8~10년	(5)	20.0	40.0	40.0	0.0	100.0
	11~20년	(10)	20.0	20.0	60.0	0.0	100.0
	21~30년	(14)	35.7	28.6	35.7	0.0	100.0
	31~50년	(14)	14.3	50.0	21.4	14.3	100.0
	51년 이상	(7)	42.9	28.6	28.6	0.0	100.0
업종	제조업	(30)	46.7	20.0	26.7	6.7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33.3	44.4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25.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11.1	55.6	22.2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0.0	66.7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50.0	25.0	0.0	100.0
기타	(4)	50.0	50.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66.7	33.3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8)	25.0	12.5	37.5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20.0	46.7	33.3	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25.0	50.0	0.0	100.0
	500억 이상	(21)	33.3	28.6	28.6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1.6	35.3	37.3	5.9	100.0
	없음	(17)	70.6	17.6	5.9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3.8	30.9	29.4	5.9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0	37.0	22.2	3.7	100.0
	없음	(41)	31.7	26.8	34.1	7.3	100.0

〈부록 표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교육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2.1	27.9	39.7	10.3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21.7	43.5	8.7	100.0
	벤처스타트업	(28)	21.4	39.3	28.6	10.7	100.0
	대기업	(17)	17.6	17.6	52.9	11.8	100.0
업력	7년 이하	(18)	22.2	27.8	33.3	16.7	100.0
	8~10년	(5)	20.0	40.0	40.0	0.0	100.0
	11~20년	(10)	10.0	40.0	30.0	20.0	100.0
	21~30년	(14)	42.9	21.4	35.7	0.0	100.0
	31~50년	(14)	14.3	28.6	57.1	0.0	100.0
	51년 이상	(7)	14.3	14.3	42.9	28.6	100.0
업종	제조업	(30)	20.0	20.0	50.0	10.0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44.4	22.2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50.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22.2	22.2	55.6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50.0	0.0	25.0	100.0
기타	(4)	0.0	50.0	0.0	5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41.7	25.0	25.0	8.3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37.5	37.5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20.0	46.7	20.0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25.0	41.7	8.3	100.0
	500억 이상	(21)	14.3	14.3	61.9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5.7	29.4	45.1	9.8	100.0
	없음	(17)	41.2	23.5	23.5	11.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2.1	27.9	39.7	10.3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9.6	22.2	44.4	3.7	100.0
	없음	(41)	17.1	31.7	36.6	14.6	100.0

37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직업훈련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29.4	26.5	29.4	14.7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39.1	17.4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35.7	21.4	25.0	17.9	100.0
	대기업	(17)	23.5	17.6	52.9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33.3	27.8	16.7	22.2	100.0
	8~10년	(5)	20.0	60.0	20.0	0.0	100.0
	11~20년	(10)	10.0	30.0	10.0	50.0	100.0
	21~30년	(14)	28.6	28.6	42.9	0.0	100.0
	31~50년	(14)	35.7	21.4	42.9	0.0	100.0
	51년 이상	(7)	42.9	0.0	42.9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43.3	16.7	26.7	13.3	100.0
	건설업	(3)	33.3	33.3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33.3	33.3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75.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11.1	55.6	22.2	11.1	10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25.0	0.0	25.0	100.0
기타	(4)	0.0	50.0	25.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0.0	33.3	8.3	8.3	100.0
	10억~50억 미만	(8)	12.5	25.0	12.5	50.0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40.0	33.3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33.3	25.0	25.0	16.7	100.0
	500억 이상	(21)	33.3	14.3	47.6	4.8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5.5	25.5	35.3	13.7	100.0
	없음	(17)	41.2	29.4	11.8	17.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4	26.5	29.4	14.7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5.9	33.3	33.3	7.4	100.0
	없음	(41)	31.7	22.0	26.8	19.5	100.0

〈부록 표3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에너지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0.9	20.6	42.6	5.9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0.4	13.0	47.8	8.7	100.0
	벤처스타트업	(28)	32.1	25.0	35.7	7.1	100.0
	대기업	(17)	29.4	23.5	47.1	0.0	100.0
업력	7년 이하	(18)	50.0	16.7	27.8	5.6	100.0
	8~10년	(5)	40.0	0.0	60.0	0.0	100.0
	11~20년	(10)	10.0	30.0	40.0	20.0	100.0
	21~30년	(14)	28.6	21.4	42.9	7.1	100.0
	31~50년	(14)	7.1	35.7	57.1	0.0	100.0
	51년 이상	(7)	57.1	0.0	42.9	0.0	100.0
업종	제조업	(30)	23.3	20.0	46.7	10.0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22.2	55.6	11.1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50.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55.6	11.1	33.3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75.0	25.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8.3	25.0	8.3	8.3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0.0	62.5	0.0	100.0
	50억~100억 미만	(15)	13.3	33.3	46.7	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33.3	8.3	41.7	16.7	100.0
	500억 이상	(21)	23.8	23.8	52.4	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19.6	23.5	52.9	3.9	100.0
	없음	(17)	64.7	11.8	11.8	11.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0.9	20.6	42.6	5.9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2.2	37.0	37.0	3.7	100.0
	없음	(41)	36.6	9.8	46.3	7.3	100.0

37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농촌개발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5.3	25.0	30.9	8.8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21.7	34.8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50.0	25.0	21.4	3.6	100.0
	대기업	(17)	23.5	29.4	41.2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55.6	22.2	22.2	0.0	100.0
	8~10년	(5)	80.0	20.0	0.0	0.0	100.0
	11~20년	(10)	10.0	30.0	20.0	40.0	100.0
	21~30년	(14)	21.4	35.7	42.9	0.0	100.0
	31~50년	(14)	28.6	21.4	42.9	7.1	100.0
	51년 이상	(7)	28.6	14.3	42.9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40.0	16.7	36.7	6.7	100.0
	건설업	(3)	66.7	0.0	33.3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22.2	55.6	0.0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50.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33.3	0.0	22.2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75.0	0.0	25.0	100.0
기타	(4)	25.0	25.0	25.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66.7	25.0	8.3	0.0	100.0
	10억~50억 미만	(8)	62.5	0.0	37.5	0.0	100.0
	50억~100억 미만	(15)	20.0	40.0	20.0	20.0	100.0
	100억~500억 미만	(12)	33.3	25.0	33.3	8.3	100.0
	500억 이상	(21)	19.0	23.8	47.6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7.5	29.4	33.3	9.8	100.0
	없음	(17)	58.8	11.8	23.5	5.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5.3	25.0	30.9	8.8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9.6	37.0	25.9	7.4	100.0
	없음	(41)	39.0	17.1	34.1	9.8	100.0

〈부록 표4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보건의료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3.8	26.5	25.0	14.7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4.8	21.7	26.1	17.4	100.0
	벤처스타트업	(28)	39.3	32.1	10.7	17.9	100.0
	대기업	(17)	23.5	23.5	47.1	5.9	100.0
업력	7년 이하	(18)	44.4	16.7	5.6	33.3	100.0
	8~10년	(5)	80.0	20.0	0.0	0.0	100.0
	11~20년	(10)	10.0	40.0	30.0	20.0	100.0
	21~30년	(14)	35.7	21.4	42.9	0.0	100.0
	31~50년	(14)	21.4	35.7	35.7	7.1	100.0
	51년 이상	(7)	28.6	28.6	28.6	14.3	100.0
업종	제조업	(30)	30.0	30.0	23.3	16.7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22.2	22.2	33.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25.0	5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55.6	11.1	33.3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66.7	33.3	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75.0	0.0	25.0	100.0
기타	(4)	50.0	25.0	0.0	25.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0.0	25.0	0.0	25.0	100.0
	10억~50억 미만	(8)	50.0	12.5	12.5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33.3	33.3	20.0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41.7	25.0	25.0	8.3	100.0
	500억 이상	(21)	14.3	28.6	47.6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3.5	29.4	33.3	13.7	100.0
	없음	(17)	64.7	17.6	0.0	17.6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3.8	26.5	25.0	14.7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9.6	29.6	25.9	14.8	100.0
	없음	(41)	36.6	24.4	24.4	14.6	100.0

37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4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교통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9.7	27.9	25.0	7.4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34.8	17.4	34.8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46.4	28.6	17.9	7.1	100.0
	대기업	(17)	35.3	41.2	23.5	0.0	100.0
업력	7년 이하	(18)	61.1	27.8	5.6	5.6	100.0
	8~10년	(5)	60.0	20.0	20.0	0.0	100.0
	11~20년	(10)	10.0	20.0	40.0	30.0	100.0
	21~30년	(14)	28.6	35.7	28.6	7.1	100.0
	31~50년	(14)	21.4	35.7	42.9	0.0	100.0
	51년 이상	(7)	71.4	14.3	14.3	0.0	100.0
업종	제조업	(30)	43.3	30.0	23.3	3.3	100.0
	건설업	(3)	0.0	33.3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33.3	22.2	33.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50.0	0.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44.4	22.2	33.3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66.7	0.0	0.0	33.3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100.0
기타	(4)	75.0	25.0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66.7	33.3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8)	50.0	12.5	12.5	25.0	100.0
	50억~100억 미만	(15)	26.7	20.0	40.0	13.3	100.0
	100억~500억 미만	(12)	25.0	50.0	16.7	8.3	100.0
	500억 이상	(21)	38.1	23.8	38.1	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5.5	33.3	31.4	9.8	100.0
	없음	(17)	82.4	11.8	5.9	0.0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9.7	27.9	25.0	7.4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3.3	33.3	25.9	7.4	100.0
	없음	(41)	43.9	24.4	24.4	7.3	100.0

〈부록 표4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분야별 활동 정도_현재_물

(단위: %)

		사례수	활동이 없었음	애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의 활동	계획한 수준의 활동	계획한 수준 이상의 활동	계
전체		(68)	33.8	23.5	32.4	10.3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26.1	26.1	34.8	13.0	100.0
	벤처스타트업	(28)	39.3	25.0	21.4	14.3	100.0
	대기업	(17)	35.3	17.6	47.1	0.0	100.0
업력	7년 이하	(18)	50.0	16.7	11.1	22.2	100.0
	8~10년	(5)	40.0	20.0	40.0	0.0	100.0
	11~20년	(10)	10.0	40.0	40.0	10.0	100.0
	21~30년	(14)	28.6	28.6	42.9	0.0	100.0
	31~50년	(14)	28.6	28.6	28.6	14.3	100.0
	51년 이상	(7)	42.9	0.0	57.1	0.0	100.0
업종	제조업	(30)	33.3	16.7	33.3	16.7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9)	11.1	33.3	33.3	22.2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25.0	25.0	0.0	100.0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9)	33.3	33.3	33.3	0.0	100.0
	교육서비스업	(3)	33.3	66.7	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25.0	25.0	0.0	100.0
기타	(4)	50.0	25.0	25.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58.3	16.7	8.3	16.7	100.0
	10억~50억 미만	(8)	37.5	25.0	25.0	12.5	100.0
	50억~100억 미만	(15)	20.0	40.0	33.3	6.7	100.0
	100억~500억 미만	(12)	41.7	25.0	25.0	8.3	100.0
	500억 이상	(21)	23.8	14.3	52.4	9.5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5.5	27.5	37.3	9.8	100.0
	없음	(17)	58.8	11.8	17.6	11.8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3.8	23.5	32.4	10.3	100.0
	경험 없음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25.9	37.0	25.9	11.1	100.0
	없음	(41)	39.0	14.6	36.6	9.8	100.0

37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의 기대 수준 도달 정도

(단위: %)

		사례수	①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②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③ 기대한 수준이 다	④ 기대 보다 다소 높은 수준 이다	⑤ 기대 보다 매우 높은 수준 이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11.8	29.4	33.8	20.6	4.4	41.2	25.0	2.76	44.1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17.4	26.1	47.8	8.7	0.0	43.5	8.7	2.48	37.0
	벤처스타트업	(28)	14.3	28.6	25.0	21.4	10.7	42.9	32.1	2.86	46.4
	대기업	(17)	0.0	35.3	29.4	35.3	0.0	35.3	35.3	3.00	50.0
업력	7년 이하	(18)	11.1	27.8	33.3	16.7	11.1	38.9	27.8	2.89	47.2
	8~10년	(5)	20.0	40.0	40.0	0.0	0.0	60.0	0.0	2.20	30.0
	11~20년	(10)	20.0	10.0	30.0	40.0	0.0	30.0	40.0	2.90	47.5
	21~30년	(14)	14.3	42.9	28.6	14.3	0.0	57.1	14.3	2.43	35.7
	31~50년	(14)	7.1	35.7	35.7	14.3	7.1	42.9	21.4	2.79	44.6
업종	51년 이상	(7)	0.0	14.3	42.9	42.9	0.0	14.3	42.9	3.29	57.1
	제조업	(30)	6.7	33.3	36.7	16.7	6.7	40.0	23.3	2.83	45.8
	건설업	(3)	33.3	66.7	0.0	0.0	0.0	100.0	0.0	1.67	16.7
	도매 및 소매업	(9)	11.1	11.1	33.3	44.4	0.0	22.2	44.4	3.11	52.8
	방송/통신/미디어업	(4)	25.0	0.0	0.0	75.0	0.0	25.0	75.0	3.25	56.3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9)	22.2	55.6	22.2	0.0	0.0	77.8	0.0	2.00	25.0
	교육서비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25.0	25.0	50.0	0.0	0.0	50.0	0.0	2.25	31.3
	기타	(4)	0.0	25.0	25.0	25.0	25.0	25.0	50.0	3.50	62.5
	10억 미만	(12)	16.7	41.7	25.0	8.3	8.3	58.3	16.7	2.50	37.5
	10억~50억 미만	(8)	12.5	37.5	12.5	25.0	12.5	50.0	37.5	2.88	46.9
	50억~100억 미만	(15)	20.0	20.0	33.3	26.7	0.0	40.0	26.7	2.67	41.7
	100억~500억 미만	(12)	16.7	8.3	50.0	16.7	8.3	25.0	25.0	2.92	4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21)	0.0	38.1	38.1	23.8	0.0	38.1	23.8	2.86	46.4
	있음	(51)	5.9	29.4	35.3	27.5	2.0	35.3	29.4	2.90	47.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7)	29.4	29.4	29.4	0.0	11.8	58.8	11.8	2.35	33.8
	경험 있음	(68)	11.8	29.4	33.8	20.6	4.4	41.2	25.0	2.76	44.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	-	-	-
	있음	(27)	7.4	25.9	40.7	22.2	3.7	33.3	25.9	2.89	47.2
	없음	(41)	14.6	31.7	29.3	19.5	4.9	46.3	24.4	2.68	42.1

〈부록 표4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_복수응답

(단위: %)

		사례수	소요 되는 비용이 과다 하다	CSR· CSV의 효과가 불명확 하다	CSR· CSV에 대한 경영진 의 인식이 높지 않다	CSR· CSV에 대한 구성원 의 인식이 높지 않다	조직의 업종과 CSR· CSV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CSR· CSV 활동과 관련된 개도국 정보와 자료가 부족 하다	기타
전체		(28)	17.9	28.6	17.9	25.0	14.3	35.7	14.3
기업유형	중소중견	(10)	30.0	50.0	10.0	30.0	20.0	30.0	10.0
	벤처스타트업	(12)	8.3	16.7	25.0	8.3	16.7	41.7	25.0
	대기업	(6)	16.7	16.7	16.7	50.0	0.0	33.3	0.0
업력	7년 이하	(7)	0.0	14.3	14.3	0.0	0.0	28.6	42.9
	8~10년	(3)	33.3	33.3	0.0	0.0	0.0	100.0	0.0
	11~20년	(3)	0.0	33.3	33.3	33.3	33.3	0.0	33.3
	21~30년	(8)	25.0	37.5	0.0	25.0	12.5	37.5	0.0
	31~50년	(6)	33.3	33.3	33.3	50.0	33.3	16.7	0.0
업종	51년 이상	(1)	0.0	0.0	100.0	100.0	0.0	100.0	0.0
	제조업	(12)	33.3	16.7	33.3	25.0	16.7	33.3	16.7
	건설업	(3)	0.0	33.3	0.0	33.3	0.0	66.7	0.0
	도매 및 소매업	(2)	50.0	50.0	0.0	0.0	0.0	0.0	0.0
	방송/통신/미디어업	(1)	0.0	0.0	0.0	0.0	0.0	100.0	0.0
	전문서비스업	(7)	0.0	57.1	0.0	0.0	14.3	42.9	28.6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50.0	100.0	50.0	0.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10억 미만	(7)	0.0	14.3	14.3	0.0	0.0	28.6	42.9
	10억~50억 미만	(4)	25.0	50.0	0.0	0.0	25.0	75.0	0.0
	50억~100억 미만	(6)	33.3	50.0	33.3	33.3	33.3	33.3	16.7
	100억~500억 미만	(3)	0.0	33.3	33.3	0.0	33.3	33.3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8)	25.0	12.5	12.5	62.5	0.0	25.0	0.0
	있음	(18)	22.2	44.4	22.2	33.3	22.2	38.9	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10)	10.0	0.0	10.0	10.0	0.0	30.0	40.0
	경험 있음	(28)	17.9	28.6	17.9	25.0	14.3	35.7	14.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	-	-	-	-	-	-	-
	있음	(9)	11.1	44.4	0.0	22.2	0.0	33.3	11.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없음	(19)	21.1	21.1	26.3	26.3	21.1	36.8	15.8

38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4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0.0	5.9	44.1	36.8	13.2	5.9	50.0	3.57	64.3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13.0	52.2	34.8	0.0	13.0	34.8	3.22	55.4
	벤처스타트업	(28)	0.0	3.6	39.3	39.3	17.9	3.6	57.1	3.71	67.9
	대기업	(17)	0.0	0.0	41.2	35.3	23.5	0.0	58.8	3.82	70.6
업력	7년 이하	(18)	0.0	11.1	27.8	38.9	22.2	11.1	61.1	3.72	68.1
	8~10년	(5)	0.0	0.0	60.0	40.0	0.0	0.0	40.0	3.40	60.0
	11~20년	(10)	0.0	0.0	50.0	40.0	10.0	0.0	50.0	3.60	65.0
	21~30년	(14)	0.0	7.1	64.3	21.4	7.1	7.1	28.6	3.29	57.1
	31~50년	(14)	0.0	7.1	42.9	35.7	14.3	7.1	50.0	3.57	64.3
	51년 이상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업종	제조업	(30)	0.0	10.0	33.3	43.3	13.3	10.0	56.7	3.60	65.0
	건설업	(3)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44.4	44.4	11.1	0.0	55.6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9)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75.0	25.0	0.0	0.0	25.0	3.25	56.3
기타	(4)	0.0	25.0	25.0	0.0	50.0	25.0	50.0	3.75	68.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8.3	41.7	33.3	16.7	8.3	50.0	3.58	64.6
	10억~50억 미만	(8)	0.0	0.0	12.5	62.5	25.0	0.0	87.5	4.13	78.1
	50억~100억 미만	(15)	0.0	6.7	66.7	20.0	6.7	6.7	26.7	3.27	56.7
	100억~500억 미만	(12)	0.0	8.3	50.0	41.7	0.0	8.3	41.7	3.33	58.3
	500억 이상	(21)	0.0	4.8	38.1	38.1	19.0	4.8	57.1	3.71	6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0.0	3.9	49.0	35.3	11.8	3.9	47.1	3.55	63.7
	없음	(17)	0.0	11.8	29.4	41.2	17.6	11.8	58.8	3.65	66.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5.9	44.1	36.8	13.2	5.9	50.0	3.57	64.3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3.7	55.6	29.6	11.1	3.7	40.7	3.48	62.0
	없음	(41)	0.0	7.3	36.6	41.5	14.6	7.3	56.1	3.63	65.9

〈부록 표4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7.4	20.6	29.4	32.4	10.3	27.9	42.6	3.18	54.4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8.7	30.4	30.4	13.0	17.4	39.1	30.4	3.00	50.0
	벤처스타트업	(28)	0.0	25.0	35.7	32.1	7.1	25.0	39.3	3.21	55.4
	대기업	(17)	17.6	0.0	17.6	58.8	5.9	17.6	64.7	3.35	58.8
업력	7년 이하	(18)	0.0	33.3	27.8	27.8	11.1	33.3	38.9	3.17	54.2
	8~10년	(5)	0.0	40.0	60.0	0.0	0.0	40.0	0.0	2.60	40.0
	11~20년	(10)	10.0	0.0	40.0	30.0	20.0	10.0	50.0	3.50	62.5
	21~30년	(14)	7.1	14.3	42.9	28.6	7.1	21.4	35.7	3.14	53.6
	31~50년	(14)	0.0	28.6	7.1	50.0	14.3	28.6	64.3	3.50	62.5
	51년 이상	(7)	42.9	0.0	14.3	42.9	0.0	42.9	42.9	2.57	39.3
업종	제조업	(30)	10.0	30.0	30.0	20.0	10.0	40.0	30.0	2.90	47.5
	건설업	(3)	33.3	0.0	33.3	33.3	0.0	33.3	33.3	2.67	41.7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22.2	33.3	44.4	0.0	77.8	4.22	80.6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56.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9)	11.1	22.2	33.3	33.3	0.0	33.3	33.3	2.89	47.2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75.0	25.0	0.0	0.0	25.0	3.25	56.3
기타	(4)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33.3	41.7	25.0	0.0	33.3	25.0	2.92	47.9
	10억~50억 미만	(8)	0.0	25.0	25.0	25.0	25.0	25.0	50.0	3.50	62.5
	50억~100억 미만	(15)	6.7	13.3	26.7	40.0	13.3	20.0	53.3	3.40	60.0
	100억~500억 미만	(12)	8.3	25.0	33.3	16.7	16.7	33.3	33.3	3.08	52.1
	500억 이상	(21)	14.3	14.3	23.8	42.9	4.8	28.6	47.6	3.10	52.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7.8	11.8	25.5	41.2	13.7	19.6	54.9	3.41	60.3
	없음	(17)	5.9	47.1	41.2	5.9	0.0	52.9	5.9	2.47	36.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4	20.6	29.4	32.4	10.3	27.9	42.6	3.18	54.4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	25.9	18.5	44.4	7.4	29.6	51.9	3.26	56.5
	없음	(41)	9.8	17.1	36.6	24.4	12.2	26.8	36.6	3.12	53.0

38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4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1.5	8.8	33.8	39.7	16.2	10.3	55.9	3.60	65.1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21.7	39.1	30.4	8.7	21.7	39.1	3.26	56.5
	벤처스타트업	(28)	0.0	3.6	32.1	42.9	21.4	3.6	64.3	3.82	70.5
	대기업	(17)	5.9	0.0	29.4	47.1	17.6	5.9	64.7	3.71	67.6
업력	7년 이하	(18)	0.0	11.1	27.8	27.8	33.3	11.1	61.1	3.83	70.8
	8~10년	(5)	0.0	20.0	20.0	60.0	0.0	20.0	60.0	3.40	60.0
	11~20년	(10)	0.0	0.0	60.0	30.0	10.0	0.0	40.0	3.50	62.5
	21~30년	(14)	0.0	7.1	50.0	42.9	0.0	7.1	42.9	3.36	58.9
	31~50년	(14)	0.0	14.3	21.4	50.0	14.3	14.3	64.3	3.64	66.1
	51년 이상	(7)	14.3	0.0	14.3	42.9	28.6	14.3	71.4	3.71	67.9
업종	제조업	(30)	3.3	10.0	30.0	46.7	10.0	13.3	56.7	3.50	62.5
	건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9)	0.0	11.1	44.4	33.3	11.1	11.1	44.4	3.44	61.1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기타	(4)	0.0	25.0	0.0	50.0	25.0	25.0	75.0	3.75	68.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8.3	41.7	33.3	16.7	8.3	50.0	3.58	64.6
	10억~50억 미만	(8)	0.0	0.0	37.5	25.0	37.5	0.0	62.5	4.00	75.0
	50억~100억 미만	(15)	0.0	6.7	40.0	40.0	13.3	6.7	53.3	3.60	65.0
	100억~500억 미만	(12)	0.0	25.0	41.7	33.3	0.0	25.0	33.3	3.08	52.1
	500억 이상	(21)	4.8	4.8	19.0	52.4	19.0	9.5	71.4	3.76	69.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0	7.8	33.3	41.2	15.7	9.8	56.9	3.61	65.2
	없음	(17)	0.0	11.8	35.3	35.3	17.6	11.8	52.9	3.59	64.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8.8	33.8	39.7	16.2	10.3	55.9	3.60	65.1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7.4	44.4	33.3	14.8	7.4	48.1	3.56	63.9
	없음	(41)	2.4	9.8	26.8	43.9	17.1	12.2	61.0	3.63	65.9

〈부록 표4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기업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0.0	4.4	27.9	52.9	14.7	4.4	67.6	3.78	69.5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4.3	47.8	47.8	0.0	4.3	47.8	3.43	60.9
	벤처스타트업	(28)	0.0	7.1	17.9	53.6	21.4	7.1	75.0	3.89	72.3
	대기업	(17)	0.0	0.0	17.6	58.8	23.5	0.0	82.4	4.06	76.5
업력	7년 이하	(18)	0.0	0.0	27.8	61.1	11.1	0.0	72.2	3.83	70.8
	8~10년	(5)	0.0	20.0	0.0	80.0	0.0	20.0	80.0	3.60	65.0
	11~20년	(10)	0.0	10.0	20.0	50.0	20.0	10.0	70.0	3.80	70.0
	21~30년	(14)	0.0	7.1	42.9	35.7	14.3	7.1	50.0	3.57	64.3
	31~50년	(14)	0.0	0.0	35.7	42.9	21.4	0.0	64.3	3.86	71.4
	51년 이상	(7)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75.0
업종	제조업	(30)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건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11.1	88.9	0.0	0.0	88.9	3.89	72.2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9)	0.0	22.2	11.1	66.7	0.0	22.2	66.7	3.44	61.1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기타	(4)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81.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0.0	33.3	58.3	8.3	0.0	66.7	3.75	68.8
	10억~50억 미만	(8)	0.0	0.0	0.0	87.5	12.5	0.0	100.0	4.13	78.1
	50억~100억 미만	(15)	0.0	20.0	20.0	46.7	13.3	20.0	60.0	3.53	63.3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41.7	41.7	16.7	0.0	58.3	3.75	68.8
	500억 이상	(21)	0.0	0.0	33.3	47.6	19.0	0.0	66.7	3.86	7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0.0	5.9	21.6	56.9	15.7	5.9	72.5	3.82	70.6
	없음	(17)	0.0	0.0	47.1	41.2	11.8	0.0	52.9	3.65	66.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27.9	52.9	14.7	4.4	67.6	3.78	69.5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11.1	25.9	55.6	7.4	11.1	63.0	3.59	64.8
	없음	(41)	0.0	0.0	29.3	51.2	19.5	0.0	70.7	3.90	72.6

38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4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0.0	1.5	47.1	35.3	16.2	1.5	51.5	3.66	66.5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0.0	73.9	26.1	0.0	0.0	26.1	3.26	56.5
	벤처스타트업	(28)	0.0	3.6	28.6	39.3	28.6	3.6	67.9	3.93	73.2
	대기업	(17)	0.0	0.0	41.2	41.2	17.6	0.0	58.8	3.76	69.1
업력	7년 이하	(18)	0.0	0.0	44.4	22.2	33.3	0.0	55.6	3.89	72.2
	8~10년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11~20년	(10)	0.0	0.0	50.0	40.0	10.0	0.0	50.0	3.60	65.0
	21~30년	(14)	0.0	7.1	57.1	35.7	0.0	7.1	35.7	3.29	57.1
	31~50년	(14)	0.0	0.0	57.1	35.7	7.1	0.0	42.9	3.50	62.5
	51년 이상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78.6
업종	제조업	(30)	0.0	0.0	43.3	46.7	10.0	0.0	56.7	3.67	66.7
	건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77.8	11.1	11.1	0.0	22.2	3.33	58.3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9)	0.0	0.0	55.6	22.2	22.2	0.0	44.4	3.67	66.7
	교육서비스업	(3)	0.0	33.3	0.0	0.0	66.7	33.3	66.7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75.0	0.0	0.0	75.0	3.75	68.8
기타	(4)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0.0	41.7	25.0	33.3	0.0	58.3	3.92	72.9
	10억~50억 미만	(8)	0.0	0.0	25.0	37.5	37.5	0.0	75.0	4.13	78.1
	50억~100억 미만	(15)	0.0	6.7	60.0	26.7	6.7	6.7	33.3	3.33	58.3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58.3	41.7	0.0	0.0	41.7	3.42	60.4
	500억 이상	(21)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0.0	2.0	47.1	41.2	9.8	2.0	51.0	3.59	64.7
	없음	(17)	0.0	0.0	47.1	17.6	35.3	0.0	52.9	3.88	7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1.5	47.1	35.3	16.2	1.5	51.5	3.66	66.5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3.7	51.9	25.9	18.5	3.7	44.4	3.59	64.8
	없음	(41)	0.0	0.0	43.9	41.5	14.6	0.0	56.1	3.71	67.7

〈부록 표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0.0	5.9	32.4	39.7	22.1	5.9	61.8	3.78	69.5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4.3	39.1	34.8	21.7	4.3	56.5	3.74	68.5
	벤처스타트업	(28)	0.0	7.1	28.6	39.3	25.0	7.1	64.3	3.82	70.5
	대기업	(17)	0.0	5.9	29.4	47.1	17.6	5.9	64.7	3.76	69.1
업력	7년 이하	(18)	0.0	0.0	38.9	33.3	27.8	0.0	61.1	3.89	72.2
	8~10년	(5)	0.0	40.0	20.0	20.0	20.0	40.0	40.0	3.20	55.0
	11~20년	(10)	0.0	0.0	20.0	50.0	30.0	0.0	80.0	4.10	77.5
	21~30년	(14)	0.0	0.0	35.7	57.1	7.1	0.0	64.3	3.71	67.9
	31~50년	(14)	0.0	7.1	35.7	28.6	28.6	7.1	57.1	3.79	69.6
	51년 이상	(7)	0.0	14.3	28.6	42.9	14.3	14.3	57.1	3.57	64.3
업종	제조업	(30)	0.0	6.7	46.7	30.0	16.7	6.7	46.7	3.57	64.2
	건설업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9)	0.0	11.1	11.1	55.6	22.2	11.1	77.8	3.89	72.2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9)	0.0	11.1	22.2	44.4	22.2	11.1	66.7	3.78	69.4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0.0	66.7	0.0	66.7	4.33	83.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0.0	75.0	25.0	0.0	100.0	4.25	81.3
기타	(4)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68.8
	10억~50억 미만	(8)	0.0	0.0	12.5	50.0	37.5	0.0	87.5	4.25	81.3
	50억~100억 미만	(15)	0.0	13.3	20.0	40.0	26.7	13.3	66.7	3.80	70.0
	100억~500억 미만	(12)	0.0	8.3	41.7	50.0	0.0	8.3	50.0	3.42	60.4
	500억 이상	(21)	0.0	4.8	33.3	38.1	23.8	4.8	61.9	3.81	70.2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0.0	7.8	27.5	47.1	17.6	7.8	64.7	3.75	68.6
	없음	(17)	0.0	0.0	47.1	17.6	35.3	0.0	52.9	3.88	7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5.9	32.4	39.7	22.1	5.9	61.8	3.78	69.5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3.7	48.1	29.6	18.5	3.7	48.1	3.63	65.7
	없음	(41)	0.0	7.3	22.0	46.3	24.4	7.3	70.7	3.88	72.0

38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1.5	7.4	42.6	42.6	5.9	8.8	48.5	3.44	61.0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8.7	47.8	39.1	4.3	8.7	43.5	3.39	59.8
	벤처스타트업	(28)	0.0	0.0	42.9	50.0	7.1	0.0	57.1	3.64	66.1
	대기업	(17)	5.9	17.6	35.3	35.3	5.9	23.5	41.2	3.18	54.4
업력	7년 이하	(18)	0.0	0.0	38.9	50.0	11.1	0.0	61.1	3.72	68.1
	8~10년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11~20년	(10)	0.0	0.0	60.0	30.0	10.0	0.0	40.0	3.50	62.5
	21~30년	(14)	0.0	14.3	42.9	42.9	0.0	14.3	42.9	3.29	57.1
	31~50년	(14)	0.0	7.1	42.9	42.9	7.1	7.1	50.0	3.50	62.5
	51년 이상	(7)	14.3	28.6	28.6	28.6	0.0	42.9	28.6	2.71	42.9
업종	제조업	(30)	3.3	13.3	43.3	36.7	3.3	16.7	40.0	3.23	55.8
	건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11.1	88.9	0.0	0.0	88.9	3.89	72.2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75.0	0.0	25.0	0.0	25.0	3.50	62.5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9)	0.0	0.0	55.6	22.2	22.2	0.0	44.4	3.67	66.7
	교육서비스업	(3)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75.0	0.0	0.0	75.0	3.75	68.8
기타	(4)	0.0	0.0	75.0	25.0	0.0	0.0	25.0	3.25	56.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0.0	41.7	50.0	8.3	0.0	58.3	3.67	66.7
	10억~50억 미만	(8)	0.0	0.0	12.5	75.0	12.5	0.0	87.5	4.00	75.0
	50억~100억 미만	(15)	0.0	0.0	46.7	53.3	0.0	0.0	53.3	3.53	63.3
	100억~500억 미만	(12)	0.0	8.3	66.7	16.7	8.3	8.3	25.0	3.25	56.3
	500억 이상	(21)	4.8	19.0	38.1	33.3	4.8	23.8	38.1	3.14	53.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2.0	9.8	39.2	43.1	5.9	11.8	49.0	3.41	60.3
	없음	(17)	0.0	0.0	52.9	41.2	5.9	0.0	47.1	3.53	63.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7.4	42.6	42.6	5.9	8.8	48.5	3.44	61.0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	3.7	55.6	37.0	0.0	7.4	37.0	3.26	56.5
	없음	(41)	0.0	9.8	34.1	46.3	9.8	9.8	56.1	3.56	64.0

〈부록 표5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목적 달성 정도_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68)	0.0	2.9	36.8	47.1	13.2	2.9	60.3	3.71	67.6
기업유형	중소중견	(23)	0.0	4.3	56.5	26.1	13.0	4.3	39.1	3.48	62.0
	벤처스타트업	(28)	0.0	0.0	25.0	57.1	17.9	0.0	75.0	3.93	73.2
	대기업	(17)	0.0	5.9	29.4	58.8	5.9	5.9	64.7	3.65	66.2
업력	7년 이하	(18)	0.0	0.0	38.9	33.3	27.8	0.0	61.1	3.89	72.2
	8~10년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11~20년	(10)	0.0	0.0	30.0	70.0	0.0	0.0	70.0	3.70	67.5
	21~30년	(14)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31~50년	(14)	0.0	7.1	28.6	50.0	14.3	7.1	64.3	3.71	67.9
	51년 이상	(7)	0.0	14.3	42.9	42.9	0.0	14.3	42.9	3.29	57.1
업종	제조업	(30)	0.0	6.7	43.3	36.7	13.3	6.7	50.0	3.57	64.2
	건설업	(3)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9)	0.0	0.0	44.4	44.4	11.1	0.0	55.6	3.67	66.7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0.0	0.0	25.0	75.0	0.0	0.0	75.0	3.75	68.8
기타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2)	0.0	0.0	41.7	33.3	25.0	0.0	58.3	3.83	70.8
	10억~50억 미만	(8)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50억~100억 미만	(15)	0.0	0.0	20.0	66.7	13.3	0.0	80.0	3.93	73.3
	100억~500억 미만	(12)	0.0	0.0	50.0	41.7	8.3	0.0	50.0	3.58	64.6
	500억 이상	(21)	0.0	9.5	42.9	42.9	4.8	9.5	47.6	3.43	6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51)	0.0	3.9	29.4	54.9	11.8	3.9	66.7	3.75	68.6
	없음	(17)	0.0	0.0	58.8	23.5	17.6	0.0	41.2	3.59	64.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2.9	36.8	47.1	13.2	2.9	60.3	3.71	67.6
	경험 없음	-	-	-	-	-	-	-	-	-	-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0.0	3.7	40.7	51.9	3.7	3.7	55.6	3.56	63.9
	없음	(41)	0.0	2.4	34.1	43.9	19.5	2.4	63.4	3.80	70.1

〈부록 표53〉 개도국에서 CSR·CSV의 중요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0	1.9	30.2	52.8	15.1	1.9	67.9	3.81	70.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1.7	56.1	9.8	2.4	65.9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대기업	(30)	0.0	3.3	30.0	60.0	6.7	3.3	66.7	3.70	67.5
업력	7년 이하	(25)	0.0	4.0	20.0	32.0	44.0	4.0	76.0	4.16	79.0
	8~10년	(6)	0.0	0.0	0.0	83.3	16.7	0.0	100.0	4.17	79.2
	11~20년	(18)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21~30년	(23)	0.0	0.0	47.8	39.1	13.0	0.0	52.2	3.65	66.3
	31~50년	(22)	0.0	4.5	27.3	68.2	0.0	4.5	68.2	3.64	65.9
	51년 이상	(12)	0.0	0.0	33.3	58.3	8.3	0.0	66.7	3.75	68.8
업종	제조업	(48)	0.0	0.0	35.4	52.1	12.5	0.0	64.6	3.77	69.3
	건설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8.3	75.0	16.7	0.0	91.7	4.08	77.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8.6	57.1	7.1	7.1	64.3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20.0	20.0	0.0	40.0	3.60	6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10억 미만	(20)	0.0	0.0	35.0	30.0	35.0	0.0	65.0	4.00	75.0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53.3	20.0	6.7	73.3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31.6	63.2	5.3	0.0	68.4	3.74	68.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2.9	17.6	5.9	70.6	3.82	70.6
	500억 이상	(35)	0.0	0.0	34.3	60.0	5.7	0.0	65.7	3.71	6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있음	(71)	0.0	1.4	31.0	56.3	11.3	1.4	67.6	3.77	69.4
	없음	(35)	0.0	2.9	28.6	45.7	22.9	2.9	68.6	3.89	72.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있음	(68)	0.0	1.5	23.5	58.8	16.2	1.5	75.0	3.90	72.4
	경험 없음	(38)	0.0	2.6	42.1	42.1	13.2	2.6	55.3	3.66	66.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2.2	42.2	42.2	13.3	2.2	55.6	3.67	66.7
	없음	(61)	0.0	1.6	21.3	60.7	16.4	1.6	77.0	3.92	73.0

〈부록 표54〉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확대 계획 정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4.7	32.1	39.6	22.6	5.7	62.3	3.78	69.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41.5	34.1	19.5	4.9	53.7	3.68	67.1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2.9	40.0	34.3	2.9	74.3	4.06	76.4
	대기업	(30)	3.3	6.7	30.0	46.7	13.3	10.0	60.0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0.0	0.0	16.0	36.0	48.0	0.0	84.0	4.32	83.0
	8~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11~20년	(18)	0.0	5.6	55.6	27.8	11.1	5.6	38.9	3.44	61.1
	21~30년	(23)	4.3	4.3	34.8	39.1	17.4	8.7	56.5	3.61	65.2
	31~50년	(22)	0.0	4.5	27.3	50.0	18.2	4.5	68.2	3.82	70.5
	51년 이상	(12)	0.0	16.7	41.7	33.3	8.3	16.7	41.7	3.33	58.3
업종	제조업	(48)	0.0	4.2	27.1	45.8	22.9	4.2	68.8	3.88	71.9
	건설업	(6)	0.0	33.3	0.0	50.0	16.7	33.3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71.4	14.3	14.3	0.0	28.6	3.43	60.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42.9	14.3	7.1	57.1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30.0	35.0	30.0	5.0	65.0	3.90	72.5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33.3	40.0	0.0	73.3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0.0	0.0	47.4	31.6	21.1	0.0	52.6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29.4	35.3	23.5	11.8	58.8	3.71	67.6
	500억 이상	(35)	2.9	5.7	28.6	51.4	11.4	8.6	62.9	3.63	6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36.6	38.0	19.7	5.6	57.7	3.70	67.6
	없음	(35)	0.0	5.7	22.9	42.9	28.6	5.7	71.4	3.94	7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2.9	30.9	39.7	26.5	2.9	66.2	3.90	72.4
	경험 없음	(38)	2.6	7.9	34.2	39.5	15.8	10.5	55.3	3.58	64.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28.9	40.0	22.2	8.9	62.2	3.73	68.3
	없음	(61)	0.0	3.3	34.4	39.3	23.0	3.3	62.3	3.82	70.5

39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5〉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공공부문 협력 의향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106)	84.9	15.1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8.0	22.0	100.0
	벤처스타트업	(35)	91.4	8.6	100.0
	대기업	(30)	86.7	13.3	100.0
업력	7년 이하	(25)	96.0	4.0	100.0
	8~10년	(6)	100.0	0.0	100.0
	11~20년	(18)	83.3	16.7	100.0
	21~30년	(23)	78.3	21.7	100.0
	31~50년	(22)	72.7	27.3	100.0
	51년 이상	(12)	91.7	8.3	100.0
	제조업	(48)	91.7	8.3	100.0
업종	건설업	(6)	50.0	50.0	100.0
	도매 및 소매업	(12)	83.3	16.7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85.7	14.3	100.0
	금융/보험업	(2)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85.7	14.3	100.0
	교육서비스업	(5)	80.0	2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83.3	16.7	100.0
	기타	(6)	66.7	33.3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95.0	5.0	100.0
	10억~50억 미만	(15)	73.3	26.7	100.0
	50억~100억 미만	(19)	84.2	15.8	100.0
	100억~500억 미만	(17)	82.4	17.6	100.0
	500억 이상	(35)	85.7	14.3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3.1	16.9	100.0
	없음	(35)	88.6	11.4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91.2	8.8	100.0
	경험 없음	(38)	73.7	26.3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2.2	17.8	100.0
	없음	(61)	86.9	13.1	100.0

〈부록 표56〉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0	3.8	14.2	61.3	20.8	3.8	82.1	3.99	74.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12.2	63.4	22.0	2.4	85.4	4.05	76.2
	벤처스타트업	(35)	0.0	2.9	14.3	54.3	28.6	2.9	82.9	4.09	77.1
	대기업	(30)	0.0	6.7	16.7	66.7	10.0	6.7	76.7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0.0	8.0	4.0	48.0	40.0	8.0	88.0	4.20	80.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0.0	27.8	61.1	11.1	0.0	72.2	3.83	70.8
	21~30년	(23)	0.0	0.0	13.0	69.6	17.4	0.0	87.0	4.04	76.1
	31~50년	(22)	0.0	4.5	18.2	68.2	9.1	4.5	77.3	3.82	70.5
	51년 이상	(12)	0.0	8.3	16.7	66.7	8.3	8.3	75.0	3.75	68.8
업종	제조업	(48)	0.0	0.0	16.7	58.3	25.0	0.0	83.3	4.08	77.1
	건설업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0.0	75.0	25.0	0.0	100.0	4.25	81.3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7.1	71.4	21.4	0.0	92.9	4.14	78.6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60.0	0.0	20.0	60.0	3.40	6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0.0	0.0 33.3	16.7 16.7	83.3 33.3	0.0 16.7	0.0 33.3	83.3 50.0	3.83 3.33	70.8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15.0	50.0	30.0	5.0	80.0	4.05	76.3
	10억~50억 미만	(15)	0.0	0.0	6.7	66.7	26.7	0.0	93.3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15.8	68.4	15.8	0.0	84.2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1.8	64.7	17.6	5.9	82.4	3.94	73.5
	500억 이상	(35)	0.0	5.7	17.1	60.0	17.1	5.7	77.1	3.89	7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0.0	2.8	18.3	60.6	18.3	2.8	78.9	3.94	73.6
	없음	(35)	0.0	5.7	5.7	62.9	25.7	5.7	88.6	4.09	77.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10.3	64.7	20.6	4.4	85.3	4.01	75.4
	경험 없음	(38)	0.0	2.6	21.1	55.3	21.1	2.6	76.3	3.95	73.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4.4	20.0	57.8	17.8	4.4	75.6	3.89	72.2
	없음	(61)	0.0	3.3	9.8	63.9	23.0	3.3	86.9	4.07	76.6

39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7〉 개도국 CSR·CSV 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0	0.9	15.1	43.4	40.6	0.9	84.0	4.24	80.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0.0	12.2	43.9	43.9	0.0	87.8	4.32	82.9
	벤처스타트업	(35)	0.0	2.9	11.4	28.6	57.1	2.9	85.7	4.40	85.0
	대기업	(30)	0.0	0.0	23.3	60.0	16.7	0.0	76.7	3.93	73.3
업력	7년 이하	(25)	0.0	4.0	0.0	28.0	68.0	4.0	96.0	4.60	90.0
	8~10년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11~20년	(18)	0.0	0.0	22.2	61.1	16.7	0.0	77.8	3.94	73.6
	21~30년	(23)	0.0	0.0	21.7	34.8	43.5	0.0	78.3	4.22	80.4
	31~50년	(22)	0.0	0.0	22.7	45.5	31.8	0.0	77.3	4.09	77.3
	51년 이상	(12)	0.0	0.0	8.3	66.7	25.0	0.0	91.7	4.17	79.2
업종	제조업	(48)	0.0	0.0	12.5	47.9	39.6	0.0	87.5	4.27	81.8
	건설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33.3	41.7	0.0	75.0	4.17	79.2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7.1	50.0	42.9	0.0	92.9	4.36	83.9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40.0	40.0	2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0.0	0.0 0.0	33.3 16.7	0.0 50.0	66.7 33.3	0.0 0.0	66.7 83.3	4.33 4.17	83.3 7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10.0	30.0	55.0	5.0	85.0	4.35	83.8
	10억~50억 미만	(15)	0.0	0.0	6.7	26.7	66.7	0.0	93.3	4.60	9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36.8	36.8	0.0	73.7	4.11	77.6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1.8	64.7	23.5	0.0	88.2	4.12	77.9
	500억 이상	(35)	0.0	0.0	17.1	51.4	31.4	0.0	82.9	4.14	7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0.0	0.0	21.1	39.4	39.4	0.0	78.9	4.18	79.6
	없음	(35)	0.0	2.9	2.9	51.4	42.9	2.9	94.3	4.34	8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1.5	16.2	36.8	45.6	1.5	82.4	4.26	81.6
	경험 없음	(38)	0.0	0.0	13.2	55.3	31.6	0.0	86.8	4.18	79.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2.2	13.3	51.1	33.3	2.2	84.4	4.16	78.9
	없음	(61)	0.0	0.0	16.4	37.7	45.9	0.0	83.6	4.30	82.4

〈부록 표58〉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NGO 협력 의향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106)	76.4	23.6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8.0	22.0	100.0
	벤처스타트업	(35)	71.4	28.6	100.0
	대기업	(30)	80.0	20.0	100.0
업력	7년 이하	(25)	68.0	32.0	100.0
	8~10년	(6)	100.0	0.0	100.0
	11~20년	(18)	77.8	22.2	100.0
	21~30년	(23)	78.3	21.7	100.0
	31~50년	(22)	77.3	22.7	100.0
	51년 이상	(12)	75.0	25.0	100.0
업종	제조업	(48)	89.6	10.4	100.0
	건설업	(6)	50.0	50.0	100.0
	도매 및 소매업	(12)	66.7	33.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71.4	28.6	100.0
	금융/보험업	(2)	10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64.3	35.7	100.0
	교육서비스업	(5)	80.0	2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83.3	16.7	100.0
	기타	(6)	33.3	66.7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75.0	25.0	100.0
	10억~50억 미만	(15)	66.7	33.3	100.0
	50억~100억 미만	(19)	84.2	15.8	100.0
	100억~500억 미만	(17)	70.6	29.4	100.0
	500억 이상	(35)	80.0	2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6.1	23.9	100.0
	없음	(35)	77.1	22.9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85.3	14.7	100.0
	경험 없음	(38)	60.5	39.5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71.1	28.9	100.0
	없음	(61)	80.3	19.7	100.0

39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9〉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관심 정도_A형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 체험형 CSR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5.7	6.6	29.2	46.2	12.3	12.3	58.5	3.53	63.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0.0	36.6	51.2	4.9	7.3	56.1	3.46	61.6
	벤처스타트업	(35)	5.7	2.9	22.9	42.9	25.7	8.6	68.6	3.80	70.0
	대기업	(30)	3.3	20.0	26.7	43.3	6.7	23.3	50.0	3.30	57.5
업력	7년 이하	(25)	12.0	4.0	12.0	44.0	28.0	16.0	72.0	3.72	68.0
	8~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11~20년	(18)	5.6	5.6	33.3	55.6	0.0	11.1	55.6	3.39	59.7
	21~30년	(23)	4.3	4.3	39.1	43.5	8.7	8.7	52.2	3.48	62.0
	31~50년	(22)	0.0	9.1	36.4	50.0	4.5	9.1	54.5	3.50	62.5
	51년 이상	(12)	8.3	16.7	33.3	25.0	16.7	25.0	41.7	3.25	56.3
업종	제조업	(48)	2.1	4.2	27.1	47.9	18.8	6.3	66.7	3.77	69.3
	건설업	(6)	16.7	16.7	33.3	33.3	0.0	33.3	33.3	2.83	45.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66.7	8.3	0.0	75.0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66.7	0.0	16.7	66.7	3.33	58.3
기타	(6)	50.0	50.0	0.0	0.0	0.0	100.0	0.0	1.50	1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5.0	30.0	35.0	25.0	10.0	60.0	3.70	67.5
	10억~50억 미만	(15)	6.7	0.0	26.7	53.3	13.3	6.7	66.7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5.3	0.0	31.6	52.6	10.5	5.3	63.2	3.63	65.8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35.3	41.2	11.8	11.8	52.9	3.41	60.3
	500억 이상	(35)	2.9	17.1	25.7	48.6	5.7	20.0	54.3	3.37	59.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8.5	29.6	46.5	11.3	12.7	57.7	3.52	63.0
	없음	(35)	8.6	2.9	28.6	45.7	14.3	11.4	60.0	3.54	6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4	4.4	25.0	48.5	14.7	11.8	63.2	3.59	64.7
	경험 없음	(38)	2.6	10.5	36.8	42.1	7.9	13.2	50.0	3.42	60.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13.3	28.9	46.7	8.9	15.6	55.6	3.47	61.7
	없음	(61)	8.2	1.6	29.5	45.9	14.8	9.8	60.7	3.57	64.3

〈부록 표60〉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관심 정도_B형 해외 기술 및 경영학교 운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3.8	13.2	38.7	28.3	16.0	17.0	44.3	3.40	59.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14.6	46.3	24.4	14.6	14.6	39.0	3.39	59.8
	벤처스타트업	(35)	8.6	5.7	34.3	37.1	14.3	14.3	51.4	3.43	60.7
	대기업	(30)	3.3	20.0	33.3	23.3	20.0	23.3	43.3	3.37	59.2
업력	7년 이하	(25)	8.0	4.0	36.0	28.0	24.0	12.0	52.0	3.56	64.0
	8~10년	(6)	0.0	16.7	50.0	33.3	0.0	16.7	33.3	3.17	54.2
	11~20년	(18)	5.6	11.1	44.4	27.8	11.1	16.7	38.9	3.28	56.9
	21~30년	(23)	4.3	13.0	43.5	30.4	8.7	17.4	39.1	3.26	56.5
	31~50년	(22)	0.0	22.7	31.8	27.3	18.2	22.7	45.5	3.41	60.2
	51년 이상	(12)	0.0	16.7	33.3	25.0	25.0	16.7	50.0	3.58	64.6
업종	제조업	(48)	4.2	14.6	41.7	20.8	18.8	18.8	39.6	3.35	58.9
	건설업	(6)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41.7	25.0	25.0	8.3	50.0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14.3	28.6	0.0	42.9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28.6	50.0	7.1	14.3	57.1	3.50	62.5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16.7 16.7	0.0 16.7	50.0 33.3	33.3 33.3	0.0 0.0	33.3 33.3	33.3 2.83	2.83 45.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5.0	55.0	20.0	10.0	15.0	30.0	3.15	53.8
	10억~50억 미만	(15)	0.0	20.0	26.7	33.3	20.0	20.0	53.3	3.53	63.3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6.8	31.6	15.8	15.8	47.4	3.42	60.5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47.1	35.3	11.8	5.9	47.1	3.53	63.2
	500억 이상	(35)	2.9	20.0	31.4	25.7	20.0	22.9	45.7	3.40	6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5.5	36.6	26.8	18.3	18.3	45.1	3.42	60.6
	없음	(35)	5.7	8.6	42.9	31.4	11.4	14.3	42.9	3.34	5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10.3	36.8	30.9	19.1	13.2	50.0	3.53	63.2
	경험 없음	(38)	5.3	18.4	42.1	23.7	10.5	23.7	34.2	3.16	53.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20.0	35.6	31.1	8.9	24.4	40.0	3.20	55.0
	없음	(61)	3.3	8.2	41.0	26.2	21.3	11.5	47.5	3.54	63.5

39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61〉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관심 정도_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3.8	30.2	47.2	16.0	6.6	63.2	3.70	67.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6.6	46.3	14.6	2.4	61.0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8.6	0.0	25.7	51.4	14.3	8.6	65.7	3.63	65.7
	대기업	(30)	0.0	10.0	26.7	43.3	20.0	10.0	63.3	3.73	68.3
업력	7년 이하	(25)	8.0	0.0	24.0	48.0	20.0	8.0	68.0	3.72	68.0
	8~10년	(6)	0.0	0.0	0.0	83.3	16.7	0.0	100.0	4.17	79.2
	11~20년	(18)	5.6	5.6	50.0	33.3	5.6	11.1	38.9	3.28	56.9
	21~30년	(23)	0.0	4.3	34.8	47.8	13.0	4.3	60.9	3.70	67.4
	31~50년	(22)	0.0	4.5	40.9	45.5	9.1	4.5	54.5	3.59	64.8
	51년 이상	(12)	0.0	8.3	0.0	50.0	41.7	8.3	91.7	4.25	81.3
업종	제조업	(48)	2.1	4.2	29.2	52.1	12.5	6.3	64.6	3.69	67.2
	건설업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35.7	42.9	21.4	0.0	64.3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20.0	20.0	0.0	4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기타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0.0	25.0	60.0	10.0	5.0	70.0	3.70	67.5
	10억~50억 미만	(15)	6.7	0.0	40.0	33.3	20.0	6.7	53.3	3.60	65.0
	50억~100억 미만	(19)	5.3	0.0	31.6	52.6	10.5	5.3	63.2	3.63	65.8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9.4	47.1	23.5	0.0	70.6	3.94	73.5
	500억 이상	(35)	0.0	11.4	28.6	42.9	17.1	11.4	60.0	3.66	6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5.6	26.8	49.3	16.9	7.0	66.2	3.75	68.7
	없음	(35)	5.7	0.0	37.1	42.9	14.3	5.7	57.1	3.60	6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2.9	23.5	55.9	14.7	5.9	70.6	3.76	69.1
	경험 없음	(38)	2.6	5.3	42.1	31.6	18.4	7.9	50.0	3.58	64.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31.1	48.9	11.1	8.9	60.0	3.60	65.0
	없음	(61)	3.3	1.6	29.5	45.9	19.7	4.9	65.6	3.77	69.3

〈부록 표62〉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관심 정도_D형 유희장비 이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5.1	15.1	28.3	36.8	4.7	30.2	41.5	3.01	50.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4.6	26.8	43.9	9.8	19.5	53.7	3.39	59.8
	벤처스타트업	(35)	25.7	14.3	25.7	31.4	2.9	40.0	34.3	2.71	42.9
	대기업	(30)	16.7	16.7	33.3	33.3	0.0	33.3	33.3	2.83	45.8
업력	7년 이하	(25)	32.0	12.0	20.0	32.0	4.0	44.0	36.0	2.64	41.0
	8~10년	(6)	16.7	33.3	16.7	33.3	0.0	50.0	33.3	2.67	41.7
	11~20년	(18)	5.6	5.6	27.8	50.0	11.1	11.1	61.1	3.56	63.9
	21~30년	(23)	4.3	17.4	43.5	30.4	4.3	21.7	34.8	3.13	53.3
	31~50년	(22)	4.5	18.2	31.8	40.9	4.5	22.7	45.5	3.23	55.7
	51년 이상	(12)	33.3	16.7	16.7	33.3	0.0	50.0	33.3	2.50	37.5
업종	제조업	(48)	14.6	18.8	29.2	33.3	4.2	33.3	37.5	2.94	48.4
	건설업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16.7	58.3	8.3	16.7	66.7	3.58	64.6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0.0	42.9	42.9	0.0	14.3	42.9	3.14	53.6
	금융/보험업	(2)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7.1	7.1	35.7	50.0	0.0	14.3	50.0	3.29	57.1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20.0	20.0	0.0	60.0	20.0	2.20	3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기타	(6)	33.3	50.0	16.7	0.0	0.0	83.3	0.0	1.83	2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20.0	35.0	15.0	0.0	50.0	15.0	2.35	33.8
	10억~50억 미만	(15)	13.3	0.0	26.7	53.3	6.7	13.3	60.0	3.40	60.0
	50억~100억 미만	(19)	5.3	15.8	21.1	42.1	15.8	21.1	57.9	3.47	61.8
	100억~500억 미만	(17)	5.9	17.6	41.2	29.4	5.9	23.5	35.3	3.12	52.9
	500억 이상	(35)	17.1	17.1	22.9	42.9	0.0	34.3	42.9	2.91	4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9.9	14.1	28.2	40.8	7.0	23.9	47.9	3.21	55.3
	없음	(35)	25.7	17.1	28.6	28.6	0.0	42.9	28.6	2.60	4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9.1	14.7	29.4	30.9	5.9	33.8	36.8	2.90	47.4
	경험 없음	(38)	7.9	15.8	26.3	47.4	2.6	23.7	50.0	3.21	55.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1.1	20.0	33.3	35.6	0.0	31.1	35.6	2.93	48.3
	없음	(61)	18.0	11.5	24.6	37.7	8.2	29.5	45.9	3.07	51.6

39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63〉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사업발굴 형태별 관심 정도_공공제안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2.8	35.8	49.1	10.4	4.7	59.4	3.63	65.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26.8	53.7	17.1	2.4	70.7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2.9	5.7	25.7	54.3	11.4	8.6	65.7	3.66	66.4
	대기업	(30)	3.3	0.0	60.0	36.7	0.0	3.3	36.7	3.30	57.5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4.0	48.0	20.0	8.0	68.0	3.76	69.0
	8~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11~20년	(18)	0.0	0.0	50.0	44.4	5.6	0.0	50.0	3.56	63.9
	21~30년	(23)	0.0	0.0	34.8	52.2	13.0	0.0	65.2	3.78	69.6
	31~50년	(22)	0.0	9.1	40.9	45.5	4.5	9.1	50.0	3.45	61.4
	51년 이상	(12)	8.3	0.0	41.7	50.0	0.0	8.3	5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2.1	4.2	35.4	47.9	10.4	6.3	58.3	3.60	65.1
	건설업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66.7	16.7	8.3	83.3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28.6	14.3	0.0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1.4	71.4	7.1	0.0	78.6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80.0	20.0	0.0	0.0	2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기타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5.0	30.0	45.0	15.0	10.0	60.0	3.60	65.0
	10억~50억 미만	(15)	0.0	6.7	13.3	80.0	0.0	6.7	80.0	3.73	68.3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6.3	52.6	15.8	5.3	68.4	3.79	69.7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9.4	52.9	17.6	0.0	70.6	3.88	72.1
	500억 이상	(35)	2.9	0.0	57.1	34.3	5.7	2.9	40.0	3.40	6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1.4	35.2	53.5	8.5	2.8	62.0	3.66	66.5
	없음	(35)	2.9	5.7	37.1	40.0	14.3	8.6	54.3	3.57	6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2.9	36.8	50.0	8.8	4.4	58.8	3.62	65.4
	경험 없음	(38)	2.6	2.6	34.2	47.4	13.2	5.3	60.5	3.66	66.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2.2	48.9	37.8	11.1	2.2	48.9	3.58	64.4
	없음	(61)	3.3	3.3	26.2	57.4	9.8	6.6	67.2	3.67	66.8

〈부록 표64〉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사업발굴 형태별 관심 정도_민간제한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1.9	34.9	47.2	15.1	2.8	62.3	3.74	68.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0.0	36.6	43.9	19.5	0.0	63.4	3.83	70.7
	벤처스타트업	(35)	0.0	0.0	34.3	48.6	17.1	0.0	65.7	3.83	70.7
	대기업	(30)	3.3	6.7	33.3	50.0	6.7	10.0	56.7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0.0	0.0	32.0	48.0	20.0	0.0	68.0	3.88	72.0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11~20년	(18)	0.0	5.6	50.0	27.8	16.7	5.6	44.4	3.56	63.9
	21~30년	(23)	0.0	4.3	34.8	47.8	13.0	4.3	60.9	3.70	67.4
	31~50년	(22)	0.0	0.0	27.3	59.1	13.6	0.0	72.7	3.86	71.6
	51년 이상	(12)	8.3	0.0	41.7	50.0	0.0	8.3	5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0.0	2.1	31.3	52.1	14.6	2.1	66.7	3.79	69.8
	건설업	(6)	16.7	0.0	33.3	50.0	0.0	16.7	50.0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41.7	33.3	25.0	0.0	58.3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83.3	16.7	0.0	0.0	16.7	3.17	54.2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30.0	55.0	15.0	0.0	70.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0.0	46.7	40.0	13.3	0.0	53.3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42.1	36.8	21.1	0.0	57.9	3.79	69.7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3.5	52.9	23.5	0.0	76.5	4.00	75.0
	500억 이상	(35)	2.9	5.7	34.3	48.6	8.6	8.6	57.1	3.54	63.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2.8	36.6	42.3	16.9	4.2	59.2	3.70	67.6
	없음	(35)	0.0	0.0	31.4	57.1	11.4	0.0	68.6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0.0	29.4	51.5	19.1	0.0	70.6	3.90	72.4
	경험 없음	(38)	2.6	5.3	44.7	39.5	7.9	7.9	47.4	3.45	61.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4.4	31.1	51.1	13.3	4.4	64.4	3.73	68.3
	없음	(61)	1.6	0.0	37.7	44.3	16.4	1.6	60.7	3.74	68.4

40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65>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사업발굴 형태별 관심 정도_공공협약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3.8	35.8	43.4	14.2	6.6	57.5	3.62	65.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34.1	43.9	17.1	4.9	61.0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2.9	2.9	37.1	42.9	14.3	5.7	57.1	3.63	65.7
	대기업	(30)	6.7	3.3	36.7	43.3	10.0	10.0	53.3	3.47	61.7
업력	7년 이하	(25)	0.0	4.0	28.0	40.0	28.0	4.0	68.0	3.92	73.0
	8~1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1~20년	(18)	5.6	11.1	44.4	38.9	0.0	16.7	38.9	3.17	54.2
	21~30년	(23)	4.3	4.3	39.1	52.2	0.0	8.7	52.2	3.39	59.8
	31~50년	(22)	0.0	0.0	40.9	36.4	22.7	0.0	59.1	3.82	70.5
	51년 이상	(12)	8.3	0.0	25.0	50.0	16.7	8.3	66.7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2.1	35.4	52.1	10.4	2.1	62.5	3.71	67.7
	건설업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41.7	25.0	33.3	0.0	58.3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14.3	50.0	21.4	14.3	71.4	3.79	69.6
	교육서비스업	(5)	0.0	20.0	60.0	20.0	0.0	20.0	2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66.7	0.0	16.7	66.7	3.33	58.3
기타	(6)	16.7	0.0	50.0	16.7	16.7	16.7	33.3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25.0	65.0	10.0	0.0	75.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46.7	13.3	6.7	60.0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5.3	5.3	42.1	21.1	26.3	10.5	47.4	3.58	64.5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47.1	47.1	5.9	0.0	52.9	3.59	64.7
	500억 이상	(35)	5.7	5.7	34.3	40.0	14.3	11.4	54.3	3.51	6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2.8	36.6	42.3	14.1	7.0	56.3	3.59	64.8
	없음	(35)	0.0	5.7	34.3	45.7	14.3	5.7	60.0	3.69	67.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2.9	39.7	42.6	13.2	4.4	55.9	3.63	65.8
	경험 없음	(38)	5.3	5.3	28.9	44.7	15.8	10.5	60.5	3.61	6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	40.0	44.4	11.1	4.4	55.6	3.60	65.0
	없음	(61)	3.3	4.9	32.8	42.6	16.4	8.2	59.0	3.64	66.0

〈부록 표66〉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공공행정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8.5	10.4	35.8	37.7	7.5	18.9	45.3	3.25	56.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7.3	48.8	34.1	9.8	7.3	43.9	3.46	61.6
	벤처스타트업	(35)	20.0	8.6	22.9	40.0	8.6	28.6	48.6	3.09	52.1
	대기업	(30)	6.7	16.7	33.3	40.0	3.3	23.3	43.3	3.17	54.2
업력	7년 이하	(25)	28.0	8.0	20.0	36.0	8.0	36.0	44.0	2.88	47.0
	8~10년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11~20년	(18)	0.0	11.1	38.9	38.9	11.1	11.1	50.0	3.50	62.5
	21~30년	(23)	4.3	13.0	43.5	26.1	13.0	17.4	39.1	3.30	57.6
	31~50년	(22)	0.0	4.5	45.5	50.0	0.0	4.5	50.0	3.45	61.4
	51년 이상	(12)	8.3	25.0	25.0	41.7	0.0	33.3	41.7	3.00	50.0
업종	제조업	(48)	10.4	10.4	47.9	27.1	4.2	20.8	31.3	3.04	51.0
	건설업	(6)	16.7	16.7	16.7	50.0	0.0	33.3	5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50.0	16.7	8.3	66.7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7.1	0.0	14.3	71.4	7.1	7.1	78.6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20.0	0.0	60.0	0.0	20.0	20.0	2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33.3	16.7	33.3	16.7	33.3	50.0	3.33	58.3
기타	(6)	16.7	16.7	50.0	16.7	0.0	33.3	16.7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10.0	30.0	30.0	0.0	40.0	30.0	2.60	40.0
	10억~50억 미만	(15)	6.7	0.0	20.0	66.7	6.7	6.7	73.3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6.8	26.3	26.3	10.5	52.6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47.1	41.2	5.9	5.9	47.1	3.47	61.8
	500억 이상	(35)	5.7	17.1	40.0	34.3	2.9	22.9	37.1	3.11	5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11.3	32.4	42.3	9.9	15.5	52.1	3.42	60.6
	없음	(35)	17.1	8.6	42.9	28.6	2.9	25.7	31.4	2.91	4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8.8	14.7	35.3	33.8	7.4	23.5	41.2	3.16	54.0
	경험 없음	(38)	7.9	2.6	36.8	44.7	7.9	10.5	52.6	3.42	60.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11.1	37.8	35.6	8.9	17.8	44.4	3.29	57.2
	없음	(61)	9.8	9.8	34.4	39.3	6.6	19.7	45.9	3.23	55.7

40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67〉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교육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6.6	31.1	41.5	17.9	9.4	59.4	3.65	66.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4.9	31.7	46.3	14.6	7.3	61.0	3.66	66.5
	벤처스타트업	(35)	0.0	11.4	25.7	40.0	22.9	11.4	62.9	3.74	68.6
	대기업	(30)	6.7	3.3	36.7	36.7	16.7	10.0	53.3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0.0	12.0	20.0	40.0	28.0	12.0	68.0	3.84	71.0
	8~1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1~20년	(18)	0.0	11.1	55.6	27.8	5.6	11.1	33.3	3.28	56.9
	21~30년	(23)	8.7	8.7	30.4	34.8	17.4	17.4	52.2	3.43	60.9
	31~50년	(22)	0.0	0.0	31.8	50.0	18.2	0.0	68.2	3.86	71.6
	51년 이상	(12)	8.3	0.0	16.7	58.3	16.7	8.3	75.0	3.75	68.8
업종	제조업	(48)	0.0	4.2	27.1	52.1	16.7	4.2	68.8	3.81	70.3
	건설업	(6)	16.7	33.3	16.7	33.3	0.0	50.0	33.3	2.67	41.7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14.3	42.9	0.0	57.1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57.1	35.7	7.1	0.0	42.9	3.50	62.5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16.7	50.0	16.7	0.0	33.3	16.7	2.67	41.7
기타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5.0	35.0	35.0	15.0	15.0	50.0	3.50	62.5
	10억~50억 미만	(1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1.6	36.8	21.1	10.5	57.9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9.4	41.2	23.5	5.9	64.7	3.82	70.6
	500억 이상	(35)	8.6	2.9	25.7	48.6	14.3	11.4	62.9	3.57	64.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7.0	31.0	39.4	18.3	11.3	57.7	3.61	65.1
	없음	(35)	0.0	5.7	31.4	45.7	17.1	5.7	62.9	3.74	6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5.9	26.5	45.6	20.6	7.4	66.2	3.78	69.5
	경험 없음	(38)	5.3	7.9	39.5	34.2	13.2	13.2	47.4	3.42	60.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8.9	35.6	37.8	15.6	11.1	53.3	3.56	63.9
	없음	(61)	3.3	4.9	27.9	44.3	19.7	8.2	63.9	3.72	68.0

〈부록 표68〉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직업훈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7.5	26.4	44.3	18.9	10.4	63.2	3.69	67.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4.9	24.4	43.9	24.4	7.3	68.3	3.83	70.7
	벤처스타트업	(35)	0.0	11.4	22.9	45.7	20.0	11.4	65.7	3.74	68.6
	대기업	(30)	6.7	6.7	33.3	43.3	10.0	13.3	53.3	3.43	60.8
업력	7년 이하	(25)	0.0	12.0	28.0	32.0	28.0	12.0	60.0	3.76	69.0
	8~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11~20년	(18)	0.0	11.1	22.2	50.0	16.7	11.1	66.7	3.72	68.1
	21~30년	(23)	8.7	4.3	21.7	56.5	8.7	13.0	65.2	3.52	63.0
	31~50년	(22)	0.0	4.5	27.3	36.4	31.8	4.5	68.2	3.95	73.9
	51년 이상	(12)	8.3	8.3	41.7	41.7	0.0	16.7	41.7	3.17	54.2
업종	제조업	(48)	0.0	8.3	27.1	47.9	16.7	8.3	64.6	3.73	68.2
	건설업	(6)	16.7	33.3	33.3	16.7	0.0	50.0	16.7	2.50	37.5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8.3	41.7	33.3	16.7	75.0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1.4	57.1	21.4	0.0	78.6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기타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5.0	35.0	40.0	10.0	15.0	50.0	3.45	61.3
	10억~50억 미만	(15)	0.0	0.0	33.3	53.3	13.3	0.0	66.7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5.3	47.4	36.8	10.5	84.2	4.11	77.6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7.6	52.9	23.5	5.9	76.5	3.94	73.5
	500억 이상	(35)	8.6	5.7	34.3	37.1	14.3	14.3	51.4	3.43	6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8.5	25.4	42.3	19.7	12.7	62.0	3.65	66.2
	없음	(35)	0.0	5.7	28.6	48.6	17.1	5.7	65.7	3.77	69.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7.4	27.9	42.6	20.6	8.8	63.2	3.74	68.4
	경험 없음	(38)	5.3	7.9	23.7	47.4	15.8	13.2	63.2	3.61	6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8.9	24.4	51.1	13.3	11.1	64.4	3.64	66.1
	없음	(61)	3.3	6.6	27.9	39.3	23.0	9.8	62.3	3.72	68.0

40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69〉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에너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9.4	9.4	20.8	43.4	17.0	18.9	60.4	3.49	62.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4.9	19.5	53.7	17.1	9.8	70.7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17.1	17.1	14.3	31.4	20.0	34.3	51.4	3.20	55.0
	대기업	(30)	6.7	6.7	30.0	43.3	13.3	13.3	56.7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28.0	16.0	8.0	20.0	28.0	44.0	48.0	3.04	51.0
	8~1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1~20년	(18)	0.0	5.6	22.2	61.1	11.1	5.6	72.2	3.78	69.4
	21~30년	(23)	4.3	8.7	30.4	39.1	17.4	13.0	56.5	3.57	64.1
	31~50년	(22)	0.0	9.1	22.7	54.5	13.6	9.1	68.2	3.73	68.2
	51년 이상	(12)	16.7	8.3	16.7	50.0	8.3	25.0	58.3	3.25	56.3
업종	제조업	(48)	8.3	8.3	16.7	45.8	20.8	16.7	66.7	3.63	65.6
	건설업	(6)	16.7	16.7	33.3	33.3	0.0	33.3	33.3	2.83	45.8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8.3	41.7	33.3	16.7	75.0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7.1	7.1	42.9	42.9	0.0	14.3	42.9	3.21	55.4
	교육서비스업	(5)	20.0	20.0	20.0	40.0	0.0	40.0	40.0	2.80	4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0.0	66.7	16.7	16.7	83.3	3.67	66.7
기타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15.0	20.0	25.0	15.0	40.0	40.0	2.90	47.5
	10억~50억 미만	(15)	6.7	6.7	26.7	40.0	20.0	13.3	60.0	3.60	65.0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10.5	57.9	21.1	10.5	78.9	3.89	72.4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17.6	47.1	23.5	11.8	70.6	3.76	69.1
	500억 이상	(35)	8.6	8.6	25.7	45.7	11.4	17.1	57.1	3.43	6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7.0	22.5	45.1	19.7	12.7	64.8	3.66	66.5
	없음	(35)	17.1	14.3	17.1	40.0	11.4	31.4	51.4	3.14	5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1.8	10.3	17.6	42.6	17.6	22.1	60.3	3.44	61.0
	경험 없음	(38)	5.3	7.9	26.3	44.7	15.8	13.2	60.5	3.58	64.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6.7	26.7	55.6	6.7	11.1	62.2	3.53	63.3
	없음	(61)	13.1	11.5	16.4	34.4	24.6	24.6	59.0	3.46	61.5

〈부록 표70〉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농촌개발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1.3	14.2	33.0	27.4	14.2	25.5	41.5	3.19	54.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9.8	36.6	29.3	19.5	14.6	48.8	3.49	62.2
	벤처스타트업	(35)	20.0	17.1	25.7	28.6	8.6	37.1	37.1	2.89	47.1
	대기업	(30)	10.0	16.7	36.7	23.3	13.3	26.7	36.7	3.13	53.3
업력	7년 이하	(25)	32.0	8.0	16.0	28.0	16.0	40.0	44.0	2.88	47.0
	8~10년	(6)	0.0	50.0	0.0	33.3	16.7	50.0	50.0	3.17	54.2
	11~20년	(18)	0.0	22.2	16.7	44.4	16.7	22.2	61.1	3.56	63.9
	21~30년	(23)	8.7	13.0	43.5	26.1	8.7	21.7	34.8	3.13	53.3
	31~50년	(22)	4.5	0.0	59.1	18.2	18.2	4.5	36.4	3.45	61.4
	51년 이상	(12)	8.3	25.0	41.7	16.7	8.3	33.3	25.0	2.92	47.9
업종	제조업	(48)	8.3	16.7	33.3	29.2	12.5	25.0	41.7	3.21	55.2
	건설업	(6)	0.0	16.7	66.7	16.7	0.0	16.7	16.7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41.7	16.7	25.0	16.7	41.7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42.9	28.6	14.3	14.3	42.9	3.43	60.7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5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21.4	14.3	14.3	42.9	7.1	35.7	5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5)	20.0	20.0	40.0	0.0	20.0	40.0	20.0	2.80	4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33.3	50.0	0.0	16.7	50.0	3.17	54.2
기타	(6)	33.3	0.0	16.7	16.7	33.3	33.3	50.0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20.0	15.0	35.0	5.0	45.0	40.0	2.75	43.8
	10억~50억 미만	(15)	13.3	20.0	33.3	20.0	13.3	33.3	33.3	3.00	50.0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26.3	42.1	15.8	15.8	57.9	3.53	63.2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35.3	23.5	29.4	11.8	52.9	3.65	66.2
	500억 이상	(35)	8.6	14.3	45.7	20.0	11.4	22.9	31.4	3.11	5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5	11.3	38.0	29.6	12.7	19.7	42.3	3.27	56.7
	없음	(35)	17.1	20.0	22.9	22.9	17.1	37.1	40.0	3.03	5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3.2	11.8	29.4	29.4	16.2	25.0	45.6	3.24	55.9
	경험 없음	(38)	7.9	18.4	39.5	23.7	10.5	26.3	34.2	3.11	52.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9	13.3	37.8	31.1	8.9	22.2	40.0	3.18	54.4
	없음	(61)	13.1	14.8	29.5	24.6	18.0	27.9	42.6	3.20	54.9

40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1〉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보건의료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8.5	12.3	26.4	34.0	18.9	20.8	52.8	3.42	60.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7.3	34.1	29.3	24.4	12.2	53.7	3.61	65.2
	벤처스타트업	(35)	17.1	14.3	11.4	37.1	20.0	31.4	57.1	3.29	57.1
	대기업	(30)	3.3	16.7	33.3	36.7	10.0	20.0	46.7	3.33	58.3
업력	7년 이하	(25)	20.0	12.0	12.0	24.0	32.0	32.0	56.0	3.36	59.0
	8~10년	(6)	16.7	50.0	16.7	16.7	0.0	66.7	16.7	2.33	33.3
	11~20년	(18)	0.0	11.1	33.3	44.4	11.1	11.1	55.6	3.56	63.9
	21~30년	(23)	8.7	8.7	30.4	26.1	26.1	17.4	52.2	3.52	63.0
	31~50년	(22)	4.5	0.0	36.4	45.5	13.6	4.5	59.1	3.64	65.9
	51년 이상	(12)	0.0	25.0	25.0	41.7	8.3	25.0	5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4.2	14.6	29.2	35.4	16.7	18.8	52.1	3.46	61.5
	건설업	(6)	0.0	50.0	33.3	16.7	0.0	50.0	16.7	2.67	41.7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33.3	33.3	25.0	8.3	58.3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21.4	7.1	28.6	42.9	0.0	28.6	42.9	2.93	48.2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0.0	40.0	0.0	60.0	4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기타	(6)	33.3	0.0	50.0	0.0	16.7	33.3	16.7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5.0	10.0	25.0	20.0	30.0	25.0	50.0	3.40	60.0
	10억~50억 미만	(15)	20.0	6.7	26.7	33.3	13.3	26.7	46.7	3.13	53.3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21.1	36.8	26.3	15.8	63.2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17.6	17.6	52.9	11.8	17.6	64.7	3.59	64.7
	500억 이상	(35)	5.7	14.3	34.3	31.4	14.3	20.0	45.7	3.34	5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15.5	22.5	38.0	19.7	19.7	57.7	3.54	63.4
	없음	(35)	17.1	5.7	34.3	25.7	17.1	22.9	42.9	3.20	5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4	11.8	25.0	33.8	22.1	19.1	55.9	3.51	62.9
	경험 없음	(38)	10.5	13.2	28.9	34.2	13.2	23.7	47.4	3.26	56.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9	13.3	31.1	37.8	8.9	22.2	46.7	3.24	56.1
	없음	(61)	8.2	11.5	23.0	31.1	26.2	19.7	57.4	3.56	63.9

〈부록 표72〉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교통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9.4	16.0	33.0	31.1	10.4	25.5	41.5	3.17	54.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4.6	29.3	39.0	12.2	19.5	51.2	3.39	59.8
	벤처스타트업	(35)	17.1	14.3	37.1	25.7	5.7	31.4	31.4	2.89	47.1
	대기업	(30)	6.7	20.0	33.3	26.7	13.3	26.7	40.0	3.20	55.0
업력	7년 이하	(25)	24.0	24.0	28.0	16.0	8.0	48.0	24.0	2.60	40.0
	8~10년	(6)	0.0	33.3	0.0	66.7	0.0	33.3	66.7	3.33	58.3
	11~20년	(18)	0.0	11.1	50.0	33.3	5.6	11.1	38.9	3.33	58.3
	21~30년	(23)	13.0	4.3	26.1	43.5	13.0	17.4	56.5	3.39	59.8
	31~50년	(22)	0.0	9.1	45.5	31.8	13.6	9.1	45.5	3.50	62.5
	51년 이상	(12)	8.3	33.3	25.0	16.7	16.7	41.7	33.3	3.00	50.0
업종	제조업	(48)	8.3	18.8	29.2	27.1	16.7	27.1	43.8	3.25	56.3
	건설업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28.6	14.3	0.0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7.1	21.4	35.7	35.7	0.0	28.6	35.7	3.00	50.0
	교육서비스업	(5)	40.0	0.0	40.0	20.0	0.0	40.0	2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33.3	50.0	0.0	16.7	50.0	3.17	54.2
기타	(6)	16.7	33.3	50.0	0.0	0.0	50.0	0.0	2.33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20.0	25.0	30.0	0.0	45.0	30.0	2.60	40.0
	10억~50억 미만	(15)	6.7	13.3	26.7	53.3	0.0	20.0	53.3	3.27	56.7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52.6	26.3	5.3	15.8	31.6	3.21	55.3
	100억~500억 미만	(17)	0.0	17.6	17.6	41.2	23.5	17.6	64.7	3.71	67.6
	500억 이상	(35)	11.4	14.3	37.1	20.0	17.1	25.7	37.1	3.17	54.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15.5	35.2	31.0	12.7	21.1	43.7	3.30	57.4
	없음	(35)	17.1	17.1	28.6	31.4	5.7	34.3	37.1	2.91	4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17.6	36.8	26.5	8.8	27.9	35.3	3.06	51.5
	경험 없음	(38)	7.9	13.2	26.3	39.5	13.2	21.1	52.6	3.37	59.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13.3	35.6	37.8	6.7	20.0	44.4	3.24	56.1
	없음	(61)	11.5	18.0	31.1	26.2	13.1	29.5	39.3	3.11	52.9

40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3〉 향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_물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관심 높다	⑤ 매우 관심 높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3.2	4.7	27.4	38.7	16.0	17.9	54.7	3.40	59.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2.4	19.5	48.8	22.0	9.8	70.7	3.76	68.9
	벤처스타트업	(35)	25.7	2.9	22.9	31.4	17.1	28.6	48.6	3.11	52.9
	대기업	(30)	6.7	10.0	43.3	33.3	6.7	16.7	40.0	3.23	55.8
업력	7년 이하	(25)	36.0	4.0	16.0	28.0	16.0	40.0	44.0	2.84	46.0
	8~10년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11~20년	(18)	0.0	5.6	27.8	55.6	11.1	5.6	66.7	3.72	68.1
	21~30년	(23)	13.0	4.3	21.7	39.1	21.7	17.4	60.9	3.52	63.0
	31~50년	(22)	0.0	0.0	36.4	45.5	18.2	0.0	63.6	3.82	70.5
	51년 이상	(12)	8.3	16.7	50.0	16.7	8.3	25.0	25.0	3.00	50.0
업종	제조업	(48)	10.4	8.3	33.3	29.2	18.8	18.8	47.9	3.38	59.4
	건설업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16.7	58.3	25.0	0.0	83.3	4.08	77.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50.0	0.0	0.0	0.0	5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14.3	0.0	21.4	57.1	7.1	14.3	64.3	3.43	60.7
	교육서비스업	(5)	40.0	0.0	20.0	40.0	0.0	40.0	40.0	2.6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기타	(6)	50.0	0.0	33.3	16.7	0.0	50.0	16.7	2.17	2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10.0	25.0	20.0	15.0	40.0	35.0	2.80	45.0
	10억~50억 미만	(15)	20.0	0.0	40.0	33.3	6.7	20.0	40.0	3.07	5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1.1	57.9	21.1	0.0	78.9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5.9	0.0	11.8	47.1	35.3	5.9	82.4	4.06	76.5
	500억 이상	(35)	11.4	8.6	34.3	37.1	8.6	20.0	45.7	3.23	5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4.2	28.2	42.3	19.7	9.9	62.0	3.66	66.5
	없음	(35)	28.6	5.7	25.7	31.4	8.6	34.3	40.0	2.86	4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6.2	2.9	22.1	38.2	20.6	19.1	58.8	3.44	61.0
	경험 없음	(38)	7.9	7.9	36.8	39.5	7.9	15.8	47.4	3.32	57.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9	6.7	28.9	44.4	11.1	15.6	55.6	3.42	60.6
	없음	(61)	16.4	3.3	26.2	34.4	19.7	19.7	54.1	3.38	59.4

〈부록 표74〉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빈곤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7.5	25.5	28.3	27.4	12.3	55.7	6.6	3.71	67.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7.3	31.7	31.7	19.5	12.2	51.2	4.9	3.56	64.1
	벤처스타트업	(35)	5.7	5.7	28.6	25.7	25.7	11.4	51.4	8.6	3.66	66.4
	대기업	(30)	3.3	10.0	13.3	26.7	40.0	13.3	66.7	6.7	3.96	74.1
업력	7년 이하	(25)	12.0	0.0	24.0	20.0	36.0	12.0	56.0	8.0	3.74	68.5
	8~10년	(6)	0.0	0.0	50.0	33.3	16.7	0.0	50.0	0.0	3.67	66.7
	11~20년	(18)	0.0	5.6	27.8	27.8	16.7	5.6	44.4	22.2	3.71	67.9
	21~30년	(23)	8.7	17.4	26.1	30.4	17.4	26.1	47.8	0.0	3.30	57.6
	31~50년	(22)	0.0	0.0	31.8	36.4	27.3	0.0	63.6	4.5	3.95	73.8
	51년 이상	(12)	0.0	25.0	0.0	25.0	50.0	25.0	75.0	0.0	4.00	75.0
업종	제조업	(48)	4.2	8.3	29.2	29.2	20.8	12.5	50.0	8.3	3.59	64.8
	건설업	(6)	16.7	16.7	0.0	16.7	50.0	33.3	66.7	0.0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16.7	41.7	33.3	8.3	75.0	0.0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28.6	28.6	0.0	57.1	28.6	4.20	80.0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7.1	7.1	35.7	21.4	21.4	14.3	42.9	7.1	3.46	61.5
	교육서비스업	(5)	0.0	40.0	20.0	20.0	20.0	40.0	40.0	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50.0	16.7	33.3	0.0	50.0	0.0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5.0	0.0	15.0	10.0	50.0	15.0	60.0	10.0	3.89	72.2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33.3	26.7	6.7	60.0	6.7	3.86	71.4
	50억~100억 미만	(19)	0.0	5.3	47.4	31.6	15.8	5.3	47.4	0.0	3.58	64.5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35.3	47.1	0.0	11.8	47.1	5.9	3.25	56.3
	500억 이상	(35)	0.0	17.1	14.3	25.7	34.3	17.1	60.0	8.6	3.84	71.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7.0	25.4	29.6	29.6	11.3	59.2	4.2	3.76	69.1
	없음	(35)	5.7	8.6	25.7	25.7	22.9	14.3	48.6	11.4	3.58	64.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5.9	5.9	30.9	27.9	27.9	11.8	55.9	1.5	3.67	66.8
	경험 없음	(38)	2.6	10.5	15.8	28.9	26.3	13.2	55.3	15.8	3.78	69.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26.7	28.9	24.4	8.9	53.3	11.1	3.75	68.8
	없음	(61)	6.6	8.2	24.6	27.9	29.5	14.8	57.4	3.3	3.68	66.9

41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5〉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식량농업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2.3	7.5	26.4	23.6	18.9	19.8	42.5	11.3	3.33	58.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4.9	39.0	12.2	26.8	12.2	39.0	9.8	3.51	62.8
	벤처스타트업	(35)	25.7	11.4	8.6	25.7	14.3	37.1	40.0	14.3	2.90	47.5
	대기업	(30)	3.3	6.7	30.0	36.7	13.3	10.0	50.0	10.0	3.56	63.9
업력	7년 이하	(25)	24.0	8.0	12.0	20.0	20.0	32.0	40.0	16.0	3.05	51.2
	8~10년	(6)	50.0	0.0	16.7	16.7	16.7	50.0	33.3	0.0	2.50	37.5
	11~20년	(18)	0.0	5.6	44.4	16.7	16.7	5.6	33.3	16.7	3.53	63.3
	21~30년	(23)	13.0	8.7	30.4	26.1	13.0	21.7	39.1	8.7	3.19	54.8
	31~50년	(22)	4.5	9.1	22.7	22.7	31.8	13.6	54.5	9.1	3.75	68.8
	51년 이상	(12)	0.0	8.3	33.3	41.7	8.3	8.3	50.0	8.3	3.55	63.6
업종	제조업	(48)	14.6	10.4	20.8	25.0	14.6	25.0	39.6	14.6	3.17	54.3
	건설업	(6)	16.7	0.0	16.7	16.7	33.3	16.7	50.0	16.7	3.60	6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16.7	50.0	25.0	8.3	75.0	0.0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14.3	0.0	42.9	28.6	3.80	70.0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14.3	42.9	14.3	7.1	28.6	21.4	7.1	2.85	46.2
	교육서비스업	(5)	40.0	0.0	20.0	20.0	0.0	40.0	20.0	20.0	2.25	31.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50.0	0.0	50.0	0.0	50.0	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0.0	10.0	5.0	10.0	25.0	30.0	35.0	30.0	3.14	53.6
	10억~50억 미만	(15)	26.7	6.7	6.7	33.3	26.7	33.3	60.0	0.0	3.27	56.7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6.8	26.3	10.5	15.8	36.8	10.5	3.29	57.4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52.9	11.8	17.6	11.8	29.4	5.9	3.25	56.3
	500억 이상	(35)	5.7	8.6	28.6	31.4	17.1	14.3	48.6	8.6	3.50	62.5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5	7.0	31.0	26.8	18.3	15.5	45.1	8.5	3.43	60.8
	없음	(35)	20.0	8.6	17.1	17.1	20.0	28.6	37.1	17.1	3.10	52.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8.8	25.0	26.5	14.7	26.5	41.2	7.4	3.13	53.2
	경험 없음	(38)	2.6	5.3	28.9	18.4	26.3	7.9	44.7	18.4	3.74	68.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8.9	22.2	17.8	24.4	13.3	42.2	22.2	3.63	65.7
	없음	(61)	18.0	6.6	29.5	27.9	14.8	24.6	42.6	3.3	3.15	53.8

〈부록 표76〉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건강웰빙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성(①+ ②)	긍정 성(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5.7	10.4	23.6	30.2	22.6	16.0	52.8	7.5	3.58	64.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2.2	24.4	31.7	22.0	17.1	53.7	4.9	3.56	64.1
	벤처스타트업	(35)	11.4	8.6	17.1	28.6	25.7	20.0	54.3	8.6	3.53	63.3
	대기업	(30)	0.0	10.0	30.0	30.0	20.0	10.0	50.0	10.0	3.67	66.7
업력	7년 이하	(25)	16.0	0.0	8.0	36.0	28.0	16.0	64.0	12.0	3.68	67.0
	8~10년	(6)	16.7	16.7	50.0	0.0	16.7	33.3	16.7	0.0	2.83	45.8
	11~20년	(18)	0.0	11.1	16.7	27.8	27.8	11.1	55.6	16.7	3.87	71.7
	21~30년	(23)	4.3	17.4	30.4	30.4	17.4	21.7	47.8	0.0	3.39	59.8
	31~50년	(22)	0.0	13.6	13.6	36.4	27.3	13.6	63.6	9.1	3.85	71.3
	51년 이상	(12)	0.0	8.3	58.3	25.0	8.3	8.3	33.3	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6.3	10.4	22.9	27.1	25.0	16.7	52.1	8.3	3.59	64.8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66.7	8.3	8.3	75.0	8.3	3.82	70.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14.3	42.9	14.3	14.3	57.1	14.3	3.67	66.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7.1	14.3	28.6	21.4	21.4	21.4	42.9	7.1	3.38	59.6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0.0	20.0	20.0	20.0	20.0	3.25	56.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0.0	5.0	25.0	45.0	10.0	70.0	15.0	4.12	77.9
	10억~50억 미만	(15)	13.3	13.3	20.0	33.3	13.3	26.7	46.7	6.7	3.21	55.4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31.6	31.6	15.8	15.8	47.4	5.3	3.50	62.5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29.4	47.1	5.9	11.8	52.9	5.9	3.38	59.4
	500억 이상	(35)	0.0	17.1	28.6	22.9	25.7	17.1	48.6	5.7	3.61	65.2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11.3	26.8	35.2	18.3	15.5	53.5	4.2	3.54	63.6
	없음	(35)	8.6	8.6	17.1	20.0	31.4	17.1	51.4	14.3	3.67	66.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8.8	11.8	26.5	25.0	23.5	20.6	48.5	4.4	3.45	61.2
	경험 없음	(38)	0.0	7.9	18.4	39.5	21.1	7.9	60.5	13.2	3.85	71.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6.7	20.0	28.9	28.9	6.7	57.8	15.6	3.95	73.7
	없음	(61)	9.8	13.1	26.2	31.1	18.0	23.0	49.2	1.6	3.35	58.8

41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7>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교육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성(①+ ②)	긍정 성(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7.5	19.8	32.1	22.6	12.3	54.7	13.2	3.70	67.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9.8	31.7	22.0	12.2	14.6	34.1	19.5	3.33	58.3
	벤처스타트업	(35)	8.6	11.4	14.3	40.0	17.1	20.0	57.1	8.6	3.50	62.5
	대기업	(30)	0.0	0.0	10.0	36.7	43.3	0.0	80.0	10.0	4.37	84.3
업력	7년 이하	(25)	8.0	4.0	28.0	24.0	20.0	12.0	44.0	16.0	3.52	63.1
	8~10년	(6)	33.3	16.7	16.7	16.7	16.7	50.0	33.3	0.0	2.67	41.7
	11~20년	(18)	0.0	0.0	22.2	44.4	5.6	0.0	50.0	27.8	3.77	69.2
	21~30년	(23)	4.3	13.0	21.7	39.1	17.4	17.4	56.5	4.3	3.55	63.6
	31~50년	(22)	0.0	13.6	9.1	27.3	31.8	13.6	59.1	18.2	3.94	73.6
	51년 이상	(12)	0.0	0.0	16.7	33.3	50.0	0.0	83.3	0.0	4.33	83.3
업종	제조업	(48)	6.3	8.3	18.8	31.3	20.8	14.6	52.1	14.6	3.61	65.2
	건설업	(6)	16.7	0.0	0.0	50.0	16.7	16.7	66.7	16.7	3.60	6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33.3	8.3	8.3	41.7	25.0	3.56	63.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0.0	42.9	42.9	0.0	85.7	14.3	4.50	87.5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7.1	14.3	21.4	21.4	21.4	21.4	42.9	14.3	3.42	60.4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60.0	0.0	20.0	60.0	0.0	3.40	6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0.0	3.83	70.8
기타	(6)	0.0	0.0	33.3	16.7	50.0	0.0	66.7	0.0	4.17	7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0.0	15.0	30.0	25.0	10.0	55.0	2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6.7	20.0	26.7	20.0	26.7	26.7	46.7	0.0	3.40	60.0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31.6	26.3	10.5	15.8	36.8	15.8	3.38	59.4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11.8	41.2	17.6	17.6	58.8	11.8	3.53	63.3
	500억 이상	(35)	0.0	2.9	17.1	37.1	28.6	2.9	65.7	14.3	4.07	76.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8.5	18.3	32.4	25.4	11.3	57.7	12.7	3.79	69.8
	없음	(35)	8.6	5.7	22.9	31.4	17.1	14.3	48.6	14.3	3.50	62.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7.4	8.8	22.1	29.4	22.1	16.2	51.5	10.3	3.56	63.9
	경험 없음	(38)	0.0	5.3	15.8	36.8	23.7	5.3	60.5	18.4	3.97	74.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6.7	11.1	33.3	24.4	11.1	57.8	20.0	3.83	70.8
	없음	(61)	4.9	8.2	26.2	31.1	21.3	13.1	52.5	8.2	3.61	65.2

〈부록 표78〉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양성평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6.6	9.4	26.4	25.5	22.6	16.0	48.1	9.4	3.53	63.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9.8	26.8	26.8	24.4	14.6	51.2	7.3	3.61	65.1
	벤처스타트업	(35)	11.4	17.1	22.9	14.3	22.9	28.6	37.1	11.4	3.23	55.6
	대기업	(30)	3.3	0.0	30.0	36.7	20.0	3.3	56.7	10.0	3.78	69.4
업력	7년 이하	(25)	12.0	12.0	16.0	20.0	28.0	24.0	48.0	12.0	3.45	61.4
	8~10년	(6)	33.3	16.7	16.7	16.7	16.7	50.0	33.3	0.0	2.67	41.7
	11~20년	(18)	0.0	5.6	27.8	27.8	22.2	5.6	50.0	16.7	3.80	70.0
	21~30년	(23)	8.7	13.0	30.4	21.7	13.0	21.7	34.8	13.0	3.20	55.0
	31~50년	(22)	0.0	4.5	27.3	27.3	36.4	4.5	63.6	4.5	4.00	75.0
	51년 이상	(12)	0.0	8.3	41.7	41.7	8.3	8.3	50.0	0.0	3.50	62.5
업종	제조업	(48)	8.3	14.6	25.0	22.9	16.7	22.9	39.6	12.5	3.29	57.1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8.3	25.0	58.3	0.0	83.3	8.3	4.55	88.6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28.6	0.0	57.1	14.3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14.3	7.1	28.6	21.4	14.3	21.4	35.7	14.3	3.17	54.2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0.0	40.0	0.0	40.0	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0.0	3.50	62.5
기타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0.0	10.0	10.0	25.0	15.0	30.0	40.0	20.0	3.06	51.6
	10억~50억 미만	(15)	6.7	20.0	6.7	20.0	40.0	26.7	60.0	6.7	3.71	67.9
	50억~100억 미만	(19)	0.0	5.3	42.1	26.3	26.3	5.3	52.6	0.0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29.4	11.8	29.4	17.6	41.2	11.8	3.47	61.7
	500억 이상	(35)	0.0	8.6	34.3	34.3	14.3	8.6	48.6	8.6	3.59	64.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9.9	29.6	23.9	26.8	14.1	50.7	5.6	3.63	65.7
	없음	(35)	11.4	8.6	20.0	28.6	14.3	20.0	42.9	17.1	3.31	57.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13.2	29.4	17.6	26.5	23.5	44.1	2.9	3.38	59.5
	경험 없음	(38)	0.0	2.6	21.1	39.5	15.8	2.6	55.3	21.1	3.87	71.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6.7	24.4	17.8	28.9	11.1	46.7	17.8	3.73	68.2
	없음	(61)	8.2	11.5	27.9	31.1	18.0	19.7	49.2	3.3	3.41	60.2

414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79〉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물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1.3	11.3	23.6	19.8	18.9	22.6	38.7	15.1	3.28	56.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2.2	34.1	14.6	19.5	17.1	34.1	14.6	3.37	59.3
	벤처스타트업	(35)	25.7	8.6	8.6	20.0	20.0	34.3	40.0	17.1	3.00	50.0
	대기업	(30)	3.3	13.3	26.7	26.7	16.7	16.7	43.3	13.3	3.46	61.5
업력	7년 이하	(25)	28.0	8.0	8.0	16.0	24.0	36.0	40.0	16.0	3.00	50.0
	8~10년	(6)	33.3	0.0	33.3	16.7	16.7	33.3	33.3	0.0	2.83	45.8
	11~20년	(18)	5.6	11.1	33.3	11.1	11.1	16.7	22.2	27.8	3.15	53.8
	21~30년	(23)	4.3	21.7	21.7	30.4	8.7	26.1	39.1	13.0	3.20	55.0
	31~50년	(22)	4.5	9.1	18.2	18.2	36.4	13.6	54.5	13.6	3.84	71.1
	51년 이상	(12)	0.0	8.3	50.0	25.0	8.3	8.3	33.3	8.3	3.36	59.1
업종	제조업	(48)	14.6	6.3	25.0	16.7	22.9	20.8	39.6	14.6	3.32	57.9
	건설업	(6)	16.7	0.0	0.0	33.3	50.0	16.7	83.3	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8.3	50.0	8.3	25.0	58.3	8.3	3.36	59.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28.6	14.3	14.3	0.0	28.6	14.3	42.9	2.75	43.8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14.3	7.1	28.6	14.3	14.3	21.4	28.6	21.4	3.09	52.3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0.0	20.0	20.0	20.0	40.0	3.33	58.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0.0	3.50	62.5
기타	(6)	16.7	33.3	33.3	0.0	16.7	50.0	16.7	0.0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5.0	10.0	10.0	25.0	30.0	35.0	25.0	3.07	51.7
	10억~50억 미만	(15)	20.0	6.7	26.7	20.0	13.3	26.7	33.3	13.3	3.00	50.0
	50억~100억 미만	(19)	5.3	15.8	26.3	21.1	15.8	21.1	36.8	15.8	3.31	57.8
	100억~500억 미만	(17)	11.8	11.8	23.5	29.4	11.8	23.5	41.2	11.8	3.20	55.0
	500억 이상	(35)	2.9	14.3	28.6	20.0	22.9	17.1	42.9	11.4	3.52	6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12.7	23.9	23.9	19.7	18.3	43.7	14.1	3.46	61.5
	없음	(35)	22.9	8.6	22.9	11.4	17.1	31.4	28.6	17.1	2.90	47.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6.2	11.8	26.5	16.2	20.6	27.9	36.8	8.8	3.15	53.6
	경험 없음	(38)	2.6	10.5	18.4	26.3	15.8	13.2	42.1	26.3	3.57	64.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2.2	26.7	11.1	28.9	8.9	40.0	24.4	3.71	67.6
	없음	(61)	14.8	18.0	21.3	26.2	11.5	32.8	37.7	8.2	3.02	50.4

〈부록 표80〉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에너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성(①+ ②)	긍정 성(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9.4	7.5	22.6	24.5	24.5	17.0	49.1	11.3	3.53	63.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2.2	31.7	17.1	24.4	17.1	41.5	9.8	3.49	62.2
	벤처스타트업	(35)	22.9	8.6	11.4	20.0	22.9	31.4	42.9	14.3	3.13	53.3
	대기업	(30)	0.0	0.0	23.3	40.0	26.7	0.0	66.7	10.0	4.04	75.9
업력	7년 이하	(25)	24.0	12.0	12.0	8.0	28.0	36.0	36.0	16.0	3.05	51.2
	8~10년	(6)	33.3	0.0	33.3	16.7	16.7	33.3	33.3	0.0	2.83	45.8
	11~20년	(18)	5.6	0.0	22.2	38.9	16.7	5.6	55.6	16.7	3.73	68.3
	21~30년	(23)	4.3	21.7	21.7	21.7	26.1	26.1	47.8	4.3	3.45	61.4
	31~50년	(22)	0.0	0.0	27.3	22.7	36.4	0.0	59.1	13.6	4.11	77.6
	51년 이상	(12)	0.0	0.0	33.3	50.0	8.3	0.0	58.3	8.3	3.73	68.2
업종	제조업	(48)	10.4	2.1	20.8	31.3	22.9	12.5	54.2	12.5	3.62	65.5
	건설업	(6)	16.7	0.0	0.0	33.3	33.3	16.7	66.7	16.7	3.80	70.0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16.7	16.7	33.3	25.0	50.0	8.3	3.55	63.6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14.3	42.9	0.0	57.1	28.6	4.40	85.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21.4	14.3	21.4	28.6	14.3	35.7	42.9	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0.0	20.0	20.0	4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0.0	33.3	16.7	33.3	0.0	3.50	62.5
기타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0.0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5.0	5.0	15.0	35.0	30.0	50.0	15.0	3.35	58.8
	10억~50억 미만	(15)	13.3	20.0	20.0	20.0	20.0	33.3	40.0	6.7	3.14	53.6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6.8	21.1	21.1	15.8	42.1	5.3	3.44	61.1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17.6	23.5	35.3	11.8	58.8	11.8	3.80	70.0
	500억 이상	(35)	0.0	5.7	28.6	34.3	17.1	5.7	51.4	14.3	3.73	68.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4.2	22.5	32.4	25.4	9.9	57.7	9.9	3.75	68.8
	없음	(35)	17.1	14.3	22.9	8.6	22.9	31.4	31.4	14.3	3.07	51.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3.2	8.8	22.1	27.9	20.6	22.1	48.5	7.4	3.37	59.1
	경험 없음	(38)	2.6	5.3	23.7	18.4	31.6	7.9	50.0	18.4	3.87	71.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2.2	15.6	28.9	33.3	6.7	62.2	15.6	4.00	75.0
	없음	(61)	13.1	11.5	27.9	21.3	18.0	24.6	39.3	8.2	3.21	55.4

41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81〉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일자리경제성장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3.8	4.7	27.4	21.7	29.2	8.5	50.9	13.2	3.78	69.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7.3	31.7	19.5	29.3	9.8	48.8	9.8	3.73	68.2
	벤처스타트업	(35)	8.6	2.9	22.9	20.0	25.7	11.4	45.7	20.0	3.64	66.1
	대기업	(30)	0.0	3.3	26.7	26.7	33.3	3.3	60.0	10.0	4.00	75.0
업력	7년 이하	(25)	12.0	0.0	20.0	12.0	40.0	12.0	52.0	16.0	3.81	70.2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0.0	4.17	79.2
	11~20년	(18)	0.0	5.6	27.8	16.7	27.8	5.6	44.4	22.2	3.86	71.4
	21~30년	(23)	4.3	8.7	26.1	26.1	21.7	13.0	47.8	13.0	3.60	65.0
	31~50년	(22)	0.0	9.1	31.8	18.2	27.3	9.1	45.5	13.6	3.74	68.4
	51년 이상	(12)	0.0	0.0	41.7	33.3	25.0	0.0	58.3	0.0	3.83	70.8
업종	제조업	(48)	6.3	4.2	29.2	20.8	25.0	10.4	45.8	14.6	3.63	65.9
	건설업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0.0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50.0	25.0	25.0	0.0	50.0	0.0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0.0	42.9	28.6	0.0	71.4	28.6	4.40	85.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14.3	21.4	28.6	14.3	50.0	21.4	3.82	70.5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0.0	20.0	0.0	20.0	40.0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0.0	3.83	70.8
기타	(6)	0.0	0.0	16.7	0.0	83.3	0.0	83.3	0.0	4.67	9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5.0	0.0	5.0	15.0	35.0	15.0	50.0	30.0	3.79	69.6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13.3	40.0	6.7	53.3	13.3	4.00	75.0
	50억~100억 미만	(19)	0.0	5.3	42.1	26.3	15.8	5.3	42.1	10.5	3.59	64.7
	100억~500억 미만	(17)	5.9	0.0	41.2	17.6	29.4	5.9	47.1	5.9	3.69	67.2
	500억 이상	(35)	0.0	8.6	25.7	28.6	28.6	8.6	57.1	8.6	3.84	71.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31.0	22.5	31.0	5.6	53.5	9.9	3.86	71.5
	없음	(35)	8.6	5.7	20.0	20.0	25.7	14.3	45.7	20.0	3.61	65.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5.9	5.9	29.4	25.0	23.5	11.8	48.5	10.3	3.61	65.2
	경험 없음	(38)	0.0	2.6	23.7	15.8	39.5	2.6	55.3	18.4	4.13	78.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4.4	22.2	17.8	33.3	4.4	51.1	22.2	4.03	75.7
	없음	(61)	6.6	4.9	31.1	24.6	26.2	11.5	50.8	6.6	3.63	65.8

〈부록 표82〉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산업화혁신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3.8	6.6	23.6	27.4	32.1	10.4	59.4	6.6	3.83	70.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7.3	29.3	17.1	39.0	9.8	56.1	4.9	3.87	71.8
	벤처스타트업	(35)	8.6	11.4	20.0	25.7	28.6	20.0	54.3	5.7	3.58	64.4
	대기업	(30)	0.0	0.0	20.0	43.3	26.7	0.0	70.0	10.0	4.07	76.9
업력	7년 이하	(25)	12.0	8.0	16.0	28.0	28.0	20.0	56.0	8.0	3.57	64.1
	8~10년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0.0	4.00	75.0
	11~20년	(18)	0.0	5.6	22.2	44.4	16.7	5.6	61.1	11.1	3.81	70.3
	21~30년	(23)	4.3	8.7	30.4	21.7	34.8	13.0	56.5	0.0	3.74	68.5
	31~50년	(22)	0.0	4.5	22.7	4.5	54.5	4.5	59.1	13.6	4.26	81.6
	51년 이상	(12)	0.0	0.0	33.3	58.3	8.3	0.0	66.7	0.0	3.75	68.8
업종	제조업	(48)	6.3	10.4	20.8	18.8	33.3	16.7	52.1	10.4	3.70	67.4
	건설업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16.7	58.3	16.7	8.3	75.0	0.0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0.0	42.9	42.9	0.0	85.7	14.3	4.50	87.5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1.4	35.7	28.6	7.1	64.3	7.1	3.92	73.1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0.0	40.0	0.0	40.0	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33.3	16.7	50.0	0.0	66.7	0.0	4.17	7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5.0	5.0	10.0	15.0	45.0	20.0	60.0	10.0	3.78	69.4
	10억~50억 미만	(15)	0.0	13.3	20.0	46.7	20.0	13.3	66.7	0.0	3.73	68.3
	50억~100억 미만	(19)	0.0	5.3	36.8	31.6	21.1	5.3	52.6	5.3	3.72	68.1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17.6	17.6	47.1	11.8	64.7	5.9	4.00	75.0
	500억 이상	(35)	0.0	5.7	28.6	28.6	28.6	5.7	57.1	8.6	3.88	71.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8.5	23.9	32.4	31.0	9.9	63.4	2.8	3.86	71.4
	없음	(35)	8.6	2.9	22.9	17.1	34.3	11.4	51.4	14.3	3.77	69.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5.9	10.3	25.0	27.9	27.9	16.2	55.9	2.9	3.64	65.9
	경험 없음	(38)	0.0	0.0	21.1	26.3	39.5	0.0	65.8	13.2	4.21	80.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6.7	22.2	26.7	33.3	6.7	60.0	11.1	3.98	74.4
	없음	(61)	6.6	6.6	24.6	27.9	31.1	13.1	59.0	3.3	3.73	68.2

41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83>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불평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6.6	12.3	30.2	22.6	17.0	18.9	39.6	11.3	3.35	58.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9.8	41.5	12.2	22.0	14.6	34.1	9.8	3.41	60.1
	벤처스타트업	(35)	14.3	17.1	17.1	22.9	14.3	31.4	37.1	14.3	3.07	51.7
	대기업	(30)	0.0	10.0	30.0	36.7	13.3	10.0	50.0	10.0	3.59	64.8
업력	7년 이하	(25)	20.0	12.0	24.0	12.0	20.0	32.0	32.0	12.0	3.00	50.0
	8~10년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0.0	3.00	50.0
	11~20년	(18)	0.0	5.6	38.9	16.7	22.2	5.6	38.9	16.7	3.67	66.7
	21~30년	(23)	4.3	17.4	39.1	17.4	13.0	21.7	30.4	8.7	3.19	54.8
	31~50년	(22)	0.0	9.1	22.7	31.8	18.2	9.1	50.0	18.2	3.72	68.1
	51년 이상	(12)	0.0	16.7	25.0	50.0	8.3	16.7	58.3	0.0	3.50	62.5
업종	제조업	(48)	8.3	14.6	27.1	20.8	12.5	22.9	33.3	16.7	3.18	54.4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8.3	8.3	16.7	41.7	25.0	16.7	66.7	0.0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28.6	14.3	14.3	42.9	14.3	3.50	62.5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7.1	7.1	35.7	21.4	21.4	14.3	42.9	7.1	3.46	61.5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0.0	0.0	20.0	0.0	40.0	2.67	41.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0.0	33.3	16.7	33.3	0.0	3.50	62.5
기타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5.0	10.0	10.0	20.0	20.0	25.0	40.0	25.0	3.27	56.7
	10억~50억 미만	(15)	6.7	20.0	33.3	20.0	13.3	26.7	33.3	6.7	3.14	53.6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6.8	15.8	26.3	15.8	42.1	5.3	3.50	62.5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47.1	17.6	11.8	11.8	29.4	11.8	3.20	55.0
	500억 이상	(35)	0.0	17.1	28.6	31.4	14.3	17.1	45.7	8.6	3.47	61.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11.3	31.0	26.8	16.9	16.9	43.7	8.5	3.42	60.4
	없음	(35)	8.6	14.3	28.6	14.3	17.1	22.9	31.4	17.1	3.21	55.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17.6	29.4	16.2	16.2	27.9	32.4	10.3	3.11	52.9
	경험 없음	(38)	0.0	2.6	31.6	34.2	18.4	2.6	52.6	13.2	3.79	69.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11.1	24.4	20.0	24.4	11.1	44.4	20.0	3.72	68.1
	없음	(61)	11.5	13.1	34.4	24.6	11.5	24.6	36.1	4.9	3.12	53.0

〈부록 표84〉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도시공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7.5	11.3	28.3	23.6	18.9	18.9	42.5	10.4	3.39	59.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7.1	36.6	19.5	17.1	22.0	36.6	4.9	3.28	57.1
	벤처스타트업	(35)	17.1	11.4	20.0	17.1	22.9	28.6	40.0	11.4	3.19	54.8
	대기업	(30)	0.0	3.3	26.7	36.7	16.7	3.3	53.3	16.7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24.0	16.0	16.0	8.0	20.0	40.0	28.0	16.0	2.81	45.2
	8~10년	(6)	16.7	0.0	50.0	16.7	16.7	16.7	33.3	0.0	3.17	54.2
	11~20년	(18)	0.0	11.1	27.8	27.8	22.2	11.1	50.0	11.1	3.69	67.2
	21~30년	(23)	4.3	17.4	34.8	30.4	4.3	21.7	34.8	8.7	3.14	53.6
	31~50년	(22)	0.0	4.5	22.7	27.3	31.8	4.5	59.1	13.6	4.00	75.0
	51년 이상	(12)	0.0	8.3	41.7	33.3	16.7	8.3	50.0	0.0	3.58	64.6
업종	제조업	(48)	10.4	10.4	25.0	25.0	16.7	20.8	41.7	12.5	3.31	57.7
	건설업	(6)	0.0	0.0	16.7	33.3	16.7	0.0	50.0	33.3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25.0	33.3	25.0	16.7	25.0	41.7	0.0	3.33	58.3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0.0	57.1	0.0	57.1	14.3	4.33	83.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7.1	7.1	28.6	35.7	14.3	14.3	50.0	7.1	3.46	61.5
	교육서비스업	(5)	20.0	0.0	40.0	0.0	20.0	20.0	20.0	2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0.0	3.33	58.3
기타	(6)	16.7	33.3	16.7	16.7	16.7	50.0	33.3	0.0	2.83	45.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0.0	15.0	15.0	10.0	15.0	35.0	25.0	25.0	2.80	45.0
	10억~50억 미만	(15)	13.3	6.7	26.7	26.7	20.0	20.0	46.7	6.7	3.36	58.9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47.4	10.5	26.3	15.8	36.8	0.0	3.47	61.8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29.4	23.5	23.5	17.6	47.1	5.9	3.50	62.5
	500억 이상	(35)	2.9	8.6	25.7	37.1	14.3	11.4	51.4	11.4	3.58	64.5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9.9	31.0	26.8	21.1	14.1	47.9	7.0	3.55	63.6
	없음	(35)	14.3	14.3	22.9	17.1	14.3	28.6	31.4	17.1	3.03	50.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13.2	30.9	20.6	19.1	23.5	39.7	5.9	3.27	56.6
	경험 없음	(38)	2.6	7.9	23.7	28.9	18.4	10.5	47.4	18.4	3.65	66.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11.1	24.4	20.0	22.2	13.3	42.2	20.0	3.61	65.3
	없음	(61)	11.5	11.5	31.1	26.2	16.4	23.0	42.6	3.3	3.25	56.4

42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85〉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1+ 2)	긍정 (4+ 5)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8.5	12.3	20.8	31.1	17.0	20.8	48.1	10.4	3.40	6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7.3	29.3	36.6	17.1	12.2	53.7	4.9	3.56	64.1
	벤처스타트업	(35)	17.1	14.3	8.6	25.7	17.1	31.4	42.9	17.1	3.14	53.4
	대기업	(30)	3.3	16.7	23.3	30.0	16.7	20.0	46.7	10.0	3.44	61.1
업력	7년 이하	(25)	24.0	8.0	8.0	32.0	16.0	32.0	48.0	12.0	3.09	52.3
	8~10년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0.0	3.67	66.7
	11~20년	(18)	0.0	5.6	27.8	27.8	11.1	5.6	38.9	27.8	3.62	65.4
	21~30년	(23)	8.7	8.7	30.4	26.1	21.7	17.4	47.8	4.3	3.45	61.4
	31~50년	(22)	4.5	13.6	13.6	36.4	22.7	18.2	59.1	9.1	3.65	66.3
	51년 이상	(12)	0.0	33.3	33.3	25.0	8.3	33.3	33.3	0.0	3.08	52.1
업종	제조업	(48)	14.6	10.4	22.9	27.1	14.6	25.0	41.7	10.4	3.19	54.7
	건설업	(6)	16.7	16.7	0.0	33.3	33.3	33.3	66.7	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16.7	66.7	8.3	8.3	75.0	0.0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0.0	14.3	42.9	14.3	57.1	28.6	4.20	80.0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7.1	14.3	21.4	35.7	7.1	21.4	42.9	14.3	3.25	56.3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0.0	20.0	0.0	20.0	40.0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0.0	3.83	70.8
기타	(6)	0.0	33.3	33.3	16.7	16.7	33.3	33.3	0.0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5.0	5.0	15.0	20.0	35.0	35.0	25.0	2.87	46.7
	10억~50억 미만	(15)	6.7	26.7	6.7	33.3	20.0	33.3	53.3	6.7	3.36	58.9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1.6	36.8	10.5	10.5	47.4	10.5	3.53	63.2
	100억~500억 미만	(17)	5.9	0.0	29.4	52.9	5.9	5.9	58.8	5.9	3.56	64.1
	500억 이상	(35)	2.9	17.1	25.7	25.7	22.9	20.0	48.6	5.7	3.52	6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12.7	22.5	33.8	18.3	18.3	52.1	7.0	3.50	62.5
	없음	(35)	14.3	11.4	17.1	25.7	14.3	25.7	40.0	17.1	3.17	5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1.8	13.2	23.5	30.9	11.8	25.0	42.6	8.8	3.19	54.8
	경험 없음	(38)	2.6	10.5	15.8	31.6	26.3	13.2	57.9	13.2	3.79	69.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8.9	22.2	22.2	20.0	13.3	42.2	22.2	3.57	64.3
	없음	(61)	11.5	14.8	19.7	37.7	14.8	26.2	52.5	1.6	3.30	57.5

〈부록 표86〉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기후변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8.5	6.6	26.4	26.4	20.8	15.1	47.2	11.3	3.50	62.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2.2	31.7	24.4	19.5	19.5	43.9	4.9	3.38	59.6
	벤처스타트업	(35)	17.1	2.9	14.3	22.9	22.9	20.0	45.7	20.0	3.39	59.8
	대기업	(30)	0.0	3.3	33.3	33.3	20.0	3.3	53.3	10.0	3.78	69.4
업력	7년 이하	(25)	24.0	0.0	20.0	12.0	28.0	24.0	40.0	16.0	3.24	56.0
	8~10년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0.0	4.00	75.0
	11~20년	(18)	0.0	0.0	38.9	33.3	5.6	0.0	38.9	22.2	3.57	64.3
	21~30년	(23)	13.0	17.4	21.7	26.1	17.4	30.4	43.5	4.3	3.18	54.5
	31~50년	(22)	0.0	4.5	27.3	36.4	18.2	4.5	54.5	13.6	3.79	69.7
	51년 이상	(12)	0.0	8.3	33.3	33.3	25.0	8.3	58.3	0.0	3.75	68.8
업종	제조업	(48)	10.4	6.3	22.9	27.1	22.9	16.7	50.0	10.4	3.51	62.8
	건설업	(6)	16.7	16.7	0.0	16.7	50.0	33.3	66.7	0.0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33.3	33.3	16.7	8.3	50.0	8.3	3.64	65.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0.0	0.0	28.6	28.6	3.40	6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7.1	7.1	28.6	35.7	14.3	14.3	50.0	7.1	3.46	61.5
	교육서비스업	(5)	20.0	0.0	0.0	20.0	0.0	20.0	20.0	60.0	2.50	37.5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16.7	16.7 0.0	33.3 33.3	16.7 16.7	33.3 33.3	16.7 16.7	50.0 50.0	0.0 0.0	3.67 3.50	66.7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0.0	15.0	10.0	35.0	25.0	45.0	15.0	3.35	58.8
	10억~50억 미만	(15)	13.3	6.7	13.3	26.7	20.0	20.0	46.7	20.0	3.42	60.4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6.8	31.6	10.5	10.5	42.1	10.5	3.47	61.8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35.3	17.6	23.5	11.8	41.2	11.8	3.53	63.3
	500억 이상	(35)	2.9	8.6	28.6	37.1	17.1	11.4	54.3	5.7	3.61	65.2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7.0	31.0	29.6	19.7	9.9	49.3	9.9	3.63	65.6
	없음	(35)	20.0	5.7	17.1	20.0	22.9	25.7	42.9	14.3	3.23	55.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7.4	29.4	27.9	17.6	17.6	45.6	7.4	3.38	59.5
	경험 없음	(38)	5.3	5.3	21.1	23.7	26.3	10.5	50.0	18.4	3.74	68.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24.4	24.4	22.2	6.7	46.7	22.2	3.77	69.3
	없음	(61)	13.1	8.2	27.9	27.9	19.7	21.3	47.5	3.3	3.34	58.5

42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87〉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해양생태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성(①+ ②)	긍정 성(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0.4	11.3	24.5	19.8	24.5	21.7	44.3	9.4	3.41	60.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4.6	24.4	19.5	26.8	22.0	46.3	7.3	3.47	61.8
	벤처스타트업	(35)	20.0	8.6	11.4	22.9	22.9	28.6	45.7	14.3	3.23	55.8
	대기업	(30)	3.3	10.0	40.0	16.7	23.3	13.3	40.0	6.7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28.0	8.0	12.0	20.0	20.0	36.0	40.0	12.0	2.95	48.9
	8~10년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0.0	3.17	54.2
	11~20년	(18)	0.0	5.6	16.7	27.8	27.8	5.6	55.6	22.2	4.00	75.0
	21~30년	(23)	13.0	21.7	21.7	13.0	26.1	34.8	39.1	4.3	3.18	54.5
	31~50년	(22)	0.0	4.5	31.8	22.7	31.8	4.5	54.5	9.1	3.90	72.5
	51년 이상	(12)	0.0	16.7	50.0	25.0	8.3	16.7	33.3	0.0	3.25	56.3
업종	제조업	(48)	12.5	14.6	20.8	22.9	18.8	27.1	41.7	10.4	3.23	55.8
	건설업	(6)	16.7	0.0	16.7	16.7	50.0	16.7	66.7	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0.0	41.7	41.7	8.3	83.3	8.3	4.27	81.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0.0	28.6	14.3	28.6	28.6	3.60	65.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7.1	7.1	42.9	21.4	21.4	14.3	42.9	0.0	3.43	60.7
	교육서비스업	(5)	20.0	0.0	20.0	20.0	0.0	20.0	20.0	40.0	2.67	41.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33.3	33.3	16.7	0.0	16.7	66.7	16.7	0.0	2.33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10.0	20.0	0.0	30.0	35.0	30.0	15.0	3.00	50.0
	10억~50억 미만	(15)	13.3	13.3	13.3	33.3	20.0	26.7	53.3	6.7	3.36	58.9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6.3	31.6	21.1	5.3	52.6	15.8	3.81	70.3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23.5	29.4	23.5	17.6	52.9	5.9	3.50	62.5
	500억 이상	(35)	5.7	17.1	31.4	14.3	25.7	22.9	40.0	5.7	3.39	59.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0	9.9	25.4	23.9	26.8	16.9	50.7	7.0	3.58	64.4
	없음	(35)	17.1	14.3	22.9	11.4	20.0	31.4	31.4	14.3	3.03	50.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3.2	13.2	26.5	22.1	17.6	26.5	39.7	7.4	3.19	54.8
	경험 없음	(38)	5.3	7.9	21.1	15.8	36.8	13.2	52.6	13.2	3.82	70.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13.3	20.0	17.8	28.9	17.8	46.7	15.6	3.63	65.8
	없음	(61)	14.8	9.8	27.9	21.3	21.3	24.6	42.6	4.9	3.26	56.5

〈부록 표88〉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육상생태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9.4	11.3	25.5	23.6	17.0	20.8	40.6	13.2	3.32	57.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2.2	34.1	22.0	14.6	19.5	36.6	9.8	3.27	56.8
	벤처스타트업	(35)	20.0	14.3	14.3	20.0	17.1	34.3	37.1	14.3	3.00	50.0
	대기업	(30)	0.0	6.7	26.7	30.0	20.0	6.7	50.0	16.7	3.76	69.0
업력	7년 이하	(25)	28.0	12.0	12.0	8.0	16.0	40.0	24.0	24.0	2.63	40.8
	8~10년	(6)	16.7	33.3	16.7	16.7	16.7	50.0	33.3	0.0	2.83	45.8
	11~20년	(18)	0.0	0.0	50.0	27.8	11.1	0.0	38.9	11.1	3.56	64.1
	21~30년	(23)	8.7	21.7	17.4	26.1	13.0	30.4	39.1	13.0	3.15	53.8
	31~50년	(22)	0.0	4.5	22.7	31.8	27.3	4.5	59.1	13.6	3.95	73.7
	51년 이상	(12)	0.0	8.3	41.7	33.3	16.7	8.3	50.0	0.0	3.58	64.6
업종	제조업	(48)	12.5	8.3	27.1	25.0	10.4	20.8	35.4	16.7	3.15	53.8
	건설업	(6)	16.7	16.7	0.0	16.7	33.3	33.3	50.0	16.7	3.40	6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33.3	16.7	25.0	8.3	41.7	16.7	3.70	67.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14.3	42.9	14.3	14.3	57.1	14.3	3.67	66.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7.1	21.4	21.4	21.4	21.4	28.6	42.9	7.1	3.31	57.7
	교육서비스업	(5)	20.0	0.0	40.0	20.0	0.0	20.0	20.0	20.0	2.75	43.8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33.3	33.3	33.3	0.0	66.7	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15.0	5.0	10.0	15.0	40.0	25.0	30.0	2.64	41.1
	10억~50억 미만	(15)	13.3	20.0	33.3	13.3	20.0	33.3	33.3	0.0	3.07	51.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36.8	31.6	21.1	5.3	52.6	5.3	3.72	68.1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23.5	23.5	17.6	17.6	41.2	17.6	3.36	58.9
	500억 이상	(35)	2.9	11.4	28.6	31.4	14.3	14.3	45.7	11.4	3.48	6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8.5	26.8	29.6	18.3	14.1	47.9	11.3	3.52	63.1
	없음	(35)	17.1	17.1	22.9	11.4	14.3	34.3	25.7	17.1	2.86	46.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3.2	11.8	27.9	23.5	16.2	25.0	39.7	7.4	3.19	54.8
	경험 없음	(38)	2.6	10.5	21.1	23.7	18.4	13.2	42.1	23.7	3.59	64.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11.1	20.0	20.0	24.4	13.3	44.4	22.2	3.69	67.1
	없음	(61)	14.8	11.5	29.5	26.2	11.5	26.2	37.7	6.6	3.09	52.2

42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89〉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정의제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성(①+ ②)	긍정 성(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3.2	17.9	25.5	17.9	17.0	31.1	34.9	8.5	3.08	52.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19.5	31.7	14.6	19.5	29.3	34.1	4.9	3.15	53.8
	벤처스타트업	(35)	25.7	11.4	20.0	14.3	20.0	37.1	34.3	8.6	2.91	47.7
	대기업	(30)	3.3	23.3	23.3	26.7	10.0	26.7	36.7	13.3	3.19	54.8
업력	7년 이하	(25)	28.0	12.0	16.0	12.0	20.0	40.0	32.0	12.0	2.82	45.5
	8~10년	(6)	50.0	0.0	33.3	0.0	16.7	50.0	16.7	0.0	2.33	33.3
	11~20년	(18)	0.0	22.2	33.3	16.7	16.7	22.2	33.3	11.1	3.31	57.8
	21~30년	(23)	13.0	21.7	13.0	26.1	26.1	34.8	52.2	0.0	3.30	57.6
	31~50년	(22)	4.5	13.6	36.4	18.2	13.6	18.2	31.8	13.6	3.26	56.6
	51년 이상	(12)	0.0	33.3	33.3	25.0	0.0	33.3	25.0	8.3	2.91	47.7
업종	제조업	(48)	16.7	22.9	22.9	12.5	12.5	39.6	25.0	12.5	2.79	44.6
	건설업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0.0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25.0	41.7	8.3	66.7	0.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28.6	0.0	57.1	14.3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21.4	28.6	28.6	0.0	35.7	28.6	7.1	2.77	44.2
	교육서비스업	(5)	20.0	0.0	20.0	20.0	20.0	20.0	40.0	20.0	3.25	56.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0.0	33.3	16.7	33.3	0.0	3.50	62.5
기타	(6)	33.3	33.3	16.7	0.0	16.7	66.7	16.7	0.0	2.33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15.0	10.0	20.0	15.0	40.0	35.0	15.0	2.82	45.6
	10억~50억 미만	(15)	26.7	6.7	20.0	6.7	33.3	33.3	40.0	6.7	3.14	53.6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36.8	21.1	21.1	15.8	42.1	5.3	3.50	62.5
	100억~500억 미만	(17)	17.6	17.6	23.5	23.5	11.8	35.3	35.3	5.9	2.94	48.4
	500억 이상	(35)	5.7	25.7	31.4	17.1	11.4	31.4	28.6	8.6	3.03	50.8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9.9	16.9	28.2	21.1	18.3	26.8	39.4	5.6	3.22	55.6
	없음	(35)	20.0	20.0	20.0	11.4	14.3	40.0	25.7	14.3	2.77	44.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22.1	23.5	16.2	14.7	39.7	30.9	5.9	2.88	46.9
	경험 없음	(38)	5.3	10.5	28.9	21.1	21.1	15.8	42.1	13.2	3.48	62.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20.0	15.6	24.4	17.8	26.7	42.2	15.6	3.32	57.9
	없음	(61)	18.0	16.4	32.8	13.1	16.4	34.4	29.5	3.3	2.93	48.3

〈부록 표90〉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과거-현재_글로벌 파트너십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해당 없음 (활동 없음)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10.4	21.7	29.2	22.6	13.2	51.9	13.2	3.67	66.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9.8	17.1	36.6	19.5	12.2	56.1	14.6	3.71	67.9
	벤처스타트업	(35)	2.9	11.4	20.0	20.0	34.3	14.3	54.3	11.4	3.81	70.2
	대기업	(30)	3.3	10.0	30.0	30.0	13.3	13.3	43.3	13.3	3.46	61.5
업력	7년 이하	(25)	4.0	12.0	12.0	20.0	40.0	16.0	60.0	12.0	3.91	72.7
	8~10년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0.0	3.00	50.0
	11~20년	(18)	0.0	0.0	22.2	33.3	16.7	0.0	50.0	27.8	3.92	73.1
	21~30년	(23)	4.3	13.0	13.0	43.5	13.0	17.4	56.5	13.0	3.55	63.8
	31~50년	(22)	0.0	9.1	18.2	36.4	22.7	9.1	59.1	13.6	3.84	71.1
	51년 이상	(12)	0.0	16.7	58.3	8.3	16.7	16.7	25.0	0.0	3.25	56.3
업종	제조업	(48)	4.2	12.5	25.0	29.2	14.6	16.7	43.8	14.6	3.44	61.0
	건설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41.7	25.0	8.3	66.7	16.7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0.0	14.3	42.9	0.0	57.1	42.9	4.75	93.8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1.4	28.6	35.7	7.1	64.3	7.1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60.0	0.0	0.0	60.0	20.0	3.75	68.8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0.0	3.67	66.7
기타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10.0	10.0	20.0	35.0	15.0	55.0	20.0	3.88	71.9
	10억~50억 미만	(15)	0.0	20.0	6.7	26.7	40.0	20.0	66.7	6.7	3.93	73.2
	50억~100억 미만	(19)	0.0	5.3	31.6	42.1	10.5	5.3	52.6	10.5	3.65	66.2
	100억~500억 미만	(17)	5.9	0.0	29.4	23.5	23.5	5.9	47.1	17.6	3.71	67.9
	500억 이상	(35)	2.9	14.3	25.7	31.4	14.3	17.1	45.7	11.4	3.45	61.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2.7	23.9	23.9	23.9	15.5	47.9	12.7	3.61	65.3
	없음	(35)	2.9	5.7	17.1	40.0	20.0	8.6	60.0	14.3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13.2	27.9	27.9	19.1	16.2	47.1	8.8	3.52	62.9
	경험 없음	(38)	2.6	5.3	10.5	31.6	28.9	7.9	60.5	21.1	4.00	7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8.9	17.8	33.3	17.8	11.1	51.1	20.0	3.69	67.4
	없음	(61)	3.3	11.5	24.6	26.2	26.2	14.8	52.5	8.2	3.66	66.5

42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1〉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빈곤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8.5	11.3	31.1	32.1	17.0	19.8	49.1	3.38	59.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9.8	29.3	41.5	9.8	19.5	51.2	3.32	57.9
	벤처스타트업	(35)	2.9	5.7	42.9	28.6	20.0	8.6	48.6	3.57	64.3
	대기업	(30)	13.3	20.0	20.0	23.3	23.3	33.3	46.7	3.23	55.8
업력	7년 이하	(25)	4.0	4.0	32.0	36.0	24.0	8.0	60.0	3.72	68.0
	8~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11~20년	(18)	5.6	5.6	44.4	38.9	5.6	11.1	44.4	3.33	58.3
	21~30년	(23)	8.7	21.7	30.4	21.7	17.4	30.4	39.1	3.17	54.3
	31~50년	(22)	22.7	13.6	31.8	18.2	13.6	36.4	31.8	2.86	46.6
	51년 이상	(12)	0.0	16.7	16.7	41.7	25.0	16.7	66.7	3.75	68.8
업종	제조업	(48)	10.4	14.6	27.1	33.3	14.6	25.0	47.9	3.27	56.8
	건설업	(6)	16.7	16.7	50.0	0.0	16.7	33.3	16.7	2.83	45.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66.7	8.3	0.0	75.0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28.6	28.6	14.3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14.3	7.1	42.9	21.4	14.3	21.4	35.7	3.14	53.6
	교육서비스업	(5)	0.0	40.0	40.0	20.0	0.0	40.0	20.0	2.80	4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16.7	0.0	16.7	16.7	50.0	16.7	66.7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10.0	30.0	30.0	20.0	20.0	50.0	3.40	60.0
	10억~50억 미만	(15)	13.3	0.0	20.0	46.7	20.0	13.3	66.7	3.60	65.0
	50억~100억 미만	(19)	5.3	5.3	42.1	36.8	10.5	10.5	47.4	3.42	60.5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47.1	35.3	5.9	11.8	41.2	3.29	57.4
	500억 이상	(35)	8.6	22.9	22.9	22.9	22.9	31.4	45.7	3.29	5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0	9.9	31.0	33.8	18.3	16.9	52.1	3.46	61.6
	없음	(35)	11.4	14.3	31.4	28.6	14.3	25.7	42.9	3.20	5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4.4	10.3	29.4	38.2	17.6	14.7	55.9	3.54	63.6
	경험 없음	(38)	15.8	13.2	34.2	21.1	15.8	28.9	36.8	3.08	52.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3.3	13.3	33.3	28.9	11.1	26.7	40.0	3.11	52.8
	없음	(61)	4.9	9.8	29.5	34.4	21.3	14.8	55.7	3.57	64.3

〈부록 표92〉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식량농업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7.9	16.0	30.2	27.4	8.5	34.0	35.8	2.92	48.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2.2	29.3	39.0	12.2	19.5	51.2	3.37	59.1
	벤처스타트업	(35)	31.4	17.1	17.1	25.7	8.6	48.6	34.3	2.63	40.7
	대기업	(30)	16.7	20.0	46.7	13.3	3.3	36.7	16.7	2.67	41.7
업력	7년 이하	(25)	32.0	12.0	24.0	24.0	8.0	44.0	32.0	2.64	41.0
	8~10년	(6)	33.3	0.0	16.7	0.0	50.0	33.3	50.0	3.33	58.3
	11~20년	(18)	16.7	11.1	38.9	33.3	0.0	27.8	33.3	2.89	47.2
	21~30년	(23)	8.7	21.7	30.4	34.8	4.3	30.4	39.1	3.04	51.1
	31~50년	(22)	18.2	18.2	22.7	31.8	9.1	36.4	40.9	2.95	48.9
	51년 이상	(12)	0.0	25.0	50.0	16.7	8.3	25.0	25.0	3.08	52.1
업종	제조업	(48)	18.8	18.8	29.2	25.0	8.3	37.5	33.3	2.85	46.4
	건설업	(6)	16.7	0.0	50.0	16.7	16.7	16.7	33.3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33.3	50.0	8.3	8.3	58.3	3.58	64.6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28.6	14.3	28.6	0.0	57.1	28.6	2.43	35.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21.4	21.4	28.6	21.4	7.1	42.9	28.6	2.71	42.9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20.0	20.0	0.0	60.0	20.0	2.20	3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16.7	33.3	50.0	0.0	16.7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0.0	20.0	15.0	25.0	10.0	50.0	35.0	2.65	41.3
	10억~50억 미만	(15)	40.0	6.7	26.7	20.0	6.7	46.7	26.7	2.47	36.7
	50억~100억 미만	(19)	5.3	15.8	36.8	36.8	5.3	21.1	42.1	3.21	55.3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29.4	41.2	11.8	17.6	52.9	3.35	58.8
	500억 이상	(35)	11.4	22.9	37.1	20.0	8.6	34.3	28.6	2.91	4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2.7	15.5	33.8	29.6	8.5	28.2	38.0	3.06	51.4
	없음	(35)	28.6	17.1	22.9	22.9	8.6	45.7	31.4	2.66	4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9.1	14.7	26.5	29.4	10.3	33.8	39.7	2.97	49.3
	경험 없음	(38)	15.8	18.4	36.8	23.7	5.3	34.2	28.9	2.84	46.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0.0	13.3	31.1	28.9	6.7	33.3	35.6	2.89	47.2
	없음	(61)	16.4	18.0	29.5	26.2	9.8	34.4	36.1	2.95	48.8

42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3>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건강웰빙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2.3	15.1	25.5	23.6	23.6	27.4	47.2	3.31	57.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7.3	29.3	26.8	26.8	17.1	53.7	3.54	63.4
	벤처스타트업	(35)	17.1	11.4	25.7	20.0	25.7	28.6	45.7	3.26	56.4
	대기업	(30)	10.0	30.0	20.0	23.3	16.7	40.0	40.0	3.07	51.7
업력	7년 이하	(25)	20.0	4.0	20.0	20.0	36.0	24.0	56.0	3.48	62.0
	8~10년	(6)	0.0	16.7	33.3	0.0	50.0	16.7	50.0	3.83	70.8
	11~20년	(18)	5.6	16.7	33.3	27.8	16.7	22.2	44.4	3.33	58.3
	21~30년	(23)	17.4	13.0	26.1	21.7	21.7	30.4	43.5	3.17	54.3
	31~50년	(22)	13.6	22.7	22.7	22.7	18.2	36.4	40.9	3.09	52.3
	51년 이상	(12)	0.0	25.0	25.0	41.7	8.3	25.0	5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10.4	14.6	16.7	27.1	31.3	25.0	58.3	3.54	63.5
	건설업	(6)	16.7	33.3	33.3	0.0	16.7	50.0	16.7	2.67	41.7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25.0	25.0	33.3	16.7	58.3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14.3	28.6	28.6	14.3	28.6	42.9	3.14	53.6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21.4	35.7	21.4	7.1	35.7	28.6	2.86	46.4
	교육서비스업	(5)	40.0	0.0	40.0	20.0	0.0	40.0	2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33.3	0.0 16.7	50.0 16.7	16.7 16.7	16.7 16.7	50.0 50.0	33.3 33.3	2.67 2.67	41.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0.0	5.0	25.0	45.0	25.0	7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13.3	13.3	40.0	20.0	13.3	26.7	33.3	3.07	51.7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52.6	21.1	10.5	15.8	31.6	3.21	55.3
	100억~500억 미만	(17)	11.8	17.6	11.8	35.3	23.5	29.4	58.8	3.41	60.3
	500억 이상	(35)	8.6	25.7	22.9	20.0	22.9	34.3	42.9	3.23	5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9.9	15.5	31.0	23.9	19.7	25.4	43.7	3.28	57.0
	없음	(35)	17.1	14.3	14.3	22.9	31.4	31.4	54.3	3.37	59.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4.7	11.8	23.5	25.0	25.0	26.5	50.0	3.34	58.5
	경험 없음	(38)	7.9	21.1	28.9	21.1	21.1	28.9	42.1	3.26	56.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3.3	22.2	22.2	28.9	13.3	35.6	42.2	3.07	51.7
	없음	(61)	11.5	9.8	27.9	19.7	31.1	21.3	50.8	3.49	62.3

〈부록 표94〉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교육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6.6	8.5	29.2	37.7	17.9	15.1	55.7	3.52	63.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14.6	22.0	46.3	12.2	19.5	58.5	3.46	61.6
	벤처스타트업	(35)	8.6	0.0	40.0	28.6	22.9	8.6	51.4	3.57	64.3
	대기업	(30)	6.7	10.0	26.7	36.7	20.0	16.7	56.7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8.0	0.0	28.0	36.0	28.0	8.0	64.0	3.76	69.0
	8~10년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3.33	58.3
	11~20년	(18)	5.6	0.0	44.4	44.4	5.6	5.6	50.0	3.44	61.1
	21~30년	(23)	4.3	13.0	17.4	43.5	21.7	17.4	65.2	3.65	66.3
	31~50년	(22)	13.6	22.7	18.2	36.4	9.1	36.4	45.5	3.05	51.1
	51년 이상	(12)	0.0	0.0	41.7	33.3	25.0	0.0	58.3	3.83	70.8
업종	제조업	(48)	6.3	12.5	22.9	43.8	14.6	18.8	58.3	3.48	62.0
	건설업	(6)	16.7	0.0	66.7	0.0	16.7	16.7	16.7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8.3	58.3	25.0	8.3	83.3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14.3	42.9	14.3	14.3	28.6	28.6	3.00	50.0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57.1	21.4	7.1	14.3	28.6	3.21	55.4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5.0	30.0	40.0	15.0	15.0	55.0	3.45	6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26.7	40.0	6.7	66.7	4.00	75.0
	50억~100억 미만	(19)	10.5	5.3	36.8	36.8	10.5	15.8	47.4	3.32	57.9
	100억~500억 미만	(17)	5.9	23.5	23.5	35.3	11.8	29.4	47.1	3.24	55.9
	500억 이상	(35)	5.7	5.7	28.6	42.9	17.1	11.4	60.0	3.60	6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0	8.5	31.0	35.2	18.3	15.5	53.5	3.49	62.3
	없음	(35)	5.7	8.6	25.7	42.9	17.1	14.3	60.0	3.57	6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8.8	7.4	29.4	36.8	17.6	16.2	54.4	3.47	61.8
	경험 없음	(38)	2.6	10.5	28.9	39.5	18.4	13.2	57.9	3.61	6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9	11.1	22.2	51.1	6.7	20.0	57.8	3.36	58.9
	없음	(61)	4.9	6.6	34.4	27.9	26.2	11.5	54.1	3.64	66.0

43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5>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양성평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0.4	11.3	33.0	33.0	12.3	21.7	45.3	3.25	56.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2.2	29.3	34.1	17.1	19.5	51.2	3.41	60.4
	벤처스타트업	(35)	8.6	14.3	37.1	25.7	14.3	22.9	40.0	3.23	55.7
	대기업	(30)	16.7	6.7	33.3	40.0	3.3	23.3	43.3	3.07	51.7
업력	7년 이하	(25)	8.0	16.0	32.0	32.0	12.0	24.0	44.0	3.24	56.0
	8~10년	(6)	16.7	33.3	33.3	0.0	16.7	50.0	16.7	2.67	41.7
	11~20년	(18)	11.1	5.6	27.8	44.4	11.1	16.7	55.6	3.39	59.7
	21~30년	(23)	13.0	8.7	34.8	30.4	13.0	21.7	43.5	3.22	55.4
	31~50년	(22)	13.6	13.6	31.8	27.3	13.6	27.3	40.9	3.14	53.4
	51년 이상	(12)	0.0	0.0	41.7	50.0	8.3	0.0	58.3	3.67	66.7
업종	제조업	(48)	12.5	14.6	25.0	37.5	10.4	27.1	47.9	3.19	54.7
	건설업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33.3	25.0	25.0	16.7	50.0	3.58	64.6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42.9	42.9	0.0	14.3	42.9	3.29	57.1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21.4	7.1	50.0	14.3	7.1	28.6	21.4	2.79	44.6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16.7 16.7	16.7 16.7	50.0 50.0	16.7 16.7	0.0 0.0	33.3 33.3	16.7 16.7	2.67 2.67	41.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0.0	10.0	20.0	40.0	10.0	30.0	50.0	3.10	52.5
	10억~50억 미만	(15)	13.3	13.3	26.7	33.3	13.3	26.7	46.7	3.20	55.0
	50억~100억 미만	(19)	5.3	5.3	42.1	26.3	21.1	10.5	47.4	3.53	63.2
	100억~500억 미만	(17)	5.9	23.5	35.3	29.4	5.9	29.4	35.3	3.06	51.5
	500억 이상	(35)	8.6	8.6	37.1	34.3	11.4	17.1	45.7	3.31	5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5	12.7	33.8	31.0	14.1	21.1	45.1	3.30	57.4
	없음	(35)	14.3	8.6	31.4	37.1	8.6	22.9	45.7	3.17	5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0.3	14.7	30.9	29.4	14.7	25.0	44.1	3.24	55.9
	경험 없음	(38)	10.5	5.3	36.8	39.5	7.9	15.8	47.4	3.29	57.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5.6	6.7	40.0	26.7	11.1	22.2	37.8	3.11	52.8
	없음	(61)	6.6	14.8	27.9	37.7	13.1	21.3	50.8	3.36	59.0

〈부록 표96〉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물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8	13.2	29.2	25.5	12.3	33.0	37.7	2.97	49.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4.6	12.2	31.7	26.8	14.6	26.8	41.5	3.15	53.7
	벤처스타트업	(35)	34.3	11.4	14.3	22.9	17.1	45.7	40.0	2.77	44.3
	대기업	(30)	10.0	16.7	43.3	26.7	3.3	26.7	30.0	2.97	49.2
업력	7년 이하	(25)	40.0	12.0	20.0	16.0	12.0	52.0	28.0	2.48	37.0
	8~10년	(6)	16.7	0.0	33.3	0.0	50.0	16.7	50.0	3.67	66.7
	11~20년	(18)	16.7	22.2	27.8	22.2	11.1	38.9	33.3	2.89	47.2
	21~30년	(23)	13.0	17.4	30.4	30.4	8.7	30.4	39.1	3.04	51.1
	31~50년	(22)	13.6	9.1	31.8	36.4	9.1	22.7	45.5	3.18	54.5
	51년 이상	(12)	8.3	8.3	41.7	33.3	8.3	16.7	41.7	3.25	56.3
업종	제조업	(48)	25.0	4.2	29.2	25.0	16.7	29.2	41.7	3.04	51.0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33.3	33.3	8.3	25.0	41.7	3.17	54.2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57.1	14.3	0.0	14.3	71.4	14.3	2.43	35.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21.4	35.7	21.4	7.1	35.7	28.6	2.86	46.4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0.0	40.0	0.0	60.0	4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33.3	16.7 16.7	33.3 50.0	33.3 0.0	16.7 0.0	16.7 50.0	50.0 0.0	2.17 2.17	29.2 2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45.0	5.0	20.0	10.0	20.0	50.0	30.0	2.55	38.8
	10억~50억 미만	(15)	26.7	13.3	13.3	33.3	13.3	40.0	46.7	2.93	48.3
	50억~100억 미만	(19)	10.5	15.8	36.8	31.6	5.3	26.3	36.8	3.05	51.3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41.2	17.6	23.5	17.6	41.2	3.41	60.3
	500억 이상	(35)	14.3	17.1	31.4	31.4	5.7	31.4	37.1	2.97	49.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2.7	15.5	31.0	26.8	14.1	28.2	40.8	3.14	53.5
	없음	(35)	34.3	8.6	25.7	22.9	8.6	42.9	31.4	2.63	4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3.5	8.8	29.4	25.0	13.2	32.4	38.2	2.96	48.9
	경험 없음	(38)	13.2	21.1	28.9	26.3	10.5	34.2	36.8	3.00	5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4.4	11.1	28.9	26.7	8.9	35.6	35.6	2.84	46.1
	없음	(61)	16.4	14.8	29.5	24.6	14.8	31.1	39.3	3.07	51.6

43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7〉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에너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5.1	12.3	26.4	30.2	16.0	27.4	46.2	3.20	55.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2.2	39.0	29.3	12.2	19.5	41.5	3.27	56.7
	벤처스타트업	(35)	28.6	14.3	14.3	25.7	17.1	42.9	42.9	2.89	47.1
	대기업	(30)	10.0	10.0	23.3	36.7	20.0	20.0	56.7	3.47	61.7
업력	7년 이하	(25)	32.0	16.0	8.0	28.0	16.0	48.0	44.0	2.80	45.0
	8~10년	(6)	16.7	16.7	16.7	0.0	50.0	33.3	50.0	3.50	62.5
	11~20년	(18)	11.1	11.1	44.4	27.8	5.6	22.2	33.3	3.06	51.4
	21~30년	(23)	13.0	13.0	39.1	21.7	13.0	26.1	34.8	3.09	52.2
	31~50년	(22)	9.1	13.6	22.7	36.4	18.2	22.7	54.5	3.41	60.2
	51년 이상	(12)	0.0	0.0	25.0	58.3	16.7	0.0	75.0	3.92	72.9
업종	제조업	(48)	16.7	8.3	16.7	41.7	16.7	25.0	58.3	3.33	58.3
	건설업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33.3	41.7	16.7	8.3	58.3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14.3	42.9	14.3	14.3	28.6	28.6	3.00	5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28.6	21.4	35.7	14.3	0.0	50.0	14.3	2.36	33.9
	교육서비스업	(5)	20.0	20.0	40.0	20.0	0.0	40.0	20.0	2.6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기타	(6)	16.7	16.7	16.7	0.0	50.0	33.3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0	10.0	5.0	20.0	15.0	60.0	35.0	2.40	35.0
	10억~50억 미만	(15)	13.3	26.7	26.7	13.3	20.0	40.0	33.3	3.00	50.0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47.4	26.3	10.5	15.8	36.8	3.26	56.6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29.4	41.2	11.8	17.6	52.9	3.41	60.3
	500억 이상	(35)	5.7	8.6	25.7	40.0	20.0	14.3	60.0	3.60	6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5	9.9	28.2	38.0	15.5	18.3	53.5	3.42	60.6
	없음	(35)	28.6	17.1	22.9	14.3	17.1	45.7	31.4	2.74	4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13.2	25.0	27.9	16.2	30.9	44.1	3.12	52.9
	경험 없음	(38)	10.5	10.5	28.9	34.2	15.8	21.1	50.0	3.34	5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0.0	11.1	20.0	37.8	11.1	31.1	48.9	3.09	52.2
	없음	(61)	11.5	13.1	31.1	24.6	19.7	24.6	44.3	3.28	57.0

〈부록 표98〉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일자리경제성장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3.2	4.7	27.4	34.0	20.8	17.9	54.7	3.44	61.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4.9	24.4	31.7	29.3	14.6	61.0	3.66	66.5
	벤처스타트업	(35)	11.4	5.7	25.7	37.1	20.0	17.1	57.1	3.49	62.1
	대기업	(30)	20.0	3.3	33.3	33.3	10.0	23.3	43.3	3.10	52.5
업력	7년 이하	(25)	16.0	4.0	24.0	32.0	24.0	20.0	56.0	3.44	61.0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11~20년	(18)	5.6	11.1	22.2	38.9	22.2	16.7	61.1	3.61	65.3
	21~30년	(23)	21.7	4.3	30.4	34.8	8.7	26.1	43.5	3.04	51.1
	31~50년	(22)	18.2	0.0	40.9	18.2	22.7	18.2	40.9	3.27	56.8
	51년 이상	(12)	0.0	8.3	16.7	50.0	25.0	8.3	75.0	3.92	72.9
업종	제조업	(48)	12.5	2.1	25.0	37.5	22.9	14.6	60.4	3.56	64.1
	건설업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50.0	16.7	8.3	66.7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14.3	14.3	28.6	42.9	42.9	3.00	50.0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7.1	7.1	35.7	42.9	7.1	14.3	50.0	3.36	58.9
	교육서비스업	(5)	40.0	0.0	20.0	20.0	20.0	40.0	40.0	2.80	4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기타	(6)	33.3	0.0	16.7	0.0	50.0	33.3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0.0	25.0	35.0	15.0	25.0	50.0	3.15	53.8
	10억~50억 미만	(15)	13.3	6.7	20.0	33.3	26.7	20.0	60.0	3.53	63.3
	50억~100억 미만	(19)	5.3	0.0	36.8	47.4	10.5	5.3	57.9	3.58	64.5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29.4	17.6	35.3	17.6	52.9	3.59	64.7
	500억 이상	(35)	11.4	8.6	25.7	34.3	20.0	20.0	54.3	3.43	6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1.3	5.6	31.0	31.0	21.1	16.9	52.1	3.45	61.3
	없음	(35)	17.1	2.9	20.0	40.0	20.0	20.0	60.0	3.43	6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3.2	1.5	29.4	32.4	23.5	14.7	55.9	3.51	62.9
	경험 없음	(38)	13.2	10.5	23.7	36.8	15.8	23.7	52.6	3.32	57.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7.8	4.4	31.1	35.6	11.1	22.2	46.7	3.18	54.4
	없음	(61)	9.8	4.9	24.6	32.8	27.9	14.8	60.7	3.64	66.0

43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99>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산업화혁신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3.2	9.4	25.5	34.9	17.0	22.6	51.9	3.33	58.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12.2	24.4	29.3	24.4	22.0	53.7	3.46	61.6
	벤처스타트업	(35)	14.3	11.4	22.9	40.0	11.4	25.7	51.4	3.23	55.7
	대기업	(30)	16.7	3.3	30.0	36.7	13.3	20.0	50.0	3.27	56.7
업력	7년 이하	(25)	12.0	8.0	36.0	28.0	16.0	20.0	44.0	3.28	57.0
	8~10년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11~20년	(18)	11.1	16.7	22.2	38.9	11.1	27.8	50.0	3.22	55.6
	21~30년	(23)	21.7	8.7	21.7	30.4	17.4	30.4	47.8	3.13	53.3
	31~50년	(22)	13.6	13.6	22.7	27.3	22.7	27.3	50.0	3.32	58.0
	51년 이상	(12)	0.0	0.0	25.0	66.7	8.3	0.0	75.0	3.83	70.8
업종	제조업	(48)	10.4	12.5	25.0	31.3	20.8	22.9	52.1	3.40	59.9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25.0	58.3	0.0	16.7	58.3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0.0	28.6	28.6	42.9	57.1	3.14	53.6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7.1	50.0	21.4	7.1	21.4	28.6	3.00	50.0
	교육서비스업	(5)	40.0	0.0	0.0	40.0	20.0	40.0	6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기타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0.0	10.0	25.0	20.0	25.0	30.0	45.0	3.20	55.0
	10억~50억 미만	(15)	26.7	0.0	33.3	33.3	6.7	26.7	40.0	2.93	48.3
	50억~100억 미만	(19)	10.5	15.8	26.3	47.4	0.0	26.3	47.4	3.11	52.6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11.8	35.3	35.3	17.6	70.6	3.82	70.6
	500억 이상	(35)	8.6	8.6	28.6	37.1	17.1	17.1	54.3	3.46	6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1	11.3	22.5	36.6	15.5	25.4	52.1	3.28	57.0
	없음	(35)	11.4	5.7	31.4	31.4	20.0	17.1	51.4	3.43	6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4.7	13.2	23.5	30.9	17.6	27.9	48.5	3.24	55.9
	경험 없음	(38)	10.5	2.6	28.9	42.1	15.8	13.2	57.9	3.50	62.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3.3	13.3	28.9	33.3	11.1	26.7	44.4	3.16	53.9
	없음	(61)	13.1	6.6	23.0	36.1	21.3	19.7	57.4	3.46	61.5

〈부록 표100〉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불평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6.0	16.0	32.1	28.3	7.5	32.1	35.8	2.95	48.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4.6	9.8	36.6	29.3	9.8	24.4	39.0	3.10	52.4
	벤처스타트업	(35)	20.0	17.1	31.4	22.9	8.6	37.1	31.4	2.83	45.7
	대기업	(30)	13.3	23.3	26.7	33.3	3.3	36.7	36.7	2.90	47.5
업력	7년 이하	(25)	24.0	12.0	28.0	28.0	8.0	36.0	36.0	2.84	46.0
	8~10년	(6)	33.3	0.0	50.0	0.0	16.7	33.3	16.7	2.67	41.7
	11~20년	(18)	11.1	11.1	38.9	33.3	5.6	22.2	38.9	3.11	52.8
	21~30년	(23)	21.7	17.4	30.4	21.7	8.7	39.1	30.4	2.78	44.6
	31~50년	(22)	9.1	27.3	27.3	31.8	4.5	36.4	36.4	2.95	48.9
	51년 이상	(12)	0.0	16.7	33.3	41.7	8.3	16.7	50.0	3.42	60.4
업종	제조업	(48)	16.7	20.8	22.9	33.3	6.3	37.5	39.6	2.92	47.9
	건설업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8.3	8.3	25.0	41.7	16.7	16.7	58.3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57.1	0.0	0.0	42.9	0.0	2.29	32.1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7.1	14.3	64.3	7.1	7.1	21.4	14.3	2.93	48.2
	교육서비스업	(5)	60.0	20.0	0.0	20.0	0.0	80.0	20.0	1.8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기타	(6)	16.7	16.7	50.0	16.7	0.0	33.3	16.7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25.0	20.0	35.0	10.0	10.0	45.0	20.0	2.60	40.0
	10억~50억 미만	(15)	20.0	13.3	33.3	26.7	6.7	33.3	33.3	2.87	46.7
	50억~100억 미만	(19)	10.5	10.5	31.6	31.6	15.8	21.1	47.4	3.32	57.9
	100억~500억 미만	(17)	11.8	11.8	29.4	41.2	5.9	23.5	47.1	3.18	54.4
	500억 이상	(35)	14.3	20.0	31.4	31.4	2.9	34.3	34.3	2.89	4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2.7	15.5	28.2	35.2	8.5	28.2	43.7	3.11	52.8
	없음	(35)	22.9	17.1	40.0	14.3	5.7	40.0	20.0	2.63	4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9.1	19.1	26.5	29.4	5.9	38.2	35.3	2.84	46.0
	경험 없음	(38)	10.5	10.5	42.1	26.3	10.5	21.1	36.8	3.16	53.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3.3	22.2	33.3	28.9	2.2	35.6	31.1	2.84	46.1
	없음	(61)	18.0	11.5	31.1	27.9	11.5	29.5	39.3	3.03	50.8

43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1>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도시공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4.2	10.4	36.8	29.2	9.4	24.5	38.7	3.09	52.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14.6	41.5	24.4	12.2	22.0	36.6	3.20	54.9
	벤처스타트업	(35)	25.7	8.6	28.6	25.7	11.4	34.3	37.1	2.89	47.1
	대기업	(30)	10.0	6.7	40.0	40.0	3.3	16.7	43.3	3.20	55.0
업력	7년 이하	(25)	36.0	12.0	16.0	16.0	20.0	48.0	36.0	2.72	43.0
	8~10년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11~20년	(18)	5.6	22.2	38.9	33.3	0.0	27.8	33.3	3.00	50.0
	21~30년	(23)	8.7	13.0	43.5	26.1	8.7	21.7	34.8	3.13	53.3
	31~50년	(22)	9.1	4.5	45.5	31.8	9.1	13.6	40.9	3.27	56.8
	51년 이상	(1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업종	제조업	(48)	14.6	6.3	35.4	33.3	10.4	20.8	43.8	3.19	54.7
	건설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8.3	50.0	16.7	25.0	66.7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28.6	57.1	0.0	0.0	42.9	0.0	2.43	35.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14.3	50.0	21.4	0.0	28.6	21.4	2.79	44.6
	교육서비스업	(5)	40.0	0.0	40.0	20.0	0.0	40.0	2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66.7	16.7	0.0	16.7	16.7	3.00	50.0
기타	(6)	33.3	16.7	33.3	0.0	16.7	50.0	16.7	2.50	37.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35.0	15.0	25.0	15.0	10.0	50.0	25.0	2.50	37.5
	10억~50억 미만	(15)	13.3	6.7	26.7	33.3	20.0	20.0	53.3	3.40	60.0
	50억~100억 미만	(19)	5.3	21.1	42.1	31.6	0.0	26.3	31.6	3.00	50.0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47.1	23.5	11.8	17.6	35.3	3.18	54.4
	500억 이상	(35)	8.6	5.7	40.0	37.1	8.6	14.3	45.7	3.31	5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1.3	8.5	40.8	31.0	8.5	19.7	39.4	3.17	54.2
	없음	(35)	20.0	14.3	28.6	25.7	11.4	34.3	37.1	2.94	4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10.3	38.2	26.5	7.4	27.9	33.8	2.96	48.9
	경험 없음	(38)	7.9	10.5	34.2	34.2	13.2	18.4	47.4	3.34	5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5.6	8.9	35.6	31.1	8.9	24.4	40.0	3.09	52.2
	없음	(61)	13.1	11.5	37.7	27.9	9.8	24.6	37.7	3.10	52.5

〈부록 표102〉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8.9	9.4	29.2	30.2	12.3	28.3	42.5	3.08	51.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2.2	2.4	29.3	36.6	19.5	14.6	56.1	3.49	62.2
	벤처스타트업	(35)	28.6	14.3	20.0	25.7	11.4	42.9	37.1	2.77	44.3
	대기업	(30)	16.7	13.3	40.0	26.7	3.3	30.0	30.0	2.87	46.7
업력	7년 이하	(25)	36.0	8.0	16.0	28.0	12.0	44.0	40.0	2.72	43.0
	8~10년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11~20년	(18)	16.7	5.6	38.9	22.2	16.7	22.2	38.9	3.17	54.2
	21~30년	(23)	13.0	13.0	34.8	30.4	8.7	26.1	39.1	3.09	52.2
	31~50년	(22)	18.2	9.1	22.7	36.4	13.6	27.3	50.0	3.18	54.5
	51년 이상	(12)	8.3	8.3	41.7	41.7	0.0	16.7	41.7	3.17	54.2
업종	제조업	(48)	22.9	12.5	25.0	29.2	10.4	35.4	39.6	2.92	47.9
	건설업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28.6	14.3	14.3	14.3	57.1	28.6	2.57	39.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21.4	0.0	42.9	35.7	0.0	21.4	35.7	2.93	48.2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0.0	20.0	20.0	60.0	40.0	2.6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16.7	16.7	66.7	0.0	0.0	33.3	0.0	2.50	37.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45.0	10.0	20.0	20.0	5.0	55.0	25.0	2.30	32.5
	10억~50억 미만	(15)	26.7	13.3	6.7	26.7	26.7	40.0	53.3	3.13	53.3
	50억~100억 미만	(19)	5.3	5.3	31.6	42.1	15.8	10.5	57.9	3.58	64.5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35.3	41.2	11.8	11.8	52.9	3.47	61.8
	500억 이상	(35)	14.3	11.4	40.0	25.7	8.6	25.7	34.3	3.03	5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1	9.9	36.6	25.4	14.1	23.9	39.4	3.15	53.9
	없음	(35)	28.6	8.6	14.3	40.0	8.6	37.1	48.6	2.91	4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7.6	11.8	32.4	22.1	16.2	29.4	38.2	3.07	51.8
	경험 없음	(38)	21.1	5.3	23.7	44.7	5.3	26.3	50.0	3.08	52.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2	8.9	31.1	26.7	11.1	31.1	37.8	2.96	48.9
	없음	(61)	16.4	9.8	27.9	32.8	13.1	26.2	45.9	3.16	54.1

43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3>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기후변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7.9	11.3	23.6	28.3	18.9	29.2	47.2	3.19	54.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2.2	17.1	22.0	19.5	29.3	29.3	48.8	3.37	59.1
	벤처스타트업	(35)	25.7	11.4	17.1	34.3	11.4	37.1	45.7	2.94	48.6
	대기업	(30)	16.7	3.3	33.3	33.3	13.3	20.0	46.7	3.23	55.8
업력	7년 이하	(25)	36.0	4.0	12.0	32.0	16.0	40.0	48.0	2.88	47.0
	8~10년	(6)	0.0	0.0	16.7	16.7	66.7	0.0	83.3	4.50	87.5
	11~20년	(18)	5.6	27.8	27.8	27.8	11.1	33.3	38.9	3.11	52.8
	21~30년	(23)	21.7	17.4	21.7	21.7	17.4	39.1	39.1	2.96	48.9
	31~50년	(22)	18.2	4.5	36.4	22.7	18.2	22.7	40.9	3.18	54.5
	51년 이상	(12)	0.0	8.3	25.0	50.0	16.7	8.3	66.7	3.75	68.8
업종	제조업	(48)	18.8	8.3	16.7	37.5	18.8	27.1	56.3	3.29	57.3
	건설업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8.3	25.0	8.3	33.3	25.0	33.3	58.3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42.9	14.3	0.0	42.9	14.3	2.43	35.7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14.3	21.4	21.4	28.6	14.3	35.7	42.9	3.07	51.8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20.0	0.0	20.0	60.0	2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기타	(6)	33.3	0.0	16.7	0.0	50.0	33.3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40.0	0.0	20.0	25.0	15.0	40.0	40.0	2.75	43.8
	10억~50억 미만	(15)	13.3	0.0	20.0	40.0	26.7	13.3	66.7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10.5	26.3	31.6	15.8	15.8	36.8	31.6	3.00	50.0
	100억~500억 미만	(17)	11.8	17.6	17.6	23.5	29.4	29.4	52.9	3.41	60.3
	500억 이상	(35)	14.3	11.4	25.7	34.3	14.3	25.7	48.6	3.23	5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1	12.7	26.8	26.8	19.7	26.8	46.5	3.25	56.3
	없음	(35)	25.7	8.6	17.1	31.4	17.1	34.3	48.6	3.06	5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3.5	10.3	22.1	26.5	17.6	33.8	44.1	3.04	51.1
	경험 없음	(38)	7.9	13.2	26.3	31.6	21.1	21.1	52.6	3.45	61.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7.8	13.3	24.4	28.9	15.6	31.1	44.4	3.11	52.8
	없음	(61)	18.0	9.8	23.0	27.9	21.3	27.9	49.2	3.25	56.1

〈부록 표104〉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해양생태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8.9	17.9	33.0	20.8	9.4	36.8	30.2	2.84	46.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4.6	14.6	31.7	24.4	14.6	29.3	39.0	3.10	52.4
	벤처스타트업	(35)	28.6	17.1	22.9	25.7	5.7	45.7	31.4	2.63	40.7
	대기업	(30)	13.3	23.3	46.7	10.0	6.7	36.7	16.7	2.73	43.3
업력	7년 이하	(25)	40.0	16.0	24.0	12.0	8.0	56.0	20.0	2.32	33.0
	8~10년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11~20년	(18)	11.1	11.1	33.3	38.9	5.6	22.2	44.4	3.17	54.2
	21~30년	(23)	21.7	26.1	26.1	21.7	4.3	47.8	26.1	2.61	40.2
	31~50년	(22)	9.1	18.2	36.4	22.7	13.6	27.3	36.4	3.14	53.4
	51년 이상	(12)	0.0	16.7	58.3	8.3	16.7	16.7	25.0	3.25	56.3
업종	제조업	(48)	20.8	16.7	29.2	20.8	12.5	37.5	33.3	2.88	46.9
	건설업	(6)	16.7	0.0	50.0	16.7	16.7	16.7	33.3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25.0	25.0	25.0	25.0	25.0	50.0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57.1	0.0	0.0	42.9	0.0	2.29	32.1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7.1	21.4	50.0	21.4	0.0	28.6	21.4	2.86	46.4
	교육서비스업	(5)	60.0	20.0	0.0	20.0	0.0	80.0	20.0	1.8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62.5
기타	(6)	50.0	33.3	16.7	0.0	0.0	83.3	0.0	1.67	1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40.0	20.0	25.0	15.0	0.0	60.0	15.0	2.15	28.8
	10억~50억 미만	(15)	20.0	13.3	33.3	26.7	6.7	33.3	33.3	2.87	46.7
	50억~100억 미만	(19)	5.3	26.3	31.6	26.3	10.5	31.6	36.8	3.11	52.6
	100억~500억 미만	(17)	17.6	17.6	23.5	23.5	17.6	35.3	41.2	3.06	51.5
	500억 이상	(35)	14.3	14.3	42.9	17.1	11.4	28.6	28.6	2.97	49.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2.7	15.5	36.6	23.9	11.3	28.2	35.2	3.06	51.4
	없음	(35)	31.4	22.9	25.7	14.3	5.7	54.3	20.0	2.40	3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9.1	19.1	27.9	23.5	10.3	38.2	33.8	2.87	46.7
	경험 없음	(38)	18.4	15.8	42.1	15.8	7.9	34.2	23.7	2.79	44.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7.8	24.4	31.1	20.0	6.7	42.2	26.7	2.73	43.3
	없음	(61)	19.7	13.1	34.4	21.3	11.5	32.8	32.8	2.92	48.0

44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5>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육상생태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8.9	19.8	34.0	19.8	7.5	38.7	27.4	2.77	44.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12.2	24.4	31.7	22.0	9.8	36.6	31.7	2.93	48.2
	벤처스타트업	(35)	31.4	17.1	28.6	20.0	2.9	48.6	22.9	2.46	36.4
	대기업	(30)	13.3	16.7	43.3	16.7	10.0	30.0	26.7	2.93	48.3
업력	7년 이하	(25)	40.0	12.0	24.0	20.0	4.0	52.0	24.0	2.36	34.0
	8~10년	(6)	0.0	33.3	16.7	33.3	16.7	33.3	50.0	3.33	58.3
	11~20년	(18)	11.1	27.8	38.9	11.1	11.1	38.9	22.2	2.83	45.8
	21~30년	(23)	17.4	26.1	43.5	13.0	0.0	43.5	13.0	2.52	38.0
	31~50년	(22)	18.2	13.6	31.8	27.3	9.1	31.8	36.4	2.95	48.9
	51년 이상	(12)	0.0	16.7	41.7	25.0	16.7	16.7	41.7	3.42	60.4
업종	제조업	(48)	18.8	16.7	31.3	25.0	8.3	35.4	33.3	2.88	46.9
	건설업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33.3	25.0	33.3	8.3	33.3	41.7	3.17	54.2
	방송/통신/미디어업	(7)	57.1	28.6	14.3	0.0	0.0	85.7	0.0	1.57	14.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14.3	14.3	64.3	7.1	0.0	28.6	7.1	2.64	41.1
	교육서비스업	(5)	40.0	40.0	20.0	0.0	0.0	80.0	0.0	1.80	2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3.33	58.3
기타	(6)	33.3	33.3	16.7	0.0	16.7	66.7	16.7	2.33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40.0	15.0	35.0	10.0	0.0	55.0	10.0	2.15	28.8
	10억~50억 미만	(15)	26.7	33.3	20.0	13.3	6.7	60.0	20.0	2.40	35.0
	50억~100억 미만	(19)	5.3	31.6	31.6	21.1	10.5	36.8	31.6	3.00	50.0
	100억~500억 미만	(17)	11.8	5.9	41.2	35.3	5.9	17.6	41.2	3.18	54.4
	500억 이상	(35)	14.3	17.1	37.1	20.0	11.4	31.4	31.4	2.97	49.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5.5	18.3	35.2	22.5	8.5	33.8	31.0	2.90	47.5
	없음	(35)	25.7	22.9	31.4	14.3	5.7	48.6	20.0	2.51	3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0.6	16.2	33.8	22.1	7.4	36.8	29.4	2.79	44.9
	경험 없음	(38)	15.8	26.3	34.2	15.8	7.9	42.1	23.7	2.74	43.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5.6	24.4	35.6	17.8	6.7	40.0	24.4	2.76	43.9
	없음	(61)	21.3	16.4	32.8	21.3	8.2	37.7	29.5	2.79	44.7

〈부록 표106〉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정의제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2.6	20.8	33.0	17.9	5.7	43.4	23.6	2.63	40.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19.5	39.0	24.4	7.3	29.3	31.7	3.00	50.0
	벤처스타트업	(35)	40.0	14.3	22.9	20.0	2.9	54.3	22.9	2.31	32.9
	대기업	(30)	20.0	30.0	36.7	6.7	6.7	50.0	13.3	2.50	37.5
업력	7년 이하	(25)	44.0	16.0	20.0	20.0	0.0	60.0	20.0	2.16	29.0
	8~10년	(6)	50.0	0.0	33.3	0.0	16.7	50.0	16.7	2.33	33.3
	11~20년	(18)	16.7	27.8	22.2	22.2	11.1	44.4	33.3	2.83	45.8
	21~30년	(23)	17.4	17.4	34.8	26.1	4.3	34.8	30.4	2.83	45.7
	31~50년	(22)	9.1	27.3	45.5	13.6	4.5	36.4	18.2	2.77	44.3
	51년 이상	(12)	8.3	25.0	50.0	8.3	8.3	33.3	16.7	2.83	45.8
업종	제조업	(48)	25.0	22.9	29.2	16.7	6.3	47.9	22.9	2.56	39.1
	건설업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25.0	25.0	41.7	8.3	25.0	50.0	3.33	58.3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42.9	28.6	14.3	0.0	57.1	14.3	2.43	35.7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21.4	21.4	50.0	7.1	0.0	42.9	7.1	2.43	35.7
	교육서비스업	(5)	40.0	0.0	40.0	20.0	0.0	40.0	20.0	2.40	3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기타	(6)	66.7	16.7	16.7	0.0	0.0	83.3	0.0	1.50	1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0	10.0	15.0	25.0	0.0	60.0	25.0	2.15	28.8
	10억~50억 미만	(15)	26.7	13.3	40.0	13.3	6.7	40.0	20.0	2.60	40.0
	50억~100억 미만	(19)	10.5	10.5	42.1	31.6	5.3	21.1	36.8	3.11	52.6
	100억~500억 미만	(17)	11.8	41.2	23.5	11.8	11.8	52.9	23.5	2.71	42.6
	500억 이상	(35)	17.1	25.7	40.0	11.4	5.7	42.9	17.1	2.63	4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8.3	21.1	36.6	16.9	7.0	39.4	23.9	2.73	43.3
	없음	(35)	31.4	20.0	25.7	20.0	2.9	51.4	22.9	2.43	35.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7.9	19.1	33.8	13.2	5.9	47.1	19.1	2.50	37.5
	경험 없음	(38)	13.2	23.7	31.6	26.3	5.3	36.8	31.6	2.87	46.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6.7	20.0	22.2	28.9	2.2	46.7	31.1	2.60	40.0
	없음	(61)	19.7	21.3	41.0	9.8	8.2	41.0	18.0	2.66	41.4

44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7> UN 과제와 CSR·CSV 활동과 연계 정도_미래_글로벌 파트너십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연계 되지 않음	② 연계 되지 않음	③ 중간	④ 연계 성이 높음	⑤ 연계 성이 매우 높음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6.6	9.4	39.6	30.2	14.2	16.0	44.3	3.36	59.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2.4	41.5	36.6	14.6	7.3	51.2	3.54	63.4
	벤처스타트업	(35)	5.7	14.3	28.6	31.4	20.0	20.0	51.4	3.46	61.4
	대기업	(30)	10.0	13.3	50.0	20.0	6.7	23.3	26.7	3.00	50.0
업력	7년 이하	(25)	4.0	12.0	20.0	40.0	24.0	16.0	64.0	3.68	67.0
	8~10년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3.17	54.2
	11~20년	(18)	5.6	5.6	38.9	38.9	11.1	11.1	50.0	3.44	61.1
	21~30년	(23)	4.3	13.0	47.8	30.4	4.3	17.4	34.8	3.17	54.3
	31~50년	(22)	13.6	9.1	40.9	22.7	13.6	22.7	36.4	3.14	53.4
	51년 이상	(12)	0.0	0.0	66.7	25.0	8.3	0.0	33.3	3.42	60.4
업종	제조업	(48)	8.3	8.3	41.7	33.3	8.3	16.7	41.7	3.25	56.3
	건설업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16.7	41.7	25.0	16.7	66.7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0.0	14.3	42.9	14.3	28.6	57.1	3.14	53.6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50.0	14.3	21.4	14.3	35.7	3.43	60.7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20.0	25.0	35.0	15.0	25.0	50.0	3.35	58.8
	10억~50억 미만	(15)	0.0	13.3	33.3	33.3	20.0	13.3	53.3	3.60	65.0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6.8	26.3	21.1	15.8	47.4	3.47	61.8
	100억~500억 미만	(17)	11.8	0.0	41.2	35.3	11.8	11.8	47.1	3.35	58.8
	500억 이상	(35)	8.6	5.7	51.4	25.7	8.6	14.3	34.3	3.20	5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8.5	12.7	42.3	22.5	14.1	21.1	36.6	3.21	55.3
	없음	(35)	2.9	2.9	34.3	45.7	14.3	5.7	60.0	3.66	6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8.8	8.8	42.6	25.0	14.7	17.6	39.7	3.28	57.0
	경험 없음	(38)	2.6	10.5	34.2	39.5	13.2	13.2	52.6	3.50	62.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15.6	42.2	28.9	6.7	22.2	35.6	3.13	53.3
	없음	(61)	6.6	4.9	37.7	31.1	19.7	11.5	50.8	3.52	63.1

〈부록 표108〉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6.6	24.5	45.3	20.8	9.4	66.0	3.75	68.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12.2	24.4	36.6	26.8	12.2	63.4	3.78	69.5
	벤처스타트업	(35)	5.7	2.9	31.4	45.7	14.3	8.6	60.0	3.60	65.0
	대기업	(30)	3.3	3.3	16.7	56.7	20.0	6.7	76.7	3.87	71.7
업력	7년 이하	(25)	8.0	0.0	32.0	44.0	16.0	8.0	60.0	3.60	65.0
	8~10년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3.67	66.7
	11~20년	(18)	0.0	0.0	33.3	44.4	22.2	0.0	66.7	3.89	72.2
	21~30년	(23)	4.3	17.4	21.7	34.8	21.7	21.7	56.5	3.52	63.0
	31~50년	(22)	0.0	4.5	18.2	50.0	27.3	4.5	77.3	4.00	75.0
	51년 이상	(12)	0.0	8.3	16.7	58.3	16.7	8.3	75.0	3.83	70.8
업종	제조업	(48)	2.1	8.3	20.8	54.2	14.6	10.4	68.8	3.71	67.7
	건설업	(6)	0.0	16.7	50.0	16.7	16.7	16.7	33.3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0.0	0.0	42.9	42.9	14.3	85.7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50.0	7.1	7.1	57.1	3.57	64.3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기타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5.0	30.0	45.0	10.0	15.0	55.0	3.40	60.0
	10억~50억 미만	(15)	0.0	0.0	20.0	53.3	26.7	0.0	80.0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1.6	31.6	26.3	10.5	57.9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8.8	11.8	5.9	70.6	3.76	69.1
	500억 이상	(35)	2.9	8.6	20.0	42.9	25.7	11.4	68.6	3.80	7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5.6	25.4	43.7	23.9	7.0	67.6	3.83	70.8
	없음	(35)	5.7	8.6	22.9	48.6	14.3	14.3	62.9	3.57	6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5.9	27.9	44.1	19.1	8.8	63.2	3.71	67.6
	경험 없음	(38)	2.6	7.9	18.4	47.4	23.7	10.5	71.1	3.82	70.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13.3	22.2	48.9	11.1	17.8	60.0	3.49	62.2
	없음	(61)	1.6	1.6	26.2	42.6	27.9	3.3	70.5	3.93	73.4

44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9〉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3.8	29.2	41.5	23.6	5.7	65.1	3.81	70.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31.7	41.5	22.0	4.9	63.4	3.80	70.1
	벤처스타트업	(35)	2.9	2.9	25.7	40.0	28.6	5.7	68.6	3.89	72.1
	대기업	(30)	3.3	3.3	30.0	43.3	20.0	6.7	63.3	3.73	68.3
업력	7년 이하	(25)	4.0	0.0	36.0	40.0	20.0	4.0	60.0	3.72	68.0
	8~10년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11~20년	(18)	0.0	0.0	38.9	44.4	16.7	0.0	61.1	3.78	69.4
	21~30년	(23)	0.0	8.7	17.4	56.5	17.4	8.7	73.9	3.83	70.7
	31~50년	(22)	4.5	4.5	18.2	36.4	36.4	9.1	72.7	3.95	73.9
	51년 이상	(12)	0.0	8.3	33.3	33.3	25.0	8.3	58.3	3.75	68.8
업종	제조업	(48)	4.2	6.3	20.8	45.8	22.9	10.4	68.8	3.77	69.3
	건설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28.6	57.1	0.0	85.7	4.43	85.7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83.3	0.0	0.0	83.3	3.83	70.8
기타	(6)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0.0	20.0	55.0	20.0	5.0	75.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0.0	33.3	26.7	40.0	0.0	66.7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36.8	36.8	21.1	5.3	57.9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8.8	11.8	5.9	70.6	3.76	69.1
	500억 이상	(35)	2.9	5.7	31.4	34.3	25.7	8.6	60.0	3.74	6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2.8	32.4	39.4	23.9	4.2	63.4	3.82	70.4
	없음	(35)	2.9	5.7	22.9	45.7	22.9	8.6	68.6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4.4	32.4	39.7	20.6	7.4	60.3	3.71	67.6
	경험 없음	(38)	0.0	2.6	23.7	44.7	28.9	2.6	73.7	4.00	7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8.9	28.9	40.0	22.2	8.9	62.2	3.76	68.9
	없음	(61)	3.3	0.0	29.5	42.6	24.6	3.3	67.2	3.85	71.3

〈부록 표110〉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6.6	23.6	42.5	24.5	9.4	67.0	3.79	69.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9.8	19.5	53.7	17.1	9.8	70.7	3.78	69.5
	벤처스타트업	(35)	5.7	2.9	28.6	31.4	31.4	8.6	62.9	3.80	70.0
	대기업	(30)	3.3	6.7	23.3	40.0	26.7	10.0	66.7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8.0	4.0	28.0	32.0	28.0	12.0	60.0	3.68	67.0
	8~10년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11~20년	(18)	0.0	5.6	27.8	55.6	11.1	5.6	66.7	3.72	68.1
	21~30년	(23)	4.3	4.3	21.7	43.5	26.1	8.7	69.6	3.83	70.7
	31~50년	(22)	0.0	9.1	13.6	54.5	22.7	9.1	77.3	3.91	72.7
	51년 이상	(12)	0.0	8.3	33.3	25.0	33.3	8.3	58.3	3.83	70.8
	업종	제조업	(48)	2.1	2.1	22.9	52.1	20.8	4.2	72.9	3.88
	건설업	(6)	16.7	33.3	16.7	16.7	16.7	50.0	33.3	2.83	45.8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16.7	50.0	25.0	8.3	75.0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42.9	42.9	0.0	85.7	4.29	82.1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28.6	35.7	21.4	14.3	57.1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0.0	40.0	0.0	4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0.0	66.7	16.7	16.7	83.3	3.83	70.8
	기타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5.0	25.0	30.0	30.0	15.0	6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0.0	0.0	33.3	26.7	40.0	0.0	66.7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26.3	47.4	15.8	10.5	63.2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7.6	64.7	11.8	5.9	76.5	3.82	70.6
	500억 이상	(35)	2.9	8.6	20.0	42.9	25.7	11.4	68.6	3.80	7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8.5	23.9	43.7	21.1	11.3	64.8	3.72	68.0
	없음	(35)	2.9	2.9	22.9	40.0	31.4	5.7	71.4	3.94	7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4.4	30.9	38.2	25.0	5.9	63.2	3.81	70.2
	경험 없음	(38)	5.3	10.5	10.5	50.0	23.7	15.8	73.7	3.76	69.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6.7	20.0	40.0	28.9	11.1	68.9	3.82	70.6
	없음	(61)	1.6	6.6	26.2	44.3	21.3	8.2	65.6	3.77	69.3

44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1〉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기업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3.8	19.8	44.3	29.2	6.6	73.6	3.93	73.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1.7	43.9	22.0	2.4	65.9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2.9	2.9	14.3	40.0	40.0	5.7	80.0	4.11	77.9
	대기업	(30)	6.7	6.7	10.0	50.0	26.7	13.3	76.7	3.83	70.8
업력	7년 이하	(25)	4.0	0.0	24.0	44.0	28.0	4.0	72.0	3.92	73.0
	8~10년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11~20년	(18)	0.0	5.6	16.7	44.4	33.3	5.6	77.8	4.06	76.4
	21~30년	(23)	8.7	0.0	17.4	60.9	13.0	8.7	73.9	3.70	67.4
	31~50년	(22)	0.0	9.1	31.8	27.3	31.8	9.1	59.1	3.82	70.5
	51년 이상	(12)	0.0	8.3	0.0	50.0	41.7	8.3	91.7	4.25	81.3
업종	제조업	(48)	2.1	4.2	18.8	54.2	20.8	6.3	75.0	3.88	71.9
	건설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42.9	42.9	0.0	85.7	4.29	82.1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7.1	0.0	28.6	14.3	50.0	7.1	64.3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62.5
기타	(6)	16.7	0.0	16.7	16.7	50.0	16.7	66.7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0.0	15.0	55.0	20.0	10.0	75.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33.3	26.7	40.0	0.0	66.7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1.1	42.1	31.6	5.3	73.7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41.2	29.4	5.9	70.6	3.94	73.5
	500억 이상	(35)	2.9	5.7	14.3	48.6	28.6	8.6	77.1	3.94	73.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5.6	15.5	43.7	32.4	8.5	76.1	3.97	74.3
	없음	(35)	2.9	0.0	28.6	45.7	22.9	2.9	68.6	3.86	7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4.4	22.1	45.6	25.0	7.4	70.6	3.85	71.3
	경험 없음	(38)	2.6	2.6	15.8	42.1	36.8	5.3	78.9	4.08	77.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4.4	17.8	46.7	26.7	8.9	73.3	3.87	71.7
	없음	(61)	1.6	3.3	21.3	42.6	31.1	4.9	73.8	3.98	74.6

〈부록 표112〉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6.6	28.3	41.5	21.7	8.5	63.2	3.75	68.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7.3	29.3	41.5	22.0	7.3	63.4	3.78	69.5
	벤처스타트업	(35)	2.9	5.7	22.9	45.7	22.9	8.6	68.6	3.80	70.0
	대기업	(30)	3.3	6.7	33.3	36.7	20.0	10.0	56.7	3.63	65.8
업력	7년 이하	(25)	4.0	8.0	32.0	40.0	16.0	12.0	56.0	3.56	64.0
	8~10년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11~20년	(18)	0.0	5.6	27.8	50.0	16.7	5.6	66.7	3.78	69.4
	21~30년	(23)	4.3	8.7	30.4	39.1	17.4	13.0	56.5	3.57	64.1
	31~50년	(22)	0.0	0.0	31.8	36.4	31.8	0.0	68.2	4.00	75.0
	51년 이상	(12)	0.0	8.3	16.7	50.0	25.0	8.3	75.0	3.92	72.9
	업종	제조업	(48)	2.1	0.0	33.3	50.0	14.6	2.1	64.6	3.75
	건설업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25.0	33.3	25.0	16.7	58.3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35.7	21.4	28.6	14.3	50.0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33.3	0.0	50.0	16.7	33.3	66.7	3.50	62.5
	기타	(6)	16.7	0.0	33.3	50.0	0.0	16.7	50.0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5.0	20.0	45.0	25.0	10.0	70.0	3.80	70.0
	10억~50억 미만	(1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50억~100억 미만	(19)	0.0	21.1	10.5	42.1	26.3	21.1	68.4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41.2	47.1	5.9	5.9	52.9	3.53	63.2
	500억 이상	(35)	2.9	2.9	31.4	45.7	17.1	5.7	62.9	3.71	6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9.9	23.9	42.3	22.5	11.3	64.8	3.75	68.7
	없음	(35)	2.9	0.0	37.1	40.0	20.0	2.9	60.0	3.74	6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5.9	33.8	41.2	17.6	7.4	58.8	3.68	66.9
	경험 없음	(38)	2.6	7.9	18.4	42.1	28.9	10.5	71.1	3.87	71.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24.4	48.9	20.0	6.7	68.9	3.80	70.0
	없음	(61)	1.6	8.2	31.1	36.1	23.0	9.8	59.0	3.70	67.6

44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3>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4.7	26.4	36.8	27.4	9.4	64.2	3.77	69.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2.4	26.8	39.0	24.4	9.8	63.4	3.71	67.7
	벤처스타트업	(35)	2.9	8.6	22.9	34.3	31.4	11.4	65.7	3.83	70.7
	대기업	(30)	3.3	3.3	30.0	36.7	26.7	6.7	63.3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8.0	12.0	20.0	36.0	24.0	20.0	60.0	3.56	64.0
	8~10년	(6)	0.0	0.0	33.3	16.7	50.0	0.0	66.7	4.17	79.2
	11~20년	(18)	0.0	5.6	38.9	38.9	16.7	5.6	55.6	3.67	66.7
	21~30년	(23)	8.7	0.0	30.4	30.4	30.4	8.7	60.9	3.74	68.5
	31~50년	(22)	4.5	0.0	27.3	36.4	31.8	4.5	68.2	3.91	72.7
	51년 이상	(12)	0.0	8.3	8.3	58.3	25.0	8.3	83.3	4.00	75.0
업종	제조업	(48)	6.3	2.1	25.0	43.8	22.9	8.3	66.7	3.75	68.8
	건설업	(6)	0.0	16.7	33.3	0.0	50.0	16.7	5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41.7	25.0	8.3	25.0	33.3	3.08	52.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14.3	28.6	42.9	14.3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35.7	21.4	42.9	0.0	64.3	4.07	76.8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60.0	40.0	0.0	100.0	4.40	8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10.0	5.0	25.0	30.0	30.0	15.0	6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6.7	6.7	20.0	26.7	40.0	13.3	66.7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31.6	36.8	26.3	5.3	63.2	3.84	71.1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29.4	47.1	11.8	11.8	58.8	3.53	63.2
	500억 이상	(35)	2.9	2.9	25.7	40.0	28.6	5.7	68.6	3.89	7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5.6	23.9	38.0	29.6	8.5	67.6	3.86	71.5
	없음	(35)	8.6	2.9	31.4	34.3	22.9	11.4	57.1	3.60	6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2.9	27.9	38.2	27.9	5.9	66.2	3.85	71.3
	경험 없음	(38)	7.9	7.9	23.7	34.2	26.3	15.8	60.5	3.63	65.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0.0	31.1	42.2	20.0	6.7	62.2	3.69	67.2
	없음	(61)	3.3	8.2	23.0	32.8	32.8	11.5	65.6	3.84	70.9

〈부록 표114〉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5.7	27.4	43.4	21.7	7.5	65.1	3.77	69.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26.8	46.3	22.0	4.9	68.3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2.9	5.7	25.7	40.0	25.7	8.6	65.7	3.80	70.0
	대기업	(30)	3.3	6.7	30.0	43.3	16.7	10.0	60.0	3.63	65.8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4.0	52.0	16.0	8.0	68.0	3.72	68.0
	8~10년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11~20년	(18)	0.0	0.0	38.9	33.3	27.8	0.0	61.1	3.89	72.2
	21~30년	(23)	0.0	8.7	21.7	47.8	21.7	8.7	69.6	3.83	70.7
	31~50년	(22)	4.5	4.5	22.7	45.5	22.7	9.1	68.2	3.77	69.3
	51년 이상	(12)	0.0	8.3	41.7	33.3	16.7	8.3	50.0	3.58	64.6
업종	제조업	(48)	4.2	4.2	29.2	47.9	14.6	8.3	62.5	3.65	66.1
	건설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41.7	25.0	0.0	66.7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42.9	42.9	0.0	85.7	4.29	82.1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28.6	28.6	28.6	14.3	57.1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40.0	40.0	2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10.0	15.0	45.0	25.0	15.0	7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0.0	53.3	26.7	0.0	80.0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42.1	26.3	26.3	5.3	52.6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8.8	11.8	5.9	70.6	3.76	69.1
	500억 이상	(35)	2.9	5.7	31.4	40.0	20.0	8.6	60.0	3.69	6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7.0	28.2	40.8	22.5	8.5	63.4	3.76	69.0
	없음	(35)	2.9	2.9	25.7	48.6	20.0	5.7	68.6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7.4	30.9	41.2	17.6	10.3	58.8	3.63	65.8
	경험 없음	(38)	0.0	2.6	21.1	47.4	28.9	2.6	76.3	4.03	75.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8.9	22.2	46.7	22.2	8.9	68.9	3.82	70.6
	없음	(61)	3.3	3.3	31.1	41.0	21.3	6.6	62.3	3.74	68.4

45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5〉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과거_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5.7	28.3	41.5	22.6	7.5	64.2	3.77	69.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7.3	19.5	48.8	24.4	7.3	73.2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2.9	5.7	28.6	37.1	25.7	8.6	62.9	3.77	69.3
	대기업	(30)	3.3	3.3	40.0	36.7	16.7	6.7	53.3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8.0	44.0	20.0	8.0	64.0	3.72	68.0
	8~10년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11~20년	(18)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21~30년	(23)	4.3	8.7	21.7	43.5	21.7	13.0	65.2	3.70	67.4
	31~50년	(22)	0.0	4.5	31.8	36.4	27.3	4.5	63.6	3.86	71.6
	51년 이상	(12)	0.0	8.3	33.3	41.7	16.7	8.3	58.3	3.67	66.7
업종	제조업	(48)	2.1	6.3	27.1	50.0	14.6	8.3	64.6	3.69	67.2
	건설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41.7	33.3	0.0	75.0	4.08	77.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35.7	21.4	7.1	57.1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20.0	20.0	20.0	40.0	3.40	6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10.0	20.0	45.0	20.0	15.0	65.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0.0	0.0	46.7	20.0	33.3	0.0	53.3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15.8	36.8	36.8	10.5	73.7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2.9	17.6	5.9	70.6	3.82	70.6
	500억 이상	(35)	2.9	2.9	34.3	45.7	14.3	5.7	60.0	3.66	6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28.2	45.1	21.1	5.6	66.2	3.80	70.1
	없음	(35)	2.9	8.6	28.6	34.3	25.7	11.4	60.0	3.71	6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4.4	29.4	44.1	20.6	5.9	64.7	3.78	69.5
	경험 없음	(38)	2.6	7.9	26.3	36.8	26.3	10.5	63.2	3.76	69.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8.9	24.4	44.4	20.0	11.1	64.4	3.71	67.8
	없음	(61)	1.6	3.3	31.1	39.3	24.6	4.9	63.9	3.82	70.5

〈부록 표116〉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4.7	17.0	49.1	24.5	9.4	73.6	3.84	71.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4.9	19.5	43.9	24.4	12.2	68.3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2.9	5.7	14.3	54.3	22.9	8.6	77.1	3.89	72.1
	대기업	(30)	3.3	3.3	16.7	50.0	26.7	6.7	76.7	3.93	73.3
업력	7년 이하	(25)	4.0	0.0	12.0	64.0	20.0	4.0	84.0	3.96	74.0
	8~1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1~20년	(18)	0.0	5.6	22.2	44.4	27.8	5.6	72.2	3.94	73.6
	21~30년	(23)	8.7	13.0	17.4	39.1	21.7	21.7	60.9	3.52	63.0
	31~50년	(22)	4.5	4.5	18.2	40.9	31.8	9.1	72.7	3.91	72.7
	51년 이상	(12)	8.3	0.0	8.3	58.3	25.0	8.3	83.3	3.92	72.9
업종	제조업	(48)	6.3	4.2	14.6	50.0	25.0	10.4	75.0	3.83	70.8
	건설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16.7	58.3	16.7	8.3	75.0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42.9	14.3	28.6	14.3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7.1	71.4	21.4	0.0	92.9	4.14	78.6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40.0	40.0	2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기타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0.0	10.0	70.0	15.0	5.0	85.0	3.90	72.5
	10억~50억 미만	(15)	0.0	6.7	6.7	60.0	26.7	6.7	86.7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10.5	5.3	31.6	36.8	15.8	15.8	52.6	3.42	60.5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9.4	41.2	29.4	0.0	70.6	4.00	75.0
	500억 이상	(35)	5.7	8.6	11.4	42.9	31.4	14.3	74.3	3.86	7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5.6	18.3	43.7	26.8	11.3	70.4	3.80	70.1
	없음	(35)	2.9	2.9	14.3	60.0	20.0	5.7	80.0	3.91	72.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4.4	5.9	20.6	42.6	26.5	10.3	69.1	3.81	70.2
	경험 없음	(38)	5.3	2.6	10.5	60.5	21.1	7.9	81.6	3.89	72.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8.9	15.6	53.3	17.8	13.3	71.1	3.71	67.8
	없음	(61)	4.9	1.6	18.0	45.9	29.5	6.6	75.4	3.93	73.4

45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7〉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2.8	24.5	42.5	28.3	4.7	70.8	3.92	73.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2.4	9.8	53.7	29.3	7.3	82.9	4.00	75.0
	벤처스타트업	(35)	0.0	0.0	25.7	37.1	37.1	0.0	74.3	4.11	77.9
	대기업	(30)	0.0	6.7	43.3	33.3	16.7	6.7	50.0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0.0	0.0	16.0	36.0	48.0	0.0	84.0	4.32	83.0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11~20년	(18)	0.0	0.0	22.2	55.6	22.2	0.0	77.8	4.00	75.0
	21~30년	(23)	4.3	4.3	26.1	43.5	21.7	8.7	65.2	3.74	68.5
	31~50년	(22)	4.5	4.5	31.8	40.9	18.2	9.1	59.1	3.64	65.9
	51년 이상	(12)	0.0	8.3	33.3	33.3	25.0	8.3	58.3	3.75	68.8
업종	제조업	(48)	2.1	4.2	20.8	39.6	33.3	6.3	72.9	3.98	74.5
	건설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16.7	50.0	25.0	8.3	75.0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28.6	14.3	0.0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83.3	0.0	0.0	83.3	3.83	70.8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20.0	45.0	35.0	0.0	80.0	4.15	7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33.3	40.0	26.7	0.0	66.7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10.5	0.0	10.5	52.6	26.3	10.5	78.9	3.84	71.1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35.3	29.4	35.3	0.0	64.7	4.00	75.0
	500억 이상	(35)	0.0	8.6	25.7	42.9	22.9	8.6	65.7	3.80	7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2.8	28.2	42.3	23.9	5.6	66.2	3.82	70.4
	없음	(35)	0.0	2.9	17.1	42.9	37.1	2.9	80.0	4.14	7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4.4	22.1	47.1	23.5	7.4	70.6	3.84	71.0
	경험 없음	(38)	0.0	0.0	28.9	34.2	36.8	0.0	71.1	4.08	77.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24.4	37.8	28.9	8.9	66.7	3.84	71.1
	없음	(61)	1.6	0.0	24.6	45.9	27.9	1.6	73.8	3.98	74.6

〈부록 표118〉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5.7	18.9	36.8	34.0	10.4	70.8	3.90	72.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2.4	9.8	53.7	29.3	7.3	82.9	4.00	75.0
	벤처스타트업	(35)	2.9	8.6	17.1	25.7	45.7	11.4	71.4	4.03	75.7
	대기업	(30)	6.7	6.7	33.3	26.7	26.7	13.3	53.3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0.0	28.0	44.0	8.0	72.0	4.04	76.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5.6	27.8	38.9	27.8	5.6	66.7	3.89	72.2
	21~30년	(23)	13.0	4.3	13.0	47.8	21.7	17.4	69.6	3.61	65.2
	31~50년	(22)	4.5	13.6	4.5	45.5	31.8	18.2	77.3	3.86	71.6
업종	51년 이상	(12)	0.0	0.0	50.0	8.3	41.7	0.0	50.0	3.92	72.9
	제조업	(48)	2.1	2.1	10.4	43.8	41.7	4.2	85.4	4.21	80.2
	건설업	(6)	0.0	33.3	33.3	16.7	16.7	33.3	33.3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16.7	0.0	0.0	66.7	16.7	16.7	83.3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57.1	0.0	28.6	14.3	28.6	3.43	60.7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7.1	0.0	28.6	35.7	28.6	7.1	64.3	3.79	69.6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0.0	60.0	0.0	60.0	4.20	8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0.0	66.7	16.7	16.7	83.3	3.83	70.8
	기타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3.17	54.2
	10억 미만	(20)	5.0	5.0	25.0	35.0	30.0	10.0	65.0	3.80	70.0
	10억~50억 미만	(15)	6.7	0.0	13.3	26.7	53.3	6.7	80.0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10.5	47.4	26.3	15.8	73.7	3.79	69.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11.8	47.1	29.4	11.8	76.5	3.88	72.1
	500억 이상	(35)	2.9	5.7	25.7	31.4	34.3	8.6	65.7	3.89	7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있음	(71)	7.0	8.5	21.1	33.8	29.6	15.5	63.4	3.70	67.6
	없음	(35)	0.0	0.0	14.3	42.9	42.9	0.0	85.7	4.29	82.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있음	(68)	5.9	5.9	16.2	38.2	33.8	11.8	72.1	3.88	72.1
	경험 없음	(38)	2.6	5.3	23.7	34.2	34.2	7.9	68.4	3.92	73.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6.7	17.8	35.6	33.3	13.3	68.9	3.82	70.6
	없음	(61)	3.3	4.9	19.7	37.7	34.4	8.2	72.1	3.95	73.8

45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19〉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기업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5.7	12.3	47.2	33.0	7.5	80.2	4.04	75.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4.9	9.8	56.1	26.8	7.3	82.9	4.00	75.0
	벤처스타트업	(35)	2.9	2.9	14.3	37.1	42.9	5.7	80.0	4.14	78.6
	대기업	(30)	0.0	10.0	13.3	46.7	30.0	10.0	76.7	3.97	74.2
업력	7년 이하	(25)	0.0	4.0	16.0	44.0	36.0	4.0	80.0	4.12	78.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5.6	5.6	16.7	55.6	16.7	11.1	72.2	3.72	68.1
	21~30년	(23)	4.3	13.0	13.0	43.5	26.1	17.4	69.6	3.74	68.5
	31~50년	(22)	0.0	4.5	4.5	54.5	36.4	4.5	90.9	4.23	80.7
	51년 이상	(12)	0.0	0.0	16.7	41.7	41.7	0.0	83.3	4.25	81.3
업종	제조업	(48)	0.0	2.1	4.2	60.4	33.3	2.1	93.8	4.25	81.3
	건설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25.0	41.7	25.0	8.3	66.7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42.9	14.3	28.6	14.3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7.1	0.0	7.1	57.1	28.6	7.1	85.7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0.0	50.0	16.7	0.0	33.3	50.0	33.3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0.0	15.0	55.0	20.0	10.0	75.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6.7	33.3	53.3	6.7	86.7	4.33	83.3
	50억~100억 미만	(19)	10.5	0.0	21.1	47.4	21.1	10.5	68.4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41.2	41.2	0.0	82.4	4.24	80.9
	500억 이상	(35)	0.0	8.6	5.7	51.4	34.3	8.6	85.7	4.11	7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5.6	14.1	45.1	32.4	8.5	77.5	3.99	74.6
	없음	(35)	0.0	5.7	8.6	51.4	34.3	5.7	85.7	4.14	7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4.4	11.8	48.5	32.4	7.4	80.9	4.03	75.7
	경험 없음	(38)	0.0	7.9	13.2	44.7	34.2	7.9	78.9	4.05	76.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8.9	13.3	48.9	24.4	13.3	73.3	3.80	70.0
	없음	(61)	0.0	3.3	11.5	45.9	39.3	3.3	85.2	4.21	80.3

〈부록 표120〉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4.7	16.0	50.9	27.4	5.7	78.3	3.99	74.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2.4	12.2	56.1	26.8	4.9	82.9	4.02	75.6
	벤처스타트업	(35)	0.0	0.0	17.1	48.6	34.3	0.0	82.9	4.17	79.3
	대기업	(30)	0.0	13.3	20.0	46.7	20.0	13.3	66.7	3.73	68.3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56.0	24.0	0.0	80.0	4.04	76.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0.0	27.8	61.1	11.1	0.0	72.2	3.83	70.8
	21~30년	(23)	4.3	13.0	17.4	34.8	30.4	17.4	65.2	3.74	68.5
	31~50년	(22)	0.0	9.1	9.1	54.5	27.3	9.1	81.8	4.00	75.0
	51년 이상	(12)	0.0	0.0	8.3	50.0	41.7	0.0	91.7	4.33	83.3
	업종	제조업	(48)	0.0	0.0	10.4	60.4	29.2	0.0	89.6	4.19
	건설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8.3	8.3	8.3	58.3	16.7	16.7	75.0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42.9	14.3	28.6	14.3	42.9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14.3	42.9	28.6	14.3	71.4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15.0	50.0	30.0	5.0	80.0	4.05	76.3
	10억~50억 미만	(15)	0.0	13.3	13.3	40.0	33.3	13.3	73.3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5.3	0.0	15.8	52.6	26.3	5.3	78.9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3.5	52.9	23.5	0.0	76.5	4.00	75.0
	500억 이상	(35)	0.0	5.7	14.3	54.3	25.7	5.7	80.0	4.00	7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5.6	15.5	50.7	26.8	7.0	77.5	3.96	73.9
	없음	(35)	0.0	2.9	17.1	51.4	28.6	2.9	80.0	4.06	7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4.4	14.7	52.9	26.5	5.9	79.4	3.99	74.6
	경험 없음	(38)	0.0	5.3	18.4	47.4	28.9	5.3	76.3	4.00	7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20.0	48.9	22.2	8.9	71.1	3.82	70.6
	없음	(61)	0.0	3.3	13.1	52.5	31.1	3.3	83.6	4.11	77.9

45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21〉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4.7	21.7	40.6	31.1	6.6	71.7	3.94	73.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4.9	19.5	39.0	34.1	7.3	73.2	3.98	74.4
	벤처스타트업	(35)	2.9	5.7	20.0	31.4	40.0	8.6	71.4	4.00	75.0
	대기업	(30)	0.0	3.3	26.7	53.3	16.7	3.3	70.0	3.83	70.8
업력	7년 이하	(25)	0.0	8.0	16.0	36.0	40.0	8.0	76.0	4.08	77.0
	8~10년	(6)	0.0	16.7	0.0	33.3	50.0	16.7	83.3	4.17	79.2
	11~20년	(18)	5.6	0.0	33.3	38.9	22.2	5.6	61.1	3.72	68.1
	21~30년	(23)	4.3	4.3	21.7	39.1	30.4	8.7	69.6	3.87	71.7
	31~50년	(22)	0.0	4.5	31.8	40.9	22.7	4.5	63.6	3.82	70.5
	51년 이상	(12)	0.0	0.0	8.3	58.3	33.3	0.0	91.7	4.25	81.3
업종	제조업	(48)	0.0	0.0	18.8	45.8	35.4	0.0	81.3	4.17	79.2
	건설업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8.3	33.3	8.3	25.0	25.0	41.7	50.0	3.25	56.3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7.1	0.0	14.3	57.1	21.4	7.1	78.6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20.0	60.0	0.0	80.0	4.40	8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10.0	60.0	30.0	0.0	90.0	4.20	80.0
	10억~50억 미만	(15)	0.0	13.3	20.0	26.7	40.0	13.3	66.7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10.5	5.3	5.3	47.4	31.6	15.8	78.9	3.84	71.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9.4	23.5	41.2	5.9	64.7	4.00	75.0
	500억 이상	(35)	0.0	2.9	34.3	40.0	22.9	2.9	62.9	3.83	7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5.6	21.1	43.7	26.8	8.5	70.4	3.86	71.5
	없음	(35)	0.0	2.9	22.9	34.3	40.0	2.9	74.3	4.11	7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4.4	20.6	39.7	32.4	7.4	72.1	3.94	73.5
	경험 없음	(38)	0.0	5.3	23.7	42.1	28.9	5.3	71.1	3.95	73.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4.4	20.0	46.7	24.4	8.9	71.1	3.82	70.6
	없음	(61)	0.0	4.9	23.0	36.1	36.1	4.9	72.1	4.03	75.8

〈부록 표122〉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8.5	19.8	41.5	28.3	10.4	69.8	3.86	71.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7.3	19.5	36.6	34.1	9.8	70.7	3.93	73.2
	벤처스타트업	(35)	2.9	5.7	14.3	48.6	28.6	8.6	77.1	3.94	73.6
	대기업	(30)	0.0	13.3	26.7	40.0	20.0	13.3	60.0	3.67	66.7
업력	7년 이하	(25)	0.0	4.0	12.0	52.0	32.0	4.0	84.0	4.12	78.0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11~20년	(18)	5.6	0.0	27.8	38.9	27.8	5.6	66.7	3.83	70.8
	21~30년	(23)	4.3	17.4	17.4	30.4	30.4	21.7	60.9	3.65	66.3
	31~50년	(22)	0.0	13.6	13.6	50.0	22.7	13.6	72.7	3.82	70.5
	51년 이상	(12)	0.0	8.3	41.7	25.0	25.0	8.3	50.0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8.3	16.7	45.8	29.2	8.3	75.0	3.96	74.0
	건설업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8.3	8.3	25.0	50.0	8.3	16.7	58.3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14.3	42.9	14.3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7.1	0.0	7.1	50.0	35.7	7.1	85.7	4.07	76.8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0.0	10.0	40.0	40.0	10.0	80.0	4.10	77.5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33.3	40.0	6.7	73.3	4.07	76.7
	50억~100억 미만	(19)	10.5	0.0	31.6	42.1	15.8	10.5	57.9	3.53	63.2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1.8	47.1	35.3	5.9	82.4	4.12	77.9
	500억 이상	(35)	0.0	14.3	22.9	42.9	20.0	14.3	62.9	3.69	6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8.5	23.9	43.7	21.1	11.3	64.8	3.72	68.0
	없음	(35)	0.0	8.6	11.4	37.1	42.9	8.6	80.0	4.14	7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8.8	23.5	44.1	20.6	11.8	64.7	3.71	67.6
	경험 없음	(38)	0.0	7.9	13.2	36.8	42.1	7.9	78.9	4.13	78.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8.9	17.8	40.0	28.9	13.3	68.9	3.80	70.0
	없음	(61)	0.0	8.2	21.3	42.6	27.9	8.2	70.5	3.90	72.5

45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23〉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현재_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4.7	18.9	39.6	34.0	7.5	73.6	3.97	74.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4.9	9.8	41.5	39.0	9.8	80.5	4.05	76.2
	벤처스타트업	(35)	2.9	5.7	17.1	45.7	28.6	8.6	74.3	3.91	72.9
	대기업	(30)	0.0	3.3	33.3	30.0	33.3	3.3	63.3	3.93	73.3
업력	7년 이하	(25)	0.0	8.0	20.0	36.0	36.0	8.0	72.0	4.00	75.0
	8~10년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11~20년	(18)	5.6	5.6	16.7	50.0	22.2	11.1	72.2	3.78	69.4
	21~30년	(23)	8.7	4.3	17.4	34.8	34.8	13.0	69.6	3.83	70.7
	31~50년	(22)	0.0	4.5	18.2	50.0	27.3	4.5	77.3	4.00	75.0
	51년 이상	(12)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81.3
업종	제조업	(48)	0.0	4.2	14.6	50.0	31.3	4.2	81.3	4.08	77.1
	건설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8.3	58.3	8.3	25.0	66.7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7.1	0.0	21.4	35.7	35.7	7.1	71.4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0.0	33.3	50.0	16.7	83.3	4.00	75.0
기타	(6)	0.0	16.7	33.3	0.0	50.0	16.7	50.0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0.0	20.0	45.0	25.0	10.0	70.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26.7	40.0	6.7	66.7	4.00	75.0
	50억~100억 미만	(19)	15.8	5.3	0.0	57.9	21.1	21.1	78.9	3.63	65.8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35.3	47.1	0.0	82.4	4.29	82.4
	500억 이상	(35)	0.0	2.9	25.7	34.3	37.1	2.9	71.4	4.06	7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2.8	22.5	43.7	26.8	7.0	70.4	3.86	71.5
	없음	(35)	0.0	8.6	11.4	31.4	48.6	8.6	80.0	4.20	8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5.9	17.6	42.6	30.9	8.8	73.5	3.93	73.2
	경험 없음	(38)	2.6	2.6	21.1	34.2	39.5	5.3	73.7	4.05	76.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4.4	26.7	35.6	28.9	8.9	64.4	3.80	70.0
	없음	(61)	1.6	4.9	13.1	42.6	37.7	6.6	80.3	4.10	77.5

〈부록 표124〉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개도국 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6.6	5.7	17.0	37.7	33.0	12.3	70.8	3.85	71.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4.9	4.9	24.4	31.7	34.1	9.8	65.9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2.9	2.9	14.3	45.7	34.3	5.7	80.0	4.06	76.4
	대기업	(30)	13.3	10.0	10.0	36.7	30.0	23.3	66.7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0.0	4.0	12.0	36.0	48.0	4.0	84.0	4.28	82.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5.6	0.0	27.8	50.0	16.7	5.6	66.7	3.72	68.1
	21~30년	(23)	4.3	17.4	26.1	21.7	30.4	21.7	52.2	3.57	64.1
	31~50년	(22)	18.2	4.5	13.6	31.8	31.8	22.7	63.6	3.55	63.6
	51년 이상	(12)	8.3	0.0	8.3	58.3	25.0	8.3	83.3	3.92	72.9
업종	제조업	(48)	6.3	2.1	16.7	37.5	37.5	8.3	75.0	3.98	74.5
	건설업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0.0	83.3	8.3	8.3	91.7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28.6	14.3	28.6	28.6	28.6	57.1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21.4	0.0	21.4	28.6	28.6	21.4	57.1	3.43	60.7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40.0	60.0	0.0	100.0	4.60	9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0.0	33.3	16.7	16.7	33.3	33.3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5.0	25.0	25.0	40.0	10.0	65.0	3.90	72.5
	10억~50억 미만	(15)	6.7	0.0	6.7	46.7	40.0	6.7	86.7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10.5	5.3	21.1	57.9	5.3	15.8	63.2	3.42	60.5
	100억~500억 미만	(17)	5.9	0.0	17.6	35.3	41.2	5.9	76.5	4.06	76.5
	500억 이상	(35)	5.7	11.4	14.3	31.4	37.1	17.1	68.6	3.83	7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7.0	7.0	15.5	45.1	25.4	14.1	70.4	3.75	68.7
	없음	(35)	5.7	2.9	20.0	22.9	48.6	8.6	71.4	4.06	7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4.4	7.4	11.8	42.6	33.8	11.8	76.5	3.94	73.5
	경험 없음	(38)	10.5	2.6	26.3	28.9	31.6	13.2	60.5	3.68	67.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8.9	11.1	26.7	31.1	22.2	20.0	53.3	3.47	61.7
	없음	(61)	4.9	1.6	9.8	42.6	41.0	6.6	83.6	4.13	78.3

46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25〉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11.3	20.8	33.0	33.0	13.2	66.0	3.84	71.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7.3	19.5	31.7	41.5	7.3	73.2	4.07	76.8
	벤처스타트업	(35)	0.0	14.3	11.4	37.1	37.1	14.3	74.3	3.97	74.3
	대기업	(30)	6.7	13.3	33.3	30.0	16.7	20.0	46.7	3.37	59.2
업력	7년 이하	(25)	0.0	8.0	20.0	24.0	48.0	8.0	72.0	4.12	78.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11.1	22.2	44.4	22.2	11.1	66.7	3.78	69.4
	21~30년	(23)	0.0	17.4	21.7	17.4	43.5	17.4	60.9	3.87	71.7
	31~50년	(22)	4.5	13.6	27.3	40.9	13.6	18.2	54.5	3.45	61.4
	51년 이상	(12)	8.3	8.3	16.7	41.7	25.0	16.7	66.7	3.67	66.7
업종	제조업	(48)	2.1	8.3	16.7	37.5	35.4	10.4	72.9	3.96	74.0
	건설업	(6)	16.7	16.7	33.3	0.0	33.3	33.3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42.9	14.3	14.3	57.1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14.3	14.3	35.7	35.7	14.3	71.4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20.0	60.0	0.0	80.0	4.40	8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기타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5.0	5.0	35.0	45.0	15.0	80.0	4.10	77.5
	10억~50억 미만	(1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15.8	47.4	21.1	15.8	68.4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17.6	23.5	41.2	17.6	64.7	3.82	70.6
	500억 이상	(35)	2.9	11.4	25.7	34.3	25.7	14.3	60.0	3.69	6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2.7	25.4	31.0	28.2	15.5	59.2	3.69	67.3
	없음	(35)	0.0	8.6	11.4	37.1	42.9	8.6	80.0	4.14	7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11.8	19.1	35.3	32.4	13.2	67.6	3.85	71.3
	경험 없음	(38)	2.6	10.5	23.7	28.9	34.2	13.2	63.2	3.82	70.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0.0	17.8	44.4	15.6	22.2	60.0	3.51	62.8
	없음	(61)	1.6	4.9	23.0	24.6	45.9	6.6	70.5	4.08	77.0

〈부록 표126〉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4.7	6.6	17.9	35.8	34.9	11.3	70.8	3.90	72.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3	2.4	14.6	46.3	29.3	9.8	75.6	3.88	72.0
	벤처스타트업	(35)	5.7	5.7	14.3	31.4	42.9	11.4	74.3	4.00	75.0
	대기업	(30)	0.0	13.3	26.7	26.7	33.3	13.3	60.0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8.0	0.0	12.0	28.0	52.0	8.0	80.0	4.16	79.0
	8~10년	(6)	0.0	0.0	16.7	16.7	66.7	0.0	83.3	4.50	87.5
	11~20년	(18)	5.6	16.7	16.7	33.3	27.8	22.2	61.1	3.61	65.3
	21~30년	(23)	8.7	8.7	8.7	52.2	21.7	17.4	73.9	3.70	67.4
	31~50년	(22)	0.0	4.5	18.2	50.0	27.3	4.5	77.3	4.00	75.0
업종	51년 이상	(12)	0.0	8.3	50.0	8.3	33.3	8.3	41.7	3.67	66.7
	제조업	(48)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건설업	(6)	16.7	16.7	16.7	0.0	50.0	33.3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28.6	28.6	0.0	28.6	42.9	28.6	3.00	50.0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14.3	35.7	42.9	7.1	78.6	4.14	78.6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16.7	0.0	50.0	16.7	33.3	66.7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6)	0.0	33.3	33.3	0.0	33.3	33.3	33.3	3.33	58.3
	10억 미만	(20)	5.0	0.0	20.0	40.0	35.0	5.0	75.0	4.00	75.0
	10억~50억 미만	(15)	6.7	6.7	0.0	26.7	60.0	13.3	86.7	4.27	81.7
	50억~100억 미만	(19)	15.8	5.3	21.1	31.6	26.3	21.1	57.9	3.47	61.8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1.8	47.1	41.2	0.0	88.2	4.29	82.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35)	0.0	14.3	25.7	34.3	25.7	14.3	60.0	3.71	67.9
	있음	(71)	7.0	9.9	19.7	31.0	32.4	16.9	63.4	3.72	68.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35)	0.0	0.0	14.3	45.7	40.0	0.0	85.7	4.26	81.4
	경험 있음	(68)	4.4	4.4	17.6	35.3	38.2	8.8	73.5	3.99	74.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38)	5.3	10.5	18.4	36.8	28.9	15.8	65.8	3.74	68.4
	있음	(45)	6.7	4.4	15.6	48.9	24.4	11.1	73.3	3.80	70.0
	없음	(61)	3.3	8.2	19.7	26.2	42.6	11.5	68.9	3.97	74.2

46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27〉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기업 이미지 향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7.5	18.9	35.8	34.9	10.4	70.8	3.92	73.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4.9	22.0	31.7	39.0	7.3	70.7	4.00	75.0
	벤처스타트업	(35)	2.9	8.6	11.4	45.7	31.4	11.4	77.1	3.94	73.6
	대기업	(30)	3.3	10.0	23.3	30.0	33.3	13.3	63.3	3.80	70.0
업력	7년 이하	(25)	4.0	12.0	16.0	36.0	32.0	16.0	68.0	3.80	70.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0.0	0.0	33.3	38.9	27.8	0.0	66.7	3.94	73.6
	21~30년	(23)	4.3	13.0	8.7	43.5	30.4	17.4	73.9	3.83	70.7
	31~50년	(22)	0.0	9.1	31.8	31.8	27.3	9.1	59.1	3.77	69.3
	51년 이상	(12)	8.3	0.0	8.3	25.0	58.3	8.3	83.3	4.25	81.3
업종	제조업	(48)	2.1	0.0	16.7	43.8	37.5	2.1	81.3	4.15	78.6
	건설업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8.3	8.3	25.0	41.7	16.7	16.7	58.3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1.4	35.7	35.7	7.1	71.4	4.00	75.0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40.0	40.0	2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기타	(6)	0.0	50.0	16.7	0.0	33.3	50.0	33.3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10.0	25.0	35.0	25.0	15.0	6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0.0	6.7	13.3	40.0	40.0	6.7	80.0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21.1	42.1	21.1	15.8	63.2	3.63	65.8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35.3	17.6	41.2	5.9	58.8	3.94	73.5
	500억 이상	(35)	2.9	5.7	8.6	40.0	42.9	8.6	82.9	4.14	7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9.9	21.1	33.8	32.4	12.7	66.2	3.83	70.8
	없음	(35)	2.9	2.9	14.3	40.0	40.0	5.7	80.0	4.11	7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2.9	19.1	39.7	35.3	5.9	75.0	4.01	75.4
	경험 없음	(38)	2.6	15.8	18.4	28.9	34.2	18.4	63.2	3.76	69.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13.3	20.0	46.7	17.8	15.6	64.4	3.64	66.1
	없음	(61)	3.3	3.3	18.0	27.9	47.5	6.6	75.4	4.13	78.3

〈부록 표128〉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3.8	3.8	19.8	43.4	29.2	7.5	72.6	3.91	72.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2.4	17.1	46.3	31.7	4.9	78.0	4.02	75.6
	벤처스타트업	(35)	2.9	2.9	20.0	48.6	25.7	5.7	74.3	3.91	72.9
	대기업	(30)	6.7	6.7	23.3	33.3	30.0	13.3	63.3	3.73	68.3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8.0	48.0	24.0	0.0	72.0	3.96	74.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11.1	5.6	16.7	50.0	16.7	16.7	66.7	3.56	63.9
	21~30년	(23)	0.0	4.3	26.1	34.8	34.8	4.3	69.6	4.00	75.0
	31~50년	(22)	4.5	9.1	22.7	40.9	22.7	13.6	63.6	3.68	67.0
	51년 이상	(12)	8.3	0.0	0.0	50.0	41.7	8.3	91.7	4.17	79.2
업종	제조업	(48)	2.1	2.1	10.4	52.1	33.3	4.2	85.4	4.13	78.1
	건설업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33.3	58.3	0.0	8.3	58.3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14.3	14.3	28.6	28.6	28.6	57.1	3.43	60.7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42.9	21.4	28.6	7.1	50.0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기타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10.0	65.0	25.0	0.0	90.0	4.15	7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26.7	46.7	0.0	73.3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10.5	0.0	31.6	52.6	5.3	10.5	57.9	3.42	60.5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11.8	41.2	35.3	11.8	76.5	3.94	73.5
	500억 이상	(35)	2.9	8.6	20.0	34.3	34.3	11.4	68.6	3.89	7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5.6	23.9	38.0	26.8	11.3	64.8	3.75	68.7
	없음	(35)	0.0	0.0	11.4	54.3	34.3	0.0	88.6	4.23	8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4.4	4.4	23.5	35.3	32.4	8.8	67.6	3.87	71.7
	경험 없음	(38)	2.6	2.6	13.2	57.9	23.7	5.3	81.6	3.97	74.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2.2	24.4	53.3	15.6	6.7	68.9	3.73	68.3
	없음	(61)	3.3	4.9	16.4	36.1	39.3	8.2	75.4	4.03	75.8

46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29>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개도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6.6	20.8	39.6	32.1	7.5	71.7	3.95	73.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19.5	43.9	34.1	2.4	78.0	4.10	77.4
	벤처스타트업	(35)	0.0	8.6	22.9	34.3	34.3	8.6	68.6	3.94	73.6
	대기업	(30)	3.3	10.0	20.0	40.0	26.7	13.3	66.7	3.77	69.2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4.0	36.0	40.0	0.0	76.0	4.16	79.0
	8~10년	(6)	0.0	16.7	0.0	16.7	66.7	16.7	83.3	4.33	83.3
	11~20년	(18)	0.0	11.1	27.8	44.4	16.7	11.1	61.1	3.67	66.7
	21~30년	(23)	0.0	0.0	26.1	39.1	34.8	0.0	73.9	4.09	77.2
	31~50년	(22)	0.0	18.2	22.7	36.4	22.7	18.2	59.1	3.64	65.9
	51년 이상	(12)	8.3	0.0	0.0	58.3	33.3	8.3	91.7	4.08	77.1
업종	제조업	(48)	0.0	4.2	18.8	43.8	33.3	4.2	77.1	4.06	76.6
	건설업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41.7	41.7	8.3	8.3	50.0	3.50	62.5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7.1	42.9	42.9	7.1	85.7	4.21	80.4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20.0	60.0	2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기타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20.0	45.0	35.0	0.0	80.0	4.15	78.8
	10억~50억 미만	(15)	0.0	6.7	13.3	33.3	46.7	6.7	80.0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0.0	15.8	15.8	52.6	15.8	15.8	68.4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35.3	35.3	5.9	70.6	4.00	75.0
	500억 이상	(35)	2.9	5.7	25.7	34.3	31.4	8.6	65.7	3.86	7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9.9	19.7	42.3	26.8	11.3	69.0	3.83	70.8
	없음	(35)	0.0	0.0	22.9	34.3	42.9	0.0	77.1	4.20	8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10.3	22.1	32.4	35.3	10.3	67.6	3.93	73.2
	경험 없음	(38)	2.6	0.0	18.4	52.6	26.3	2.6	78.9	4.00	7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8.9	22.2	53.3	15.6	8.9	68.9	3.76	68.9
	없음	(61)	1.6	4.9	19.7	29.5	44.3	6.6	73.8	4.10	77.5

〈부록 표130〉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12.3	22.6	36.8	26.4	14.2	63.2	3.74	68.4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7.3	24.4	39.0	29.3	7.3	68.3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0.0	20.0	17.1	34.3	28.6	20.0	62.9	3.71	67.9
	대기업	(30)	6.7	10.0	26.7	36.7	20.0	16.7	56.7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0.0	12.0	12.0	40.0	36.0	12.0	76.0	4.00	75.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0.0	22.2	27.8	27.8	22.2	22.2	50.0	3.50	62.5
	21~30년	(23)	4.3	17.4	17.4	34.8	26.1	21.7	60.9	3.61	65.2
	31~50년	(22)	0.0	9.1	36.4	36.4	18.2	9.1	54.5	3.64	65.9
	51년 이상	(12)	8.3	0.0	33.3	50.0	8.3	8.3	58.3	3.50	62.5
업종	제조업	(48)	0.0	4.2	22.9	43.8	29.2	4.2	72.9	3.98	74.5
	건설업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50.0	33.3	8.3	8.3	41.7	3.42	60.4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28.6	42.9	0.0	28.6	28.6	28.6	3.29	57.1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7.1	14.3	7.1	35.7	35.7	21.4	71.4	3.79	69.6
	교육서비스업	(5)	0.0	60.0	0.0	20.0	20.0	60.0	40.0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기타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10.0	15.0	35.0	35.0	15.0	70.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13.3	33.3	46.7	6.7	80.0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0.0	21.1	42.1	26.3	10.5	21.1	36.8	3.26	56.6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17.6	41.2	29.4	11.8	70.6	3.88	72.1
	500억 이상	(35)	2.9	11.4	22.9	42.9	20.0	14.3	62.9	3.66	6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6.9	26.8	33.8	19.7	19.7	53.5	3.51	62.7
	없음	(35)	0.0	2.9	14.3	42.9	40.0	2.9	82.9	4.20	8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13.2	25.0	32.4	27.9	14.7	60.3	3.72	68.0
	경험 없음	(38)	2.6	10.5	18.4	44.7	23.7	13.2	68.4	3.76	69.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2	17.8	42.2	15.6	24.4	57.8	3.47	61.7
	없음	(61)	1.6	4.9	26.2	32.8	34.4	6.6	67.2	3.93	73.4

46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1〉 개도국 CSR·CSV에서 중시하는 정도_미래_개도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7.5	21.7	36.8	31.1	10.4	67.9	3.86	71.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7.3	22.0	26.8	41.5	9.8	68.3	3.98	74.4
	벤처스타트업	(35)	2.9	2.9	20.0	42.9	31.4	5.7	74.3	3.97	74.3
	대기업	(30)	3.3	13.3	23.3	43.3	16.7	16.7	60.0	3.57	64.2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0.0	36.0	36.0	8.0	72.0	3.96	74.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5.6	5.6	27.8	38.9	22.2	11.1	61.1	3.67	66.7
	21~30년	(23)	0.0	8.7	26.1	26.1	39.1	8.7	65.2	3.96	73.9
	31~50년	(22)	0.0	18.2	22.7	40.9	18.2	18.2	59.1	3.59	64.8
	51년 이상	(12)	8.3	0.0	16.7	50.0	25.0	8.3	75.0	3.83	70.8
업종	제조업	(48)	2.1	4.2	14.6	52.1	27.1	6.3	79.2	3.98	74.5
	건설업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25.0	33.3	16.7	25.0	50.0	3.33	58.3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28.6	28.6	28.6	14.3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21.4	35.7	7.1	57.1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20.0	60.0	0.0	80.0	4.40	8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16.7	50.0	0.0	66.7	4.17	79.2
기타	(6)	0.0	33.3	16.7	16.7	33.3	33.3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0.0	25.0	40.0	30.0	5.0	70.0	3.90	72.5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13.3	60.0	6.7	73.3	4.27	81.7
	50억~100억 미만	(19)	5.3	10.5	31.6	31.6	21.1	15.8	52.6	3.53	63.2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7.6	41.2	35.3	5.9	76.5	4.06	76.5
	500억 이상	(35)	2.9	11.4	17.1	45.7	22.9	14.3	68.6	3.74	6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9.9	23.9	36.6	26.8	12.7	63.4	3.75	68.7
	없음	(35)	2.9	2.9	17.1	37.1	40.0	5.7	77.1	4.09	77.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9	8.8	20.6	35.3	32.4	11.8	67.6	3.85	71.3
	경험 없음	(38)	2.6	5.3	23.7	39.5	28.9	7.9	68.4	3.87	71.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26.7	48.9	17.8	6.7	66.7	3.76	68.9
	없음	(61)	3.3	9.8	18.0	27.9	41.0	13.1	68.9	3.93	73.4

〈부록 표13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중앙정부·지자체·공공부문 협력 경험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6)	45.3	54.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36.6	63.4
	벤처스타트업	(35)	62.9	37.1
	대기업	(30)	36.7	63.3
업력	7년 이하	(25)	60.0	40.0
	8~10년	(6)	66.7	33.3
	11~20년	(18)	33.3	66.7
	21~30년	(23)	43.5	56.5
	31~50년	(22)	36.4	63.6
	51년 이상	(12)	41.7	58.3
업종	제조업	(48)	50.0	50.0
	건설업	(6)	16.7	83.3
	도매 및 소매업	(12)	58.3	41.7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71.4
	금융/보험업	(2)	50.0	50.0
	전문서비스업	(14)	35.7	64.3
	교육서비스업	(5)	60.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33.3	66.7
기타	(6)	5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0	50.0
	10억~50억 미만	(15)	40.0	60.0
	50억~100억 미만	(19)	52.6	47.4
	100억~500억 미만	(17)	58.8	41.2
	500억 이상	(35)	34.3	6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5.1	54.9
	없음	(35)	45.7	5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60.3	39.7
	경험 없음	(38)	18.4	81.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31.1	68.9
	없음	(61)	55.7	44.3

46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세제 혜택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이 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2.1	8.3	62.5	25.0	2.1	10.4	27.1	3.17	54.2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6.7	66.7	26.7	0.0	6.7	26.7	3.20	55.0
	벤처스타트업	(22)	4.5	4.5	68.2	18.2	4.5	9.1	22.7	3.14	53.4
	대기업	(11)	0.0	18.2	45.5	36.4	0.0	18.2	36.4	3.18	54.5
업력	7년 이하	(15)	6.7	6.7	80.0	0.0	6.7	13.3	6.7	2.93	48.3
	8~10년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11~20년	(6)	0.0	0.0	66.7	33.3	0.0	0.0	33.3	3.33	58.3
	21~30년	(10)	0.0	10.0	50.0	40.0	0.0	10.0	40.0	3.30	57.5
	31~50년	(8)	0.0	12.5	62.5	25.0	0.0	12.5	25.0	3.13	53.1
	51년 이상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업종	제조업	(24)	4.2	4.2	66.7	25.0	0.0	8.3	25.0	3.13	53.1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71.4	14.3	14.3	0.0	28.6	3.43	60.7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기타	(3)	0.0	33.3	66.7	0.0	0.0	33.3	0.0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10.0	0.0	80.0	10.0	0.0	10.0	10.0	2.90	47.5
	10억~50억 미만	(6)	0.0	16.7	33.3	50.0	0.0	16.7	50.0	3.33	58.3
	50억~100억 미만	(10)	0.0	0.0	80.0	10.0	10.0	0.0	20.0	3.30	57.5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60.0	40.0	0.0	0.0	40.0	3.40	60.0
	500억 이상	(12)	0.0	25.0	50.0	25.0	0.0	25.0	25.0	3.00	5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9.4	53.1	34.4	3.1	9.4	37.5	3.31	57.8
	없음	(16)	6.3	6.3	81.3	6.3	0.0	12.5	6.3	2.88	46.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2.4	4.9	63.4	26.8	2.4	7.3	29.3	3.22	55.5
	경험 없음	(7)	0.0	28.6	57.1	14.3	0.0	28.6	14.3	2.86	46.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7.1	50.0	42.9	0.0	7.1	42.9	3.36	58.9
	없음	(34)	2.9	8.8	67.6	17.6	2.9	11.8	20.6	3.09	52.2

〈부록 표13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매칭펀드 지원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 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2.1	4.2	43.8	39.6	10.4	6.3	50.0	3.52	63.0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13.3	46.7	33.3	6.7	13.3	40.0	3.33	58.3
	벤처스타트업	(22)	0.0	0.0	36.4	45.5	18.2	0.0	63.6	3.82	70.5
	대기업	(11)	9.1	0.0	54.5	36.4	0.0	9.1	36.4	3.18	54.5
업력	7년 이하	(15)	0.0	0.0	53.3	33.3	13.3	0.0	46.7	3.60	65.0
	8~10년	(4)	0.0	0.0	25.0	75.0	0.0	0.0	75.0	3.75	68.8
	11~20년	(6)	0.0	16.7	50.0	0.0	33.3	16.7	33.3	3.50	62.5
	21~30년	(10)	0.0	10.0	50.0	40.0	0.0	10.0	40.0	3.30	57.5
	31~50년	(8)	0.0	0.0	25.0	62.5	12.5	0.0	75.0	3.88	71.9
	51년 이상	(5)	20.0	0.0	40.0	40.0	0.0	20.0	40.0	3.00	50.0
업종	제조업	(24)	0.0	0.0	33.3	58.3	8.3	0.0	66.7	3.75	68.8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14.3	42.9	28.6	14.3	14.3	42.9	3.43	60.7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금융/보험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5)	0.0	0.0	80.0	20.0	0.0	0.0	20.0	3.20	55.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0.0	33.3	33.3	33.3	3.33	58.3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2) (3)	0.0 33.3	0.0	50.0 66.7	0.0	50.0 0.0	0.0	50.0 33.3	4.00 2.33	75.0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40.0	50.0	10.0	0.0	60.0	3.70	67.5
	10억~50억 미만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40.0	30.0	20.0	10.0	50.0	3.60	65.0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30.0	70.0	0.0	0.0	70.0	3.70	67.5
	500억 이상	(12)	8.3	8.3	50.0	25.0	8.3	16.7	33.3	3.17	54.2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3.1	3.1	37.5	43.8	12.5	6.3	56.3	3.59	64.8
	없음	(16)	0.0	6.3	56.3	31.3	6.3	6.3	37.5	3.38	59.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2.4	2.4	43.9	39.0	12.2	4.9	51.2	3.56	64.0
	경험 없음	(7)	0.0	14.3	42.9	42.9	0.0	14.3	42.9	3.29	57.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7.1	7.1	28.6	50.0	7.1	14.3	57.1	3.43	60.7
	없음	(34)	0.0	2.9	50.0	35.3	11.8	2.9	47.1	3.56	64.0

47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금융 지원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 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4.2	8.3	45.8	31.3	10.4	12.5	41.7	3.35	58.9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13.3	46.7	26.7	13.3	13.3	40.0	3.40	60.0
	벤처스타트업	(22)	4.5	4.5	45.5	31.8	13.6	9.1	45.5	3.45	61.4
	대기업	(11)	9.1	9.1	45.5	36.4	0.0	18.2	36.4	3.09	52.3
업력	7년 이하	(15)	6.7	6.7	46.7	33.3	6.7	13.3	40.0	3.27	56.7
	8~10년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11~20년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21~30년	(10)	0.0	10.0	50.0	30.0	10.0	10.0	40.0	3.40	60.0
	31~50년	(8)	0.0	12.5	62.5	12.5	12.5	12.5	25.0	3.25	56.3
	51년 이상	(5)	20.0	0.0	20.0	60.0	0.0	20.0	60.0	3.20	55.0
업종	제조업	(24)	4.2	4.2	58.3	25.0	8.3	8.3	33.3	3.29	57.3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14.3	14.3	42.9	28.6	14.3	71.4	3.86	71.4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20.0	20.0	60.0	0.0	20.0	60.0	3.40	6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2) (3)	0.0 33.3	0.0 0.0	50.0 33.3	0.0 33.3	50.0 0.0	0.0 33.3	50.0 33.3	4.00 2.67	75.0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10.0	0.0	50.0	30.0	10.0	10.0	40.0	3.30	57.5
	10억~50억 미만	(6)	0.0	16.7	50.0	33.3	0.0	16.7	33.3	3.17	54.2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30.0	30.0	30.0	10.0	60.0	3.80	70.0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60.0	30.0	10.0	0.0	40.0	3.50	62.5
	500억 이상	(12)	8.3	16.7	41.7	33.3	0.0	25.0	33.3	3.00	5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3.1	9.4	46.9	31.3	9.4	12.5	40.6	3.34	58.6
	없음	(16)	6.3	6.3	43.8	31.3	12.5	12.5	43.8	3.38	59.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4.9	4.9	46.3	31.7	12.2	9.8	43.9	3.41	60.4
	경험 없음	(7)	0.0	28.6	42.9	28.6	0.0	28.6	28.6	3.00	5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7.1	7.1	35.7	42.9	7.1	14.3	50.0	3.36	58.9
	없음	(34)	2.9	8.8	50.0	26.5	11.8	11.8	38.2	3.35	58.8

〈부록 표1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 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2.1	12.5	39.6	31.3	14.6	14.6	45.8	3.44	60.9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13.3	33.3	40.0	13.3	13.3	53.3	3.53	63.3
	벤처스타트업	(22)	4.5	13.6	45.5	22.7	13.6	18.2	36.4	3.27	56.8
	대기업	(11)	0.0	9.1	36.4	36.4	18.2	9.1	54.5	3.64	65.9
업력	7년 이하	(15)	6.7	13.3	53.3	20.0	6.7	20.0	26.7	3.07	51.7
	8~10년	(4)	0.0	25.0	50.0	0.0	25.0	25.0	2.25	3.25	56.3
	11~2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21~30년	(10)	0.0	10.0	30.0	40.0	20.0	10.0	60.0	3.70	67.5
	31~50년	(8)	0.0	25.0	37.5	25.0	12.5	25.0	37.5	3.25	56.3
	51년 이상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업종	제조업	(24)	0.0	20.8	37.5	25.0	16.7	20.8	41.7	3.38	59.4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20.0	0.0	60.0	0.0	20.0	20.0	2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2) (3)	0.0 0.0	0.0 0.0	0.0 66.7	100.0 33.3	0.0 0.0	0.0 0.0	100.0 33.3	4.00 3.33	75.0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20.0	60.0	10.0	10.0	20.0	20.0	3.10	52.5
	10억~50억 미만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50억~100억 미만	(10)	0.0	0.0	60.0	20.0	20.0	0.0	40.0	3.60	65.0
	100억~500억 미만	(10)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65.0
	500억 이상	(12)	0.0	16.7	25.0	50.0	8.3	16.7	58.3	3.50	62.5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3.1	9.4	31.3	43.8	12.5	12.5	56.3	3.53	63.3
	없음	(16)	0.0	18.8	56.3	6.3	18.8	18.8	25.0	3.25	56.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2.4	9.8	43.9	29.3	14.6	12.2	43.9	3.44	61.0
	경험 없음	(7)	0.0	28.6	14.3	42.9	14.3	28.6	57.1	3.43	60.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7.1	35.7	28.6	28.6	7.1	57.1	3.79	69.6
	없음	(34)	2.9	14.7	41.2	32.4	8.8	17.6	41.2	3.29	57.4

47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개도국 CSR·CSV 관련 컨설팅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 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4.2	12.5	41.7	35.4	6.3	16.7	41.7	3.27	56.8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13.3	46.7	33.3	6.7	13.3	40.0	3.33	58.3
	벤처스타트업	(22)	4.5	18.2	36.4	31.8	9.1	22.7	40.9	3.23	55.7
	대기업	(11)	9.1	0.0	45.5	45.5	0.0	9.1	45.5	3.27	56.8
업력	7년 이하	(15)	6.7	6.7	53.3	26.7	6.7	13.3	33.3	3.20	55.0
	8~10년	(4)	0.0	75.0	0.0	25.0	0.0	75.0	25.0	2.50	37.5
	11~20년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21~30년	(10)	0.0	20.0	20.0	50.0	10.0	20.0	60.0	3.50	62.5
	31~50년	(8)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51년 이상	(5)	20.0	0.0	40.0	40.0	0.0	20.0	40.0	3.00	50.0
업종	제조업	(24)	0.0	12.5	45.8	37.5	4.2	12.5	41.7	3.33	58.3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14.3	28.6	42.9	14.3	14.3	57.1	3.57	64.3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금융/보험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5)	20.0	0.0	40.0	40.0	0.0	20.0	4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3)	0.0	66.7	0.0	0.0	33.3	66.7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2) (3)	0.0 33.3	0.0 0.0	50.0 33.3	50.0 33.3	0.0 0.0	0.0 33.3	50.0 33.3	3.50 2.67	62.5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10.0	60.0	20.0	10.0	10.0	30.0	3.30	57.5
	10억~50억 미만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50억~100억 미만	(10)	0.0	20.0	30.0	40.0	10.0	20.0	50.0	3.40	60.0
	100억~500억 미만	(10)	0.0	10.0	30.0	60.0	0.0	10.0	60.0	3.50	62.5
	500억 이상	(12)	8.3	8.3	58.3	25.0	0.0	16.7	25.0	3.00	5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6.3	12.5	31.3	46.9	3.1	18.8	50.0	3.28	57.0
	없음	(16)	0.0	12.5	62.5	12.5	12.5	12.5	25.0	3.25	56.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4.9	12.2	46.3	31.7	4.9	17.1	36.6	3.20	54.9
	경험 없음	(7)	0.0	14.3	14.3	57.1	14.3	14.3	71.4	3.71	67.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7.1	7.1	28.6	42.9	14.3	14.3	57.1	3.50	62.5
	없음	(34)	2.9	14.7	47.1	32.4	2.9	17.6	35.3	3.18	54.4

〈부록 표138〉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역할 만족도_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 매우 불 만족 한다	② 불 만족 한다	③ 보통 이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2.1	12.5	45.8	29.2	10.4	14.6	39.6	3.33	58.3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13.3	40.0	33.3	13.3	13.3	46.7	3.47	61.7
	벤처스타트업	(22)	0.0	18.2	45.5	22.7	13.6	18.2	36.4	3.32	58.0
	대기업	(11)	9.1	0.0	54.5	36.4	0.0	9.1	36.4	3.18	54.5
업력	7년 이하	(15)	0.0	6.7	60.0	13.3	20.0	6.7	33.3	3.47	61.7
	8~10년	(4)	0.0	75.0	0.0	25.0	0.0	75.0	25.0	2.50	37.5
	11~20년	(6)	0.0	0.0	66.7	16.7	16.7	0.0	33.3	3.50	62.5
	21~30년	(10)	0.0	20.0	30.0	40.0	10.0	20.0	50.0	3.40	60.0
	31~50년	(8)	0.0	0.0	62.5	37.5	0.0	0.0	37.5	3.38	59.4
	51년 이상	(5)	20.0	0.0	20.0	60.0	0.0	20.0	60.0	3.20	55.0
	업종	제조업	(24)	0.0	12.5	50.0	33.3	4.2	12.5	37.5	3.29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14.3	14.3	28.6	42.9	14.3	71.4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80.0	20.0	0.0	0.0	20.0	3.20	55.0
	교육서비스업	(3)	0.0	66.7	0.0	0.0	33.3	66.7	33.3	3.00	5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기타	(3)	33.3	0.0	33.3	33.3	0.0	33.3	33.3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10.0	70.0	10.0	10.0	10.0	20.0	3.20	55.0
	10억~50억 미만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50억~100억 미만	(10)	0.0	20.0	40.0	20.0	20.0	20.0	40.0	3.40	60.0
	100억~500억 미만	(10)	0.0	10.0	30.0	50.0	10.0	10.0	60.0	3.60	65.0
	500억 이상	(12)	8.3	8.3	50.0	33.3	0.0	16.7	33.3	3.08	5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3.1	12.5	37.5	37.5	9.4	15.6	46.9	3.38	59.4
	없음	(16)	0.0	12.5	62.5	12.5	12.5	12.5	25.0	3.25	56.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2.4	12.2	48.8	29.3	7.3	14.6	36.6	3.27	56.7
	경험 없음	(7)	0.0	14.3	28.6	28.6	28.6	14.3	57.1	3.71	67.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7.1	7.1	28.6	42.9	14.3	14.3	57.1	3.50	62.5
	없음	(34)	0.0	14.7	52.9	23.5	8.8	14.7	32.4	3.26	56.6

47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3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세제 혜택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0.0	20.8	56.3	22.9	0.0	79.2	4.02	75.5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13.3	53.3	33.3	0.0	86.7	4.20	80.0
	벤처스타트업	(22)	0.0	0.0	22.7	54.5	22.7	0.0	77.3	4.00	75.0
	대기업	(11)	0.0	0.0	27.3	63.6	9.1	0.0	72.7	3.82	70.5
업력	7년 이하	(15)	0.0	0.0	20.0	53.3	26.7	0.0	80.0	4.07	76.7
	8~10년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11~2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21~30년	(10)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31~50년	(8)	0.0	0.0	25.0	62.5	12.5	0.0	75.0	3.88	71.9
	51년 이상	(5)	0.0	0.0	20.0	80.0	0.0	0.0	80.0	3.80	70.0
업종	제조업	(24)	0.0	0.0	25.0	54.2	20.8	0.0	75.0	3.96	74.0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0.0	57.1	42.9	0.0	100.0	4.43	85.7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기타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10억~50억 미만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50억~100억 미만	(10)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30.0	40.0	30.0	0.0	70.0	4.00	75.0
	500억 이상	(12)	0.0	0.0	25.0	58.3	16.7	0.0	75.0	3.92	7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0.0	21.9	53.1	25.0	0.0	78.1	4.03	75.8
	없음	(16)	0.0	0.0	18.8	62.5	18.8	0.0	81.3	4.00	7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0.0	22.0	53.7	24.4	0.0	78.0	4.02	75.6
	경험 없음	(7)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7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75.0
	없음	(34)	0.0	0.0	23.5	50.0	26.5	0.0	76.5	4.03	75.7

〈부록 표14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매칭펀드 지원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0.0	29.2	39.6	31.3	0.0	70.8	4.02	75.5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33.3	40.0	26.7	0.0	66.7	3.93	73.3
	벤처스타트업	(22)	0.0	0.0	18.2	36.4	45.5	0.0	81.8	4.27	81.8
	대기업	(11)	0.0	0.0	45.5	45.5	9.1	0.0	54.5	3.64	65.9
업력	7년 이하	(15)	0.0	0.0	13.3	40.0	46.7	0.0	86.7	4.33	83.3
	8~10년	(4)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21~30년	(10)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31~50년	(8)	0.0	0.0	50.0	37.5	12.5	0.0	50.0	3.63	65.6
	51년 이상	(5)	0.0	0.0	20.0	80.0	0.0	0.0	80.0	3.80	70.0
업종	제조업	(24)	0.0	0.0	25.0	33.3	41.7	0.0	75.0	4.17	79.2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5)	0.0	0.0	20.0	80.0	0.0	0.0	80.0	3.80	70.0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기타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20.0	30.0	50.0	0.0	80.0	4.30	82.5
	10억~50억 미만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50억~100억 미만	(10)	0.0	0.0	50.0	30.0	20.0	0.0	50.0	3.70	67.5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40.0	30.0	30.0	0.0	60.0	3.90	72.5
	500억 이상	(12)	0.0	0.0	25.0	58.3	16.7	0.0	75.0	3.92	7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0.0	34.4	37.5	28.1	0.0	65.6	3.94	73.4
	없음	(16)	0.0	0.0	18.8	43.8	37.5	0.0	81.3	4.19	79.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0.0	31.7	36.6	31.7	0.0	68.3	4.00	75.0
	경험 없음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7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0.0	35.7	28.6	35.7	0.0	64.3	4.00	75.0
	없음	(34)	0.0	0.0	26.5	44.1	29.4	0.0	73.5	4.03	75.7

47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4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금융 지원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4.2	20.8	39.6	35.4	4.2	75.0	4.06	76.6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26.7	33.3	40.0	0.0	73.3	4.13	78.3
	벤처스타트업	(22)	0.0	4.5	27.3	27.3	40.9	4.5	68.2	4.05	76.1
	대기업	(11)	0.0	9.1	0.0	72.7	18.2	9.1	90.9	4.00	75.0
업력	7년 이하	(15)	0.0	0.0	26.7	26.7	46.7	0.0	73.3	4.20	80.0
	8~10년	(4)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81.3
	11~20년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21~30년	(10)	0.0	0.0	10.0	50.0	40.0	0.0	90.0	4.30	82.5
	31~50년	(8)	0.0	12.5	25.0	25.0	37.5	12.5	62.5	3.88	71.9
	51년 이상	(5)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업종	제조업	(24)	0.0	4.2	20.8	29.2	45.8	4.2	75.0	4.17	79.2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42.9	14.3	42.9	0.0	57.1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교육서비스업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0.0	0.0	50.0	50.0	50.0	3.50	62.5
기타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30.0	30.0	40.0	0.0	70.0	4.10	77.5
	10억~50억 미만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30.0	40.0	20.0	10.0	60.0	3.70	67.5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20.0	20.0	60.0	0.0	80.0	4.40	85.0
	500억 이상	(12)	0.0	8.3	8.3	66.7	16.7	8.3	83.3	3.92	7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6.3	18.8	37.5	37.5	6.3	75.0	4.06	76.6
	없음	(16)	0.0	0.0	25.0	43.8	31.3	0.0	75.0	4.06	76.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2.4	24.4	39.0	34.1	2.4	73.2	4.05	76.2
	경험 없음	(7)	0.0	14.3	0.0	42.9	42.9	14.3	85.7	4.14	7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0.0	21.4	42.9	35.7	0.0	78.6	4.14	78.6
	없음	(34)	0.0	5.9	20.6	38.2	35.3	5.9	73.5	4.03	75.7

〈부록 표142〉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개도국 관련 정보 제공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4.2	18.8	39.6	37.5	4.2	77.1	4.10	77.6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13.3	46.7	40.0	0.0	86.7	4.27	81.7
	벤처스타트업	(22)	0.0	9.1	18.2	31.8	40.9	9.1	72.7	4.05	76.1
	대기업	(11)	0.0	0.0	27.3	45.5	27.3	0.0	72.7	4.00	75.0
업력	7년 이하	(15)	0.0	0.0	33.3	20.0	46.7	0.0	66.7	4.13	78.3
	8~10년	(4)	0.0	0.0	0.0	25.0	75.0	0.0	100.0	4.75	93.8
	11~20년	(6)	0.0	16.7	16.7	50.0	16.7	16.7	66.7	3.67	66.7
	21~30년	(10)	0.0	0.0	10.0	50.0	40.0	0.0	90.0	4.30	82.5
	31~50년	(8)	0.0	12.5	12.5	50.0	25.0	12.5	75.0	3.88	71.9
	51년 이상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업종	제조업	(24)	0.0	4.2	25.0	33.3	37.5	4.2	70.8	4.04	76.0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14.3	28.6	57.1	0.0	85.7	4.43	85.7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100.0
	전문서비스업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교육서비스업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0.0	0.0	50.0	50.0	50.0	3.50	62.5
기타	(3)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10억~50억 미만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10.0	50.0	30.0	10.0	80.0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0)	0.0	10.0	20.0	30.0	40.0	10.0	70.0	4.00	75.0
	500억 이상	(12)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6.3	12.5	40.6	40.6	6.3	81.3	4.16	78.9
	없음	(16)	0.0	0.0	31.3	37.5	31.3	0.0	68.8	4.00	7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4.9	19.5	36.6	39.0	4.9	75.6	4.10	77.4
	경험 없음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7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0.0	21.4	50.0	28.6	0.0	78.6	4.07	76.8
	없음	(34)	0.0	5.9	17.6	35.3	41.2	5.9	76.5	4.12	77.9

47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4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개도국 CSR·CSV 관련
건설팅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4.2	20.8	47.9	27.1	4.2	75.0	3.98	74.5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13.3	60.0	26.7	0.0	86.7	4.13	78.3
	벤처스타트업	(22)	0.0	9.1	22.7	36.4	31.8	9.1	68.2	3.91	72.7
	대기업	(11)	0.0	0.0	27.3	54.5	18.2	0.0	72.7	3.91	72.7
업력	7년 이하	(1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8~10년	(4)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11~2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21~30년	(10)	0.0	10.0	10.0	40.0	40.0	10.0	80.0	4.10	77.5
	31~50년	(8)	0.0	12.5	12.5	50.0	25.0	12.5	75.0	3.88	71.9
	51년 이상	(5)	0.0	0.0	20.0	80.0	0.0	0.0	80.0	3.80	70.0
	기타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업종	제조업	(24)	0.0	4.2	33.3	33.3	29.2	4.2	62.5	3.88	71.9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0.0	71.4	28.6	0.0	100.0	4.29	82.1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8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0.0	33.3	33.3	33.3	66.7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10억~50억 미만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0.0	80.0	10.0	10.0	90.0	3.90	72.5
	100억~500억 미만	(10)	0.0	10.0	20.0	40.0	30.0	10.0	70.0	3.90	72.5
	500억 이상	(12)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6.3	9.4	56.3	28.1	6.3	84.4	4.06	76.6
	없음	(16)	0.0	0.0	43.8	31.3	25.0	0.0	56.3	3.81	70.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4.9	17.1	51.2	26.8	4.9	78.0	4.00	75.0
	경험 없음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7.1	14.3	50.0	28.6	7.1	78.6	4.00	75.0
	없음	(34)	0.0	2.9	23.5	47.1	26.5	2.9	73.5	3.97	74.3

〈부록 표14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시 정부 지원 및 협력 필요성_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간 정책 대화·정보 공유 플랫폼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48)	0.0	4.2	25.0	41.7	29.2	4.2	70.8	3.96	74.0	
기업유형	중소중견	(15)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벤처스타트업	(22)	0.0	4.5	18.2	45.5	31.8	4.5	77.3	4.05	76.1
	대기업	(11)	0.0	9.1	27.3	45.5	18.2	9.1	63.6	3.73	68.2
업력	7년 이하	(15)	0.0	0.0	20.0	46.7	33.3	0.0	80.0	4.13	78.3
	8~10년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11~20년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21~30년	(10)	0.0	10.0	20.0	40.0	30.0	10.0	70.0	3.90	72.5
	31~50년	(8)	0.0	12.5	37.5	0.0	50.0	12.5	50.0	3.88	71.9
	51년 이상	(5)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업종	제조업	(24)	0.0	4.2	29.2	29.2	37.5	4.2	66.7	4.00
	건설업	(1)	0.0	0.0	100.0	0.0	0.0	0.0	3.00	50.0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20.0	80.0	0.0	0.0	80.0	3.80	70.0
	교육서비스업	(3)	0.0	33.3	0.0	33.3	33.3	66.7	3.67	66.7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기타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0)	0.0	0.0	30.0	30.0	40.0	0.0	70.0	4.10	77.5
	10억~50억 미만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50억~100억 미만	(10)	0.0	10.0	20.0	40.0	30.0	10.0	70.0	3.90	72.5
	100억~500억 미만	(10)	0.0	0.0	60.0	30.0	10.0	0.0	40.0	3.50	62.5
	500억 이상	(12)	0.0	8.3	8.3	50.0	33.3	8.3	83.3	4.08	7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2)	0.0	6.3	25.0	37.5	31.3	6.3	68.8	3.94	73.4
	없음	(16)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0.0	2.4	29.3	36.6	31.7	2.4	68.3	3.98	74.4
	경험 없음	(7)	0.0	14.3	0.0	71.4	14.3	14.3	85.7	3.86	71.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4)	0.0	7.1	28.6	35.7	28.6	7.1	64.3	3.86	71.4
	없음	(34)	0.0	2.9	23.5	44.1	29.4	2.9	73.5	4.00	75.0

48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45〉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의 연계 필요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3.8	27.4	45.3	22.6	4.7	67.9	3.85	71.2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22.0	46.3	29.3	2.4	75.6	4.02	75.6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8.6	40.0	28.6	2.9	68.6	3.94	73.6
	대기업	(30)	3.3	6.7	33.3	50.0	6.7	10.0	56.7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4.0	44.0	32.0	0.0	76.0	4.08	77.0
	8~10년	(6)	0.0	0.0	16.7	16.7	66.7	0.0	83.3	4.50	87.5
	11~20년	(18)	0.0	0.0	27.8	55.6	16.7	0.0	72.2	3.89	72.2
	21~30년	(23)	0.0	13.0	30.4	30.4	26.1	13.0	56.5	3.70	67.4
	31~50년	(22)	0.0	4.5	27.3	54.5	13.6	4.5	68.2	3.77	69.3
	51년 이상	(12)	8.3	0.0	33.3	58.3	0.0	8.3	58.3	3.42	60.4
업종	제조업	(48)	0.0	2.1	18.8	50.0	29.2	2.1	79.2	4.06	76.6
	건설업	(6)	16.7	0.0	0.0	50.0	33.3	16.7	83.3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41.7	25.0	8.3	66.7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50.0	42.9	7.1	0.0	50.0	3.57	64.3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0.0	0.0 16.7	33.3 33.3	33.3 33.3	33.3 16.7	0.0 16.7	66.7 50.0	4.00 3.50	7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35.0	35.0	30.0	0.0	65.0	3.95	73.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53.3	20.0	0.0	73.3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26.3	47.4	15.8	10.5	63.2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3.5	29.4	47.1	0.0	76.5	4.24	80.9
	500억 이상	(35)	2.9	5.7	25.7	54.3	11.4	8.6	65.7	3.66	6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29.6	42.3	22.5	5.6	64.8	3.80	70.1
	없음	(35)	0.0	2.9	22.9	51.4	22.9	2.9	74.3	3.94	7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2.9	25.0	47.1	25.0	2.9	72.1	3.94	73.5
	경험 없음	(38)	2.6	5.3	31.6	42.1	18.4	7.9	60.5	3.68	67.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0.0	4.4	31.1	40.0	24.4	4.4	64.4	3.84	71.1
	없음	(61)	1.6	3.3	24.6	49.2	21.3	4.9	70.5	3.85	71.3

〈부록 표146〉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 연계 시 중요도_협동 사업발굴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3.8	20.8	59.4	14.2	5.7	73.6	3.80	7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17.1	68.3	12.2	2.4	80.5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2.9	0.0	20.0	57.1	20.0	2.9	77.1	3.91	72.9
	대기업	(30)	3.3	10.0	26.7	50.0	10.0	13.3	60.0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4.0	0.0	20.0	48.0	28.0	4.0	76.0	3.96	74.0
	8~10년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11~20년	(18)	0.0	0.0	16.7	77.8	5.6	0.0	83.3	3.89	72.2
	21~30년	(23)	0.0	4.3	21.7	60.9	13.0	4.3	73.9	3.83	70.7
	31~50년	(22)	0.0	9.1	22.7	59.1	9.1	9.1	68.2	3.68	67.0
	51년 이상	(12)	8.3	8.3	16.7	58.3	8.3	16.7	66.7	3.50	62.5
업종	제조업	(48)	0.0	6.3	18.8	58.3	16.7	6.3	75.0	3.85	71.4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8.3	66.7	25.0	0.0	91.7	4.17	79.2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85.7	0.0	0.0	85.7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8.6	71.4	0.0	0.0	71.4	3.71	67.9
	교육서비스업	(5)	20.0	0.0	20.0	60.0	0.0	20.0	6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0.0	25.0	50.0	20.0	5.0	70.0	3.80	70.0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60.0	13.3	6.7	73.3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15.8	63.2	21.1	0.0	84.2	4.05	76.3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9.4	64.7	5.9	0.0	70.6	3.76	69.1
	500억 이상	(35)	2.9	8.6	17.1	60.0	11.4	11.4	71.4	3.69	6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22.5	63.4	8.5	5.6	71.8	3.73	68.3
	없음	(35)	2.9	2.9	17.1	51.4	25.7	5.7	77.1	3.94	7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1.5	22.1	58.8	16.2	2.9	75.0	3.87	71.7
	경험 없음	(38)	2.6	7.9	18.4	60.5	10.5	10.5	71.1	3.68	67.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33.3	46.7	13.3	6.7	60.0	3.64	66.1
	없음	(61)	1.6	3.3	11.5	68.9	14.8	4.9	83.6	3.92	73.0

48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47〉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 연계 시 중요도_협동 사전조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3.8	29.2	43.4	21.7	5.7	65.1	3.79	69.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26.8	41.5	29.3	2.4	70.7	3.98	74.4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5.7	45.7	22.9	5.7	68.6	3.86	71.4
	대기업	(30)	6.7	3.3	36.7	43.3	10.0	10.0	53.3	3.47	61.7
업력	7년 이하	(25)	0.0	8.0	28.0	40.0	24.0	8.0	64.0	3.80	70.0
	8~10년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11~20년	(18)	0.0	0.0	27.8	55.6	16.7	0.0	72.2	3.89	72.2
	21~30년	(23)	4.3	4.3	39.1	26.1	26.1	8.7	52.2	3.65	66.3
	31~50년	(22)	0.0	0.0	31.8	54.5	13.6	0.0	68.2	3.82	70.5
	51년 이상	(12)	8.3	8.3	25.0	33.3	25.0	16.7	58.3	3.58	64.6
업종	제조업	(48)	0.0	4.2	25.0	47.9	22.9	4.2	70.8	3.90	72.4
	건설업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41.7	33.3	25.0	0.0	58.3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1.4	71.4	0.0	7.1	71.4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20.0	0.0	40.0	40.0	2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6)	0.0 16.7	0.0 0.0	50.0 33.3	33.3 16.7	16.7 33.3	0.0 16.7	50.0 50.0	3.67 3.50	66.7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35.0	40.0	20.0	5.0	6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33.3	26.7	6.7	60.0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52.6	21.1	0.0	73.7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58.8	23.5	0.0	82.4	4.06	76.5
	500억 이상	(35)	5.7	5.7	31.4	37.1	20.0	11.4	57.1	3.60	6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4.2	28.2	43.7	21.1	7.0	64.8	3.76	69.0
	없음	(35)	0.0	2.9	31.4	42.9	22.9	2.9	65.7	3.86	7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5.9	27.9	42.6	23.5	5.9	66.2	3.84	71.0
	경험 없음	(38)	5.3	0.0	31.6	44.7	18.4	5.3	63.2	3.71	67.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26.7	48.9	17.8	6.7	66.7	3.76	68.9
	없음	(61)	1.6	3.3	31.1	39.3	24.6	4.9	63.9	3.82	70.5

〈부록 표148〉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 연계 시 중요도_협동 사업수행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1.9	24.5	45.3	26.4	3.8	71.7	3.92	73.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0.0	22.0	43.9	34.1	0.0	78.0	4.12	78.0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0.0	42.9	31.4	5.7	74.3	4.00	75.0
	대기업	(30)	6.7	0.0	33.3	50.0	10.0	6.7	60.0	3.57	64.2
업력	7년 이하	(25)	0.0	8.0	16.0	40.0	36.0	8.0	76.0	4.04	76.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0.0	33.3	44.4	22.2	0.0	66.7	3.89	72.2
	21~30년	(23)	4.3	0.0	30.4	39.1	26.1	4.3	65.2	3.83	70.7
	31~50년	(22)	0.0	0.0	27.3	54.5	18.2	0.0	72.7	3.91	72.7
	51년 이상	(12)	8.3	0.0	25.0	50.0	16.7	8.3	66.7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0.0	20.8	56.3	22.9	0.0	79.2	4.02	75.5
	건설업	(6)	16.7	16.7	16.7	16.7	33.3	33.3	50.0	3.33	58.3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41.7	16.7	41.7	0.0	58.3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28.6	28.6	0.0	57.1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7.1	71.4	14.3	7.1	85.7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기타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25.0	40.0	30.0	5.0	70.0	3.95	73.8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40.0	26.7	6.7	66.7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1.1	47.4	31.6	0.0	78.9	4.11	77.6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41.2	41.2	0.0	82.4	4.24	80.9
	500억 이상	(35)	5.7	0.0	28.6	51.4	14.3	5.7	65.7	3.69	6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2.8	25.4	43.7	25.4	5.6	69.0	3.86	71.5
	없음	(35)	0.0	0.0	22.9	48.6	28.6	0.0	77.1	4.06	7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1.5	22.1	51.5	25.0	1.5	76.5	4.00	75.0
	경험 없음	(38)	5.3	2.6	28.9	34.2	28.9	7.9	63.2	3.79	69.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	28.9	53.3	13.3	4.4	66.7	3.73	68.3
	없음	(61)	1.6	1.6	21.3	39.3	36.1	3.3	75.4	4.07	76.6

48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49〉 개도국 CSR·CSV 활동과 정부 ODA와 연계 시 중요도_협동 사업종료 평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8.5	24.5	46.2	17.9	11.3	64.2	3.68	67.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9.8	19.5	46.3	24.4	9.8	70.7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2.9	14.3	17.1	48.6	17.1	17.1	65.7	3.63	65.7
	대기업	(30)	6.7	0.0	40.0	43.3	10.0	6.7	53.3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4.0	16.0	16.0	44.0	20.0	20.0	64.0	3.60	65.0
	8~10년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11~20년	(18)	0.0	5.6	38.9	44.4	11.1	5.6	55.6	3.61	65.3
	21~30년	(23)	4.3	13.0	17.4	52.2	13.0	17.4	65.2	3.57	64.1
	31~50년	(22)	0.0	4.5	36.4	36.4	22.7	4.5	59.1	3.77	69.3
	51년 이상	(12)	8.3	0.0	25.0	50.0	16.7	8.3	66.7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12.5	22.9	43.8	20.8	12.5	64.6	3.73
	건설업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58.3	25.0	8.3	83.3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57.1	0.0	0.0	57.1	3.57	64.3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50.0	7.1	7.1	57.1	3.57	64.3
	교육서비스업	(5)	20.0	0.0	20.0	40.0	20.0	20.0	60.0	3.40	6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25.0	20.0	35.0	15.0	30.0	50.0	3.30	57.5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53.3	20.0	6.7	73.3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15.8	52.6	26.3	5.3	78.9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7.6	58.8	17.6	5.9	76.5	3.88	72.1
	500억 이상	(35)	5.7	2.9	37.1	40.0	14.3	8.6	54.3	3.54	63.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7.0	23.9	47.9	18.3	9.9	66.2	3.72	68.0
	없음	(35)	2.9	11.4	25.7	42.9	17.1	14.3	60.0	3.60	6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8.8	22.1	52.9	14.7	10.3	67.6	3.71	67.6
	경험 없음	(38)	5.3	7.9	28.9	34.2	23.7	13.2	57.9	3.63	65.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11.1	31.1	37.8	15.6	15.6	53.3	3.49	62.2
	없음	(61)	1.6	6.6	19.7	52.5	19.7	8.2	72.1	3.82	70.5

〈부록 표150〉 해외진출과 관련있는 주요 ODA 사업 분야

(단위: %)

		사례수	공공 행정	교육	직업 훈련	에너지	농촌 개발/ 지역 개발	보건 의료	교통	물/ 환경	기타
전체		(106)	4.7	16.0	13.2	33.0	7.5	9.4	4.7	7.5	3.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9.8	12.2	4.9	34.1	12.2	12.2	4.9	7.3	2.4
	벤처스타트업	(35)	2.9	20.0	20.0	31.4	2.9	8.6	2.9	11.4	0.0
	대기업	(30)	0.0	16.7	16.7	33.3	6.7	6.7	6.7	3.3	10.0
업력	7년 이하	(25)	4.0	24.0	12.0	24.0	4.0	12.0	8.0	12.0	0.0
	8~10년	(6)	16.7	0.0	0.0	33.3	33.3	0.0	0.0	16.7	0.0
	11~20년	(18)	5.6	0.0	16.7	38.9	16.7	11.1	5.6	0.0	5.6
	21~30년	(23)	8.7	21.7	8.7	30.4	4.3	13.0	4.3	4.3	4.3
	31~50년	(22)	0.0	22.7	9.1	40.9	0.0	9.1	0.0	13.6	4.5
	51년 이상	(12)	0.0	8.3	33.3	33.3	8.3	0.0	8.3	0.0	8.3
업종	제조업	(48)	2.1	14.6	10.4	39.6	4.2	8.3	6.3	10.4	4.2
	건설업	(6)	0.0	16.7	0.0	33.3	16.7	0.0	16.7	16.7	0.0
	도매 및 소매업	(12)	8.3	16.7	16.7	33.3	8.3	8.3	8.3	0.0	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28.6	28.6	14.3	14.3	0.0	0.0	0.0	14.3
	금융/보험업	(2)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전문서비스업	(14)	7.1	7.1	28.6	28.6	7.1	0.0	0.0	14.3	7.1
	교육서비스업	(5)	20.0	40.0	20.0	20.0	0.0	0.0	0.0	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0.0	0.0	16.7	0.0	66.7	0.0	0.0	0.0
기타	(6)	0.0	16.7	0.0	33.3	33.3	16.7	0.0	0.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30.0	10.0	25.0	0.0	20.0	0.0	15.0	0.0
	10억~50억 미만	(15)	13.3	20.0	13.3	26.7	13.3	0.0	6.7	6.7	0.0
	50억~100억 미만	(19)	10.5	5.3	15.8	47.4	10.5	10.5	0.0	0.0	0.0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11.8	35.3	11.8	0.0	11.8	5.9	5.9
	500억 이상	(35)	0.0	14.3	14.3	31.4	5.7	11.4	5.7	8.6	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9.9	16.9	35.2	5.6	11.3	4.2	7.0	4.2
	없음	(35)	2.9	28.6	5.7	28.6	11.4	5.7	5.7	8.6	2.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5.9	14.7	13.2	29.4	7.4	13.2	2.9	11.8	1.5
	경험 없음	(38)	2.6	18.4	13.2	39.5	7.9	2.6	7.9	0.0	7.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4.4	17.8	17.8	28.9	6.7	8.9	2.2	11.1	2.2
	없음	(61)	4.9	14.8	9.8	36.1	8.2	9.8	6.6	4.9	4.9

486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존재 여부

(단위: %)

		사례수	없다	있다
전체		(106)	42.5	57.5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36.6	63.4
	벤처스타트업	(35)	45.7	54.3
	대기업	(30)	46.7	53.3
업력	7년 이하	(25)	44.0	56.0
	8~10년	(6)	50.0	50.0
	11~20년	(18)	50.0	50.0
	21~30년	(23)	39.1	60.9
	31~50년	(22)	45.5	54.5
	51년 이상	(12)	25.0	75.0
업종	제조업	(48)	47.9	52.1
	건설업	(6)	33.3	66.7
	도매 및 소매업	(12)	25.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71.4
	금융/보험업	(2)	50.0	50.0
	전문서비스업	(14)	50.0	50.0
	교육서비스업	(5)	60.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16.7	83.3
	기타	(6)	5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60.0	40.0
	10억~50억 미만	(15)	33.3	66.7
	50억~100억 미만	(19)	36.8	63.2
	100억~500억 미만	(17)	35.3	64.7
	500억 이상	(35)	42.9	57.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38.0	62.0
	없음	(35)	51.4	48.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39.7	60.3
	경험 없음	(38)	47.4	52.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100.0	0.0
	없음	(61)	0.0	100.0

〈부록 표15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인력 규모

(단위: %)

		사례수	1명	2명~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 이상
전체		(61)	3.3	36.1	27.9	32.8
기업유형	중소중견	(26)	0.0	38.5	38.5	23.1
	벤처스타트업	(19)	10.5	47.4	31.6	10.5
	대기업	(16)	0.0	18.8	6.3	75.0
업력	7년 이하	(14)	14.3	50.0	21.4	14.3
	8~10년	(3)	0.0	100.0	0.0	0.0
	11~20년	(9)	0.0	33.3	55.6	11.1
	21~30년	(14)	0.0	35.7	28.6	35.7
	31~50년	(12)	0.0	16.7	41.7	41.7
	51년 이상	(9)	0.0	22.2	0.0	77.8
업종	제조업	(25)	8.0	28.0	28.0	36.0
	건설업	(4)	0.0	25.0	25.0	50.0
	도매 및 소매업	(9)	0.0	55.6	22.2	22.2
	방송/통신/미디어업	(5)	0.0	40.0	20.0	40.0
	금융/보험업	(1)	0.0	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7)	0.0	71.4	14.3	14.3
	교육서비스업	(2)	0.0	50.0	5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5)	0.0	0.0	40.0	60.0
	기타	(3)	0.0	33.3	66.7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8)	25.0	37.5	25.0	12.5
	10억~50억 미만	(10)	0.0	80.0	20.0	0.0
	50억~100억 미만	(12)	0.0	25.0	33.3	41.7
	100억~500억 미만	(11)	0.0	45.5	45.5	9.1
	500억 이상	(20)	0.0	15.0	20.0	6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4)	0.0	27.3	27.3	45.5
	없음	(17)	11.8	58.8	29.4	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41)	4.9	36.6	31.7	26.8
	경험 없음	(20)	0.0	35.0	20.0	45.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없음	(61)	3.3	36.1	27.9	32.8

48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3〉 주요 수출 권역

(단위: %)

		사례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수출경험 없음
전체		(106)	56.6	11.3	7.5	6.6	12.3	5.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70.7	7.3	4.9	4.9	4.9	7.3
	벤처스타트업	(35)	51.4	20.0	8.6	5.7	11.4	2.9
	대기업	(30)	43.3	6.7	10.0	10.0	23.3	6.7
업력	7년 이하	(25)	48.0	24.0	4.0	4.0	12.0	8.0
	8~10년	(6)	100.0	0.0	0.0	0.0	0.0	0.0
	11~20년	(18)	66.7	5.6	5.6	11.1	5.6	5.6
	21~30년	(23)	60.9	4.3	17.4	4.3	4.3	8.7
	31~50년	(22)	50.0	13.6	9.1	13.6	9.1	4.5
	51년 이상	(12)	41.7	8.3	0.0	0.0	50.0	0.0
	제조업	(48)	62.5	8.3	2.1	4.2	20.8	2.1
업종	건설업	(6)	33.3	16.7	16.7	33.3	0.0	0.0
	도매 및 소매업	(12)	58.3	25.0	0.0	8.3	0.0	8.3
	방송/통신/미디어업	(7)	28.6	14.3	42.9	0.0	14.3	0.0
	금융/보험업	(2)	100.0	0.0	0.0	0.0	0.0	0.0
	전문서비스업	(14)	57.1	21.4	7.1	0.0	0.0	14.3
	교육서비스업	(5)	60.0	0.0	20.0	0.0	2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66.7	0.0	16.7	16.7	0.0	0.0
	기타	(6)	33.3	0.0	0.0	16.7	16.7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0	15.0	10.0	5.0	10.0	10.0
	10억~50억 미만	(15)	53.3	13.3	6.7	6.7	6.7	13.3
	50억~100억 미만	(19)	57.9	15.8	10.5	10.5	0.0	5.3
	100억~500억 미만	(17)	58.8	23.5	5.9	0.0	11.8	0.0
	500억 이상	(35)	60.0	0.0	5.7	8.6	22.9	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9.3	14.1	11.3	8.5	14.1	2.8
	없음	(35)	71.4	5.7	0.0	2.9	8.6	1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54.4	16.2	7.4	5.9	13.2	2.9
	경험 없음	(38)	60.5	2.6	7.9	7.9	10.5	10.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8.9	4.4	6.7	6.7	8.9	4.4
	없음	(61)	47.5	16.4	8.2	6.6	14.8	6.6

〈부록 표154〉 최근 5년 해외정부·해외공공기관·국제기구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

(단위: %)

		사례수	0건	1건	2건~5건 미만	5건~10건 미만	10건 이상
전체		(106)	32.1	14.2	34.9	6.6	12.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31.7	7.3	48.8	4.9	7.3
	벤처스타트업	(35)	31.4	31.4	25.7	8.6	2.9
	대기업	(30)	33.3	3.3	26.7	6.7	30.0
업력	7년 이하	(25)	44.0	32.0	20.0	4.0	0.0
	8~10년	(6)	33.3	33.3	16.7	16.7	0.0
	11~20년	(18)	27.8	5.6	61.1	0.0	5.6
	21~30년	(23)	39.1	4.3	47.8	8.7	0.0
	31~50년	(22)	18.2	13.6	36.4	9.1	22.7
	51년 이상	(12)	25.0	0.0	8.3	8.3	58.3
업종	제조업	(48)	31.3	16.7	27.1	6.3	18.8
	건설업	(6)	50.0	0.0	33.3	0.0	16.7
	도매 및 소매업	(12)	25.0	25.0	41.7	8.3	0.0
	방송/통신/미디어업	(7)	14.3	14.3	28.6	28.6	14.3
	금융/보험업	(2)	50.0	0.0	50.0	0.0	0.0
	전문서비스업	(14)	35.7	14.3	42.9	0.0	7.1
	교육서비스업	(5)	40.0	0.0	60.0	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33.3	0.0	66.7	0.0	0.0
기타	(6)	33.3	16.7	16.7	16.7	1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5.0	25.0	10.0	10.0	0.0
	10억~50억 미만	(15)	26.7	40.0	33.3	0.0	0.0
	50억~100억 미만	(19)	21.1	10.5	52.6	5.3	10.5
	100억~500억 미만	(17)	17.6	0.0	58.8	17.6	5.9
	500억 이상	(35)	34.3	5.7	28.6	2.9	2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2.5	9.9	43.7	7.0	16.9
	없음	(35)	51.4	22.9	17.1	5.7	2.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25.0	17.6	42.6	4.4	10.3
	경험 없음	(38)	44.7	7.9	21.1	10.5	15.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35.6	13.3	37.8	6.7	6.7
	없음	(61)	29.5	14.8	32.8	6.6	16.4

49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5>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보(법령 및 제도 포함) 부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5.7	33.0	49.1	10.4	7.5	59.4	3.60	65.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29.3	53.7	12.2	4.9	65.9	3.73	68.3
	벤처스타트업	(35)	0.0	2.9	34.3	48.6	14.3	2.9	62.9	3.74	68.6
	대기업	(30)	6.7	10.0	36.7	43.3	3.3	16.7	46.7	3.27	56.7
업력	7년 이하	(25)	0.0	8.0	32.0	44.0	16.0	8.0	60.0	3.68	67.0
	8~10년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11~20년	(18)	0.0	5.6	22.2	61.1	11.1	5.6	72.2	3.78	69.4
	21~30년	(23)	4.3	0.0	39.1	47.8	8.7	4.3	56.5	3.57	64.1
	31~50년	(22)	0.0	13.6	22.7	59.1	4.5	13.6	63.6	3.55	63.6
	51년 이상	(12)	8.3	0.0	75.0	16.7	0.0	8.3	16.7	3.00	50.0
업종	제조업	(48)	2.1	6.3	29.2	52.1	10.4	8.3	62.5	3.63	65.6
	건설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41.7	25.0	8.3	66.7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42.9	0.0	0.0	42.9	3.43	60.7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35.7	64.3	0.0	0.0	64.3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기타	(6)	16.7	33.3	16.7	33.3	0.0	50.0	33.3	2.67	41.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55.0	30.0	15.0	0.0	45.0	3.60	65.0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46.7	13.3	6.7	60.0	3.67	66.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1.1	63.2	15.8	0.0	78.9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23.5	58.8	5.9	11.8	64.7	3.59	64.7
	500억 이상	(35)	5.7	8.6	31.4	48.6	5.7	14.3	54.3	3.40	6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4.2	33.8	47.9	11.3	7.0	59.2	3.61	65.1
	없음	(35)	0.0	8.6	31.4	51.4	8.6	8.6	60.0	3.60	65.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4.4	29.4	50.0	14.7	5.9	64.7	3.72	68.0
	경험 없음	(38)	2.6	7.9	39.5	47.4	2.6	10.5	50.0	3.39	59.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37.8	42.2	11.1	8.9	53.3	3.53	63.3
	없음	(61)	1.6	4.9	29.5	54.1	9.8	6.6	63.9	3.66	66.4

〈부록 표156〉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 해당 국가의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8.5	22.6	47.2	19.8	10.4	67.0	3.75	68.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19.5	56.1	19.5	4.9	75.6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5.7	48.6	22.9	2.9	71.4	3.91	72.9
	대기업	(30)	6.7	20.0	23.3	33.3	16.7	26.7	50.0	3.33	58.3
업력	7년 이하	(25)	0.0	8.0	20.0	56.0	16.0	8.0	72.0	3.80	70.0
	8~10년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11~20년	(18)	0.0	11.1	22.2	50.0	16.7	11.1	66.7	3.72	68.1
	21~30년	(23)	4.3	0.0	26.1	47.8	21.7	4.3	69.6	3.83	70.7
	31~50년	(22)	0.0	9.1	18.2	50.0	22.7	9.1	72.7	3.86	71.6
	51년 이상	(12)	8.3	25.0	33.3	25.0	8.3	33.3	33.3	3.00	50.0
업종	제조업	(48)	2.1	4.2	27.1	47.9	18.8	6.3	66.7	3.77	69.3
	건설업	(6)	0.0	33.3	0.0	33.3	33.3	33.3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16.7	25.0	33.3	25.0	16.7	58.3	3.67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50.0	0.0	0.0	50.0	5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7.1	71.4	14.3	7.1	85.7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0.0	0.0	60.0	40.0	0.0	100.0	4.40	8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33.3	16.7	0.0	50.0	3.67	66.7
기타	(6)	16.7	16.7	16.7	50.0	0.0	33.3	50.0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20.0	60.0	15.0	5.0	75.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46.7	26.7	6.7	73.3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6.3	52.6	15.8	5.3	68.4	3.79	69.7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47.1	23.5	5.9	70.6	3.88	72.1
	500억 이상	(35)	5.7	14.3	22.9	37.1	20.0	20.0	57.1	3.51	6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1.3	26.8	42.3	16.9	14.1	59.2	3.59	64.8
	없음	(35)	0.0	2.9	14.3	57.1	25.7	2.9	82.9	4.06	7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5.9	26.5	44.1	22.1	7.4	66.2	3.79	69.9
	경험 없음	(38)	2.6	13.2	15.8	52.6	15.8	15.8	68.4	3.66	66.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11.1	17.8	46.7	22.2	13.3	68.9	3.76	68.9
	없음	(61)	1.6	6.6	26.2	47.5	18.0	8.2	65.6	3.74	68.4

492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7〉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 해당 국가의 고객(발주기관)과 네트워크 부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8.5	26.4	45.3	17.0	11.3	62.3	3.65	66.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1.7	41.5	24.4	2.4	65.9	3.88	72.0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0.0	57.1	17.1	5.7	74.3	3.86	71.4
	대기업	(30)	10.0	20.0	26.7	36.7	6.7	30.0	43.3	3.10	52.5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56.0	24.0	0.0	80.0	4.04	76.0
	8~10년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11~20년	(18)	0.0	5.6	38.9	38.9	16.7	5.6	55.6	3.67	66.7
	21~30년	(23)	4.3	4.3	34.8	43.5	13.0	8.7	56.5	3.57	64.1
	31~50년	(22)	0.0	18.2	18.2	45.5	18.2	18.2	63.6	3.64	65.9
	51년 이상	(12)	16.7	25.0	25.0	33.3	0.0	41.7	33.3	2.75	43.8
업종	제조업	(48)	2.1	10.4	25.0	50.0	12.5	12.5	62.5	3.60	65.1
	건설업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14.3	71.4	14.3	0.0	14.3	14.3	3.00	50.0
	금융/보험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14.3	57.1	21.4	7.1	78.6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기타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35.0	40.0	20.0	5.0	6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6.7	26.7	46.7	20.0	6.7	66.7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1.1	47.4	31.6	0.0	78.9	4.11	77.6
	100억~500억 미만	(17)	0.0	17.6	17.6	52.9	11.8	17.6	64.7	3.59	64.7
	500억 이상	(35)	8.6	11.4	28.6	42.9	8.6	20.0	51.4	3.31	5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9.9	29.6	40.8	15.5	14.1	56.3	3.54	63.4
	없음	(35)	0.0	5.7	20.0	54.3	20.0	5.7	74.3	3.89	7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7.4	25.0	48.5	17.6	8.8	66.2	3.74	68.4
	경험 없음	(38)	5.3	10.5	28.9	39.5	15.8	15.8	55.3	3.50	62.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8.9	31.1	42.2	15.6	11.1	57.8	3.60	65.0
	없음	(61)	3.3	8.2	23.0	47.5	18.0	11.5	65.6	3.69	67.2

〈부록 표158〉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축의 어려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3.8	4.7	21.7	52.8	17.0	8.5	69.8	3.75	68.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2.4	12.2	68.3	14.6	4.9	82.9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5.7	40.0	28.6	5.7	68.6	3.91	72.9
	대기업	(30)	10.0	6.7	30.0	46.7	6.7	16.7	53.3	3.33	58.3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8.0	36.0	28.0	8.0	64.0	3.80	70.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5.6	5.6	72.2	16.7	5.6	88.9	4.00	75.0
	21~30년	(23)	4.3	4.3	13.0	65.2	13.0	8.7	78.3	3.78	69.6
	31~50년	(22)	0.0	9.1	31.8	54.5	4.5	9.1	59.1	3.55	63.6
	51년 이상	(12)	16.7	0.0	41.7	33.3	8.3	16.7	41.7	3.17	54.2
업종	제조업	(48)	2.1	10.4	22.9	56.3	8.3	12.5	64.6	3.58	64.6
	건설업	(6)	16.7	0.0	16.7	33.3	33.3	16.7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8.3	0.0	8.3	75.0	8.3	8.3	83.3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1.4	50.0	28.6	0.0	78.6	4.07	76.8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기타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45.0	30.0	20.0	5.0	5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0.0	0.0	13.3	53.3	33.3	0.0	86.7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5.3	68.4	26.3	0.0	94.7	4.21	80.3
	100억~500억 미만	(17)	5.9	11.8	17.6	58.8	5.9	17.6	64.7	3.47	61.8
	500억 이상	(35)	8.6	5.7	22.9	54.3	8.6	14.3	62.9	3.49	62.1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5.6	4.2	22.5	50.7	16.9	9.9	67.6	3.69	67.3
	없음	(35)	0.0	5.7	20.0	57.1	17.1	5.7	74.3	3.86	7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4.4	19.1	55.9	19.1	5.9	75.0	3.87	71.7
	경험 없음	(38)	7.9	5.3	26.3	47.4	13.2	13.2	60.5	3.53	63.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33.3	46.7	11.1	8.9	57.8	3.58	64.4
	없음	(61)	4.9	3.3	13.1	57.4	21.3	8.2	78.7	3.87	71.7

49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59>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수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부족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6.6	33.0	42.5	16.0	8.5	58.5	3.64	66.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4.1	41.5	22.0	2.4	63.4	3.83	70.7
	벤처스타트업	(35)	0.0	0.0	31.4	51.4	17.1	0.0	68.6	3.86	71.4
	대기업	(30)	6.7	20.0	33.3	33.3	6.7	26.7	40.0	3.13	53.3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8.0	60.0	12.0	0.0	72.0	3.84	71.0
	8~10년	(6)	0.0	0.0	33.3	16.7	50.0	0.0	66.7	4.17	79.2
	11~20년	(18)	0.0	0.0	16.7	66.7	16.7	0.0	83.3	4.00	75.0
	21~30년	(23)	4.3	0.0	39.1	34.8	21.7	4.3	56.5	3.70	67.4
	31~50년	(22)	0.0	13.6	40.9	31.8	13.6	13.6	45.5	3.45	61.4
	51년 이상	(12)	8.3	33.3	41.7	16.7	0.0	41.7	16.7	2.67	41.7
업종	제조업	(48)	2.1	6.3	29.2	52.1	10.4	8.3	62.5	3.63	65.6
	건설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42.9	28.6	21.4	7.1	50.0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20.0	20.0	0.0	4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83.3
기타	(6)	16.7	16.7	33.3	33.3	0.0	33.3	33.3	2.83	45.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30.0	60.0	10.0	0.0	70.0	3.80	70.0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26.7	33.3	6.7	60.0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31.6	42.1	26.3	0.0	68.4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35.3	58.8	0.0	5.9	58.8	3.53	63.2
	500억 이상	(35)	5.7	14.3	34.3	31.4	14.3	20.0	45.7	3.34	5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8.5	38.0	35.2	15.5	11.3	50.7	3.52	63.0
	없음	(35)	0.0	2.9	22.9	57.1	17.1	2.9	74.3	3.89	72.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5.9	36.8	38.2	17.6	7.4	55.9	3.65	66.2
	경험 없음	(38)	2.6	7.9	26.3	50.0	13.2	10.5	63.2	3.63	65.8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31.1	42.2	17.8	8.9	60.0	3.67	66.7
	없음	(61)	1.6	6.6	34.4	42.6	14.8	8.2	57.4	3.62	65.6

〈부록 표160〉 해외진출 준비과정 애로사항_ 해당 국가 인증 획득의 어려움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6.6	30.2	43.4	17.0	9.4	60.4	3.65	66.3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31.7	48.8	17.1	2.4	65.9	3.80	70.1
	벤처스타트업	(35)	0.0	8.6	34.3	34.3	22.9	8.6	57.1	3.71	67.9
	대기업	(30)	10.0	10.0	23.3	46.7	10.0	20.0	56.7	3.37	59.2
업력	7년 이하	(25)	0.0	4.0	40.0	28.0	28.0	4.0	56.0	3.80	70.0
	8~10년	(6)	0.0	33.3	16.7	33.3	16.7	33.3	50.0	3.33	58.3
	11~20년	(18)	0.0	0.0	27.8	61.1	11.1	0.0	72.2	3.83	70.8
	21~30년	(23)	4.3	4.3	17.4	65.2	8.7	8.7	73.9	3.70	67.4
	31~50년	(22)	0.0	4.5	36.4	36.4	22.7	4.5	59.1	3.77	69.3
	51년 이상	(12)	16.7	16.7	33.3	25.0	8.3	33.3	33.3	2.92	47.9
업종	제조업	(48)	2.1	10.4	29.2	39.6	18.8	12.5	58.3	3.63	65.6
	건설업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41.7	16.7	41.7	0.0	58.3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71.4	0.0	0.0	71.4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14.3	71.4	7.1	7.1	78.6	3.79	69.6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기타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40.0	30.0	25.0	5.0	55.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53.3	6.7	6.7	60.0	3.60	65.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47.4	26.3	0.0	73.7	4.00	75.0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35.3	35.3	17.6	11.8	52.9	3.59	64.7
	500억 이상	(35)	8.6	8.6	22.9	48.6	11.4	17.1	60.0	3.46	61.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4.2	7.0	31.0	43.7	14.1	11.3	57.7	3.56	64.1
	없음	(35)	0.0	5.7	28.6	42.9	22.9	5.7	65.7	3.83	7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8.8	29.4	41.2	19.1	10.3	60.3	3.68	66.9
	경험 없음	(38)	5.3	2.6	31.6	47.4	13.2	7.9	60.5	3.61	6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33.3	42.2	17.8	6.7	60.0	3.69	67.2
	없음	(61)	3.3	8.2	27.9	44.3	16.4	11.5	60.7	3.62	65.6

49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61〉 정부·공공기관 주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경험

(단위: %)

		사례수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전체		(106)	64.2	35.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68.3	31.7
	벤처스타트업	(35)	40.0	60.0
	대기업	(30)	86.7	13.3
업력	7년 이하	(25)	44.0	56.0
	8~10년	(6)	50.0	50.0
	11~20년	(18)	44.4	55.6
	21~30년	(23)	82.6	17.4
	31~50년	(22)	68.2	31.8
	51년 이상	(12)	100.0	0.0
업종	제조업	(48)	58.3	41.7
	건설업	(6)	83.3	16.7
	도매 및 소매업	(12)	66.7	33.3
	방송/통신/미디어업	(7)	57.1	42.9
	금융/보험업	(2)	100.0	0.0
	전문서비스업	(14)	64.3	35.7
	교육서비스업	(5)	60.0	4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66.7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6)	83.3	16.7
	10억 미만	(20)	55.0	45.0
	10억~50억 미만	(15)	40.0	60.0
	50억~100억 미만	(19)	63.2	36.8
	100억~500억 미만	(17)	64.7	35.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500억 이상	(35)	80.0	20.0
	있음	(71)	67.6	32.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없음	(35)	57.1	42.9
	경험 있음	(68)	54.4	45.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없음	(38)	81.6	18.4
	있음	(45)	71.1	28.9
		(61)	59.0	41.0

〈부록 표162〉 최근 5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연도_복수응답

(단위: %)

		사례수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8)	18.4	26.3	50.0	47.4	47.4
기업유형	중소중견	(13)	7.7	30.8	61.5	53.8	53.8
	벤처스타트업	(21)	14.3	28.6	47.6	52.4	52.4
	대기업	(4)	75.0	0.0	25.0	0.0	0.0
업력	7년 이하	(14)	14.3	21.4	42.9	64.3	64.3
	8~10년	(3)	0.0	33.3	100.0	66.7	66.7
	11~20년	(10)	20.0	40.0	50.0	20.0	30.0
	21~30년	(4)	50.0	25.0	25.0	50.0	75.0
	31~50년	(7)	14.3	14.3	57.1	42.9	14.3
업종	제조업	(20)	20.0	25.0	60.0	60.0	40.0
	건설업	(1)	10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4)	0.0	25.0	50.0	50.0	5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33.3	66.7	66.7	33.3	33.3
	전문서비스업	(5)	0.0	20.0	40.0	20.0	60.0
	교육서비스업	(2)	0.0	50.0	50.0	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50.0	0.0	0.0	50.0	5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9)	22.2	33.3	55.6	66.7	66.7
	10억~50억 미만	(9)	0.0	22.2	44.4	44.4	55.6
	50억~100억 미만	(7)	14.3	28.6	42.9	42.9	42.9
	100억~500억 미만	(6)	16.7	50.0	83.3	66.7	33.3
	500억 이상	(7)	42.9	0.0	28.6	14.3	2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3)	17.4	30.4	52.2	39.1	43.5
	없음	(15)	20.0	20.0	46.7	60.0	53.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31)	12.9	25.8	58.1	48.4	51.6
	경험 없음	(7)	42.9	28.6	14.3	42.9	28.6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3)	23.1	38.5	69.2	23.1	30.8
	없음	(25)	16.0	20.0	40.0	60.0	56.0

498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63>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 받은 정도_입찰준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38)	10.5	15.8	26.3	42.1	5.3	26.3	47.4	3.16	53.9
기업유형	중소중견	(13)	0.0	23.1	23.1	46.2	7.7	23.1	53.8	3.38	59.6
	벤처스타트업	(21)	9.5	14.3	33.3	38.1	4.8	23.8	42.9	3.14	53.6
	대기업	(4)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37.5
업력	7년 이하	(14)	14.3	21.4	21.4	35.7	7.1	35.7	42.9	3.00	50.0
	8~10년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11~20년	(10)	10.0	0.0	30.0	50.0	10.0	10.0	60.0	3.50	62.5
	21~30년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75	43.8
	31~50년	(7)	14.3	0.0	28.6	57.1	0.0	14.3	57.1	3.29	57.1
업종	제조업	(20)	20.0	15.0	25.0	40.0	0.0	35.0	40.0	2.85	46.3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4)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전문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교육서비스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10억 미만	(9)	22.2	22.2	22.2	33.3	0.0	44.4	33.3	2.67	41.7
	10억~50억 미만	(9)	0.0	11.1	22.2	55.6	11.1	11.1	66.7	3.67	66.7
	50억~100억 미만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100억~500억 미만	(6)	0.0	33.3	16.7	50.0	0.0	33.3	50.0	3.17	54.2
	500억 이상	(7)	28.6	14.3	28.6	28.6	0.0	42.9	28.6	2.57	39.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있음	(23)	4.3	21.7	17.4	47.8	8.7	26.1	56.5	3.35	58.7
	없음	(15)	20.0	6.7	40.0	33.3	0.0	26.7	33.3	2.87	46.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있음	(31)	6.5	16.1	22.6	48.4	6.5	22.6	54.8	3.32	58.1
	경험 없음	(7)	28.6	14.3	42.9	14.3	0.0	42.9	14.3	2.43	35.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3)	15.4	15.4	38.5	30.8	0.0	30.8	30.8	2.85	46.2
	없음	(25)	8.0	16.0	20.0	48.0	8.0	24.0	56.0	3.32	58.0

〈부록 표164〉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 받은 정도_입찰참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38)	10.5	21.1	26.3	26.3	15.8	31.6	42.1	3.16	53.9
기업유형	중소중견	(13)	0.0	23.1	30.8	23.1	23.1	23.1	46.2	3.46	61.5
	벤처스타트업	(21)	9.5	23.8	28.6	28.6	9.5	33.3	38.1	3.05	51.2
	대기업	(4)	50.0	0.0	0.0	25.0	25.0	50.0	50.0	2.75	43.8
업력	7년 이하	(14)	14.3	35.7	35.7	14.3	0.0	50.0	14.3	2.50	37.5
	8~10년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50.0
	11~20년	(10)	10.0	0.0	20.0	40.0	30.0	10.0	70.0	3.80	70.0
	21~30년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75	43.8
	31~50년	(7)	14.3	0.0	14.3	28.6	42.9	14.3	71.4	3.86	71.4
업종	제조업	(20)	20.0	25.0	20.0	20.0	15.0	45.0	35.0	2.85	46.3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75.0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33.3	0.0	33.3	33.3	33.3	66.7	3.67	66.7
	전문서비스업	(5)	0.0	20.0	60.0	20.0	0.0	20.0	2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9)	22.2	33.3	44.4	0.0	0.0	55.6	0.0	2.22	30.6
	10억~50억 미만	(9)	0.0	22.2	22.2	44.4	11.1	22.2	55.6	3.44	61.1
	50억~100억 미만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100억~500억 미만	(6)	0.0	33.3	16.7	33.3	16.7	33.3	50.0	3.33	58.3
	500억 이상	(7)	28.6	14.3	14.3	28.6	14.3	42.9	42.9	2.86	4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3)	4.3	21.7	13.0	34.8	26.1	26.1	60.9	3.57	64.1
	없음	(15)	20.0	20.0	46.7	13.3	0.0	40.0	13.3	2.53	38.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31)	6.5	19.4	25.8	29.0	19.4	25.8	48.4	3.35	58.9
	경험 없음	(7)	28.6	28.6	28.6	14.3	0.0	57.1	14.3	2.29	32.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3)	15.4	15.4	23.1	15.4	30.8	30.8	46.2	3.31	57.7
	없음	(25)	8.0	24.0	28.0	32.0	8.0	32.0	40.0	3.08	52.0

50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65>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 받은 정도_계약 및 협상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38)	10.5	13.2	39.5	28.9	7.9	23.7	36.8	3.11	52.6
기업유형	중소중견	(13)	0.0	7.7	38.5	46.2	7.7	7.7	53.8	3.54	63.5
	벤처스타트업	(21)	9.5	19.0	42.9	19.0	9.5	28.6	28.6	3.00	50.0
	대기업	(4)	50.0	0.0	25.0	25.0	0.0	50.0	25.0	2.25	31.3
업력	7년 이하	(14)	14.3	28.6	35.7	21.4	0.0	42.9	21.4	2.64	41.1
	8~10년	(3)	0.0	0.0	66.7	0.0	33.3	0.0	33.3	3.67	66.7
	11~20년	(10)	10.0	0.0	50.0	30.0	10.0	10.0	40.0	3.30	57.5
	21~30년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56.3
	31~50년	(7)	14.3	0.0	28.6	42.9	14.3	14.3	57.1	3.43	60.7
업종	제조업	(20)	20.0	15.0	35.0	20.0	10.0	35.0	30.0	2.85	46.3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4)	0.0	0.0	25.0	75.0	0.0	0.0	75.0	3.75	68.8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전문서비스업	(5)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교육서비스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0.0	2.00	2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9)	22.2	22.2	44.4	11.1	0.0	44.4	11.1	2.44	36.1
	10억~50억 미만	(9)	0.0	22.2	44.4	22.2	11.1	22.2	33.3	3.22	55.6
	50억~100억 미만	(7)	0.0	0.0	42.9	57.1	0.0	0.0	57.1	3.57	64.3
	100억~500억 미만	(6)	0.0	0.0	66.7	0.0	33.3	0.0	33.3	3.67	66.7
	500억 이상	(7)	28.6	14.3	0.0	57.1	0.0	42.9	57.1	2.86	4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3)	4.3	8.7	34.8	39.1	13.0	13.0	52.2	3.48	62.0
	없음	(15)	20.0	20.0	46.7	13.3	0.0	40.0	13.3	2.53	38.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31)	6.5	12.9	41.9	32.3	6.5	19.4	38.7	3.19	54.8
	경험 없음	(7)	28.6	14.3	28.6	14.3	14.3	42.9	28.6	2.71	42.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3)	15.4	7.7	46.2	30.8	0.0	23.1	30.8	2.92	48.1
	없음	(25)	8.0	16.0	36.0	28.0	12.0	24.0	40.0	3.20	55.0

〈부록 표166〉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 받은 정도_사후관리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38)	10.5	21.1	23.7	34.2	10.5	31.6	44.7	3.13	53.3
기업유형	중소중견	(13)	0.0	15.4	38.5	30.8	15.4	15.4	46.2	3.46	61.5
	벤처스타트업	(21)	9.5	28.6	19.0	33.3	9.5	38.1	42.9	3.05	51.2
	대기업	(4)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37.5
업력	7년 이하	(14)	14.3	28.6	35.7	14.3	7.1	42.9	21.4	2.71	42.9
	8~10년	(3)	0.0	100.0	0.0	0.0	0.0	100.0	0.0	2.00	25.0
	11~20년	(10)	10.0	0.0	10.0	60.0	20.0	10.0	80.0	3.80	70.0
	21~30년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56.3
	31~50년	(7)	14.3	0.0	28.6	42.9	14.3	14.3	57.1	3.43	60.7
업종	제조업	(20)	20.0	20.0	25.0	30.0	5.0	40.0	35.0	2.80	45.0
	건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4)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81.3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0.0	33.3	66.7	0.0	0.0	66.7	3.67	66.7
	전문서비스업	(5)	0.0	40.0	40.0	20.0	0.0	40.0	20.0	2.80	45.0
	교육서비스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2)	0.0	50.0	0.0	0.0	50.0	50.0	50.0	3.50	62.5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0.0	2.00	25.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9)	22.2	22.2	33.3	22.2	0.0	44.4	22.2	2.56	38.9
	10억~50억 미만	(9)	0.0	44.4	22.2	22.2	11.1	44.4	33.3	3.00	50.0
	50억~100억 미만	(7)	0.0	0.0	14.3	42.9	42.9	0.0	85.7	4.29	82.1
	100억~500억 미만	(6)	0.0	16.7	33.3	50.0	0.0	16.7	50.0	3.33	58.3
	500억 이상	(7)	28.6	14.3	14.3	42.9	0.0	42.9	42.9	2.71	4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3)	4.3	21.7	17.4	39.1	17.4	26.1	56.5	3.43	60.9
	없음	(15)	20.0	20.0	33.3	26.7	0.0	40.0	26.7	2.67	41.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31)	6.5	25.8	19.4	35.5	12.9	32.3	48.4	3.23	55.6
	경험 없음	(7)	28.6	0.0	42.9	28.6	0.0	28.6	28.6	2.71	42.9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3)	15.4	15.4	23.1	46.2	0.0	30.8	46.2	3.00	50.0
	없음	(25)	8.0	24.0	24.0	28.0	16.0	32.0	44.0	3.20	55.0

50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67>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필요성_현행보다 긴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기간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7.5	29.2	47.2	13.2	10.4	60.4	3.60	65.1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2.4	7.3	17.1	58.5	14.6	9.8	73.2	3.76	68.9
	벤처스타트업	(35)	0.0	2.9	31.4	48.6	17.1	2.9	65.7	3.80	70.0
	대기업	(30)	6.7	13.3	43.3	30.0	6.7	20.0	36.7	3.17	54.2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56.0	24.0	0.0	80.0	4.04	76.0
	8~10년	(6)	0.0	16.7	0.0	50.0	33.3	16.7	83.3	4.00	75.0
	11~20년	(18)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21~30년	(23)	4.3	8.7	21.7	52.2	13.0	13.0	65.2	3.61	65.2
	31~50년	(22)	9.1	9.1	31.8	36.4	13.6	18.2	50.0	3.36	59.1
	51년 이상	(12)	0.0	25.0	41.7	33.3	0.0	25.0	33.3	3.08	52.1
업종	제조업	(48)	4.2	8.3	25.0	47.9	14.6	12.5	62.5	3.60	65.1
	건설업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75.0	8.3	8.3	83.3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42.9	50.0	7.1	0.0	57.1	3.64	66.1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33.3	16.7	16.7	50.0	3.50	62.5
기타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35.0	40.0	20.0	5.0	6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53.3	20.0	0.0	73.3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1.1	68.4	5.3	5.3	73.7	3.74	68.4
	100억~500억 미만	(17)	5.9	5.9	23.5	52.9	11.8	11.8	64.7	3.59	64.7
	500억 이상	(35)	5.7	14.3	34.3	34.3	11.4	20.0	45.7	3.31	57.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9.9	31.0	46.5	9.9	12.7	56.3	3.51	62.7
	없음	(35)	2.9	2.9	25.7	48.6	20.0	5.7	68.6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8.8	27.9	44.1	19.1	8.8	63.2	3.74	68.4
	경험 없음	(38)	7.9	5.3	31.6	52.6	2.6	13.2	55.3	3.37	59.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6.7	4.4	35.6	40.0	13.3	11.1	53.3	3.49	62.2
	없음	(61)	0.0	9.8	24.6	52.5	13.1	9.8	65.6	3.69	67.2

〈부록 표168〉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필요성_현행보다 간편화 된 행정 서류 및 절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5.7	22.6	46.2	24.5	6.6	70.8	3.88	71.9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19.5	43.9	31.7	4.9	75.6	4.02	75.6
	벤처스타트업	(35)	0.0	0.0	28.6	42.9	28.6	0.0	71.4	4.00	75.0
	대기업	(30)	3.3	13.3	20.0	53.3	10.0	16.7	63.3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36.0	44.0	0.0	80.0	4.24	81.0
	8~10년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11~20년	(18)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21~30년	(23)	4.3	4.3	21.7	56.5	13.0	8.7	69.6	3.70	67.4
	31~50년	(22)	0.0	9.1	27.3	40.9	22.7	9.1	63.6	3.77	69.3
	51년 이상	(12)	0.0	25.0	0.0	58.3	16.7	25.0	75.0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6.3	14.6	58.3	20.8	6.3	79.2	3.94	73.4
	건설업	(6)	0.0	16.7	16.7	33.3	33.3	16.7	66.7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58.3	0.0	41.7	0.0	41.7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1.4	50.0	21.4	7.1	71.4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8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33.3	16.7	33.3	16.7	50.0	3.67	66.7
기타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25.0	45.0	30.0	0.0	75.0	4.05	76.3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33.3	26.7	6.7	60.0	3.80	70.0
	50억~100억 미만	(19)	0.0	0.0	42.1	31.6	26.3	0.0	57.9	3.84	71.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5.9	64.7	23.5	5.9	88.2	4.06	76.5
	500억 이상	(35)	2.9	11.4	14.3	51.4	20.0	14.3	71.4	3.74	68.6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7.0	25.4	43.7	22.5	8.5	66.2	3.79	69.7
	없음	(35)	0.0	2.9	17.1	51.4	28.6	2.9	80.0	4.06	76.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20.6	50.0	25.0	4.4	75.0	3.96	73.9
	경험 없음	(38)	2.6	7.9	26.3	39.5	23.7	10.5	63.2	3.74	68.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24.4	48.9	20.0	6.7	68.9	3.80	70.0
	없음	(61)	0.0	6.6	21.3	44.3	27.9	6.6	72.1	3.93	73.4

50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69>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필요성_양질의 조달시장 정보 제공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5.7	28.3	43.4	21.7	6.6	65.1	3.79	69.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31.7	36.6	26.8	4.9	63.4	3.85	71.3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5.7	51.4	20.0	2.9	71.4	3.89	72.1
	대기업	(30)	3.3	10.0	26.7	43.3	16.7	13.3	60.0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0.0	4.0	28.0	40.0	28.0	4.0	68.0	3.92	73.0
	8~10년	(6)	0.0	16.7	0.0	66.7	16.7	16.7	83.3	3.83	70.8
	11~20년	(18)	0.0	0.0	38.9	50.0	11.1	0.0	61.1	3.72	68.1
	21~30년	(23)	4.3	0.0	34.8	47.8	13.0	4.3	60.9	3.65	66.3
	31~50년	(22)	0.0	4.5	31.8	27.3	36.4	4.5	63.6	3.95	73.9
	51년 이상	(12)	0.0	25.0	8.3	50.0	16.7	25.0	66.7	3.58	64.6
업종	제조업	(48)	0.0	8.3	20.8	50.0	20.8	8.3	70.8	3.83	70.8
	건설업	(6)	0.0	33.3	0.0	33.3	33.3	33.3	66.7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75.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42.9	35.7	21.4	0.0	57.1	3.79	69.6
	교육서비스업	(5)	0.0	0.0	60.0	20.0	20.0	0.0	4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기타	(6)	16.7	0.0	33.3	16.7	33.3	16.7	50.0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35.0	40.0	20.0	5.0	60.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40.0	33.3	26.7	0.0	60.0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52.6	21.1	0.0	73.7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11.8	47.1	29.4	11.8	76.5	3.94	73.5
	500억 이상	(35)	2.9	8.6	28.6	42.9	17.1	11.4	60.0	3.63	65.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7.0	26.8	43.7	21.1	8.5	64.8	3.76	69.0
	없음	(35)	0.0	2.9	31.4	42.9	22.9	2.9	65.7	3.86	71.4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25.0	47.1	23.5	4.4	70.6	3.90	72.4
	경험 없음	(38)	2.6	7.9	34.2	36.8	18.4	10.5	55.3	3.61	65.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33.3	51.1	8.9	6.7	60.0	3.60	65.0
	없음	(61)	0.0	6.6	24.6	37.7	31.1	6.6	68.9	3.93	73.4

〈부록 표170〉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필요성_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2.8	0.9	29.2	49.1	17.9	3.8	67.0	3.78	69.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0.0	22.0	61.0	17.1	0.0	78.0	3.95	73.8
	벤처스타트업	(35)	2.9	2.9	22.9	42.9	28.6	5.7	71.4	3.91	72.9
	대기업	(30)	6.7	0.0	46.7	40.0	6.7	6.7	46.7	3.40	60.0
업력	7년 이하	(25)	4.0	4.0	20.0	48.0	24.0	8.0	72.0	3.84	71.0
	8~10년	(6)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83.3
	11~20년	(18)	0.0	0.0	22.2	61.1	16.7	0.0	77.8	3.94	73.6
	21~30년	(23)	4.3	0.0	34.8	43.5	17.4	4.3	60.9	3.70	67.4
	31~50년	(22)	0.0	0.0	36.4	50.0	13.6	0.0	63.6	3.77	69.3
	51년 이상	(12)	8.3	0.0	50.0	33.3	8.3	8.3	41.7	3.33	58.3
업종	제조업	(48)	2.1	0.0	29.2	54.2	14.6	2.1	68.8	3.79	69.8
	건설업	(6)	16.7	16.7	16.7	33.3	16.7	33.3	50.0	3.17	54.2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8.3	58.3	33.3	0.0	91.7	4.25	81.3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57.1	14.3	28.6	0.0	42.9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1.4	71.4	7.1	0.0	78.6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40.0	40.0	20.0	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16.7	50.0	0.0	66.7	4.17	79.2
기타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5.0	5.0	50.0	25.0	15.0	10.0	40.0	3.40	60.0
	10억~50억 미만	(15)	0.0	0.0	6.7	73.3	20.0	0.0	93.3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1.1	52.6	26.3	0.0	78.9	4.05	76.3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64.7	17.6	0.0	82.4	4.00	75.0
	500억 이상	(35)	5.7	0.0	37.1	42.9	14.3	5.7	57.1	3.60	65.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1.4	31.0	46.5	18.3	4.2	64.8	3.76	69.0
	없음	(35)	2.9	0.0	25.7	54.3	17.1	2.9	71.4	3.83	70.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1.5	0.0	29.4	50.0	19.1	1.5	69.1	3.85	71.3
	경험 없음	(38)	5.3	2.6	28.9	47.4	15.8	7.9	63.2	3.66	66.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	40.0	44.4	11.1	4.4	55.6	3.60	65.0
	없음	(61)	3.3	0.0	21.3	52.5	23.0	3.3	75.4	3.92	73.0

50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7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3.8	29.2	43.4	22.6	4.7	66.0	3.83	70.8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19.5	53.7	22.0	4.9	75.6	3.93	73.2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0.0	42.9	31.4	5.7	74.3	4.00	75.0
	대기업	(30)	3.3	0.0	53.3	30.0	13.3	3.3	43.3	3.50	62.5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52.0	28.0	0.0	80.0	4.08	77.0
	8~10년	(6)	0.0	16.7	0.0	33.3	50.0	16.7	83.3	4.17	79.2
	11~20년	(18)	0.0	0.0	44.4	44.4	11.1	0.0	55.6	3.67	66.7
	21~30년	(23)	4.3	4.3	13.0	52.2	26.1	8.7	78.3	3.91	72.8
	31~50년	(22)	0.0	9.1	36.4	36.4	18.2	9.1	54.5	3.64	65.9
업종	51년 이상	(12)	0.0	0.0	58.3	25.0	16.7	0.0	41.7	3.58	64.6
	제조업	(48)	0.0	4.2	33.3	39.6	22.9	4.2	62.5	3.81	70.3
	건설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8.3	66.7	16.7	8.3	83.3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28.6	50.0	21.4	0.0	71.4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33.3	33.3	0.0	66.7	4.00	75.0
	기타	(6)	16.7	0.0	50.0	33.3	0.0	16.7	33.3	3.00	50.0
	10억 미만	(20)	0.0	0.0	25.0	45.0	30.0	0.0	75.0	4.05	76.3
	10억~50억 미만	(15)	0.0	6.7	20.0	46.7	26.7	6.7	73.3	3.93	73.3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15.8	47.4	26.3	10.5	73.7	3.89	72.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9.4	52.9	11.8	5.9	64.7	3.71	67.6
	500억 이상	(35)	2.9	0.0	42.9	34.3	20.0	2.9	54.3	3.69	67.1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있음	(71)	1.4	4.2	28.2	42.3	23.9	5.6	66.2	3.83	70.8
	없음	(35)	0.0	2.9	31.4	45.7	20.0	2.9	65.7	3.83	70.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경험 있음	(68)	0.0	4.4	27.9	42.6	25.0	4.4	67.6	3.88	72.1
	경험 없음	(38)	2.6	2.6	31.6	44.7	18.4	5.3	63.2	3.74	68.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4.4	35.6	37.8	20.0	6.7	57.8	3.69	67.2
	없음	(61)	0.0	3.3	24.6	47.5	24.6	3.3	72.1	3.93	73.4

〈부록 표172〉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해외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2.8	27.4	42.5	26.4	3.8	68.9	3.91	72.6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24.4	46.3	24.4	4.9	70.7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0.0	0.0	17.1	48.6	34.3	0.0	82.9	4.17	79.3
	대기업	(30)	3.3	3.3	43.3	30.0	20.0	6.7	50.0	3.60	65.0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0.0	44.0	36.0	0.0	80.0	4.16	79.0
	8~10년	(6)	0.0	16.7	0.0	16.7	66.7	16.7	83.3	4.33	83.3
	11~20년	(18)	0.0	0.0	38.9	44.4	16.7	0.0	61.1	3.78	69.4
	21~30년	(23)	4.3	4.3	26.1	43.5	21.7	8.7	65.2	3.74	68.5
	31~50년	(22)	0.0	4.5	31.8	45.5	18.2	4.5	63.6	3.77	69.3
	51년 이상	(12)	0.0	0.0	33.3	41.7	25.0	0.0	66.7	3.92	72.9
	기타	(6)	16.7	0.0	33.3	33.3	16.7	16.7	50.0	3.33	58.3
업종	제조업	(48)	0.0	2.1	20.8	54.2	22.9	2.1	77.1	3.98	74.5
	건설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25.0	33.3	33.3	8.3	66.7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62.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35.7	21.4	35.7	7.1	57.1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7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30.0	45.0	25.0	0.0	70.0	3.95	73.8
	10억~50억 미만	(15)	0.0	13.3	20.0	33.3	33.3	13.3	66.7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52.6	21.1	0.0	73.7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11.8	58.8	23.5	5.9	82.4	4.00	75.0
	500억 이상	(35)	2.9	0.0	37.1	31.4	28.6	2.9	60.0	3.83	70.7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2.8	26.8	42.3	26.8	4.2	69.0	3.90	72.5
	없음	(35)	0.0	2.9	28.6	42.9	25.7	2.9	68.6	3.91	72.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1.5	25.0	50.0	23.5	1.5	73.5	3.96	73.9
	경험 없음	(38)	2.6	5.3	31.6	28.9	31.6	7.9	60.5	3.82	70.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	31.1	37.8	26.7	4.4	64.4	3.84	71.1
	없음	(61)	0.0	3.3	24.6	45.9	26.2	3.3	72.1	3.95	73.8

50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73〉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1.9	5.7	36.8	34.9	20.8	7.5	55.7	3.67	66.7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9.8	31.7	46.3	12.2	9.8	58.5	3.61	65.2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8.6	31.4	37.1	2.9	68.6	4.03	75.7
	대기업	(30)	6.7	3.3	53.3	23.3	13.3	10.0	36.7	3.33	58.3
업력	7년 이하	(25)	0.0	4.0	40.0	32.0	24.0	4.0	56.0	3.76	69.0
	8~10년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75.0
	11~20년	(18)	0.0	5.6	38.9	38.9	16.7	5.6	55.6	3.67	66.7
	21~30년	(23)	4.3	4.3	21.7	60.9	8.7	8.7	69.6	3.65	66.3
	31~50년	(22)	0.0	4.5	40.9	27.3	27.3	4.5	54.5	3.77	69.3
	51년 이상	(12)	8.3	8.3	58.3	8.3	16.7	16.7	25.0	3.17	54.2
업종	제조업	(48)	0.0	2.1	41.7	35.4	20.8	2.1	56.3	3.75	68.8
	건설업	(6)	16.7	0.0	0.0	66.7	16.7	16.7	83.3	3.67	66.7
	도매 및 소매업	(12)	0.0	8.3	41.7	33.3	16.7	8.3	50.0	3.58	64.6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28.6	42.9	0.0	71.4	4.14	78.6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0.0	7.1	28.6	35.7	28.6	7.1	64.3	3.86	71.4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20.0	40.0	3.20	5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79.2
기타	(6)	16.7	16.7	66.7	0.0	0.0	33.3	0.0	2.50	37.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5.0	45.0	30.0	20.0	5.0	50.0	3.65	66.3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33.3	40.0	0.0	73.3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0.0	10.5	31.6	36.8	21.1	10.5	57.9	3.68	67.1
	100억~500억 미만	(17)	0.0	5.9	23.5	52.9	17.6	5.9	70.6	3.82	70.6
	500억 이상	(35)	5.7	5.7	45.7	28.6	14.3	11.4	42.9	3.40	6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2.8	4.2	33.8	35.2	23.9	7.0	59.2	3.73	68.3
	없음	(35)	0.0	8.6	42.9	34.3	14.3	8.6	48.6	3.54	6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5.9	38.2	30.9	25.0	5.9	55.9	3.75	68.8
	경험 없음	(38)	5.3	5.3	34.2	42.1	13.2	10.5	55.3	3.53	63.2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0.0	51.1	35.6	11.1	2.2	46.7	3.53	63.3
	없음	(61)	1.6	9.8	26.2	34.4	27.9	11.5	62.3	3.77	69.3

〈부록 표174〉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사업 제안 지원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5.7	28.3	38.7	26.4	6.6	65.1	3.84	71.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4.9	22.0	51.2	22.0	4.9	73.2	3.90	72.6
	벤처스타트업	(35)	0.0	2.9	31.4	25.7	40.0	2.9	65.7	4.03	75.7
	대기업	(30)	3.3	10.0	33.3	36.7	16.7	13.3	53.3	3.53	63.3
업력	7년 이하	(25)	0.0	4.0	28.0	32.0	36.0	4.0	68.0	4.00	75.0
	8~10년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11~20년	(18)	0.0	0.0	38.9	38.9	22.2	0.0	61.1	3.83	70.8
	21~30년	(23)	4.3	8.7	21.7	39.1	26.1	13.0	65.2	3.74	68.5
	31~50년	(22)	0.0	0.0	40.9	40.9	18.2	0.0	59.1	3.77	69.3
	51년 이상	(12)	0.0	25.0	16.7	41.7	16.7	25.0	58.3	3.50	62.5
업종	제조업	(48)	0.0	4.2	29.2	43.8	22.9	4.2	66.7	3.85	71.4
	건설업	(6)	0.0	16.7	0.0	50.0	33.3	16.7	83.3	4.00	75.0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16.7	75.0	8.3	0.0	83.3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0.0	35.7	21.4	42.9	0.0	64.3	4.07	76.8
	교육서비스업	(5)	0.0	20.0	40.0	0.0	40.0	20.0	40.0	3.60	65.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16.7	16.7	66.7	0.0	83.3	4.50	87.5
기타	(6)	16.7	16.7	50.0	0.0	16.7	33.3	16.7	2.83	45.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10.0	35.0	25.0	30.0	10.0	55.0	3.75	68.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33.3	40.0	0.0	73.3	4.13	78.3
	50억~100억 미만	(19)	0.0	0.0	26.3	36.8	36.8	0.0	73.7	4.11	77.6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23.5	58.8	17.6	0.0	76.5	3.94	73.5
	500억 이상	(35)	2.9	11.4	28.6	40.0	17.1	14.3	57.1	3.57	64.3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5.6	25.4	40.8	26.8	7.0	67.6	3.86	71.5
	없음	(35)	0.0	5.7	34.3	34.3	25.7	5.7	60.0	3.80	7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26.5	41.2	27.9	4.4	69.1	3.93	73.2
	경험 없음	(38)	2.6	7.9	31.6	34.2	23.7	10.5	57.9	3.68	67.1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37.8	31.1	22.2	8.9	53.3	3.64	66.1
	없음	(61)	0.0	4.9	21.3	44.3	29.5	4.9	73.8	3.98	74.6

510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75>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해외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6.6	26.4	43.4	22.6	7.5	66.0	3.80	70.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2.4	17.1	53.7	26.8	2.4	80.5	4.05	76.2
	벤처스타트업	(35)	0.0	5.7	28.6	40.0	25.7	5.7	65.7	3.86	71.4
	대기업	(30)	3.3	13.3	36.7	33.3	13.3	16.7	46.7	3.40	60.0
업력	7년 이하	(25)	0.0	0.0	40.0	28.0	32.0	0.0	60.0	3.92	73.0
	8~10년	(6)	0.0	16.7	0.0	33.3	50.0	16.7	83.3	4.17	79.2
	11~20년	(18)	0.0	0.0	33.3	61.1	5.6	0.0	66.7	3.72	68.1
	21~30년	(23)	4.3	4.3	13.0	56.5	21.7	8.7	78.3	3.87	71.7
	31~50년	(22)	0.0	9.1	31.8	40.9	18.2	9.1	59.1	3.68	67.0
	51년 이상	(12)	0.0	25.0	16.7	33.3	25.0	25.0	58.3	3.58	64.6
업종	제조업	(48)	0.0	6.3	22.9	50.0	20.8	6.3	70.8	3.85	71.4
	건설업	(6)	0.0	0.0	50.0	16.7	33.3	0.0	50.0	3.83	70.8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33.3	41.7	25.0	0.0	66.7	3.92	72.9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42.9	42.9	14.3	0.0	57.1	3.71	67.9
	금융/보험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50.0
	전문서비스업	(14)	0.0	7.1	7.1	57.1	28.6	7.1	85.7	4.07	76.8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기타	(6)	16.7	16.7	50.0	0.0	16.7	33.3	16.7	2.83	45.8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35.0	45.0	20.0	0.0	65.0	3.85	71.3
	10억~50억 미만	(15)	0.0	6.7	33.3	26.7	33.3	6.7	60.0	3.87	71.7
	50억~100억 미만	(19)	0.0	5.3	21.1	47.4	26.3	5.3	73.7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11.8	11.8	58.8	17.6	11.8	76.5	3.82	70.6
	500억 이상	(35)	2.9	8.6	28.6	40.0	20.0	11.4	60.0	3.66	66.4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9.9	25.4	40.8	22.5	11.3	63.4	3.73	68.3
	없음	(35)	0.0	0.0	28.6	48.6	22.9	0.0	71.4	3.94	73.6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8.8	23.5	45.6	22.1	8.8	67.6	3.81	70.2
	경험 없음	(38)	2.6	2.6	31.6	39.5	23.7	5.3	63.2	3.79	69.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6.7	28.9	48.9	13.3	8.9	62.2	3.64	66.1
	없음	(61)	0.0	6.6	24.6	39.3	29.5	6.6	68.9	3.92	73.0

〈부록 표176〉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 정부 협력 필요성_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단위: %)

		사례수	① 전혀 아니 다	② 아니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부정 (①+ ②)	긍정 (④+ ⑤)	평균 (5점)	평균 (100 점)
전체		(106)	0.9	2.8	21.7	44.3	30.2	3.8	74.5	4.00	75.0
기업유형	중소중견	(41)	0.0	0.0	12.2	53.7	34.1	0.0	87.8	4.22	80.5
	벤처스타트업	(35)	0.0	2.9	25.7	40.0	31.4	2.9	71.4	4.00	75.0
	대기업	(30)	3.3	6.7	30.0	36.7	23.3	10.0	60.0	3.70	67.5
업력	7년 이하	(25)	0.0	0.0	24.0	36.0	40.0	0.0	76.0	4.16	79.0
	8~10년	(6)	0.0	0.0	0.0	33.3	66.7	0.0	100.0	4.67	91.7
	11~20년	(18)	0.0	0.0	22.2	61.1	16.7	0.0	77.8	3.94	73.6
	21~30년	(23)	4.3	4.3	17.4	47.8	26.1	8.7	73.9	3.87	71.7
	31~50년	(22)	0.0	0.0	27.3	45.5	27.3	0.0	72.7	4.00	75.0
	51년 이상	(12)	0.0	16.7	25.0	33.3	25.0	16.7	58.3	3.67	66.7
	업종	제조업	(48)	0.0	2.1	18.8	43.8	35.4	2.1	79.2	4.13
	건설업	(6)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87.5
	도매 및 소매업	(12)	0.0	0.0	16.7	58.3	25.0	0.0	83.3	4.08	77.1
	방송/통신/미디어업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71.4
	금융/보험업	(2)	0.0	50.0	50.0	0.0	0.0	50.0	0.0	2.50	37.5
	전문서비스업	(14)	0.0	0.0	35.7	35.7	28.6	0.0	64.3	3.93	73.2
	교육서비스업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7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70.8
	기타	(6)	16.7	0.0	16.7	50.0	16.7	16.7	66.7	3.50	62.5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0)	0.0	0.0	40.0	25.0	35.0	0.0	60.0	3.95	73.8
	10억~50억 미만	(15)	0.0	0.0	26.7	26.7	46.7	0.0	73.3	4.20	80.0
	50억~100억 미만	(19)	0.0	5.3	10.5	68.4	15.8	5.3	84.2	3.95	73.7
	100억~500억 미만	(17)	0.0	0.0	17.6	52.9	29.4	0.0	82.4	4.12	77.9
	500억 이상	(35)	2.9	5.7	17.1	45.7	28.6	8.6	74.3	3.91	72.9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71)	1.4	4.2	22.5	42.3	29.6	5.6	71.8	3.94	73.6
	없음	(35)	0.0	0.0	20.0	48.6	31.4	0.0	80.0	4.11	77.9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68)	0.0	4.4	20.6	38.2	36.8	4.4	75.0	4.07	76.8
	경험 없음	(38)	2.6	0.0	23.7	55.3	18.4	2.6	73.7	3.87	71.7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	2.2	28.9	40.0	26.7	4.4	66.7	3.87	71.7
	없음	(61)	0.0	3.3	16.4	47.5	32.8	3.3	80.3	4.10	77.5

2. 대기업 특화 문항

〈부록 표177〉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수주 경험

(단위: %)

		사례수	해외진출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사업 수주 경험이 없다	해외진출을 추진하였고, 해외사업 수주 경험이 있다
전체		(30)	3.3	30.0	66.7
업력	30년 이하	(10)	0.0	60.0	40.0
	31년~50년	(9)	11.1	22.2	66.7
	51년 이상	(11)	0.0	9.1	90.9
업종	제조업	(15)	0.0	20.0	80.0
	건설업	(3)	0.0	33.3	66.7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66.7	33.3
	금융/보험업	(2)	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4)	25.0	50.0	25.0
	기타	(3)	0.0	33.3	66.7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	0.0	100.0	0.0
	10억~50억 미만	(1)	100.0	0.0	0.0
	100억~500억 미만	(2)	0.0	100.0	0.0
	500억 이상	(25)	0.0	20.0	8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3.7	29.6	66.7
	없음	(3)	0.0	33.3	66.7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17)	0.0	29.4	70.6
	경험 없음	(13)	7.7	30.8	61.5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6)	0.0	18.8	81.3
	없음	(14)	7.1	42.9	50.0

〈부록 표178〉 최근 5년 국내 중소기업 동반 진출 횟수

(단위: %)

		사례수	없다(0건)	1건	2건~5건 미만	5건~10건 미만	10건 이상
전체		(30)	63.3	3.3	16.7	3.3	13.3
업력	30년 이하	(10)	70.0	0.0	30.0	0.0	0.0
	31년~50년	(9)	66.7	0.0	11.1	0.0	22.2
	51년 이상	(11)	54.5	9.1	9.1	9.1	18.2
업종	제조업	(15)	80.0	0.0	0.0	6.7	13.3
	건설업	(3)	0.0	33.3	66.7	0.0	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0.0	66.7	0.0	33.3
	금융/보험업	(2)	100.0	0.0	0.0	0.0	0.0
	전문서비스업	(4)	75.0	0.0	25.0	0.0	0.0
	기타	(3)	66.7	0.0	0.0	0.0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	50.0	0.0	50.0	0.0
	10억~50억 미만	(1)	100.0	0.0	0.0	0.0	0.0
	100억~500억 미만	(2)	50.0	0.0	50.0	0.0	0.0
	500억 이상	(25)	64.0	4.0	12.0	4.0	16.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59.3	3.7	18.5	3.7	14.8
	없음	(3)	100.0	0.0	0.0	0.0	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17)	47.1	0.0	23.5	5.9	23.5
	경험 없음	(13)	84.6	7.7	7.7	0.0	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6)	43.8	6.3	25.0	6.3	18.8
	없음	(14)	85.7	0.0	7.1	0.0	7.1

51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79〉 동반 진출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선별 시 주 사용 방법

(단위: %)

		사례수	자체 벤더사 하청	현지 활동 중인 중소기업	자유 공모	기타	계
전체		(11)	36.4	36.4	18.2	9.1	100.0
업력	30년 이하	(3)	33.3	66.7	0.0	0.0	100.0
	31년~50년	(3)	33.3	33.3	33.3	0.0	100.0
	51년 이상	(5)	40.0	20.0	20.0	20.0	100.0
업종	제조업	(3)	66.7	33.3	0.0	0.0	100.0
	건설업	(3)	33.3	0.0	66.7	0.0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33.3	66.7	0.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	0.0	100.0	0.0	0.0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	0.0	100.0	0.0	0.0	100.0
	100억~500억 미만	(1)	0.0	100.0	0.0	0.0	100.0
	500억 이상	(9)	44.4	22.2	22.2	11.1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1)	36.4	36.4	18.2	9.1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9)	44.4	33.3	11.1	11.1	100.0
	경험 없음	(2)	0.0	50.0	50.0	0.0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9)	44.4	33.3	22.2	0.0	100.0
	없음	(2)	0.0	50.0	0.0	50.0	100.0

〈부록 표180〉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_복수응답

(단위: %)

		사례수	자체적인 해외 시장 조사	정부/ 공공기관 을 통한 해외진출 정보 수집	해외 네트워크 (파트너사) 를 통한 정보수집	유용한 해외 정보 소스 활용	기타
전체		(30)	63.3	26.7	43.3	20.0	6.7
업력	30년 이하	(10)	50.0	30.0	40.0	10.0	20.0
	31년~50년	(9)	66.7	11.1	33.3	22.2	0.0
	51년 이상	(11)	72.7	36.4	54.5	27.3	0.0
업종	제조업	(15)	60.0	33.3	53.3	40.0	6.7
	건설업	(3)	100.0	0.0	0.0	0.0	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66.7	66.7	0.0	0.0
	금융/보험업	(2)	100.0	0.0	50.0	0.0	0.0
	전문서비스업	(4)	75.0	25.0	25.0	0.0	0.0
	기타	(3)	66.7	0.0	33.3	0.0	33.3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2)	50.0	50.0	0.0	0.0
10억~50억 미만	(1)	100.0	0.0	0.0	0.0	0.0	
100억~500억 미만	(2)	50.0	50.0	50.0	0.0	0.0	
500억 이상	(25)	64.0	24.0	48.0	24.0	8.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27)	59.3	25.9	44.4	18.5	7.4
	없음	(3)	100.0	33.3	33.3	33.3	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17)	70.6	29.4	47.1	17.6	0.0
	경험 없음	(13)	53.8	23.1	38.5	23.1	15.4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16)	62.5	37.5	50.0	25.0	0.0
	없음	(14)	64.3	14.3	35.7	14.3	14.3

3.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특화 문항

〈부록 표181〉 현재 수출단계

(단위: %)

		사례수	수출 계획만 가지고 있다	첫 수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첫 수출 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계
전체		(76)	22.4	26.3	42.1	9.2	100.0
업력	7년 이하	(24)	41.7	33.3	25.0	0.0	100.0
	8~10년	(6)	16.7	50.0	33.3	0.0	100.0
	11~20년	(14)	14.3	21.4	57.1	7.1	100.0
	21~30년	(18)	22.2	22.2	33.3	22.2	100.0
	31년 이상	(14)	0.0	14.3	71.4	14.3	100.0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41)	19.5	19.5	46.3	14.6	100.0
	벤처스타트업	(35)	25.7	34.3	37.1	2.9	100.0
업종	제조업	(33)	15.2	21.2	51.5	12.1	100.0
	건설업	(3)	100.0	0.0	0.0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12)	25.0	50.0	16.7	8.3	100.0
	방송/통신/미디어업	(4)	0.0	25.0	75.0	0.0	100.0
	전문서비스업	(10)	30.0	30.0	40.0	0.0	100.0
	교육서비스업	(5)	20.0	20.0	40.0	20.0	10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0.0	16.7	66.7	16.7	100.0
기타	(3)	66.7	33.3	0.0	0.0	10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8)	38.9	33.3	27.8	0.0	100.0
	10억~50억 미만	(14)	35.7	21.4	42.9	0.0	100.0
	50억~100억 미만	(19)	15.8	31.6	42.1	10.5	100.0
	100억~500억 미만	(15)	13.3	26.7	53.3	6.7	100.0
	500억 이상	(10)	0.0	10.0	50.0	40.0	10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4)	11.4	31.8	45.5	11.4	100.0
	없음	(32)	37.5	18.8	37.5	6.3	100.0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17.6	31.4	39.2	11.8	100.0
	경험 없음	(25)	32.0	16.0	48.0	4.0	100.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2.2	28.9	40.0	8.9	100.0
	없음	(31)	22.6	22.6	45.2	9.7	100.0

〈부록 표182〉 주요 수출제품의 해외인증 획득 현황

(단위: %)

		사례수	없음	국제인증 1건	국제인증 2건 이상	국제인증 1건 이상과 해외 현지 인증 1건 이상
전체		(76)	36.8	22.4	30.3	10.5
업력	7년 이하	(24)	41.7	25.0	25.0	8.3
	8~10년	(6)	66.7	0.0	16.7	16.7
	11~20년	(14)	21.4	28.6	42.9	7.1
	21~30년	(18)	44.4	16.7	27.8	11.1
	31년 이상	(14)	21.4	28.6	35.7	14.3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41)	36.6	22.0	31.7	9.8
	벤처스타트업	(35)	37.1	22.9	28.6	11.4
업종	제조업	(33)	33.3	24.2	30.3	12.1
	건설업	(3)	10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2)	8.3	50.0	33.3	8.3
	방송/통신/미디어업	(4)	50.0	25.0	25.0	0.0
	전문서비스업	(10)	50.0	10.0	20.0	20.0
	교육서비스업	(5)	40.0	20.0	4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6)	33.3	0.0	50.0	16.7
기타	(3)	66.7	0.0	33.3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10억 미만	(18)	61.1	11.1	22.2	5.6
	10억~50억 미만	(14)	42.9	35.7	14.3	7.1
	50억~100억 미만	(19)	21.1	26.3	31.6	21.1
	100억~500억 미만	(15)	33.3	26.7	33.3	6.7
	500억 이상	(10)	20.0	10.0	60.0	1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4)	22.7	27.3	36.4	13.6
	없음	(32)	56.3	15.6	21.9	6.3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1)	29.4	25.5	33.3	11.8
	경험 없음	(25)	52.0	16.0	24.0	8.0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45)	28.9	22.2	37.8	11.1
	없음	(31)	48.4	22.6	19.4	9.7

518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83〉 해외 납품 시 주요 진출경로

(단위: %)

		사례수	현지 민간기업 (유통사) 을 활용 한다	국내 대기업의 벤더 등록을 통해 진출한다	해외 기업의 벤더등록 을 통해 진출한다	현지 지사/ 사무소를 설치한다	주계약자로 참여한다	공동 계약자로 참여한다
전체		(52)	21.2	17.3	25.0	19.2	9.6	7.7
업력	7년 이하	(13)	46.2	23.1	0.0	15.4	15.4	0.0
	8~10년	(4)	25.0	0.0	0.0	50.0	25.0	0.0
	11~20년	(12)	16.7	16.7	25.0	25.0	8.3	8.3
	21~30년	(10)	10.0	20.0	40.0	10.0	0.0	20.0
	31년 이상	(13)	7.7	15.4	46.2	15.4	7.7	7.7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28)	21.4	17.9	28.6	14.3	7.1	10.7
	벤처스타트업	(24)	20.8	16.7	20.8	25.0	12.5	4.2
업종	제조업	(24)	20.8	16.7	25.0	8.3	16.7	12.5
	도매 및 소매업	(9)	22.2	33.3	33.3	11.1	0.0	0.0
	방송/통신/미디어업	(3)	0.0	0.0	33.3	33.3	0.0	33.3
	전문서비스업	(7)	0.0	14.3	14.3	57.1	14.3	0.0
	교육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0.0	0.0
	보건/의료/사회 복지업	(4)	50.0	0.0	25.0	25.0	0.0	0.0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규모	기타	(2)	50.0	0.0	0.0	50.0	0.0	0.0
	10억 미만	(7)	57.1	14.3	0.0	14.3	14.3	0.0
	10억~50억 미만	(11)	9.1	27.3	18.2	27.3	18.2	0.0
	50억~100억 미만	(15)	20.0	0.0	40.0	33.3	6.7	0.0
	100억~500억 미만	(12)	16.7	33.3	0.0	8.3	8.3	33.3
	500억 이상	(7)	14.3	14.3	71.4	0.0	0.0	0.0
CSR·CSV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6)	13.9	22.2	27.8	22.2	8.3	5.6
	없음	(16)	37.5	6.3	18.8	12.5	12.5	12.5
최근 5년 개도국 CSR·CSV 활동 경험	경험 있음	(37)	18.9	16.2	29.7	18.9	10.8	5.4
	경험 없음	(15)	26.7	20.0	13.3	20.0	6.7	13.3
해외진출 전담 조직 여부	있음	(31)	22.6	16.1	16.1	19.4	16.1	9.7
	없음	(21)	19.0	19.0	38.1	19.0	0.0	4.8



**부록 3: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및 국내 ODA 조달시장 세부사항**



520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 2019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세부사항

(단위: 백만 US달러)

공급사	건수	품목	산업 분야	국가	조달방식	규모
한국전력공사	7	공사	기타	도미니카공화국	입찰 요청	38
건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4	서비스	운송 및 기타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동티모르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5
동성 엔지니어링	4	서비스	운송 및 기타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5
(주)타라티피에스	3	물품	교육 및 기타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입찰 요청	3
수성 엔지니어링	3	서비스	운송 및 기타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서비스	운송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2
도화 엔지니어링	2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신성 엔지니어링	2	서비스	운송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0.4
영인	1	공사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우크라이나	입찰 요청	3
국제협력센터	1	서비스	운송	캄보디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2
유신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캄보디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2
동명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인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범건축	1	서비스	행정	방글라데시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21b)에서 재가공

〈부록 표2〉 2018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세부사항

(단위: 백만 US달러)

공급사	건수	품목	산업 분야	국가	조달방식	규모
도화 엔지니어링	6	공사 및 서비스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8
영인	3	공사 및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채광	우크라이나, 미얀마	입찰 요청	8
건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2	서비스	운송	아프리카 전체, 에티오피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6
한양 엔지니어링	2	공사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우크라이나	입찰 요청	6
한국도로공사	2	서비스	운송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4
다산 컨설턴트	2	서비스	운송	베트남,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4
동성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카자흐스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6
아하정보통신	1	물품	교육	우즈베키스탄	입찰 요청	4
동양 건설	1	공사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베트남	입찰 요청	4
삼성물산	1	물품	N/A	아프리카 전체	입찰 요청	3
한국전력공사	1	서비스	에너지 및 채광	미얀마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2
국제협력센터	1	서비스	운송	캄보디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한국환경공단	1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베트남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선진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베트남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21b)에서 재가공

522_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3〉 2017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세부사항

(단위: 백만 US달러)

공급사	건수	품목	산업 분야	국가	조달방식	규모
도화 엔지니어링	4	공사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몰도바, 베트남, 타지키스탄, 필리핀,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6
포스코 대우	3	공사 및 물품	에너지 및 채광	베트남, 우크라이나	입찰 요청, 국제 경쟁 입찰	18
효성	2	공사	에너지 및 채광	우크라이나	입찰 요청	13
누리 플렉스	1	물품	에너지 및 채광	베트남	국제 경쟁 입찰	5
오텍	1	물품	보건	우즈베키스탄	국제 경쟁 입찰	4
(주)타라티피에스	1	물품	N/A	모잠비크	입찰 요청	3
한국농어촌공사	1	서비스	농수산업	미얀마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평화엔지니어링	1	서비스	농수산업	미얀마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인터젠 컨설팅	1	서비스	N/A	아프리카 전체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21b)에서 재가공

* 포스코 대우의 경우, 2019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했다.

〈부록 표4〉 2016 세계은행 한국기업 조달실적 세부사항

(단위: 백만 US달러)

공급사	건수	품목	산업 분야	국가	조달방식	규모
대림산업	2	공사	에너지 및 채광	인도네시아	국제 경쟁 입찰	77
대주이엔티	1	공사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우즈베키스탄	국제 경쟁 입찰	13
다산컨설팅	2	서비스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케냐,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5
삼성물산	1	물품	정보통신기술	아프리카 전체 프로젝트	국제 경쟁 입찰	4
경동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탄자니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3
수성 엔지니어링	3	서비스	운송,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사모아, 조지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컨설턴트 자격 선정	2
도화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중앙아시아 전체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2
삼안	1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조지아	컨설턴트 자격 선정	2
동명	2	서비스	운송	인도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1
한국타워크레인	1	물품	행정	방글라데시	입찰 요청	1
비엘프로세스	1	물품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베트남	국제 경쟁 입찰	1
케어캠프	1	물품	보건	우즈베키스탄	국제 경쟁 입찰	1
유신 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방글라데시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0.3
오탁 인터내셔널	1	물품	에너지 및 채광	이집트	국제 경쟁 입찰	0.2
한국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	서비스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베트남	품질 및 가격 기반 선택 방법	0.1
문엔지니어링	1	서비스	운송	조지아	컨설턴트 자격 선정	0.1
동아에스티	1	물품	보건	아르헨티나	입찰 요청	0.06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21b)에서 재가공

524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5〉 KOICA 및 EDCF 약정액 추이

(단위: 백만 US 달러)

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KOICA	644	23.1	514	19.4	588	19.1	778	20.2	935	37.3	692	23.2
EDCF	1,455	52.3	1,481	55.9	1,802	58.5	2,313	60.0	781	31.1	1,566	52.6
국내기관 총합계	2,783	100	2,650	100	3,082	100	3,858	100	2,509	100	2,977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

〈부록 표6〉 KOICA 및 EDCF 지출액 추이

(단위: 백만 US 달러)

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KOICA	552	23.8	562	24.5	617	24.4	645	24.3	575	23.8	590	24.2
EDCF	663	28.6	697	30.5	814	32.1	914	34.5	811	33.5	780	31.9
국내기관 총합계	2,320	100	2,289	100	2,534	100	2,652	100	2,421	100	2,443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

〈부록 표7〉 KOICA Top 10 산업별 약정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산업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행정비용	55	8.5	53	10.3	57	9.6	57	7.4	65	7.0	57	8.3
2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28	4.4	34	6.6	38	6.5	47	6.0	61	6.5	42	6.0
3	의료서비스	60	9.3	17	3.4	14	2.4	39	5.0	29	3.1	32	4.6
4	비 특정 분야	21	3.2	20	3.9	20	3.4	52	6.7	41	4.4	31	4.5
5	초등교육	30	4.7	23	4.4	24	4.1	25	3.2	26	2.8	26	3.7
6	직업훈련 (기초, 중등 수준)	11	1.7	21	4.0	27	4.5	16	2.0	42	4.5	23	3.4
7	개발인식 증진	24	3.7	20	3.8	24	4.1	18	2.3	18	1.9	21	3.0
8	농업 개발	18	2.9	6	1.1	8	1.4	12	1.5	55	5.9	20	2.9
9	중고등교육	10	1.5	43	8.4	14	2.4	9	1.1	14	1.5	18	2.6
10	전문대, 대학(원) 교육	10	1.5	15	3.0	19	3.3	25	3.3	18	1.9	18	2.5
Top 10 합계		267	29.3	252	32.9	246	29.5	300	27.8	369	28.3	287	29.3
합계		644	100	514	100	588	100	778	100	935	100	692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

〈부록 표8〉 KOICA Top 10 산업별 지출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산업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행정비용	55	9.9	53	9.5	57	9.2	57	8.9	65	11.3	57	9.7
2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39	7.1	38	6.8	28	4.5	39	6.1	29	5.0	35	5.9
3	비특정분야	21	3.8	20	3.6	20	3.3	52	8.1	41	7.1	31	5.2
4	초등교육	19	3.4	27	4.8	36	5.8	34	5.2	23	4.1	28	4.7
5	전문대,대학(원) 교육	13	2.3	24	4.3	26	4.2	30	4.6	16	2.8	22	3.7
6	직업훈련(기초, 중등수준)	20	3.6	23	4.2	28	4.5	24	3.7	12	2.1	21	3.6
7	개발인식 증진	24	4.3	20	3.5	24	3.9	18	2.7	18	3.1	21	3.5
8	농업 개발	21	3.9	18	3.2	16	2.6	14	2.2	12	2.1	16	2.8
9	의료서비스	17	3.1	14	2.4	19	3.0	20	3.1	12	2.1	16	2.8
10	기초보건진료	18	3.2	17	3.0	19	3.1	17	2.6	9	1.6	16	2.7
Top 10 합계		246	30.8	254	31.1	273	30.6	305	32.1	237	29.2	263	30.8
합계		552	100	562	100	617	100	645	100	575	100	590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

〈부록 표9〉 EDCF Top 10 산업별 약정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산업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도로운송	281	19.3	278	18.8	307	17.1	201	8.7	20	2.6	217	13.9
2	철도운송	176	12.1	373	25.2	63	3.5	125	5.4	0	0.0	147	9.4
3	정보통신기술	76	5.2	0	0.0	179	10.0	296	12.8	25	3.2	115	7.4
4	생물권역 보호	N/A	0.0	N/A	0.0	60	3.3	383	16.6	0	0.0	89	5.7
5	COVID-19	N/A	0.0	N/A	0.0	N/A	0.0	N/A	0.0	410	52.5	82	5.2
6	의료서비스	65	4.5	181	12.2	28	1.5	124	5.4	0	0.0	80	5.1
7	전력송전/배전	50	3.4	0	0.0	174	9.7	135	5.8	N/A	0.0	72	4.6
8	수로운송	0	0.0	173	11.7	0	0.0	173	7.5	0	0.0	69	4.4
9	기초의료설비	0	0.0	0	0.0	147	8.2	162	7.0	0	0.0	62	3.9
10	농업용수자원	0	0.0	98	6.6	148	8.2	0	0.0	0	0.0	49	3.1
Top 10 합계		648	44.5	1,102	74.4	1,107	61.4	1,600	69.2	455	58.3	982	62.7
합계		1,455	100	1,481	100	1,802	100	2,313	100	781	100	1,566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

526_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부록 표10〉 EDCF Top 10 산업별 지출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순위	산업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1	도로운송	178	26.8	163	23.3	174	21.4	0	0.0	0	0.0	103	13.2
2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 (플랜트 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82	12.4	94	13.5	91	11.2	123	13.4	75	9.2	93	11.9
3	COVID-19	0.0	N/A	0.0	N/A	0.0	N/A	0.0	330	40.7	66	8.5	7.4
4	국도 건설 (Voluntary Code)	0	0.0	0	0.0	0	0.0	118	12.9	116	14.3	47	6.0
5	철도운송	1	0.2	6	0.8	98	12.0	75	8.2	45	5.5	45	5.7
6	전력송전/배전	58	8.7	70	10.1	17	2.1	50	5.5	N/A	0.0	39	5.0
7	의료서비스	16	2.4	46	6.5	40	4.9	38	4.2	51	6.2	38	4.9
8	기초의료설비	47	7.1	18	2.6	23	2.9	23	2.5	11	1.4	25	3.2
9	행정비용	19	2.8	21	3.0	23	2.8	25	2.8	28	3.4	23	3.0
10	정보통신기술	21	3.1	15	2.1	72	8.8	6	0.7	2	0.2	23	2.9
Top 10 합계		421	38.8	432	38.3	537	39.7	459	33.4	657	44.8	501	39.1
합계		663	100	697	100	814	100	914	100	811	100	780	100

출처: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 심층분석 [Website], n.d.)에서 재가공